한국 조세정책 50년

제Ⅰ권 조세정책의 평가
第1篇 時代別 租稅政策
第2篇 稅目別 租稅政策
제Ⅱ권 총괄 자료집
제Ⅲ권 소득세 자료집
제Ⅳ권 법인세 자료집
제Ⅴ권 소비과세 자료집
제Ⅵ권 재산과세 자료집

····· 한국 조세정책 50년 ·····

한국조세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60번지
TEL:3460-2114(代), FAX:574-9183

9 788981 910914 94320
ISBN 89-8191-091-X
ISBN 89-8191-096-0 (전6권)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Ⅱ卷
總括 資料集

한국조세연구원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Ⅱ卷 · 總括 資料集

KIPF 한국조세연구원

목 차

●第1部 稅法改正의 內容
第1章 國稅基本法
第2章 國稅徵收法
第3章 租稅犯處罰法
第4章 租稅減免規制法
●第2部 統計資料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II卷 · 總括 資料集

한국조세연구원

發 刊 辭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50여년 동안 괄목할 만한 經濟成長을 이룩하였으며 동시에 經濟·社會構造의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해방 이후 격변기의 經濟再建 時代에서 출발하여, 1960년대의 경제개발 초기단계와 1970년대 및 1980년대의 高度成長期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租稅政策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여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해방 이후 50년이 되던 1995년부터 많은 분야에서 그간의 정책을 정리하고 평가하는 작업이 시도되었다.

韓國租稅硏究院에서도 1995년부터 광복 5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韓國租稅政策 50年'이란 명칭하에 조세정책을 정리하는 작업을 수행해 왔다. 해방 이후 50년 동안 조세정책은 우리나라의 경제 및 사회전반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조세 관련 政策立案者와 學界에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조세정책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필수적이다. 아울러 과거 50년 동안 조세정책이 우리의 경제 및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를 평가하는 것은 반세기를 정리한다는 의미에서도 매우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조세정책 50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광복 이후 50년간의 조세정책을 다각도로 평가하기 위해, 時代別 및 稅目別로 나누어 정책의 흐름을 평가하였다. 둘째, 광복 이후 50년간의 조세정책의 변화와 關聯統計를 수집하여 稅目別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리하여 그 결과는 광복 이후 50년을 시대 및 세목별로 나누어 각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분야의 조세정책을 평가한 논문을 편집한 한 권의 책과 세목별로 조세정책의 변화와 관련통계를 수록한 다섯 권의 자료집 등 총 여섯 권으로 나타났다.

본 작업은 전임 원장인 崔 洸 박사와 本院의 玄鎭權 박사가 중심이 되고 본원의 연구위원들이 참여하여 이루어졌다. 서울대학교 車幹權 명예교수께서 본 작업이 시작하는 단계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 租稅政策을 評價한 제 I 권에는 본원의 硏究委員 및 외부의 財政學者들이 참여하였는데, 집필진의 수고에 감사드린다. 稅目別 資料集인 제 II 권에서 제 VI 권까지의 총 다섯 권의 자료집은 본원의 많은 연구진과 외부의 도움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노고가 매우 크다. 編者들은 특히

방대한 자료작업에 오랫동안 참여하였던 본원의 姜信惠·金龍大·夫東植·李宗書 硏究員과 자료 입력에 수고한 李賢暎·吳美順·崔祉香 硏究助員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있다. 남아 있는 모든 오류는 저자들의 책임이며 본 논문에서 표명된 의견들은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 둔다.

1997年 12月

韓國租稅硏究院

院長 金 仲 秀

일러두기

1. 전체 구성

○ '韓國 租稅政策 50年'은 한 권의 정책평가 논문집과 다섯 권의 세목별 자료집으로 다음과 같이 총 여섯 권으로 구성되어 있음.

제 I 권 : 租稅政策의 評價
- 第1篇 時代別 租稅政策
- 第2篇 稅目別 租稅政策

제 II 권 : 總括 資料集
- 國稅基本法, 國稅徵收法, 租稅犯處罰法, 租稅減免規制法

제 III 권 : 所得稅 資料集

제 IV 권 : 法人稅 資料集

제 V 권 : 消費課稅 資料集

제 VI 권 : 財產課稅 資料集

2. 자료집의 구성

○ 各 資料集은 稅法改正의 要約, 稅法改正內容, 關聯 統計資料 순서로 나열되어 있음.

○ 稅法改正內容에는 실려 있지 않고, 統計資料에만 실려있는 稅目이 다수 있음.

○ 原資料의 統計 自體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原資料를 그대로 入力한 후 '註'를 表記하여 追加的인 說明을 하였음.

○ 同一한 項目이 여러 연도판 『國稅統計年報』에 실려 있을 경우 가장 最近 資料를 基準으로 整理했음. 그 結果 合計欄의 수치와 細部項目의 '實際' 合計間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1980년대 초까지만 集計된 資料는 '천원', 그 이후까지 集計된 資料는 '백만원' 단위로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적절히 혼용했음.

○ 본 統計表 중의 符號는 原則的으로 다음에 의거하고 있음.

「0」: 單位未滿

「-」: 해당 數字 없음

○ 각 資料集에 收錄된 統計資料는 添附된 CD에 모두 收錄되어 있는데, 그 使用方法은 CD설명서를 참조.

目　　次

發刊辭

第 1 部　稅法改正의 內容 …… 13

第 1 章 國稅基本法 …… 13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13

第 2 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16

1974년 : 國稅基本法의 制定 …… 17

1976년 …… 34

1977년 …… 38

1978년 …… 41

1979년 …… 42

1980년 …… 47

1981년 …… 49

1983년 …… 55

1984년 …… 59

1988년 …… 73

1989년 …… 74

1990년 …… 75

1991년 …… 85

1992년 …… 86

1993년 …… 87

1994년 …… 95

1996년 …… 104

第 2 章　國稅徵收法 …… 118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118

第 2 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122

1949년 : 國稅徵收法의 制定 …… 123

1951년 …… 128

1952년 ····· 129
1961년(전면개정) ····· 131
1962년 ····· 147
1963년 ····· 151
1964년 ····· 152
1966년 ····· 152
1967년 ····· 153
1969년 ····· 157
1970년 ····· 165
1971년 ····· 191
1973년 ····· 193
1974년 ····· 194
1977년 ····· 200
1980년 ····· 201
1981년 ····· 202
1983년 ····· 204
1984년 ····· 215
1988년 ····· 216
1991년 ····· 217
1992년 ····· 218
1993년 ····· 222
1994년 ····· 227
1996년 ····· 233

第3章 租稅犯處罰法 ····· 242
第1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242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44
1951년 : 租稅犯處罰法의 制定 ····· 245
1954년 ····· 247
1956년 ····· 248
1958년 ····· 250
1961년 ····· 251

1962년 …… 254
1965년 …… 255
1967년 …… 256
1969년 …… 259
1970년 …… 260
1974년 …… 261
1976년 …… 263
1980년 …… 269
1994년 …… 272

第 4 章　租稅減免規制法 …… 277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 277
第 2 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 287
1965년 : 租稅減免規制法의 制定 …… 287
1966년 …… 291
1967년 …… 292
1968년 …… 295
1969년 …… 298
1970년 …… 299
1971년 …… 305
1972년 …… 310
1973년 …… 314
1974년 …… 319
1975년 …… 332
1976년 …… 337
1977년 …… 346
1978년 …… 353
1979년 …… 365
1980년 …… 373
1981년 …… 384
1982년 …… 423
1984년 …… 469

1985년 …… 485
1986년 …… 529
1987년 …… 583
1988년 …… 608
1989년 …… 633
1990년 …… 677
1991년 …… 706
1992년 …… 745
1993년 …… 770
1994년 …… 808
1995년 …… 835
1996년 …… 869

第 2 部　統計資料

［표　1］ 租稅體系의 變遷 …… 919
가. 國稅
나. 地方稅(道稅)
다. 地方稅(市·郡稅)
라. 地方稅(特別市·廣域市稅, 區稅)
［표　2］ 年度別 租稅 收入 …… 932
［표　3］ 年度別 內國稅 收入 …… 937
［표　4］ 年度別 租稅負擔率 推移 …… 948
［표　5］ 年度別 內國稅, 國稅, 租稅의 直·間接稅 比率 …… 949
［표　6］ 年度別 國稅·地方稅의 配分 推移 …… 950
［표　7］ 年度別 主要 內國稅 納稅 人員 …… 951
［표　8］ 年度別 國稅審査 事務處理 : 異議申請 …… 955
［표　9］ 年度別 國稅審査 事務處理 : 審査請求 …… 956
［표 10］ 年度別 租稅 行政訴訟 件數 …… 957
［표 11］ 年度別 租稅犯則 調査 實績 …… 958
［표 12］ 年度別 內國稅 徵稅比 推移 …… 959
［표 13］ 年度別 國稅廳 定員 推移 …… 960
『韓國 租稅政策 50年』關聯 所藏資料 目錄 …… 961

第 1 部

稅法改正의 內容

第 1 章　國稅基本法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1974년 : 國稅基本法의 制定

(국세징수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국세의 징수나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수단 등을 국세기본법에 통괄적으로 규정하여 세제운영의 통일성을 제고시킨다.)

① 각 세법간의 공통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제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세기본법을 제정한다.

②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로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제2차납세의무 등을 규정한다.

③ 국세부과와 세법의 적용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등을 명문화한다.

④ 납세에 관한 심사청구제도를 규정한다.

1976년

① 국세심판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한다.

② 이의청구신청의 청구기간이 불변기간임을 명시한다.

③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의 제정과 기타 간접세의 폐지 등에 따른 조정을 한다.

1977년

① 납세의무의 확정을 보완하고, 서식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②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안의 조정사항을 보완하고, 서식을 개정한다.

1978년

① 증권거래세의 신설에 따른 조정을 한다.
② 지방국세청장에게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행정구제제도를 개선한다.
③ 국세심판관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1979년

① 신고납부방식에 의하는 세목에 법인세를 추가한다.
② 과세표준수정신고에 관한 사항을 개선한다.
③ 수정신고시의 추가자진납부세액과 가산세 등을 조정한다.
④ 법인세환급가산금의 가산일을 조정한다.
⑤ 국세심사위원회의 인원수를 조정한다.

1980년

① 수정신고시 추가자진납부세액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② 지급명령과 계정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③ 계좌이체지급제도를 신설한다.

1981년

①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에 관한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② 시효의 정지사유를 추가한다.
③ 국세의 우선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④ 국세환급금의 이율을 인상하는 한편 국세환급금의 환급창구를 증설한다.
⑤ 한국은행 등의 미지급자금 정리기간을 조정한다.
⑥ 국세의 심사·심판청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⑦ 국세행정에 대한 협조를 도모하기 위해 납세지도교부금제도를 신설한다.

1983년

① 서식을 개정한다.

1984년

①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한 관세법적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②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등의 경우 발신주의 특례를 적용한다.
③ 새로운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을 신설한다.
④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⑤ 소액보증금 및 임금채권 등의 국세에 대한 우선규정을 신설한다.
⑥ 인감증명서 없이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범위를 확대한다.
⑦ 국세불복청구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다.
⑧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⑨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국세환급금 특례규정의 우선적용 등 기타의 사항을 개선한다.

1988년

① 서식을 개정한다.

1989년

①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정한다.

1990년

① 상속·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한다.
② 사해행위취소권의 신성 등 국세의 우선에 관한 사항을 보완한다.
③ 근로자의 날도 납부기한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다.
④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인상하는 등 기타의 조정을 한다.

1991년

① 종전의 간이절차에 의해 결정하는 소액국세심판의 범위를 확대한다.

1992년

①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민원서식을 개정한다.

1993년

①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특례사유를 추가한다.
② 납세담보의 평가방법을 개선하고 압류이후에 신고 또는 고지된 국세의 우선권을 조정한다.
③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 및 사업양수인의 제2차납세의무의 범위를 조정한다.
④ 토지초과이득세의 환급가산금 기산일 규정을 보완한다.
⑤ 국세불복청구기간을 개선하고 간주기각제도를 폐지한다.
⑥ 발신주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⑦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조정한다.
⑧ 수정신고시 가산금 감면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1994년

① 경정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그 도입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② 세무조사의 사전통지제도를 신설하고 그 신설에 따른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③ 상호합의절차 진행 중 행정구제절차의 진행을 정지시킨다.
④ 국세부과제척기간제도를 개선한다.
⑤ 수정신고시 가산세의 감면제도,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제도 등을 보완한다.
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범위를 확대한다.
⑦ 납부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제공규정을 신설하는 등 기타의 사항을 조정한다.

1996년

①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하여 교부하는 등의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도모한다.
② 납세불복제도를 개선한다.
③ 유치송달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타 관련 사항을 보완한다.

第 2 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이하에서 법이란 국세기본법을 말하며, 영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974년 : 國稅基本法의 制定

◉ 법　　률 : 1974. 12. 21. 법　　률 제 2679호(시행일 : 1975. 1. 1.)
◉ 시 행 령 : 1974. 12. 31. 대통령령 제 7459호(시행일 : 1975. 1. 1.)
◉ 시행규칙 : 1975. 3. 6. 재무부령 제 1087호(시행일 : 1975. 1. 1.)

〈要　　約〉

국세징수법 등에 분산되어 있던 국세의 징수나 납세의무자의 권리보호수단 등을 국세기본법에 통괄적으로 규정하여 세제운영의 통일성을 제고시킨다.

○ 각 세법간의 공통사항을 일괄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세제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국세기본법을 제정한다.
○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로써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과 제2차납세의무 등을 규정한다.
○ 국세부과와 세법의 적용원칙으로 실질과세의 원칙, 소급과세금지 등을 명문화한다.
○ 납세에 관한 심사청구제도를 규정한다.

〈制定內容〉

※ 制定의 目的 및 趣旨

既存稅制가 모든 稅法에 共通的으로 適用되는 通則的인 單一法典의 缺如로 因하여 稅制運營過程에서 課稅行政上의 不便과 納稅者의 稅制 理解困難 및 租稅摩擦 等의 問題點을 露呈함에 따라 이의 是正 要求가 漸高되었다.

그리하여 稅制當局은 國稅에 關한 法律關係를 確實히 하고 課稅에 관한 一般原則을 規定하여 國民이 納稅義務를 履行하는데 있어서 便利하도록 할 뿐 아니라 政府가 보다 民主的으로 公正하게 課稅하고 稅法을 適用하도록 하여 稅務行政이 國民의 信賴를 얻도록 하기 위하여 國稅基本法을 制定하였다.

이러한 制定의 趣旨에 따라 根據課稅의 原則, 信義誠實의 原則 等 指導理念을 明文化하여 이러한 規定이 審査·審判請求에 있어서도 또 行政訴訟에 있어서 納稅者의 主張을 뒷받침할 수 있는 規定으로서 適用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稅務行政의 改善에 크게

기여하며 또 한편 課稅處分으로 말미암아 權利나 利益이 侵害된 納稅者를 救濟하기 위한 審査請求制度를 單純化하고 獨立된 機關에서 處理하도록 하여 迅速性과 中立性을 保障함으로써 國稅基本法이 納稅者의 權益을 擁護하고 稅務行政을 民主化하는데 있어서 重要한 機能을 遂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旣存의 國稅徵收法 等 個別稅法에 散在되어 있던 國稅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 및 共通的인 事項을 吸收 補完시켜 單一法典化하고 違法 또는 不當한 國稅의 課稅處分에 대한 不服節次에 관한 旣存의 「國稅審査請求法」의 內容을 吸收 補完함으로써 「國稅審査請求法」은 「國稅基本法」의 施行과 同時에 廢止되었다.

※ 전반적인 흐름

가. 國稅에 關한 法律關係

國稅에 關한 納稅者의 理解를 容易하게 하고 法律關係를 明白히 하여 納稅義務를 보다 圓滑하게 履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1) 納稅義務의 成立·確定·削減

(가) 納稅義務의 成立時期

① 所得稅·法人稅·營業稅는 課稅期間의 終了時

② 相續稅는 相續開始時

③ 贈與稅는 贈與에 의한 財產取得時

④ 不當利得稅는 基準價格을 超過하여 去來時

⑤ 酒稅·物品稅·織物類稅·石油類稅 등은 課稅物品을 製造場이나 販賣場에서 搬出時

⑥ 源泉徵收하는 所得稅·法人稅·營業稅는 物品의 販賣나 引渡時 또는 用役提供時와 物品의 代金이나 用役의 代價를 支給時

(나) 納稅義務의 確定

稅法에 依하여 決定節次를 밟아 稅額이 確定되는 때

(다) 納稅義務의 削減

稅額이 納付·充當되는 때 및 削減時效가 完成되는 때 等

(2) 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第2次納稅義務者에 非上場法人의 寡占株主 等을 追加하고 法人의 第2次納稅義務가 賦課되는 寡占株主의 範圍에 包含되는 寡占株主의 親族·其他特殊關係人을 다음과 같이 規定하였다.

親族의 範圍

區 分	從 前	改 正
1. 父 系	8寸 以內	父系 6寸 以內 姑母父·內從兄弟·姉兄·妹夫·생질·사위·外孫子
2. 外 家	外 4寸 以內	外家 外 4寸 以內 姨母(夫)·姨從兄弟
3. 妻 家	妻 父 母	妻父母 妻男·妻兄弟·同婿

(가) 親族의 範圍는 原則的으로 6寸 以內의 父系血族으로 하되, 姑母夫·內從兄弟·姉兄·妹夫 姨從兄弟와 사위·妻兄弟 等을 追加하여 現實에 適合하게 하였다.

(나) 株主와 株主의 親族關係에 있는 者가 設立者가 되거나 理事의 過半數 以上을 차지하고 있는 非營利法人이 當該法人의 株式 等을 100分의 20 以上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非營利法人을 株主의 特殊關係人이 되도록 하였다.

(3) 法人格없는 團體는 法人으로 보고 課稅하도록 하였다.

(4) 納稅擔保의 種類를 擴大하였다.
納稅者의 便宜를 위하여 稅務署長이 確實하다고 認定하는 有價證券 또는 保證人의 保證 등에 依하여서도 納稅擔保가 可能하도록 하였다.

(5) 期間의 計算은 民法에 따르며 書類의 送達은 到達主義에 依하도록 하였다.

나. 國稅賦課와 稅法의 適用原則

稅務行政이 보다 國民의 信賴를 얻고 民主化를 期하기 爲하여 다음과 같은 指導理念을 明文規定하였다.

(1) 國稅賦課에 있어서는 去來의 實質內容에 따라 課稅하는 實質課稅의 原則을 規定하였다.

(2) 民法의 指導理念인 信義誠實의 原則을 課稅行政에도 適用하도록 하여 納稅義務의 履行과 課稅處分에 있어서 信義誠實이 維持되도록 하였다.

(3) 認定課稅의 濫用을 防止하고 納稅者의 誠實한 記帳을 誘導하기 爲하여 記帳을 尊重하고 課稅는 記帳에 根據하여 客觀的으로 하도록 하였다.

(4) 稅法適用에 關한 解釋이 달라진 경우에도 納稅者의 慣行을 尊重하여 달라진 以後에만 適用하도록 하고 새로운 解釋에 依하여 遡及課稅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企業會計의 原則을 原則的으로 尊重하도록 明文化하고 稅法에 特別한 規定이 없는 경우에는 企業會計의 原則에 따르도록 하였다.

다. 納稅에 關한 審査請求制度

納稅者가 課稅處分으로 因하여 또는 必要한 處分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利益이 侵害된 경우에는 보다 中立的으로 迅速하게 이를 審査하여 救濟하기 爲하여 審査請求制度를 다음과 같이 改編하였다.

(1) 國稅에 關한 審査制度의 改編

從 前			改 正			
審 級	名 稱	擔當機關	審 級	名 稱	擔當機關	備 考
1 審	再調査	稅 務 署	1 審	審 査	國 稅 廳	納稅者가 원하는 경우 審査에 앞서 稅務署에 異議申請할 수 있음.
2 審	審 査	地方國稅廳				
3 審	再審査	國 稅 廳	2 審	審 判	國稅審判所	

(가) 審査의 對象에 稅務官署의 必要한 處分을 받지 못함으로써 納稅者의 權利·利益이 侵害되는 경우를 追加하였다. 稅務官署의 不作爲行爲를 審査對象으로 擴大한 것은 行政救濟制度에 있어서 納稅者의 權利를 보다 充實하게 擁護하기 爲한 것으로 行政救濟制度에 있어서 劃期的인 措置라고 할 수 있다.

(나) 審級이 3審制에서 2審制로 短縮된다.

(다) 1審은 原則的으로 國稅廳에서 審査하도록 하고 2審인 最終審은 새로이 設置되는 國稅審判所에서 審判한다.

(라) 最終審을 擔當하는 國稅審判所를 執行機關인 國稅廳과 分離된 獨立機關으로 設置하여 審判의 中立性이 保障되도록 하였다.

(마) 國稅審判所의 裁決은 國稅審判官會議의 議決에 따르도록 하고 國稅審判官의 資格 및 身分保障을 法에서 嚴格히 規定하였다.

(바) 審査의 請求期間을 充分히 하고 審級의 種類에 不拘하고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日로 하여 請求를 爲한 充分한 時間의 餘裕를 가질 수 있게 統一하였다.

달라진 請求期間

從 前		改 正		備 考
審 級	請求期間	審 級	請求期間	
再 調 査	30日			審査에 앞서 異議申請을 하는 경우 그 申請도 60日
審 査	30日	審 査	60日	
再 審 査	15日	審 判	60日	
行 政 訴 訟	30日	行 政 訴 訟	60日	

(2) 審査請求節次

(가) 稅法에 依한 處分으로서 違法·不當한 處分을 받거나 權利利益이 侵害를 當한 納稅者는 當該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日內에 그 處分을 한 稅務署를 거쳐 國稅廳長에게 請求하여야 한다.

(나) 國稅廳長은 審査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60日內에 國稅審査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決定하여야 한다.

(다) 納稅者가 國稅廳長에게 審査를 請求하는 것보다 稅務署長에게 하는 것이 便利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稅務署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異議申請을 받은 稅務署長은 30日內에 이를 決定하여야 한다.

(3) 審判請求節次

(가) 審判決定에 不服이 있으면 審査請求에 對한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決定通知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請求後 60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60日內에 當該處分을 한 稅務署長과 國稅廳長을 거쳐 國稅審判所長에게 請求하여야 한다.

(나) 審判請求를 받은 國稅審判所長은 擔當國稅審判官을 指定하여 審判請求에 關한 審理를 하도록 하고 擔當國稅審判官은 審理結果를 國稅審判官會議에 부쳐 議決을 얻어 決定하게 된다.

(다) 審判請求를 한 納稅者는 意見을 陳述할 수 있고 口頭辯論을 할 수 있으며 審判請求에 關聯된 書類의 閱覽寫本의 謄抄 등을 稅務署長에게 要求할 수 있다.

(라) 國稅審判官은 審判請求에 關한 調査 및 審理에 있어서 自由心證으로 事實을 判斷한다.

달라진 國稅審査機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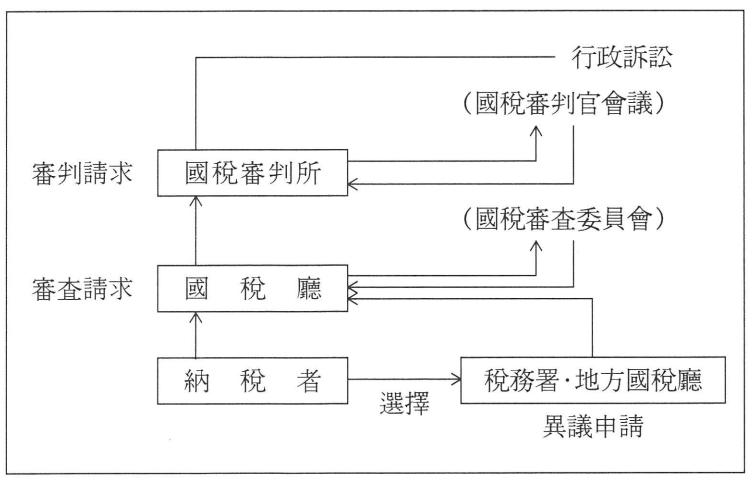

(4) 國稅審判所의 設置

審査制度의 改編에서 가장 重要한 事實은 國稅審判所를 執行機關인 國稅廳에서 分離하여 財務部長官所屬下의 獨立機關으로 設置하여 이를 4月 1日부터 運營하도록 한 것이다.

(가) 審判決定의 中立性 確保

國稅審判所는 國稅廳과 分離된 獨立機關일 뿐만 아니라 審判은 國稅審判所長이 單獨으로 決定할 수 없으며 國稅審判官會議의 議決에 따르도록 규정하여 審判의 中立性과 嚴正性이 保障되도록 하였다.

(나) 審判의 羈束力

따라서 國稅審判所의 審判은 處分廳을 羈束하고 處分廳은 審判決定의 內容에 따라 卽時 必要한 處分을 하도록 하여 審判의 實效性이 保障되도록 하였다.

(다) 國稅審判官의 身分保障

國稅審判官이 보다 中立的이고 嚴正하게 審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國稅審判官의 資格 및 任期를 法律事項으로 하고 任期中에는 刑의 宣告를 받는 等의 결격사유를 除外하고는 本人의 意思에 反하여 不利益한 處分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5) 行政訴訟과의 關係

(가) 審判請求에 關한 決定에 對하여 不服이 있는 者는 審判請求의 決定通知를 받은 날 또는 決定通知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決定期間이 經過한 날로부터 60日內에 高等法院에 行政訴訟을 提起할 수 있다.

(나) 監査院의 是正要求에 依한 處分은 監査院審査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內에 提起하여야 된다.

(6) 監査院審査請求와의 關係

監査院是正要求에 依한 處分에 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그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日 內에 監査院에 審査要求를 하여야 하며, 國稅基本法에 依한 審査 및 審判請求對象에서는 除外된다.

1. 國稅의 種類

(1) 所 得 稅　　(2) 法 人 稅
(3) 營 業 稅　　(4) 相續稅와 贈與稅
(5) 登 錄 稅　　(6) 再 評 價 稅

(7) 不當利得稅　　(8) 通 行 稅
(9) 酒　　稅　　(10) 物 品 稅
(11) 織物類稅　　(12) 石油類稅
(13) 電氣가스稅　　(14) 入 場 稅
(15) 電 話 稅　　(16) 印 紙 稅

2. 送達 및 公示送達

(1) 送　達
(가) 送達받아야 할 者에게 到達할 때부터 効力發生
(나) 方法 : ①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郵便
② 納稅의 告知, 督促, 滯納處分 또는 稅法에 依한 命令에 관계되는 書類送達은 登記郵便
(2) 公示送達
(가) 事由 : ① 住所 또는 營業所에서 書類의 受領을 拒否할 때.
② 國內에 住所 또는 營業所가 없을 때.
(나) 場所 : 稅務署, 當該書類의 送達場所를 管轄하는 市(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郡의 揭示板, 其他 適切한 場所에 揭示하거나 官報 또는 日刊新聞紙에 揭載
(다) 期間 : 公告한 날부터 10日經過

3. 實質課稅

(1) 課稅對象이 되는 所得, 收益, 財產, 行爲 또는 去來의 歸屬이 名義일 뿐이고 事實上 歸屬되는 者가 따로 있는 때에는 事實上 歸屬되는 者를 納稅義務者로 하여 稅法을 適用
(2) 稅法 中 課稅標準의 計算에 關한 規定은 所得, 收益, 財產, 行爲 또는 去來의 名稱이나 形式에 不拘하고 그 實質內容에 따라 適用

4. 稅法解釋의 基準·遡及課稅의 禁止

(1) 課稅의 衡平과 당해 條項의 合目的性에 비추어 納稅者의 財產權이 不當히 侵害되지 않도록 함.

(2) 稅法의 解釋 또는 國稅行政의 慣行이 一般的으로 納稅者에게 받아 들여진 後에는 그 解釋 또는 慣行에 의한 行爲 또는 計算은 正當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解釋 또는 慣行에 依하여 遡及하여 課稅되지 아니함.

(3) (2)의 規定은 監査院法에 의한 監査 및 그 結果에 의한 是正要求를 排除하거나 制限하지 않음.

(4) 稅法 이외의 法律 中 國稅의 賦課·徵收·減免 또는 그 節次에 관한 規定은 이를 稅法으로 看做함.

5. 稅務公務員의 裁量의 限界

課稅의 衡平과 當該 稅法의 目的에 비추어 一般的으로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限界를 嚴守하여야 함.

6. 納稅義務의 成立時期

(1) 所得稅, 法人稅, 營業稅 : 課稅期間이 終了되는 때 但, 淸算所得에 對한 法人稅는 당해 法人이 解散 또는 合併을 하는 때.

(2) 相續稅 : 相續을 開始하는 때.

(3) 贈與稅 : 贈與財産을 取得하는 때.

(4) 登錄稅 : 登記 또는 登錄을 하는 때.

(5) 再評價稅 : 資産再評價를 하는 때.

(6) 不當利得稅 : 基準價格을 超過하여 去來하는 때.

(7) 通行稅 : 運賃 또는 料金을 領收하거나 領收하여야 할 때.

(8) 酒稅·物品稅·織物類稅·石油類稅 : 課稅物品을 製造場 또는 販賣場에서 搬出하는 때. 但, 輸入物品의 경우는 稅關長에게 輸入申告를 하는 때.

(9) 電氣가스稅·入場稅·電話稅 : 料金을 領收하거나 領收하여야 할 때.

(10) 印紙稅 : 課稅文書를 作成하는 때.

(11) 加算稅 : 이를 加算할 國稅의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

(12) 源泉徵收하는 所得稅·法人稅·營業稅 : 物品을 販賣하거나 引渡한 때나 用役을 提供한 때 또는 物品의 代金이나 用役의 對價를 支給하는 때.

(13)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營業稅 : 그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이 發生한 달의 末日.

(14) 中間豫納所得稅·法人稅·營業稅 : 中間豫納期間이 終了하는 때.

(15) 隨時賦課徵收하는 所得稅·法人稅·營業稅 : 隨時賦課할 事由가 發生하는 때.

⑯ 電氣·가스 또는 電話의 使用者로부터 直接 徵收하는 電氣가스稅·電話稅 : 電氣事業者, 가스事業者 또는 遞信官署가 그 料金을 받지 못한 事實을 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때.

7. 納稅義務의 確定

(1) 國稅는 당해 稅法에 의한 決定의 節次에 따라 그 稅額이 確定됨.

(2) 다음의 國稅는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에 그 稅額이 確定됨.

① 登錄稅

② 印紙稅

③ 源泉徵收하는 所得稅·法人稅 또는 營業稅

④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營業稅

⑤ 中間豫納하는 法人稅(稅法에 의하여 政府가 調査決定하는 경우 除外)

8. 納稅義務의 承繼

(1) 法人의 合併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가) 承繼者 :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

(나) 對 象 : 消滅된 法人에게 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

(2) 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의 承繼

(가) 承繼者 : 相續人 또는 相續財產管理人

(나) 對 象 :

① 被相續人에게 부과하거나 그 被相續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相續으로 인하여 얻은 財產을 限度로 하여 納付할 義務를 짐.

② 相續人이 2人 以上인 때에는 각 相續人은 被相續人에게 부과하거나 그 被相續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相續分에 따라 按分하여 計算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納付할 義務를 짐.

③ 相續人의 存否가 不明일 때에는 相續人에게 하여야 할 納稅의 告知·督促 기타 必要한 事項은 相續財產管理人에게 함.

④ 相續人의 存否가 不明이고 相續財產管理人도 없는 때에는 稅務署長은 相續開始地를 管轄하는 法院에 相續財產管理人의 選任을 請求할 수 있음.

⑤ 被相續人에 대하여 행한 處分 또는 節次는 相續人 또는 相續財產管理人에 대하여도 效力이 있음.

9. 共有物·共同事業 등에 關한 連帶納稅義務

共有物, 共同事業 또는 당해 共同事業에 屬하는 財産에 관계되는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는 그 共有物 또는 共同事業者가 連滯하여 納付할 義務를 짐.

10. 納稅義務의 消滅

(1) 納稅義務의 消滅

① 納付, 充當, 公賣의 中止, 賦課의 取消 또는 缺損處分이 된 때.

② 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

(2) 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

行使할 수 있는 때로부터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하면 消滅時效가 完成함.

(3) 時效의 中斷과 停止

① 納稅告知

② 督促 또는 納付催告

③ 交付請求

④ 押留

(4) 中斷된 消滅時效는 다음 期間이 經過한 때로부터 새로 進行함.

① 告知한 納付期間

② 督促 또는 納付催告에 의한 納付期間

③ 交付請求中의 期間

④ 押留解除까지의 期間

(5) 消滅時效는 稅法에 의한 徵收猶豫期間 또는 年賦延納期間中에는 進行하지 아니함.

11. 納稅擔保

(1) 擔保의 種類

① 金 錢

② 國債 또는 地方債

③ 稅務署長이 確實하다고 認定하는 有價證券

④ 納稅保證保險證券

⑤ 納稅署長이 確實하다고 認定하는 保證人의 納稅保證書

⑥ 土 地

⑦ 保險에 든 登記 또는 登錄된 建物·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와 重機

(2) 擔保의 評價

① 國債 또는 地方債 : 時價

② 有價證券 : 大統領令이 定하는 價額

③ 納稅保證保險證券 : 保險金額

④ 納稅保證書 : 保證額

⑤ 土地·建物·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 또는 重機 : 登錄稅法에 依하여 國稅廳長이 定하는 時價標準額 또는 鑑定機關이나 그 財産의 鑑定時價에 關하여 專門的 技術을 保有하는 評價額

12. 國稅와 一般債權과의 關係

(1) 國稅의 優先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는 다른 公課金 기타의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함.

(2) 國稅의 優先排除

① 地方稅 또는 公課金의 滯納處分에 있어서 그 滯納處分金額 中에서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를 徵收하는 경우의 그 地方稅 또는 公課金의 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

② 強制執行·競賣 또는 破産節次에 의한 財産의 賣却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 中에서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를 徵收하는 경우의 그 強制執行·競賣 또는 破産節次에 所要된 費用

③ 國稅의 納付期限으로부터 1年前에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의 設定을 登記 또는 登錄한 財産의 賣却에 있어서 그 賣却金額 中에서 國稅 또는 加算金(그 財産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除外)을 徵收하는 경우의 그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

(3) 押留에 의한 優先

① 國稅의 滯納處分에 의하여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한 경우에 다른 國稅·加算金 滯納處分費 또는 地方稅의 交付請求가 있을 때에는 押留에 關係되는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는 交付請求한 다른 國稅·加算金·滯納處分費와 地方稅에 優先

② 地方稅의 滯納處分에 의하여 納稅者의 財産을 押留한 경우에,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의 交付請求를 한 때에는 交付請求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는 押留에 關係되는 地方稅의 다음 順位로 徵收

(4) 擔保있는 國稅의 優先

納稅擔保物을 賣却한 때에는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는 賣却代金 中에서 다른 國稅·加算金·滯納處分費와 地方稅에 優先

13. 第2次 納稅義務

(1) 淸算人 등의 第2次 納稅義務

①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를 納付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 또는 引渡한 때에 그 法人에 對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하여도 徵收할 金額에 不足한 경우에는 淸算人 또는 殘餘財産의 分配 또는 引渡를 받은 者는 그 不足額에 대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짐.

② 淸算人은 分配 또는 引渡한 財産의 價額을 限度로 分配 또는 引渡를 받은 者는 各自가 받은 財産의 價額을 限度로 함.

(2) 出資者의 第2次納稅義務

(가) 國稅의 納稅義務의 成立日 現在 다음에 該當하는 者

① 無限責任社員

② 株主 또는 有限責任社員 1人과 그外 大統領令이 定하는 親族 其他特殊關係에 있는 者들로서 그들의 所有株式金額 또는 出資額의 合計額이 當該 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의 100分의 51 以上인 者(寡占株主)

(3) 法人의 第2次 納稅義務

(가) 國稅 納付期間終了日 現在 法人의 無限責任社員 또는 寡占株主의 財産으로 그 出資者가 納付할 國稅·加算金 滯納處分費에 充當하여도 不足한 경우에는 法人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그 出資者가 所有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價額을 限度로 그 不足額에 대하여 第2次 納稅義務를 짐.

① 政府가 出資者의 所有株式 또는 出資持分을 再公賣하거나 隨意契約에 의하여 賣却하려 하여도 買受希望者가 없는 때.

② 出資者의 所有株式 또는 出資持分의 法律 또는 그 法人의 定款에 의하여 讓渡가 制限되어 있는 때.

(나) 法人의 第2次 納稅義務限度 : 그 法人의 資産總額에서 負債總額을 控除한 價額을 그 法人의 發行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으로 나눈 價額에 그 出資者의 所有株式金額 또는 出資額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

(4) 事業讓受人의 第2次 納稅義務

讓渡人의 財産으로 그 讓渡人에게 賦課되거나 그 讓渡人이 納付할 當該事業에 關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 充當하여도 不足이 있는 때.

(5) 物的納稅義務者

納稅者에게 讓渡擔保財産이 있을 때에는 그 納稅者의 다른 財産에 대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하여도 徵收한 金額이 不足할 경우에 限하여 그 讓渡擔保財産으로서 徵收할 수 있음.

14. 管轄官廳

(1) 課稅標準申告의 管轄

① 당해 國稅의 納稅地를 管轄하는 稅務署長.

② ①의 稅務署長 이외의 稅務署長에게 제출된 경우에도 申告의 效力에는 影響이 없음.

(2) 決定 또는 更正決定의 管轄

處分當時 당해 國稅의 納稅地를 管轄하는 稅務署長.

15. 修正申告

(1) 課稅標準 修正申告

① 그 記載事項의 漏落·誤謬가 있는 것을 發見한 때.

② 당해 國稅의 法定申告期限經過後 30日內.

(2) 追加自進納付

旣納付金額이 課稅標準 修正申告書에 상당하는 稅額에 未達한 때 그 不足額을 課稅標準修正申告書의 提出과 同時에 追加하여 納付.

(3) 修正申告書에 의한 加算稅 免除

當初의 申告의 過少로 인하여 賦課하여야 할 加算稅를 그 修正된 範圍안에서 免除

(4) 追加納付에 의한 加算稅 輕減

加算金의 100分의 50

16. 國稅還給金 및 國稅還給 加算金

(1) 還　給

納稅者가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로서 納付한 金額 中 過誤納付한 金額(國稅還給金)이 있을 때에는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에 充當하고 그 殘額은 國稅還給金의 決定한 날부터 30日內 還給.

(2) 充　當

國稅還給金은 納稅者가 自進納付하는 國稅·徵收하여 納付하는 國稅에 充當받고자 하는 뜻을 提出하는 計算書類에 附記하는 경우에 限하여 充當할 수 있음.

(3) 國稅還給加算金

(가) 國稅還給金을 充當 또는 還給하는 때에는 다음 揭記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充當하는 날 또는 支給決定하는 날까지의 利率을 加算.

① 錯誤納付, 二重納付 또는 納付後 그 賦課의 取消, 更正決定으로 因한 경우 그 納付日

② 定期決定으로 因한 경우 : 定期決定日

③ 適法하게 納付된 國稅에 대한 減免으로 因한 경우 : 減免決定日

④ 法人稅의 課稅標準의 決定으로 因한 경우 : 그 決定日

⑤ 適法하게 納付된 後 法律改正으로 因한 경우 : 法律施行日

(4) 國稅還給加算金의 利率

100원에 對하여 1日 2전

17. 不　服

(1) 不　服

① 이 法 또는 稅法에 依한 處分으로서 違法 또는 不當한 處分을 받거나 必要한 處分을 받지 못함으로써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당한 者는 審査請求를 하여 그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이나 必要한 處分을 請求할 수 있음(다만, 그 處分이 國稅廳長이 調査·決定 또는 處理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處分에 대하여 審査請求에 앞서 異議申請을 할 수 있음).

② 審査請求를 한 者는 그 청구에 對한 決定에 異議가 있거나 決定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審判請求를 할 수 있음.

(2) 不服除外處分

① 이 法에 의한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에 대한 處分(다만, 異議申請에 대한 處分에 對하여 審査請求를 하는 경우 또는 審査請求에 대한 處分에 對하여 審判請求를 하는 경우는 除外)

② 租稅犯處罰法에 의한 通告處分

③ 監査院法에 의한 是正要求에 의한 處分과 同法에 의하여 審査請求를 한 處分이나 그 審査請求에 대한 處分

(3) 審査請求 等이 執行에 미치는 效力

異議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는 稅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당해 處分의 執行에 效力을 미치지 아니함.(다만, 당해 裁決廳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그 處分의 執行을 中止하게 하거나 中止할 수 있음.)

(4) 代理人

① 異議申請人·審査請求人 또는 審判請求人은 辯護士·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를 代理人으로 選任할 수 있음.

② 代理人의 權限은 書面으로 證明하여야 함.

③ 代理人은 本人을 위하여 그 申請 또는 請求에 관한 모든 行爲를 할 수 있음. (다만, 그 申請 또는 請求의 取下는 特別한 委任을 받은 경우에 限함)

④ 代理人을 解任한 때에는 그 뜻을 書面으로 당해 裁決廳에 申告하여야 함.

18. 審 査

(1) 請求期間 : 不變期間

① 審査請求 : 당해 處分이 있은 것을 안 날(處分의 通知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日(納稅者가 外國에 住所를 둔 경우에는 90日)內

② 異議申請을 거친 후 審査請求 : 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決定의 通知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日內.

(2) 請求節次

① 稅務署長을 경유하여 國稅廳長에게 함.

② 稅務署長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日內에 그 請求書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國稅廳長에게 送付하여야 함.

(다만, 당해 審査請求의 對象이 된 處分이 地方國稅廳長이 調査·決定 또는 處理하거나 하였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地方國稅廳長을 거쳐야 하며 이 경우에는 稅務署長의 意見書에 갈음하여 當該地方國稅廳長이 意見書를 添附하여야 함.)

(3) 請求書의 補正

10日內에 補正要求

(4) 決 定

① 却下決定 : 請求期間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補正期間內에 必要한 補正을 아니한 때

② 棄却決定 : 審査請求가 理由없다고 認定되는 때

③ 處分의 取消·更正·必要한 處分의 決定 : 審査請求가 이유 있다고 認定되는 때

④ 決定은 審査請求를 받은 날로부터 60日內에 하여야 함.

⑤ 補正期間은 決定期間에 不算入함.

⑥ 決定의 通知가 없는 때에는 棄却된 것으로 看做함.

(5) 異議申請

① 異議申請은 處分官署長에게 하여야 함.

② 稅務署長은 異議申請의 對象이 된 處分이 地方國稅廳長이 調査·決定 또는 處理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境遇에는 異議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7日內에 당해 申請書에 意見書를 添附하여 地方國稅廳長에게 送付하고 그 뜻을 異議申請人에게 通知하여야 함.

③ 異議申請이 있는 때에는 異議申請을 받은 稅務署長이 決定함. 다만, 당해 申請書를 地方國稅廳長에게 送付한 境遇에는 그 地方國稅廳長이 決定함.

④ 請求期間 및 決定期間 : 30日

19. 審 判

(1) 國稅審判所

① 審判請求에 대한 決定을 하기 위하여 財務部長官所屬下에 國稅審判所를 둠.

② 國稅審判所에 所長과 國稅審判官을 두되 所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國家公務員인 國稅審判官은 2甲 또는 2乙의 一般職 또는 別定職 公務員으로 補하고 國家公務員이 아닌 國稅審判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委囑함.

(2) 國稅審判官의 資格

① 國稅에 관한 事務에 3級甲類 以上의 國家公務員으로서 3年 以上 勤務한 者.

② 判事·檢事·軍法務官 또는 辯護士의 職에 5年 以上 在職한 者.

③ 公認會計士 또는 稅務士의 職에 6年 以上 在職한 者.

④ 公認된 大學에서 法律學 또는 會計學의 副敎授 이상의 職에 在職한 者.

(3) 國稅審判官의 任期 : 3年(連任可能)

(4) 缺格事由

(가) 禁錮 以上의 刑의 宣告를 받았을 때.

(나) 長期의 心身衰弱으로 職務를 遂行할 수 없게 된 때.

(5) 請求期間

審判請求에 대한 決定의 通知를 받은 날(決定의 通知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決定期間이 경과한 날)로부터 60日內에 하여야 함.

(6) 請求節次

稅務署長과 國稅廳長을 거쳐 國稅審判所長에게 請求

(7) 抗 辯

審判請求人은 國稅廳長 意見書에 대한 抗辯을 위하여 國稅審判所長에게 證據書類 또는 證據物을 提出할 수 있음.

(8) 事實判斷

國稅審判官은 審判請求에 관한 調査 및 審理의 結果와 課稅의 衡平을 參酌하여 自由心證으로 事實을 判斷함.

(9) 決定節次

國稅審判所長은 國稅審判官會議의 議決에 따라 이를 決定하여야 함. 단, 審判請求의 對象이 少額인 것, 또는 輕微한 것인 경우나 審判請求가 請求期間經過後에 있은 때에는 主審國稅審判官의 의견을 들어 이를 결정함.

(10) 不告不理, 不利益變更禁止

① 國稅審判所長은 審判請求를 한 處分 以外의 處分에 대하여는 그 處分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 또는 變更하거나 새로운 處分의 決定을 하지 못함.

② 國稅審判所長은 決定을 함에 있어서 審判請求를 한 處分보다 請求人에게 不利益이 되는 決定을 하지 못함.

(11) 決定의 效力

① 決定은 關係行政廳을 覊束함.

② 關係行政廳은 卽時 必要한 處分을 하여야 함.

③ 決定期間 : 90日

1976년

◉ 법　　률 : 1976. 12. 22. 법　　률 제2925호(시행일 : 1977. 1. 1.)
1976. 12. 22. 법　　률 제2932호(임시조치법 부칙)
(시행일 : 1977. 7. 1.)
◉ 시 행 령 : 1976. 12. 31. 대통령령 제8352호(시행일 : 1977. 1. 1.)
◉ 시행규칙 : 1976. 12. 31. 재무부령 제1216호(시행일 : 1977. 1. 1.)

〈要　　約〉

○ 국세심판소에 관한 사항을 개선한다.
○ 이의청구신청의 청구기간이 불변기간임을 명시한다.
○ 부가가치세법과 특별소비세법의 제정과 기타 간접세의 폐지 등에 따른 조정을 한다.

〈改正內容〉

〈國稅基本法 關聯〉

1. 國稅審判官의 分類用語를 從前 "國家公務員인 國稅審判官과 國家公務員이 아닌 國稅審判官"으로 되어 있던 것을 "常任國稅審判官과 非常任國稅審判官"으로 改正하여 用語 解釋上의 問題點을 解消하고, 國稅審判所長을 當然職國稅審判官으로 하는 한편, 所長에 대하여는 國稅審判官에 대한 身分保障이나 資格要件에 관한 規定을 適用하지 않도록 하였다.(法 第67條)

2. 異議申請의 請求期間은 不變期間임을 分明히 하였다(法 第66條 第4項).

3. 國稅의 種類

— 삭제 : 등록세
— 신설 : 유흥음식세

4. 納稅義務의 成立時期

(1)~(3)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4) 削除(등록세 관련－1974년 해당조항)
(5)~(8)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9) 전기가스稅, 入場稅, 電話稅 또는 遊興飮食稅 : 料金을 領收하거나 領收하여야 할 때.
(10)~(16)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5. 納稅義務의 確定

(1)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2) 다음의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됨.
① 등록세 : 삭제
②~⑤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6. 納稅擔保

(1) 擔保의 種類
①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2) 擔保의 評價
①~④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⑤ 土地·建物·工場財團·鑛業財團·船舶·航空機 또는 重機 : 地方稅法에 의한 時價標準額 또는 鑑定機關이나 그 財產의 鑑定評價에 關하여 專門的 技術을 保有하는 者의 評價額에 의함(登錄稅가 地方稅로 移管).

7. 審 判

(1) 國稅審判所
①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② 國稅審判所에 所長과 國稅審判官을 두되 所長은 別定職으로 하고 所長이 아닌 常任國稅審判官은 2甲 또는 2乙의 一般職 또는 別定職國家公務員으로 補하고 非常任國稅審判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委囑함.

(2) 國稅審判官의 資格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3) 國稅審判官의 任期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4) 缺格事由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但, 所長인 國稅審判官에 대하여는 (2)-(4)의 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함(新設)
(5)~(11)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附加價値稅法 등의 制定에 따른 臨時措置法 關聯〉

1. 國稅의 種類

가. 削 除

- 營業稅 — 通行稅
- 織物類稅 — 物品稅
- 石油類稅 — 電氣·가스稅
- 入場稅 — 遊興飮食稅

나. 新 設

- 附加價値稅 — 特別消費稅

2. 納稅義務의 成立時期

(1) 所得稅, 法人稅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2)~(3)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5)~(6)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7) 附加價値稅 : 課稅期間이 終了하는 때, 輸入財貨의 경우 : 稅關長에게 輸入申告를 하는 때
(8) 特別消費稅·酒稅 : 課稅物品을 製造場으로부터 搬出하거나 販賣場에서 販賣하는 때 또는 課稅場所에 入場하는 때.
단, 輸入物品의 경우 : 稅關長에게 輸入申告를 하는 때.
(9) 電話稅 : 料金을 領收하거나 領收하여야 할 때.
(10)~(11)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12)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 : 所得金額 또는 收入金額을 支給하는 때.

⑬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豫定申告納付하는 所得稅 : 그 課稅標準이 되는 金額이 發生한 달의 末日.

⑭ 中間豫納하는 所得稅·法人稅 또는 豫定申告納付하는 附加價値稅 : 中間豫納期間 또는 豫定申告期間이 終了하는 때.

⑮ 隨時賦課에 의하여 徵收하는 所得稅·法人稅 : 隨時賦課할 事由가 發生하는 때.

⑯ 電話의 使用者로부터 直接徵收하는 電話稅 : 遞信官署가 그 料金을 받지 못한 事實을 稅務署長에게 申告하는 때

3. 納稅義務의 確定

⑴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⑵ 납세의무 성립시 세액이 확정되는 국세

① 삭제(등록세)

②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③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

④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

⑤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4. 國稅還給金 및 國稅還給加算金

⑴ 還 給

納稅者가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로서 納付한 金額 中 過誤納付한 金額·稅法에 의하여 還給하여야 할 還給稅額(稅法에 依하여 還給하여야 할 稅額이 있을 때에는 控除한 後의 殘餘額)이 있는 때에는 卽時 그 過誤納, 超過納付額 또는 還給稅額을 國稅還給金으로 決定하여야 함.

⑵ 充 當

㈎ 國稅還給金으로 決定된 金額은 다음 各號의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에 充當하여야 함. 다만, ③④의 充當은 納稅者가 充當받고자 하는 뜻을 提出하는 計算書類에 附記하는 경우에 限하여 充當할 수 있음.

① 納稅告知에 依하여 納付하는 國稅

② 滯納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

③ 稅法에 依하여 自進納付하는 國稅

④ 稅法에 依하여 徵收하여 納付하는 國稅

(나) 國稅還給金

(가)의 規定에 依하여 充當한 後 殘餘金은 國稅還給金 決定한 날부터 30일 以內 納稅者에게 支給하여야 함.

(3) 國稅還給加算金

(가) 前과 같음

①~⑤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⑥ 附加價値稅法·特別消費稅法 및 酒稅法에 依한 還給稅額은 그 申告한 날부터 30日이 經過하는 때 다만, 決定 또는 更正決定으로 因하여 發生할 경우 : 決定 또는 更正決定日부터 30日이 經過하는 때(新設)

(4) 國稅還給加算金의 利率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1977년

◉ 시 행 령 : 1977. 8. 20. 대통령령 제8650호(시행일 : 1977. 7. 1.)
1977. 11. 21. 대통령령 제8749호(시행일 : 1977. 11. 21.)

◉ 시행규칙 : 1977. 8. 25. 재무부령 제1281호(시행일 : 1977. 8. 25.)
1977. 11. 26. 재무부령 제1304호(시행일 : 1977. 11. 26.)

〈要 約〉

○ 납세의무의 확정을 보완하고, 서식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간의 조정사항을 보완하고, 서식을 개정한다.

〈改正內容〉

〈8월의 개정〉

1. 국세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납세의무의 확정(영 제10조의2, 신설) 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①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 또는 주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③ 제1호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나. 제18조 제1항 중 "증여세·재평가세와 등록세"를 "증여세와 재평가세"로 한다.

다. 제2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5조에 규정하는 기재사항의 누락·오류는 과세표준신고서(예정신고서를 제외한다)를 작성할 때에 발생한 누락·오류로 하며 당해 신고서의 작성전에 이미 발생한 원시적인 누락·오류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라. 제29조를 삭제한다.

마. 제31조 중 "법 제51조 제1항"을 "법 제51조 제2항"으로 한다.

바. 제32조 제1항 중 "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환급하게 하기 위하여"를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게 하기 위하여"로 한다.

사. 제40조 제2항 중 "만원 미만"을 "10만원 미만"으로 한다.

2. 國稅基本法施行規則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가. 제12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 특별소비세의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내지 별지 제8호서식에 당초신고와 수정신고의 내용을 병기하고, 납부세액란 옆에 추가자진납부세액을 부기하여 이를 각각 수정신고서 또는 추가자진납부 세액계산서로 표시함으로써 별지 제16호서식에 갈음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6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업태"를 "사업의 종류"로 한다.

별지 제24조서식 중 "1만원"을 "10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별지 제32호서식·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11월의 改正〉

○ 국세기본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稅務署長 所管歲入金計定間의 調整(영 제33조의 2, 신설)

①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의 소관세입금이 국세환급금을 지급하기에 부족하거나 부족이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세무서장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세무서장의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필요한 금액을 이체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체지시는 세입금이체명령서에 의하며, 그 내용은 이체를 신청한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체지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세입금계정으로부터 당해 금액을 다른 세무서장의 세입금계정으로 이체할 것을 세입금이체청구서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청구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체를 하고, 이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2. 稅務署長 所管歲入金計定間의 調整(규칙 제16조의2, 신설)

①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의 세입금이체수입신청서에 의한다.

②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명령서는 별지 제45호서식에 의한다.

③ 영 제33조의2제1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세입금이체명령통지서에 의한다.

④ 영 제33조의2제2항에 규정하는 세입금이체청구서는 별지 제47호서식에 의한다.

⑤ 영 제33조의2제3항에 규정하는 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의 세입금이체통지서에 의한다.

1978년

◉ 법　　률 : 1978. 12. 5. 법　　률 제3097호(시행일 : 1978. 12. 5.)
◉ 시 행 령 : 1978. 12. 30. 대통령령 제9228호(시행일 : 1978. 12. 30.)
◉ 시행규칙 : 1979. 2. 14. 재무부령 제1382호(시행일 : 1979. 2. 14.)

〈要　　約〉

證券去來稅法의 制定에 따라 證券去來稅의 課稅標準修正申告期限을 추가하여 納稅義務者의 편의를 위해 異議申請을 地方國稅廳長에게도 提起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監査院의 更正要求에 의한 처분도 國稅審査請求對象에 포함되도록 하였다.

○ 證券去來稅 新設에 따른 調整
  • 納稅義務成立時期와 課稅標準修正申告期限을 정함.
○ 行政救濟制度의 改善
  • 地方國稅廳長에게도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함.
  • 監査院 更正要求에 의한 처분도 審査請求對象에 포함되도록 함.
○ 國稅審判官의 資格 緩和
  • 國稅從事者도 포함되도록 함.

〈改正內容〉

1. 證券去來稅 新設에 따른 調整(法 第2條·第21條·第45條)

國稅의 範圍에 證券去來稅가 포함되도록 하고, 證券去來稅의 納稅義務의 成立時期를 賣買去來가 확정되는 때로 하는 한편,

課稅標準修正申告期限을 다른 間接諸稅와 같이 法定申告期限 經過後 10일내로 하였다.

2. 行政救濟制度의 改善

가. 從前에는 稅務署長이 調査決定한 處分(積極的處分) 또는 하였어야 할 處分(消極的處分)에 대하여 稅務署長에게만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을 地方國稅廳長에게도 선택적으로 異議申請을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改正하였다.(法 第66條)

對 象 處 分	對 象 機 關	
	改 正 前	改 正
稅務署長의 處分	稅 務 署 長	稅務署長또는地方國稅廳長
地方國稅廳長의 處分	地方國稅廳長	地 方 國 稅 廳 長

나. 國稅審査請求對象 擴大

從前에는 監査院法에 의한 是正要求에 의한 처분은 國稅基本法에 의한 審査請求對象이 되지 아니 하였으나 納稅者의 行政救濟의 편의를 위하여 國稅基本法에 의한 審査請求(異議申請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 第55條)

3. 國稅審判官의 資格緩和

國稅에 대한 不服도 國稅審判官에서 統合관장하기 위하여 다음 國稅業務從事者도 國稅審判官이 될 수 있도록 資格要件을 補完하였다.(法 第67條)

가. 關稅業務에 3甲 以上으로 3年 以上 從事한 者

나. 關稅士의 職에 6年 以上 재직한 者

1979년

◉ 법 률 : 1979. 12. 28. 법 률 제3199호(시행일 : 1980. 1. 1.)
◉ 시 행 령 : 1979. 12. 31. 대통령령 제9693호(시행일 : 1980. 1. 1.)

〈要 約〉

法人稅를 政府賦課制度에서 申告納付制度로 轉換함에 따라 納稅者의 誠實한 申告納付를 保護하고 이를 誘導하기 위하여 課稅標準修正申告의 期限을 延長하고, 그 範圍도 擴大하였다.

○ 申告納付方式에 의하는 稅目에 法人稅를 追加함.

○ 課稅標準修正申告
  — 課稅標準修正申告書의 提出期限을 延長함.
  — 課稅標準修正申告의 範圍를 擴大함.
  — 減免修正申告에 대한 政府의 處理義務 및 期限을 規定함.
○ 修正申告時의 追加自進納付稅額
○ 修正申告에 의한 免除惠澤이 排除되는 加算稅
  — 法人稅過少申告加算稅
  —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修正 申告한 경우
○ 法人稅還給加算金의 起算日
○ 國稅審査委員會의 委任을 7人에서 9人으로 增員함.

〈改正內容〉

1. 申告納付方式에 의하는 國稅(令 第10條의2)

申告納付方式에 의한 稅目에 法人稅를 追加하였다. 政府賦課制度와 申告納付制度의 가장 큰 差異點은 稅額의 確定方式에 있는 것으로서 政府賦課制度는 稅額의 確定에 있어 政府의 決定을 要하나, 申告納付制度는 納稅者의 申告에 의하여 稅額이 確定되는 것으로서 즉 納稅者 스스로가 스스로의 稅金을 計算·確定하는 것이다. 따라서 申告納付制度에서는 納稅者가 잘못 申告한 경우나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만 政府가 調査하여 稅額을 決定하거나 更正하는 것이므로 納稅者와 稅務公務員間의 接觸에서 發生하는 摩擦을 解消할 수 있으며, 行政의 效率的 活用을 기할 수 있는 長點이 있다.

間接稅의 경우는 附加價値稅制가 導入된 1977. 7. 1부터 申告納付制度에 의하였으며, 이번에 法人稅를 追加하였다.

2. 課稅標準修正申告

가. 課稅標準修正申告書의 提出期限 延長(法 第45條第1項)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直接稅		
· 法人稅	30日	6月
· 其他	30日	1月
間接稅		
· 附加價値稅(確定申告)	10日	6月
· 附加價値稅(豫定申告)	—	3月
· 其他	10日	1月

위 表와 같이 改正前 修正申告期限은 直接稅는 30日, 間接稅는 10日로 되어 있었으나 이를 延長하여 申告納付制度에 의하는 것으로서 課稅期間이 6月 以上인 法人稅나 附加價値稅는 6月로 하고 課稅期間이 1月인 間接稅(特別消費稅·酒稅 等)와 政府賦課制度에 의하는 直接稅(所得稅·相續稅 等)는 1月로 하였다.

그리고 改正前에는 國稅基本法에 의한 修正申告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는 附加價値稅 豫定申告에 대하여도 修正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하고, 修正申告期間을 3月로 하였다.

修正申告의 效力에 관하여 明文의 規定은 없으나 申告納付制度에 의하는 國稅의 경우 納稅者가 稅額을 政府에 申告하는 때 稅額이 確定되며, 租稅逋脫犯의 旣遂時期는 納稅期限이 經過하는 때 成立하므로, 修正申告는 이미 確定된 稅額의 納稅義務나 租稅犯의 旣遂時期에 影響을 미치지 아니한다.

나. 修正申告의 範圍擴大(令 第25條)

改 正 前	改 正
① 當初 申告書 作成前에 이미 發生한 源泉的인 誤謬·漏落은 修正申告의 對象이 되지 아니함.	① 修正申告可能
② 附加價値稅 豫定申告는 修正申告의 對象이 되지 아니함.	② 修正申告可能

附加價値稅 豫定申告에 대하여도 修正申告의 對象에 包含시키는 한편 修正申告의 範圍에 관하여 規定한 國稅基本法施行令 第25條第3項을 削除함으로써 課稅基準修正申告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다. 減額修正申告에 대한 政府의 處理 義務 및 期限(法 第45條第2項)

申告納付制度를 擇하는 國稅 즉 法人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나 證券去來 等에 관하여 當初 申告한 課稅標準이나 納付稅額을 減少시키거나 還給稅額을 增加시키는 事項이 있는 경우에는 政府는 이를 調査하여 그 結果를 該當 修正申告書를 받은 날로부터 60日內에 申告人에게 通知하는 동시에 更正할 事項은 是正하도록 하였다.

政府賦課制度를 擇하고 있는 國稅의 경우는 課稅標準申告後 政府의 決定이 항상 뒤따르게 되므로 위와 같은 規定이 必要하지 아니하나 申告納付制度에 의하는 國稅의 경우는 當初 申告時 過多納付한 稅額을 還給받기 위하여는 政府의 更正節次가 必要하며 政府가 이를 怠慢히 할 경우 納稅者는 不利益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處理期限을 明示하였다.

그리고 納稅者가 減額修正申告에 대한 政府의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경우, 例를 들면 納稅者는 1千萬원을 減額하는 修正申告를 하였으나 政府는 이에 대하여 5百萬원만 減額更正함으로써 政府의 處分에 대하여 不服이 있는 경우에는 國稅基本法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請求(또는 異議申請)을 提起할 수 있다.

3. 追加自進納付(法 第46條)

納稅者가 當初 申告時 納付한 稅額이 課稅標準 修正申告額에 相當하는 稅額에 未達한 때에는 그 不足額을 修正申告와 同時에 追加自進納付하여야 하는 바, 이번 改正法律에서는 그 不足額과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3號에 規定한 過少納付加算稅(國稅基本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輕減되는 分을 除外한다)를 함께 納付하도록 하였다.

法人稅過少納付加算稅는 未納付稅額의 10%이었으나 이번 稅法改正時 法人稅에 대하여 申告納付制度를 採擇하는 것을 계기로 「未納付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5錢5厘로 計算한 金額」을 過少納付加算稅로 徵收하게 되었다.

修正申告와 同時에 當初 申告時의 不足額을 追加自進納付하면 國稅基本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過少納付加算稅의 50%를 輕減받는다. 따라서 法人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하여야 할 加算稅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過少納付加算稅額의 50%이다.

4. 修正申告에 의한 免除惠澤이 排除되는 加算稅

修正申告와 同時에 追加自進納付稅額을 納付하게 되면 修正申告에 의한 加算稅免除惠澤을 받는다. 즉 過少申告加算稅는 全額, 過少納付加算稅는 50%를 免除받는다. 그러

나 이번 改正時 修正申告를 하였다 하여도 加算稅 免除惠澤을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過少申告加算稅 免除의 排除(法 第49條)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2號 但書에 規定한 加算稅 즉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以外의 原因으로 發生한 過少申告加算稅에 대하여는 修正申告에 의한 過少申告加算稅 免除惠澤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번 改正前의 法人稅法에는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로 發生한 過少申告에 대하여 過少申告加算稅를 徵收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法人稅法 改正時

①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의 差異로 發生한 過少申告에 대하여는 10%

② ① 以外의 原因으로 發生한 過少申告에 대하여는 30%의 過少申告加算稅를 徵收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30%의 稅率이 適用되는 法人稅過少申告加算稅에 대하여는 1980年 1月 1日 以後 開始하는 事業年度分부터 修正申告에 의한 免除惠澤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나. 過少申告·納付加算稅免除의 排除(法 第49條·第50條)

課稅標準修正申告書를 提出한 課稅標準과 稅額에 관하여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提出한 경우에는 修正申告에 의한 過少申告加算稅 및 過少納付加算稅免除惠澤을 주지 아니한다.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提出한 경우」라 함은 申告納付制度에 의하여 國稅로서 當初 申告書提出後 稅務公務員이 調査에 着手한 것을 알고 課稅標準修正申告書를 提出하는 경우를 말한다.

政府賦課制度를 採擇하는 國稅의 경우에는 納稅者의 課稅標準申告後 政府의 決定이 항상 뒤따르게 되므로 이 規定이 適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申告納付制度를 採擇하는 國稅의 경우는 當初 納稅者의 申告에 의하여 稅額이 確定되며 當初 納稅者가 申告한 事項 中 誤謬·漏落이 있는 경우만 政府가 이를 更正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規定은 申告納付하는 國稅에 대하여만 適用된다.

修正申告는 어디까지나 誠實한 納稅者를 保護하는 制度로서 稅務調査를 着手한 後에 修正申告하는 경우는 納稅者의 自發的인 誠實申告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更正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修正申告한 경우」는 修正申告에 따른 加算稅免除의 혜택을 排除한 것이다.

5. 法人稅 還給加算金의 起算日(法 第52條)

法人稅를 政府賦課制度에서 申告納付制度로 함에 따라 法人稅 還給加算稅의 起算日을 申告納付制度를 擇하고 있는 附加價値稅 等과 같이 申告日로부터 30日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 또는 決定 또는 更正으로 因하여 發生한 還給稅額에 있어서는 決定 또는 更正決定日로부터 30日이 경과하는 날의 다음날로 하였다.

改正된 이 規定은 1980年 1月 1日 以後 最初로 開始하는 法人의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한다.

6. 國稅審査委員會 委員

國稅審査委員會의 委員을 7人에서 9人으로 增員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委 員 長 : 國稅廳次長 ○ 副委員長 : 國稅廳企劃管理官 ○ 委 員 : 國稅廳審査局長 民間人 4人	○ 委 員 長 : 國稅廳次長 ○ 委 員 : 國稅廳局長級 3人 民間人 5人

1980년

◉ 시 행 령 : 1980. 12. 31. 대통령령 제10118호(시행일 : 1981. 1. 1.)

〈要 約〉

國稅還給金의 支給制度를 改善하여 支給節次를 簡素化하고, 納稅者가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하는 加算稅
  — 法人稅 過少申告加算稅
○ 支給命令官計定의 設置
  — 國庫代理店에도 設置
○ 計座移替支給制度의 新設

〈改正內容〉

1.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하는 加算稅(令 第26條)

納稅者가 當初申告時 納付한 稅額이 課稅標準 修正申告額에 상당하는 稅額에 미달한 때에는 그 부족액과 法人稅의 경우에는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3號에 規定하는 未納付加算稅(國稅基本法 第50條에 의하여 경감되는 分 除外)를 修正申告와 동시에 追加自進納付하여야 하는 바, 이번 施行令改正時 法人稅의 경우는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2號에 規定하는 過少申告加算稅(國稅基本法 第50條의 規定에 의하여 경감되는 分 除外)도 함께 納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法人稅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하는 稅額은 다음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

區 分	修正申告에 따른 加算稅輕減	加算稅徵收方法	
		改正前	改正後
未納付加算稅 未達納付額×利子率×未納期間	50% 減免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함	左 同
過少申告加算稅 ○ 一般過少申告加算稅 (과소신고액의 10%) ○ 重過少申告加算稅 (過少申告額의 30%)	全額減免 減免안됨	— 修正申告後 政府가 告知徵收	— 修正申告時 追加自進納付

2. 支給命令官 計定의 設置(令 第33條)

支給命令計定을 韓國銀行 本·支店에만 設置·運營하던 것을 管轄地域內에 韓國銀行 本·支店이 없는 稅務署의 경우에는 國庫代理店에 同計定을 設置할 수 있도록 하여 國稅還給金의 處理를 圓滑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제까지는 管轄區域안에 韓國銀行이 없는 市·郡所在地 稅務署의 경우는 管轄區域안에 韓國銀行이 있는 他稅務官署의 支給命令官이 國稅還給金의 支給業務를 代行하였다. 따라서 國稅還給金이 발생한 稅務署에서 支給命令官이 設置된 他稅務署에 還給通報를 하면, 그 他稅務署가 國庫手票를 發行하고 納稅者에게 國稅還給金送金通知를 하게 되므로 節次가 煩雜하고 또 支給이 늦어지는 不便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韓國銀行뿐만 아니라 國庫代理店에도 支給命令官 計定을 設置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國稅還給金 發生 稅務署와 이를 지급하는 稅務署가 같게 됨에 따라 節次가 簡素化되고 支給時期도 단축되게 되었다.

3. 計座移替支給制度의 新設(令 第34條의2)

金融機關 또는 遞信官署에 計座를 두고 있는 者에게 國稅還給金을 支給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納稅者가 去來하고 있는 計座에 移替할 수 있도록 하여 納稅者의 便益과 支給業務의 簡便을 圖謀하였다.

이제까지는 納稅者가 國稅還給金을 支給받기 위하여는 直接 銀行에 가서 印鑑證明書와 國稅還給金 送金通知書를 제출하여야 하므로 印鑑證明書를 洞(面)事務所에서 發給받아 銀行에 書類를 제출하고 돈을 支給받는데 많은 時間이 걸리고 不便하였으나, 앞으로는 計座移替支給制度에 의하여 銀行(遞信官署)의 預金加入者(우편대체가입자)에게 國稅還給金을 支給하는 경우에는 바로 그 納稅者의 銀行計定에 移替入金시키게 되므로, 國稅還給金을 支給받는데 印鑑證明書도 필요하지 아니하며 일부러 銀行에 갈 必要도 없어졌으므로, 國稅還給金의 支給이 迅速하고 便利하게 되었다.

1981년

◉ 법　　률 : 1981. 12. 31. 법　　률 제 3471호(시행일 : 1982. 1. 1.)
◉ 시 행 령 : 1981. 12. 31. 대통령령 제10696호(시행일 : 1982. 1. 1.)
◉ 시행규칙 : 1982. 2. 17. 재무부령 제 1515호(시행일 : 1982. 2.17.)

〈要　　約〉

擔保目的으로 假登記된 一定한 財產을 國稅滯納을 原因으로 強制徵收를 위하여 押留한 경우에 그 後 假登記에 基하여서 本登記가 行하여지더라도 國稅徵收權과의 關係에 있어 國稅가 優先하도록 하였고, 審査請求 등의 提出節次를 簡素化하였으며, 國稅還給金의 利率을 現實化하여 納稅者의 權益을 保護하고 還給金取扱銀行의 數를 擴大하여 還給金支給의 圓滑을 기했으며, 納稅指導交付金制度의 新設에 따라 支給節次 등을 定하고, 其他 他法의 改正에 따라 關聯된 現行制度를 改善하였다.

○ 送達遲延으로 納付期限의 延長 特例新設
○ 時效의 停止追加
○ 國稅의 優先
　— 假登記制度를 制限한 理由

- 擔保目的으로 된 假登記와 國稅
- 施行日

○ 國稅還給金의 利率引上

○ 國稅還給金 등의 還給窓口의 增設

○ 韓國銀行 등의 未支給資金 整理期間調整

○ 國稅의 審査·審判請求節次의 簡素化

- 請求節次의 改善
- 國稅 審判請求時 添附書類의 簡素化

○ 國稅行政에 대한 協助(納稅指導交付金制度 新設)

- 目 的
- 交付金의 申請
- 交付金의 支給

〈改正內容〉

1. 送達遲延으로 因한 納付期限의 延長特例 新設(法 第7條)

國稅徵收法 第14條第1項의 事由로 因한 納期前徵收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事實上 納期를 7日까지 줄 수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例外規定을 新設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納稅告知書, 納付通知書, 督促狀 또는 納付催告書를 送達한 경우 到達한 날에 ○ 納付期限이 經過 / ○ 7日 以內에 納付期限 到來 한 때에는 到達한 날로부터 7日이 經過하는 날을 納付期限으로 한다.	改正前과 같음. 但 : 納期前徵收의 경우에는 到達한 날에 ○ 納付期限이 經過 → 到達한 날 / ○ 到達後 納付期限 到來 → 到來하는 날 을 納付期限으로 하여 送達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로 할 수 있도록 함.

2. 時效의 停止事由 追加(法 第28條第3項)

分納期間中에도 國稅徵收權의 時效가 停止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時效의 停止事由 ○ 稅法에 의한 徵收猶豫 期間, 年賦延納期間	— 時效의 停止事由 〉 改正前과 같음 分納期間을 追加

3. 國稅의 優先(法 第35條第2項)

— 債權擔保目的의 假登記는 國稅의 優先關係에 있어 抵當權 등과 같이 取扱하였다.

가. 假登記制度를 制限한 理由

(1) 假登記 擔保制度

① 債務者 : 債權者로부터 金錢을 借入

② 債權者는 債務者의 不動產에 賣買豫約에 의한 所得權移轉, 請求權保全의 假登記를 設定

③ 債務者가 辨濟期日까지 債務不履行時 債權者는 假登記에 基하여 本登記를 함에 의하여 그 不動產의 所有權을 取得하여 자기의 債權을 滿足시키는 것이다.

— 假登記와 抵當權 등의 比較

	抵 當 權	假 登 記
登錄說	債權金額의 0.2%	件當 2,000원
債務不履行時 辨濟方法	任意競買 — 代金配分 ○ 節次 繁雜 ○ 費用, 時間所要 ○ 目的物을 時價 以下로 處分	本登記를 함에 의하여 所有權移轉받음.

(2) 制限理由

○ 抵當權, 質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의 경우는 擔保權 設定日로부터 1年後에 發生한 國稅에 대하여만 擔保物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이 優先하도록 되어 있으나

○ 擔保目的으로 假登記된 財產을 國稅滯納을 原因으로 하여 強制徵收를 위하여 押留한 경우에는 그 後 假登記에 基하여서 本登記를 하게 되면 假登記의 順位保全效力으로 인하여 押留의 效力을 喪失하게 되며 假登記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은 假登記日字가 押留日字보다 빠르면 언제나 國稅에 優先하도록 되어 있음.

○ 假登記制度는 本來 債權擔保를 위한 制度는 아니었으나, 擔保物權의 경우 換價制度가 複雜하고 假登記登錄稅의 低率 등의 理由로 債權擔保를 爲한 制度로 假登記가 많이 利用되고 있음에도 國稅徵收權과의 關係에 있어 假登記를 擔保物權보다 더 保護하는 不衡平이 發生하고 또는 最近에는 假登記制度를 惡用하는 事例(廢業, 滯納 등이 豫想되는 경우 미리 假登記를 함에 의하여 租稅回避)도 생기고 있음.

○ 따라서 實質的으로 債權擔保의 目的으로 利用되는 假登記에 對하여는 國稅徵收權과의 關係에 있어 擔保物權과 같이 取扱하도록 한 것임.

(3) 改正內容(新設)

納稅義務者를 登記義務者로 하고 債務不履行을 停止條件으로 하는 代物辨濟의 豫約에 基하여 權利移轉의 請求權의 保全을 爲한 假登記(假登記 包含) 其他 이와 類似한 擔保의 目的으로 된 假登記가 되어 있는 財產을 押留하는 경우에 當該 假登記에 基한 本登記(所有權 移轉)가 押留後에 行하여진 때에는 그 假登記의 權利者는 그 財產에 대한 滯納處分에 對하여 그 假登記에 基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다. 다만, 國稅 또는 加算金(그 財產에 對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을 除外)의 納付期限으로부터 1年前에 假登記된 財產에 對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法 第35條第2項)

나. 擔保目的으로 된 假登記와 國稅

(1) 優先權의 內容

— 債權擔保目的의 假登記가 되어 있는 財產을 押留한 경우

○ 假登記日로부터 1年 以內에 納付期限이 到來한 國稅와 그 財產에 對하여 賦課된 國稅(相續·贈與稅·再評價稅) → 押留後 本登記가 되어도 假登記權利者는 假登記에 基한 權利를 主張할 수 없음(卽 假登記에 의한 順位保全效力을 主張할 수 없음).

○ 假登記日로부터 1年後에 發生한 國稅 → 押留後 本登記가 되면 押留의 效力은 失效됨.

(2) 通　知

稅務署長은 假登記財産을 押留하거나 公賣하는 때에는 그 뜻을 假登記權利者에게 遲滯없이 通知하여야 한다.

4. 國稅還給加算金의 利率引上(令 第30條第1項)

國稅還給加算金의 利率이 加算金·加算稅나 金融機關의 利率에 비하여 낮으므로 現實에 맞게 引上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100원에 對하여 1日 2錢(年 7.3%)	100원에 對하여 1日 3錢(年 11.0%)

5. 國稅還給金 等의 還給窓口의 增設(令 第33條第2項)

國稅還給金의 支給을 圓滑히 하기 위하여 韓國銀行과 一部 地域의 國庫代理店에서만 取扱하던 것을 韓國銀行과 모든 國庫代理店이 이를 取扱할 수 있도록 擴大하였다.

6. 韓國銀行 등의 未支給資金 整理期間調整(令 第39條)

豫算會計法施行令의 改正으로 國稅還給金의 未支給資金의 整理期限을 1月 31日에서 1月 15日로 短縮하였다.

7. 國稅의 審査·審判請求節次의 簡素化(令 第62條·第69條·第70條)

가. 請求節次의 改善(令 第62條·第69條)

審査·審判請求書의 提出機關은 "當該處分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稅務署長"을 거쳐야만 하던 것을 審査請求書는 當該稅務署長外에 다른 稅務署長, 地方國稅廳長, 國稅廳長에게 提出된 때, 審判請求書는 當該稅務署長 이외의 稅務官署 또는 國稅審判所長에게 提出된 때에도 審査·審判請求가 있는 것으로 봄.

따라서 다른 場所에 提出된 때에는 이를 延滯없이 管轄稅務署長에게 送付하고 그 뜻을 請求人에게 通知하도록 하여 請求人의 便宜를 圖謀하였다.

나. 國稅審判請求時 添附書類의 簡素化(令 第70條)

國稅廳長이 國稅審判請求에 대한 國稅廳長의 意見書를 送付하는 경우에는 審判請求時 請求人이 提出한 모든 證憑書類의 一切와 決定書, 處分廳의 意見書 및 處分의 理由로 된 事實을 證明할 書類를 提出하도록 하여 請求人이 審査請求時 提出한 證憑書類等을 審判請求時 다시 提出하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請求書類의 提出을 簡素化하였다.

8. 國稅行政에 대한 協助(法 第84條第3項, 令 第65條의2)

가. 國民의 納稅意識水準 向上과 申告納付制度의 內實化로 所得稅의 申告納付制度의 基盤構築 等을 위하여 長期的으로 全國民의 納稅指導가 要望됨에 따라 民間團體 中 納稅指導를 擔當하는 團體에 對하여 그 指導에 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交付金으로 支給함으로써 納稅指導의 體系化와 積極性을 賦與하고자 하여 納稅指導交付金制度를 新設하였다.

나. 納稅指導交付金을 支給받고자 하는 團體는 該當年度의 1月 31日까지 交付金支給申請書를 國稅廳長에게 提出하도록 하였다.

다. 國稅廳長은 事業의 適正性 등을 檢討하여 申請한 年度의 2月末日까지 支給與否를 決定(必要時 條件을 붙일 수 있음)하여 通知하도록 하였다.

또한 支給받는 交付金을 他用途에 使用하거나 支給條件에 違反時 支給決定의 全部 또는 一部를 取消하거나 旣支給된 交付金의 返還을 命하도록 하였다.

라. 交付金을 支給받은 團體는 交付金을 支給받은 다음 年度의 1月 20日까지 納稅指導事業 實績報告書를 提出하도록 하였다.

1983년

◉ 시행규칙 : 1983. 3. 3. 재무부령 제 1559호(시행일 : 1983. 3. 3.)

〈要 約〉

○ 서식을 개정한다.

〈改正內容〉

1.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수입금의 이체지시"를 "세입금의 이체지시"로 하고 동조 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이 국고대리점에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국세환급금 지급계정수입요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47호서식 내지 별지 제49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3호의 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호서식〕

세 무 서

(분류번호및 문서번호) (전화번호) 년 월 일

수 신 발 신 세무서장 ㊞

제 목 상속인대표자지정통지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상속인대표자를 지정 통지합니다.

대표자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구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 액			주 소
			본 세	방위세	계	
상속인						

2207-86A(1)
1983. 1. 29 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2호서식〕

TT44

세입금이체지시서(국세환급금)

제 호

한국은행_____통할점 앞

연도	소관	세입징수관 코 드	지급명령관 코 드

금

₩

(　　)세무서장소관 세입금 중에서 (　　)에 있는 (　　)세무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에 이체하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입력자
담 당

년　　월　　일

_____세무서장 인

※ 굵은 선부분은 전산입력항목이니 정확히 기재한다.

2207-97A(1)
1983. 1. 29 승인

절취선

〔별지 제23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국세환급금)

제 호

_____세무서

_____지급명령관 앞

연도	소관

금

₩

(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서 귀세무서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에 위의 금액을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은행_____점 인

절취선

〔별지 제23호의2서식〕

국세환급금지급결정수입요청서

제 호

한국은행 국고대리점

_____은행_____지점 앞

연도	소관

금

₩

(　　)세무서 지급명령관의 국세환급금지급계정계좌에 위의 금액을 수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임자
입력자
담 당

년　　월　　일

세입징수관

_____세무서장 인

268㎜×190㎜(각편 90㎜×190㎜)
(인쇄용지(특급) 34g/m²)

〔별지 제47호서식〕

TT47

세입금이체청구서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한국은행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세무서소관 세입금 중에서 아래와 같이 ( )세무서장 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소관	이체청구세입징수관 코드	인수받을세입징수관 코드

금

₩

책임자
입력자
담 당

세무서장 인

※ 굵은 선부분은 전산입력항목이니 정확히 기재한다.

2207-113A
1983. 1. 29 승인

절취선

〔별지 제48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세무서장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호(년 월 일)와 관련 귀세무서소관 세입금 중에서 아래와 같이 ( )세무서장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소관

금

₩

이체년월일 년 월 일

한국은행 _____ 점 인

절취선

〔별지 제49호서식〕

세입금이체필통지서

(분류기호및 문서번호) 년 월 일

수 신 세무서장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 )세무서장 요청으로 ( )세무서장소관 세입금 중에서 아래와 같이 귀세무서소관 세입금계정계좌에 이체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연도	소관

금

₩

이체년월일 년 월 일

한국은행 _____ 점 인

268㎜×190㎜(각편 90㎜×190㎜)
(인쇄용지(특급)34g/m²)

1984년

◉ 법　　률 : 1984. 8. 7. 법　　률 제 3746호(시행일 : 1984. 8. 7.)
1984.12.15. 법　　률 제 3754호(행정소송법 부칙)(시행일 : 1985.10. 1.)
1984.12.15. 법　　률 제 3755호(행정심판법 제정)(시행일 : 1985.10. 1.)
◉ 시 행 령 : 1984.12.31. 대통령령 제11577호(시행일 : 1985. 1. 1.)
◉ 시행규칙 : 1984.12.31. 재무부령 제 1638호(시행일 : 1985. 1. 1.)

〈要　　約〉

國稅에 關한 基本的인 事項 및 共通的인 事項 등을 規定함으로써 國稅에 關한 法律關係를 確實하게 하고, 課稅의 公正을 圖謀하며, 國民의 納稅義務의 圓滑한 履行에 寄與함을 目的으로 하는 國稅基本法은 1974年에 制定된 以來 몇 차례의 改正을 거쳤으나, 그동안 다른 法律의 制定 또는 改正 등과 아울러 諸般與件이 變動된 관계로 一部 改善할 점이 있게 됨에 따라, 納稅者의 便宜提高와 國稅行政의 效率化를 위하여, 이번에 國稅基本法 및 同 施行令·施行規則을 改正하게 되었다.

그 主要 改正內容을 살펴보면, 住宅賃借人과 勤勞者의 權利를 保護하기 위하여 賃借人의 少額保證金에 대한 債權이 國稅보다 優先함을 規定하였고, 종래 勤勞基準法에 의하여 優先 保護되어왔던 賃金債權 등이 國稅에 優先함을 明文化하였으며, 또한 國稅徵收權 消滅時效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執行하여온 國稅賦課權 行使期間을 徵收權 消滅時效와는 달리 除斥期間으로 하여 別途로 規定함으로써 國稅에 대한 權利·義務關係를 明確히 하였다.

그 밖에도 稅關長이 徵收하는 國稅에 대하여 國稅基本法에 대한 特例規定을 두는 경우 關稅法 등을 適用하도록 하였고, 國稅 不服請求期間을 特別한 事由가 있는 경우에 延長可能하도록 하였으며, 印鑑證明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고 國稅還給金을 支給받을 수 있는 金額의 範圍를 上向 調整하는 등 納稅者의 便宜와 國稅行政의 効率을 도모하도록 諸般規定을 改正하였다.

○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국세에 대한 관세법적용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 우편에 의한 과세표준신고 등의 경우 발신주의 특례를 적용한다.
○ 새로운 입법에 의한 소급과세의 금지규정을 신설한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 소액보증금 및 임금채권 등의 국세에 대한 우선규정을 신설한다.
○ 인감증명서 없이 지급하는 국세환급금의 범위를 확대한다.
○ 국세불복청구기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둔다.
○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 조세감면규제법에서의 국세환급금 특례규정의 우선적용 등 기타의 사항을 개선한다.

〈改正內容〉

1. 稅關長이 賦課徵收하는 國稅에 대한 關稅法適用(法 第3條第2項, 附則 第2條第2項)

가. 改正理由

이 法 改正前은 輸入物品에 賦課되는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와 防衛稅·敎育稅(이하 "輸入分 內國稅"라 한다)는 關稅法 第26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各 稅法이 國稅基本法에 대한 特例規定을 둘 수 있는 國稅賦課의 原則, 納稅義務의 承繼, 連帶納稅義務, 納稅擔保, 課稅의 管轄官廳 등에 대하여는 國稅基本法의 當該規定에 불구하고 關稅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의 규정이 適用되었고(附加價値稅法 등에 輸入分內國稅에 대해 特別한 規定을 둔 경우 제외),「輸出用原材料에 대한 關稅 등 還給에 관한 特例法」에서도 輸入分 特別消費稅와 酒稅의 환급에 대한 特例規定을 두어 적용하여 왔는데, 國稅基本法이 各稅法에 優先하여 적용되는 課稅標準修正申告·國稅優先·消滅時效 등에 관한 規定(法 第3條 참조)은 關稅法이 적용되지 않아 輸入分內國稅와 關稅가 그 適用을 달리함으로써 執行이 복잡하고 非能率的인 面이 있어 輸入分 內國稅와 關稅가 동일한 부과·징수·환급이 되도록 하여 納稅者의 便宜와 徵稅行政의 簡素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改正稅法은 關稅法 등에서 國稅基本法에 대한 特例規定을 두는 경우에는 關稅法 등의 適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根據規定을 新設하였다.

나. 輸入分內國稅에 대한 國稅基本法과 關稅法 등과의 關係

이제까지 法體系로 볼 때 關稅法 등에서 各 稅法에 우선하는 國稅基本法의 規定에 대한 特例規定을 둘 수 없었으나 이번 法 改正에서는 징세행정의 간소화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例外的으로「關稅法」과「輸出用原材料에대한關稅등還給에관한特例法」에

서 國稅基本法에 대한 特例規定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그 部分에 限하여 國稅基本法의 優先適用이 배제되게 되었다.

또한 附則에서 關稅法 第26條의2 中 "國稅基本法 第3條但書에 열거한 條項에 限한다"라는 표현을 삭제하여 關稅法 第26條의2를 國稅基本法 全體에 대한 特例規則으로 고쳐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輸入分內國稅의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대하여 關稅法의 해당규정의 適用범위가 넓어지게 되었는데, 종전에는 國稅基本法 第3條 但書에 列擧된 條項에 限하여 關稅法을 適用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法 施行後는 國稅基本法 전체의 條項에 걸쳐 부과·징수·환급·결손처분 등에 관한 규정은 國稅基本法이 적용되지 않고 關稅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다.(關稅法 第26條의2 참조)

2. 郵便에 의한 課稅標準申告 등의 경우 發信主義 適用(法 第5條의2, 附則 第3條)

가. 制度의 趣旨

종래 郵便에 의하여 課稅標準申告書 등을 관할관청에 제출하는 경우 一般的인 文書到達主義原則(民法 第111條)에 의하면 관할관청에 到達된 날에 適法한 申告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納稅者가 우편으로 신고서를 提出하는 경우 申告期限內에 到達시키기 위해서는 郵便送達의 所要期間을 감안하여 충분한 날짜의 여유를 두고 發送하여야 하고, 申告期限이 臨迫한 경우에는 期限內到達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일이 관할관청에 出頭하여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法改正에서는 이러한 번거로움을 解消하고, 課稅標準申告書 등이 申告期限內에 發送되었음에도 豫想하지 못한 事故 등으로 지연제출됨에 따른 加算稅 등의 不利益을 받지 아니하게 하여 納稅者로 하여금 간편한 郵便申告를 많이 利用할 수 있도록 納稅者가 課稅標準申告書 등을 郵便으로 提出하는 경우 發送하는 날에 申告된 것으로 보는 一般的 文書到達主義에 대한 特例規定을 新設하였다.

나. 郵便申告 發信主義가 適用되는 書類의 範圍

우편신고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對象은 課稅標準申告書·課稅標準修正申告書 또는 課稅標準申告·課稅標準修正申告(以下 "과세표준신고"라 함)와 關聯된 서류인바 여기서 課稅標準申告와 관련된 서류라 함은 각 稅法에서 課稅標準申告와 관련하여 동 申告書에 첨부하거나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서류 등을 말하며, 課稅標準申告와 관계없이 제출하는 서류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到達의 責任

納稅者가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발송하는 경우 發送日에 申告된 것으로 보지만, 일단 동 課稅標準申告書 등이 관할관청에 提出은 되어야 한다.

따라서 納稅者는 到達을 立證할 수 있는 內容證明, 登記郵便 등을 이용하여 郵便配達事故 등에 대비하여야 하며, 普通郵便으로 송달하여 관할관청에 사고로 到達되지 않아, 그 發送日이 立證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申告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겠다.

라. 發信日

과세표준신고서 등의 發信日은 우편법에 의하여 찍힌 通信日附印에 의하여 확인되는 날이며, 通信日附印이 不分明하거나 찍히지 않은 경우는 관할 관청에 도달된 날로부터 통상 소요되는 우송일수를 기준으로 할 때 發送한 날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날이다.

3. 새로운 立法에 의한 遡及課稅의 禁止規定 新設(法 第18條第2項)

가. 改正理由

종전 國稅基本法은 이미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解釋·慣行에 의한 行爲 또는 計算은 새로운 解釋·慣行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課稅期間 進行中에 法改正이 있었을 경우 遡及課稅與否에 대해서는 明文化된 규정이 없어 一般的 法理論에 따라 이미 課稅期間이 종료된 사실에 대해서는 新法이 遡及적용되지 않고(=眞正遡及禁止), 課稅期間이 開始되어 改正時點 현재까지 계속진행중인 事實에 대한 遡及適用(=不眞正遡及)의 許容여부가 論難이 되어왔는데 이번 法改正에서는 大法院特例의 趣旨에 맞추어 立法에 의한 眞正遡及만 禁止하는 規定을 新設하여 遡及課稅禁止 範圍를 명백히 하였다.

나. 遡及課稅가 禁止되는 範圍

앞으로는 法改正 前에 納稅義務가 이미 成立한 所得, 收益, 財産, 行爲 또는 去來에 대하여는 그 成立後의 改正法에 의하여 遡及課稅 당하지 아니하게 되었는데 세목별 納稅義務의 成立時期는 국세기본법 第21條에 規定하는 바와 같다. 대표적인 例를 들면 다음 表와 같다.

納稅義務의 成立時期

稅目	納稅義務成立時期
소득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법인세	〃 〃(법인이 해산 또는 합병하는 때)
상속세	상속개시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수입신고하는 때)
특별소비세	반출 또는 판매하는 때
원천징수하는소득세·법인세납세조합 징수소득세, 예정신고납부소득세(양도차익,부동산매매 차익에 대한 소득세)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4. 國稅賦課의 除斥期間制度 新設(法 第26條의2)

가. 改正理由

종전에는 國稅基本法 第27條(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를 적용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國稅徵收權은 國稅賦課權을 包含하는 槪念으로 보아 國稅賦課權을 行使할 수 있는 期間도 徵收權 消滅時效의 規定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왔는데(大法院 83누 187, 1983. 7. 26 참조), 國稅徵收權과 賦課權을 엄격히 구분하면 國稅徵收權은 具體的으로 稅額이 確定되고 난 후에 確定된 租稅債權을 實現하기 위해 納稅者에게 그 履行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이고, 國稅賦課權은 租稅債權을 具體的으로 行使하기 위해 稅額을 決定하는 權利로서 그 槪念이 서로 다르다고 하겠다.

따라서 國稅基本法 第27條는 어디까지나 徵收權의 消滅時效에 관한 規定이므로 國稅賦課權은 그 行使期間에 제한이 없다고도 解釋(大法院 80누 323, 1980.9.30 참조)할 수가 있어 그 解釋의 混線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번 法 改正에서는 國稅賦課權 行使期間을 徵收權 消滅時效와는 別途로 規定하고, 國稅賦課權을 期間의 中斷이나 停止가 없는 除斥期間으로 하여 추상적으로만 성립한 納稅義務를 조속히 終了시키고, 그 期間도 所得稅 등 대부분의 國稅는 國稅徵收權 消滅時效와 같이 5년으로 하고 그 외 특별소비세·주세 등 消費者로부터 去來徵收하여 매월 申告·納付하는 國稅는 2년으로 단축하여 長期間 遡及하여 追徵함으로써 消費者에게 轉嫁가 不可能하게 되는 등 納稅義務者가 過重한 稅負擔을 지는 경우가 없도록 하였다.

나. 國稅賦課의 除斥期間

(1) 세목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法 第26條의2第1項)

稅目別 國稅賦課의 除斥期間은 다음 表와 같다.

國稅賦課의 除斥期間

區 分	改正前 (執行例)	改 正
• 所得稅, 法人稅, 相續稅, 贈與稅, 再評價稅, 不當利得稅, 附加價値稅 및 해당 防衛稅	5年	5年
• 特別消費稅, 酒稅, 電話稅, 印紙稅, 證券去來稅 및 該當防衛稅	5年	2年
(단, 사기 기타 부정한 行爲로 포탈한 경우)	(5年)	(5年)
• 敎育稅 중 분리과세이자·배당소득금액 또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분	5年	5年
• 기타 敎育稅	5年	2年
(교육세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포탈한 경우)	(5年)	(5年)

(2) 異議申請 등의 決定에 따른 更正期間(法 第26條의2第2項)

國稅에 관한 賦課處分이 있은 후에 그 處分에 納稅者가 不服하여 異議申請·審査請求·審判請求·監査院審査請求 또는 行政訴訟을 제기한 경우 그 決定 또는 判決이 確定되기 전에 國稅賦課의 除斥期間이 滿了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納稅者가 자신에게 有利한 取消내지 一部取消의 決定 또는 判決을 받았음에도 處分廳이 賦課權이 없이 改正決定 및 還給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를 防止하기 위하여 當初 賦課除斥期間의 滿了여부에 불구하고 決定 또는 判決이 있는 날로부터 1年 이내에는 그 判決 등에 따라 更正 決定 및 기타 必要한 處分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更正에 對한 國稅賦課 除斥期間

形成權인 國稅賦課의 除斥期間은 請求權的 性格을 가진 國稅徵收權 消滅時效와는 달리 中斷이 없으므로 納稅告知 등으로 인하여 그 期間이 更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更正의 기간도 당해 課稅標準에 대한 當初의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이며 當初決定(更正) 告知時 漏落된 부분에 對한 賦課權 行使期間이 當初決定(更正) 告知納付期限으로부터 다시 5年間으로 延長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4) 國稅賦課 除斥期間의 起算日(令 第10條의2)

除斥期間의 起算日은 一般的으로 權利를 行使할 수 있을 때로부터 起算하는 것이며 權利가 發生하였으나 法律上의 障碍(例 : 履行期의 未到來)가 있을 때까

지는 그 期間이 起算되지 아니하는 것이 民法의 原理이다. 따라서 이번 改正法 第26條의2第1項 各號에서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國稅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起算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고, 改正施行令 第10條의2에서는 "國稅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具體的으로 明示하여 起算日에 대한 解釋의 混亂을 방지하도록 하였다. 稅目別 구체적인 起算日은 다음과 같다.

(가) 課稅標準과 稅額을 申告하는 國稅

稅法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을 申告하는 國稅는 所得稅·法人稅·附加價値稅·相續稅·贈與稅·資產再評價稅·特別消費稅·酒稅·證券去來稅·敎育稅 및 해당 防衛稅를 말하며 당해 세목은 稅法에서 일정한 期限까지 申告하게 되어 있으므로 당해 課稅標準과 稅額에 對한 國稅賦課除斥期間의 起算日은 申告期限 末日의 다음날이 된다. 또한 상기 國稅 중 課稅期間을 單位로 하여 申告納付하는 국세인 所得稅·法人稅·附加價値稅는 課稅期間 종료전에 豫納 또는 豫備的 徵收를 위하여 中間豫納告知, 豫定申告 漏落分에 대한 決定·更正 告知 등을 하나 납세자가 중간예납세액 및 예정신고분세액을 무신고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도 確定申告 또는 定期分申告때에 中間豫納·豫定申告期間分 課稅標準을 전체 課稅期間에 合算하여 申告할 수 있으므로 中間豫納稅額·豫定申告期間分 課稅標準과 稅額에 대한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별도로 起算하지 않으며, 課稅標準 修正申告期間도 政府決定 또는 更正을 妨害하지 않으므로 課稅期間을 단위로 하여 申告·納付하는 國稅의 賦課除斥期間 起算日은 定期分 또는 確定申告期限의 익일이 된다.(令 第10條의2 단서 參照)

따라서 所得稅는 과세기간의 翌年 6월 1일 法人稅는 각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16일(31일)이 되는 날, 附加價値稅는 제1기분은 7월 26일, 제2기분은 익년 1월 26일이 그 起算日이 된다.

(나) 課稅標準과 稅額을 申告하지 않는 國稅

不當利得稅, 電話稅 및 동 防衛稅, 印紙稅는 稅法에 납세자의 課稅標準과 稅額에 대한 申告規定이 없는 國稅로서 當該 국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가 國稅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 따라서 不當利得稅는 基準價格을 초과하여 去來하는 때, 電話稅 및 同 防衛稅는 電話料金을 영수하거나 영수하여야 할 때, 印紙稅는 課稅文書를 作成하는 때의 翌日이 國稅賦課除斥期間의 起算日이 된다.

(다) 源泉徵收稅額 및 納稅組合徵收稅額

源泉徵收義務者는 國家를 代位하여 國稅를 源泉徵收하고, 源泉徵收한 稅額의 범위 內에서 納付義務를 지는 것이므로(소득세법 제1조제2항 참조), 원천징

수할 세액을 無納付 내지 未納付한 경우 國家는 源泉徵收 義務者에 대하여 當該 稅額 및 加算稅를 賦課한다.

따라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납부할 국세는 별도로 起算하여야 한다(法 第21條第2項第1號 參照). 원천징수 세액의 국세부과 除去期間의 起算日은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法定納付期限(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의 翌日이 된다.

㈑ 申告納付期限 등이 延長되는 경우

納稅者는 天災, 地變 其他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申告納付期限의 延長을 신청할 수 있고, 그 事由가 適法하면 세무서장은 申告納付期限의 연장을 承認하게 되는데(施行令 第2條~第4條 參照), 연장된 期限이 경과하기 前에는 당해 國稅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연장된 期限의 다음날이 國稅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된다.

㈒ 追徵하는 경우

租稅減免規制法 등에 의하여 一定한 業務를 이행할 것을 條件으로 稅額을 공제 또는 면제하였거나 所得控除를 한 후 納稅者가 당초의 義務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事實이 發見되어 추징하는 경우 그 追徵할 사유가 發生한 날로부터 國稅賦課 除斥期間을 起算한다.

(5) 除斥期間滿了의 效果(法 第26條第2號)

國稅賦課 除斥期間內에 부과가 되지 않고 그 期間이 만료되면 國稅를 納付할 義務가 消滅하게 된다. 이는 徵收權 消滅時效가 完成되는 경우 具體的인 稅額에 대한 納付義務가 消滅되는 것과는 달리 稅額이 얼마인지 確定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成立한 추상적인 納稅義務가 消滅하는 것이다.

(6) 適用例(附則 第4條)

國稅賦課 除斥期間의 적용은 1985. 1. 1이후 國稅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되는 分부터 適用하고, 1985. 1. 1이전에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이미 開始된 국세로서 1985. 1. 1현재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않은 分은 從前의 例에 의하여 時效의 完成與否를 判斷하되, 이 法施行日(1985. 1. 1)로부터 計算하여 신설한 國稅賦課 除斥期間의 末日에 해당하는 날을 경과하여 賦課할 수는 없다. 즉 1985. 1. 1이전에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된 국세로서 特別消費稅·酒稅·證券去來稅·印紙稅 등 부과제척기간이 2年인 국세는 1985. 12. 31을 경과하여 賦課할 수 없고, 所得稅·法人稅·附加價値稅 등 부과제척기간이 5年인 國稅는 1989. 12. 31을 경과하여 부과할 수 없게 된다.

5. 國稅徵收權 消滅時效의 起算日 規定新設(令 第12條의3)

가. 槪 要

종래 法 第27條第1項에서 規定한 國稅의 徵收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의 權利를 賦課權을 포함하는 槪念으로 解釋하였으나, 1985. 1. 1부터 國稅賦課 除斥期間制度가 新設되었으므로 國稅徵收權과 國稅賦課權을 엄격히 區分하여야 할 것이다. 槪念區分은 다음과 같다.

- ○ 國稅賦課權 : 國家가 納稅義務者의 納付稅額을 具體的으로 決定하여 租稅債權을 確認하는 行政處分을 할 수 있는 권리
- ○ 國稅徵收權 : 國家의 賦課行爲 또는 納稅者의 申告로 具體的으로 確定된 稅額에 대해 納稅義務의 履行을 請求할 수 있는 權利

  따라서, 國稅徵收權 消滅時効의 起算日은 具體的으로 確定된 稅額을 國家가 徵收할 수 있는 때가 될 것이다.

나. 稅目別 起算日

(1) 納稅者의 申告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確定되는 國稅

課稅標準과 稅額을 政府에 申告하는 때에 納稅業務가 確定되는 國稅로는 法人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證券去來稅·敎育稅 및 해당 防衛稅 등이 있으며(施行令 第10條의2 參照), 上記 國稅는 稅法에 各各 申告納付期限이 있으며, 申告한 때에 그 稅額이 確定(租稅債權의 發生)되는 것으로 自進納付期限(=申告期限)이 경과하기 前에는 徵收할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申告한 稅額에 대한 徵收權의 消滅時効起算日은 法定申告納付期限의 翌日이 된다.

(2) 政府가 決定·更正 또는 隨時賦課決定하는 경우

政府가 稅額을 決定·更正 또는 隨時賦課決定하는 경우 國稅徵收法에 의한 納稅의 告知 등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告知한 稅額은 納稅·納付 또는 納入告知에 의하여 指定된 納付期限의 다음날이 된다.

(3) 納稅義務成立과 同時에 稅額이 確定되는 國稅

印紙稅, 源泉徵收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 및 納稅組合이 徵收하는 所得稅는 특별한 節次없이 納稅義務가 成立하는 때에 稅額이 確定되는 것으로서(법 제22조 참조) 그 起算日은 다음과 같다.

- ○ 印紙稅 : 課稅文書를 作成한 날의 다음날
- ○ 源泉徵收 또는 納稅組合徵收稅額 : 源泉徵收稅額의 法定納付期限의 다음날

(4) 納付期限이 延長된 경우

申告에 의하여 稅額이 確定되는 國稅의 申告納付期限이 연장되는 경우 및 源泉徵收稅額의 法定納付期限이 연장되는 경우(법 제6조 참조)에는 그 연장된 期限의 다음날이 起算日이 된다.

6. 少額保證金 및 賃金債權 등의 國稅에 대한 優先規定 新設(法 第35條 第4號 및 第5號)

가. 槪 要

最近 영세민에 대한 社會政策的 측면에서 改正된 住宅賃貸借保護法(1983. 12. 30改正)이 少額 賃借保證金을 抵當權에 優先하여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맞추어 國稅基本法에 國稅에 優先하는 債權으로서 少額賃借保證金에 관한 債權을 新設하였으며, 1980. 12. 31 勤勞基準法 第30條의2의 規定이 改正됨에 따라 質權, 抵當權에 우선하는 國稅를 제외하고는 原則的으로 賃金이 國稅에 우선하여 왔는데, 이번 改正에서 國稅의 優先에 관련되는 勤勞基準法 第30條의2 規定을 國稅基本法에 흡수하여 規定함으로써 賃金債權이 國稅에 優先함을 明白히 하였다.

나. 少額保證金의 優先保護

國稅에 優先하여 변제되는 少額賃借保證金은 賃借한 住宅의 所有主가 國稅滯納 및 기타 事由로 住宅이 押留되어 賣却되는 경우 그 賃借人이 住宅의 所有主에 대해 住宅賃貸借保護法 施行令 第3條에 규정한 少額保證金을 返還받을 債權이 있는 경우 그 債權은 住宅賣却代金에서 國稅보다 優先하여 변제받게 된다.

(1) 少額保證金의 範圍

少額保證金의 해당여부는 住宅賃貸借保護法에서 規定하고 있는데, 住宅賃貸借保護法 第3條에 의하면 對抗力있는 賃借權은 登記한 賃借權은 물론이고, 登記를 하지 않더라도 住宅의 引渡와 住民登錄을 마친 경우까지 포함하며, 이 경우 轉入申告를 한 때에 住民登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對抗要件을 갖춘 賃借保證金으로서 少額保證金에 해당되는 範圍는 다음과 같다.

(가) 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에서는 300萬원 以下, 기타 地域에서는 200萬원 以下의 賃借保證金

(나) 賃借人의 少額保證金이 住宅의 價額(垈地價額包含)의 2分의1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住宅의 價額이 2分의1에 該當하는 金額

㈐ 하나의 住宅에 賃借人이 2人 以上이고, 그 各 少額保證金의 合算額이 住宅의 價額의 2분의 1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그 各 少額保證金의 合算額에 대한 各 賃借人의 少額保證金의 比率로 그 住宅의 價額의 2분의 1에 該當하는 金額을 分割한 金額

㈑ 하나의 住宅에 賃借人이 2人 以上이고 이들이 그 住宅에서 家庭共同生活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人의 賃借人으로 보아 이들의 各 保證金을 合算한 價額이 서울시·직할시는 300萬원(其他地域은 200萬원) 以下인 賃借保證金

(2) 國稅·擔保債權과의 優先順位

少額保證金은 다음 表와 같이 國稅·擔保債權보다 항상 優先한다.

少額保證金·國稅·擔保債權의 優先順位

區 分	改 正 前	改 正
1. 擔保債權이 없는 경우	國稅＞少額保證金	少額保證金＞國稅
2. 擔保債權이 있는 경우		
○ 당해 財産에 賦課된 國稅(상속세·증여세·자산재평가세)가 있는 때	國稅＞少額保證金＞擔保債權	少額保證金＞國稅＞擔保債權
○ 擔保權 設定後 1年이내 納期到來 國稅가 있는 때	〃	〃
○ 擔保權 設定後 1年이후 納期到來 國稅가 있는 때	少額保證金＞擔保債權＞國稅	少額保證金＞擔保債權＞國稅

(3) 適用例(附則 第6條)

少額保證金의 優先保護 규정은 1985. 1. 1 이후 최초로 納付期限이 到來한 國稅 또는 加算金을 徵收하는 分부터 적용된다.

다. 賃金 등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의 優先保護

(1) 改正內容

使用者의 財産을 賣却하거나 推尋함에 있어서 그 매각금액 또는 추심금액 중에서 國稅 또는 加算金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勤勞基準法 第30條의2에 규정하는 賃金, 退職金, 災害補償金, 其他 勤勞關係로 因한 債權이 있는 경우에는 質權, 抵當權에 우선하는 國稅를 제외하고는 國稅보다 優先 辨濟되도록 明文化하였다.

(2) 國稅·擔保債權과의 優先關係

勤勞基準法 第30條의2에서는 質權·抵當權 등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과 質權·抵當權에 우선하는 租稅·公課金을 제외하고는 賃金債權이 優先하는 것으로 規定하고 있으므로 그 優先關係는 다음 表와 같다.

賃金債權·國稅·擔保債權의 優先順位

區　　分	改　正　前	改　　正
1. 擔保債權이 없는 경우 2. 擔保債權이 있는 경우	賃金＞國稅	
○ 當該財産에 賦課된 國稅가 있는 때	國稅＞擔保債權＞賃金	
○ 擔保權 設定後 1年以內 納期到來 國稅가 있는 때	〃	改正前과 同一 (勤勞基準法에 의한 우선순위를 國稅基本法에서도 明文化)
○ 擔保權 設定後 1年以後 納期到來 國稅가 있는 때	擔保債權＞賃金＞國稅	

※ 少額保證金·賃金債權 등과 國稅의 優先順位는 다음과 같다.

區　　分	優　先　順　位
擔保債權이 없는 경우	少額保證金＞賃金債權＞國稅少額保證金＞擔保債權＞賃金＞國稅
國稅納付期限으로부터 1年前에 擔保權이 설정된 경우	
國稅納付期限으로부터 1年以內 擔保權이 설정된 경우	少額保證金＞國稅＞擔保債權＞賃金

라. 少額賃借人 및 賃金債權者 등에 대한 押留事實通知(令 18條第3項)

(1) 通知의 時期

稅務署長이 滯納處分을 위하여 住宅 또는 使用者의 財産을 押留한 때에 少額賃借人 및 賃金 등 勤勞關係로 인한 債權者에게 당해재산의 押留事實을 別紙 第15號의2 書式에 의해 通知하도록 규정하였다.

(2) 通知의 目的

稅務署長이 押留財産을 賣却할 때에 國稅보다 우선 配當되는 債權金額을 조사함으로써 債權確保의 正確性을 기하고, 住宅賃借人이나 勤勞者 등이 住宅 또는 使用者財産의 公賣代金에서 債權을 辨濟받을 수 있음을 알림으로써 自己權利行使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여 少額賃借人 및 勤勞者의 權利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 通知의 效力

押留事實通知는 當該 債權者에게 優先權이 있음을 알림으로써 權利保護를 圖謀

하기 위하여 稅務署長에게 通知義務를 規定한 訓示規定이며, 通知行爲는 優先權에 아무런 效力을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通知를 받지 못한 優先權者도 賣却日前까지 稅務署長에게 優先辨濟를 要求할 수 있으며 優先債權者임이 확인되면 賣却金額에서 그 優先債權은 配分되어야 한다.

7. 印鑑證明書없이 支給하는 國稅還給金의 範圍擴大(令 第40條)

가. 改正理由 및 內容

○ 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가 國稅還給金을 納稅者에게 직접 支給할 때 종전에는 國稅還給金이 10萬원 未滿인 경우만 印鑑證明書를 요구하지 않고 住民登錄證 등에 의하여 本人임을 확인하고 支給하였으나, 少額의 國稅還給金을 支給받기 위하여 納稅者가 일일이 印鑑證明書를 발부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므로 인감증명서없이 受領할 수 있는 金額의 範圍를 20만원 미만으로 擴大하여 納稅者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나. 適用例(附則 第3條)

改正規定은 1985. 1. 1 以後 최초로 韓國銀行(국고대리점 포함) 또는 遞信官署에서 支給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8. 國稅不服請求期間에 대한 特例(法 第61條第2項)

가. 改正理由

國稅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면, 國稅基本法 또는 稅法에 규정하는 申告·申請·請求·其他書類의 提出·通知·納付나 徵收의 期限은 天災·地變 등 期限延長의 事由가 發生한 경우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改正前에 있어서는 국세불복청구에 대한 청구기한을 不變期間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그 延長이 不可能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異議申請·審査請求·審判請求를 하는 경우에 天災·地變 등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청구기간의 연장을 인정하여 納稅者의 不服請求機會를 擴大하여 權利保護를 도모하였다.

나. 延長事由 및 請求節次

國稅不服請求期限의 延長事由는 國稅基本法 第6條에 規定하는 事由로 申告·申請·請

求 其他書類의 提出通知에 관한 期限延長事由에 限한다고 하겠다. 즉 國稅基本法 施行令 第2條第1項第3號의 納稅者가 그 事業에 심한 損害를 입거나, 그 事業이 重大한 危機에 처한 때는 除外된다. 따라서 이러한 不服請求의 期限延長事由로 인하여 國稅基本法에서 정하는 當初 請求期間內에 不服請求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消滅한 날로부터 14日 以內에 不服請求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경우 不服請求人은 그 期間內에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事由가 發生한 날 및 消滅한 날, 기타 필요한 事項을 記載한 文書를 不服請求書와 함께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監査院法에 의한 審査請求 및 行政訴訟을 제기하는 경우의 請求期間은 延長되지 아니한다.

9. 告知金額의 最低限(法 第83條, 令 第65條의 3)

가. 改正理由

종전까지는 國稅基本法 第83條에서 印紙稅를 제외한 고지할 국세, 가산금 또는 滯納處分費가 100원 미만인 때는 그 金額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規定하고 있었으나, 告知金額의 최저한은 徵稅費用 등의 變動에 따라 신축적으로 規定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效率的이므로 改正法에서는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大統領令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國稅·加算金 및 滯納處分費의 各各의 金額을 基準으로 하였으나 改正法은 전체를 合計한 基準으로 하여 告知金額의 最低限을 合理的으로 調整하였다.

나. 告知金額의 最低限

이번 改正에서는 告知할 國稅, 加算金, 滯納處分費의 合計額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金額 未滿인 때에는 그 金額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는 바, 이번 改正 施行令 第65條의3(1984. 12. 31 改正)에서 그 金額을 "500원"으로 하였다.

여기서 本稅와 防衛稅 또는 敎育稅가 함께 告知되는 경우는 그 合計額이 500원 미만이면 그 金額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10. 其　　他

- ○ 租稅減免規制法에 依한 還給에 관하여는 同法에 特例規定을 두는 경우에 國稅基本法보다 優先 適用되도록 하였다(法 第3條第1項 但書).
- ○ 國稅徵收法에서 滯納處分猶豫制度가 新設(1984. 1. 1施行)됨에 따라 滯納處分猶豫期間中에는 國稅徵收權 消滅時效가 停止되도록 하였다(法 第28條第3項).

1988년

◉ 시행규칙 : 1988. 1. 13. 재무부령 제 1742호(시행일 : 1988. 1. 13.)
1988. 12. 6. 재무부령 제 1761호(서식 中 본적란 삭제를 위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1988. 12. 6.)

〈要 約〉

○ 서식을 개정한다.

〈改正內容〉

1.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제12조단서 중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을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나. 제14조 중 "별지 제19호서식(갑) 또는 (을)"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한다.

다. 제17조 중 "지출관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을 "지출관사무처리규칙 별지 제16호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갑)〕을 〔별지 제19호서식〕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2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별지 제23호의2서식〕·〔별지 제24호서식〕 및 〔별지 제2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며, 〔별지 제19호서식(을)〕을 삭제한다.

2.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 등의 일부개정령

— (국세기본법시행규칙의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43호서식〕 중 본적란을 각각 삭제한다.

1989년

◉ 법　　률 : 1989. 12. 30.　법　　률　제　4177호(토지초과이득세법 부칙)
(시행일 : 1990. 1. 1.)
◉ 시 행 령 : 1989. 12. 30.　대통령령　제　12882호(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부칙)
(시행일 : 1990. 1. 1.)

〈要　　約〉

○ 토지초과이득세법의 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조정한다.

〈改正內容〉

1. 國稅基本法 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가. 第2條第1號를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1) "國稅"라 함은 國家가 賦課하는 租稅 중 다음에 規定하는 것을 말한다.
㈎ 所得稅
㈏ 法人稅
㈐ 土地超過利得稅
㈑ 相續稅와 贈與稅
㈒ 再評價稅
㈓ 不當利得稅
㈔ 附加價値稅
㈕ 特別消費稅
㈖ 酒　稅
㈗ 電話稅
㈘ 印紙稅
㈙ 證券去來稅
㈚ 防衛稅
㈛ 敎育稅

나. 第21條第1項第1號 중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所得稅·法人稅 또는 土地超過利得稅"로 한다.

다. 第26條의2第1項 중 "法人稅"를 "法人稅·土地超過利得稅"로 한다.

1990년

◉ 법　　률 : 1990. 12. 31. 법　　률 제 4277호(시행일 : 1991. 1. 1.)
◉ 시 행 령 : 1990. 12. 31. 대통령령 제 13192호(시행일 : 1991. 1. 1.)
◉ 시행규칙 : 1991. 3. 6. 재무부령 제 1847호(시행일 : 1991. 3. 6.)

〈要　約〉

○ 종전에 일률적으로 5년의 賦課除斥期間이 적용되던 相續·贈與稅에 대하여 無申告·虛僞申告·申告漏落의 경우에는 賦課權 행사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함으로써 租稅回避 소지를 축소토록 함.

○ 國稅의 納付期限前 1년내에 설정된 抵當權 등 보다 國稅가 우선하도록 한 國稅의 우선조항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을 계기로 國稅와 被擔保債權과의 優先權基準日(法定期日)을 租稅債權의 確定日을 중심으로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虛僞로 抵當權 등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詐害行爲取消權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의 날(3월 10일)에 은행이 휴무함에 따른 納稅者의 納付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納付에 관한 期限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날을 期限으로 함.

○ 기타 改正事項

- 相續人이 納稅義務를 승계하는 相續財産의 價額評價方法을 相續稅法上의 價額評價方法에 의하도록 함.
- 印鑑證明書의 제출없이 國稅還給金受領이 가능한 금액범위 상향조정(20만원 미만 → 100만원 미만)
- 國稅審査委員會의 위원수 확대(8인 → 10인)
- 告知金額의 최저한 인상(500원 → 1,000원)

〈改正內容〉

1. 相續·贈與稅의 賦課除斥期間 延長

가. 槪　要

相續·贈與稅에 대하여 종전에는 일률적으로 5년의 賦課除斥期間을 적용하여 왔으나,

財産의 人別電算化나 金融實名去來의 관행이 정착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현실여건상 申告나 登記·登錄이 누락된 相續財産은 그 포착이 어려워 短期間內에 이를 추적하여 課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뿐만아니라, 納稅義務者가 贈與 등의 時期를 소급조작하기 위하여 和解調書·公正證書를 작성하는 등 時效制度를 이용하여 相續·贈與稅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 稅務當局에서 행정적으로 대처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無申告·虛僞申告·申告漏落 사실이 있는 때에는 賦課除斥期間을 10년으로 연장하여 조세회피소지를 축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法 §26의2①1號, 단서)

나. 賦課權이 延長行使되는 虛僞申告 등의 範圍(令 §12의2)

區 分	內 容
無 申 告	○ 法定申告期限內에 申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
虛 僞 申 告	○ 相續·贈與財産價額에서 가공의 債務를 控除하여 申告한 경우
申 告 漏 落	○ 權利의 移轉이나 그 행사에 登記·登錄·名義改書 등을 요하는 재산을 相續·贈與 登記 등을 하지 아니하고 申告에서도 누락한 경우 ○ 預金 등 金融資産을 申告에서 누락한 경우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虛僞申告 또는 申告漏落으로 보지 않는다.

○ 相續·贈與財産의 評價誤謬

○ 人的控除額 등의 과다계상

○ 相續·贈與登記된 재산의 단순누락

〈適用例〉

위의 개정규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相續·贈與稅를 賦課할 수 있는 날이 開始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즉, 1990년 7월 1일 이후 相續이 개시되거나 贈與財産을 取得한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法 附則 §2)

2. 國稅의 優先條項 補完

가. 槪 要

國稅의 納付期限前 1년내에 설정된 抵當權 등보다 國稅가 우선하도록 한 國稅의 우선조항(기본법 第35條第1項第3號)에 대한 憲法裁判所의 違憲決定(1990. 9. 3)을 계기로 國民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憲法裁判所의 判決精神을 존중하면서 한편으로는 國家의 租稅債權 確保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을 강구한다는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관련규정을 보완하였다.

첫째, 納稅者의 재산에 抵當權을 설정하는 등 利害關係를 가지는 제3자의 租稅債權에 대한 豫測可能時點, 즉, 租稅債權의 確定日을 중심으로 國稅와 被擔保債權과의 優先權決定 基準日(決定期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였으며,

둘째, 納稅者의 재산에 虛僞로 抵當權 등을 설정함으로써 國稅가 후순위가 되어 國稅의 徵收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행위의 取消를 法院에 請求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國稅와 被擔保債權과의 優先權決定基準日 調整

(1) 改正內容(法 §35①3, §35②, §42①단서)

從 前	改 正
○ 國稅의 納付期限 1년전에 설정된 傳貰權·質權·抵當權 또는 假登記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은 國稅에 우선	○ 『法定期日』전에 傳貰權 등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은 國稅에 우선
○ 國稅의 納付期限 1년전에 擔保의 목적이 된 讓渡擔保財產에 대하여는 滯納處分을 할 수 없음.	○ 『法定期日』전에 擔保의 목적이 된 讓渡擔保財產에 대하여는 滯納處分을 할 수 없음.

(2) 優先權決定基準日(決定期日)

區 分	決 定 期 日
① 課稅標準과 稅額의 申告에 의하여 納稅義務가 확정되는 國稅에 있어서 申告한 當該稅額	課稅標準 및 稅額의 申告日
② 課稅標準과 稅額을 정부가 決定·更正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告知한 當該稅額	納付告知書의 발송일
③ 印紙稅와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納稅組合으로부터 징수하는 國稅	納稅義務의 확정일
④ 청산인 등 제2차 納稅義務者로부터 징수하는 國稅	納付通知書의 발송일
⑤ 物的 納稅義務者의 양도담보재산에서 징수하는 國稅	納付通知書의 발송일
⑥ 다만, 財產押留의 경우에는 압류의 『公示性』을 감안하여 押留登記日 以後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滯納國稅의 法定期日이 到來하더라도 押留登記日을 法定期日로 보도록 하였다.(法 §35의2)	

①의 경우

申告納付方式의 國稅(法人稅,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酒稅, 證券去來稅 및 敎育稅)를 法定申告期限內에 신고한 당해 稅額에 대하여는 申告日 이후에는 納稅者의 申告關係書類·帳簿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등의 方法으로 豫測이 가능하므로 申告日을 基準日로 하였다. 法人稅의 中間豫納申告稅額, 附加價値稅의 豫定申告稅額도 여기에 포함된다.

②의 경우

申告納稅方式의 國稅에 있어서 無申告한 세액의 決定·과소신고에 따른 更正(再更正 포함)·수시부과결정하여 告知하는 경우와 賦課決定方式의 國稅(所得稅, 相續稅, 土地超過利得稅 등)에 있어서 최초의 決定(法定申告期限內 신고한 세액은 決定稅額에 흡수됨). 更正(再更正 포함)·수시부과결정하여 고지하는 경우의 당해 告知稅額에 대하여는 納稅告知書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즉, ①항의 申告納稅方式의 國稅에 있어서의 申告稅額과 ③항의 印紙稅, 源泉徵收하는 所得稅·法人稅, 납세조항이 징수하는 所得稅의 경우를 제외하고 國稅를 고지하는 모든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여기서 告知書의 도달일이 아닌 발송일을 기준으로 한 것은 告知書의 도달전이라 하더라도 발송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告知書類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의 경우

印紙稅, 源泉徵收하는 所得稅·法人稅,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所得稅는 納稅義務의 確定日(納稅義務의 成立日과 동일)이 우선권기준일이다.

이들 稅目은 申告나 賦課決定(告知)과 같은 특별한 절차없이도 納稅義務의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納稅義務의 확정일을 우선권기준일로 하였으며, 源泉徵收義務者 등과 金融去來를 하고자 하는 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인다면(예컨대, 과거의 源泉徵收實績 등에 관한 장부 확인) 그 세액의 예측이 가능하다.

④의 경우

國稅基本法 第38條 내지 第41條의 규정에 의한 淸算人·出資者·法人·事業讓受人 등 제2차 納稅義務者(納稅保證人 포함)로부터 징수하는 國稅는 제2차 納稅義務者에 대한 納付告知書의 발송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⑤의 경우

讓渡擔保財産에 대한 國稅徵收와 관련하여 國稅基本法 第35條第1項第3號㈁의

규정(本稿의 ⑤)과 第42條의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 讓渡擔保의 槪念

讓渡擔保는 民法에 규정된 法定擔保物權이 아니라 判例法上 인정된 물권으로서 債權擔保의 목적으로 물건의 所有權(또는 기타의 財産權)을 債權者에게 이전하고, 債務者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債權者가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債務者가 이행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그 所有者에게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非典型擔保制度이다.

讓渡擔保에는 弱한 讓渡擔保(외부적 이전형)와 強한 讓渡擔保(대외적 이전형)의 2종류가 있으나 어느 것이든 목적물의 所有權이 제3자에 대한 외부관계에 있어서 讓渡擔保權者에게 이전한다.

〈事 例〉

두 法條의 의미를 事例를 통하여 밝혀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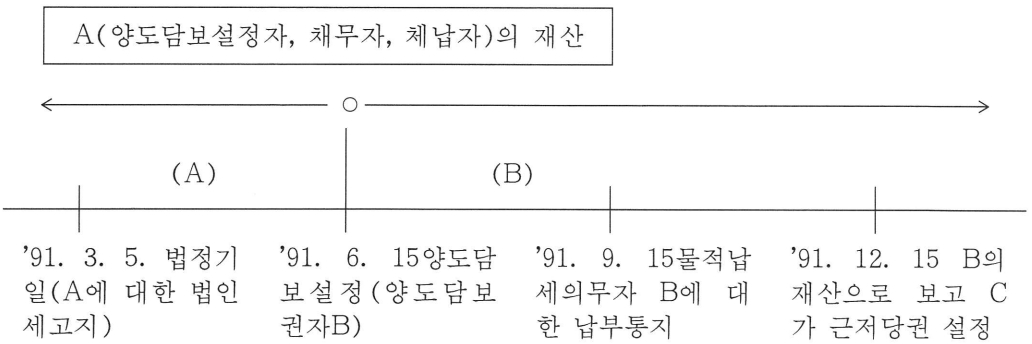

(ⅰ) A에 대한 滯納處分 과정에서 A에게 讓渡擔保財産(B명의)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먼저 재산의 명의인인 B에게 基本法 第42條에 의한 物的納稅義務가 있는지 판단한다.

事例의 경우에는 法人稅告知書 發送日(法定期日 1991. 3. 15) 이후에 讓渡擔保權이 설정되었으므로 物的納稅義務가 있다.

(ⅱ) B에게 物的納稅義務가 있을 때에는

B명의 재산에 抵當權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하고 抵當權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B에 대한 納付通知書의 발송일과 抵當權設定日의 선후에 의하여 우선권여부를 판단한다.

事例의 경우에는 納付通知가 抵當權設定보다 먼저 이루어졌으므로 國稅가 우선한다.

위 事例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基本法 第42條의 讓渡擔保財産 관련규정은 讓渡擔保權者 (B)에게 物的納稅義務를 지울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규정이며, 基本法第35條第1項第3號㈐의 규정(본고 ⑤)은 B에게 物的納稅義務가 있다고 하는 경우 讓渡擔保設定後에 B의 재산으로 믿고 抵當權등을 설정한 자의 抵當債權과 納付通知된 세액과 우선여부를 가리기 위한 규정이다.

⑥의 경우

國稅滯納으로 재산을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일 이후에 발생하는 滯納額에 대하여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國稅徵收法 §47).

滯納國稅는 ①내지 ⑤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나름의 法定期日(申告日, 發送日 등)을 가지는 것이지만 재산압류(확정전 보전압류 포함)의 경우에는 압류의 「公示性」을 감안하여 滯納國稅의 法定期日이 압류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압류일을 우선권기준일로 하였다.

〈事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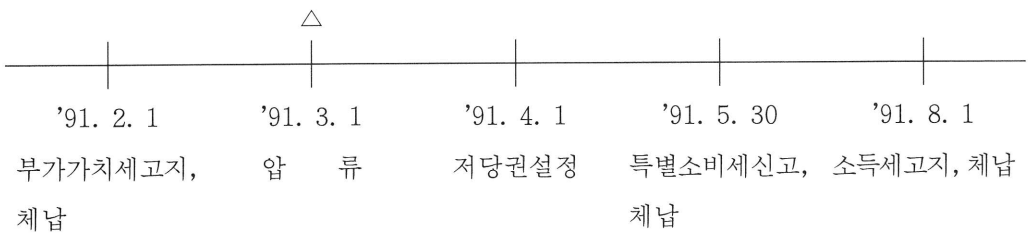

納稅者의 財産押留가 없는 경우 特別消費稅, 所得稅의 우선권기준일은 각각 1991. 5. 30과 1991. 8. 1으로서 抵當債權보다 후순위가 되나 事例와 같이 財産押留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押留日이 우선권기준일이 되어 特別消費稅등이 우선한다.

〈適用例〉

가. 法定期日을 기준으로 한 國稅의 우선여부의 결정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法定期日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法定期日이 도래한 國稅 또는 加算金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하였는바 시차별 구체적 우선권기준은 다음표와 같다.(法 附則 §5)

〈優先權基準日의 變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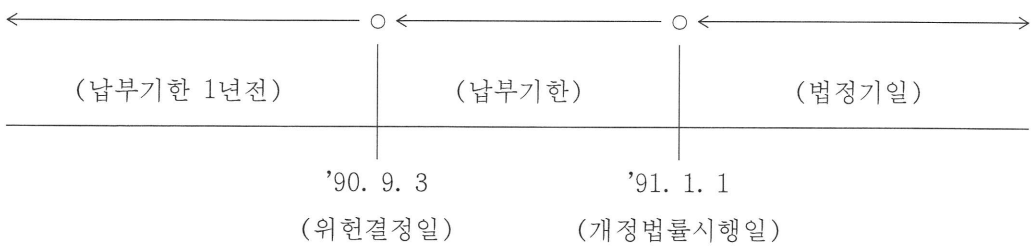

이 경우 違憲決定日(1990. 9. 3) 이전에 國稅의 納付期限이 도래하고 그 납부기한전 1년내에 抵當權 등이 설정되었으나, 납부·충당 등으로 納稅義務가 소멸되지 않아 1990. 9. 3 이후 滯納處分(公賣)하여 배분하려는 경우, 國稅와 被擔保債權間의 우선권 결정의 준거법률로서 違憲決定 이전의 법률요건사실(저당권설정, 납부기한도래) 발생 당시의 法律이 적용되어 國稅가 우선하는지 아니면 違憲決定 以後의 배분당시의 法律이 적용되어 被擔保債權이 우선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違憲決定의 효력에 관하여 憲法裁判所法이나 위헌결정주문에 경과조치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問題가 되나 이때는 위헌결정 이전의 유효한 法律이 적용되어 國稅가 우선한다.(財務部例規 稅租 22601-118, 1991. 1. 28 參照)

나. 押留의 경우의 法定期日에 관하여는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押留하는 것부터 적용한다.(法 附則 §4)

다. 詐害行爲取消權 新設(法 §35④)

(1) 意 義

納稅者가 자기의 재산에 제3자와 통정하여 虛僞로 抵當權 등을 설정함으로써 國稅가 후순위가 되어 당해 재산의 매각금액으로는 國稅를 징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稅務署長이 法院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사해행위취소권"제도를 신설하였다. 이는 民法上의 "債權者取消權"(民法 §406)의 일종이다.

※ 民法上의 債權者 取消權

債權者를 害함을 알면서 행한 債務者의 法律行爲(詐害行爲)를 취소하고 債務者의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債權者의 권리가 債權者取消權이다. 이 제도의 취지는 債務者의 총재산은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데 債務者

가 채권의 共同擔保가 부족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함부로 감소케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債權者의 보호를 위하여 그러한 債務者의 재산감소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逸脫한 재산을 도로 찾아 債權의 共同擔保를 보전·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있다.

(2) 行使要件

民法上의 債權者取消權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債務者가 債權者를 害하는 法律行爲를 하고(詐害行爲, 客觀的要件) 그것이 債權者를 害하게 됨을 알고 있어야 하는(惡意, 詐害의 意思, 主觀的要件) 등 그 행사가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 그러나, 一般債權과는 달리 고도의 공공성, 공익성을 가진 租稅債權에 있어서는 우리의 부동산 거래현실이나 납세의식 수준 등을 고려할 때 虛僞로 抵當權 등을 설정하게 할 우려가 더 크므로 그 행사요건을 民法上의 債權者取消權보다 다음과 같이 완화하였다.

(가) 납세자가 無資力일 필요는 없다.

民法上의 債權者 取消權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債務者에게 취소의 대상이 된 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야 한다(債務者의 無資力)는 요건이 요구되나 基本法上의 詐害行爲 取消權은 虛僞로 抵當權 등이 설정된 재산의 매각금액으로 國稅에 충당하기에 부족함이 예견되기만 하면 납세자에게 다른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詐害行爲의 取消請求가 가능하다.

다만, 실무상 換價가 용이한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는 번거로운 詐害行爲 取消請求보다는 그 재산을 압류·직접 환가하는 事例가 많을 것이다.

(나) 납세자 등의 惡意(詐害의 意思)는 요건이 아니다.

民法上의 債權者取消權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害함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詐害의 意思」를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基本法上 詐害行爲取消權은 조세채권을 害할 의사가 없다 하더라도 虛僞로 抵當權 등을 설정하여 國稅가 후순위로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國稅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기만 하면 된다. 「惡意」는 납세자의 內心的 要素로서 이를 課稅官廳이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여 법률입안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조세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또는 「조세채권을 해함으로 알면서」라는 법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

(다)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國稅의 법정기일전 1년내에 抵當權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通情虛僞行爲로 推定된다.

사회통념상 通情虛僞行爲는 친족 등 신분관계 있는 자나 출자관계 등 경제적 利害關係에 있는 자들간에 행하여질 蓋然性이 높으므로 이들 상호간에 國稅의 法定期日에 임박하여(1년내) 抵當權 설정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通情虛僞行爲로 추정하여 저당권자 등 法律行爲의 당사자가 通情虛僞行爲가 아님을 입증하도록 입증책임을 전환하였다.

이 경우 친족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는 제2차 納稅義務를 지는 과점주주의 판정시 적용되는 친족 등의 범위가 그대로 준용된다.

〈適用例〉

詐害行爲의 取消請求는 1991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法定期日이 도래하여 抵當權 등과 우선여부가 問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法 附則 §3)

3. 勤勞者의 날도 納付期限의 特例 適用

가. 槪 要

그동안 근로자의 날(3월 10일)에 세입금 수납기관인 銀行이 휴무함에 따라 3월 10일이 자진 납부기한인 갑근세 등의 납세자는 3월 9일 이전에 은행에 納付하거나 3월 10일에 우체국 등에 납부함으로써 사실상 納付期限의 단축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納付期限 단축에 대한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따라 "納入告知書에 기재된 납입기한의 말일이 한국은행의 휴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1989년말에 豫算會計法施行令을 改正(§30③)하였으나 동 施行令에서는 告知分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인 國稅基本法 第5條의 해석상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는 곤란한 問題點이 있었다.

이번 稅法改正時에는 豫算會計法施行令의 개정취지를 감안하고 金融機關의 휴무에 따른 納稅者의 불편과 민원소지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근로자의 날도 기한연장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改正內容(令 §1의2)

納付에 관한 期限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한다.

納付期限에만 연장특례가 적용되며 金融機關의 휴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申告·申請·請求 등의 期限이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더라도 期限이 연장되지 않는다.

4. 其他 補完內容

가. 相續人이 納稅義務를 承繼하는 相續財產의 價額評價方法 改善(令 §11)

相續人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하여 被相續人의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이때 納稅義務 승계의 한도인 相續財產價額의 평가에 관하여 종전에는 相續開始日 현지의 "시가"에 의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時價算定이 어려운 경우에 그 價額評價를 어떻게 할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있었으므로 이번 改正稅法에서는 相續稅法上의 相續財產評價方法(同法 §9 및 §10)에 의하도록 명문화 하였다.

나. 印鑑證明書 提出없이 國稅還給金 受領이 可能한 金額範圍 上向調整(令 §40②, 단서)

종전에는 국세환급금이 발생하여 납세자가 은행 등 國庫代理店에서 환급금을 수령하고자 할 때 그 금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印鑑證明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그동안 經濟規模의 확대, 納稅者의 편의, 民願書類 감축효과 등을 감안하여 그 금액범위를 100만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였다.

다. 國稅審査委員會의 委員數 擴大(令 §53)

國稅廳의 職制改編(1990. 2. 7)으로 財產稅局이 直稅局에서 분리·신설되었고 전체 불복청구 중에서 財產稅局 담당분야의 불복청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높으므로(57.9%, 1990. 10월 현재) 國稅審査委員會에 財產稅局長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세 불복심사의 객관성 유지를 위하여 公務員이 아닌 外部委員도 1인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 告知金額의 最低限 引上(令 §65의3)

종전에는 告知할 國稅·加算金 또는 滯納處分費의 합계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告知하지 아니하였으나, 500원은 告知書 송달비용(告知書 송달시 등기우편요금 600원, 독촉장 송달시 우편엽서 요금 70원)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이를 1,000원으로 인상하였다.

다만, 個別稅法에 과세 최저한 또는 소액부징수에 관한 특례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례 조항이 우선 적용된다.(基本法 §3① 參照)

1991년

◉ 시 행 령 : 1991. 12. 31. 대통령령 제 13539호(시행일 : 1992. 1. 1.)

〈要 約〉

○ 종전의 簡易節次에 의하여 결정하는 소액국세심판의 청구범위 확대
— 청구금액(10만원 미만 → 1,000만원 미만)

〈改正內容〉

1. 簡易節次에 의하여 決定하는 「少額國稅審判」의 範圍 擴大

가. 改正內容(令 §62)

從 前	改 正
— 審判請求金額이 "10만원 미만"으로서 청구사항이 法令解釋에 관한 것이 아닌 少額審判事件은 주심 심판관 단독의 의견을 들어 國稅審判所長이 결정	— 少額審判對象 請求金額의 범위를 "1,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 請求事項이 법령의 해석에 관한 것이 아닌 것 이외에 • 類似請求에 대한 선결정례가 있는 것을 추가

나. 改正理由

그동안 經濟規模의 확대와 국민의 權益意識 向上에 따른 審判請求의 증가 및 청구금액의 고액화추세에 맞추어 「少額審判」의 대상이 되는 請求金額 범위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소액심판제도의 활성화를 기하고 국민의 신속한 權利救濟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다. 適用例

1992. 1. 1이후 최초로 審判請求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1992년

◉ 시행규칙 : 1992. 12. 31. 재무부령 제 1900호(시행일 : 1993. 1. 1.)

〈要 約〉

○ 納稅者의 편의도모를 위한 民願書式 개정
- 期限延長承認申請書 등 8個 서식
- 納稅管理人 설정(변경·해임) 申告書

〈改正內容〉

1. 納稅者의 便宜圖謀를 위한 民願書式 改正

가. 期限延長 承認申請書 등 8個 書式

(1) 改正內容

申請人의 "印"란을 "署名 또는 印"으로 개정

(2) 改正理由

인장미지참자의 불편해소와 本人署名에 의한 信用去來 관행의 유도·확산

나. 納稅管理人 設定(變更·解任)申告書

(1) 改正內容

"解任"란 및 "納稅管理稅目"란을 설치하고, 申告人에 納稅者를 추가하며, 添附書類에 納稅者의 인감증명서 1부를 추가함

(2) 改正理由

納稅管理人 해임시 사용할 申告書式이 없고, 納稅者의 長期海外出他時 국세환급금 사고소지가 있는 등의 미비점을 補完하는 한편, 國稅基本法과 다른 稅法의 각기 다른 납세관리인 설정(변경·해임)신고서 書式을 統一

1993년

◉ 법　　률 : 1993. 6. 11. 법　　률 제 4561호(중기관리법 부칙)
(시행일 : 1994. 1. 1.)
1993. 12. 31. 법　　률 제 4672호(시행일 : 1993. 12. 31.)
◉ 시 행 령 : 1993. 5. 27. 대통령령 제 13895호(시행일 : 1993. 5. 27.)
1993. 12. 31. 대통령령 제 14076호(시행일 : 1994. 1. 1.)
◉ 시행규칙 : 1993. 6. 3. 재무부령 제 1934호(시행일 : 1993. 6. 3.)
1993. 12. 31. 재무부령 제 1954호(교통세법 시행규칙 부칙)
(시행일 : 1994. 1. 1.)

〈要　　約〉

○ 納稅者의 權益保護 및 便宜提高
- 遡及課稅禁止原則의 例外規定 削除
- 國稅賦課除斥期間의 特例事由 追加
- 納稅擔保의 評價方法 改善
- 押留以後에 申告 또는 告知된 國稅의 優先權 調整
- 寡占株主 중 第2次納稅義務를 지는 者의 範圍 縮小
- 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緩和
- 土地超過利得稅의 還給加算金 起算日 規定 補完
- 國稅不服請求期間 改善 및 看做棄却制度 廢止
- 發信主義 適用對象 擴大
-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없는 團體의 範圍 擴大

○ 其他 補完事項
- 國稅賦課除斥期間의 調整
- 修正申告時 加算金減免 例外規定 削除

〈改正內容〉

1. 納稅者의 權益保護 및 便宜提高

가. 遡及課稅 禁止原則의 例外規定 削除(국세기본법 §1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稅法의 解釋·國稅行政의 慣行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 새로운 해석·관행에 의해 遡及하여 課稅할 수 없으나 ○ 監査院法에 의한 監査 및 그 결과에 의한 是正要求時에는 遡及課稅 可能	○〈削 除〉

(2) 改正理由

納稅者權益 保護를 위해 監査院이 是正要求한 경우에도 遡及하여 課稅할 수 있도록 그 例外規定을 削除하였다.

나. 國稅賦課 除斥時間의 特例事由 追加(국세기본법 §26의2②)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國稅賦課除斥期間의 特例 ○ 爭訟(異議申請, 審査請求, 審判請求, 行政訴訟)이 提起된 경우에는 細目別 賦課除斥期間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當該判決·決定의 確定日로부터 1年이 經過하기전까지는 更正決定등 處分可能	○ 國稅賦課除斥期間 特例事由에 「租稅條約에 의한 相互合意申請이 있는 경우」를 追加

(2) 改正理由

外國政府가 자국내 우리 現地法人과 國內 母會社와의 去來金額을 否認하고 法人稅를 追徵하는 경우 兩國政府는 租稅條約에 따라 二重課稅防止를 위한 相互合意節次를 진행할 수 있고 相互合意時 우리政府는 當該 去來金額 및 母會社의 稅額을 대응조정해 줄 수 있다.

그러나 外國政府의 稅務調査 및 相互合意 도달에 通常 5年 以上이 所要되므로

政府間에 相互合意가 되더라도 國稅賦課除斥期間 때문에 對應調整을 해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相互合意申請이 국제관례에 따라 外國政府의 부당한 課稅處分을 안 날로부터 3年 이내에 제기되면 세목별 賦課除斥期間에 불구하고 그 相互合意終結日로부터 1年 이내에는 更正決定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納稅擔保의 評價方法 改善(국세기본법 §30, 동법 시행령 §1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土地 등을 課稅對象으로 하는 國稅(例 : 相續稅, 讓渡所得稅)의 賦課時에는 公示地價 등으로 評價하면서 ○ 土地 등이 納稅擔保로 提供되는 경우에는 地方稅 課稅時價標準額 또는 鑑定機關의 鑑定價額으로 評價	(評價方法 改善) ○ 土 地 : 個別公示地價 ○ 아 파 트 : 國稅廳 基準時價 ○ 기타건물 : 地方稅 課稅時價 標準額 ○ 船 舶 등 : 鑑定價額 또는 地方稅 課稅時價標準額

(2) 改正理由

土地 등이 納稅擔保로 提供되는 경우 時價에 비해 현저히 낮은 地方稅 課稅時價標準額 등으로 評價함으로 인해 納稅者에게 과중한 擔保負擔을 초래하였던 종전의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라. 押留 以後에 申告 또는 告知된 國稅의 優先權 調整(국세기본법 §35①3, 구법 §35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一般原則 ○ 滯納者의 同一한 財産에 國稅와 抵當權 등에 의해 擔保된 債權이 競合하는 경우에는 法定期日(國稅의 申告日, 告知書發送日)과 抵當權 등의 設定登記日을 基準으로 優先順位를 가림	從前과 같음

從　　前	改　　正
— 國稅徵收를 위한 押留 以後에 擔保物權이 設定된 경우 ○ 擔保物權의 設定以後에 申告 또는 告知된 다른 國稅도 被擔保債權보다 優先시킴(押留日을 基準으로 優先順位를 가림)	○ 押留後 申告 또는 告知된 國稅와 被擔保債權의 優先順位는 一般原則에 의함. ○ 다만, 國稅徵收法 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國稅確定前 押留와 관련된 國稅의 경우에는 押留日을 基準으로 優先順位를 가림

(2) 改正理由

現行制度下에서는 抵當權 등의 設定登記後 추가로 申告 또는 告知되는 國稅를 豫想할 수 없는 抵當權者 등에게 豫測할 수 없는 損害를 끼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納稅者의 부도·파산 등으로 국세 확정후에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國稅確定前에 납세자의 부동산 등을 먼저 押留한 경우에 동 압류와 關係된 國稅의 경우만 그 押留日을 法定期日로 보도록 하고, 그외의 경우에는 一般原則에 따라 國稅의 申告日 또는 告知書發送日과 抵當權 등의 設定登記日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가리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3. 12. 31 이후 최초로 國稅徵收法 第24條第2項(國稅確定前 押留)규정에 의한 押留를 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1993. 12. 31 이전에 종전규정(舊法 §35의2)에 의하여 押留登記日 또는 登錄日을 法定期日로 본 國稅 또는 加算金에 대하여는 從前規定을 適用한다.

〈參考〉

※ 國稅와 被擔保債權의 優先順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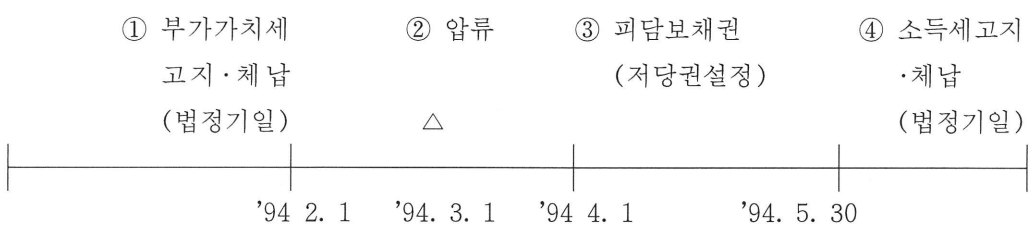

○ 從　前 ┌ 압류하지 않은 경우 : ①>③>④
　　　　└ 압류한 경우 : ①>④>③

○ 改 正 ┌ 압류하지 않은 경우 : ①>③>④
　　　└ 압류한 경우 : ①>③>④

＊ 國稅確定前에 押留한 경우 : ①>④>③

마. 寡占株主 중 第2次納稅義務를 지는 者의 範圍 縮小(국세기본법 §39, 동법 시행령 §20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非上場法人의 財産으로 그 法人에게 賦課되거나 그 法人이 納付할 國稅·加算金·滯納處分費에 충당하여도 不足한 경우에는 ○ 그 法人의 寡占株主 모두가 無限的인 第2次納稅義務를 짐	– 寡占株主 중 第2次納稅義務를 지는 者의 範圍 縮小 ○ 가장 많은 株式을 所有한 者 ○ 法人의 經營을 事實上 支配하는 者 ○ 상기의 者들과 生計를 함께하는 者 ○ 任員인 者(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이사, 감사 등)

※ 寡占株主 : 非上場法人의 株主 또는 有限責任社員 1人과 그와 特殊關係에 있는 者들로서 그들의 當該 法人에 대한 持分이 51/100 이상인 者들

(2) 改正理由

現行 稅制上 寡占株主의 範圍에는 大株主의 親族, 使用人 등도 포함되는 바, 法人의 運營에 깊이 關與했다고 보기 어려운 적은 持分을 가진 寡占株主에게까지 無限的인 第2次納稅義務를 負擔시키는 不合理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지는 者의 範圍를 축소하였다.

바. 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緩和(국세기본법 §41, 동법 시행령 §23②)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事業의 포괄적인 讓渡·讓受가 있는 경우에 ○ 讓渡前뿐만 아니라 讓渡後에 양도인의 納稅義務가 確定되는 당해사업에 관한 國稅에 대해서도 事業讓受人이 無限的으로 第2次納稅義務를 짐	○ 讓渡前에 讓渡人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사업에 관한 國稅에 대해 讓受財産價額을 限度로 하여 事業讓受人이 第2次納稅義務를 짐

(2) 改正理由

事業讓受 당시 확정되지 아니하여 讓受人이 알 수 없는 稅金까지 讓受人이 第2次納稅義務를 負擔하는 不合理한 점을 改善하였다.

※ 讓受한 財產의 價額

○ 事業의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支給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價額

○ 그 價額이 없거나 不分明한 경우 또는 時價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讓受한 資產 및 負債를 相續稅의 相續財產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評價한 후 그 資產總額에서 負債總額을 控除한 價額

사. 土地超過利得稅의 還給加算金 起算日 規定 補完(국세기본법 §5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土地超過利得稅 還給加算金 起算日 ○ 定期決定日의 다음날	○ 다만, 豫定決定期間에 대한 土地超過利得稅의 定期決定으로 인한 國稅還給金의 경우에는 豫定期間에 대한 土地超過利得稅의 納付日

(2) 改正理由

土地超過利得稅의 경우 課稅期間이 3年이어서 豫定決定期間에 대한 土地超過利得稅의 納付日부터 定期決定으로 인한 還給日까지의 期間이 1~2年 정도의 長期間이 되므로, 그 기간에 대한 還給加算金을 支給하지 않는 경우 納稅者가 현저한 利子損失을 입게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였다.

아. 國稅不服請求期間 改善 및 看做棄却制度 廢止(국세기본법 §56②, §61②, §65⑤, §6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審査·審判請求 및 行政訴訟提起 期間 ○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경우 :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日 이내	○ 決定通知를 받은 경우 : 決定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從 前	改 正
○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 決定期間이 經過한 날로부터 60日 이내 — 看做棄却制度 ○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해 決定期間內에 決定의 通知가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는 棄却된 것으로 看做	○ 決定期間內에 決定通知를 받지 못한 경우 : 決定期間이 經過한 날로부터 可能 — 看做棄却制度 廢止

(2) 改正理由

審査請求 등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의 上級審에 대한 不服請求期間이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위법한 課稅處分에 대한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違憲決定(1992. 7. 23, 1993. 12. 18) 취지와 納稅者의 신속한 權利救濟의 必要性을 반영하였고 裁決廳이 결정기간내에 決定의 통지를 하지 못한 것을 棄却으로 看做하는 것은 納稅者에게 不利하게 되는 側面이 있으므로 이를 廢止하였다.

자. 發信主義 適用對象 擴大(국세기본법 §61③, §66⑤, §81)

從 前	改 正
—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간 행위의 효력발생시기 ○ 일반적인 경우 : 到達主義 ○ 郵便으로 課稅標準申告書, 課稅標準修正申告書 등 제출시 : 發信主義	— 발신주의 적용대상 확대 ○ 請求期間내에 郵便으로 제출(通信 日附印이 찍힌날 기준)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심판청구서가 청구기간 경과후 도달시에도 그 期間滿了日에 적법한 申請·請求가 있었던 것으로 봄

차.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없는 團體의 範圍 擴大(국세기본법시행령 §8)

從 前	改 正
—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없는 團體의 범위 ○ 「主務官廳의 許可를 받아 設立」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公益을 목적으로 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團體」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法令에 의하여 主務官廳에 登錄한 團體」도 포함

2. 其他 補完事項

가. 國稅賦課除斥期間의 調整(국세기본법 §26의2①, 舊국세기본법시행령 §12의2)

從 前	改 正
— 相續稅·贈與稅 賦課除斥期間 ○ 一般的인 경우 : 5년 ○ 無申告·虛僞申告의 경우 : 10년 — 證券去來稅 賦課除斥期間 : 2년	10年으로 一般化 — 5年으로 延長

* 稅目別 賦課除斥期間

- 相續·贈與稅 : 10년
- 所得·法人·土地超過利得·資產再評價·不當利得·附加價値·證券去來·敎育稅 및 地方稅 : 5년
- 其他의 國稅 : 2年. 단, 사기 기타 부정한 行爲로써 이를 逋脫하거나 還給·控除받은 경우에는 5年

나. 修正申告時 加算稅減免 例外規定 削除(국세기본법 §49, 동법 시행령 §2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納稅者가 修正申告時 ○ 과소신고가산세는 그 수정된 범위내에서 면제하나 ○ 법인세법에 의한 重過小申告加算稅는 그 면제대상에서 제외	○ (削 除)

(2) 改正理由

1993. 12 法人稅法 개정시 重過小申告加算稅 制度를 廢止(法人稅法 §41)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였다.

1994년

◉ 법　　률 : 1994. 3. 24. 법　　률 제 4743호(농어촌특별세법)
(시행일 : 1994. 7. 1.)
1994. 12. 22. 법　　률 제 4810호(시행일 : 1995. 1. 1.)
◉ 시 행 령 : 1994. 12. 31. 대통령령 제 14473호(시행일 : 1995. 1. 1.)
◉ 시행규칙 : 1995. 3. 30. 총 리 령 제 491호(시행일 : 1995. 3. 30.)

〈要　　約〉

○ 納稅者의 便宜提高 및 權益增進
- 更正請求權制度 導入
- 更正請求權의 新設에 따른 細部事項 規定
- 稅務調査의 事前通知制度 新設
- 稅務調査의 事前通知制度 新設에 따른 細部事項 規定
- 相互合意節次가 進行中인 경우 行政救濟節次 進行의 停止

○ 不誠實 納稅者에 대한 課稅強化
- 國稅賦課除斥期間(租稅時效)制度의 改善
- 修正申告時 加算稅 減免制度 改善
- 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 承繼制度 補完

○ 其他 未備點 補完
- 國稅審判의 必要的 前置主義 明文化
-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範圍 擴大
- 納付期限 연장시 納稅擔保 提供規定 新設
- 帳簿 및 證憑書類의 保存義務期間 등 新設
-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更正)請求書 등 일부서식 制定·改正

〈改正內容〉

1. 納稅者의 便宜提高 및 權益增進

가. 更正請求權制度 導入(法 §45의2, 令 §25의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申告된 課稅標準 및 稅額을 增加 또는 감소시키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한내 修正申告를 할 수 있음(수정신고제도) — 期限 ┌ 法人稅, 附加價値稅 : 申告期限後 6月 　　└ 其他 國稅 : 申告期限後 1月	○ 申告된 課稅標準 및 稅額을 增加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申告期限後 政府의 決定 또는 更正前까지 修正申告를 할 수 있도록 함
○ 修正申告期限 經過後에 申告된 課稅標準 및 稅額을 減少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納稅者가 法的으로 是正을 要求할 수 없음	○ 申告된 課稅標準 및 稅額을 減少시키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申告後 1년내(후발적 사유발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내 경정청구제도 도입)

(2) 改正理由

○ 증액수정신고와 감액수정신고의 효과가 다른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 修正申告와 更正請求로 나누어 별도 제도로서 운영하고

— 당초 신고시 예측하기 어려웠던 특정사유(후발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納稅者가 그 是正을 要求할 수 있는 權利를 부여하였다.

〈參考〉 從前制度와 比較

區　分	從　　前	改　　正
增額·減額事由에 따른 구분與否	○ 納付稅額을 增加·減少시키는 사유를 모두 修正申告에 의하여 처리함.	○ 納付稅額을 增加시키는 사유는 修正申告에 의해서 ○ 감소시키는 사유는 更正請求에 의해서 처리함(제도의 2원화)
期　限	○ 修正申告期限 法人稅, 附加價値稅 : 6月 其他 國稅 : 1月	○ 修正申告期限 : 政府의 決定 또는 是正前까지 ○ 更正請求期限 : 1年
후발적 사유의 수용여부	○ 修正申告期限 경과후 당초 申告時 예측하기 어려웠던 減額事由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納稅者가 法的으로 그 是正을 요구할 수 없음	○ 통상적인 是正請求期限 경과후 當初申告時 예측하기 어려웠던 減額事由가 발생하는 경우에 納稅者에게 그 是正을 要求할 수 있도록 法的 權利를 보장함. — 納稅者는 2月 以內에 更正請求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課稅官廳은 60일이내에 更正하여야 함 — 更正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異議申請, 審査請求 등을 할 수 있음

나. 是正請求權의 新設에 따른 細部事項 規定(令 §25의2, 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更正請求權이 인정되는 후발적 사유의 具體的인 範圍 規定 (令 §25의2) — 후발적 사유 • 당초 세액계산시 근거가 된 인·허가 또는 계약이 취소된 때 • 장부·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세액의 계산을 할 수 없었으나 그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때
〈新 設〉	○ 更正請求 및 通知節次 (令 第25條의3) — 更正請求書 記載事項 • 更正前의 課稅標準과 稅額 • 更正後의 課稅標準과 稅額 • 更正의 請求理由 • 후발적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등 — 通知內容 • 更正의 內容 • 更正을 하지 않을 시는 그 事由 등

(2) 改正理由

○ 통상적인 更正請求期限(1年)의 경과후 최초 申告時 예측하기 어려웠던 減額事由가 발생하는 경우에 納稅者에게 그 是正을 要求할 수 있도록 하여 法的 權利를 보장하고, 納稅者가 更正의 請求時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및 管轄稅務署長이 更正請求에 대한 가부의 通知節次에 관한 細部事項을 정하였다.

다. 稅務調査의 事前通知制度(法 §85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稅務調査運營準則(國稅廳長 訓令)에 의하여 조사착수 3일전에 通知(調査者, 調査期間, 調査對象稅目 등)하고 있음	○ 稅務調査時 7일전에 事前通知하도록 함 — 다만, 事前通知에 의해 調査目的이 妨害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 아니함

從　　前	改　　正
	○ 納稅者가 천재·지변·질병 등으로 稅務調査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延期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함 — 延期申請에 대해 稅務署長이 그 承認與否를 通知하도록 함

(2) 改正理由

○ 稅務調査時 이를 事前通知하도록 하고 稅務調査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연기를 申請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納稅者의 權利를 보호토록 하였다.

라. 稅務調査의 事前通知制度 新設에 따른 細部事項 規定(令 §65의6, 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事前通知事項 — 調査者의 人的事項 — 調査對象의 稅目 및 事由 — 調査期間 등
〈新　　設〉	○ 延期申請事由 — 천재, 지변, 화재, 勞使紛糾 등으로 事業上 심한 어려움이 있을 때 — 納稅者의 疾病, 長期出張 등으로 稅務調査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 權限있는 機關에 帳簿 및 證憑書類가 압수 또는 영치된 때 등
〈新　　設〉	○ 延期申請書 記載事項 — 延期申請者의 住所 또는 거소와 姓名 — 延期申請期間 — 延期申請事由

(2) 改正理由

○ 稅務調査時 納稅者에게 事前通知하여야 할 사항과 納稅者가 稅務調査를 받기 곤란하여 調査를 延期申請할 수 있는 事由 등을 규정함으로써 稅務調査의 適法, 公正性과 納稅者의 權益을 保障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參考〉 外國의 立法例

○ 프랑스의 租稅節次法

— 事前通知書 記載事項

- 納稅者를 補佐하는 조언자의 선임·입회권의 교시
- 調査對象 期間의 명시
- 피조사자의 住所·姓名
- 調査開始 豫定日·期間
- 調査官의 姓名

마. 相互合意節次가 進行中인 경우 行政救濟節次 進行의 停止(法 §55, 令 §44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相互合意節次가 進行중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申請에 의해 行政救濟節次(심사청구, 심판청구) 進行이 停止될 수 있도록 함

(2) 改正理由

○ 동일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權利救濟節次를 진행토록 하는 것은 납세자나 國稅行政機關 모두에게 부담이 되므로 救濟節次를 단일화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이 법 시행일 現在 進行中이거나 동 시행일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相互合意節次分부터 適用한다.

2. 不誠實納稅者에 대한 課稅強化

가. 國稅賦課除斥期間(租稅時效)制度의 改善(法 §26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10년 : 상속세·증여세	○ 15년 : 相續稅·贈與稅의 무신고, 허위신고, 조세포탈
○ 5년 : 소득세, 법인세, 토지초과이득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 10년 : 租稅逋脫(상속·증여세 제외) 및 相續·贈與稅
○ 2년 : 기타 국세(특별소비세, 주세, 전화세, 인지세)	○ 7년 : 無申告 ○ 5년 : 기타(단순오류·과소신고 등)

(2) 改正理由

○ 신고납부일로부터 통상 2~3년이 경과한 후 세무조사를 하게 되므로 단기의 조세시효로는 탈세사실이 발견되어도 이를 추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 납세자의 申告誠實度의 차이(포탈은 단순오류보다 길게) 및 그에 따른 과세관청의 과세권 행사의 難易度 차이(무신고는 과소신고보다 길게)를 고려하여 조세시효를 정하였다.

○ 상환만기 10년 이상의 장기채발행과 관련하여 상속·증여세의 회피소지가 없도록 상속·증여세 포탈시의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수정신고시 加算稅 減免制度 改善(法 §4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가산세 감면범위	
— 申告不誠實加算稅 : 100% 감면	— 50% 減免
— 納付不誠實加算稅 : 50% 감면	— 廢 止
○ 加算稅 減免要件	
— 원칙 : 수정신고기한(6월 또는 1월)내 신고하는 경우	—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는 경우
— 예외 :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을 알고 수정신고하는 경우 감면배제	— (현행유지)

(2) 改正理由

○ 수정신고기한은 충분히 허용하되 가산세 감면혜택은 축소조정하여

— 당초 과소신고하였다가 증액수정신고하는 납세자가 성실하게 신고납부하는 경우보다 자금부담면에서 유리하게 되는 점을 방지하였다.

(3) 參 考 : 수정신고시 加算稅 減免效果(※ 附加價値稅의 경우)

從 前	改 正
○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50%감면받으므로 5%만 부담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10%를 전혀 감면하지 아니하므로 10%를 모두 부담함.
→ 연리 10%이자율에 해당함(성실신고납세자보다 유리함)	→ 연리 20% 이자율에 해당함(성실신고납세자보다 불리함)

다. 相續으로 인한 納稅義務承繼制度 補完(法 §2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예 : 소득세 등)에 대해 –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를 相續으로 인하여 얻은 財産을 限度로 納付할 의무를 짐	–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를 相續으로 인하여 얻은 財産을 限度로 連帶하여 納付할 의무를 지도록 함

(2) 改正理由

○ 본래 被相續人의 全財産으로 納付하여야 할 國稅를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경우에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고 資力이 없는 상태로 된 상속인으로부터는 징수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점을 방지하였다.

※ 현재도 상속세는 각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하고 있는 바, 상속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적용대상 국세를 피상속인에게 부과된 국세(예 : 소득세·부가가치세 등)로 확대하려는 것이다.

3. 기타 未備點 補完

가. 國稅審判의 必要的 前置主義 明文化(法 §5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국세처분에 관한 行政訴訟을 제기하기 전에 반드시 審判請求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明文化함

(2) 改正理由

○ 改正된 行政訴訟法(1998. 3. 1 施行)에서 행정심판의 必要的 前置主義를 폐지하면서도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例外를 認定하고 있는 바,

– 국세처분은 대량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될 뿐 아니라 국세처분간의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國稅審判의 必要的 前置主義를 採擇하는 것이 타당하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8년 3월 1일부터 施行한다.

나.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範圍 擴大(法 §1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法人으로 보는 法人格없는 團體 – 주무관청의 許可 또는 認可를 받아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登錄한 사단·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공익을 목적으로 出捐된 基本財産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개인으로 보아 과세	○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는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로서 세무서에 법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법인으로 봄 –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정관·규약 등)을 가지고 代表者 또는 管理人을 選任 – 단체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소득과 재산을 獨立的으로 所有·管理 – 단체의 所得을 構成員에게 分配하지 않음 →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는 선택에 의해 개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과세

(2) 改正理由

○ 종교단체, 종중 등「법인격 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단체」는 法人으로서의 社會的 實體性이 인정되므로 이를 稅法上 法人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다. 納付期限 연장시 納稅擔保提供規定 新設(法 §6②)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납부기한연장시 納稅擔保의 提供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다만,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때는 제외

(2) 改正理由

○ 납세자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납부기한 연장사유 발생시 納稅擔保의 提供에 관한 規定의 未備로 세수일실을 우려하여 납부기한의 연장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함에 있다.

라. 帳簿 및 證憑書類의 保存義務期間 등 新設(法 §85의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거래사실이 속하는 課稅期間에 대한 당해 국세의 法定申告期限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토록 하고 帳簿와 證憑書類를 마이크로 필름, 자기테이프 기타 情報保存裝置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함

(2) 改正理由

○ 장부를 破棄·燒却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함에 있다.

— 帳簿保存義務期間을 公訴時效期間(현행 3년 → 개정 5년) 등을 감안하여 5년으로 규정하였다.

마.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更正)請求書 등 일부서식 制定·改正(1995. 3. 30)

(1) 改正內容

區 分	題 目	備 考
改 正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承認申請書	별지 제6호서식
制 定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承認與否 通知書	별지 제6호의2서식
〃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承認取消 通知書	별지 제6호의3서식
〃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代表者 등의 選任(變更)申告書	별지 제6호의4서식
改 正	法人으로 보는 團體의 國稅에 관한 의무이행자 지정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	課稅標準 수정신고 및 추가자진납부 계산서	별지 제16호서식
制 定	課稅標準 및 稅額의 決定(更正)請求書	별지 제16호의2서식
改 正	審判請求書	별지 제35호서식
〃	결정서	별지 제41호서식
制 定	相互合意에 따른 청구(결정)기간 계산특례신청서	별지 제53호서식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별지 제54호서식
〃	세무조사 연기신청서	별지 제55호서식

(2) 改正理由

國稅基本法의 개정(1994. 12. 22, 법률 제4810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으로 납세자가 課稅標準과 세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更正請求權 등이 신설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서식을 제정하는 한편, 法人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일부서식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다.

1996년

◉ 법　　률 : 1996.12.30. 법　　률 제 5189호(시행일 : 1996.12.30.)
◉ 시 행 령 : 1996.12.31. 시 행 령 제15189호(시행일 : 1996.12.31.)
◉ 시행규칙 : 1997. 4. 4. 총 리 령 제　624호(시행일 : 1997. 4. 4.)

〈要　　約〉

○ 納稅者의 權益保護
-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 및 교부
- 동일세목 등에 대한 재경정·재조사 금지
- 세무조사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
-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등
- 세무조사의 결과통지
- 세무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
- 납세자의 정보요구권
- 서류접수증 교부제도

○ 租稅不服制度의 改善
- 청구인 적격성 확대 및 심사청구서 등의 보정기간 조정

○ 其他 補完事項
- 유치송달제도의 도입 및 공시송달사유의 조정
- 납부의무 소멸사유의 조정 및 국세환급금의 충당제도 보완
-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서류송달방법 보완
- 조세조약과 관련한 부과제척기간에 대한 특례신설

〈改正內容〉

1. 納稅者의 權益保護

가. 納稅者權利憲章의 制定 및 交付(法 §81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國稅廳長은 重複調査의 禁止, 稅務調査時 助力을 받을 權利 및 誠實性推定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하여 告示하여야 함. ○ 稅務公務員은 다음의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文書를 納稅者에게 交付하여야 함. — 租稅犯處罰節次法의 규정에 의한 犯則事件에 대한 調査를 하는 경우 — 法人稅의 決定 또는 更正을 위한 調査등 賦課處分을 위한 實地調査를 하는 경우 — 事業者登錄證을 交付하는 경우

(2) 改正理由

○ 納稅者의 權益向上과 稅政의 先進化를 위하여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시행할 수 있는 法的 根據를 마련하고 또한, 사업자등록시 "헌장"을 교부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權利의 內容을 미리 알 수 있게 하며, 특히 納稅者의 權益侵害의 可能性이 가장 큰 稅務調査時 再次 憲章을 交付하도록 하여,

— 납세자가 自身의 權利保護事項을 事前에 충분히 알게 함으로써 納稅者의 權益을 最大한 保障하기 위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上半期中 國稅廳에서 「納稅者權利憲章」을 制定·告示

— 1997. 7. 1 施行과 동시 旣存 事業登錄者 전원에게 일괄교부하고, 이후에는 新規사업자등록시와 세무조사시 등에 교부

나. 重複調査의 禁止(法 §81의3, 施行令 §63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租稅脫漏의 嫌疑를 認定할 만한 明白한 資料가 있는 경우, 去來相對方에 대한 調査가 必要한 경우, 2 以上의 事業年度와 關聯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등을 除外하고는 原則的으로 再調査·再更正 禁止 ○ 例外的 再調査 可能 경우 — 不動產投機, 買占賣惜 등 經濟秩序攪亂者에 대하여 一齊調査를 하는 경우 — 賦課處分을 위한 實地調査에 의하지 아니하고 再更正하는 경우

(2) 改正理由

○ 이는 稅務調査의 重複 및 長期化에 따른 稅務公務員과 納稅者의 葛藤과 摩擦을 防止하고

— 궁극적으로는 稅務當局으로 하여금 稅務調査의 科學化를 圖謀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 이후 세무조사 착수분부터 적용

다. 稅務調査時 專門家의 助力을 받을 權利(法 §81의4, 施行令 §63의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納稅者가 稅務調査를 받는 경우에 辯護士·公認會計士 및 稅務士로 하여금 조사에 立會하게 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게 할 수 있음. ○ 助力을 받을 수 있는 稅務調査의 範圍 — 犯則事件의 調査 — 所得稅·法人稅·附加價値稅의 決定 또는 更正調査 — 相續稅 및 贈與稅 調査

(2) 改正理由

○ 納稅者가 稅務調査를 받을 때 租稅專門家의 助力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納稅者가 課稅官廳과 對等한 立場에서 調査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세법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납세자의 權益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 稅務公務員이 세무조사시 세무사 등의 立會나 意見陳述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明文化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 이후 세무조사 착수분부터 적용

라. 納稅者의 誠實性 推定(法 §81의5, 施行令 §63의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原則的으로 納稅者는 誠實하며, 納稅者가 提出한 申告書 등이 眞實한 것으로 推定 ○ 誠實性推定의 排除 경우 — 세법이 정하는 申告 등의 納稅協力義務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納稅者에 대한 具體的인 脫稅提報가 있는 경우 — 申告內容에 脫漏나 誤謬의 嫌疑를 認定할 만한 明白한 資料가 있는 경우 — 納稅者의 申告內容이 國稅廳長이 定한 基準과 比較하여 不誠實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新 設〉	○ 誠實性推定이 다음의 稅務調査를 하는 것을 制限하지는 아니함. — 無作爲抽出方式에 의한 標本稅務調査 — 최근 3事業年度(또는 3課稅期間)이상 稅務調査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申告內容의 適正性 與否를 檢證하기 위하여 행하는 稅務調査 — 政府의 調査決定에 의하여 課稅標準과 稅額이 確定되는 稅目에 있어서 課稅標準과 稅額을 決定하기 위하여 행하는 稅務調査

(2) 改正理由

○ 성실성추정규정은 納稅者가 申告義務나 장부의 기장·비치 등의 의무를 이행하고 특별히 탈세제보 등 조세면탈의 혐의가 없는 때에는 納稅者가 誠實한 것으로 推定하여 그 申告內容을 基礎로 課稅함으로써 誠實申告 納稅風土를 誘導하기 위한 宣言的 意味가 강하게 작용하는 규정임.

○ 이러한 선언적 취지에 불구하고 본 규정이 납세자의 申告內容에 대하여 稅務公務員이 質問하거나 長期間 稅務調査를 받지 않은 납세자에 대하여 稅務調査를 하는 것까지도 制限하는 것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고,

— 그렇게 될 경우 租稅行政의 執行에 莫大한 支障이 초래될 우려가 있어 一部 성실성 추정규정의 適用을 制限하는 예외 경우를 규정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부터 적용

마. 稅務調査의 結果通知(法 §81의7, 施行令 §63의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稅務公務員은 賦課處分을 위한 實地調査를 마친 때에는 그 調査結果를 書面으로 納稅者에게 通知 ○ 例外的 通知省略의 경우 — 閉業한 경우 — 納稅管理人을 정하지 아니하고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경우

(2) 改正理由

○ 第81條의 6(稅務調査의 事前通知와 延期申請)에서 조사개시 7일전에 조사기간, 조사대상 세목 및 조사사유 등을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것과 均衡을 維持하기 위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 이후 세무조사가 종료되는 것부터 적용

바. 祕密維持(法 §81의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稅務公務員은 業務上 取得한 資料 등을 他人에게 提供 또는 漏泄, 目的외 使用에 대해 原則的으로 禁止 ○ 例外的 提供가능 경우 ① 地方自治團體 등이 法律이 정하는 租稅의 賦課 또는 徵收의 目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② 國家機關이 租稅爭訟 또는 租稅犯의 訴追目的을 위하여 요구하는 경우 ③ 法院의 提出命令 또는 法官이 발부한 令狀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④ 稅務公務員 相互間에 國稅의 賦課·徵收 또는 質問·檢査上의 必要에 의하여 요구하는 경우 ⑤ 다른 法律의 규정에 따라 課稅情報를 요구하는 경우 ○ 要求·提供方法 및 留意事項 — ①, ②, ⑤에 의한 제공요구는 文書로 해당 稅務官署의 長에게 요구 — 課稅情報를 제공받아 알게 된 者 중 公務員이 아닌 者는 處罰 등에 있어서 公務員으로 봄 — 規程에 違反한 課稅情報의 제공을 요구받을시 稅務公務員은 이를 拒否하여야 함.

(2) 改正理由

○ 본 규정은 納稅者 個人이나 個別企業의 課稅情報가 課稅目的 以外에 他用途로 사용되는 것을 嚴格히 制限하여 私的祕密을 最大한 保護해 줌으로써 納稅者들이 安心하고 納稅協力義務를 履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

— 일반적인 國稅統計나 課稅行政에 관한 集合的 政策資料는 祕密維持의 對象에서 除外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부터 적용

사. 納稅者의 情報要求權(法 §81의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稅務公務員은 納稅者가 納稅者의 權利의 行使에 必要한 情報를 要求하는 경우 迅速하게 이를 提供하여야 함.

(2) 改正理由

○ 納稅者에게 세법상의 자신의 權利를 明確히 認識시켜 權利保護의 強化를 確保하기 위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부터 적용

아. 書類接受證交付制度(法 §85의4, 施行令 §65의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納稅者 등으로부터 課稅標準申告와 關聯된 書類 등을 提出받은 경우에는 稅務公務員은 納稅者 등에게 接受證을 交付 ○ 交付對象書類 –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이의신청서, 심사·심판청구서 – 세법상제출기한이 정해진 서류 –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한 서류 ○ 接受證交付의 例外事由 – 우편, 모사전송으로 제출한 경우 –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2) 改正理由

○ 현재 일선 稅務署 등에서 제대로 接受證을 交付하지 않음으로써 서류제출 여부에 대한 是非가 계속 發生하고 있어 納稅者의 權益保護 및 稅務行政의 確實性을 기하기 위한 것임.

– 다만, 현실적으로 접수증 교부가 困難한 경우 또는 납세자가 접수증 교부를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접수증 교부대상에서 除外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7. 1일 이후 접수분부터 접수증 교부

2. 租稅不服制度의 改善

가. 請求人適格性 擴大(法 §55②)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이 法 또는 稅法에 의한 處分에 의하여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받게 될 利害關係人은 違法 또는 不當한 處分을 받은 者의 처분에 대하여 審査 또는 審判請求를 하여 그 處分의 取消 또는 變更이나 기타 必要한 處分을 請求할 수 있음. ○ 利害關係人의 範圍 — 第2次納稅義務者로서 納付通知書를 받은 者 — 物的納稅義務를 지는 者로서 納付通知書를 받은 者 — 納稅保證人

(2) 改正理由

○제2차납세의무자, 납세보증인 등은 본 납세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利害關係를 갖는 當事者이면서도 直接的으로 權利를 侵害당한 것이 아니어서 審判請求 등을 할 수 없으므로,

— 그 처분에 대하여 處分의 當事者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를 取消할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위 이해관계자들이 이에 따른 부담을 지게 됨.

— 第3者的 地位에 있는 者라고 하더라도 當該 違法·不當한 處分 등에 의하여 權利 또는 利益의 侵害를 받은 者에 대하여 槪括主義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國稅基本法상의 租稅救濟制度의 趣旨로 보아 이를 許容한 것임.

※ 종전의 국세기본법통칙 7−1−06…55(제2차납세의무자의 불복)로 인정하던 것을 법제화한 것임.

〔參考〕 개괄주의 : 위법·부당한 처분에 의해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사항이면 제한없이 모든 사항이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부터 적용

나. 審査請求書 등의 補正期間 調整(法 §6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국세청장은 심사청구서가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일 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심판청구에 있어서 준용 10일	○ 20일(10일 연장) ○ 20일(10일 연장)

(2) 改正理由

○ 최근 不動產實名制 실시 및 金融所得綜合課稅로 인하여 不服請求가 增加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現行 補正期間(10일)은 보정요구서의 送付 및 回信期間을 감안할 때 짧다고 생각되므로

— 보정기간을 20일로 연장하여 청구인에게 보정기간을 충분히 줌으로써 청구인이 보정을 하지 못하여 却下되는 事例를 豫防하여 補正의 實效性을 確保하고자 하는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 이후 보정요구분부터 적용

3. 其他 補完事項

가. 連帶納稅義務者에 대한 書類送達方法 補完(法 §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함. 다만,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편의한 자를 명의인으로 함. 〈但書新設〉	○ …… …… …… …… 유리한 …… 다만, 납세의 告知와 督促에 관한 書類는 連帶納稅義務者 모두에게 各各 送達하여야 함.

(2) 改正理由

○ 連帶納稅義務者 1인에 대한 고지 또는 독촉은 다른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하여도 그 效力은 있으나, 通則에는 全員에게 告知 및 督促을 하도록 되어 있음.

— 통칙에 의하고 있는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세고지 및 독촉을 法에 明文化 함으로써 조세법률관계의 명확화를 통해 납세자의 權益을 한층 더 保護하기 위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

나. **遺置送達制度의 導入**(法 10④)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서류의 수령을 거부시 — 공시송달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이 正當한 事由없이 受領을 拒否한 때에는 送達할 場所에 書類를 둘 수 있다.

(2) 改正理由

○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는 등 납세에 조력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시송달 함으로써 納付期限이 延長(공고일로부터 10일 경과함으로써 송달효력 발생)되는 利益을 주게 되고,

— 賦課除斥期間이 임박한 경우, 公示送達을 하게 되면 期間經過로 賦課權 消滅事態가 發生할 憂慮가 있어 이를 防止하기 위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 이후 송달되는 분부터 적용

다. **公示送達事由의 調整**(法 §11①, 施行令 §7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受領人의 住所 등은 住民登錄表 등을 통하여 確認할 수 있으나 — 受領人의 不在로 送達할 수 없는 경우 公示送達

從　　前	改　　正
〈新　　設〉	○ 공시송달가능 경우 — 서류를 登記郵便으로 송달하였으나 受取人이 不在중인 것으로 確認되어 返送됨으로써 納付期限內 送達이 困難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稅務公務員이 2回以上 納稅者를 訪問하여 書類를 交付하고자 하였으나 不在中인 것으로 確認되어 納付期限內 送達이 困難한 것으로 認定되는 경우

(2) 改正理由

○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등이 不在中인 것으로 確認된 경우에 公示送達토록 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未備點을 補完한 것임.

※ 종전에는 부재중인 경우에는 별다른 처리방법이 없었음.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 이후 송달분부터 적용

라. 納付義務消滅事由의 調整(法 §2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멸한다. — 납부·충당, 부과의 취소 또는 缺損處分이 된 때	— 缺損處分이 된 때 : 削除

(2) 改正理由

○ 납부·충당 및 국세징수권의 消滅時效가 완성되는 경우 등에만 납부의무가 소멸하는 것이고

— 결손처분의 경우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反射的利益을 얻는 것에 불과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부터 적용

마. 租稅條約과 關聯한 賦課除斥期間에 대한 特例新設(法 26의2①)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但書新設〉	○ 다만, 租稅의 2重課稅防止를 위하여 締結한 條約의 規定에 의하여 相互合意節次가 進行中인 경우에는 國際租稅調整에關한法律 第25條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2) 改正理由

○ 국조법 제25조는 賦課除斥期間의 特例를 規定하여 國稅基本法(또는 지방세법상)의 賦課除斥期間과 상호합의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간의 기간중 나중에 到來하는 기간까지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 만일, 동 조항이 없다면 상호합의절차 진행중이라도 내국세법상의 부과제척기간이 종료할 경우 租稅債權의 確保를 위하여 課稅當局은 賦課處分을 強行하게 되므로

· 國家間의 信義가 損傷되고 租稅摩擦이 심화되는 문제를 초래하게 됨.

○ 그런데, 현행 국조법 제25조는 國稅基本法에서 特例規定 設置를 許容하는 範圍에서 除外되어 國稅基本法 第3條에 의해 效力이 制限받게 될 소지가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 현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것부터 적용

〔參考〕: 國稅基本法 第3條(稅法 등과의 關係)

— 國稅基本法은 다른 稅法에 優先하여 適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도 세법의 하나 : 국기법 제2조제2호)

— 다만, 다음의 경우 세법에 특례규정이 있는 때에는 당해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함

· 제2장 제1절 : 국세부과의 원칙

- 제3장 제2절, 제3절, 제5절 : 납세의무의 승계, 연대납세의무, 납세 담보
- 제5장 제1절 : 관할관청
- 제6장 제51조 :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 제8장 : 보칙

바. 國稅還給金의 充當 및 還給制度 補完(法 §5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源泉徵收義務者가 원천징수하여 納付한 稅額에서 還給받을 還給稅額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納付하여야 할 다른 源泉徵收稅額에 充當한 後의 殘餘稅額만을 納付할 수 있음. 다만, 源泉徵收한 稅額間의 充當은 所得稅法上의 所得稅徵收額集計表에 그 充當·調整內譯을 記載하여 申告한 경우에 한함.
〈新 設〉	○ 세무서장은 國稅還給金의 決定이 取消됨에 따라 이미 充當 또는 支給된 金額의 返還을 請求할 때에는 國稅徵收法의 告知·督促 및 滯納處分의 規定을 準用함.

(2) 改正理由

1) 源泉徵收稅額의 稅目間 充當·還給

○ 充當은 납세자의 납부할 조세와 과세관청이 환급할 국세환급금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경우 그 대등액에 있어서 서로 同時에 消滅시키는 것으로

- 그 성질은 民法上의 相計制度와 유사한 것으로서 환급과 징수에 따르는 節次上의 煩雜을 簡素化하는 데 의의가 있음.
- 稅目間 充當·還給을 許容함으로써 업무의 簡便性을 제고하고 납세자의 便宜를 도모하고자 함.

2) 國稅還給金 決定取消時 返還節次

○ 종전 국세환급금 결정취소시 國稅基本法通則에 의거 國稅徵收法이 아닌 豫算會計法을 準用하여 返納告知書를 발부하나,

— 미반환시 強制執行을 할 수 없어서 동 환급금을 반환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國稅徵收法의 告知·督促 및 滯納處分의 規定을 準用하고자 하는 것임.

〔參考〕

※ 기본통칙 6-0-17…51〔국세환급금의 결정취소에 따른 환급금과 이자의 회수〕

○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 또는 환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28조(지출된 세출금의 반납과 세입편입)·제31조(세출과목으로의 지출금반납) 및 지출관사무처리규칙(총리령) 제30조(지출금의 반납절차)·제31조(반납고지서 등의 망실 또는 훼손의 경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일부터 적용

第 2 章　國稅徵收法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1949년 : 國稅徵收法의 制定

① 국세의 우선 및 징수의 순위에 관해 규정한다.
②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해 규정한다.
③ 서류의 송달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한다.
④ 징수의 유예와 독촉, 체납처분에 대해 규정한다.
⑤ 압류절차와 압류의 해제 및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해 규정한다.
⑥ 청산 및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해 규정한다.
⑦ 벌칙 등 기타의 사항을 규정한다.

1951년

① 법인해산시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다.
② 법인의 재산으로서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부족있을 경우의 무한책임사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다.

1952년

① 동족회사의 체납금납부의무를 규정한다.
② 오납된 국세 등을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1961년 (전면개정)

① 국세의 우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승계를 규정한다.
②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관리인 제도를 둔다.
③ 납세완납증명서와 관청의 인허가 사업 등을 규정하여 징수를 강화한다.
④ 체납액의 분납규정 등을 두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한다.
⑤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⑥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신설한다.

1962년

① 독촉수수료제도를 가산금제도로 한다.
②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게 한다.
③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를 규정한다.
④ 자동차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⑤ 야간수색을 할 수 있는 영업장을 정한다.

1963년

① 체납액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등을 조정한다.

1964년

①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국채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써 갈음할 수 있게 한다.

1966년

① 정부기관 개편에 의한 국세청의 신설에 따라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개칭하는 등 관계 조문을 정리한다.

1967년

① 과오납금의 충당·환부처리기간을 규정한다.
② 징수유예규정을 완화한다.
③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④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범위를 확대한다.

1969년

① 서식과 관련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1970년

① 제2차납세의무, 압류 등 청산 등에 대해 조정한다.
② 담보물 및 호수변경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다.

1971년

①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한다.
③ 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한다.

1973년

① 과오납부금의 환부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1974년

① 국세기본법의 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관 또는 정리한다.

1977년

① 부가가치세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정한다.

1980년

① 서식을 개정한다.

1981년

①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사유를 추가한다.
② 급여금의 압류한도액을 조정한다.
③ 결손처분사유를 신설한다.
④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조정한다.

1983년

① 체납세금에 대한 가산금 부담을 완화한다.
② 체납처분유예제도를 신설한다.
③ 압류재산공매의 대행을 조정한다.
④ 재산압류요건을 보완한다.
⑤ 참가압류의 효력의 시기조정 등 기타의 사항을 조정한다.

1984년

① 공매대행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둔다.
② 납부서·납세고지서의 서식을 개정한다.

1988년

① 징수유예통지서 등 6개 서식을 변경함과 동시에 서식상의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다.

1991년

① 서식 등을 개정한다.

1992년

①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신청절차의 간소화대상을 추가한다.
② 국세의 자동이체납부제도를 도입한다.
③ 체납국세의 금융기관 수납기한을 연장한다.
④ 기타의 개정으로 여러 서식을 개정한다.

1993년

①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범위를 축소하는 등 과도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조정한다.
② 중가산금의 가산율 및 기간을 개선하는 등 신속한 체납액 정리를 위해 제도를 개선한다.
③ 공매대행의뢰시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한다.

1994년

① 상호합의절차 진행중 징수유예를 허용한다.
② 체납국세의 금융기관 납부범위를 확대한다.
③ 납세완납증명서의 발급절차를 간소화한다.
④ 자동이체납부의 대상국세를 확대한다.
⑤ 독촉장 발부기한을 연장한다.

1996년

①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제도를 개선한다.
② 체납·손금처분자료 제공의 근거규정을 신설한다.
③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④ 초과압류금지규정을 신설한다.
⑤ 공매대금의 납부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다.
⑥ 공매공고내용을 조정한다.

第 2 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이하에서 법이란 국세징수법을 말하며, 영이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국세징수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949년 : 國稅徵收法의 制定

◉ 법　　률 : 1949.12.20　법　　률　제　82호(시행일 : 1949. 12. 20)

〈要　　約〉

○ 국세의 우선 및 징수의 순위에 관해 규정한다.
○ 납세의무의 승계 및 연대납세의무에 관해 규정한다.
○ 서류의 송달 및 징수에 대해 규정한다.
○ 징수의 유예와 독촉, 체납처분에 대해 규정한다.
○ 압류절차와 압류의 해제 및 압류재산의 매각에 대해 규정한다.
○ 청산 및 납세의무의 소멸에 관해 규정한다.
○ 벌칙 등 기타의 사항을 규정한다.

〈制定內容〉

1. 國稅의 優先

(1) 國稅 또는 그 滯納으로 因한 督促手數料, 滯納處分費는 다른 公課와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함.
(2) 國稅의 優先排除
① 國稅, 그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다른 公課의 滯納處分으로 因한 滯納處分金額 中에서 徵收할 경우 그 公課의 督促手數料·滯納處分費
② 強制執行·競買·破產手續 費用
③ 國稅納付期限 1年前에 設定한 質權·抵當權에 依하여 擔保된 債權. 但, 當該 財產에 賦課된 國稅·督促手數料, 滯納處分費 除外

2. 徵收의 順位

國稅, 督促手數料 및 滯納處分費의 徵收順位는 (1) 滯納處分費, (2) 督促手數料, (3) 國稅의 順位로 함.

3. 納稅義務의 承繼

(1) 相續開始의 境遇에는 相續財團 또는 相續人으로부터 徵收
(2) 戶主의 死亡 以外의 原因으로 因한 相續開始의 경우는 被相續人으로부터 徵收
(3) 國籍喪失로 因한 相續人 또는 限定承認을 한 相續人은 相續으로 因한 財産의 限度內에서 納稅義務를 지도록 함.

4. 連帶納稅義務

(1) 共有, 共同事業, 共同事業에서 생긴 物件에 관계되는 國稅와 그 督促手數料, 滯納處分費는 그 共同者 또는 共同事業者가 連帶하여 納付할 義務를 지도록 하였다.

5. 書類의 送達

(1) 公示送達
  (가) 事由
    ① 住所 또는 居所에서 書類受取를 拒否하였을 때
    ②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가 없을 때
    ③ 住所 또는 居所가 不明할 때
  (나) 期間 : 7日

6. 徵 收

(1) 서울特別市, 市, 邑面은 그 管轄地域內의 地稅와 國稅를 徵收하여 國庫에 送付할 責任을 짐.
(2)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또는 서울特別市, 市, 邑面은 納稅義務者에게 納付金額 納付期日과 納付場所를 指定告知하여야 함.
(3) 納期前 徵收
  ① 國稅의 滯納으로 滯納處分을 받을 때.
  ② 地方稅 또는 其他 公課에 對하여 滯納處分을 받을 때.
  ③ 強制執行을 받을 때.
  ④ 破産宣告를 받을 때.

⑤ 競賣가 開始되었을 때.
⑥ 法人이 解散한 때.
⑦ 相續人이 限定承認을 한 때.
⑧ 脫稅, 또는 逋脫을 꾀하려고 하는 行爲가 있다고 認定할 때.

7. 徵收猶豫

(1) 納稅者가 非常의 災害를 입어 政府에서 그 被害를 調査하기 爲하여 時日이 必要할 때는 그 期間 國稅의 徵收를 猶豫할 수 있음.

8. 督 促

(1) 納期內에 稅金을 完納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 期間을 指定하여 督促함.
(2) 督促手數料를 징수함.

9. 滯納處分

(1) 押留要件
다음에 該當하는 경우에 納稅者의 財產을 押留하도록 함.
① 督促을 받고 期限內 國稅와 督促手數料를 完納하지 아니할 때
② 納期前 徵收의 境遇 國稅納付의 告知를 받고 指定 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할 때
(2) 搜索의 權限과 方法
① 財產을 差押하기 爲하여 必要할 때에는 滯納者의 家屋, 船舶, 倉庫 其他 場所를 搜索하거나 閉鎖된 戶扉, 筐匣을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음.
② 滯納者의 財產을 占有하는 第3者가 그 財產의 引渡를 拒否할 경우에도 前項과 같으며 第3者에 滯納者의 財產을 隱匿한 嫌疑가 있을 때도 위와 같음.
③ 搜索은 日出時부터 日沒時까지에 限하되 다만, 日沒前에 開始한 搜索은 日沒後에도 繼續할 수 있음.
④ 搜索 또는 檢查를 할 때 滯納者 또는 ②에 揭記한 第3者이거나 그 家族, 事務員, 使喚 또는 同居人으로 하여금 證人으로 立會시켜야 함. 立會할 者가 없을 때 또는 立會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成年者 2人 이상이거나 서울特別市, 市, 邑面의 公務員 또는 警察官吏를 證人으로 立會시켜야 함.

⑤ 財產을 差押함에 있어서 必要할 때에는 그 財產의 所在 또는 計數를 證明할 수 있는 帳簿 書類를 領置할 수 있음.

⑥ 公務員이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 差押할 財產 또는 그 計數를 知悉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滯納者와 去來關係가 있다고 認定되는 第3者에 對하여 質問을 하거나 그 去來關係가 있는 帳簿, 書類 또는 物件을 檢查할 수 있음.

(3) 詐害行爲의 取消 :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 滯納者가 財產差押을 免하고자 故意로 그 財產을 讓渡하고 또는 그 讓受人이 그 情(의도)을 알고 讓受하였을 境遇에는 政府는 그 所爲의 取消를 要求할 수 있음.

(4) 押留效力

① 押留效力은 差押物로부터 생기는 天然과 法定의 果實에 미침

② 滯納處分은 裁制上의 假差押 또는 假處分으로 因하여 그 執行이 拘碍되지 아니함.

(5) 押留禁止財產

① 滯納者와 同居家族의 生活上 없어서 아니될 衣服, 寢具, 家具와 廚房具

② 滯納者와 同居家族의 必要한 3月間의 飮料와 柴炭

③ 實印, 職業에 必要한 印章

④ 祭祀, 禮拜에 必要한 물건, 石碑와 墓地

⑤ 喪事, 葬禮에 必要한 物件

⑥ 族譜, 帳簿, 書類

⑦ 職務上의 制服, 法衣

⑧ 勳章, 章票

⑨ 修學上 必要한 書籍, 器具

⑩ 發明, 著作에 關한 것으로 未公表의 것

(6) 條件附 押留禁止財產

職業에 必要한 器具, 材料 또는 農業에 必要한 器具, 種子, 肥料, 家畜과 그 飼料는 滯納者가 國稅, 그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補償할 만한 다른 物件을 提供한 때에는 差押하지 아니함.

10. 押留節次

(1) 動產과 有價證券의 押留는 稅務公務員이 占有함으로 行하되 債權이 設定된 物件은 債權者가 債權을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에 讓渡하여야 함.

(2) 債權을 押留할 때는 그 뜻을 債務者에게 通知

(3) 債權과 所有權 以外 財產權을 押留할 때에는 그 뜻을 權利者에게 通知
(4) 不動產이나 船舶을 押留할 때에는 押留登記를 所管登記所에 촉탁하여야 함.
(5) 그밖에 差押한 財產에 對하여 第3者가 그 財產의 所有權을 主張하며 返還을 請求하고자 할 때에는 賣却 5日前까지 所有者로 確認할 만한 證憑을 具備하여 提出하여야 함.

11. 押留의 解除

押留解除에 關하여서는 登錄稅의 納付를 要하지 아니함.

12. 押留財產의 賣却

(1) 公 賣
動產, 有價證券, 不動產, 債權押留에 의하여 稅務公務員이 第三債務者로부터 給付를 받은 物件.
(2) 公賣에 붙여도 買受人이 없거나 또는 그 價格이 見積價額에 達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見積價格으로 政府에서 買上할 수 있음.
(3) 公賣中止
數種의 物件을 公賣에 붙일 때 一部의 公賣代金으로 徵收金額에 達한 때
(4) 隨意契約
公益上 必要할 때 또는 見積價格이 僅少하여 그 公賣費用을 補償할 수 없는 物件
(5) 滯納者와 差押物件의 賣却하는 地方의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은 直接 間接을 不問하고 賣却物件을 買受하지 못함.
(6) 滯納處分費는 財產의 差押, 保管, 運搬과 公賣에 關한 費用 또는 通信費로 함.
(7) 差押財產의 賣却代金, 差押通貨와 債權의 差押으로 因하여 生한 通貨는 滯納處分費, 督促手數料와 國稅 또는 其他 公課와 債權의 辨濟에 充當하고도 殘餘가 있을 때에는 滯納者에 交付함.
(8) 本法에 依하여 債權者 또는 滯納者에게 交付할 金錢은 供託할 수 있음.
(9) 滯納處分을 終結하거나 또는 中止하였을 때에는 納稅義務와 督促手數料, 滯納處分費의 納付義務는 消滅함.

13. 淸 算

(1) 滯納處分費는 財産의 差押, 保管, 運搬과 公賣에 關한 費用 또는 通信費로 함.

(2) 差押財産의 賣却代金, 差押通貨와 債權의 差押으로 因하여 生한 通貨는 滯納處分費, 督促手數料와 國稅 또는 其他 公課와 債權의 辨濟에 充當하고도 殘餘가 있을 때에는 滯納者에 交付함.

14. 納稅義務의 消滅

滯納處分을 終結하거나 또는 中止하였을 때에는 納稅義務와 督促手數料, 滯納處分費의 納付義務는 消滅함.

15. 罰 則

(1) 滯納者 또는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者가 그 財産을 藏匿, 脫漏하거나 또는 虛僞의 契約을 하였을 때에는 1月 以上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

(2) 差押物件의 保管者가 그 保管한 物件의 藏匿, 脫漏, 消費 또는 故意로 毁損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음.

(3) 그 情(의도)을 알고 (2)의 行爲를 幇助하거나 虛僞의 契約을 承諾한 者는 1月 以上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禁錮에 處함.

(4) (3)의 境遇에 刑法에 있어서 該當罰條가 있는 것은 本條를 適用하지 아니함.

1951년

◉ 법　　률 : 1951.6.22. 법　　률 제　208호(시행일 : 1951.6.22.)

〈要　　約〉

○ 법인해산시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다.

○ 법인의 재산으로서 국세독촉수수료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부족있을 경우의 무한책임사원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한다.

〈改正內容〉

1. 連帶納稅義務

(1)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2) 法人解散時 : 淸算人
(3) 法人財産 不足時 : 無限責任社員

2. 滯納處分

(1)~(4)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5) 押留禁止財産
①~⑩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⑪ 法令에 의한 死亡給與와 傷痍給與金(新設)
(6)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1952년

◉ 법 률 : 1952.11.5. 법 률 제 257호(시행일 : 1952.11.5.)

〈要 約〉

○ 동족회사의 체납금납부의무를 규정한다.
○ 오납된 국세 등은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한다.

〈改正內容〉

1. 納稅義務의 承繼

(1)~(3)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4) 法人合併의 境遇에는 存續 또는 設立된 法人(新設)

2. 連帶納稅義務

(1)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2) 법인해산시 청산인의 연대납세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로 규정함.
(3)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3. 第2次 納稅義務(新設)

(1) 法人이 解散한 境遇에 있어서 當該法人에 賦課될 때는 當該法人이 納付할 國稅等을 納付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 또는 引渡한 境遇
① 淸算人 : 分配 또는 引渡한 財産의 限度內
② 分配 또는 引渡를 받은 者 : 受益한 財産의 限度內
(2) 滯納者가 所有하는 同族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가 다음에 該當하고 當該滯納者의 財産으로서는 徵收한 國稅 등에 不足될 境遇에는 當該 同族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의 價額限度로, 當該會社는 滯納金의 納付義務를 짐.
① 當該株式 또는 出資를 再公賣 또는 隨意契約에 依한 賣却에 對하여도 買受希望者가 없거나 또는 政府의 評價價格에 達하지 아니할 때
② 當該株式 또는 出資가 法律 또는 定款으로써 讓渡가 制限되어 있을 때

4. 滯納處分時 押留의 要件

(1) 押留要件
①~②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③ 納稅者가 忌避할 憂慮가 있어서 納期를 기다려서 稅金을 徵收하기 困難하다고 認定될 때에는 納稅保證人을 即時 選定할 것을 要求할 수 있음. 納稅者가 納稅保證人選定에 不應할 때는 卽時 差押할 수 있음.
(2)~(6) : 전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1961년 (전면개정)

◉ 법　　률 : 1961.12. 8. 법　　률 제　819호(시행일 : 1962.1.1.)
◉ 시 행 령 : 1961.12.30. 대통령령 제　328호(시행일 : 1962.1.1.)

〈要　　約〉

○ 국세의 우선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며, 합병법인의 납세의무승계를 규정한다.
○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납세관리인 제도를 둔다.
○ 납세완납증명서와 관청의 인허가 사업 등을 규정하여 징수를 강화한다.
○ 체납액의 분납규정 등을 두며, 납세고지서에 세액산출근거를 기재하도록 한다.
○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한다.
○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신설한다.

〈改正內容〉

※ 전반적 흐름

國稅徵收法은 國稅徵收에 관한 諸般節次를 規定하는 法으로서 國民의 財產權과 깊은 關聯을 갖는 法律인데 從前의 國稅徵收法은 內容 自體가 抽象的으로 表現되어 國民의 財產權을 侵害할 憂慮가 있었으며 더욱이 社會與件의 變化와 民法과 民事訴訟法 등 財產權에 관한 基本法律이 改正됨으로 因하여 法自體도 矛盾을 나타내 現實과 遊離되는 點이 많아 法運營上 隘路가 많았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 未備點을 補完하고 現實에 符合되도록 細分規定하고 國稅徵收의 確保와 稅法上의 物權公示의 原則을 調整하여 法體系의 確保를 期하였다. 또한 施行令과 施行規則 및 通牒에 흩어져 있던 重要規定과 租稅徵收臨時措置法의 規定들을 吸收·統合하였다.

그 主要 改正內容을 보면 다음과 같다.

㈎ 國稅는 다른 公課金과 債權에 優先하여 徵收하던 것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例外로 認定하도록 하였다.

地方稅 또는 公課金의 滯納으로 因하여 滯納處分을 할 때 그 滯納處分額 中에서 國稅를 徵收하는 경우에는 그 地方稅 또는 公課金의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優先權을 주었고, 強制執行, 競賣 또는 破產節次로 因하여 생긴 金額 中에서 國稅를 徵收하는 경우, 強制執行·競賣·破產節次費用과 國稅의 納付期限으로부터 一年前에 設定된 債權 또는 抵當權의 目的이 되는 財產權의 賣却代金에서 國稅를 徵收하는 경우 그 質權 또는 抵當權에 의하여 擔保된 債權(그 財產權에 대하여 賦課된 國稅는 例外)은 國稅에 優先하여 辨濟를 받도록 하였다.

(나) 納稅義務의 承繼에 있어서는 法人이 合併하였을 경우,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은 合併에 의하여 消滅된 法人이 納付하여야 할 國稅와 그 消滅法人이 이미 滯納한 國稅·督促手數料 및 滯納處分費에 대하여 納付할 義務를 承繼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相續開始의 경우, 相續人은 被相續人이 納付하여야 할 國稅와 이미 滯納한 國稅手數料 및 滯納處分費를 相續으로 因하여 얻은 財產을 限度로 國稅納付義務를 承繼하도록 하였다.

(다) 國稅債權 確保를 保障하기 위하여 第2次 納稅義務를 擴大規定하였다.

(1) 法人의 淸算人 등의 第2次 納稅義務

(2) 無限責任社員의 第2次 納稅義務

(3) 寡占株主 등의 第2次 納稅義務

(4) 寡占株主 등에 관한 法人의 第2次 納稅義務

(5) 事業讓受人의 第2次 納稅義務

(6) 讓渡擔保權者의 物的納稅義務를 規定하였다.

(라) 納稅者가 納稅地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 納稅에 關한 事項을 處理하기 위하여 納稅管理人을 두도록 하고 이를 稅務署長에게 申告토록 하였다.

(마) 國家, 公共團體, 政府管理機關과 契約을 締結할 때와 代金支拂을 받을 때, 認·許可 申請을 하거나 그것을 更新한 때 納稅完納證明書를 提出토록 하였다.

(바) 官許事業을 經營하는 納稅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國稅를 滯納한 경우, 稅務署長은 關係許可廳에 事業의 停止 또는 許可의 取消를 要請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滯納者가 滯納額을 一時에 納付할 수 없는 경우 擔保를 받은 후 分納할 수 있게 하였고 이 경우 徵收猶豫證明을 發給해 주도록 하여 納稅者의 便利를 期하였다.

(아) 稅額算出根據를 納稅者에게 周知시키기 위하여 納稅告知書에 이를 明示하여 發付토록 하였다.

(자) 稅務署長은 押留한 財產에 대하여 國稅徵收에 支障이 없는 限 滯納者 혹은 其他權利를 가진 第三者가 使用·收益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차) 押留한 財產을 公賣에 부쳐도 買收 希望者가 없거나, 入札價格이 見積價格에 未

達할 때는 再公賣하게 되는데, 3回때부터는 公賣時마다 見積價格의 $\frac{10}{100}$에 該當하는 金額을 減하도록 하였다.

㈎ 押留財産의 賣却代金은 配分順位와 金額을 定하여 國稅督促手數料·滯納處分費·其他 債權에 配分하도록 하고, 押留財産의 販賣代金을 配分할 때는 配分計算書를 作成, 滯納者에게 交付하도록 하였다.

㈏ 滯納者의 財産이 있더라도 滯納處分의 實益이 없는 때에는 滯納處分을 中止하고 納稅義務를 消滅시키는데 이 경우 1個月間 公告토록 하였다.

㈐ 國稅徵收에 있어 大量 또는 反復的으로 發生하는 滯納額整理에 대하여 公正하고 迅速한 處理를 위하여 各 司稅廳과 主要都市 稅務署에 國稅滯納整理委員會를 設置하여 滯納處分中止와 滯納額徵收猶豫 등을 審議토록 하였다.

1. 國稅의 優先

(1)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2) 국세의 우선배제

①~③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④ 納稅者의 財産을 國稅의 滯納處分에 依하여 押留하였을 境遇에 다른 國稅·地方稅 등에 關하여 交付請求가 있을 때에는 押留에 關係되는 國稅를 優先하여 徵收함.

⑤ 納稅者의 財産을 地方稅의 滯納處分에 依하여 押留하였을 境遇에 國稅 등에 關하여 交付 請求를 한 때에는 押留에 關係되는 地方稅를 交付請求에 關係되는 國稅 等에 優先하여 徵收함.

⑥ 納稅擔保가 되어 있는 財産을 賣却하였을 때에는 ⑤의 規定에 不拘하고 그 國稅 等을 地方稅에 優先하여 徵收함.

2. 納稅義務의 承繼

(1) 法人合併의 境遇는 合併後 存續 또는 設立된 法人

(2) 相續의 境遇에 相續人 또는 財産管理人(相續으로 因하여 얻은 財産을 限度로 함.)

(3) (2)의 境遇, 相續人이 2人 以上일때는 按分計算함.

3. 連帶納稅義務

— 법인재산부족시 무한책임사원의 연대납세의무를 제2차 납세의무로 규정함.

4. 第2次 納稅義務

(1) 淸算人의 第2次納稅義務 : 法人이 解散한 境遇에 있어서 그 法人에 賦課된 또는 그 法人의 納付할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納付하지 아니하고 殘餘財産을 分配하거나 引渡하였을 境遇 그 法人에 對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하여도 徵收할 金額에 不足이 있을 때

① 淸算人 : 分配 또는 引渡한 財産을 限度

② 分配 또는 引渡를 받은 者 : 分配 또는 引渡를 받은 財産을 限度

(2) 無限責任社員의 第2次納稅義務 : 法人의 財産으로써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充當하여도 不足이 있을 境遇에는 그 法人의 無限責任社員은 滯納에 關係된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의 不足額에 對하여 第2次 納稅義務를 짐.

(3) 寡占株主의 第2次納稅義務 : 滯納된 國稅의 最終納期日 現在 다음에 該當하는 法人의 株主 또는 社員은 그 法人의 滯納額에 關하여 各人의 未拂入資本金의 限度額內

① 株主 또는 社員의 1人과 그 親族 其他 그와 閣令으로 定하는 特殊關係가 있는 個人(寡占株主)이 가진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合計額이 그 法人의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100分의 50 以上에 相當하는 法人

② 株主 또는 社員의 2人과 그들의 寡占株主가 가진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合計額이 그 法人의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100分의 60 以上에 相當하는 法人

③ 株主 또는 社員의 3人과 그들의 寡占株主가 가진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合計額이 法人의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100分의 70 以上에 相當하는 法人

(4) 寡占株主에 관한 法人의 第2次納稅義務 :

① 寡占株主가 다음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고 그 財産(그 會社의 株式 또는 出資는 除外함)으로써는 徵收할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不足한 때에는 그 寡占株主의 株式 또는 出資의 價格限度로 그 法人은 關係된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對하여 第2次納稅義務를 짐.

- 寡占株主의 株式 또는 出資를 再公賣 또는 隨意契約에 依하여 賣却하여도 買受希望者가 없거나 政府의 評價額에 達하지 아니할 때
- 寡占株主의 株式 또는 出資가 法律 또는 定款으로써 讓渡가 制限되어 있을 때

② ①이 規定에 依하여 法人이 지는 第2次 納稅義務는 그 法人의 資産總額에서 債務總額을 控除한 額을 그 法人의 株式 또는 出資의 數로써 除한 額을 基礎로 하여 合算한 金額을 限度로 함.

(5) 事業讓受人의 第2次納稅義務 : 事業에 關하여 讓渡人에게 賦課될 또는 讓渡人이 納付한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對하여 讓渡人의 財産으로써는 그 徵收할 金額에 不足할 때에는 그 事業의 讓受人.

(6) 納稅義務者가 國稅를 滯納한 境遇 그 納稅者가 讓渡한 財産으로 그 讓渡에 依하여 擔保의 目的이 되어 있는 것이 있을 때에는 그 納稅義務者의 財産으로 滯納處分을 執行하여도 不足한 때 限하여 讓渡擔保 財産으로써 納稅義務者의 國稅를 徵收할 수 있음.

5. 納稅保全

(1) 納稅管理人

① 納稅義務者는 納稅地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때에는 納稅管理人을 定하여 申告하여야 함. 納稅管理人을 變更하였을 때에도 申告하여야 함.

(2) 納稅完納 또는 徵收猶豫證明書提出

① 國家 또는 公共團體 政府管理機關과 契約을 締結, 代金支拂 받을 때.

② 許可, 認可의 申請 또는 更新할 때.

(3) 官許事業의 許可停止와 取消

① 官許事業을 經營하는 者가 3回 以上 正當한 事由없이 國稅의 滯納을 하였을 때는 稅務署長은 當該主務官廳에 對하여 事業의 停止 또는 許可의 取消를 要求할 수 있음.

6. 書類의 送達

(1) 送 達

(가) 納稅의 告知, 督促과 滯納處分에 關한 書類는 그 名義人의 住所 또는 居所에 送達함.

(나) 名義人이 相續財産의 財産管理人인 때에는 그 財産을 管理人의 住所 또는 居所에 送達함.

(다) 納稅管理人이 있을 때에는 納稅의 告知와 督促에 關한 書類에 限하여 그 住所 또는 居所에 送達함.

(2) 公示送達

(가) 事由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 期間 : 10日

7. 徵 收

⑴ 市, 郡委託徵收

① 市長, 郡守는 그 管轄區域內의 國稅를 徵收하며 國庫에 送付할 責任을 짐.

② 政府는 徵收費用으로서 市長, 郡守에게 交付金을 交付함.

⑵ 納稅의 告知

① 稅務署長 또는 市長, 郡守는 納稅義務者에 對하여 稅目, 納付金額, 納付期日, 納付場所와 稅額의 算出根據를 明示한 告知를 發付하여야 함.

② 納稅義務者의 國稅, 督促手數料, 滯納處分費를 第2次納稅義務者로부터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稅目, 金額, 納付期限, 其他 必要한 事項을 告知하여야 함.

③ 讓渡擔保權者로부터 徵收코저 할 때에도 위와 같음.

⑶ 納期前 徵收

①~⑥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⑦ 制除(1949년 해당조항)

⑧ 國稅를 逋脫하고자 하는 行爲가 있다고 認定할 때.

⑨ 納稅管理人을 定하지 아니하고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한 때.

8. 徵收猶豫

⑴ 徵收猶豫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⑵ 滯納額의 徵收猶豫

㈎ 事 由

① 財産에 甚한 災害를 입었을 때.

② 事業에 顯著하게 損失을 받았을 때.

③ 事業이 重大한 危機에 處하여 있을 때.

㈏ 效果 : 猶豫期間中 滯納處分 不可(交付請求 除外)

㈐ 取消事由

① 滯納額을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할 때.

② 擔保의 變更, 其他 擔保保全에 必要한 稅務署長의 命令에 應하지 아니할 때.

③ 徵收猶豫를 받은 者의 財産狀況 其他 事情의 變化로 因하여 그 猶豫의 必要

가 없다고 認定할 때.

④ 納期前 徵收事由의 規定에 該當된 境遇에 있어서 그 猶豫한 期限까지 猶豫에 關係된 滯納額의 全額을 徵收할 수 없다고 認定할 때.

9. 督 促

(1) 督促手數料 : 滯納된 國稅의 100分의 10

(2) 督促狀 發付 : 納期經過後 10日後 5日 以內

(3) 納付期限 : 發付日로부터 10日

(4) 第2次 納稅義務者에 發付 ; 納稅經過後 5日內

10. 滯納處分

(1) 押留要件 :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2) 搜索의 權限과 方法

①~③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④ 搜索 또는 檢査를 할 때에는 滯納者 또는 위에 揭記한 第三者이거나 그 家族, 事務員, 使喚 또는 同居人으로 하여금 立會시켜야 함. 立會人이 없을 때 또는 立會에 應하지 아니할 때에는 成年者 2人이거나 市·都의 公務員 또는 警察官을 證人으로 立會시켜야 함.

⑤ 搜索을 하였으나 押留할 財産이 없을 때에는 搜索調書를 作成하여 滯納者 또는 立會人과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함. 搜索調書를 作成하였을 때에는 그 謄本을 搜索을 받은 滯納者 또는 立會人에게 交付하여야 함.

⑥ 稅務公務員이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 押留한 財産의 住所 또는 計數를 알고자 할 必要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質問하거나 帳簿, 書類 또는 物件을 檢査할 수 있음.

㉠ 滯納者

㉡ 滯納者와 去來關係가 있는 第三者

㉢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第三者

㉣ 滯納者에 對하여 債權, 債務關係가 있는 第三者

㉤ 滯納者가 株主, 社員 또는 出資者인 法人

⑦ 滯納者의 財産을 押留하였을 때에는 押留調書를 作成하고 그 押留財産이 다음

에 該當할 때에는 그 謄本을 滯納者에게 交付하여야 함.

㉠ 動產, 有價證券

㉡ 債權

㉢ 債權과 所有權을 除外한 財產權(無體財產權)

(3) 前과 같음(사해행위의 취소－1949년 해당조항)

(4) 滯納處分의 效力

① 押留된 質物의 引渡

質權이 設定된 財產이 있을 때에는 質權의 設定時期 如何에 不拘하고 그 質權者는 質物을 稅務公務員에게 引渡하여야 함.

② 假押留, 假處分 等 財產에 對한 滯納處分의 效力

滯納處分은 裁判上의 假押留 또는 假處分으로 因하여 그 執行이 되지 아니함.

③ 果實에 對한 押留의 效力

押留財產으로부터 생기는 天然 또는 法定果實에 미침. 但, 滯納者 또는 第三者가 押留財產의 使用 또는 收益을 할 境遇에는 그 財產으로부터 생기는 天然果實에 對하여는 미치지 아니함.

④ 相續 또는 合併法人의 滯納處分의 效力

㉠ 滯納者의 財產에 對하여 滯納處分을 執行한 後 滯納者가 死亡하였거나 또는 滯納者인 法人이 合併에 依하여 消滅된 때에도 그 財產에 對하여 한 滯納處分은 續行하여야 함.

㉡ 滯納者의 死亡後 그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對하여 滯納者의 名義의 財產에 對하여 한 押留는 그 財產을 가진 相續人에 對하여서 한 것으로 看做함.

(5) 押留禁止財產 :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6) 條件附押留禁止財產

滯納者가 國稅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補償할 만한 다른 財產을 提供하는 경우로서

① 農業에 必要한 機械, 器具, 家畜類, 飼料, 種子, 肥料

② 漁業에 必要한 漁網, 漁具, 漁船

③ 職業 또는 事業에 必要한 機械, 器具, 備品

(7) 給與의 押留制限

給料, 貸金, 俸給, 歲費, 退職年金 其他 이에 類似한 給與金에 對하여는 總額의 2分의 1을 超過하여 押留할 수 없음.

11. 押留節次

(1) 動產, 有價證券의 押留節次

① 稅務公務員이 占有함. 但, 運搬하기 困難한 押留財產은 市長, 郡守, 滯納者 또는 第三者로 하여금 保管하게 할 수 있음.

② 押留財產의 保管에 關하여서는 印紙稅를 非課稅함.

③ 押留動產의 使用, 收益

㉠ 押留한 動產을 滯納者에게 保管하게 하였을 境遇에는 國稅徵收에 支障이 없다고 認定될 때에 限하여 使用 또는 收益을 許可함.

㉡ 押留한 動產을 使用 또는 收益을 할 權利를 가진 第三者에게 保管하게 하였을 境遇에도 準用함.

④ 有價證券에 關한 債權 推尋

㉠ 稅務公務員은 有價證券에 關係되는 金錢 債權을 推尋할 수 있음.

㉡ 金錢을 推尋하였을 때에는 그 限度로써 滯納者의 押留에 關한 滯納額을 徵收한 것으로 看做함.

(2) 債權押留節次

① 債務者에게 通知하여야 함.

② 稅務公務員은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限度로 하여 債權者에게 代位함.

③ 債權押留의 効力發生時期

債權押留의 効力은 債權押留通知書가 債權者에게 送達된 때에 發生함.

④ 債權押留의 範圍發生時期

稅務公務員이 債權을 押留할 때에는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限度로 하여 押留하여야 함. 但, 押留할 債權이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超過하는 境遇에 있어서 稅務公務員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債權 全額을 押留할 수 있음.

⑤ 有價證券에 關한 債權 推尋

㉠ 稅務公務員은 有價證券에 關係되는 金錢 債權을 推尋할 수 있음.

㉡ 金錢을 推尋하였을 때에는 그 限度로써 滯納者의 押留에 關한 滯納額을 徵收한 것으로 看做함.

⑥ 繼續收入의 押留

給料, 賃金, 俸給, 歲費, 退職年金, 其他 이에 類似한 債權의 押留는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限度로 하여 押留後에 收入할 金額에 미침.

(3) 不動產 또는 船舶押留의 節次

① 押留登記를 管轄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함. 그의 抹消 또는 變更의 登記 또한 같음.

② 押留하기 爲하여 不動產을 分割하거나 區分할 때에는 稅務署長은 分割 또는 區分의 登記를 管轄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함.

③ 不動產 또는 船舶 押留의 效力發生時期

㉠ 押留通知書가 滯納者에게 送達된 때에 發生함.

㉡ 押留通知書의 送達前에 押留登記가 完了된 때에는 그 押留登記가 된 때에 押留의 效力이 發生함.

④ 抵當權者 等에 對한 押留通知

㉠ 質權 또는 抵當權이 設定된 財產을 押留할 때에는 그 債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함.

㉡ 國稅에 對하여 優先權을 가진 債權者가 ㉠의 通知를 받고 그 權利를 行使하고자 할 때에는 그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7日 以內에 證據書類를 添附하여 그 事實을 證明하여야 함.

⑤ 押留不動產과 船舶의 使用 收益

㉠ 滯納者는 押留한 不動產 또는 船舶을 使用 또는 收益할 수 있음. 但, 不動產 또는 船舶의 價値가 顯著하게 滅損될 憂慮가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그 使用 또는 收益을 制限할 수 있음.

㉡ 押留한 不動產 또는 船舶을 使用 또는 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三者에게도 準用함.

㉢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 必要할 때에는 船舶에 對하여 一時 停泊을 하게 할 수 있음. 但, 發航準備를 終了한 船舶에 對하여는 例外로 함.

⑥ 第三者의 所有權의 主張

押留한 財產에 對하여 所有權을 主張하고 返還을 請求하고자 하는 第三者는 賣却 5日前까지 所有者로 確認할 만한 證據書類를 稅務公務員에게 提出하여야 함.

(4) 無體財產權의 押留

① 無體財產權을 押留할 때는 權利者에게 通知하여야 함.

② 財產權의 移轉에 關하여 登記 또는 登錄을 要하는 것에 對하여는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을 關係官廳에 囑託하여야 함.

③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을 抹消하거나 變更할 때에도 이를 關係官廳에 囑託하여야 함.

(5) 歸屬財產의 押留(新設)

① 滯納者가 歸屬財產을 買受한 것이 있을 때에는 所有權移轉前이라도 그 財產의 政府에 對한 權利를 押留함.

② 滯納處分에 依하여 ①의 權利를 買收한 者가 買收金을 完納하였을 때에는 그 歸屬財產에 關한 滯納者의 政府에 對한 一切의 權利義務를 承繼함.

12. 押留의 解制

(1) 押留解除의 要件

① 納付, 充當, 公賣의 中止, 賦課의 取消, 其他의 事由로써 押留의 必要가 없을 때.

② 第三者의 所有權 主張이 相當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된 때.

③ 第三者가 滯納者를 相對로 所有權에 對한 訴訟을 提起하여 勝訴判決을 받고 그 事實을 證明한 때.

(2) 全部 또는 一部 解除 要件

① 押留後 價格의 變動 其他의 事由로 그 價格이 徵收할 滯納額의 全額에 對하여 顯著히 超過될 때.

② 押留에 關한 滯納額의 一部가 納付 또는 充當되었을 때.

③ 賦課의 一部가 取消되었을 때

④ 滯納者가 押留할 수 있는 다른 財產을 提供하여 그 財產을 押留한 때.

(3) 押留의 解除

① 稅務署長은 財產의 押留를 解除하였을 때에 財產에 押留通知를 한 權利者, 債權者 또는 第三者에게는 押留解除通知를 하여야 함.

②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을 한 것에 對하여는 押留 解除調書를 添附하여 押留抹消의 登記 또는 登錄을 關係官廳에 囑託하여야 함.

③ 第三者에게 押留財產의 保管을 하게 하였을 境遇에 그 財產에 對한 押留를 解除한 때에는 그 保管者에게 解除通知를 하고 押留財產은 滯納者 또는 正當權利者에게 返還하여야 함.

(4) 押留解除에 關하여는 登錄稅를 免除함.

13. 押留財產의 賣却

(1) 公 賣

動產, 有價證券, 不動產, 無體財產權(新設), 債權押留에 依하여 稅務公務員이 第三債務者로부터 給付를 받은 物件

(2) 削除(1949년 해당조항)

(3) 隨意契約

① 隨意契約에 依하지 아니하면 賣却代金이 滯納處分費에 充當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을 때.

② 腐敗 變質 또는 減量하기 쉬운 財產으로서 速히 賣却하지 아니하면 그 財產價

格이 滅損될 憂慮가 있을 때.

③ 見積價格이 5萬圓 未滿일 때.

(4) 公賣方法과 公告

① 公賣의 方法 : 入札 또는 競賣의 方法으로서 하여야 함.

② 公告事項

㉠ 滯納者의 姓名과 住所 또는 居所

㉡ 公賣財産의 名稱, 所在, 數量, 品質, 賣却見積價格, 其他 重要한 事項

㉢ 入札 또는 競買의 場所와 日時

㉣ 開札의 場所와 日時

㉤ 保證金을 받을 때에는 그 金額

③ 公告場所 : 稅務署, 稅關, 市, 郡 其他 適當한 場所에 揭示
但, 必要에 따라 官報 또는 新聞紙上에 揭載

④ 競賣의 方法에 依하여 財産을 公賣할 때에는 競賣人을 選定하여 이를 取扱하게 할 수 있음.

⑤ 公賣公告期間 : 公告한 날로부터 10日

⑥ 公賣通知 : 滯納者 納稅擔保物所有者와 그 財産上에 質權 또는 抵當權, 其他 權利를 가진 者에게 公賣期日, 公賣方法과 公賣場所 等을 通知하여야 함.

⑦ 公賣의 場所 : 稅務署, 稅關 또는 財産所在의 市·郡 但, 稅務公務員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다른 場所에서 公賣할 수 있음.

(5) 公賣實施

① 見積價格의 決定

㉠ 公賣에 붙일 財産의 見積價格을 定하여야 함.

㉡ 見積하기 어려울 때에는 鑑定人에게 委託하여 그 評價額을 參考할 수 있음.

② 公賣參加制限(2年間)

㉠ 入札을 하고자 하는 者의 公賣參加, 最高價格, 申請書의 決定 또는 買受人의 買受代金의 納付를 妨害한 者.

㉡ 公賣에 있어서 不當하게 價格을 떨어뜨릴 目的으로 談合한 者

㉢ 虛僞名義로 買收申請을 한 者

③ 公賣保證金

㉠ 入札保證金은 買受希望者의 見積價格의 100分의 10 以上, 契約保證金은 買受價格의 100分의 10 以上

㉡ 落札者 또는 競落者가 그 義務不履行時, 入札保證金은 國庫에 歸屬됨.

④ 入札과 開札

㉠ 入札하고자 하는 者는 그 住所, 居所, 姓名, 買受하고자 하는 財產의 名稱 入札價格과 入札保證金 其他 必要한 事項을 記載하여 開札時刻까지 提出하여야 함.

㉡ 開札은 入札이 全部完了한 後에 公開하여 이를 行하고 名記載된 入札價格을 불러서 入札調書에 記錄하여야 함.

㉢ 入札과 落札者는 見積價格 以上인 最高入札者를 落札者로 함.

㉣ 落札이 된 價格의 入札을 한 者가 2人 以上 있을 때에는 卽時 抽籤으로써 落札者를 정함.

㉤ 見積價格 以上인 入札이 없을 때에는 卽時 그 場所에서 再入札을 시킬 수 있음.

⑤ 再公賣

㉠ 財產을 公賣에 붙여도 買受希望者가 없거나 그 價格이 見積價格 以下일 때.

㉡ 公賣財產에 對하여 그 買受人이 買受代金의 納付期限까지 그 代金을 完納하지 아니한 때.

㉢ 2回公賣를 하여 流札되거나 또는 應札者가 없을 때에는 다음 公賣時마다 見積價格의 100分의 10에 該當하는 金額을 遞減함.

⑥ 公賣의 中止 및 取消

㉠ 公賣期日의 前日까지에 國稅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를 完納하였을 때는 公賣 中止

㉡ 公賣財產을 公賣期日前 押留解除하였을 때는 公賣取消 公告

⑦ 賣却決定通知書의 交付와 買受代金의 納付期限

㉠ 買收人에게 買受代金의 納付期限을 定하여 賣却決定通知書를 交付하여야 함. 登記 또는 登錄을 要하지 아니하는 財產으로서 買受代金을 卽時 納付시킬 때에는 口頭로 通知할 수 있음.

㉡ ㉠의 規定에 依한 納付期間은 7日 以內, 但,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에는 納付期間을 30日을 限度로 延長할 수 있음.

⑧ 買受代金의 納付催告

買收代金을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할 때.

⑨ 買受代金의 納付效果

㉠ 買受人은 買受代金을 納付할 때 賣却財產을 取得함.

㉡ 稅務公務員은 買受代金을 受領하였을 때에는 그 金額의 限度로써 滯納者로부터 滯納額을 徵收한 것으로 看做함.

⑩ 賣却決定의 取消

㉠ 催告하여도 買受者가 이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賣却決定을 取消함. 이 境遇에 契約保證金은 國庫에 歸屬됨.

㉡ "㉠"의 境遇에는 契約保證金 提供者에게 그 뜻을 通知하여야 함.

⑪ 賣却財産의 權利移轉節次

賣却財産에 對하여 滯納者가 權利移轉의 節次를 밟지 아니할 때에는 稅務署長이 代身하여 權利移轉의 節次를 밟음.

⑫ 買受人의 制限

㉠ 滯納者와 稅務公務員은 直·間接을 不問하고 押留財産을 買受하지 못함.

㉡ 歸屬財産을 押留하여 賣却할 境遇에는 歸屬財産處理法에 依한 買受人 制限에 關한 規定을 適用함.

14. 淸 算

(1) 配分金額의 範圍

① 押留한 金額

② 債權, 有價證券, 無體財産權 等의 押留로 因하여 第三債務者 等으로부터 納付를 받은 金額

③ 押留財産의 賣却代金

④ 交付請求에 依하여 交付받은 金錢

(2) 配分方法

① (1)의 ②－③의 金錢은 다음의 國稅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 其他의 債權에 配分함.

㉠ 押留에 關係된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

㉡ 交付請求를 받은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 地方稅 또는 公課金

㉢ 押留財産에 關係되는 質權 또는 抵當權 等에 依하여 擔保된 債權

② (1)－① 또는 ④, 金錢은 各 그 押留 또는 交付請求에 關係되는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充當함.

③ ②의 規定에 依하여 配分한 金錢에 殘餘가 있을 때에는 그 殘餘의 金錢은 滯納者에게 還付함.

④ 賣却代金이 ① 各號의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 其他의 債權의 總額에 不足될 때에는 稅務署長은 民法 其他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配分할 順位와 金額을 定하여 配分하여야 함.

15. 納稅義務의 消滅

(1) 滯納處分의 中止와 公告

①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總財產의 見積價格이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充當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을 때에는 滯納處分을 中止하여야 함.

②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產이 債權 또는 抵當權 등 債權의 擔保가 된 財產인 境遇에는 그 賣却見積價格이 督促手數料, 滯納處分費와 그 債權金額에 充當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을 때에도 또한 ①과 같음.

③ ②의 規定에 依하여 滯納處分의 執行을 中止하고자 할 때에는 稅務署長은 國稅滯納整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1個月間 公告하여야 함.

(2) 缺損處分

稅務署長은 納稅者에 對하여 다음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을 때에는 缺損處分을 할 수 있음.

①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充當될 配分金額이 그 滯納額에 不足될 때.

② 滯納處分의 中止事由에 該當될 때.

③ 國稅의 消滅 時效가 定成된 때.

④ 閣令의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收할 可望이 없을 때.

(3) 納稅義務의 消滅

納付, 充當, 公賣의 中止, 賦課의 取消, 기타의 事由로써 押留의 必要가 없을 때 또는 2의 規定에 該當될 때에는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의 納付義務는 消滅됨.

但, 2의 ①과 ②의 境遇에 缺損處分當時 다른 押留할 財產이 따로 있었음을 缺損處分後 發見하였을 때에는 例外로 함.

(4) 國稅의 消滅時效

① 國稅徵收를 目的으로 하는 國家의 權利(徵收權)는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로부터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함.

② 國稅의 過誤納으로 因하여 생긴 國家에 對한 請求權은 그 權利를 行使할 수 있는 때로부터 5年間 行使하지 아니할 때에는 時效로 因하여 消滅함.

③ 國稅 徵收權의 時效에 關하여 本法에 規定이 없는 것은 民法의 規定을 準用함.

(5) 時效의 中斷

① 國稅 徵收權의 時效는 다음 處分의 效力이 發生한 때에 中斷함.

㉠ 納稅에 關한 告知

㉡ 督促 또는 納付催告

㉢ 交付請求

② ①의 規定에 依하여 中斷된 時効는 다음의 期間을 經過한 때로부터 다시 進行함.

㉠ 告知한 納付期間

㉡ 督促 또는 納付催告에 依한 納付期間

㉢ 交付請求中의 期間

③ 國稅 徵收權의 時効는 徵收猶豫 또는 年賦延納許可 期間中에는 進行하지 아니함.

16. 過誤納金

(1) 充當 및 讓渡

過誤納된 國稅 督促手數料, 滯納處分費와 還付加算金은 다른 未納의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充當하거나 또는 第三者에게 讓渡할 수 있음.

(2) 還付加算金計算

① 納稅者가 納付한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過誤納이 있을 境遇에는 그 過誤納額을 金錢으로써 還付하거나 國稅 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充當할 때에는 過誤納金의 納付日의 翌日부터 還付하기 위하여 支出 또는 充當한 날까지 過誤納金 百圓에 對하여 日邊 5錢으로 計算한 金額을 還付 또는 充當할 金額에 加算

② 稅務署長이 過誤納金이 있음을 納稅義務者에게 通知한 境遇에 있어서 그 通知書를 發付한 날로부터 30日 以內에 그 過誤納金의 還付를 請求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翌日부터 請求한 날까지 還付加算金을 計算하지 아니함.

(3) 還付加算金 計算日의 起算

① 2 以上의 納期 또는 2回 以上 分割納付한 國稅督促手數料와 滯納處分費에 대하여 過誤納이 있을 경우는 그 過誤納金額에 相當하는 國稅에 達할 때까지 納付日의 順序에 따라 最後에 納付된 金額에서 循次로 遡及하여 計算한 過誤納額이 各 納付日에 생긴 것으로 看做하여 計算함.

② 國稅를 納付한 後 法律의 變更으로 因하여 過納이 되었을 때에는 그 過納額에 相當한 國稅는 그 過納이 된 날에 納付한 것으로 看做함.

17. 罰則規定 : 削除

1962년

◉ 법　　률 : 1949.12. 8. 법　　률 제1207호(시행일 : 1963.1.1.)
◉ 시 행 령 : 1962.12.31. 대통령령 제1116호(시행일 : 1963.1.1.)

〈要　　約〉

○ 독촉수수료제도를 가산금제도로 한다.
○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하게 한다.
○ 납세고지서의 발부시기를 규정한다.
○ 자동차의 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다.
○ 야간수색을 할 수 있는 영업장을 정한다.

〈改正內容〉

1. 國稅의 優先

(1)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2) 국세의 우선 배제
①～②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③ 國稅納付期限 1年前에 設定한 傳貰權, 質權 또는 抵當權에 依하여 擔保된 債權 但, 그 財產에 對하여 賦課된 國稅와 加算金에 對하여는 例外로 함.
④～⑥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書類의 送達

(1) 送達
㈎～㈐ 중 : 「住所 또는 居所」를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로 함.
㈑ 書類送達의 方法(新設)
① 書類의 送達은 交付 또는 登記郵便에 限함.
② 書類를 交付 送達하였을 때에는 送達書에 受取人으로 하여금 署名捺印하게 하여야 함. 이 境遇 受取人이 署名捺印을 拒否한 때에는 그 事實을 送達書에 附記하여야 함.

③ 連帶納稅義務가 있는 者에 對하여 納稅告知書, 督促狀 其他 徵收에 關한 書類를 送達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依하여야 함.

㉠ 代表者가 있을 때 : 代表者에게 送達

㉡ 代表者가 없을 때 : 徵收上 便宜한 者에게 送達

④ 納稅告知書(納付通知書 包含) 또는 督促狀(納付催告書 包含)을 送達한 境遇에 不可抗力의 事由로 因하여 그 納付期限이 經過되어 到達된 것 또는 到達한 날로부터 10日內에 納付期限이 到來하는 것에 對하여는 各各 그 到達한 날로부터 10日이 經過한 날을 納付期限으로 함.

(2) 公示送達

(가) 事由

①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에서 書類의 受取를 拒否하였을 때.

② 國內에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가 없을 때.

③ 住所, 居所, 營業所 또는 事務所가 不明할 때.

(나) 期間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10日)

(다) 場所 : 稅務署, 市 또는 郡의 揭示板, 其他 適當한 場所

(라) 納付期限이 經過된 후 公告하는 境遇의 納付期限 : 公告한 날로부터 10日이 經過한 날을 納付期限으로 함.

3. 徵 收

(1) 市, 郡委託徵收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納稅의 告知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 納稅告知書의 發付時期(新設)

① 納付期限이 一定한 境遇에는 納稅告知書는 納期開始 5日前, 納額通知書는 納期開始 15日前

② 納付期限이 一定하지 아니한 境遇에는 徵收決定 卽時

③ 法令의 規定에 依하여 期間을 定하여 徵收猶豫한 境遇에는 그 期間滿了의 翌日

(4) 納期前徵收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4. 督 促

(1) 加算金 : 滯納된 國稅의 100分의 10

(2) 督促狀 發付 : 納期經過後 7日內
(3) 納付期限 : 督促狀 發付日로부터 10日內
(4)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5. 滯納處分

(1) 押留要件 :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2) 搜索의 權限과 방법
①~③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但書 新設
但 主로 夜間에 營爲하는 營業으로서 令으로 定하는 營業場에 對하여는 日沒後라도 營業中에 限하여 搜索을 開始할 수 있음.
④~⑦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7)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6. 押留節次

(1) 動產, 有價證券의 押留節次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債權押留節次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 自動車의 押留節次(新設)
① 自動車를 押留할 때에는 押留의 登錄을 關係機關에 囑託하여야 함. 또한 그 抹消 또는 變更의 登錄에 關하여도 같음.
② 稅務署長은 自動車를 押留하였을 때에는 滯納者에게 引渡할 것을 命하여 이를 占有할 수 있음.
(4) 不動產 등의 押留節次
① 不動產·工場財團·鑛業財團 또는 船舶을 押留할 때에는 押留登記를 所管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함.
② 押留하기 위하여 不動產을 分割하거나 區分할 때에는 分割 또는 區分의 登記를 所管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함.
③ 航空法에 의하여 登記된 비행기나 回轉翼航空機, 重機管理法에 의하여 登錄된 重機 또는 道路運送車輛法에 의하여 登錄된 自動車를 押留할 때에는 押留의 登錄을 關係官署에 囑託하여야 함. 그 變更의 登錄에 關하여도 또한 같음.

④ 稅務署長은 ①~③의 押留를 하였을 때에는 滯納者에게 이를 通知하여야 함.

⑤ 不動產 等의 押留效力의 發生時期

㉠ 押留의 效力은 그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이 完了된 때 發生함.

㉡ "㉠"의 規定에 依한 押留는 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을 한 후에 發生한 滯納額에 대하여도 效力이 미침.

⑥ 抵當權者 等에 對한 押留通知

㉠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이 設定된 財產을 押留한 때에는 그 뜻을 當該債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함.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⑦ 押留不動產 등의 使用 收益

㉠ 滯納者는 押留한 不動產, 工場財團, 鑛業財團, 船舶 또는 航空機를 使用 또는 收益할 수 있음. 다만, 稅務署長은 그 價値가 顯著하게 滅損될 憂慮가 있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使用 또는 收益은 制限할 수 있음.

㉡ ㉠의 規定은 押留한 不動產, 工場財團, 鑛業財團, 船舶 또는 航空機를 使用 또는 收益할 權利를 가진 第3者에게도 準用함.

㉢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船舶 또는 航空機에 對하여 一時 停泊 또는 停留를 하게 할 수 있음. 다만, 發航準備를 完了한 船舶 또는 航空機는 除外함.

㉣ 稅務署長은 "㉢"의 規定에 依하여 一時 停泊 또는 停留를 하게 할 때에는 그 監視와 保存에 必要한 處分을 하여야 함.

⑧ 第三者의 所有權의 主張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5) 無體財產權의 押留 : 前과 같음

(6) 歸屬財產의 押留 : 前과 같음.

7. 押留財產의 賣却

(1)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1961년 개정에서 삭제됨

(3)~(4)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5) 公賣의 實施

①~④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⑤ ㉠~㉡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2回公賣를 하여도 流札되거나 또는 應札者가 없을 때에는 見積價格의 100分의 50에 該當하는 金額을 限度로 公賣時마다 見積價格의 100分의 10에 該當하는 金額을 遞減함.

⑥～⑫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8. 納稅義務의 消滅

(1)～(4)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5) 시효의 중단

①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압류

②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1963년

◉ 법　　률 : 1963. 4.12.　대통령령　제　1265호(시행일 : 1963.4.12.)

〈要　　約〉

○ 체납액징수유예기간과 분납한도 등을 조정한다.

〈改正內容〉

— 國稅徵收法施行令 中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 第39條를 다음과 같이 한다.

第39條(滯納額徵收猶豫期間과 分納限度) 法 第3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滯納額의 徵收猶豫期間은 그 猶豫한 날의 翌日부터 六月 이내로 하고, 그 期間중의 分

納期限과 金額은 稅務署長이 이를 정한다.

第41條第1項第2號 中「許可」를 削除하고, 同條第2項 中「徵收猶豫許可日」을「徵收猶豫한 날」로 한다.

第42條 中「許可」를 削除한다.

1964년

◉ 법　　률 : 1964.12.31. 법　　률 제　1681호(시행일 : 1964.12.31.)

〈改正內容〉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국채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증권으로써 갈음할 수 있게 한다.

1966년

◉ 법　　률 : 1966. 3. 8. 법　　률 제　1753호(시행일 : 1966. 3. 8.)
◉ 시 행 령 : 1966. 1.12. 대통령령 제　2373호(시행일 : 1966. 1.12.)
　　1966. 3.11. 대통령령 제　2451호(시행일 : 1966. 3.11.)

〈改正內容〉

정부기관 개편에 의한 국세청의 신설에 따라 사세청장을 지방국세청장으로 개칭하는 등 관계조문을 정리한다.

1967년

◉ 법　　률 : 1967.11.29. 법　　률 제　1961호(시행일 : 1968. 1. 1.)
◉ 시 행 령 : 1967.12.30. 대통령령 제　3325호(시행일 : 1968. 1. 1.)

〈要　　約〉

○ 과오납금의 충당·환부처리기간을 규정한다.
○ 징수유예규정을 완화한다.
○ 압류재산의 매각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 납세완납증명서의 제출범위를 확대한다.

〈改正內容〉

1. 第2次 納稅義務

(1)~(2)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 削除(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1961년 해당조항)
(4) 寡占株主에 關한 法人의 제2次 納稅義務
① 前과 같음(1961년 해당 조항)
② 寡占株主라 함은 滯納된 國稅의 最終納期日 現在 株主나 社員 또는 그 親族 기타 그와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特殊한 관계가 있는 者로서 그들이 가지는 株式金額 또는 出資金額의 合計가 當該 法人의 株式總額 또는 出資總額에 對하여 株主나 社員이 1人인 境遇 100分의 50 以上, 2人인 境遇, 100分의 60 以上 또는 3人인 境遇 100分의 70 以上인 者를 말함.
③ 1961년 해당조항인 (4)－②와 같음
(5)~(6)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徵　收

(1) 市, 郡委託徵收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納稅의 告知

①~③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④ 滯納額 中 國稅와 加算金만을 完納한 境遇에 稅務署長은 滯納處分費를 徵收하기 위하여 滯納者의 財産을 押留하고자 할 때에는 滯納處分費의 算出根據를 明示한 告知書를 發付하여야 함.

(3) 納付期限의 指定

稅務署長은 國稅(滯納處分費 包含)의 滯納期限(法令이 定하는 경우를 除外)을 納稅의 告知 또는 納入의 告知(第2次 納稅義務者에 대한 納稅通知 包含)를 하는 날로부터 15日내로 指定할 수 있음.

但, 相續稅에 있어서는 그 期限을 30日내로 할 수 있음.

(4) 納稅告知書의 發付時期 :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5) 納期前 徵收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 徵收猶豫

(1) 徵收猶豫

① 災害 또는 盜難으로 財産에 심한 損失을 받았을 때.

② 事業에 顯著한 損失을 받았을 때.

③ 事業에 重大한 危機에 處하였을 때.

④ 納稅者 또는 同居家族의 疾病이나 重傷害로 長期治療를 要할 때.

⑤ 위에 準하는 事由가 있을 때.

(2) 送達不能으로 因한 徵收猶豫(新設)

住所, 居所 또는 營業所·事務所 不明으로 因하여 滯納告知書를 送達할수 없을 때.

(3) 納稅額의 徵收猶豫

(가) 事　　由 : 國稅의 徵收猶豫와 같음

(나) 取消事由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4) 國稅와 納稅額의 徵收猶豫의 效果

① 猶豫한 國稅의 加算金 徵收中止

② 督促한 滯納額 : 滯納處分中止

4. 押留節次

(1)~(3) :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4) 부동산 등의 압류절차

①~②：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③ 未登記 不動產을 押留할 때에는 稅務署長은 土地臺帳謄本 또는 家屋臺帳謄本을 갖추어 保存登記를 管轄登記所에 囑託하여야 함.

④：前③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⑤：前④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⑥：前⑤와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⑦：前⑥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⑧：前⑦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⑨：前⑧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5)~(6)：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5. 押留財產의 賣却

(1)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納期前 徵收事由에 해당되어 納付告知를 받고 指定한 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함으로써 押留한 財產은 그 押留에 관계된 國稅의 納稅義務가 確定되기 前에는 이를 公賣할 수 없음(新設)

(3) 隨意契約

①~②：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③ 押留한 財產의 推算價格이 5萬원 미만일 때

④ 法令으로 所持 또는 販賣가 規制된 財產일 때

⑤ 初回公賣日부터 2年間 7回 以上 公賣하여도 賣却되지 아니할 때

⑥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바에 의하여 公賣함이 公益上 不適當한 때.

(4)~(5)：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6. 過誤納金

(1) 過誤納金의 充當과 還付

① 稅務署長은 納稅者가 納付한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서 생긴 過誤納金과 過誤納金에 대한 利子는 다음에 揭記하는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에 充當하고 그 殘餘에 대하여는 過誤納 決定의 날로부터 30日內에 이를 還付하여야 함.

㉠ 納稅告知에 의하여 納付하는 國稅

㉡ 滯納된 國稅 加算金과 滯納處分費

㉢ 國稅에 關한 法規에 依하여 申告納付하거나 自己計算納付하는 國稅

㉣ 國稅에 關한 法規에 依하여 源泉徵收하여 納付하는 國稅

但, ㉢~㉣은 納稅者가 計算書提出할 때 國稅에 充當하고저 하는 뜻을 附記시켜야 함.

(2) 過誤納付金에 關한 權利의 讓渡

過誤納付金에 關한 權利는 第三者에게 讓渡할 수 있음.

(3) 過誤納金에 관한 利子計算

① 充當 또는 還付하는 境遇 各 起算日부터 起算하여 充當 또는 還付하기 위하여 支給決定한 날까지 過誤納金 100원에 對하여 日邊 5전으로 計算한 利子를 充當 또는 還付한 金額에 加算

② 納稅者에게 還付通知를 한 경우 그 通知日부터 30日內 還付請求하지 않은 때에는 30日 經過日부터 還付의 請求를 받은 날까지의 期間은 利子 不算入

(4) 過誤納金에 대한 利子計算의 起算日

① ㉠ 錯誤納付, 二重納付 또는 納付後 그 賦課의 取消更正 決定에 의하여 생긴 過誤納金에 對하여는 그 納付日의 翌日

㉡ 國稅에 關한 法律規定에 의한 定期決定에 의하여 생긴 還付金에 對하여는 그 法定決定日의 翌日

㉢ 適法하게 納付된 國稅로서 法規에 의한 減免에 의하여 생긴 過誤納金에 對하여는 그 減免을 한 날의 翌日

② ①-㉠에 該當하는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로서 2回 以上 分割納付한 것에 對하여 過誤納金이 있을 境遇에는 그 金額에 達할 때까지 納付日의 順序에 따라 最後에 納付된 金額에서 順次로 遡及하여 計算하여 過誤納額의 各 納付日의 翌日부터 起算

③ 國稅를 適法하게 納付한 後 法律의 變更으로 因하여 생긴 過納金에 對하여는 그 法律의 施行日의 翌日부터 起算

1969년

◉ 시행규칙 : 1969. 8. 7. 재무부령 제 692호(시행일 : 1969.8.7.)

〈要 約〉

○ 서식과 관련한 사항들을 세부적으로 규정한다.

〈改正內容〉

—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장 총 칙

제1조 (납세관리인의 설정과 변경신고) 국세징수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설정 또는 변경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의한다.

제2조 (납세보증서)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납세보증은 별지 제2호서식의 납세보증서에 의한다.

제3조 (담보국채 및 주식의 평가) ①영 제9조제2호에 규정된 국채를 담보를 제공할 때의 그 가액은 증권거래소에 시세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영 제9조제2호에 규정된 주식의 평가는 월별로 하되, 그 주식의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실물가격을 가중 산출 평균한 금액에서 그 3할을 감한 금액에 의한다.

제4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완납증명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갑)의 납세완납증명원, 징수유예증명 청구는 별지 제3호서식(을)의 징수유예증명원에 의한다.

제5조 (미과세증명의 신청)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과세증명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의 미과세증명원에 의한다.

제6조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허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허사업의 정지(허가취소) 요구서에 의한다.

제 7 조 (서류의 송달)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별지 제6호서식의 송달서에 의한다.

제 8 조 (공시송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시송달에 의한다.

2. 제 2 장 징 수

제 9 조 (납액 또는 감액통지)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는 별지 제8호서식의 납액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액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감액통지서에 의한다.

제10조 (1인별 조서의 첨부) 세무서장이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에게 납액통지 또는 감액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1인별 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의 납부기일 지정) 세무서장이 시장·군수에게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후, 납액에 대하여 증가액이 있어 동조제2항규정에 의하여 그 증가액에 대한 납액통지서를 발부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임박하여 시, 군에서 납부기한내에 그 증가액에 대한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증가액의 납부기일을 따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시장·군수의 영수증교부) 시장·군수가 징수하여야 할 국세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 (시장·군수가 징수한 국세의 국고불입) 영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군수가 수납한 국세를 한국은행(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불입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다만, 체신관서에 불입할 때에는 체신관서 현금수불규칙 소정서식의 납부서에 의한다.

제14조 (체납자 보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체납자 보고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체납자 보고서에 의한다.

제15조 (납세의 고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납세자에게 하는 납세고지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체신관서를 납부장소로 지정한 때에는 체신관서 현금수불규칙 소정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16조 (영수증서 원부) 수입공무원이 국세를 수납할 때에 사용하는 영수증서원부는 제14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주임수입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하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의하여 수납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영수증서 원부에 갈음한다.

제1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통지) ①영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발부하는 납부통지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양도 담보권자에 대한 납부고지) 영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양도 담보권자에게 납부고지할 때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 서무서장이 영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비의 납부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납세고지서에 의한다.

제20조 (납부기일 변경통지서) 영 제38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납부기일변경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징수유예의 신청) 영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징수유예신청서에 의한다.

제22조 (징수유예통지) 영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무서장의 징수유예통지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징수유예통지서에 의한다.

제23조 (징수유예 취소통지) 영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취소통지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징수유예취소통지서에 의한다.

제24조 (독촉장) 세무서장이 영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하는 독촉장은 별지 제20호서식의 독촉장에 의한다.

제25조 (독촉장 발부) 세무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세고지서 1건에 대하여 1통으로 한다.

제26조 (독촉장의 2중 발부금지) 시장·군수가 국세에 관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것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은 다시 독촉장을 발부할 수 없다.

제2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최고) 세무서장이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 또는 납세보증인에게 하는 납부최고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납부최고서에 의한다.

3. 제 3 장 체납처분

제28조 (체납처분의 인계 인수)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인계·인수에 있어서 인계를 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체납처분인계서, 인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서에 의한다.

제29조 (체납처분의 인수통지)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계서를 받은 세

무서장은 체납자에게 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체납처분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30조 (체납처분 인수거절) 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인계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소관구역내에 체납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압류할 재산이 없을 때에는 그 인수를 거절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를 거절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체납처분인수거절서에 의한다.

제31조 (신분증명서) 영 제50조 규정에 의한 신분증명서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신분증명서에 의한다.

제32조 (수색조서) 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색조서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수색조서에 의한다.

제33조 (압류조서)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압류조서에 의한다.

제34조 (질물의 인도요구) 영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요구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질물인도요구서에 의한다.

제35조 (가압류·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압류 또는 가처분중인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는 부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갑)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 동산인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을)의 가압류(가처분)중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36조 (압류동산의 표시) 영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동산의 표시는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제37조 (자동차의 압류등록 촉탁) ①영 제60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자동차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②영 제6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차명과 형식
2. 차대번호(차대 형식에 대한 표시를 포함한다)
3. 원동기의 형식
4. 자동차의 등록번호

제38조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 영 제6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자동차의 인도명령은 별지 제33호서식의 압류자동차 인도명령서에 의한다.

제39조 (채권압류통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 압류 통지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40조 (부동산 등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①영 제65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압류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5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②영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압류등기에 촉탁은 별지 제36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선박등기촉탁서에 의한다.

③영 제65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선박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종류와 명칭
2. 선질
3. 갑판의 층수
4. 총톤수
5. 순톤수
6. 기관의 종류와 수
7. 추진기의 종류와 수

④영 제6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37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항공기압류등록촉탁서에 의한다.

⑤영 제6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종류와 형식
2. 항공기의 제조자
3. 항공기의 번호
4. 등록기호가 있을 때에는 그 등록기호

제41조 (부동산의 분할·구분·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촉탁) 영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분할·구분 또는 합병 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갑)의 토지분할(구분, 합병) 대위등기 촉탁서, 변경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을)의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촉탁서에 의한다.

제42조 (보존등기의 촉탁) 영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존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38호서식(병)의 보존등기촉탁서에 의한다.

제43조 (부동산의 압류통지) 영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또는 선박압류통지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44조 (전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압류통지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한다.

제45조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 영 제61조제1항 영 제69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신청은 별지 제40호서식의 압류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신청서에 의한다.

제46조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촉탁) ①영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는 별지 제41호서식의 무체재산권압류통지서에 의한다.

②영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체재산권의 압류, 압류말소나 변경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2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무체채산권압류(압류말소) 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47조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촉탁) 영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압류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압류(압류말소) 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48조 (압류해제조서) 영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압류해제조서는 별지 44호서식의 압류해제조서에 의한다.

제49조 (압류해제통지) 영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해제통지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한다.

제50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영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46호서식의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말소등기 등록촉탁서에 의한다.

제51조 (교부청구) 영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별지 제47호서식의 교부청구서에 의한다.

제52조 (공매통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공매통지는 별지 제48호서식의 공매통지서에 의한다.

제53조 (견적가격조사)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견적가격을 정할 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공매재산견적가격조서에 의한다.

제54조 (감정서) 영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 감정인의 감정서는 별지 제50호서식의 평가감정서에 의한다.

제55조 (질권설정) ①영 제8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설정서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질권설정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서식은 영 제8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질권설정서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 (입찰서) 법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입찰서에 의한다.

제57조 (입찰조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록하는 입찰조서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입찰조서에 의한다.

제58조 (매각결정통지)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통지는 별지 제54호서식의 매각결정통지서에 의한다.

제59조 (소유권이전등기촉탁) ①영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은 별지 제55호서식의 공매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에 의하고 별지 제56호서식의 등기청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0조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 영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는 별지 제57호서식의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각통지서에 의한다.

제61조 (배분계산서)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은 별지 제58호서식의 배분계산서에 의한다.

제62조 (결손처분의 취소) 세무공무원은 결손처분을 종료한 후 그 처분당시 다른 압류할 재산이 있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4. 제 4 장 보 칙

제63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영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충당통지는 별지 제60호서식 (갑) 또는 (을)의 과오납금충당통지서에 의한다.

제64조 (과오납금 양도요구) 영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 양도요구는 별지 제59호서식의 과오납금 양도요구서에 의한다.

제65조 (과오납금 환부통지) 영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 환부통지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지서에 의한다.

제66조 (과오납금 환부청구) ①영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 환부청구는 별지 제61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지(청구)서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청구권자는 수령에 편리한 금융기관(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을 수령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제67조 (과오납금의 환부결의) 영 제9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과오납금 환부결의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68조 (과오납금의 환부통보) ①영 제9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부통보는 별지 제63호서식의 과오납금환부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에 전조의 과오납금 환부결의서의 정,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물품세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취급한 물품세의 과오납금을 환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세관장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의 환부를 세관장의 소관세입금계좌가 있는 한국은행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지급의뢰를 하고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의 이체지시를 하여야 한다.

제69조 (수입금의 이체지시 및 이체통지) ①영 제95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이체지시는 별지 제64호서식의 수입금 이체지시서에 의한다.

②영 제65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체통지는 별지 제65호서식의 이체필통지서에 의한다.

제70조 (지급결정과 통지) ①영 제95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결정은 제67조의 과오납금 환부결의서 정본에 의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급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6호서식의 지급통지서에 의하여 환부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금통지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1조 (격지송금요구 및 송금통지) 영 제95조6의 규정에 의한 송금(입금)요구와 송금(입금)통지에 있어서는 지출관 사무처리규정 별지제5호 내지 제8호서식을 준용하되 그 표면에 "국세환부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2조 (인감대조) 영 제95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서를 받을 때에는 환부받을 자로 하여금 시·읍·면장 또는 동장이 발행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다만, 지급금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에 신분증 기타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73조 (지급미필금액의 세입편입) 영 제95조의12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미필금액이 생긴 경우에 그 금액은 지급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월의 말일부터 30일내에 일반회계 잡수입으로 소관세입 징수관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4조 (수표와 상환) ①영 제96조의13의 규정에 의한 상환은 당해 지급 미필액에 상당하는 금액이 세입에 편입된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상환은 당초 환부결의서에 의하여 재환부결의로써 지급한다. 이 경우의 상환에 있어서는 과오납금의 환부절차를 준용한다.

제75조 (준용규정) 전 8조외에 과오납금의 환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출관사무처리규정 및 한국은행국고금지급규정 중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76조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영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의 세무공무원인 위원은 지방국세청의 국장과 과장 중에서 그 위원장이, 민간위원은 그 위원장이 국세청장에게 상신하며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의 세무공무원인 위원은 세무서 과장 중에서 그 위원장이 민간위원은 그 위원장이 지방국세청장에게 상신하여 각각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7조 (심의결과보고) 각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국세청장에게, 세무서장은 이를 소관 지방국세청장에게 각각 보고하여야 한다.

1970년

◉ 시 행 령 : 1970. 3.30. 대통령령 제 4809호(시행일 : 1970. 3.30.)
1970. 5.11. 대통령령 제 4992호(시행일 : 1970. 5.11.)
1970.10. 1. 대통령령 제 5349호(시행일 : 1970.10. 2.)
◉ 시행규칙 : 1970. 8. 4. 재무부령 제 798호(시행일 : 1970. 8. 4.)

〈要 約〉

○ 제2차 납세의무, 압류 등 청산 등에 대해 조정한다.
○ 담보물 및 호수변경 및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다.

〈改正內容〉

〈3월의 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장 총 강

가. 제1절 총칙

제1조 (정의) 이 영에서 국세·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체납자·세무공무원·가산금·체납처분비·체납액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호에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 2 조 (공정증서)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정증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무공무원이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
2. 공증인이 발행한 증명
3. 질권에 대한 증명
4. 은행장부 등에 의한 증명
5. 기타 공무상의 증명

제 3 조 (상속인이 2인 이상일 때의 대표자 지정) ①법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를 납부할 대표자를 지정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을 때에는 상속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세무서장은 상속인에게 그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나. 제 2 절 제2차납세의무

제 4 조 (주주 또는 사원의 특수관계자) 법 제15조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주 또는 사원과 혼인의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와 동일한 사정에 있는 자와 그이 친족으로서 그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2. 주주 또는 사원인 개인의 사용인이나 사용인 이외의 자로서 그 개인으로부터 받는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그 친족으로서 이러한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제 5 조 (양도·양수의 이익) 법 제16조에 규정한 양도라 함은 사업의 일체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양수라 함은 양수인이 양도인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 종목 또는 유사한 종목의 사업을 경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 6 조 (양도담보재산의 이익) 법 제17조에 규정한 "양도담보재산"이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그 재산을 양도함과 동시에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수인에 대한 채권담보의 목적이 된 재산을 말한다.

다. 제 3 절 납세보전

제 7 조 (납세관리인의 설정신고) ①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설정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
2.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납세관리인을 정하는 이유

②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관리인의 변경신고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전항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사항
2. 변경전과 변경후의 납세관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납세관리인을 변경하는 이유

③국세를 시·군에 위탁징수하는 경우에는 전2항의 신고는 시장·군수를 경유하여야 한다.

제8조 (납세보증인의 선정) ①법 제38조제2항 및 제3항의 납세보증인은 세무공무원이 당해 납세보증에 상당한 자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라야 한다.

②납세자가 납세보증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할 때에는 전항의 납세보증인을 세울 의무를 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납세관리인의 변경조치) ①세무서장은 납세관리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기한을 지정하여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명령을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지정기한까지 납세관리인 변경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관리인의 설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담보물의 종류)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의한다.

1. 금전
2. 국채
3. 토지
4. 화재보험에 든 건물
5. 금융기관이 한 지급보증
6.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의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

제11조 (징수유예에 관한 담보제공)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또는 무기명 국채로써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탁하고 공탁서의 정본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국채인 경우에는 등록을 하고 그 등록필통지서 또는 등록필증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토지 또는 건물로써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③전조제6호의 주식으로써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그 주권에 당해 주식발행법인의 주식확인증을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관계법인에 촉탁하여야 한다.

제12조 (정부관리기관) 법 제21조제1호에 규정한 정부관리기관이라 함은 감사원법 제22조제7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대상이 되는 법인을 말한다.

제13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의 의의) 법 제21조에 규정한 납세완납증명서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발급하는 날 현재 그 납세의무자의 체납액 또는 법 제32조 내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징수유예증명서라 함은 발급하는 날 현재 법 제32조 또는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액을 제외한 다른 미납금이 없음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14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 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을 당초계약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양도통지를 하거나 양도승인신청을 할 때에 제출하게 한다.
2. 법원이 전부명령에 의하여 지급할 때에는 채무자와 압류채권자 쌍방의 증명서를 제출하게 한다.

제15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청구)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납세자의 영업장소와 영업종목
3. 증명서의 사용목적
4. 증명서의 소요수량

제16조 (납세완납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 ①납세완납증명서는 법인에 있어서는 지점 또는 출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완납통보 또는 경유에 의하여 본점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개인에 있어서는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영업장소와 주소지가 상위할 때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을 경우하여 영업장소를 관할하는 세무서

장)이 발급한다.

②징수유예증명서의 발급에 있어서는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미과세증명) ①과세실적이 없는 자가 미납세증명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증명서의 사용목적
3. 증명서의 수량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미과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8조 (증명의 유효기간)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과 미과세증명의 유효기간은 그 증명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제19조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제출의 예외) ①법 제21조제1호에 규정한 계약과 대금지급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08조제1항각호(제11호·제15호는 제외한다)에 규정된 수의계약에 의한 때에는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과 미납세증명의 세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법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금의 지급을 국가기관이 받음으로써 그 대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첨부를 생략한다.

③전항의 대금을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에 의하여 세무공무원이 지급을 받을 때에는 채권압류통지로써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에 갈음한다.

제20조 (체납회수계산과 기간) 법 제23조에 규정한 3회의 회수계산은 1회계년도를 1기간(법인세와 상속세는 제외한다)으로 하여 납세고지서 1통을 1회로 계산한다.

제21조 (체납의 정당한 사유)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납기내에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지 아니하였을 때. 다만, 수령을 거부한 것은 예외로 한다.
2.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되었을 때.
3. 납세의무자가 풍수해·낙뢰·화재·전화 또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하여 납세가 곤란할 때
4. 납세의무자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인하여 납세가 곤란할 때
5. 납세의무자가 그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입어서 납세가 곤란할 때
6. 납세의무자에게 법 제31조제3호 내지 제6호의 사유가 있을 때
7. 납세의무자의 재산이 법 제96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할 때
8. 기타 전각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

라. 제5절 독 촉

제44조 (독촉장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에는 납부할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5조 (독촉에 의한 납부) ①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할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납부장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를 납부장소로 지정하여 독촉할 때에는 국세와 가산금을 연기한 납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6조 (가산금의 최저한도)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금액이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7조 (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최고) ①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최고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납세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②전항의 규정은 납세보증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3. 제3장 체납처분

가. 제1절 총 칙

제48조 (공유물에 대한 체납처분) 압류할 재산이 공유일 때에 그 몫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몫이 균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제49조 (체납처분의 인계) 압류할 재산이 그 관할구역 외에 소재할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재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체납처분의 인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하는 채권 또는 2개 이상의 세무서가 관할하는 동일 시내에 소재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50조 (체납처분의 속행) 체납자가 파산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있어서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제51조 (신분증명서) 법 제39조에 규정하는 증명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소속
2. 직위·성명·생년월일
3. 질문·검사·수색과 재산압류권한에 관한 사항

제52조 (야간수색대상영업)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그 영업중에 한하여 일몰후라도 수색을 개시할 수 있다.

1. 객실을 설비하여 요리와 주류를 제공하고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을 주로 하게 하는 영업
2. 일정한 설비를 하여 댄스를 주로 하게 하는 영업
3. 음식물 또는 주류를 제공함을 주로 하고 댄스를 할 수 있는 설비를 하여 유흥음식을 하게 하는 영업
4. 음주의 설비를 하고 주류 또는 간단한 주효를 제공하여 접대부가 객을 접대하여 유흥음식하게 하는 영업
5. 기타 전 각호에 유사한 영업

제53조 (체납처분집행중 출입제한) 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처분집행중 그 장소에 있는 관계인 이외의 자에 대하여 퇴거를 명하거나 그 장소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압류할 때
2.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색을 할 때
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질문 또는 검사를 할 때

제54조 (수색조서) ①법 제4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색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3.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을 경우에는 그 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4. 수색한 일시
5. 수색한 물건 또는 주거 기타의 장소·명칭 기타 필요한 사항

②세무공무원은 수색조서에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입회원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수색조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55조 (압류조서) ①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조서에는 세무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

4. 작성년월일

②세무공무원은 압류조서에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인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 입회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실을 압류조서에 부기하여 한다.

③질권이 설정된 법 제43조제1호에 규정하는 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압류하였을 경우에는 그 점유자에게 압류조서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법 제43조제2호의 채권을 압류하였을 경우에는 채권의 추심 기타 처분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뜻을 압류조서의 등본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56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이 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사해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민법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체납자 또는 재산 양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57조 (급여금 총액의 의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총액이라 함은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급여금의 전액(원천징수제세금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58조 (질물의 압류) ①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질물의 인도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질권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질권설정자의 주소와 성명

2. 인도년월일

3. 인도하여야 할 재산의 표시

4. 인도를 요구하는 이유

②질권자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없이 압류한다.

제59조 (가압류·가처분 등 재산에 대한 압류통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받은 재산을 압류할 때에는 이를 그 법원·집행공무원 또는 강제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제60조 (과실에 대한 압류효력의 특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천연과실로서 성숙기에 도달한 것은 토지 또는 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다.

제61조 (제3자의 소유권주장) ①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자가 그 소유권을 주장하고 반환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에 대하여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뜻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체납자를 상대로 그 재산에 대하여 소송을 제시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나. 제 2 절 동산의 압류

제62조 (압류동산의 표시) 법 제52조제1항 단서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압류표시는 압류년월일과 압류한 세무공무원이 소속한 세무서의 명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3조 (자동차의 압류등록) ①법 제5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표시
2. 사용의 본거지
3. 자동차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5. 등록의 목적
6. 등록권리자
7.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4조 (압류자동차의 인도) ①법 제52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자동차의 인도를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인도하여 할 자동차의 표시
3. 인도 기일
4. 인도 장소
5. 인도를 요하는 이유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인도명령이 있은 때에는 체납자는 지체없이 세무서장에게 압류된 자동차를 인도하여야 한다.

제65조 (압류동산의 사용·수익절차) ①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동산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보관자의 주소와 성명
2.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기간
3.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동산의 종류
4.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장소
5.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이유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가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은 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의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제 3 절 채권의 압류

제66조 (조건부채권의 압류) 신원보증금·계약보증금 등의 조건부 채권은 그 조건성립 전이라도 압류할 수 있다. 다만, 채권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67조 (채권압류통지서) 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압류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 세목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한 채권의 종류와 금액
4. 전호의 채권으로서 체납자에 대하여 채무이행을 금지하고 세무공무원에게 지불을 이행하게 할 사항

제68조 (채권불이행의 경우와 절차) ①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압류의 통지를 한 경우에 그 채무이행의 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최고를 하여야 한다.

②세무공무원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고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에 대위하여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하여 청구하여 한다. 다만, 채무이행의 자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채권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라. 제 4 절 부동산 또는 선박의 압류

제69조 (부동산의 압류등기 또는 등록) ①법 제5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부동산(공장재단·광업재단)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권리자
5.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②법 제59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압류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선박의 표시
2. 선적항
3.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5. 등기의 목적
6. 등기권리자
7.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③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의 압류등록을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표시
2. 항공기의 정치장
3. 항공기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4.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5. 등록의 목적
6. 등록권리자
7. 등록의무자의 주소와 성명

④전 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는 문서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0조 (부동산의 분할 또는 구분등기) ①법 제59조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 또는 구분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성명
5. 대위원인

②법 제59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합병 또는 변경의 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또한 전항과 같다.

제71조 (부동산의 보존등기절차)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등기부동산의 보존등기를 촉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의 목적
4.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성명
5. 대위원인

②세무서장은 체납처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관관서에 대하여 토지대장 또는 가옥대장 등본의 교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제72조 (부동산 등의 압류통지) 법 제5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자에게 압류의 통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의 표시
4. 압류년월일

제73조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통지)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
4. 압류년월일

제74조 (압류부동산 등의 사용 또는 승인) ①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부동산을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 또는 수익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소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압류년월일과 압류부동산의 표시
2.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와 성명
3.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표시
4.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방법

②법 제6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된 선박을 압류당시와 달리 사용 또는 수익을 하거나 법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박을 하게 한 선박을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소관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압류년월일과 선박의 표시
2.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자의 주소와 성명
3. 사용 또는 수익하고자 하는 이유
4. 항행범위

③공장재단·광업재단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항공기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④세무서장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압류재산보전상의 적부를 조사하여 그 가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제 5 절 무체재산권의 압류

제75조 (무체재산권의 압류통지와 등기 또는 등록) ①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통지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3. 압류재산권의 표시

②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과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말소나 변경의 촉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무체재산권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말소 또는 변경)의 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말소 또는 변경)의 목적
4. 무채재산권자의 주소와 성명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6조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압류등록) ①세무서장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압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관할관계기관에 등록을 촉탁하여야 한다.

1. 계약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압류부동산의 표시
3. 기타 필요한 사항

②관계기관은 전항의 등록촉탁서를 받았을 때에는 관계대장에 그 사실을 등록한 후 지체없이 관계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할 때에는 압류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바. 제 6 절 압류해제

제77조 (압류해제조서)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압류해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동산과 유가증권에 대하여는 압류조서란에 해제이유를 부기하여 해제조서에 갈음할 수 있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압류재산의 표시
3. 압류에 관계된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4. 압류년월일
5. 해제이유와 그 연월일

제78조 (압류해제의 통지) 법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통지는 전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제79조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 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해제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표시
2. 등기 또는 등록원인과 그 연월일
3. 등기 또는 등록의 목적
4. 등기 또는 등록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5. 등기 또는 등록의무자

사. 제 7 절 교부청구

제80조 (교부청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교부청구에 관계되는 국세의 연도·세목·납부기한과 금액

제81조 (파산선고에 의한 교부청구)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에게 교부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압류한 재산이 징수할 금액에 부족되거나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단채권으로서 파산관재인에게 그 부족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2. 납세담보물제공자가 파산선고를 받았을 경우에 체납처분에 의하여 그 담보물을 공매하고자 할 때에는 파산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밟은 다음 별제권의 행사로써 부족 또는 부족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할 금액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여야 한다.

아. 제 8 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82조 (구분공매)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재산 중 납세보증으로 제공된 재산과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재산 또는 무채재산권은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제83조 (수의계약) 압류재산을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추산 가격조서를 작성하고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제84조 (공매공고사항)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서 공매할 토지의 지목·지적이 토지대장의 표시와 상이할 때에는 그 실항을 공매공고에 부기하여야 한다.

제85조 (감정인) ①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인에게 압류재산의 평가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기관 또는 그 재산에 관하여 전문기술이 있는 자에게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감정서를 받아야 한다.

제86조 (공매보증금의 국채대용) 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로써 공매보증금에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를 받았을 경우에는 질권설정서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2. 등록국채를 받았을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통지서에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87조 (공매보증금의 주식대용) ①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갈음할 수 있는 증권은 예산회계법시행령 제77조제1항 각호의 법인의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으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8조 (견적가격의 체감) ①법 제8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견적가격의 체감은 3회부터 적용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매회의 체감기준은 2회공매시의 견적가격으로 한다.

제89조 (제3조의 납부) ①법 제83조에 규정한 제3자의 납부는 체납자의 명의로써 납부하는 것에 한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제3자는 국가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90조 (매각결정통지) 법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각결정통지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매수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매각한 재산의 종류·수량·품질과 소재
4. 매수대금의 가액과 이를 납부할 연월일

제91조 (권리이전등기의 촉탁)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의 권리이전의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하거나 매각에 수반하여 소멸되는 권리말소의 등기촉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촉탁서에 매수인으로부터 제출된 등기청구서와 매각결정통지서 또는 그 등본이나 배분계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가등기 또는 본등기의 말소의 촉탁을 할 때에는 재산압류의 통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2조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의 권리이전) ①체납처분에 의하여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을 매수한 자가 그 매수대금을 완납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국·공유재산 또는 귀속재산매수대금부불잔액을 불입함과 동시에 재산의 표시, 공매년월일, 공매가격, 매수자의 주소와 성명 등 공매내용을 관할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관계기관은 전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서류를 매수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3조 (귀속재산매수자의 자격증명) 법 제9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재산의 매수희망자는 귀속재산법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매기일전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제 9 절 청 산

제94조 (교부청구 없는 전세권·질권 또는 저당권자에 대한 배분) 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을 함에 있어서 법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로서 법 제61조제1항의 통지를 받고 교부청구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있어서도 매각잔여금은 이를 전세권자·질권자 또는 저당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5조 (배분계산서)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배분계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2. 배분할 매각대금의 총액
3. 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의 금액, 배분의 순위와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4. 채권자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채권금액, 배분의 순위와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
5. 매각대금의 교부년월일

차. 제10절 납부의무의 소멸

제96조 (체납처분중지의 공고) ①세무서장은 법 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문 또는 세무서나 체납자 소재지의 시·군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체납자의 주소와 성명
2. 체납액
3. 체납처분을 중지한 이유
4. 기타 참고사항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체납처분중지에 관한 의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였을 때에는 그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97조 (결손처분) ①법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정부의 일반회계자금에 의하여 도입된 관수용 물품 중 당해 물품에 대한 제세가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함으로써 그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
3.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실수요자로 하여 도입된 비료를 정부 고시가격으로 판매한 총판매 수입에서 비료구매원가와 제비용을 공제한 잔액이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미달한다고 농림부장관이 확인한 연간수입비료 수지계산서를 재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

②세무서장이 전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경찰서·은행 기타 기관에 대하여 그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4. 제 4 장 잡 칙

가. 제 1 절 과오납금

제98조 (과오납금의 조사결정) 세무서장은 당해연도 수입금 중에서 납세자 또는 납부자가 납부의무없는 국세를 오납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한 과오

납금에 대하여는 징수결정외 오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99조 (과오납금의 충당통지) 세무서장이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충당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 (과오납금의 양도) ①법 제9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권리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소관 세무서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양도하고자 하는 과오납금액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양도인의 다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가 있을 때에는 그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회분비에 충당하고 잔여금에 대하여는 양도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1조 (과오납금환부통지) 세무서장은 과오납금을 환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리자에게 그 금액·이유·청구기한과 청구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2조 (과오납금에 대한 이자계산기간의 기산일)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자진신고 납부액·원천징수액 또는 중간예납액에 관하여는 그 법정결정일을 법 제101조제1항제1호의 납부일로 본다.

제103조 (과오납금의 이자결정) 세무서장이 과오납금을 다른 국세에 충담하거나 환부청구를 받은 때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환부할 금액에 가산할 이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4조 (과오납금의 환부청구) 과오납금의 환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써 소관 세무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1. 과오납금의 연도·세목과 금액
2. 권리자의 주소와 성명

제105조 (지급명령관의 임명) ①국세청장은 법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수입금 중에서 과오납금을 환부하게 하기 위하여 과오납금지급명령관(이하 "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명령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관장할 공무원(이하 "분임지급명령관"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급명령관(분임지급명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임명은 국세청장이 그 해당 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명령관을 임명한 때에는 그 뜻을 재무부장

관·감사원과 한국은행통할점(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6조 (과오납금의 환부통보 및 이체지시) ①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과오납금과 이자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법 제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세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급명령관에게 통보하여 환부를 받을 자에게 환부하게 한다.

1. 제9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결정외 오납으로 결정한 때
2. 국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금으로 결정한 때
3. 당해 연도전의 수입금으로서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과오납금으로 결정한 때
4.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를 결정한 때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환부통보와 동시에 당해 연도의 소관수입금 중에서 과오납금의 환부에 필요한 금액을 지급명령관의 국세환부금 지급계정에 이체하기 위하여 이체지시서를 한국은행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한국은행의 전항의 이체지시서를 받는 즉시 이체를 하고 이를 지급명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7조 (지급결정) ①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통보와 입금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급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지급결정권에 그 지급이 법령에 위반된 여부를 조사하고 그 지급금액 산출상 착오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08조 (수표의 발행) ①지급명령관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수취인의 성명·금액·번호·발행년월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기명식 수표를 발행하여야 하며, 그 표면에 "국세환부금"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지급명령관은 환부를 받을 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표를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격지환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9조 (격지환부의 절차) ①지급명령관은 환부를 받을 자가 격지에 있는 경우에 과오납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장소를 지정하고 한국은행을 수취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 송금 절차를 밟게 하고 그 뜻을 환부를 받을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0조 (수표발행의 통지) 지급명령관은 그 수표를 발행한 때마다 이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1조 (영수증서의 수령) 지급명령관은 수취인에게 수표를 교부한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제112조 (한국은행에서의 수표지급) 한국은행은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가 있을 때에는 수표발행필통지서와 대조확인하여 지급을 하여야 한다.

제113조 (수표의 지급기간) ①한국은행은 지급명령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수표가 발행일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표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지급명령관이 과오납금의 환부를 위하여 교부한 수표의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후는 환부를 받을 자에 대하여 지급하지 못한다.

제114조 (지급금액의 통보) 한국은행은 과오납금을 환부를 받을 자에게 지급할 때에는 지급필통지서를 소관지급명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15조 (한국은행의 미지급자금정리) ①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를 받은 금액 중 수표의 발행일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한국은행에서 그 송금을 취소하고 이를 그 취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대리점 아닌 금융기관에 송금을 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매회계년도의 수표발행금액 중 익년도 1월31일까지 지급을 하지 못한 과오납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이를 국세환부금지급미필이월계정에 이월정리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월한 금액 중 수표발행인로부터 1년내에 지급을 하지 못한 금액은 이를 기간이 만료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제116조 (수표의 상환) ①지급명령관이 제1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후 1년을 경과한 수표의 수취인으로부터 상환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급명령관이 제113조제2항의 경우에 그 지급을 받지 아니한 환부를 받을 자로부터 다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7조 (과오납금 지급결정부 등) 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지급결정부·수표발행부 및 기타 보조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8조 (과오납금지급 결정액보고서 및 계산서) ①지급명령관은 매월 과오납금지급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지급명령관은 과오납금지급결정액계산서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재무부장관을 거쳐 감사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 2 절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제11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와 다음에 게기하는 각 시에 소재하는 세무서에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둔다.

인천시·수원시·춘천시·대전시·청주시·광주시·전주시·대구시·부산시

제120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10조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

국세청에 설치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지방국세청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지방국세청위원회"라 한다)라 하고 세무서에 설치하는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세무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이하 "세무서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②지방국세청위원회는 위원 7인 이상 9인 이내, 세무서위원회는 위원 5인 이상 7인 이내로써 구성하되, 지방국세청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세무서장이 된다.

③지방국세청위원회위원은 국세청장이, 세무서위원회위원은 지방국세청장이 각각 세무공무원·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또는 상공계의 대표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21조 (위원회의 직능) ①지방국세청위원회는 세무서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세무서의 1인분체납액 100만원 이상의 세무서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세무서의 1인분체납액 30만원 이상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세무서위원회는 1인분체납액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국세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122조 (위원장의 권한) ①지방국세청위원회와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②전항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당해 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3조 (회 의) ①지방국세청위원회와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각각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체납처분을 중지하고자 할 때
2. 법 제9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때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각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당해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써 의결한다.

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24조 (회의록) 지방국세청위원회와 세무서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125조 (보고와 통지) 지방국세청위원회와 세무서위원회의 각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위원회 위원장은 지방국세청장에게, 세무서위원회위원장은 세무서장에게, 각각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이를 당해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26조 (의견청취) 국세체납정리위원회는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납자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7조 (의사 관여의 제한)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은 자기 또는 8촌 이내의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체납세금에 관한 의사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28조 (비용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에 종사한 때에는 출석한 날에 한하여 거마비 1,000원을 지급한다.

제129조 (위촉위원직의 상실) 각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각 위촉권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

1. 관할구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게 된 때
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하였을 때
3.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위원의 품위를 실추하였을 때

다. 제 3 절 위임규정

제130조 (시행규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무부령으로 정한다.

〈5월의 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담보물의 종류 및 평가)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할 경우에 제공할 수 있는 담보물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전
2.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증금 등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상장유가증권(이하 "상장유가증권"이라 한다).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토지
5. 화재보험에 든 건물
6. 금융기관이 한 지급보증

②전항에 규정된 담보물의 가액평가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상장유가증권은 한국투자개발공사의 투자심의위원회가 사정공표한 시가의 100분의 80. 다만, 국공채(국가 또는 지방 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2. 납세보증보험증권은 보험금액

3. 토지와 건물은 등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시가표준액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 (징수유예의 관한 담보제공) ①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무기명국채 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채권(이하 "공사채"라 한다) 중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공사채(이하 "미등록공사채"라 한다)를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공탁하고, 그 공탁서의 정본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2.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3. 사채권

②등록국채 또는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공사채(이하 "등록공사채"라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등록하고 그 등록필증을, 납세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증권을 각각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납세보증보험증권은 이를 담보로 제공한 자가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을 그 유예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그 금액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7일내에 지급할 것을 보증한 것이라야 한다.

④토지 또는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저당권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그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저당권설정의 등기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여야 한다.

⑤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할 경우, 무기명주식에 있어서는 그 주권에 당해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확인증을 첨부하여, 기명주식에 있어서는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각각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질권설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질권설정의 등록을 관계법인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제72조중 "법 제59조제4항"을 법 제59조제5항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 (공매보증금의 유가증권 대용) ①법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할 수 있는 국채 또는 증권은 상장유가증권으로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장유가증권을 공매보증금으로 갈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야 한다.

1. 무기명국채 또는 미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질권설정서를 첨부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2. 등록국채 또는 등록공사채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담보권등록필증과 기명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 주식(출자증권을 포함한다)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7조 (대용유가증권의 평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에 갈음하여 납부하는 유가증권의 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제1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9조 (국세체납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체납 정리위원회를 두는 세무서는 지방세무관서직계에 규정된 1급세무서로 한다.

〈10월의 개정과 8월의 호수변경〉

1. 10월의 개정

국세징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국가기관이 받음으로써 그 대금이 국고에"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음으로써 그 대금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21조제2호에 규정하는 허가·인가·면허 또는 등록의 신청이나 갱신이 국세가 부과되는 사업의 개시·변경·폐지 또는 양도와 관련이 없을 때에는 납세완납증명 또는 징수유예증명과 미과세증명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국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내국인이 해외이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호수변경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영 제7조의 2"를 "영 제8조로"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중 "영 제13조"를 "영 제15조"로 한다.

제5조 중 "영 제15조제1항"을 "영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중 "영 제20조제1항"을 "영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영 제42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제24조 중 "영 제43조"를 "영 제44조"로 한다.

제27조 중 "영 제46조"를 "영 제47조"로 한다.

제28조 중 "영 제48조"를 "영 제49조"로 한다.

제31조 중 "영 제50조"를 "영 제51조"로 한다.

제32조 중 "영 제52조"를 "영 제54조"로 한다.

제33조 중 "영 제53조"를 "영 제55조"로 한다.

제34조 중 "영 제56조"를 "영 제58조"로 한다.

제35조 중 "영 제57조"를 "영 제59조"로 한다.

제36조 중 "영 제60조"를 "영 제62조"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영 제60조의2제1항"을 "영 제63조제1항"으로 동조 제2항 중 "영 제63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38조 중 "영 제60조의3제1항"을 "영 제64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 중 "영 제63조"를 "영 제67조"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영 제65조제1항"을 "영 제69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중 "영 제65조제2항"을 "영 제69조제2항"으로, 동조제3항 중 "영 제65조제2항제1호"를 "영 제69조제2항제1호"로, 동조제4항 중 "영 제65조제3항"을 "영 제69조제3항"으로, 동조제5항 중 "영 제65조제3항제1호"를 "영 제69조제3항제1호"로 한다.

제41조 중 "영 제66조"를 "영 제70조"로 한다.

제42조 중 "영 제66조의2"를 "영 제71조"로 한다.

제43조 중 "영 제67조"를 "영 제72조"로 한다.

제44조 중 "영 제68조"를 "영 제73조"로 한다.

제45조 중 "영 제61조제1항"을 "영 제65조제1항"으로, 동조 중 "영 제69조제1항과 제2항"을 "영 제74조제1항과 제2항"으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영 제70조제1항"을 "영 제75조제1항"으로, 동조제2항 중 "영 제70조제2항"을 "영 제75조제2항"으로 한다.

제47조 중 "영 제71조"를 "영 제76조"로 한다.

제48조 중 "영 제72조"를 "영 제77조"로 한다

제49조 중 "영 제73조"를 "영 제78조"로 한다.

제50조 중 "영 제74조"를 "영 제79조"로 한다.

제51조 중 "영 제75조"를 "영 제80조"로 한다.

제54조 중 "영 제80조제2항"을 "영 제85조제2항"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영 제81조제1호"를 "영 제86조제2항제1호"로, 동조 제2항 중 "영 제81조의2"를 "영 제86조제2항제3호"로 한다.

제58조 중 "영 제84조"를 "영 제90조"로 한다.

제59조 중 "영 제85조"를 "영 제91조"로 한다.

제60조 중 "영 제86조제1항"을 "영 제92조제1항"으로 한다.

제61조 중 "영 제89조"를 "영 제95조"로 한다.

제63조 중 "영 제92조"를 "영 제99조"로 한다.

제64조 중 "영 제93조제1항"를 "영 제100조제1항"으로 한다.

제65조 중 "영 제94조"를 "영 제101조"로 한다.

제66조제1항 중 "영 제95조"를 "영 제104조"로 한다.

제67조 중 "영 제95조의 3"를 "영 제106조"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95조의3제1항"을 "영 제106조제1항"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중 "영 제95조의3제2항"을 "영 제106조제2항"으로, 동조제2항 중 "영 제95조의3제3항"을 "영 제106조의제3항"으로 한다.

제70조제1항 중 "영 제95조의4제1항"을 "영 제107조제1항"으로 한다.

제71조 중 "영 제95조의6"을 "영 제109조"로 한다.

제72조 "영 제95조의8"을 "영 제111조"로 한다.

제73조 중 "영 제95조의12제1항 또는 제3항"을 "영 제115조제1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중 "영 제95조의13"을 "영 제116조"로 한다.

제75조 중 "영 제97조제3항"을 "영 제120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1971년

◉ 법　　률 : 1971.12.28. 법　　률 제 2331호(시행일 : 1972. 1. 1.)
◉ 시 행 령 : 1971. 5.15. 대통령령 제 5636호(시행일 : 1971. 5.15.)
　　1971.12.30. 대통령령 제 5896호(시행일 : 1971. 1. 1.)
◉ 시행규칙 : 1972. 2.10. 재무부령 제 872호(시행일 : 1972. 2.10.)

〈要　　約〉

○ 송달지연으로 인하여 징수를 유예한 국세에 대하여 그의 징수를 확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부과의 결정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한다.
○ 중가산금제도를 신설한다.
○ 참가압류제도를 신설한다.

〈改正內容〉

※ 전반적 흐름

納稅者의 權益保護를 위하여 國稅審査請求繫留中인 滯納者의 財産은 請求事件의 決定이 確定될 때까지 公賣處分을 留保하도록 하고, 法人稅過誤納還付金 利子起算日을 所得金額決定의 翌日로 하되 그 所得金額을 當該 事業年度終了日로부터 6月 以內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6月이 되는 날의 翌日로부터 自動的으로 利子가 加算되어 還付하도록 하였다.

15萬원 이상의 滯納國稅를 納付期限經過後 每 3個月마다 2回에 限하여 滯納된 國稅의 100分의 5에 相當한 加算金을 徵收하는 重加算金制度를 新設하고, 押留하고자 하는 滯納者의 財産이 이미 他機關의 滯納處分에 의하여 押留되어 있을 때에는 參加押留通知書를 旣押留機關에 送達함으로써 押留에 參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徵稅行政上의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1. 徵收猶豫

(1) 徵收猶豫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2) 送達不能으로 因한 徵收猶豫 및 賦課撤回

①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② 徵收를 猶豫한 國稅의 徵收를 確保할 수 없다고 認定할 때에는 그 賦課의 決定을 撤回할 수 있음.

③ 稅務署長은 徵收猶豫 또는 賦課撤回한후 納稅者의 行爲 또는 財產을 발견한 때에는 遲滯없이 賦課 및 徵收節次를 밟아야 함.

(3)~(4)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2. 督 促

(1) 加算金 : 100分의 10

1次重加算金(納付期限經過後 90日內 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 滯納된 國稅의 100分의 5 加算(新設)

2次重加算金(納付期限經過後 180日內에 滯納된 國稅를 納付하지 아니한 때) : 滯納된 國稅의 100分의 5 加算(新設)

但, 滯納된 國稅가 15萬원 未滿인 境遇에는 重加算金을 適用하지 않음.

(2)~(4) :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3. 押留節次

(1)~(6)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7) 參加押留(新設)

① 押留하고자 하는 財產이 이미 다른 機關에 依하여 押留되어 있는 財產인 때에는 稅務署長은 交付請求에 같음하여 參加押留通知書를 그 財產에 對한 旣押留機關에 送達함으로써 그 押留에 參加할 수 있음.

② 參加押留하고자 하는 財產이 登記 또는 登錄을 要하는 것인 때에는 參加押留외 登記 또는 登錄을 管轄 登記所나 關係機關에 囑託하여야 함.

③ 위의 規定에 依하여 參加押留를 한 후에 그 財產에 對한 旣押留機關이 押留가 解除된 때에는 그 參加押留는 다음에 揭記하는 區分에 따라 遡及하여 押留의 效力이 생김.

㉠ 動產 및 有價證券에 對하여는 參加押留通知書가 滯納者에게 到達된 때.

㉡ 參加押留의 登記 또는 登錄이 完了된 때.

④ 押留에 參加한 稅務署長은 旣押留機關이 그 押留財產을 長期間이 經過하도록 賣却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賣却處分을 旣押留機關에 催告할 수 있음.

4. 押留財產의 賣却

(1)~(4)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5) ①~⑤ :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⑥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國稅審査請求法의 規定에 의하여 請求 繫留中에 있는 國稅에 관한 押留財產에 對하여는 그 請求事件의 決定이 確定될 때까지 公賣處分을 保留함. 但, 그 財產이 腐敗, 變質 또는 減量하기 쉬운 財產으로서 速히 賣却하지 아니하면 財產價格이 減損될 憂慮가 있을 때에는 例外로 함.

⑦~⑫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5. 過誤納金

(1)~(3)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4) ①~③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④ 法人所得金額의 決定에 依하여 생기는 還付金에 對하여는 그 決定日의 翌日. 다만 法人所得金額을 당해 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6月 以內에 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6月이 되는 날의 翌日(新設)

1973년

◉ 법　　률 : 1973. 2. 1. 법　　률 제　2458호(시행일 : 1973. 2. 1.)
◉ 시 행 령 : 1973. 2.14. 대통령령 제　6499호(시행일 : 1973. 2. 1.)

〈要　　約〉

○ 과오납부금의 환부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

1974년

◉ 법　　률 : 1974.12.21. 법　　률 제2680호(시행일 : 1975. 1. 1.)
◉ 시 행 령 : 1974.12.31. 대통령령 제7468호(시행일 : 1975. 1. 1.)
◉ 시행규칙 : 1974. 3.11. 재무부령 제1013호(시행일 : 1974. 3.11.)
　　1975. 3. 6. 재무부령 제1088호(시행일 : 1975. 1. 1.)

〈要　　約〉

○ 국세기본법의 재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이관 또는 정리한다.

〈改正內容〉

1. 國稅基本法에 統合된 條文

- 국세의 우선
- 납세의무의 승계
- 연대납세의무
- 제2차납세의무
- 서류의 송달

2. 徵收의 順位

(1) 滯納處分費
(2) 加算金
(3) 國　稅

3. 徵　收

(1) 市, 郡委託徵收
① 稅務署長은 市長(서울特別市와 釜山市에 있어서는 區廳長), 郡守에게 그 管轄區域內의 國稅의 徵收를 委託할 수 있음.
이 境遇에 市長·郡守가 當該 國稅를 徵收하여 國庫에 納入하여야 함.

②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納稅의 告知

① 稅務署長(稅法에 依하여 國稅에 關한 事務를 稅關長이 管掌하는 境遇에는 稅關長) 또는 市長·郡守가 國稅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稅者에게 그 國稅의 課稅年度·稅目·稅額 및 그 算出根據·納付期限과 納付場所를 明示한 告知書를 發付하여야 함.

② 稅務署長은 納稅者가 滯納額 中 國稅와 加算金만을 完納한 境遇에 滯納處分費를 徵收하고자 할 때에는 納稅者에게 告知書를 發付하여야 함.

(3)~(5)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4. 督 促

(1) 加算金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但, 滯納國稅 30萬원 未滿의 경우 重加算金 不適用

(2)~(4) :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5. 滯納處分

(1) 押留要件 : 前과 같음(1952년 해당조항)

(2) 搜索의 權限과 方法

① 財產을 搜索하기 위하여 必要한 때에는 滯納者의 家屋, 船舶, 倉庫, 其他의 場所를 搜索하거나 廢鎖된 門·金庫 또는 器具를 열게 하거나 또는 열 수 있음. 滯納者의 財產을 占有하는 第三者가 財產의 引渡를 拒否한 때에도 같음.

② ①의 規定은 第3者의 家屋, 船舶, 倉庫, 其他의 場所에 滯納者의 財產을 隱匿한 嫌疑가 있다고 認定되는 境遇에 이를 準用함.

③ ① 또는 ②의 規定에 의한 搜索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에 限함. 다만, 해가 지기 前에 開始한 搜索은 해가 진 後에도 繼續할 수 있음.

④ 主로 夜間에 大統領令이 定하는 營業을 하는 場所에 對하여는 ③의 規定에 不拘하고 해가 진 後에도 營業中에는 搜索을 開始할 수 있음.

⑤ 搜索을 하였으나 押留할 財產이 없는 때에는 搜索調書를 作成하여 滯納者 또는 參與者와 함께 署名·捺印하여야 함.

⑥ 搜索調書를 作成한 때에는 그 謄本을 搜索을 받은 滯納者 또는 參與者에게 交付하여야 함.

⑦ 稅務公務員은 滯納處分을 執行함에 있어서 押留할 財産의 所在 또는 數量을 알고자 할 때에는 다음에 該當하는 者에 對하여 質問하거나 帳簿, 書類, 其他의 物件을 檢査할 수 있음.

㉠ 滯納者.

㉡ 滯納者와 去來關係가 있는 者

㉢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者.

㉣ 滯納者와 債權·債務關係가 있는 者.

㉤ 滯納者가 株主 또는 社員인 法人

㉥ 滯納者의 法人의 株主 또는 社員

⑧ 稅務公務員이 搜索 또는 檢査를 할 때에는 當該 檢案 또는 檢査를 받는 자, 그 家族·同居人 또는 事務員·其他의 從業員을 證人으로 參與시켜야 함. 參與者가 없는 때 또는 參與에 應하지 아니한 때에는 成年者 2人 以上 또는 市, 郡의 公務員이나 警察官을 證人으로 參與시켜야 함.

⑨ 稅務公務員은 滯納者의 財産을 押留할 때에는 押留調書를 作成하여야 함. 이 境遇에 押留財産이 다음에 該當하는 때에는 그 謄本을 滯納者에게 交付하여야 함.

㉠ 動産 또는 有價證券

㉡ 債 權

㉢ 債權과 所有權을 除外한 財産權(無體財産權 等)

(3) 詐害行爲의 取消 : 前과 같음.(1949년 해당조항)

(4) 滯納處分의 效力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5) 押留禁止財産

①~⑪ :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⑫ 醫療業, 家畜診療業에 必要한 器具·藥品 其他 材料(新設)

(6) 條件附押留禁止財産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7) 給與의 押留制限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6. 押留의 解除

(1)~(3) : 前과 같음.(1961년 해당 조항)

(4) 印紙稅의 解除

① 押留財産의 保管에 따라 作成하는 文書에 關하여는 印紙稅를 免除(新設)

② 押留 또는 押留解除의 登記 또는 登錄에 關하여는 登錄稅를 免除

7. 押留財產의 賣却

(1)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①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② 國稅 基本法에 依한 異義申請·審査請求 또는 審判請求가 繫留中에 있는 國稅의 滯納으로 因하여 押留한 財產에 對하여는 그 申請 또는 請求에 對한 決定이 確定되기 前에는 이를 公賣할 수 없음.

다만, 그 財產이 腐敗·變質 또는 減量되기 쉬운 財產으로서 速히 賣却하지 아니하면 그 財產價額이 減損될 憂慮가 있는 때는 例外로 함.

(3) 隨意契約

①~②: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③ 押留한 財產의 推算價格이 10萬원 未滿인 때.

④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⑤ 第1回 公賣後 1年間에 5回 以上 公賣하여도 賣却되지 아니한 때.

⑥ 公賣함이 公益上 適切하지 아니한 때.

(4)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5) 公賣의 實施

① 賣却豫定價格의 決定

㉠ 押留財產을 公賣에 붙이고자 할 때에는 그 賣却豫定價格을 定하여야 함.

㉡ 賣却豫定價格을 定하기 어려운 때에는 鑑定人에게 評價를 依賴하여 그 價額을 參考할 수 있음.

② 公賣參加의 制限: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③ 公賣保證金

㉠ 入札保證金은 入札價格의 100分의 10 以上, 契約保證金은 買受價格의 100分의 10 以上.

㉡ 落札者 또는 競落者가 買受契約을 締結하지 아니할 때에는 入札保證金은 國庫에 歸屬함.

④ 入札과 開札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入札에 있어서는 賣却豫定價格 以上인 最高額의 入札者를 落札者로 함.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賣却豫定價格 以上인 入札이 없는 때에는 즉시 그 場所에서 再入札에 붙일 수 있음.

⑤ 再公賣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⑥ 公賣의 中止

㉠ 公賣開始前에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를 完納한 때에는 公賣를 中止하여야 함.

㉡ 여러 財産을 一括하여 公賣에 붙이는 境遇에 그 一部의 公賣代金으로 滯納額의 全額에 充當될 때에는 殘餘財産의 公賣는 中止하여야 함.

⑦~⑨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⑩ 公賣決定의 取消

㉠ 買收人이 買收代金을 指定된 期限까지 納付하지 아니한 때에는 賣却決定을 取消함. 이 境遇에 契約保證金은 國庫에 歸屬함.

㉡ 賣却決定을 取消한 때에는 그 뜻을 買收人에게 通知하여야 함.

⑪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⑫ 買受人의 制限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削除.(1961년 해당조항)

8. 淸 算

(1) 配分金額의 範圍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配分方法

①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押留財産에 關係되는 傳貰權·質權 또는 抵當權에 依하여 擔保된 債權

②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③ ①과 ②의 規定에 依하여 配分한 金額에 殘額이 있는 때에는 이를 滯納者에게 支給하여야 함.

④ 稅務署長은 賣却代金이 ① 各號의 國稅·加算金과 滯納處分費 其他의 債權의 總額에 不足한 때에는 民法 其他 法令에 依하여 配分할 順位와 金額을 定하여 配分하여야 함.

9. 納稅義務의 消滅

(1) 滯納處分의 中止와 그 公告

①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總財產의 推算價格이 滯納處分費에 充當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는 때에는 滯納處分을 中止하여야 함.

② 滯納處分의 目的物인 財產이 國稅基本法 第35條 第3號에 規定하는 債權의 擔保가 된 財產인 境遇에 그 推算價額이 滯納處分費와 當該債權金額에 充當하고 殘餘가 생길 餘地가 없는 때에도 ①과 같음.

③ 稅務署長은 ① 또는 ②의 規定에 依하여 滯納處分의 執行을 中止하고자 할 때에는 國稅滯納整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1個月 公告하여야 함.

(2) 缺損處分

① 稅務署長은 納稅者에게 다음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있는 때에는 缺損處分을 할 수 있음.

㉠ 滯納處分이 終結되고 滯納額에 充當된 配分金額이 그 滯納金額에 不足한 때.

㉡ 滯納處分 中止의 規定에 該當하는 때.

㉢ 國稅徵收權의 消滅時效가 完成한 때.

㉣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徵收할 可望이 없다고 認定되는 때.

② 稅務署長은 ①의 規定에 依하여 缺損處分을 한 後 그 處分當時 다른 押留할 수 있는 財產이 있었던 것을 發見한 때에는 遲滯없이 그 處分을 取消하고 滯納處分을 하여야 함.

(3)~(5) : 削除(1962년 해당조항)

1977년

◉ 시 행 령 : 1977. 8.20. 대통령령 제8657호(시행일 : 1977. 7. 1.)
◉ 시행규칙 : 1977. 8.25. 재무부령 제1282호(시행일 : 1977. 7. 1.)

〈要 約〉

○ 부가가치세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정한다.

〈改正內容〉

1. 시행령 개정

— 국세징수법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영업장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영업장소와 영업종목"을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로 한다.

제10조제2호 중 "영업장소와 영업종목"을 "사업장소와 사업의 종류"로 한다.

제11조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부가가치세(과세특례자에 한한다)

제18조 중 "현금"을 "현금 또는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에 의한 증권"으로 한다.

제83조제1항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부가가치세법의 시행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영업세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영업세에 대한 시·군 위탁징수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석유류세법 또는 직물류세법에 의하여 국군장비현대화촉진계획에 따라 정부의 예산으로 구입한 물자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석유류세 또는 직물류세로서 정부의 세출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것에 대한 결손처분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2. 시행규칙개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영업장소재지"를 "사업장소재지"로, "영업명"을 "사업의 종류"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영업명"을 "사업의 종류"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산출세액"을 "산출세액(또는 매출세액)"으로,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세액(또는 매입세액)"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중간예납세액(또는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자진납부세액"을 "자진납부세액(또는 확정신고납부세액)"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 중 "영업장소재지"를 각각 "사업장소재지"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내지 별지 제21호서식·별지 제23호서식 내지 별지 제25호서식·별지 제26호서식(을)·별지 제28호서식·별지 제29호서식(갑) 및 (을)·별지 제35호서식·별지 제37호서식·별지 제40호서식·별지 제41호서식·별지 제43호서식·별지 제44호서식(갑) 및 (을)·별지 제48호서식·별지 제49호서식·별지 제52호서식·별지 제54호 서식 내지 별지 제57호 서식·별지 제59호서식 내지 별지 제61호서식 중 "납세번호"를 각각 "사업자등록번호"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내지 별지 제34호서식·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42호서식 중 "등록세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함"을 각각 "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으로 한다.

1980년

◉ 시행규칙 : 1980. 2.15. 재무부령 제1423호(시행일 : 1980. 2.15.)
1980.11.26. 재무부령 제1461호(시행일 : 1980.12. 1.)

〈要 約〉

○ 서식을 개정한다

〈改正內容〉

별지 제1호, 제3호, 제10호의 서식을 개정한다.

1981년

◉ 시 행 령 : 1981.12.31. 대통령령 제10697호(시행일 : 1982. 1. 1.)

〈要 約〉

會社整理法의 整理節次에 따라 當該 會社의 納稅義務가 免除된 경우를 缺損處分事由에 追加하는 한편 現行 規定을 改善하였다.

- ○ 徵收猶豫證明書의 發給事由를 追加
- ○ 給與金의 押留限度額 調整
- ○ 缺損處分事由를 新設
- ○ 國稅滯納整理委員會 業務範圍 調整

〈改正內容〉

1. 徵收猶豫證明書의 發給事由 追加(令 第2條)

會社整理法에 의한 整理計劃에 따라 徵收猶豫 또는 押留된 財産의 換價의 猶豫를 받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國稅徵收法에 의한 徵收猶豫가 아니므로 徵收猶豫證明書를 發給받을 수 없었던 것을 會社整理法 第122條의 規定에 의하여 徵收猶豫를 받는 경우에도 徵收猶豫證明書를 發給할 수 있도록 하여 會社整理期間中 企業活動의 沮害要因을 除去하였다.

從 前	改 正
○ 發給事由 國稅徵收法 第15條 또는 同法 第17條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額을 除外하고는 다른 滯納額이 없는 경우 發給	○ 發給事由 從前과 같음 會社整理法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徵收猶豫額 또는 押留된 財産의 換價의 猶豫에 關聯된 滯納額이 있는 경우 追加

2. 給與金의 押留 限度額 調整(令 第37條)

國稅의 滯納으로 給與金을 押留하는 경우 押留可能 限度額을 調整하였다.

從 前	改 正
(總給與額－所得稅)×50%	(總給與額－{所得稅, 防衛稅, (所得割, 住民稅)})×50%

3. 缺損處分事由 新設(令 第83條)

會社整理法에 의하여 整理計劃 認可의 決定이 있은 後에는 整理債權에 대하여 整理會社는 免責된다.

따라서 租稅債權도 納稅義務가 消滅되는 것이나 國稅徵收法上 缺損處分을 할 수 있는 規定이 없으므로 事實上 徵收할 수 없는 滯納額을 消滅時效期間이 經過할 때까지 기다려서 處理하여야 하는 不便이 있게 되므로 "徵收할 可望이 없다고 認定되는 때"를 缺損處分事由에 追加하였다.

從 前	改 正
○ 缺損處分事由 滯納者의 行方이 不明하거나 財産이 없다는 것이 判明된 때	○ 缺損處分事由 從前과 같음 ○ 會社整理法 第241條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한 會社가 納稅義務를 免除받게 된 때

4. 國稅滯納整理委員會 業務範圍 調整(令 第85條)

一定金額 以上의 國稅滯納整理(缺損處分)는 稅務署 또는 地方國稅廳에 設置된 國稅滯納整理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던 것을 貨幣價値의 變動 等에 의한 委員會의 審議對象 增加로 非能率을 招來하고 있으므로 各 委員會의 審議對象 및 滯納額의 範圍를 國稅廳長이 定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審議對象金額 가. 稅務署委員會(1級地) 1人分 滯納額 30萬원 以上 100萬원 未滿 나. 地方國稅廳委員會 ○ 1級地稅務署의 1人分 滯納額 100萬원 以上 ○ 其他 稅務署의 1人分 滯納額 30萬원 以上	○ 審査對象金額 國稅廳長이 定함.

1983년

◉ 법 률 : 1983.12.19. 법 률 제 3661호(시행일 : 1984. 1. 1.)
◉ 시 행 령 : 1983.12.31. 대통령령 제11311호(시행일 : 1984. 1. 1.)
◉ 시행규칙 : 1983.12.31. 재무부령 제 1595호(시행일 : 1984. 1. 1.)

〈要 約〉

國稅의 納付와 徵收에 관한 節次를 規定하고 있는 國稅徵收法은 1974年度에 國稅基本法의 制定을 계기로 全文改正된 바 있으나 그 이후 補完되지 아니하여 그간의 經濟與件의 變動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徵稅行政의 適正을 기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國稅徵收法의 改正은 國稅徵收節次面에서 納稅者의 便宜와 信賴를 바탕으로 한 健實한 納稅風土를 조성함으로써 納稅者의 權益을 보호하고 徵稅行政의 效率을 도모하도록 하기 위해 國稅의 納期遲延에 따른 加算金負擔을 緩和調整하였고, 滯納處分猶豫制度를 新設하였으며, 押留財産의 公賣代行制度를 採擇하는 등 徵稅行政節次를 改善하였다.

○ 滯納稅金에 대한 加算金負擔의 緩和

— 調整內容

- 基本方向
- 基本加算金의 引下

- 重加算金賦課方式의 調整
- 重加算金免除對象金額의 擴大

— 適用時期

○ 滯納處分猶豫制度의 新設

— 制度의 趣旨

— 滯納處分猶豫의 要件

— 滯納處分猶豫의 期間

— 滯納處分猶豫의 効果

— 滯納處分猶豫證明書의 發給

- 發給要件
- 申請方法 등

— 其 他

○ 押留財産公賣의 代行

— 改正事由

— 代行의 依賴

— 押留財産의 引繼·引受

— 公賣代行의 手數料와 公賣代行의 細部事項

— 公賣參加의 制限

— 買收代金 등의 引繼 등

— 賣却決定 및 賣却決定取消의 通知

○ 財産押留要件의 補完

— 改正理由

— 納期前 財産押留

— 財産押留의 解除

○ 錯誤配分金의 還給節次 改善

○ 參加押留效力의 時期調整

○ 滯納稅金의 金融機關收納

○ 其 他

— 關稅와 같이 賦課徵收되는 內國稅의 徵收節次

— 會社整理法에 의한 徵收猶豫의 効果

〈改正內容〉

1. 滯納稅金에 대한 加算金負擔의 緩和(法 第21條, 第22條 및 附則 第5條)

가. 調整內容

(1) 基本方向

滯納稅金에 대하여 賦課하는 加算金은 基本的으로 納稅者가 納期를 지키지 않은 데 따라 行政制裁로 과하는 罰科金的 性質과 遲延利子的 性質의 兩面性을 가지고 있는데, 從來에는 加算金의 行政制裁的 側面이 重視되어 國稅의 納期日로부터 하루만 경과하여도 10%의 높은 加算金이 賦課되었다. 이러한 加算金制度는 지나치게 行政便宜에 치우친 것이어서 外國의 경우에도 그 類例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高金利 物價오름세가 拂拭되어 安定基調가 다져지고 있는 마당에 이의 是正이 바람직하게 되었으며, 더욱이 滯納國稅의 加算金利度는 各種 公課金의 延滯料計算에 있어서도 準據가 되고 있으므로 그 調整 必要性이 절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國稅의 短期滯納에 대하여는 加算金負擔을 大幅 緩和하고 長期滯納에 대하여는 그에 相應하는 負擔을 지도록 하는 등 加算金制度를 合理的으로 調整하였다.

(2) 基本加算金의 引下

國稅滯納에 따른 加算金에는 納期經過 즉시 賦課되는 基本加算金과 納期經過期間에 비례하여 추가로 負擔하는 重加算金이 있는 바, 基本加算金의 경우 從來 10%이던 것을 5%로 大幅 낮추어 納稅者의 加算金負擔을 획기적으로 輕減하는 한편, 加算金의 罰科金的 性質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였다.

(3) 重加算金賦課方式의 調整

從前에 重加算金의 賦課는 納期로부터 90日이 經過되면 1次的으로 5%가, 180日이 經過되면 2次的으로 다시 5%가 추가로 加算됨으로써 加算金累進期間單位가 3個月單位로 2回 累進에 그칠 뿐이어서 예를 들어 納期를 하루 經過하거나 89日 經過하거나 同一한 加算金을 부담하게 되어 滯納稅金의 早期整理에 實效性이 적고 또한 加算金負擔의 衡平에도 맞지 않는 面이 있었다.

그러므로 重加算金의 賦課에 있어서 累進期間單位를 종전의 3個月에서 每1個月마다로 細分化하고 累進幅을 종전의 5%에서 2%로 縮小하되 重加算金의 累進限度는 20%를 넘지 못하도록 加算金의 負擔을 合理化하였다.

이번 加算金制度의 調整으로 國稅의 短期滯納者는 加算金負擔이 大幅 緩和된 반면 8個月이상의 長期滯納者는 종전보다 加算金負擔이 다소 늘게 되었다.

(4) 重加算金 免除對象金額의 擴大

重加算金은 稅金의 長期滯納을 막기 위하여 滯納期間에 따라 累進賦課하는 것이나, 零細納稅者에 대하여는 負擔能力 등을 감안하여 重加算金을 賦課하지 않고 있는 바, 이렇게 重加算金이 賦課되지 아니하는 滯納稅金의 範圍를 종전의 30萬원에서 50萬원으로 擴大하였다.

따라서 50萬원 미만의 滯納稅金은 滯納整理時까지 5%의 基本加算金만을 負擔하면 되며, 특히 滯納稅金이 30萬원에서 50萬원 사이인 경우에는 基本加算金의 引下와 함께 重加算金 免除對象金額으로 追加되어 加算金負擔이 二重的으로 덜어지는 惠澤을 받게 되었다.

區 分	從 前	改 正
基本加算金	○ 納期經過時 : 10%	○ 納期經過時 : 5%
重加算金	○ 對象 : 30萬원 以上 ○ 納期 90日 經過 : 5% 加算 ○ 納期 180日 經過 : 10% 加算	○ 對象 : 50萬원 以上 ○ 納期每1月 經過時마다 2% 追加 (단, 20%를 초과하지 못함)

加算金負擔 對比表

(單位 : %)

納期經過 / 區 分	1月	2月	3月	4月	5月	6月	7月	8月	9月	10月	11月	12月
從 前	10	→	→	15	→	→	20	→	→	→	→	→
改 正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

나. 適用時期

改正된 加算金制度는 1984年 1月 1日이후 滯納된 國稅에 대하여 適用한다. 따라서 1983年 12月 31日 以前에 國稅가 滯納된 경우에는 종전의 例에 의하여 加算金을 負擔하게 된다.

2. 滯納處分猶豫制度의 新設(法 第85條의2)

가. 制度의 趣旨

종전의 경우 國稅의 納期前 또는 督促納期前에 誠實納稅者가 일시적인 資金壓迫 등의 사유로 國稅를 納付할 수 없는 때에는 徵收猶豫制度에 의하여 國稅의 納付를 猶豫할 수 있으나 督促納期가 경과된 후에는 徵收猶豫와 같은 制度가 마련되지 아니하였다.

즉 零細企業·中小企業·輸出企業 등이 일시적인 事業不振 등으로 國稅를 滯納하고 督促納付期限이 經過된 후에는 從前 徵收節次上으로는 資產·輸出商品 등의 押留·公賣 등 획일적인 強制執行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財產의 押留나 押留財產의 賣却을 당분간 늦출 경우 事業의 運營이 正常化되고 滯納額의 徵收도 可能하게 될 수 있다면 國民經濟的 次元에서 企業의 회생과 함께 國稅의 徵收가 바람직하기 때문에 督促納付期限이 이미 지나 押留 또는 公賣節次를 개시할 수 있는 단계에서 일정한 基準에 해당하거나 事由가 있을 때에는 強制執行節次를 猶豫할 수 있도록 滯納處分猶豫制度를 新設하였다.

滯納處分의 猶豫는 基本的으로 強制執行을 一時留保함에 불과하므로 國稅의 納期를 다시 정하는 徵收猶豫의 경우와는 달리 滯納加算金의 賦課가 猶豫되지 아니한다.

나. 滯納處分猶豫의 要件

(1) 國稅廳長이 滯納處分을 猶豫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가) 國稅廳長이 誠實納稅者로 인정하는 基準에 해당하는 때
  (나) 財產의 押留나 押留財產의 賣却을 猶豫함으로써 事業을 正常的으로 運營할 수 있게 되어 滯納額의 徵收가 可能하다고 인정되는 때
(2) 滯納處分의 猶豫는 節次上 國稅廳長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다. 滯納處分猶豫의 期間

徵收猶豫의 期間은 6月을 原則으로 하고 特定要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月까지로 할 수 있음에 비하여 滯納處分 猶豫의 期間은 制度의 性質上 徵收猶豫期間보다는 長期間이 필요함에 따라 그 期間을 1年까지로 하였다.

라. 滯納處分猶豫의 效果

滯納處分이 猶豫되면 이미 押留된 財產에 대하여 公賣를 행하지 아니함은 물론 그 財產에 대한 押留를 해제하거나 다른 財產에 대한 새로운 押留를 猶豫할 수 있도록 하

여 滯納處分猶豫의 實効를 거둘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押留를 猶豫하거나 財産押留를 解除할 때에는 國稅徵收를 確保하기 위해 그에 상당하는 納稅擔保의 提供을 要求할 수 있으며, 滯納處分의 猶豫를 받은 事業者는 滯納處分猶豫證明書를 發給받을 수 있어 國家·公共機關 및 政府管理機關과의 契約締結이나 그로부터 代金受領이 可能하게 되었다.

마. 滯納處分猶豫證明書의 發給

(1) 發給要件

滯納處分猶豫證明書는 滯納處分猶豫額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滯納處分猶豫額과 徵收猶豫額이 동시에 있는 경우에도 이의 發給이 可能하다.

(2) 申請方法 등

滯納處分猶豫證明書의 發給申請, 提出 및 實効期間 등에 대하여는 旣存의 納稅完納證明書, 徵收猶豫證明書 및 未課稅證明書의 경우와 같다.

바. 其 他

滯納處分猶豫의 申請·承認·通知 등의 節次 및 滯納處分猶豫의 取消와 滯納額의 一時徵收에 관하여는 徵收猶豫의 경우를 準用한다.

徵收猶豫와의 比較

區 分	徵 收 猶 豫	滯 納 處 分 猶 豫
要 件	納付期限前	納付期限後
事由 또는 對象	• 財産上의 심한 損失 • 事業上의 危機 • 질병 등으로 長期治療를 요하는 때 등	• 國稅廳長이 정하는 誠實納稅者 • 滯納處分猶豫로 事業을 정상적으로 運營할 수 있게 되고 滯納額 徵收가 可能하다고 인정되는 때
期 間	최장 9月	1年內
分 納	6月 : 稅務署長이 정함 9月 :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3月內 分納	1年內에서 稅務署長이 정함
官納 및 代金 受領時의 證明書	徵收猶豫證明書	滯納處分猶豫證明書

3. 押留財産公賣의 代行(法 第61條)

가. 改正理由

押留財産의 公賣는 종래 稅務署長 또는 地方國稅廳長이 直接 實行하여 왔으나 稅務官署從事者가 關係專門知識이 미숙할 뿐만 아니라 그 人力도 부족한 형편이어서 財産賣却專門機關인 成業公社의 專門性을 活用하여 押留財産의 賣却을 圓滑히 함으로써 滯納稅額을 조기에 徵收하고 滯納者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稅務公務員은 本然의 業務에 專念하도록 하기 위하여 押留財産의 賣却代行制度를 新設하였다.

나. 代行의 依賴

○ 稅務署長은 押留財産을 直接 公賣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公賣에 專門性이 必要한 경우에는 地方國稅廳長의 承認을 받아 成業公社에 公賣代行의 依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成業公社가 公賣를 代行한 경우에는 稅務署長이 直接 행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成業公社의 公賣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利害關係人은 稅務署長이 直接處分한 것으로 보아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公賣代行의 依賴를 받은 成業公社는 財産賣却義務를 誠實히 遂行하여야 하나 2年 以內에 賣却하지 못한 財産이 있는 경우에는 公賣代行의 解除要求를 할 수 있으며 稅務署長은 特殊한 事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解除要求를 받아 들여야 한다.

○ 稅務署長은 押留財産의 公賣를 成業公社에 依賴하는 때에는 公賣代行依賴書를 成業公社에 送付하여야 하며 滯納者 기타 利害關係者에게도 通知하여야 한다.

다. 押留財産의 引繼·引受

○ 稅務署長이 成業公社에 押留財産의 公賣를 代行시킨 경우에는 押留財産을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押留財産을 第3者로 하여금 보관하게 한 때에는 그 보관증을 引渡할 수 있다.

○ 稅務署長과 成業公社間에 押留財産의 明白한 引繼·引受를 위하여 引繼·引受書를 作成하여야 한다.

라. 公賣代行의 手數料와 公賣代行의 細部事項

公賣代行手數料는 公賣代行에 따른 실비를 참작하여 財務部令으로 정할 수 있게 하였으며 公賣代行時 일어나는 실무적인 事項과 기타 成業公社와 稅務官署間의 協議事項에 대하여는 수시로 정할 수 있도록 國稅廳長과 成業公社가 協議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 公賣參加의 制限

法 第72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賣參加의 制限을 당한 者에 대하여는 稅務署와 成業公社間에 相互 通知하여 稅務署이든 成業公社이든 公賣參加를 制限하도록 하였다.

바. 買收代金 등의 引繼 등

成業公社가 公賣를 代行할 때의 契約保證金·入札保證金·買收代金에 대하여는 成業公社가 보관하거나 유용할 수 없고 수령한 즉시 直接 稅務署의 歲入·歲出外 現金出納公務員에게 引繼하거나 歲入·歲出外 現金出納公務員計座에 入金시키고 이를 通知하도록 하였다.

사. 賣却決定 및 賣却決定取消의 通知

成業公社가 公賣를 함에 있어 賣却決定을 하거나 賣却決定을 取消한 때에는 이를 稅務署長에게 通知토록 하여 代行依賴한 押留財產의 賣却狀況을 稅務署長이 알 수 있도록 하였다.

〈要 約 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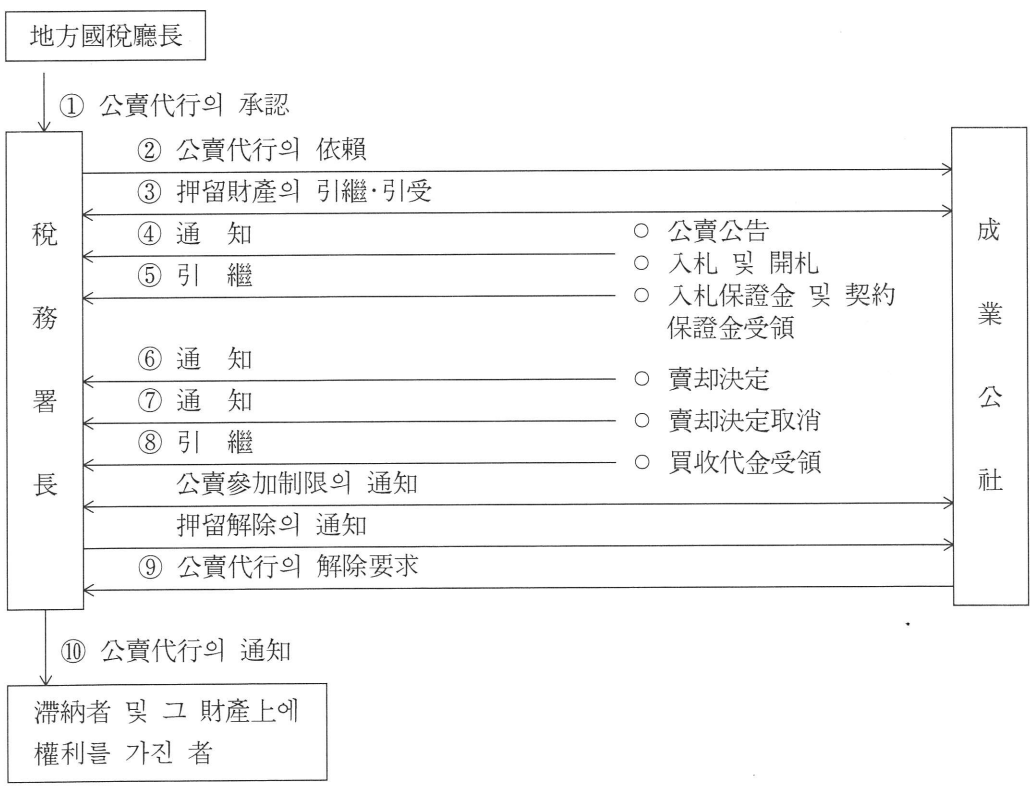

4. 財產押留要件의 補完(法 第24條)

가. 改正事由

納稅者의 財產을 押留할 수 있는 要件에 관하여 從前規定에 의하면 納稅者가 督促狀을 받고 督促納期까지 滯納額을 完納하지 아니한 때, 納期前 徵收時 國稅를 納期內에 完納하지 아니한 때와 國稅逋脫 등의 우려가 있어 推定稅額을 限度로 하여 納稅者에게 擔保提供要求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로 制限되었는바, 緊急한 租稅債權確保의 必要性이 있는 경우까지 擔保提供要求를 한 후 이에 불응여부를 기다려 財產押留를 하도록 하고 있어 徵稅行政의 迅速·適正을 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改正法에서는 擔保提供의 要求없이 迅速하게 財產을 押留할 수 있도록 改正하였다.

나. 納期前 財產押留

○ 納期前에 財產押留를 할 수 있는 경우는 納稅者가 納期前 徵收事由에 해당하는 때이다. 즉 納稅者가 國稅의 滯納으로 滯納處分을 받을 때, 地方稅 또는 公課金의 滯納으로 滯納處分을 받을 때, 強制執行을 받을 때, 破產 선고를 받은 때, 競買가 개시된 때, 法人이 解散한 때, 國稅를 逋脫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다고 認定되는 때, 納稅管理人을 정하지 아니하고 國內에 住所 또는 居所를 두지 아니하게 된 때이다.

○ 納稅者 財產押留로 善意의 納稅者가 부당히 財產權의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納期前 財產押留의 경우에 미리 地方國稅廳長의 承認을 받도록 節次要件을 強化하였으며 또한 納稅者에게 문서로 通知하도록 하였다.

다. 財產押留의 解除

稅務署長이 租稅債權의 迅速確保를 위하여 納期前 財產의 押留를 행할 수는 있으나 納稅者가 그에 상응하는 擔保를 提供하고 押留解除를 要求한 경우나 稅務署長이 押留를 한 날로부터 3月까지(부득이한 事由가 있어 地方國稅廳長의 承認을 얻은 경우에는 6月) 押留에 관련된 國稅를 確定하지 아니한 때에는 押留를 解除토록 하였다.

5. 錯誤配分金의 還給節次 改善(法 第81條)

稅務署長이 交付請求에 의하여 執行法院 등으로부터 配分받아 滯納額에 充當한 이후 當該交付請求의 부당, 配分順位의 錯誤 등이 밝혀져 國稅보다 우선 配分權者에게

還給하는 경우 同還給金은 종전에는 不當利得金으로 別途豫算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豫算計上 등의 節次 등으로 1年 이상의 長期間이 경과된 후에야 支給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配分順位 錯誤 등의 歸責事由者가 國家機關임에도 불구하고 優先權者가 善意의 피해를 보아 왔으므로 이러한 경우 同還給金을 國稅還給金으로 반환한다면 즉시 還給決定하여 30日 이내에 還給할 수 있어 優先配分權者의 權利保護와 行政節次의 簡素化를 기할 수 있으므로 改正 國稅徵收法에서는 위와같이 잘못 充當된 金額을 還給하는 경우 國稅還給金의 還給의 例에 의하여 支給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參加押留效力의 時期調整

改正前에는 不動產의 경우 參加押留의 效力發生時期가 登記·登錄時이며, 旣押留機關의 押留解除時 參加押留의 效力이 소급되는 시기도 登記·登錄時이어서 押留解除의 여부에 관계없이 參加押留의 效力發生時期가 같음에 비추어, 動產·有價證券의 경우에는 參加押留의 效力發生時期가 旣押留機關에 參加押留通知書가 送達된 때이며 旣押留機關의 押留解除時 參加押留의 效力이 遡及되는 시기는 參加押留通知書가 滯納者에게 도달된 때로 하고 있어 當初 參加押留의 效力發生時期와 旣押留機關의 押留解除時 소급하여 參加押留의 效力이 발생되는 시기가 不動產의 경우처럼 일치하지 아니함에 따라 混亂을 가져올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混亂을 방지하기 위하여 改正法에서는 動產·有價證券에 대하여 押留解除時 소급하여 參加押留의 效力이 發生하는 시기를 參加押留通知書가 旣押留機關에 送達된 때로 改正하여 參加押留의 效力發生時期를 일치되도록 하였다.

7. 滯納稅金의 金融機關收納(令 第19條·第26條)

從前에는 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는 納付期限이 경과한 國稅를 收納할 수 없으며 다만 稅務署長이 督促狀에 納付書를 添附하여 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를 納付場所로 指定한 경우에만 收納할 수 있어서 納期前後의 收納機關이 다름에 따라 金融機關 利用이 불가능하여 納稅者가 滯納稅金을 納付하는데 不便이 따랐다.

따라서 納稅者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滯納稅金의 金融機關 收納이 可能토록 改正하였으나, 納期經過 1月後에는 重加算金이 追加로 賦課되는 등 納付金額計算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納期經過 1月內(基本加算金 5%만 加算됨)에만 당초 告知된 納稅

告知書에 의하여 金融機關 收納이 가능토록 하였다.

滯納稅金의 金融機關 收納은 1984年 1月 1日以後 最初로 納付告知를 하는 分부터 適用된다.

8. 其 他

가. 關稅와 같이 賦課徵收되는 內國稅의 徵收節次(法 第9條)

改正 國稅徵收法 등에서는 稅關長이 徵收하는 內國稅의 賦課徵收節次, 加算金, 納付期間, 國稅賦課의 原則, 納稅義務의 承繼 등에 관하여 關稅法을 適用할 수 있도록 하여(關稅法 第26條의2 參照) 適用法律을 明確히 하고 行政의 効率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만, 國稅基本法에 규정된 事項 中 第3條 단서 以外의 事項, 예컨대 消滅時効 등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을 適用하여야 한다.

나. 會社整理法에 의한 徵收猶豫의 效果(法 第19條)

從前에는 會社整理法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徵收의 猶豫는 國稅徵收法上의 徵收猶豫와는 다르므로 加算金과 重加算金 등이 賦課되었으나 改正法에서는 納稅者가 納稅의 告知 또는 督促을 받은 후 國稅 또는 滯納額의 納付期限前에 會社整理法 第122條의 규정에 의한 徵收의 猶豫가 있는 경우에는 加算金과 重加算金을 徵收하지 않도록 補完하였다.

그러나 督促納付期限이 경과한 滯納額에 대하여는 會社整理法 第122條의 規定에 의한 徵收의 猶豫가 있는 경우에는 本條項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1984년

◉ 시행규칙 : 1984. 9.18. 재무부령 제1626호(시행일 : 1984. 9.18.)
1984.11.29. 재무부령 제1635호(시행일 : 1984.11.29.)

〈要 約〉

○ 공매대행수수료에 대한 규정을 둔다.
○ 납부서·납세고지서의 서식을 개정한다.

〈改正內容〉

稅務署長이 押留한 財產을 成業公社가 公賣를 代行하는 경우에 支給하는 手數料를 國稅徵收法施行令 第68條의5에서 財務部令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그 手數料의 效率을 規定하였으며 지금까지 手作業에 의하던 歲入證憑書類의 분류 및 판단을 광학적방식(Optical Character Recognition)을 이용하여 자동처리하기 위하여 종전의 納稅告知書式과 納付書式을 O.C.R 처리할 수 있도록 改正하여 業務의 能率을 기하도록 하였다.

1. 公賣代行手數料의 制定(施行規則, 第45條의6)

1983.12.31 改正된 國稅徵收法 施行令 第68條의5에서 成業公社의 公賣代行에 따른 手數料는 그 實費를 참작하여 財務部令에서 정하도록 委任하고 있음에 따라 成業公社의 非業務用 資產賣却 手數料 및 유사기관의 代行手數料 등을 감안하여 그 手數料率을 다음과 같이 算定하였다.

○ 成業公社가 押留財產을 賣却한 경우에는 그 件別 賣却金額의 1000분의 10으로 하고
○ 成業公社가 公賣代行의 의뢰를 받은 후에 國稅徵收法 第7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滯納者 또는 第3者가 당해 滯納額을 完納하여 公賣가 中止된 경우에는 당해 納付稅額의 1000분의 1로 하여 賣却前 納付의 경우에는 그 手數料率을 低率로 하였으며, 다만, 件別 賣却金額 또는 納付稅額이 10億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賣却金額 또는 納付稅額을 各各 10億원으로 보도록 하였다.

2. 納付書·納稅告知書式의 改正

韓國銀行 國庫業務의 自動化·機械化에 따라 종전의 納付書·納稅告知書의 書式을 改正하여 O.C.R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歲入徵收業務의 効率을 기하고자 하였다.

O.C.R이란 광학장치에 의거 文字(기재사항)를 순식간에 자동적으로 識別處理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稅目別 收納 및 滯納狀況을 신속 정확히 파악할 수 있으며, 종전까지 每月 稅務署와 韓國銀行 사이에 실시하는 歲入金 月計 對査業務의 手動處理를 自動處理함에 따라 漸增하는 업무량 증가에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改正한 서식은 1984.11.29부터 시행되어 1984.12.31까지는 종전서식과 함께 쓸 수 있도록 하고 1985.1.1부터는 改正書式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改正된 書式은 다음과 같다. 다만, 納稅告知書는 手記式과 電算式으로 나누었는 바, 電算式은 電算處理에 의한 稅額의 告知에 使用하도록 하였다.

1988년

◉ 시행규칙 : 1988. 1.13. 재무부령 제1743호(시행일 : 1988. 1.13.)

〈要 約〉

○ 징수유예통지서 등 6개 서식을 변경함과 동시에 서식상의 기타 미비점을 보완한다.

〈改正內容〉

1. 改正理由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하여 徵收猶豫通知書 등 6개서식을 전산서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현행서식의 사용과정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였음.

2. 改正된 書式

별지 제 8 호서식 자진납부서

별지 제10호서식 납세고지서(수기용)
별지 제10호서식 납세고지서(전산용)
별지 제11호서식 영수증서
별지 제15호서식 징수유예통지서
별지 제17호서식 독촉장
별지 제20호서식 체납처분 인수

3. 附 則

납세고지서, 자진납부서 등 납세자가 직접 사용하는 서식은 종전서식의 재고를 감안하여 1988.3.31까지 개정서식과 종전서식을 병행사용하도록 하였음.

1991년

◉ 시행규칙 : 1991. 3.14. 재무부령 제1853호(시행일 : 1991. 3.14.)

〈要 約〉

○ 서식 등을 개정한다.

〈改正內容〉

1. 국세징수법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6제1항제1호 중 "1,000분의 10을"을 "1,000분의 15를"로 하고, 동항제2호 중 "1,000분의 1을"을 "1,000분의 5를"로 하며,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제1호의 건별 매각금액 또는 제1항제2호의 납부세액이 7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매각금액 또는 납부세액을 각각 7억원으로,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3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8호서식〕·〔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6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공매대행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6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방위세법폐지법률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방위세법에 의한 방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별지 제8호서식 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1992년

◉ 시 행 령 : 1992.12.31. 대통령령 제13797호(시행일 : 1993. 1. 1.)
◉ 시행규칙 : 1992.12.31. 재무부령 제 1899호(시행일 : 1993. 1. 1.)

〈要 約〉

○ 納稅完納證明書 發給申請節次의 간소화대상 추가
○ 國稅의 자동이체납부제도 導入
○ 滯納國稅의 金融機關 수납기한 延長
○ 기타 書式改正 등 미비점 보완
  — 納稅完納證明書 發給申請節次 간소화대상법인 指定申請에 따른 관련서식 新設
  — 滯納國稅의 金融機關 수납기한 연장에 따른 관련서식 改正 및 新設
  — 納稅者의 편의도모를 위한 書式改正
  — 기타 書式의 미비점 補完

〈改正內容〉

1. 納稅完納證明書 發給申請節次의 簡素化對象 追加(令 §6)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個人은 住所地 管轄稅務署長, 法人은 本店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며, 各 事業場管轄稅務署를 經由하여야 함 ○ 다만, 事業場 管轄稅務署長 經由節次를 省略할 수 있는 경우는 事業場 管轄稅務署가 4個 以下인 때임	○ 事業場 管轄稅務署長 經由節次 省略對象에 公共性이 높은 法人(금융기관 등)으로서 최근 2년간 國稅를 滯納한 사실이 없는 法人을 追加

나. 改正理由

滯納可能性이 거의 없는 公共性이 높은 법인이 納稅完納證明書 發給申請時 모든 事業場 管轄稅務署長을 經由하여야 하는 行政節次上의 不便을 除去

2. 國稅의 自動移替納付制度 導入(令 §18)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納稅者가 金融機關의 窓口에서 納付	— 自動移替納付制度의 導入 ○ 金融機關이나 遞信官署에 預金計座가 설치되어 있는 納稅者가 預金計座에서 自動移替納付할 수 있도록 함 — 自動移替 納付對象 ○ 綜合所得稅 中間豫納告知分(年 1回) ○ 附加價値稅 納稅特例者 豫定告知分(年 2回)

나. 改正理由

國稅의 自動移替納付制度를 導入함으로써 納稅者가 金融機關 窓口에서 일일이 納付해야 하는 不便 解消

3. 滯納國稅의 金融機關 收納期限 延長(令 §19)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滯納國稅의 收納〉 — 國稅滯納日로부터 1月 以內의 滯納國稅만 金融機關이 수납 가능	— 國稅滯納日로부터 1月 以上 經過된 滯納國稅(50만원 미만)도 금융기관이 수납가능

나. 改正理由

國稅滯納日로부터 1月 以上 經過된 滯納國稅(50만원 미만)라도 金融機關이 收納할 수 있도록 하여 滯納者가 稅務署에 가거나 출장세무공무원에게 납부하는 不便을 解消

4. 其他 書式改正 등 未備點 補完

가. 納稅完納證明書 發給申請節次 簡素化對象法人 指定 申請에 따른 關聯書式 新設(規則 §1②)

(1) 改正內容

「納稅完納證明書 發給申請節次 簡素化對象法人 指定申請書」및「無滯納事實確認書」서식 新設

(2) 改正理由

本店을 管轄하는 稅務署長에게 納稅完納證明書 發給申請節次 간소화대상법인 指定申請을 하여 그 指定을 받은 法人은 事業場管轄稅務署長을 經由하지 않고 直接 本店 管轄稅務署長에게 納稅完納證明書 發給申請을 할 수 있도록 國稅徵收法施行令을 改正함에 따라 關聯書式 新設

나. 滯納國稅의 金融機關 收納期限 延長에 따른 關聯書式改正 및 新設(規則 §6)

(1) 改正內容

納付期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滯納國稅라도 告知된 金額이 50萬원 未滿인 경우에는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納付할 수 있음을 納稅告知書 뒷면 "안내

말씀"란에 명기하고, 告知된 금액에 대한 식별이 용이하도록 50萬원 未滿 納稅告知書를 별도로 新設함(1993년도 1/4분기의 告知書 재고분이 있으므로 1993.3.31일까지 現行의 納稅告知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經過規定을 둠).

(2) 改正理由

納付期限으로부터 1개월이 경과된 滯納國稅(50萬원 未滿)라도 韓國銀行 또는 遞信官署가 收納할 수 있도록 國稅徵收法施行令(令 §19)이 改正된 것을 반영함.

다. 納稅者의 便宜圖謀를 위한 書式改正

(1) 改正內容

納稅完納證明書 등 7個 書式의 申請人의 "印"란을 "署名 또는 印"으로 개정

(2) 改正理由

인장미지참자의 불편해소와 本人署名에 의한 信用去來 관행의 유도·확산

라. 其他 書式의 미비점 補完

(1) 改正內容

압류조서의 書式項目 中 滯納者의 "성명"란에 "법인명"을 추가하고, "납기" 앞란에 "법정기일"을 新設하는 등 압류조서외 6個 書式을 改正

(2) 改正理由

個人·法人 공통서식에 부합되게 書式項目을 수정하고, 國稅의 優先權을 판단하는 기준이 "納付期限"에서 "法定期日"로 改正된 것을 반영하는 등 未備點 補完

1993년

◉ 법　　률 : 1993. 6.11. 법　　률 제 4561호(중기관리법 부칙)(시행일 : 1993.7.1.)
　　1993.12.31. 법　　률 제 4673호(시행일 : 1994. 1. 1.)
◉ 시 행 령 :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5호(시행일 : 1994. 1. 1.)
◉ 시행규칙 : 1994. 3. 5. 재무부령 제 1964호(시행일 : 1994. 3. 5.)

〈要　　約〉

○ 과도한 行政規制의 緩和
　— 納稅完納證明書 등의 提出範圍 縮小
　— 押留의 效力이 미치는 滯納稅額의 範圍 縮小
　— 滯納處分 猶豫時 國稅廳長 承認制度 廢止
　— 告知前 押留時에 告知하여야 할 期間 縮小
○ 신속한 滯納額 整理를 위한 制度 改善
　— 重加算金의 加算率 및 期間 改善
　— 稅務署長이 隨意계약에 의해 賣却할 수 있는 財産價格의 現實化
　— 滯納者의 滯納處分 中止 要請制度 新設
○ 行政節次의 簡素化
　— 公賣代行依賴時 地方國稅廳長 承認制度 廢止

〈改正內容〉

1. 과도한 行政規制의 緩和

가. 納稅完納證明書 등의 提出範圍 縮小(국세징수법 §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國家·公共團體 등과 契約을 締結하거나 공사대금 등을 受領하는 경우에는 納稅完納證明書를 제출하여야 함	—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政府管理機關으로부터 代金의 支給을 받을 때에만 納稅完納證明書를 提出하도록 하고 契約締結時에는 제출하지 않도록 함

(2) 改正理由

國家와의 契約締結 등에 納稅完納證明書를 제출케한 취지는 계약자로 하여금 國稅의 滯納을 防止하고 滯納된 國稅를 徵收하는데 있으나 滯納을 理由로 國家 등과의 契約을 締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企業活動을 지나치게 制約하는 것이다. 따라서 代金을 受領할 때에만 納稅完納證明書를 제출하도록 하여 滯納된 國稅의 徵收에 지장이 없으면서 企業活動의 活性化에도 기여하도록 하였다.

나. 押留의 效力이 미치는 滯納稅額의 範圍縮小(국세징수법 §47②)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不動產 등에 대한 押留의 效力은 押留登記·登錄후 발생한 滯納稅額에 대하여도 미침 ○ 당해 不動產이 양도된 이후에 確定(告知 등)된 滯納稅額에도 押留의 效力이 미침	○ 押留된 不動產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이전에 確定(告知 등)된 양도자의 滯納稅額까지만 押留의 效力이 미치도록 함

(2) 改正理由

현행제도는 押留財產의 양수자가 讓受當時 전혀 알 수 없는 滯納稅額까지도 책임을 지게 되어 양수자에게 불측의 損害를 주게 되므로 押留財產의 양수자가 알 수 있는 양수이전에 확정된 滯納稅額까지만 押留의 效力이 미치도록 하였다.

※ 確定된 國稅 : 國稅基本法 第3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法定期日」이 도래한 국세를 말함.

〈參 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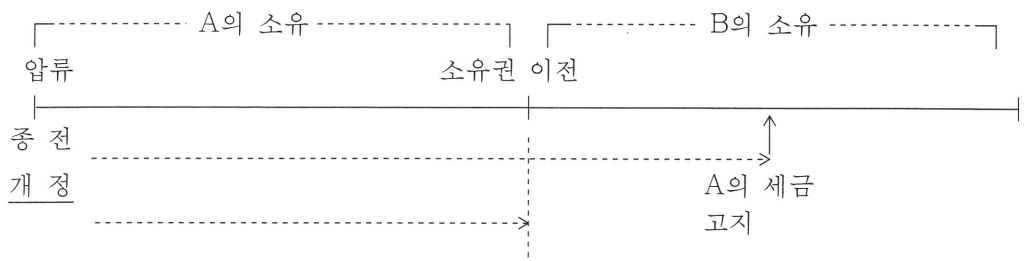

다. 滯納處分 猶豫時 國稅廳長 承認制度 廢止(국세징수법 §85의2①)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滯納處分 猶豫를 하는 경우에는 國稅廳長의 承認制度를 두고 있음	— 國稅廳長의 承認制度 廢止

(2) 改正理由

滯納處分猶豫制度는 재산의 押留나 압류재산의 賣却을 猶豫함으로써, 사업을 정상화하여 滯納額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현재 國稅廳長의 承認까지 얻게 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이 제도의 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滯納處分猶豫節次를 簡素化하여 납세자를 更生시킬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활성화함.

라. 告知前 押留時에 告知하여야 할 期間 縮小(국세징수법 §24⑤)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납세자의 破產, 強制執行 등 긴급한 경우에 고지할 때까지 기다려 押留를 하면 租稅의 徵收가 곤란하므로 押留부터 하고 나서 告知를 할 수 있음	
○ 압류후 3個月 이내에 국세를 고지하지 않으면 押留를 解除하여야 함	○ 左 同
○ 다만, 地方國稅廳長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6個月까지 고지할 수 있는 期間이 延長됨	○ 削 除

(2) 改正理由

押留와 관련된 국세를 조속히 告知함으로써 납세자의 財產權이 부당히 침해되는 것은 방지하도록 하였다.

〈參 考〉

○ 일반적인 押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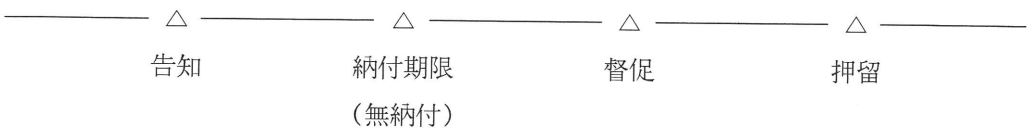

○ 告知前 押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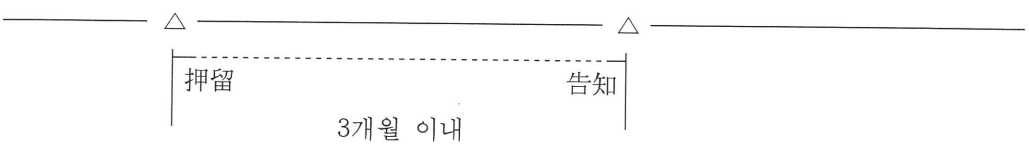

2. 신속한 滯納額 整理를 위한 制度 改善

가. 重加算金의 加算率 및 期間 改善(國稅徵收法 §2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加算率 ○ 納付期限 경과후 每1月마다 체납세의 2% — 期 間 ○ 納付期限 경과후 10個月까지 부과(滯納稅의 20%)	— 加算率 ○ 納付期限경과후 每1月마다 체납세의 1.2% — 期 間 ○ 5年(60個月)까지 부과 (滯納稅의 72%)

(2) 改正理由

重加算金은 체납세에 대한 일종의 利子性格을 가진 것으로 종전의 月2%의 加算率은 시장금리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으며 滯納後 10個月이 지나면 더이상 重加算金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종전 제도는 長期滯納者에게 오히려 有利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改善하고자 하였다.

- 徵收權의 消滅時效期間인 5年까지 부과하도록 하였음.

나. 세무서장이 隨意契約에 의해 賣却할 수 있는 財產價格의 現實化 (국세징수법 §6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押留한 재산의 推算價格이 10萬원 미만인 때에는 隨意契約에 의하여 賣却할 수 있음	— 1,000萬원 미만으로 上向調整함

(2) 改正理由

이 규정은 1974年에 개정된 것으로 그동안의 經濟規模의 成長이나 物價上昇 등을 고려할 때 가격수준이 너무 낮아 그 價格을 上向調整할 필요성이 있어, 세무서장이 隨意契約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는 재산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滯納處分 業務의 效率性을 도모하도록 하였다.

다. 滯納者의 滯納處分 中止 要請制度 新設(국세징수법 §85④)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할 경우 稅務署長이 滯納處分의 執行을 中止 〈新 設〉	— 滯納者도 滯納處分의 中止를 要請할 수 있도록 함

(2) 改正理由

納稅者의 便宜 및 權利保護를 위하여 滯納者도 滯納處分의 中止를 要請할 수 있도록 하였다.

※ 中止要件 : 押留財產의 價格이 滯納處分費에 充當하고 殘餘가 없거나 國稅보다 優先權이 있는 債權金額에 充當하고 殘餘가 없을 경우

3. 行政節次의 簡素化

가. 公賣代行의뢰시 地方國稅廳長 承認制度 廢止(국세징수법 §6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세무서장이 成業公社에 압류한 재산의 公賣代行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 地方國稅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함	○ 地方國稅廳長의 承認制度를 廢止함

(2) 改正理由

세무서장의 公賣代行의뢰 승인요청에 대하여 地方國稅廳長이 이를 拒否할 실익이 없으며 현실적으로도 拒否하는 사례가 없으므로 行政節次를 簡素化하기 위해 改正하였다.

1994년

◉ 법 률 : 1994.12.22. 법 률 제 4811호(시행일 : 1995. 1. 1.)
◉ 시 행 령 :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4호(시행일 : 1995. 1. 1.)
◉ 시행규칙 : 1994. 7. 1. 재무부령 제 1985호(시행일 : 1994. 7. 1.)
1995. 2.20. 총 리 령 제 489호(시행일 : 1995. 2.20.)

〈要 約〉

○ 相互合意節次가 進行中인 경우 徵收猶豫 허용
○ 滯納國稅의 金融機關 納付範圍 擴大
○ 納稅完納證明書의 發給節次 簡素化
○ 自動移替納付의 對象國稅 擴大
○ 督促狀 發付期限의 延長

〈改正內容〉

1. 相互合意節次가 進行中인 경우 徵收猶豫 허용

(法 §15, §19, 令 §22, §24－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徵收猶豫의 사유 － 災害 또는 盜難으로 재산에 심한 損失을 받은 때 － 事業에 현저한 損失을 받은 때 － 事業이 중대한 危機에 처한 때 － 納稅者 또는 그 同居家族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長期治療를 요하는 때 －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때	○ 租稅條約에 의한 相互合意節次가 진행중인 때에도 相互主義에 의하여 징수유예를 허용함
○ 徵收猶豫期間 － 原則 : 6월 이내 － 例外(사업상 위기 등) : 9월 이내	－(현행과 같음)
〈新　　設〉	－ 상호합의 진행중의 徵收猶豫는 相互合意進行期間(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그 결과 통지의 수령일)
○ 徵收猶豫期間중에는 加算金 및 重加算金을 징수하지 아니함	○ 徵收猶豫를 허용하되 利子相當額은 징수함 － 加算期間 : 납부기한 익일부터 유예기간 만료일까지 － 加算率 : 법인세의 미납부가산세율 준용(납부일 또는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여 2년 이내는 1일 0.04%, 2년초과는 1일 0.03%)

(2) 改正理由

○ 相互合意 상대국이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동등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 相互主義 원칙을 적용하여 徵收猶豫를 허용함으로써

－ 國際化·開放化에 따른 納稅便宜를 제고하되

－ 다만, 相互合意節次의 남용방지를 위해 利子相當額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滯納國稅의 金融機關 納付範圍 擴大(令 §1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滯納國稅의 납부방법 — 50만원 미만 : 金融機關에 납부 — 50만원 이상 : 稅務署에 납부	 — (현행과 같음) — 金融機關에 납부

(2) 改正理由

○ 현재 稅務署에 納付하고 있는 50만원 이상의 滯納國稅를 納稅者가 직접 가까운 金融機關에 納付하도록 함으로써

— 稅金納付에 있어서 便宜를 提供하는 한편, 稅務公務員의 稅金收納에 따른 事故 發生素地를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3. 1부터 시행

○ 1995. 3. 1전에 告知를 받은 國稅의 納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4) 參考(滯納國稅의 納付方法)

○ 그동안 50만원 이상의 滯納國稅를 金融機關에서 수납하기가 어려운 것은 납기경과 후 매 1개월마다 重加算金(월 1.2%, 최고 72%)이 加算되므로 그 계산이 어렵기 때문이었다.

— 이번에 납세자가 重加算金을 직접 計算·記載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도록 納稅告知書에 중가산금의 계산방식을 표기하는 등 書式을 개정하였다(별지 서식 참조)

○ 아울러 50만원 이상의 滯納國稅를 金融機關에 납부하게 됨에 따라 告知國稅의 수납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區 分	現 行	改 正
— 50만원 이상 고지국세		
• 납기 내	• 금융기관	• 현행과 같음
• 납기 후	• 세무서	• 금융기관
— 50만원 미만 고지국세		
• 납기 내	• 금융기관	• 현행과 같음
• 납기 후	• 금융기관	• 현행과 같음

〈별지 서식〉 (제1면의 앞면)

발행번호		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납세자용)	계좌번호	
성명(법인명)		(50만원 이상·미만)	납세자번호	
주소(사업장)			세목코드	

납기내	납부기한		년 월 일	과세연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재정경제원소관	조세	분

납기내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농어촌특별세											
계											

납기후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년 월 일까지	가산금												
	①계												
년 월 일까지	②중가산금												
	계(①+②)												
년 월 일(⑤) ※납세자가 기재함	③중가산금												
	④계(①+③)												

위 금액을 제2면의 뒷면 안내말씀을 참조하여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세무서장 인

※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국세로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된 경우에는 납세자가 뒷면의 중가산금계산례를 참조하여 굵은 선안의 금액을 직접 기재하여 납부하셔야 됩니다.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수납인 취급자인)

년 월 일 은행(우체국)

22226－00641일
'95. 2. 2 승인

170㎜×105㎜
(전산용지(특급) 70g/m²)

(제1면의 뒷면)

중 가 산 금 계 산 례

납기내	납부기한		95년 7월 31일	과세연도		'94년					
	부가가치세		백	십	억	천	백	십	만	천	백	십	원
							1	0	0	0	0	0	0
	농어촌특별세												
	계						1	0	0	0	0	0	0
납기후	95년 8월 31일까지	가산금							5	0	0	0	0
		①계					1	0	5	0	0	0	0
	95년 9월 30일까지	②중가산금							1	2	0	0	0
		계(①+②)					1	0	6	2	0	0	0
	95년11월 25일(⑤) ※납세자가 기재함	③중가산금							3	6	0	0	0
		④계(①+③)					1	0	8	6	0	0	0

(납부기한이 1995년 7월 31일인 부가가치세를 1995년 11월 25일에 납부할 경우)

1. ③란(중가산금)은 ②란 금액(매월분 중가산금)에 납부기한으로부터의 경과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예) 12,000원(②란 금액)×3(경과월수)
   =36,000원
   ※ 납부기한으로부터의 경과월수는 1995년 8월 1일부터 계산하여 3개월(8월, 9월, 10월)이며, 11월은 아직 1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 ④란(계)은 ①란 금액과 ③란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
   (예) 1,050,000원+36,000원
   =1,086,000원
3. ⑤란(납부일자)은 실제 납부하는 일자를 기재합니다.
   (예) 1995년 11월 25일

(제2면의 앞면)

세 액 산 출 근 거(납세자용)	
과세귀속연도는 ☐ 년입니다. 과세표준은 ☐☐☐☐☐☐ 원이고 세율 ☐ %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 원이 됩니다.	여기에 가산세 ☐☐☐☐ 원을 더하고 각종 공제세액 (법정공제세액, ☐☐☐☐ 원을 빼면 기납부세액 등) 납기내 고지세액은 ☐☐☐☐ 원이 됩니다. ※ 이 납세고지는 _____에 의한 것입니다.
의문사항은 과(☎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무 서 장 ※ 뒷면의 안내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2226－00642일
1995. 2. 2 승인

170㎜×105㎜
(전산용지(특급) 70g/㎡)

(제2면의 뒷면)

안 내 말 씀

1. 고지된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5퍼센트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납부기한 경과 후 매 1개월마다 1.2퍼센트의 중가산금(최장 60개월까지)이 추가(세목별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되며, 독촉장을 받고 완납하지 아니하면 국세징수법 제24조제1항에 의하여 재산의 압류가 가능합니다.
3.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 세금을 납부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고, 그 이후에는 납세자가 중가산금을 제1면의 뒷면을 참조하여 직접 계산·기재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세목별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4.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가셔서 고지서를 재발부받으시기 바랍니다.
5. 이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6. 납부하신 후 영수증서는 세금납부에 대한 증빙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3. 納稅完納證明書의 發給節次 簡素化(令 §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納稅完納證明書는 事業場管轄稅務署를 경유하여 發給申請	
— 개인 : 住所地管轄稅務署	— 住所地 또는 事業場管轄稅務署(事業場管轄稅務署의 경유 절차는 생략)
— 법인 : 本店所在地管轄稅務署	— (현행과 같음)
○ 다음은 事業場管轄稅務署 경유 절차를 생략	
— 사업장의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 (현행과 같음)
— 다음 중에서 證明書發給簡素化 對象法人으로 지정받은 경우	
• 金融機關	모든 법인
• 公共法人	
• 政府出捐機關	

(2) 改正理由

○ 納稅完納證明書를 住所地뿐만 아니라 事業場管轄稅務署에서도 발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納稅者가 事業場에서 住所地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 2년간 國稅를 滯納하지 아니한 성실한 公共法人만 證明書發給 簡素化對象 法人으로 지정받을 수 있던 것을 모든 法人으로 擴大함으로써 發給節次의 簡素化를 통하여 納稅便宜를 제고하였다.

4. 自動移替納付의 對象 國稅 擴大(令 §1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自動移替納付의 대상 국세	
— 附加價値稅 課稅特例者 豫定 告知分	— (현행과 같음)
— 綜合所得稅 中間豫納告知分	
(추 가)	— 附加價値稅 限界稅額控除對象者 豫定告知分

(2) 改正理由

○ 納稅者의 預金計座에서 自動移替納付할 수 있는 國稅를 定期的으로 告知되는 모든 國稅로 확대하여 稅金納付에 있어서 편의를 도모하였다.

5. 督促狀 發付期限의 延長(法 §2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納稅者(第2次納稅義務者)가 告知된 國稅(滯納額)를 그 納付期限까지 完納하지 아니한 때에는 — 納期經過後 7일 이내에 督促狀(納付催告書)를 發付해야 함	 — 15일로 延長함

(2) 改正理由

○ 국세의 납부여부를 확인하는데 10일 정도 소요되고 督促狀의 작성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發付期限을 연장하였다.

1996년

◉ 법 률 : 1996.12.30. 법 률 제 5190호(시행일 : 1996.12.30.)
◉ 시 행 령 : 1996.12.31. 대통령령 제15190호(시행일 : 1996.12.31.)
◉ 시행규칙 : 1997. 4.10. 총 리 령 제 625호(시행일 : 1997. 4.10.)

〈要 約〉

○ 納稅完納證明書 등의 提出制度 改善
—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납세증명서」로 단일화
— 증명서발급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관할세무서 경유절차 폐지
— 납세증명서를 전국세무서에서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滯納·缺損處分資料 提供의 根據規定 新設

— 고액·상습체납자 및 고액결손처분자에 대한 자료를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

○ 納付期限의 指定期限 延長

—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에서 30일로 연장

○ 超過押留禁止規定 新設

—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

○ 公賣代金의 納付期限 延長

— 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기일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

○ 公賣公告內容 調整

— 공매공고내용에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삭제하고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추가

〈改正內容〉

1. 納稅完納證明書 등의 提出制度 改善

가. 納稅完納證明書 등의 單一化(法 §5, §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납세자는 다음의 경우 납세완납증명서 등을 제출 — 국가 등으로부터 대금을 지원받을 때 —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 내국인이 해외이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	○ 현행 유지
○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종류 : 납세완납증명서, 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유예증명서, 미과세증명서	○ 「납세증명서」로 단일화

(2) 改正理由

○ 현행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제출제도에 사용되는 4가지서식 중 징수유예증명서, 체납처분유예증명서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 발급실적이 전혀 없으며

— 납세완납증명서, 미과세증명서는 국세징수법상 목적 이외의 목적(신용대출시, 입찰시, 의료보험조합제출용 등)으로 발급되는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 민원서류간소화차원에서 현행 4가지로 세분화된 증명서를 「납세증명서」로 단일화시킴.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3. 1부터 적용

나. 納稅證明書의 發給節次 簡素化(令 §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납세증명서의 발급세무서 — 개인 : 사업장 또는 주소지관할세무서 — 법인 : 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 ○ 경유절차 :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장관할세무서를 경유하여 본점소재지관할세무서에 신청	○ 납세증명서의 발급세무서를 전국세무서로 확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신설 ○ 경유절차 폐지

(2) 改正理由

○ 1997년 국세통합시스템의 시행에 따라 납세편의 증진을 위한 「전국 one-stop service」의 일환으로

— 전국세무서에서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 법인이 납세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업장관할세무서의 경유절차를 폐지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3. 1부터 적용

2. 滯納·缺損處分資料 提供의 根據規定 新設(法 §7의 2, 令 §10의2, §10의3, §10의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다음에 해당하는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에 대해서는 그 인적사항, 체납액(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할 수 있음. 1) 체납발생일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2)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 3)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체납자료는 제공대상에서 제외 1) 체납국세와 관련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이 계류중인 경우 2) 체납자가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때 3)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은 때 4)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때 ○ 제공절차 :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은 문서로서 자료를 요구하여야 하며 자료제공은 문서 또는 전산매체(디스켓, M/T 등)에 의할 수 있음.

(2) 改正理由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신용정보에 포함되는 체납·결손처분자료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함으로써

—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평가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사회 정착을 도모하고,

— 국세체납액의 징수를 촉진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부터 적용

* 신용정보업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신용정보(주), 한국신용평가(주), 한국기업평가(주)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3. 納付期限의 規定期限 延長(法 §1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세무서장은 고지서 발부시 납부기한을 고지하는 날부터 15일 내로 지정할 수 있음. 다만, 상속세의 경우는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음.	○ 납부기한을 고지일부터 현행 15일 내에서 30일 내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改正理由

○ 현행 등기송달되는 고지서의 반송률이 약 20%에 이르는바 고지서가 반송되는 경우 지정된 납부기한의 7일전까지 고지서의 재송달이 곤란함에 따라 발생하는 납기연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 경제규모 확대로 고지세액이 고액화함에 따라 납세자에게 납부자금마련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기 위하여 납부기한의 지정기한을 현행 15일내에서 30일내로 연장하도록 함.

* 납세고지서는 납세자에게 납부기한으로부터 최소한 7일전에 송달되어야 함.(국세기본법 §7)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부터 적용

〈참고〉

고지서 송달절차 및 소요기간(발송일부터 15일 이후로 납기를 지정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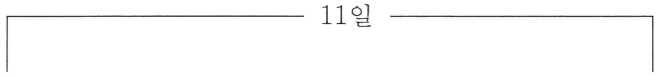

등기송달(3일) → 반송(3일) → 재송달준비(2일) → 재송달(3일)

⇒ 납세자는 납부기한으로부터 4일전 고지서 수령(납기연장문제 발생)

4. 押留가 制限되는 給與의 種類 추가(法 §3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음.	○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에 퇴직금 포함.

(2) 改正理由

○ 현행 퇴직금도 해석상(조세22607-287, 1988.3.30)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에 해당되나

-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에 명문화시킴.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부터 적용

5. 超過押留禁止規定 新設(法 §33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 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음.

(2) 改正理由

○ 세무서장은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 체납액 징수를 위해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압류처분에 의한 체납자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함.

* 예 : 체납액이 500만원인 체납자의 건물(체납충당가능액 500만원 이상)을 압류한 상태에서 체납자의 부동산을 추가로 압류할 경우 초과압류금지 규정 위반.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부터 적용

6. 公賣公告 內容의 調整(法 §6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공매공고 내용 —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 공매재산의 명칭·주소·수량·품질·매각예정가격 — 입찰·경매의 장소와 일시 — 개찰의 장소와 일시 — 보증금을 받을 때 그 금액	○ 공매공고내용에 「체납자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를 삭제하고 — 「매수대금의 납부기한」 추가

(2) 改正理由

○ 공매공고제도는 매수자에게 공매재산의 매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 체납자의 인적사항은 공매재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매수자에게 필수적인 정보라고 보기 곤란하므로 공고내용에서 삭제하고

— 매수대금의 납부기한은 매수자에게 사전에 공매대금마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고내용에 추가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부터 적용

7. 公賣代金의 納付期限 延長(法 §7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공매대금의 납부기한은 매각결정일부터 7일내이며, — 세무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연장 가능.	○ 공매대금 납부기한의 추가연장 기일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2) 改正理由

○ 공매대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공매대금마련에 시간적 여유를 줌으로써 고가공매재산의 공매 촉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0부터 적용

8. 押留가 制限되는 給與金 總額의 범위 調整(令 §3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여금은 그 총액의 1/2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으며 — 급여금의 총액은 급여금의 전액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임.	○ 급여금 총액을 급여금의 전액에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함.

(2) 改正理由

○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에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도 포함되므로 급여금의 총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주민세도 급여금의 전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 예 : 급여금 전액이 100만원이고, 근로소득·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소득할 주민세가 20만원인 경우 80만원(100만원－20만원)의 1/2인 40만원까지 압류 가능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1부터 적용

9. 公賣手數料率 調整(規則 §45의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성업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업무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공매수수료 지급	○ 공매수수료율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 재산매각의 경우 : 매각금액×1.5%	— 재산매각의 경우 : 매각금액×2%
—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 자납금액×0.5%	— 체납액을 자진납부한 경우 : 현행유지
— 매각금액·자납금액의 최고한도 : 7억원	— 매각금액·자납금액·해제금액의 최고한도 : 10억원
— 최저수수료 : 3만원	— 최저수수료 : 현행유지
	— 해제수수료 신설 : 해제금액×0.3%
	* 해제금액 : 체납액 또는 매각예정가격 중 적은 금액

(2) 改正理由

○ 성업공사가 수행하는 공매대행업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공매수수료의 요율을 업무수행에 따른 인건비 등 실경비를 감안하여 조정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4. 10 이후 최초로 성업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

第 3 章　租稅犯處罰法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1951년 : 租稅犯處罰法의 制定

① 국민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② 몰취물품 및 범칙행위에 대해 규정한다.
③ 처벌대상과 포탈범의 기수시기에 대해 규정한다.
④ 공소와 시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954년

① 벌금액을 인상한다.
② 납세증지를 재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1956년

①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한다.
② 정부명령위반·신고의무해태 등에 대한 벌칙을 완화한다.

1958년

① 입장권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1961년

① 주세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② 탈세행위에 대한 형량을 세목별로 조정한다.
③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④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도록 교사한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한다.

⑤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한다.

1962년

① 탈세범벌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명정한다.
② 납세증지를 첩용하지 아니한 주류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1965년

① 주세, 물품세 등을 제외한 국세의 포탈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한다.
② 장부의 소각, 파기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1967년

①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다계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인지 재사용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기타 벌칙을 강화한다.

1969년

① 관인영수증에 관한 벌칙을 신설한다.

1970년

① 직물류세의 범칙행위를 처벌한다.

1974년

① 간접세 질서범 중 납세 병마개 위조,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과 표준계산서 및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벌칙을 규정한다.

1976년

〈조세범처벌법 관련〉

① 금전등록기 사용의무자에 대한 벌칙의 제정과 간접세질서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② 기장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③ 범칙행위의 공소시효를 연장한다.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①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영업세, 물품세 등 구 간접세질서법 처벌규정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로 용어를 정리하고, 세금계산서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다.

1980년

① 부가가치세 포탈범에 대한 벌금을 인하한다.

②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의 범위를 조정한다.

③ 조세포탈범의 기수시기를 명확히 한다.

④ 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에 대한 처벌범위를 조정한다.

1994년

① 자료상의 처벌근거 신설 등 세금계산서 관련범의 처벌을 강화한다.

② 자가소비목적의 주류제조자에 대한 처벌을 배제한다.

③ 공소시효의 연장 등 기타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이하에서 법이란 조세범처벌법을 말하며, 영이란 조세범처벌법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조세범처벌법시행규칙을 말한다)

1951년 : 租稅犯處罰法의 制定

◉ 법　　률 : 1951. 5. 7.　　법　　률 제199호(시행일 : 1951. 6. 7.)

〈要　　約〉

○ 국민의 납세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제정한다.
○ 몰취물품 및 범칙행위에 대해 규정한다.
○ 처벌대상과 포탈범의 기수시기에 대해 규정한다.
○ 공소와 시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制定內容〉

1. 沒取物品

(1) 法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製造한 物品.
(2) (1)의 物品製造에 의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
(3) 法에 의한 納稅畢證印의 押捺 또는 納稅의 事實을 證明하는 一定한 表示를 하지 아니하고 搬出한 物品

2. 犯則行爲

(1) 法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物品을 製造 또는 販賣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2) 法에 의한 營業鑑札의 交付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하는 者는 5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3) 詐僞 其他 不正한 行爲로서 租稅를 逋脫하거나 逋脫하고자 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그 逋脫하거나 逋脫하고자 한 稅額의 5倍 以上 10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4) 納稅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3回 以上 滯納하는 경우에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그 納稅額의 2倍 以上 10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5) 租稅徵收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稅를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徵收한 稅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境遇에는 3年 以上의 懲役 또는 그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5倍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6) 滯納者 또는 滯納者의 財産을 占有하는 者가 租稅를 免脫할 또는 免脫케 할 目的으로써 그 財産을 藏匿脫漏하거나 또는 虛僞의 契約을 하였을 때 및 差押物의 保管者가 그 保管한 物件을 藏匿脫漏, 消費 또는 毁損하였을 때에는 2年 以下의 懲役에 處함. 그 情(의도)을 알고 行爲를 幇助하거나 虛僞의 契約을 承諾한 者는 1年 以下의 懲役에 處함.

(7) 다음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① 法의 規定에 의한 政府의 命令事項에 違反한 者

② 法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告知를 怠慢하거나 虛僞의 申告 또는 告知를 한 者

③ 財産에 관하여 虛無人名義를 使用한 納稅義務者 또는 그 情(의도)을 알고 이에 協力한 者

④ 他人의 租稅에 관하여 政府에 虛僞의 申告를 한 者

⑤ 正當한 事由없이 法의 規定에 의한 支拂調書 또는 計算書를 提出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虛僞의 記載를 한 者

⑥ 法의 規定에 의한 帳簿 또는 料金領收證을 調製하지 아니하거나 그 記載를 怠慢 또는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또는 帳簿나 料金領收證을 隱匿한 者

⑦ 法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⑧ 未納稅로 搬出한 物品 또는 免稅한 物品을 指定한 場所에 入庫하지 아니하거나 所定 用途에 使用 또는 輸出하지 아니한 者

⑨ 法의 規定에 違反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를 使用한 者

⑩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質問에 대하여 答辯을 하지 아니하거나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또는 그 職務의 執行을 拒否 또는 忌避한 者

(8)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課稅標準의 申告(申告의 修正 包含)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 하지 않을 것을 煽動 또는 敎唆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9)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申告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 또는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 하지 아니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萬圓 以下의 罰金에 處함.

(10)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또는 補助하는 者가 租稅에 관한 調査事務에 관하여 知得한 祕密을 漏泄하거나 盜用한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함.

⑾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 또는 補助하는 者가 그 職務上 不正行爲를 하였을 때에는 5年 以下의 懲役에 處함.

3. 處罰對象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其他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犯則行爲를 한 때는 行爲者 以外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處罰함. 但, 行爲者에 대하여는 情狀에 의하여 그 刑을 減免할 수 있음.

4. 公 訴

租稅犯處罰法에 規定한 犯則行爲는 司稅廳長, 稅務署長 또는 稅務에 從業하는 公務員의 告發이 있어야 함.

5. 時 效

犯則行爲의 時效 2年이 經過함으로써 時效完成(公訴時效)
但, 犯則者가 國外로 逃避한 때에는 5年

1954년

◉ 법 률 : 1954. 4.14. 법 률 제331호(시행일 : 1954. 5.15.)

〈要 約〉

○ 벌금액을 인상한다.
○ 납세증지를 재사용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1. 沒取物品

(1)~(2) : 前과 같음.(1951年 해당조항)

(3) 「表示를 하지 아니하고 搬出한 物品」을 「表示를 하지 아니한 物品」으로 改正함.

2. 犯則行爲

(1)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稅額의 20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으로 改正함.

(2)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3) 「5倍 以上 10倍 以下」를 「20倍 以下」로 改正함.

(4)~(6) :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7) 다음 1에 該當하는 者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함.

①~⑩ :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⑪ 納稅證紙를 再使用하거나 또는 政府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他人에게 讓渡하는 者(新設)

⑫ 納稅畢證印이나 納稅證紙를 僞造, 變造하거나 또는 이를 他人에게 交付한 者(新設)

(8) 「30萬圓 以下」를 「30萬圜 以下」로 改正함

(9) 「50萬圓 以下」를 「50萬圜 以下」로 改正함

(10)~(11) :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1956년

◉ 법　　률 : 1956.12.31.　　법　　률 제423호(시행일 : 1956.12.31.)

〈要　　約〉

○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완화한다.

○ 정부명령위반·신고의무해태 등에 대한 벌칙을 완화한다.

〈改正內容〉

※ 전반적 흐름

租稅犯處罰法을 1954年 4月에 改正 實施하여 왔던 바 그 後 社會 및 經濟實情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法의 缺陷 또는 지나치게 苛酷하다고 認定되는 點이 있었으므로 이를 是正 緩和하여 租稅行政秩序의 維持를 圖謀하도록 한 것이며 그 改正의 要點은 다음과 같다.

(1) 無免許의 酒母, 酒醪, 麴子, 粒麴 및 粒麴의 製造販賣者에 대하여 懲役刑에는 處할 수 있으나 罰金刑에는 處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를 罰金刑에 處할 수 있도록 하고,

(2) 滯納者 및 徵收義務違反犯의 處罰에 있어서 稅額의 2倍 以下 또는 5倍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하게 되어 있는 것을 10倍 또는 5倍 以下로 最高額만을 規定하고,

(3) 無免許製造物品에 대한 稅額 및 脫稅額은 卽時 賦課徵收하여 納期에 대한 惠澤을 주지 아니하고,

(4) 滯納犯 및 秩序犯에 대한 懲役刑을 削除하여 處罰의 適正을 期하였다.

1. 犯則行爲

(1) 法에 依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物品을 製造 또는 販賣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하고 그 製造物品에 대한 稅額은 製造者로부터 卽時 徵收함(酒母와 酒醪는 濁酒로 看做함).

(2)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3) ① 前과 같음.(1954년 해당조항)

② 위의 경우에 있어서 포탈하거나 포탈하고자 한 稅額은 卽時 徵收

(4) 同 : 10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2年 以下의 懲役」과 「2倍 以上」은 削除)
(1951년 해당조항)

(5) 同 : 「稅額의 5倍」를 「稅額의 5倍 以下」로 改正함.(1951년 해당조항)

(6) 前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7) 「1年 以下의 懲役 또는」을 削除함.

①~⑫ : 前과 같음.(1954년 해당조항)

(8)~(11) : 前과 같음.(1954년 해당조항)

1958년

◉ 법　　률 : 1958.12.29.　　법　　률　제515호(시행일 : 1958.12.29.)

〈要　　約〉

○ 입장권용지를 교부하지 아니한 업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1. 犯則行爲

(1)~(6) : 前과 같음.(1956년 해당조항)

(7) ①~⑫ : 前과 같음.(1954년 해당조항)

⑬ 法의 規定에 의한 入場券用紙를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切取하지 아니한 業者(新設)

⑭ 法의 規定에 의한 入場券을 政府의 承認없이 讓渡 또는 讓受한 業者

⑮ 法의 規定에 의한 入場券用紙를 僞造, 變造하거나 또는 이를 再使用한 者(新設)

(8)~(11) : 前과 같음.(1954년 해당조항)

1961년

◉ 법　　률 : 1961.12. 8.　　법　　률 제820호(시행일 : 1961.12. 8.)

〈要　　約〉

○ 주세법위반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 탈세행위에 대한 형량을 세목별로 조정한다.
○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 과세표준을 허위신고하도록 교사한 자 등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한다.
○ 세무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를 가중처벌한다.

〈改正內容〉

※ 전반적 흐름

租稅犯에 대한 處罰의 刑量을 現經濟實情에 符合되도록 調整하기 위하여 租稅逋脫犯에 대한 罰科金 및 刑量은 直接稅, 間接稅와 印紙稅로 區別하고 逋脫未遂犯은 酒稅의 경우에 限하여 處罰토록 하였다.

旣定法에서는 租稅滯納犯에 대해 滯納額의 10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을 課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그 滯納額에 相當하는 罰金을 課하도록 改正하였고, 各種 證印, 證紙의 僞造犯에 대해서는 司稅官署의 告發없이 處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稅政의 刷新을 期하기 위하여 稅務公務員의 不正行爲나 祕密漏泄을 加重處罰하도록 하였다.

租稅犯處罰節次法에 있어 通告處分期間이 從來 7日로 되어 있어 實情에 符合되지 않아 이를 15日로 延長하였다.

1. 犯則行爲

(1) ①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酒類, 酒母, 酒醪, 麴子, 粒麴, 種麴을 製造 또는 販賣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百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함.(酒母 및 酒醪는 濁酒로 看做함)

但, 當該 酒稅相當額의 3倍의 金額이 百萬圜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② 法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自家消費의 目的으로 濁酒 또는 藥酒를 製造한 者는 10萬圜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但, 酒母 및 酒醪는 濁酒로 看做함)

③ ②의 경우에 있어서 그 製造物品에 대한 稅額은 製造者로부터 卽時 徵收함.

(2) 削除.(1951년 해당조항)

(3) ㈎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租稅를 逋脫하거나 租稅의 還付를 받은 者 또는 租稅徵收義務者로서 正當한 事由없이 稅金을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徵收한 稅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

① 酒稅, 物品稅, 石油類稅, 入場稅, 電氣가스稅, 通行稅의 경우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百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함. 이 境遇에 逋脫稅額 또는 徵收하지 아니 하였거나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3倍에 相當하는 金額이 5百萬圜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② 印紙稅의 境遇에는 證書, 帳簿 1個마다 3萬圜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이 境遇에 포탈한 稅額의 3倍에 相當하는 金額이 3萬圜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③ ②의 規定한 以外의 國稅의 경우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5百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함. 이 경우에 逋脫하거나 還付를 받은 稅額이 5百萬圜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④ ①~③의 경우에 있어서 逋脫하거나 逋脫하고자 한 稅額 또는 還付를 받은 稅額은 卽時 徵收함.

㈏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所得金額은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因하여 생긴 所得金額으로 보지 아니함.(新設)

① 法에 의한 所得金額 決定에 있어서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差異로 因하여 생긴 金額

② 法人의 行爲 또는 計算에 不拘하고 法人의 所得金額을 政府가 調査한 바에 의하여 決定한 경우에 그 法人의 株主, 社員, 使用人 其他 特殊한 關係있는 者에게 歸屬되었다고 認定하는 勤勞所得金額과 配當利子所得金額

(4) 「滯納額의 10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을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滯納額에 相當

하는 罰金」으로 함.

(5) 租稅의 源泉徵收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그 稅를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徵收한 稅金을 納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徵收하지 않았거나 納付하지 않은 稅額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6) ㈎ 前 (6)과 같음.(1951년 해당조항)

㈏ 다음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3百萬圜 以下의 罰金에 處함. (新設)

① 納稅證紙를 再使用하거나 政府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他人에게 讓渡한 者

② 納稅證印이나 納稅證紙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③ 僞造 또는 變造한 納稅證印이나 納稅證紙를 所持 또는 使用하거나 他人에게 交付한 者

④ 法에 의한 入場券을 政府의 承認없이 讓渡 또는 讓受한 者

⑤ 法에 의한 入場券을 僞造 또는 變造한 者

⑥ 法에 의한 入場券을 再使用한 者

⑦ 他人의 租稅에 關하여 政府에 虛僞의 申告를 한 者

(7) 다음 1에 該當하는 者는 50萬圜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① 法에 의한 政府의 命令事項에 違反한 者

② 法에 의한 申告 또는 告知에 있어서 故意로 이를 怠慢하거나 虛僞의 申告 또는 告知를 한 者

③ 財產에 關하여 虛無人名義를 使用한 納稅義務者 또는 그 情(의도)을 알고 이에 協力한 者

④ 法에 의한 支拂調書, 計算書 또는 報告書에 虛僞의 記載를 한 者

⑤ 法에 의한 帳簿 또는 料金領收證에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帳簿나 料金領收證을 隱匿한 者

⑥ 法에 의한 檢査 또는 承認을 받지 아니한 者

⑦ 未納稅로 搬出한 物品 또는 免稅한 物品을 故意로 指定한 場所에 入庫하지 아니하거나 所定用途에 使用 또는 輸出하지 아니한 者

⑧ 法에 違反하여 檢定을 받지 아니한 機械, 器具 또는 容器를 使用한 者

⑨ 稅務에 從事하는 公務員의 質問에 대하여 虛僞의 陳述을 하거나 그 職務執行을 拒否 또는 忌避한 者

⑩ 法에 의한 入場券을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切取하지 아니한 者

(8) 同 : 「30萬圜」을 「100萬圜」으로 함.(1954년 해당조항)
(9) 同 : 「50萬圜」을 「200萬圜」으로 함.(1954년 해당조항)
(10) 稅務公務員으로서 刑法 中 公務員의 職務에 關한 罪를 犯하였을 때에는 그 罪가 定한 刑의 長期의 3分의1까지 加重處罰할 수 있음.
(11) 削除((10)으로 이관)

1962년

◉ 법　　률 : 1962.12. 8.　　법　　률 제1209호(시행일 : 1962.12. 8.)

〈要　　約〉

○ 탈세범벌칙행위의 기수시기를 명정한다.
○ 납세증지를 첨용하지 아니한 주류 등을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1. 犯則行爲

(1)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1961년 개정에서 삭제
(3) (가)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① 「通行稅」 다음에 「證券去來稅」를 挿入함.
②~④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나)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4)~(5)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6) (가), (나)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다) (新設)
① 酒稅法, 物品稅法, 石油類稅法, 入場稅法, 通行稅法 또는 證券去來稅法의 規

定에 의한 帳簿를 備置, 記帳하여야 할 者가 그 帳簿를 備置, 記帳하지 아니한 때에는 5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② 法의 規定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한 者가 그 帳簿를 作成한 날로부터 5年內에 租稅逋脫을 위한 證據湮滅의 目的으로 이를 燒却하거나 破棄한 때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7) ①~③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④ 法에 의한 支拂調書, 計算書 또는 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였거나 虛僞의 記載를 한 者

⑤~⑩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⑪ 法에 의한 納稅證紙가 貼用되어 있지 아니한 酒類, 政府의 免許없이 製造한 酒類 또는 免稅한 酒類를 販賣의 目的으로 所持하거나 販賣한 者(新設)

⑫ 酒稅法에 의하여 都賣業의 免許를 받은 者에게만 酒類를 出庫 또는 販賣하여야 할 者로서 都賣業者 以外의 者에게 酒類를 出庫 또는 販賣한 酒類製造業者(新設)

⑬ 法에 違反하여 酒精을 購入, 使用 또는 所持하거나 製造場으로부터 出庫한 者(新設)

(8)~(10)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逋脫犯의 旣遂時期

(1) 納稅義務者가 申告에 의하여 賦課徵收하는 租稅에 있어서는 當該 稅目의 課稅標準에 대한 政府의 決定 또는 調査決定한 후 그 納付期限이 經過한 때.

(2) (1)의 規定 以外 租稅에 있어서는 그 納付期限이 經過한 때.

1965년

◉ 법　　률 : 1965. 4. 3.　　법　　률 제1695호(시행일 : 1965. 5. 4.)

〈要　　約〉

○ 주세, 물품세 등을 제외한 국세의 포탈에 대한 벌금액을 인상한다.

○ 장부의 소각, 파기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한다.

〈改正內容〉

1. 犯則行爲

(1)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2) 1961년 개정에서 삭제됨.
(3) (가) ①~② :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③ 「還付를 받은 稅額이」를 「還付를 받은 稅額의 2倍에 相當하는 金額이」로 함.
④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나)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4)~(5)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6) (가), (나)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다) ①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② 租稅逋脫을 위한 證據湮滅의 目的으로 業務에 關하여 作成한 帳簿를 作成한 날로부터 5年 以內에 燒却, 破棄 또는 隱匿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
(7)~(10) :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1967년

◉ 법　　률 : 1967.11.29.　　법　　률 제1973호(시행일 : 1967.12.30.)

〈要　　約〉

○ 법인의 결손금액을 과대계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인지재사용범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타 벌칙을 강화한다.

〈改正內容〉

※ 전반적 흐름

가) 處罰規定을 新設하여 法人이 不正한 行爲로써 缺損所得金額을 過大 計上한 境遇와 印紙를 不消印하는 경우 및 消印된 印紙를 使用하는 境遇의 處罰을 規定하였고,

나) 租稅逋脫에 대한 旣遂時期에 대한 規定을 補完하여 無申告로 課稅漏落된 者에 대한 逋脫犯의 旣遂時期를 法定申告日이 經過한 날로부터 120日이 經過할 때로 定하였다.

1. 犯則行爲

(1) ①「百萬圜」을「50萬원」으로 함.
②「10萬圜」을「5萬원」으로 함.
③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① 酒稅, 物品稅, 石油類稅, 入場稅, 電氣가스稅, 通行稅, 證券去來稅의 경우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 이 경우에 逋脫稅額 또는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3倍에 相當하는 金額이 250萬원을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② 印紙稅의 경우에는 證書, 帳簿 1個마다 3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이 경우에 逋脫한 稅額의 3倍에 相當하는 金額이 3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③ ②에 規定한 이외의 國稅의 경우에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2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
이 경우에 逋脫하거나 還付를 받은 稅額의 2倍에 相當하는 金額이 250萬원을 超過한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④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4)~(5)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6)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00萬圜」을「150萬원」으로 함.

①～⑦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⑧ 消印된 印紙를 再使用한 者(新設)

㈏ ①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② 租稅포탈을 위한 證據湮滅의 目的으로 다른 稅法이 備置를 要하는 帳簿를 作成한 날로부터 2年 以內에 燒却·破棄 또는 隱匿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

③ 法人의 缺損金額을 過大計上한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

이 경우에 過大計上한 缺損金額을 課稅所得金額으로 보아 計算한 算出稅額의 2倍에 상당하는 金額이 5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新設)

⑺ 다음의 1에 該當하는 者는 10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①～⑬ :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⑭ 印紙를 貼用함에 있어서 消印하지 아니한 者(新設)

⑻～⑽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 逋脫犯의 旣遂時期

⑴ 但書를 新設함.(1962년 해당조항에 대한 단서)

納稅者가 租稅逋脫할 目的으로 法에 의한 課稅標準을 申告하지 아니함으로써 當該 稅目의 課稅標準을 政府가 決定 또는 調査決定할 수 없을 境遇에는 當該 稅目의 納付期限이 經過한 때.

⑵ 前과 같음.(1962년 해당조항)

4. 公 訴

告訴權者 : 國稅廳長, 地方國稅廳長, 稅務署長 및 稅務에 從業하는 公務員

1969년

◉ 법　　률 : 1969. 7.31.　　법　　률 제2126호(시행일 : 1969. 7.31.)

〈要　　約〉

○ 관인영수증에 관한 벌칙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1. 犯則行爲

(1)~(5)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6)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①~⑧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⑨ 政府의 承認을 얻지 아니하고 官認領收證用紙를 他人에게 讓渡한 者(新設)

⑩ 官認領收證書式과 同一 또는 類似한 領收證用紙를 印刷하거나 또는 그 用紙에 必要事項을 記載하여 行使한 者(新設)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7) ①~⑭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⑮ 官認領收證의 交付義務者로서 이를 交付하지 아니한 者(新設)

⑯ 官認領收證에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事實을 隱匿한 者

(8)~(10)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1970년

◉ 법　　률 : 1970. 1. 1.　　법　　률 제2160호(시행일 : 1970. 1. 1.)

〈要　　約〉

○ 직물류세의 범칙행위를 처벌한다.

〈改正內容〉

1. 犯則行爲

⑴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⑶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① 酒稅, 物品稅, 石油類稅, 入場稅, 電氣가스稅, 通行稅, 證券去來稅, 織物類稅(新設)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2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이 경우에 逋脫稅類 또는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하지 아니한 稅類의 3倍에 相當하는 金額이 25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②~③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⑷~⑸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⑹ ㈎, ㈏ 前과 같음.(1969년 해당조항)

㈐ ① 酒稅法, 物品稅法, 石油類稅法, 入場稅法, 通行稅法, 證券去來稅法 또는 織物類稅法(新設)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備置, 記帳하여야 할 者가 그 帳簿를 備置記帳하지 아니한 때에는 5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②~③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⑺~⑽ : 前과 같음.(1969년 해당조항)

1974년

◉ 법　　률 : 1974.12.24.　　법　　률　제2714호(시행일 : 1975. 1. 1.)

〈要　　約〉

○ 간접세 질서범 중 납세 병마개 위조, 재사용에 대한 처벌규정과 표준계산서 및 지급조서제출에 관한 벌칙을 규정한다.

〈改正內容〉

1. 犯則行爲

(1) ① 「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한다.

② 法에 依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自家消費의 目的으로 濁酒 또는 藥酒를 製造한 者에 대하여는 1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다만, 酒母 및 酒醪는 濁酒로 看做함.

③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3)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① 酒稅, 物品稅, 石油類稅, 入場稅, 電氣가스稅, 通行稅, 織物類稅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3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이 境遇에 逋脫稅額 또는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2倍에 相當하는 金額이 30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② 「3萬원」을 「5萬원」으로 함.

③ 「250萬원」을 「300萬원」으로 함.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4) 納稅義務者가 正當한 事由없이 會計年度에 3回 이상 滯納하는 경우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滯納額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5)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6)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 다음의 1에 該當하는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① 納稅證紙 또는 納稅甁마개를 再使用하거나 政府의 承認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他人에게 讓渡하는 者

② 納稅證印·納稅證紙 또는 納稅甁마개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③ 僞造 또는 變造한 納稅證印·納稅證紙 또는 納稅甁마개를 所持 또는 使用하거나 他人에게 交付한 者

④~⑧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⑨~⑩ : 削除(1969년 해당조항)

㈐ 帳簿備置記帳義務 不履行의 刑量

① 酒稅法, 物品稅法, 石油類稅法, 入場稅法, 通行稅法 또는 織物類稅法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備置, 記帳하여야 할 者가 그 帳簿를 記帳하지 아니할 때에는 1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

②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③ 法人의 缺損金額을 過大計上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2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함. 이 境遇에 過大計上한 缺損金을 課稅所得金額으로 보아 計上한 算出稅額의 2倍에 相當하는 金額이 200萬원을 超過할 때에는 그 超過한 金額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음.

(7) 各種 稅法違反의 罰金

다음의 1에 該當하는 者는 5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①~③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④ 法에 의한 支給調書, 計算書 또는 報告書를 提出하지 아니하였거나 虛僞의 記載를 한 者

⑤~⑩ :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⑪ 法에 의한 納稅證紙 또는 納稅甁마개가 貼用되어 있지 아니한 酒類, 政府의 免許없이 製造한 酒類를 販賣의 目的으로 所持하거나 販賣한 者

⑫~⑭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⑮ 法에 의한 標準計算書의 交付義務者로서 이를 交付하지 아니한 者

⑯ 法에 의한 標準計算書의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事實을 隱匿한 者

⑰ 法에 의한 營業稅 納稅者登錄 또는 訂正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法에 의한 營業者 納稅番號證의 確認을 하지 아니한 者(新設)

(8) 逋脫幇助 등의 刑量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課稅標準의 申告(申告의 修正을 包含)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게 하거나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 하지 않을 것을 煽動 또

는 敎唆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9) 納稅義務者로 하여금 申告를 하지 않게 하거나 虛僞의 申告를 하거나 또는 租稅의 徵收나 納付를 하지 아니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또는 脅迫을 加한 者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10) 前과 같음.(1961년 해당조항)

1976년

◉ 법 률 : 1976.12.22. 법 률 제2932호(임시조치법 부칙)(시행일 : 1977. 7. 1.)
1976.12.22. 법 률 제2936호(시행일 : 1977. 1. 1.)

〈租稅犯處罰法 관련〉

〈要 約〉

이번 稅制改革에서는 國民의 自發的인 納稅風土를 造成하기 위하여 所得稅·遊興飮食稅 등의 稅率引下와 附加價値稅에 있어 稅金計算書의 義務的 授受, 金錢登錄機 設置·使用의 制度化, 改編되는 間接稅의 自進申告納付制度로의 轉換 등의 稅制改善을 하는 한편, 租稅犯則行爲에 대하여는 그 處罰을 強化함으로써 納稅風土의 刷新을 期하도록 하였다.

○ 逋脫犯·缺損過大計上犯 및 間接稅 帳簿不備置犯의 罰金刑을 強化함.

○ 輕微한 犯則을 除外한 租稅犯則行爲의 公訴時效期間을 2年에서 3年으로 延長함.

○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義務違反者를 秩序罰로 處罰함.

〈改正內容〉

1. 逋脫犯 등의 財產刑 強化(法 第9條·第12條의3第1項 및 第3項)

租稅犯은 典型的인 經濟事犯임을 勘案하여 自由刑은 現行대로 두고 財產刑만을 다음과 같이 強化하였다.

犯 則 區 分	改 正 前	改 正
가. 租稅逋脫犯		
① 間接稅	3倍 以下	5倍 以下
② 印紙稅		
③ 直接稅	2倍 以下	3倍 以下
나. 缺損過大計上犯	2倍 以下	3倍 以下
다. 間接稅帳簿不備置犯	10萬원 以下	50萬원 以下

가. 租稅逋脫犯

從前의 租稅逋脫犯의 財產刑은 間接稅逋脫의 경우, 印紙稅逋脫의 경우 및 기타 稅目(間接稅)逋脫의 各 경우에 定額罰金(間接稅逋脫 : 300萬원 以下, 印紙稅逋脫 : 5萬원 以下, 直接稅逋脫 : 300萬원 이하)을 原則으로 하되, 高額逋脫에 對備하여 倍數罰金도 併用하고 있었는데 實質的인 罰金最高限度는 이 倍數罰金으로서 間接稅 및 印紙稅의 경우에는 逋脫稅額의 3倍 以下, 直接稅의 경우에는 逋脫稅額의 2倍 以下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間接稅·印紙稅·直接稅 各 逋脫의 경우 罰金의 定額限度額을 없애고 全面倍數罰金으로 轉換하면서 倍數罰金의 上限을 間接稅와 印紙稅의 경우에는 逋脫稅額의 5倍 以下까지로 直接稅의 경우에는 逋脫稅額의 3倍 以下까지로 強化하였다.

全面倍數罰金刑에 의하면 逋脫程度에 따라 보다 合理的인 處罰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나. 缺損過大計上犯

從前에는 缺損過大計上犯의 財產刑도 定額罰金과 倍數罰金을 併用하고 있었는데 定額罰金은 200萬원 以下까지였으며, 實質的인 罰金最高限度는 倍數罰金으로서 過大計上한 缺損金額을 課稅所得金額으로 보아 計算한 算出稅額의 2倍 以下까지 罰金을 科할 수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租稅逋脫犯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缺損過大計上犯의 경우에도 罰金의 定額限度額을 없애고 全面倍數罰金으로 轉換하면서 倍數罰金의 上限을 算出稅額의 3倍 以下까지로 引上 強化하여 直接稅逋脫犯과 罰金上限의 權衡을 維持하였다.

다. 間接稅帳簿不備置犯

酒稅法·物品稅法·織物類稅法 등 諸間接稅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할

者가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從前에는 10萬원 以下의 罰金을 科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50萬원 以下의 罰金을 科하도록 改正하여 現行 秩序犯도 50萬원 以下의 罰金을 科하고 있는 것과 刑量의 權衡을 이루게 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制定된 遊興飮食稅法에 의하여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할 者도 間接稅帳簿不備置犯의 對象으로 하였다.

2. 公訴時效期間의 延長(法 第17條)

區 分	改 正 前	改 正
가. 輕微한 犯則 ① 自家消費目的 酒類無免許製造犯 ② 間接稅帳簿不備置犯 ③ 秩序犯	一律的으로 2年	2 年
나. 기타 犯則		3 年

從前의 租稅犯則行爲에 대한 公訴時效期間은 一律的으로 2年이었는데 이를 原則的으로 3年으로 延長하고 輕微한 犯則에 대하여는 現行대로 2年으로 두었다.

從前의 公訴時效期間 2年은 經濟事犯인 租稅犯의 早期安定을 위하여 一般刑事犯則(一般犯罪로서 主要 租稅犯에 該當하는 刑量의 경우에는 刑事訴訟法上 公訴時效 3年임)에 비하여 比較的 短期로 規定하였던 것이나 經濟規模가 擴大됨에 따라 租稅犯則도 점차 知能化되고 있는 現實에 비추어 一般 刑事犯則과 權衡을 維持하는 範圍內에서 公訴時效期間을 延長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自家消費目的의 酒類無免許製造犯, 間接稅帳簿不備置犯, 秩序犯과 같이 自由刑이 없이 少額의 罰金만을 科하여 處罰하는 輕微한 犯則은 從前과 같이 2年으로 두었고 그외의 逋脫犯·滯納犯·源泉徵收不納犯 등 모든 租稅犯則에 대해서는 3年으로 하였다.

3. 金錢登錄機 設置使用義務 違反(法 第13條第12號)

이번 稅法改正의 特徵 中 하나는 納稅秩序를 正常化하기 위하여 여러 稅法에서 金錢登錄機設置·使用을 制度化하고 稅制上 많은 惠澤을 주고 있다는 點이다.

이와같이 各 稅法이 規定하고 있는 金錢登錄機設置·使用을 效率的으로 施行하기 위

하여 法에 의한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義務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하였거나 使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秩序犯으로서 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할 수 있게 하였다.

參考로 各 稅法의 金錢登錄機設置·使用에 관한 規定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① 遊興飮食稅法 第14條, 同施行令 第9條

② 營業稅法 第14條의3, 同施行令 第44條

③ 所得稅法 第188條의2, 同施行令 第225條의2

④ 法人稅法 第62條의2, 同施行令 第127條의2

⑤ 附加價値稅法 第22條, 同施行令 第80條

※ 犯則行爲 관련

(1) ①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② 法에 의한 免許를 받지 아니하고 自家消費의 目的으로 濁酒, 藥酒 또는 麴子를 製造한 者에 대하여는 10萬원 以下의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다만, 酒母 및 酒醪는 濁酒로 看做함.

(3) (가)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租稅를 逋脫하거나 租稅의 還給·控除를 받은 者 또는 租稅徵收義務者로서 正當한 事由없이 그 稅金을 徵收하지 아니하거나 徵收한 稅金을 納付하지 아니한 者는 다음 各號에 의하여 處罰함. 다만, 酒稅逋脫의 未遂犯도 處罰함.

① 酒稅, 物品稅, 織物類稅, 石油類稅, 電氣가스稅, 入場稅, 通行稅, 遊興飮食稅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逋脫稅額, 還給, 控除받은 稅額이나 徵收하지 아니하였거나 納付하지 아니한 稅額의 5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② 印紙稅의 境遇에는 證書, 帳簿 1個마다 逋脫稅額의 5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 또는 科料에 處함.

③ ① 및 ②에 規定한 以外의 國稅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逋脫稅額이나 還給·控除받은 稅額의 3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나) (가)의 境遇에 있어서 逋脫하거나 逋脫하고자 한 稅額 또는 還給·控除를 받은 稅額은 卽時徵收함.

(4)~(5)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6) (가)~(나)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다) 帳簿備置記帳義務 不履行의 刑量

① 酒稅法·物品稅法·石油類稅法·入場稅法·通行稅法·遊興飮食稅法 또는 織物類

稅法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備置·記帳하여야 할 者가 그 帳簿를 備置·記帳하지 아니한 때에는 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②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③ 法人의 缺損金額을 過大計上한 者는 2年 以下의 懲役 또는 過大計上한 缺損金額을 課稅所得金額으로 보아 計算한 算出稅額의 3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7) 各種 稅法違反의 罰金

①~⑪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⑫ 法에 의한 金錢登錄機의 設置·使用義務者로서 이를 設置하지 아니하였거나 使用하지 아니한 者

⑬~⑰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8)~(10)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 處罰對象 관련

— 但書를 다음과 같이 改正함.

國稅基本法에 의하여 寡占株主가 아닌 行爲者에 대하여는 그 情狀에 依하여 그 刑을 減免할 수 있음.

〈附加價値稅法 등 관련〉

〈要　　約〉

부가가치세 시행으로 영업세, 물품세 등 구 간접세질서법 처벌규정을 부가가치세·특별소비세로 용어를 정리하고, 세금계산서에 관한 처벌을 규정한다.

〈改正內容〉

1. 犯則行爲(臨時措置法)

(1)~(2)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3) 租稅逋脫 등의 罰金

(가)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써 租稅를 逋脫하거나 租稅의 還給, 控除를 받은 者의 處罰(酒稅逋脫의 未遂犯은 處罰)

①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酒稅의 境遇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逋脫稅額이나 還給, 控除받은 稅額의 5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②~③ : 前과 같음.(부가가치세 실시이전과 같음)

(나) 前과 같음.(부가가치세 실시이전과 같음)

(4)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5) 稅金計算書不交付時 등의 刑量(新設)

①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作成하여 交付하여야 할 者가 故意로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거나 稅金計算書에 虛僞의 記載를 한 때에는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供給價額에 附加價値稅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稅額의 2倍 以下에 相當하는 罰金에 處함.

② 附加價値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政府에 提出하여야 할 者가 暴行, 脅迫, 煽動, 敎唆 또는 通情에 의하여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지 아니하거나 虛僞記載의 稅金計算書를 交付받은 때에는 3年 以下의 懲役 또는 10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③ ② 以外의 者로서 稅金計算書를 作成하여 交付하여야 할 者로 하여금 稅金計算書를 交付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虛僞의 記載를 하게 할 目的으로 暴行, 脅迫, 煽動, 敎唆한 때에도 ②와 같음.

(6) (가)~(나)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다) 帳簿備置, 記帳義務不履行의 刑量

① 附加價値稅法, 特別消費稅法 또는 酒稅法의 規定에 의한 帳簿를 備置, 記載하여야 할 者가 그 帳簿를 備置, 記帳하지 아니한 때에는 50萬원 以下의 罰金에 處함.

②~③ : 前과 같음.(부가가치세 실시 이전과 같음)

(7) 各種 稅法 違反의 罰金

①~⑭ : 前과 같음.(부가가치세 실시 이전과 같음)

⑮ 法에 의한 稅金計算書의 交付義務者로서 이를 交付하지 아니한 者
⑯ 法에 의한 稅金計算書에 虛僞의 記載를 하거나 事實을 隱匿한 者
⑰ 法에 의한 事業者登錄 또는 그 登錄訂正의 申請을 하지 아니하거나 事業者登錄 檢閱을 받지 아니하는 者

(8)~(10)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1980년

◉ 법　　률 : 1980.12.31.　　법　　률 제3353호(시행일 : 1981. 1. 1.)

〈要　　約〉

附加價値稅가 大衆稅임을 감안하여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刑量을 종전보다 가볍게 하고 零細事業者인 附加價値稅 課稅特例者의 경우는 帳簿備置·記帳義務不履行에 따른 處罰對象에서 除外하였다.

○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引下
  • 逋脫稅額의 5倍 以下 → 3倍 以下
○ 詐欺, 기타 不正한 行爲로 보지 않는 경우
○ 租稅逋脫犯 旣遂時期의 明確化
○ 帳簿備置·記帳義務不履行에 대한 處罰
  • 附加價値稅 課稅特例者는 處罰對象에서 除外

〈改正內容〉

1.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引下(第9條)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限度額을 5倍 以下에서 3倍 以下로 引下하였다.

이제까지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 등 間接稅 逋脫稅에 대하여는 逋脫稅額의 5倍 以下의 罰金 또는 3年 以下의 懲役, 所得稅·法人稅·相續稅 등 直接稅 逋脫犯에 대하여는 3倍 以下의 罰金 또는 3年 以下의 懲役에 처하여 왔는바 이와같이 間接稅 逋脫

犯의 罰金刑量이 直接稅 逋脫犯보다 무거운 것은 間接稅 逋脫은 橫領的 性格으로서 罪質이 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附加價値稅는 大衆稅的인 性質의 租稅이며, 아직 附加價値稅制度에 적응하지 못하는 納稅者의 現實을 감안하여 附加價値稅 逋脫犯에 대한 罰金限度額을 直接稅 逋脫犯과 같은 水準으로 引下하였다.

— 逋脫犯에 대한 刑量

區 分	刑 量	
	罰 金	懲 役
1. 特別消費稅·酒稅	逋脫稅額의 5倍 以下	3年 以下
2. 印紙稅	〃	—
3. 1~2 以外의 租稅 (直接稅·附加價値稅·證券去來稅)	3倍 以下	3年 以下

2. 逋脫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第9條의2)

— 詐欺, 其他 不正한 行爲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改 正 前	改 正
1. 稅務會計와 企業會計와의 差異로 인한 金額	1. (改正前과 같음)
2. 法人稅 課標를 政府가 決定·更正時 特殊關係者의 勤勞所得이나 配當所得으로 處分된 金額	2. 法人稅 課標를 法人이 申告하거나 政府가 決定·更正時 特殊關係者의 所得으로 處分된 金額

1980事業年度부터 法人稅가 政府賦課制度에서 申告納付制度로 轉換됨에 따라 法人稅課稅標準을 計算함에 있어 益金算入한 金額의 處分은 政府決定·更正時뿐만 아니라 法人이 課稅標準申告時에도 하도록 法人稅法 第32條第5項이 改正되었다.

이에 따라 法人稅課稅標準을 政府가 決定·更正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法人이 課稅標準申告時에 그 法人의 特殊關係者의 所得으로 處分한 金額에 대하여도 「詐欺·其他 不正한 行爲로 인하여 생긴 所得金額」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3. 逋脫犯의 旣遂時期(第9條의3)

— 旣遂時期

區 分	改 正 前	改 正
1. 納稅者의 申告에 의해 賦課·徵收하는 租稅	告知納付期限 단, 無申告의 경우는 課稅標準 申告期限	(改正前과 같음)
2. 1 以外의 租稅	納付期限	申告納付期限

納稅者의 申告에 의해 賦課徵收하는 租稅 以外의 租稅逋脫犯의 旣遂時期인 「納付期限」이라 함은

① 納稅者가 申告納付하는 租稅(例 : 法人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酒稅·證券去來稅)의 경우는 申告期限과 納付期限이 같으므로 「申告·納付期限」을

② 納稅者의 申告없이 政府가 賦課하는 租稅(例 : 電話稅·不當利得稅)의 경우는 政府 「告知納付期限」을

③ 納稅의 申告나 政府의 賦課處分없이 納稅者가 納付함으로써 確定되는 租稅(例 : 印紙를 貼付하여 納付하는 印紙稅)의 경우는 納稅者가 스스로 納付하여야 하는 「納付期限」을 말한다.

따라서 이번에 「納付期限」을 「申告·納付期限」으로 改正한 것은 종전의 旣遂時期를 달리 규정한 것이 아니고 이를 더욱 分明히 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4. 帳簿備置·記帳義務不履行에 대한 處罰(法 第12條의3)

事業者는 附加價値稅法 第31條의 규정에 의하여 自己의 納付稅額 또는 還給稅額과 關係되는 모든 去來事實을 帳簿에 記錄하고 事業場에 備置·記帳하여야 하며 이를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게 되어 있으나 이중 課稅特例者는 處罰對象에서 除外하였다.

附加價値稅 課稅特例者는 대부분 零細한 小商人들인 바 이들은 帳簿의 備置·記帳能力上 限界가 있는 것이 우리의 實情이며 또 零細事業者에 대한 지나친 規制條項을 緩和함으로써 이들을 保護하기 위하여 處罰對象에서 除外시켰다.

5. 適用例(附則)

改正된 法律은 1981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그리고 附加價値稅 逋脫犯이나 課稅特例者에 대한 帳簿備置·帳簿義務不履行犯과 같이 改正法律에 의하여 刑이 舊法보다 輕하게 되거나 處罰對象에서 제외된 경우에 있어 改正法律施行日 이전의 犯則을 改正

法律施行日 이후에 處罰하는 때에는 刑法 第1條第2項의 규정에 의하여 改正된 法律(新法)이 適用된다.

1994년

◉ 법　　률 : 1994.12.22.　　법　　률 제4812호(시행일 : 1995. 1. 1.)

〈要　　約〉

○ 稅金計算書 關聯犯의 處罰強化
  • 資料商의 처벌근거 신설
  • 罰金刑의 처벌강화
○ 行政與件의 變化에 따른 未備點 보완
  • 自家消費 목적의 酒類製造者에 대한 처벌배제
  • 公訴時效期間의 연장
  • 帳簿保存義務期間의 연장
  • 入場券 관련규정의 보완
  • 金錢登錄機 關聯規定의 보완

1. 稅金計算書 關聯犯의 處罰強化

가. 資料商의 處罰根據 新設(法 §11－2④⑤)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신　설〉	○ 實物去來없는 稅金計算書 授受行爲 및 이의 斡旋·仲介행위에 대하여 －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稅金計算書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倍 이하에 상당하는 罰金에 처하고 － 懲役과 罰金을 併科할 수 있도록 함

(2) 改正理由

○ 實物去來없이 稅金計算書를 授受(일명 資料商)하거나 이를 斡旋·仲介하는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處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 附加價値稅 체계의 근간이 되는 稅金計算書를 授受秩序의 정상화를 도모하였다.

나. 罰金刑의 處罰強化(法 §4②)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稅金計算書關聯犯에 대하여 여러개의 罪가 경합될 경우 刑法總則 중 罰金競合에 관한 制限加重規定이 적용되어 — 금액이 가장 많은 罪의 벌금액에 1/2까지 加重할 수 있음	○ 稅金計算書關聯犯(稅金計算書 미교부·허위기재, 資料商 등)에 대하여 罰金의 加重을 제한하는 刑法總則의 규정을 배제하여 — 여러개의 罪가 경합될 경우 各 罪의 罰金刑을 單純合算하여 중하게 처벌함

(2) 改正理由

○ 여러개의 稅金計算書로 분할하여 처리하는 경우 罰金刑이 상대적으로 가볍게 되는 불합리를 개선하여 處罰의 實效性을 제고하였다.

〈參考〉

(천원)

범칙자	세금계산서 금 액	부가가치세 상 당 액	각죄의 벌금액	경합범의 벌금액	
				종 전	개 정
A	10,000	1,000	2,000	2,000	2,000
B	6,000 3,000 1,000	600 300 100	1,200 600 200	1,800 (1,200×1.5)	2,000 (1,200+600+200)
C	4,000 3,000 2,000 1,000	400 300 200 100	800 600 400 200	1,200 (800×1.5)	2,000 (800+600+400+200)

2. 行政與件變化에 따른 未備點 補完

가. 自家消費 目的의 酒類製造者에 대한 處罰排除(法 §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免許없이 酒類를 製造 또는 販賣하는 자는 3년 이하 懲役 또는 300萬원 이하의 罰金에 처하며 — 다만, 自家消費目的으로 濁·藥酒를 製造한 경우에는 10萬원 이하의 罰金 또는 科料에 처함	○ 自家消費의 目的으로 免許없이 酒類를 製造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함

(2) 改正理由

○ 販賣目的이 아닌 自家消費用으로 막걸리·포도주 등을 가정에서 製造하는 경우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됨으로써 대다수 국민들을 犯法者로 만드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 行政與件變化에 따라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선함에 있다.

나. 公訴時效期間의 延長(法 §1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公訴時效期間		
— 원칙 : 3년		— 5년
— 명령사항위반 등 질서범	2년	— (현행과 같음)
— 장부불기장범		
— 자가소비목적의 주류제조범		— 〈삭 제〉
— 국외도피범 : 5년		

(2) 改正理由

○ 稅務調査는 통상 신고납부후 2~3년이 경과한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행 3년의 公訴時效期間은 너무 단기이므로 5년으로 延長하고

— 다만, 경미한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현행 2년의 公訴時效期間을 계속 유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 1부터 시행한다.

○ 1995. 1. 1전에 진행이 개시된 公訴時效期間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 帳簿保存義務期間의 延長(法 §12－3②)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租稅逋脫을 위한 證據湮滅 목적으로 帳簿를 燒却·破棄·隱匿시 2년 이하의 懲役 또는 5백만원 이하의 罰金에 처함	
— 保存期間 : 2년	— 5년
— 對象帳簿 : 세법이 비치를 요하는 帳簿	— 證憑書類를 추가
— 起 算 日 : 작성일	— 당해 國稅의 法定申告期限

(2) 改正理由

○ 통상 稅務調査는 장부작성일로부터 2～3년 경과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 장부를 破棄·燒却하여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였고

○ 아울러 1994年 稅法(國稅基本法, 法人稅法 등) 改正으로 장부뿐만 아니라 證憑書類도 비치하도록 함에 따라 處罰對象에 증빙서류를 추가하고 장부 등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을 명확히 하였다.

라. 入場券關聯 規定의 보완(법 §12-2, §1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법에 의한 入場券과 관련한 처벌 - 승인없는 양도·양수 ┐ 2년 이하의 징역 - 위조·변조 ├ 또는 200만원 - 재사용 ┘ 이하의 벌금 - 미교부·미절취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	〈삭 제〉

(2) 改正理由

○ 과거 入場稅가 시행될 때 조폐공사에서 入場券을 찍어 교부하는 경우에 필요했던 규정으로

- 入場稅의 폐지(1977년)로 극장 등에서 자체로 입장권을 만들어 사용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하게 되었다.

마. 金錢登錄機 關聯規定의 보완(法 §1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法에 의한 金錢登錄機의 설치·사용의 무로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는 -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함	〈삭 제〉

(2) 改正理由

○ 1993年 稅法 改正으로 각 稅法상의 金錢登錄機 設置義務條項이 삭제되어 任意規定으로 변경됨에 따라 處罰規定을 보완하였다.

第 4 章　租稅減免規制法

第 1 節　年度別 主要 改正內容

1965년 : 租稅減免規制法의 制定

①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법률 및 조약과 특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의 감면을 불허한다.
③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각 세목에 관한 면제항목을 규정한다.

1966년

① 관광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를 면제한다.
② 엽연초 생산조합과 동 연합회에 대한 법인세, 영업세를 면제한다.
③ 주세의 면제대상에 관광시설업을 추가한다.

1967년

① 외자도입법, 전화세법 등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을 확대한다.
②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을 확대한다.
③ 물품세와 관세의 면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1968년

① 학교법인의 설립 및 합병의 등기와 합병시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②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을 확대한다.
③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적용특례, 농지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한다.
④ 등록세의 면제를 조정한다.
⑤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거나 축산업, 양잠업, 양송이재배업 또는 조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제세를 면제한다.

1969년

①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조세감면의 근거법률로 추가한다.
②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을 확대한다.

1970년

①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 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지방공업개발,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한다
③ 인지세, 재산세, 취득세, 물품세, 관세 등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정한다.

1971년

①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에 직물류세법을 추가한다.
②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조정한다.
③ 지방공업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을 조정한다.
④ 등록세, 주세, 재산세, 취득세, 물품세 등의 감면에 대한 일부 규정을 조정한다.
⑤ 석유류세의 면제, 직물류세율과 통행세율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한다.

1972년

① 주택복권당첨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② 상속세,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한다.
③ 법인세의 면제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영업세의 면제소득을 추가로 규정한다.
④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물품세, 직물류세 등의 면제, 소득계산의 특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 중 일부를 신설하거나 조정한다.
⑤ 관세의 면제규정을 삭제한다.

1973년

①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에 임시수입부가세법을 추가한다.

②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인지세, 물품세 등의 감면 범위를 조정한다.
④ 지방세법과 겹치는 감면조항 등을 삭제한다.
⑤ 감면의 세부항목에 대한 감면시한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타의 조정을 한다.

1974년

①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②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전화세, 물품세, 주세 등의 감면 범위를 조정한다.
③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을 확대조정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④ 통행세율, 석유류세율, 전기가스세율 등을 조정한다.

1975년

①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에 방위세법을 추가한다.
②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범위를 조정한다.
④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인지세, 물품세, 석유류세 등의 감면범위를 조정한다.
⑤ 감면의 세부항목에 대한 감면시한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타의 조정을 한다.

1976년

①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에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을 추가한다.
②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특별상각, 세액공제, 준비금 등의 제도를 정비한다.
④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물품세, 석유류세 등의 감면범위를 조정한다.
⑤ 감면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을 보완한다.

1977년

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② 법인세 면제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③ 등록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와 관세의 감면, 소득계산의 특례규정 중 일부를 조정한다.
④ 부가가치세의 면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한다.

1978년

〈3월의 개정〉

①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② 법인세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③ 증자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한다.
④ 석탄증산 소득공제 규정을 신설한다.
⑤ 기술개발 준비금에 대한 조세특례 중 일부를 조정한다.
⑥ 탄광보안시설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신설한다.
⑦ 등록세, 취득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조정하고, 지상배당 계산의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12월의 개정〉

① 항공공업 등 중요산업에 대한 감면을 확대한다.
② 공공사업용토지에 대한 감면 등 토지에 대한 감면을 조정한다.
③ 해외자원개발사업, 산업설비의 수출, 교육, 연구기관에 대해 지원한다.
④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신설한다.
⑤ 법인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범위를 조정한다.
⑥ 증자소득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준비금의 손금산입, 지상배당소득 계산의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1979년

① 소득세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정비한다.
② 증자소득공제의 기한을 연장한다.

③ 중요산업 및 신기술 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④ 법인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면제와 관세의 감면의 범위를 조정, 보완한다.
⑤ 기타의 개정으로 소득계산의 특례, 구분경리 등에 대한 규정을 보완한다.

1980년

① 소득세의 감면에 대해 그 범위 등을 조정한다.
② 법인세와 특별부가세의 감면범위 등을 조정한다.
③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그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④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지방세의 일부분에 대한 감면의 범위를 조정한다.
⑤ 기타의 개정으로 지상배당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삭제, 공개법인요건에 대한 특례 등의 내용을 보완한다.

1981년

① 중요산업, 중소기업, 해외건설업 등 자원개발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 개선한다.
② 기술, 인력개발 및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③ 재무구조개선, 특정설비투자촉진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④ 공개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과세, 조세지원의 종합한도제 신설, 조세지원에 대한 사후관리규정 보완 등 지나친 지원을 규제한다.
⑤ 양도소득세 및 특별부가세의 감면제도를 개선한다.
⑥ 기타의 개정으로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조사결정시 조세특례적용의 배제 등과 비과세이자 및 배당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1982년

① 중요산업, 광업, 축산업 등의 감면을 축소하는 한편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조정한다.
②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확대,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보완하는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조정한다.
③ 법인세신고기한의 연장, 공개법인의 범위조정 등 공개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를 보완

한다.

④ 비과세이자소득의 범위축소,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의 조세감면 근거법률에의 추가, 재무구조 개선적립금에 대한 지상배당금액계산의 특례규정 신설 등 기타의 규정을 보완한다.

1983년

① 비과세소득의 범위와 공공법인의 범위를 조정한다.

② 중요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기술개발에 대한 세지원을 강화한다.

③ 유통근대화 신설, '86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조세지원을 정비, 강화한다.

④ 기타의 개정으로 특별부가세, 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어업용 선박의 범위 등과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한다.

1984년

① 증자소득공제 및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② 농어촌소득원 개발업자에게 중소기업과 동등한 조세지원을 한다.

③ 신기술사업 투자회사의 지원을 위해 일정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④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기술집약적 산업의 준비금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며, 기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1985년

① 소액가계저축, 법인본사의 지방이전, 기계장치에 대한 세액공제, 학교법인의 수익활동 등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② 산업합리화세제를 보완하며,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③ 기타의 개정으로 부가가치세의 면제, 특별소비세의 면제, 시행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 개선한다.

1986년

①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5년(1991년 말까지) 연장한다.

② 다양한 경우의 중소기업과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③ 임대주택건설과 해외사업, 올림픽관련사업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④ 농어촌 균형발전을 위해 농어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⑤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을 폐지하고 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으로 대체한다.
⑥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조정 및 소액가계저축, 공해방지시설 등에 대한 감면을 강화한다.
⑦ 기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1987년

① 기숙사에 대한 조세지원, 주택임대사업에의 특별상각 허용, 근로자의거주안정과목돈마련에관한법률에 의한 조세지원 등을 강화한다.
②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및 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조세지원,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조세지원, 종업원지주제의 경우 증자소득공제 강화 등 다양한 경우의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③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의 범위, 가업승계의 경우 상속세 감면,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개발 등의 경우 지원제도 등을 지원확대한다.
④ 일정한 준비금의 거치기간 연장, 국산의료기제조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보완을 한다.
⑤ 기타의 개정으로 가계우대정기적금 등에 대한 조세지원 및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1988년

① 공공법인에 대한 세율의 조정, 수출산업에 대한 지원을 축소하는 등의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②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의 기부금에 대한 손금산입 제한, 도시재개발사업에 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 축소, 외자도입과 관련한 감면범위의 축소 등의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③ 농어촌기자재와 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기술집약적 산업의 범위, 양도소득세의 감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보완한다.
④ 중소기업에 대한 자동화시설의 범위, 전화세에 대한 방위세율의 경감 등 기타의 조정을 한다.

1989년

① 기관투자자의 국공채 보유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② 수도권소재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산업의 경영여건향상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③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상업구조의 고도화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화한다.
④ 국제무역박람회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⑤ 투자촉진 및 기술개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⑥ 기타의 개정으로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공공법인의 추가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다.
⑦ 공공사업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축소, 각종의 감면요건 강화 등 양도세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 보완한다.
⑧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민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을 한다.

1990년

① 근로자의 장기저축 또는 증권저축의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② 공공법인의 법인세율을 상향조정한다.
③ 중소기업의 기술, 인력개발 및 설비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④ 증자소득공제제도의 보완, 양도소득세의 감면범위 조정, 의료법인에 대한 지원, 최적한세제도의 도입 등 각 경우의 세제를 정비, 보완한다.
⑤ 공공사업용지 등 양도시 감면을 축소,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유휴토지의 범위조정 등 양도세와 관련된 조항을 정비한다.
⑥ 기타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한다.

1991년

①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5년(1996년 말까지) 연장한다.
②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각종의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 등에 대한 감면을 축소한다.
③ 각종 산업의 경쟁력 제고, 근로자, 농어민 등 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조세지원을 보강한다.
④ 대전세계박람회의 개최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양도 관

련세의 감면제도를 조장하며,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⑤ 사회간접자본의 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⑥ 외국환은행의 면제대상 외화자금 조달수단의 범위를 확대한다.

1992년

① 중소제조업에 대해 임시특별세액 감면제도를 신설한다.
② 기술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수출, 정보산업에 대한 세제상의 지원을 확충, 보완한다.
③ 재활용가능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법상의 의제매입세액공제를 110분의 10으로 하는 등 환경과 관련한 지원을 강화한다.
④ 지방이전준비금의 상향조정, 임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 등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제도를 보완한다.
⑤ 기타의 사항으로 공공사업용지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 국립학교에 대한 기부금을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⑥ 아파트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의 사후관리의 강화,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양도시 감면요건을 강화하는 등 양도세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완, 정비한다.

1993년

① 투자세액공제축소 등 조세의 감면에 관련된 사항을 전반적으로 축소조정한다.
② 기술지원 개발금제도를 확대하는 등 산업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보강한다.
③ 공장이전 등과 관련한 감면제도의 과세이연제도로의 전환,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감면제도로 전환하는 등 양도세와 관련된 제도들을 정비, 보완한다.
④ 공공법인의 과세제도의 보완, 조세감면이 부여되는 외국인기술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기타의 사항을 조정한다.

1994년

① 기술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세지원제도를 확충한다.
② 일반 감가상각제도의 개편에 따라 특별상각제도를 축소조정한다.
③ 외국인의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을 강화한다.
④ 조세부담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를 폐지

하는 등 감면제도를 대폭 축소한다.

⑤ 공공법인의 세율체계를 조정하고, 개발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⑥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축산기자재를 추가하고,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에 대한 사후관리요건을 강화하는 등 기타의 사항을 개정, 정비한다.

⑦ 양도세 감면신청요건을 보완하고, '97 무주, 전주 동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기타의 조정을 한다.

1995년

① 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②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③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④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등 기타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1996년

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②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③ 설비투자확충을 지원한다.

④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한다.

⑤ 사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유도한다.

⑥ 저축증대를 위한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한다.

⑦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⑧ 각종 세제지원제도 등을 보완한다.

第2節 各 年度의 改正內容

(이하에서 법이란 조세감면규제법을 말하며, 영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을 말하며, 규칙이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1965년 : 租稅減免規制法의 制定

◉ 법 률 : 1965.12.20. 법 률 제1723호(시행일 : 1966. 1. 1.)

〈要 約〉

○ 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법률 및 조약과 특정한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조세의 감면을 불허한다.
○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등 각 세목에 관한 면제항목에 규정한다.

〈制定內容〉

※ 제정의 의의

經濟開發計劃의 推進과 함께 租稅誘引의 重要性이 더욱 強調된 점은 必然的인 것이기는 하나 租稅減免惠澤의 賦與는 國庫損失을 隨伴할 뿐만 아니라 公平課稅를 沮害하게 된다.

따라서 國庫損失은 極小化하고 公平課稅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從來 各種法律에 分散되어 있던 減免稅條項은 統合 規制할 必要가 생겼다. 그리하여 所得稅法을 위시한 14個 內國稅法과 國稅徵收法, 關稅法 및 噸稅法, 地方稅法, 外資導入促進法 그리고 租稅減免規制法과 條約에 의한 것이 아니고서는 租稅를 減免할 수 없게 하고 또 減免은 本法에서 稅目別로 特別히 列擧된 業體가 減免條件에 대해서만 許容하도록 規制하였다.

1. 減免의 制限

이 法 및 條約과 다음에 게기하는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租稅의 減免을 할 수 없음.

① 所得稅法
② 法人稅法
③ 營業稅法
④ 相續稅法
⑤ 登錄稅法
⑥ 資產再評價法
⑦ 酒稅法
⑧ 物品稅法
⑨ 石油類稅法
⑩ 通行稅法
⑪ 入場稅法
⑫ 電氣가스稅法
⑬ 證券去來稅法
⑭ 印紙稅法
⑮ 國稅徵收法
⑯ 關稅法 및 噸稅法
⑰ 地方稅法
⑱ 外資導入推進法

2. 所得稅의 免除

(1) 通貨安定證券의 割引 發行으로 因한 所得
(2) 農協組合 또는 中央會가 引受하여 淸算하는 團體가 出資者에게 分配하는 殘餘財產 中 看做配當所得
(3) 軍事援護報償法에 依한 支給給與
(4) 營林計劃에 依한 造林(造林한 날로부터 20年間)

3.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法人
① 韓國銀行(外換業務에서 생긴 所得과 收益은 除外)
② 韓國產業銀行 및 成業公社
③ 中小企業銀行

④ 國民銀行
⑤ 韓國造幣公社(附帶業務에서 생긴 所得과 收益 除外)
⑥ 農業協同組合 中央會
⑦ 水產業協同組合
⑧ 中小企業協同組合·聯合會와 中央會
⑨ 勞動組合(勞動組合의 收益事業에서 생긴 所得과 收益 除外)
⑩ 更生保護會
⑪ 山林契·組合과 聯合會
⑫ 大韓貿易振興公社
⑬ 韓國海運組合(信用業務·共販業務 및 輸出入業務에서 생긴 所得과 收益 除外)

(2) 法人稅 免除所得

農業協同組合 또는 中央會가 引受하여 淸算하는 團體의 淸算所得과 그 團體가 出資者에게 分配하는 殘餘財產 中 看做配當

4. 登錄稅의 免除

(1) 對象法人

法人稅, 營業稅免除 對象과 同一

(2) 對象登記

① 國有財產의 現物出資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現物出資의 登記
② 農地改革法에 의한 登記
③ 開墾促進法에 의하여 開墾된 農地의 登記
④ 援護財產特別處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된 援護財產의 登記
⑤ 大韓住宅公社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住宅公社의 財產에 관한 登記
⑥ 民法에 의한 財團法人이 私立學校法에 의하여 學校法人으로 組織을 變更함에 따르는 登記
⑦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에 의하여 設立된 工業團地開發公團의 財產에 관한 登記

5. 政治資金에 대한 免稅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政黨에 政治資金을 제공한 者에 대하여는 그 제공한 金錢·有價證券·其他物件에 해당하는 部分에 대한 法人稅·所得稅 및 贈與稅를 免除

6. 酒稅의 免除

觀光호텔에서 제공되는 酒類

7. 財產稅의 免除

(1) 法人稅와 營業稅 免除 法人이 固有의 業務에 사용하는 財產
(2) 兒童福祉法에 의하여 收容兒童이 直接的으로 사용하는 建物과 土地
(3)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에 의하여 設立된 工業團地開發公團의 財產

8. 印紙稅의 免除

(1) 郵便專用의 物件에 관한 書類
(2) 郵便換에 관한 書類
(3) 郵便貯金에 관한 書類
(4) 郵便年金에 관한 書類
(5) 電氣通信法의 規定에 의한 公衆通信에 專用하는 物件 및 그 利用에 供하고 있는 物件에 관한 書類

9. 取得稅의 免除

(1) 對象法人 : 法人稅·營業稅免除法人과 同一
(2) 對象不動產
① 國有財產의 現物出資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現物出資를 한 不動產
② 農地改革法에 依하여 取得한 農地
③ 開墾促進法에 依하여 開墾한 農地
④ 兒童福祉法에 依하여 收容兒童이 直接的으로 使用하는 建物과 土地
⑤ 援護財產特別處理法에 依하여 贈與받은 援護財產
⑥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에 依하여 設立된 工業團地開發公團이 取得하는 不動產

1966년

◉ 법　　률 : 1966. 8. 3. 법　　률 제1806호(시행일 : 1966. 8. 3.)
1966. 8. 3. 법　　률 제1809호(시행일 : 1966. 8. 3.)
1966. 8. 3. 법　　률 제1812호(시행일 : 1966. 8. 3.)

〈要　　約〉

○ 관광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를 면제한다.
○ 엽연초 생산조합과 동 연합회에 대한 법인세, 영업세를 면제한다.
○ 주세의 면제대상에 관광시설업을 추가한다.

〈改正內容〉

1.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법인
①～⑬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⑭ 葉煙草生產組合·聯合會(新設)
(2) 법인세 면제소득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2. 登錄稅의 免除

(1) 대상법인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2) 대상등기
①～⑦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⑧ 觀光事業進興法에 의하여 觀光事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施設하는 不動產에 대한 登記. 但, 所管稅務署長은 當該 不動產이 1年內에 그 目的事業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該當稅額을 決定하여 이를 徵收함.(新設)

3. 酒稅의 免除範圍 擴大

觀光事業進興法에 의한 觀光호텔業과 觀光施設業에서 제공되는 酒類

4. 財產稅의 免除 範圍 擴大

(1)~(3)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4) 觀光事業進興法에 의하여 觀光事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施設하는 不動產(新設)

5. 取得稅의 免除 對象 不動產 範圍 擴大

(1) 대상법인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2) 대상부동산

①~⑥ : 前과 같음.(1966년 해당조항 참조)

⑦ 觀光事業進興法에 依하여 觀光事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施設하는 不動產(但, 取得日부터 1年內에 그 目的事業에 使用되지 아니한 때에는 除外)(新設)

1967년

◉ 법　　률 : 1967.11.29. 법　　률 제1974호(시행일 : 1968. 1. 1.)

〈要　　約〉

○ 외자도입법, 전화세법 등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을 확대한다.
○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을 확대한다.
○ 물품세와 관세의 면제,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1. 減免의 制限

(1)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①~⑰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⑱ 外資導入法

⑲ 不動產投機抑制에 관한特別措置稅法

⑳ 電話稅法

2. 所得稅의 免除範圍 調整

(1) 財政證券 및 通貨安定證券의 割引 發行으로 因한 所得

(2) 農協 또는 中央會가 引受하여 淸算하는 團體가 出資者에게 分配하는 殘餘財産 中 擬制分配

(3)~(4)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3.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에 대한 調整

(1)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法人

① 韓國銀行

②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③ 中小企業銀行(外換業務에서 생긴 所得과 收益 除外)

④~⑭ : 前과 같음.(④~⑬ : 1965년 해당조항. ⑭ : 1966년 신설조항 참조)

⑮ 韓國科學技術硏究院(新設)

⑯ 農漁村開發公社(新設)

⑰ 韓國住宅金庫(新設)

(2) 法人稅 免除 所得

① 農業協同組合 또는 中央會가 引受하여 淸算하는 團體의 淸算所得과 그 團體가 出資者에게 分配하는 殘餘財産 中 擬制分配

② 財政證券의 割引發行으로 因한 所得(新設)

4. 財産稅의 免除範圍 縮小

(1)~(3)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4) 관광사업용 부동산을 면제대상에서 제외함.

5. 物品稅의 免除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科學技術硏究所가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新設)

(2) 農漁村開發公社法에 依하여 設立된 農漁村開發公社가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機械 및 器具(新設)

6. 所得計算의 特例

(1) 必要經費 또는 損金 導入(新設)

①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科學技術硏究所에 支給되는 出捐金과 委託硏究費

② 科學技術進興法에 依한 科學技術基金의 造成을 爲하여 支給되는 寄附金 中 科學技術處長官이 추천하는 個人 또는 團體에 硏究費 또는 硏究施設費로 支給되는 寄附金

7. 關稅의 免除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가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新設)

(2) 農漁村開發公社法에 依하여 設立된 農漁村開發公社가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機械 및 器具(新設)

1968년

◉ 법 률 : 1968. 4.26. 법 률 제2003호(시행일 : 1968. 4.26.)
1968.11.22. 법 률 제2049호(시행일 : 1968.11.22.)
1968.12.17. 법 률 제2053호(시행일 : 1969. 1. 1.)

〈要 約〉

○ 학교법인의 설립 및 합병의 등기와 합병시의 기본재산인 부동산의 이전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을 확대한다.
○ 부동산투기억제세의 적용특례, 농지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한다.
○ 등록세의 면제를 조정한다.
○ 토지개량사업을 시행하거나 축산업, 양잠업, 양송이재배업 또는 조림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토지, 건물에 대한 제세를 면제한다.

〈改正內容〉

1.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 법인
①～⑰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⑱ 大韓住宅公社(新設)
⑲ 韓國投資開發公社(新設)
(2) 법인세 면제 소득
①～②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2. 登錄稅의 免除

(1) 대상법인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2) 대상등기

①~②：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③ 土地改良事業法에 의한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取得한 農地에 관한 登記 및 農耕地造成法에 의하여 開墾된 農地의 登記

④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⑤ 대한주택 공사의 재산에 관한 등기는 면제대상에서 제외

⑥ 民法에 의한 財團法人이 私立學校法에 의하여 學校法人으로 組織을 變更함에 따르는 登記와 私立學校法에 의한 學校法人의 設立과 合併의 登記 및 合併하는 때의 基本財產의 不動產移轉登記

⑦~⑧：前과 같음.(1966년 해당조항 참조)

3. 財產稅의 免除範圍 擴大

(1)~(3)：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4) 畜產業者가 畜產業에 직접 사용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 但 農林部長官이 정하는 基準의 要件을 갖추어야 할 畜產業者가 그 要件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基準의 要件을 갖춘 畜產業者가 그 目的事業 이외의 事業에 轉用하거나 讓渡한 때에는 免除한 財產稅를 즉시 追徵함.(新設)

4. 取得稅의 免除對象 不動產 範圍 擴大

(1) 대상법인：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2) 대상부동산

①~②：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③ 農耕地造成法에 依하여 取得한 農地

④~⑦：前과 같음.(①~⑥：1965년 해당조항. ⑦：1966년 해당조항 참조)

⑧ 土地改良事業法의 施行으로 因하여 取得한 農地(新設)

⑨ 畜產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牧場用 土地 및 建物로서 그 事業에 직접 使用하는 것. 但, 農林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의 要件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基準의 要件을 갖춘 畜產業者가 牧場用 土地 및 建物을 取得한 날로부터 1年內에 그 目的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한 때와 牧場用 土地 및 建物을 그 目的事業以外의 事業에 轉用하거나 讓渡한 때에는 部分에 對하여 즉시 追徵(新設)

⑩ 養蠶業 및 洋松茸栽培를 營爲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建物로서 그 事業에 直接使

用되는 것. 但, 取得日로부터 1年內에 目的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로 함.(新設)

5. 農地稅의 免除

(1)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非課稅地가 課稅地로 된 경우.(新設)
① 田畓에 대하여는 20年
② 埋立 및 干拓地에 대하여는 30年

(2) 土地改良事業의 施行으로 인하여 土地의 價格이 增加된 경우에는 그 增加된 部分에 대하여는 그 工事가 竣工된 해로부터 30年間(新設)

(3) 農耕地造成法의 規定에 의하여 開墾된 農地에 대하여는 竣工認可를 받은 후 20年間(新設)

(4) 山林法에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山林契, 山林組合 또는 山林組合聯合會가 經營하는 山林苗圃地(新設)

6. 不動產投機抑制稅의 適用特例

(1) 大韓住宅公社가 施行하는 住宅 및 團地事業地區의 土地에 대한 不動產投機抑制稅에 있어서는 不動產投機抑制에 관한 特別措置稅法에 불구하고 土地의 實行讓渡價額에서 取得價額 및 資本的支出額(設備費, 改良費 등)과 讓渡費 기타 間接費의 合計額을 除한 것을 讓渡差額으로 함.(新設)

(2) 大韓住宅公社가 不動產投機抑制에관한特別措置稅法 施行前에 讓渡契約을 締結한 土地에 대하여는 同法施行前에 讓渡된 것으로 봄.(新設)

1969년

◉ 법　　률 : 1969. 7.31.　법　　률　제2127호(시행일 : 1969. 7.31.)

〈要　　約〉

○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을 조세감면의 근거법률로 추가한다.
○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을 확대한다.

〈改正內容〉

1. 減免의 制限(租稅減免의 根據法律 範圍 擴大)

(1)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①～⑲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⑳ 해저광물자원개발법(추가)

2.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法人
①～⑯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⑰ 韓國住宅銀行
⑱～⑲ :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⑳ 韓國水資源開發公社(新設)
㉑ 地下水開發公社(新設)
㉒ 韓國道路公社(新設)
(2) 法人稅 免除所得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3) 法人稅, 營業稅免除所得(新設)
韓國證券去來所의 所得과 收益

※ 특　징

— 稅制의 未備點을 補完하는 한편 1970年度의 稅制를 위하여 甲種勞動所得稅의 負擔을 大幅 輕減하는 反面에 支出課稅를 強化하는 方向으로 租稅構造를 改編하고 또 開發支援을 위한 稅制上의 誘引機能을 大幅 強化한데 그 特徵이 있었다.

1970년

◉ 법　　률 : 1970. 1. 1. 법　　률 제2151호(시행일 : 1970. 1. 1.)
1970. 8. 4. 법　　률 제2212호(시행일 : 1970. 8. 4.)

〈要　　約〉

○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 철강공업, 석유화학공업, 지방공업개발,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한다.
○ 인지세, 재산세, 취득세, 물품세, 관세 등의 면제범위를 확대하거나 조정한다.

〈改正內容〉

1.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法人
①～⑳ : 前과 같음.(1969년 해당조항 참조)
㉑ 農業振興公社와 農地改良組合
㉒ 前과 같음.(1969년 해당조항 참조)
㉓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新設)
㉔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新設)
㉕ 鐵鋼工業의 育成에 관한 法令에 의한 鐵鋼工業者 中 粗鋼基準이 年間 10萬屯 이상의 製鐵·製鋼·壓延의 均衡된 一貫施設을 保有하는 者(新設)
㉖ 大韓鑛業振興公社(新設)

(2) 法人稅 免除所得
①～②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③ 商工會議所 및 大韓商工會議所의 所得(新設)

(3) 法人稅·營業稅 免除所得
① 前과 같음.(1969년 해당조항 참조)
② 輸出檢査法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으로부터 輸出檢査機關으로 指定을 받은 檢査機關이 指定物品을 檢査하고 얻은 收益과 所得(新設)

2. 鐵鋼工業에 대한 減免

(1) 다음의 1에 該當하는 者가 그 事業의 固有目的에 直接使用되는 機械에 投資하는 境遇에는 그 投資總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投資가 完了한 날이 속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함.

① 鑛石을 사용하여 年間 3萬屯 이상의 鑄物用銑鐵을 生產하는 者와 總施設用量 5千킬로 볼트암페어 이상의 電氣燈을 保有하고 合金鐵을 生產하는 者.

② 製鋼 및 壓延施設을 다같이 保有하는 者로서 鋼塊를 生產하고 同 鋼塊로써 年間 3萬屯 이상의 壓延材(製品을 包含함)를 生產하는 者

③ 壓延施設을 保有하는 者로서 年間 5萬屯 以上의 壓延材(製品을 包含함)를 生產하는 者

(2) 다음의 1에 該當하는 者가 그 事業의 固有目的에 直接使用되는 機械에 投資하는 境遇에는 그 投資總額의 100分의 6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投資가 完了하는 날이 속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함.

① 製鋼 및 壓延施設을 다같이 保有하는 者 또는 壓延施設만을 保有하는 者로서 年間 1萬屯 이상의 鋼塊 또는 壓延材(製品을 包含함)를 生產하는 者

② 鑄物 및 鑄鍛鋼品 生產專門業體로서 年間 5千屯 이상을 生產하는 者

③ 스테인리스鋼板 및 棒, 高炭素鋼, 電磁軟鐵板 등 合金鋼(中間材를 包含함)을 年間 2千屯 以上 生產하는 者

(3) 自己가 採掘한 原鑛石(鐵鑛石)을 主務部長官이 指定하는 鐵鋼工業者에게 販賣하는 鑛產業者

① 營業稅 : 全額

② 法人稅 또는 所得稅 : 販賣한 部分의 稅額×50/100

3. 石油化學工業에 대한 減免

石油化學工業의 育成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 中 나프타分解工業(接觸改質 및 芳香族抽出工業을 包含함)을 營爲하는 者 및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에 規定하는 石油化學工業을 營爲하는 者와 石油化學工業團地內에서 이들에게 電氣, 蒸氣, 用水 및 整備用役 등의 供給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對하여는 그 製造 또는 供給事業 等을 開始한 날(試運轉期間을 包含하지 아니함)이 屬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와 그 다음 期分 또는 事業年度로부터 5年內 終了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의 所得과 收益에 對하여 所得稅 또는 營業稅를 免除함.

4. 地方工業開發에 대한 減免

地方工業開發法의 規定에 依하여 開發地區內에 工場을 設置하여 新規로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게 對하여는 그 事業에서 생기는 所得에 對하여 그 事業을 開始한 날이 屬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로부터 5年內에 終了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全額을 그 다음 期分 또는 事業年度로부터 3年內 終了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함.

5. 登錄稅의 免除對象 登記의 範圍 調整

(1) 대상법인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2) 대상 등기

①~②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③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農地改良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으로 因하여 取得한 農地 및 農家住宅의 登記와 農耕地造成法에 의하여 開墾된 農地의 登記

④~⑧ :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⑨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에 의한 林野登記(新設)

⑩ 農業協同組合法 및 水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民이나 漁民이 同各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擔保物에 대한 設定登記. 다만, 同一人이 設定하는 抵當權 設定金額의 合計額이 160萬원을 超過하는 境遇에는 例外(新設)

⑪ 石油化學工業의育成에관한法令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을 目的으로 取得한 土地에 대한 登記(新設)

⑫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하여 開發地區內에 工場을 設置하여 新規로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同開發地域內에서 사용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財產에 관한 登記. 다만, 立地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8年內에 登記하는 것에 限함.(新設)

⑬ 大韓傷痍軍警會, 大韓戰歿軍警遺族會 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의 財產에 관한 登記(新設)

⑭ 軍事援護對象者定着貸付法의 規定에 의한 貸付金으로 取得하는 不動產의 所有權에 관한 登記와 同法의 規定에 의한 貸付를 받기 위하여 提供하는 擔保物에 대한 抵當權 設定登記(新設)

6. 財產稅의 免除範圍 擴大

(1)~(4) : 前과 같음.((1)~(3) : 1965년 해당조항. (4) : 1968년 해당조항 참조)

(5) 石油化學工業의 育成에 관한 法令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을 目的으로 取得한 土地(新設)

(6)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하여 開發地區內에 工場을 設置하여 新規로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同開發地區內에서 사용할 目的으로 取得한 不動產(8年間)(新設)

(7) 大韓傷痍軍警會, 大韓戰歿軍警遺族會, 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의 財產(新設)

7. 印紙稅의 免除範圍 擴大

(1)~(5)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6) 農民이나 漁民에 의하여 設立된 農協, 水協 또는 中央會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作成하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어음約定書(同一人이 받는 融資金額의 合計額이 10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例外)(新設)

8. 取得稅의 免除對象 不動產의 範圍調整

(1) 대상법인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2) 대상 부동산

①~⑦ :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⑧ 農村近代化促進法에 依하여 施行되는 農地改良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으로 因하여 取得한 農地 또는 農家住宅

⑨~⑩ :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⑪ 林野所有權移轉登記등에關한特別措置法에 依하여 登記된 林野(新設)

⑫ 石油化學工業의育成에관한法令에 依한 團地造成을 目的으로 取得한 土地(新設)

⑬ 地方工業開發法에 依하여 開發地區內에서 工場을 設置하여 新規로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同開發地區內에서 使用한 目的으로 取得한 不動產(8年)(新設)

⑭ 大韓傷痍軍警會, 大韓戰歿軍警遺族會, 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가 取得하는 不動產(新設)

⑮ 軍事援護對象者 定着貸付法의 規定에 依한 貸付金으로 取得하는 不動產(新設)

9. 物品稅의 免除範圍 調整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科學技術硏究所가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
(2) 農漁村開發公社가 直接 使用하거나 同公社가 資本金의 50% 이상을 出資한 企業體에 使用할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機械器具
(3)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가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新設)
(4) (1) 내지 (3)에 依하여 物品稅의 免除를 받은 物資와 機械 및 器具를 當該 用途에 供하지 아니하거나 讓渡하였을 때에는 免除된 物品稅를 追徵함.(新設)

10. 關稅의 免除 範圍 調整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가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
(2) 農漁村開發公社가 直接 使用하거나 同公社가 資本金의 50% 이상을 出資한 企業體에 使用한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機械 및 器具
(3)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가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新設)
(4) 關稅의 免除를 받은 物資와 機械 및 器具를 當該 用途에 供하지 아니하거나 讓渡하였을 때에는 免除된 關稅를 追徵함.(新設)

11. 所得金額 計算의 特例

(1)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
①~②: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③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에 支給되는 出捐金과 寄附金(新設)

12. 農地稅의 免除範圍 調整

(1) 農地改良事業으로 因하여 非課稅地가 課稅地로 된 경우
① 開田·開畓 20年
② 埋立 干拓地 30年
(2) 農地改良事業으로 인하여 土地의 價格이 增加된 경우에는 그 增加된 部分에 대하여 그 工事가 竣工된 해로부터 30年間
(3)~(4):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13. 國際金融機關 등에 대한 減免

(1) 다음 ①~③에 게기하는 國際金融機構 또는 外國人(外國人出資者)이 出資하고 있는 外國法人 外國人出資企業에 대하여는 아래 2의 規定에 따라 法人稅, 財産稅 및 取得稅를 각각 減免함.(新設)

① 國際金融機構加入措置에關한法律 第2條에 게기하는 國際金融機構

② 前號의 國際金融機構와 共同으로 出資하는 外國人

③ 前各號에 規定하는 者가 가진 內國法人의 株式 또는 持分을 승계한 外國人

(2) 外國人出資企業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區分에 따라 그 稅額을 減免함.(新設)

① 上記 (1)의 ①의 外國人出資者가 出資한 外國人 出資企業

稅額 中 당해 外國人出資企業의 總株式 또는 總持分에 대하여 外國人出資者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의 比率에 상당하는 金額을 減免

② 上記 (1)의 ②, ③의 外國人出資者가 出資한 外國人出資企業

稅額 中 最初의 5年間은 上記 ①에서 정하는 金額을 다음 3年間은 上記 ①에서 정하는 金額의 100分의 50

(3) 外國人出資者가 外國人出資企業으로부터 받은 利益의 配當金 또는 剩餘金의 分配金, 所得稅, 法人稅 免除(新設)

上記 (1)의 ②, ③의 外國人出資者는 最初의 5年間은 全額免除. 그 後 3年間은 稅額의 100分이 50을 減免

(4) 다음 者가 支給받는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新設)

① 上記 (1)의 ①의 國際金融機構

② 上記 ①의 國際金融機構와 共同으로 借款을 供與하는 外國人

③ 上記 ①, ②의 者로부터 債權을 承繼한 外國人

(5) 國家 또는 특별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銀行이 發行한 外貨表示債權이나 外國으로부터 借入하여 外貨로 償還하여야 할 外貨債務에 대하여 支給하는 利子 : 所得稅, 法人稅 免除(新設)

(6) 外國人投資者로부터 出資의 目的物로 導入되는 物品 : 關稅, 物品稅 免除(新設)

1971년

◉ 법　　률 : 1971. 1.13. 법　　률 제2276호(시행일 : 1971. 1.13.)
1971.12.29. 법　　률 제2332호(시행일 : 1972. 1. 1.)

〈要　　約〉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에 직물류세법을 추가한다.
○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조정한다.
○ 지방공업개발에 대한 감면조항을 조정한다.
○ 등록세, 주세, 재산세, 취득세, 물품세 등의 감면에 대한 일부 규정을 조정한다.
○ 석유류세의 면제, 직물류세율과 통행세율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1. 減免의 制限(租稅減免의 根據法律 追加)

(1)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①～⑫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⑬ 직물류세법을 추가한다.
⑭～⑳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2. 法人稅와 營業稅의 減免法人

(1) 면제법인
①～㉖ : 삭제항 이외는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㉗ 대한교원공제회(신설)
㉘ 신용협동조합 및 마을금고와 동연합회(신설)

※ 삭제법인

③ 中小企業銀行
④ 國民銀行
⑮ 韓國科學技術硏究所
⑰ 韓國住宅銀行
㉓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㉕ 鐵鋼工業의育成에관한法令에 의한 鐵鋼工業者 中 粗鋼基準이 年間 10萬屯 이상의 製鐵·製鋼·壓延의 均衡된 一貫施設을 保有하는 者

(2) 法人稅 免除

(가) 다음 法人의 所得

① 商工會議所 및 大韓商工會議所
② 韓國外換銀行
③ 中小企業銀行(但 外國換業務에서 생긴 所得에 對하여는 例外)
④ 國民銀行
⑤ 韓國住宅銀行
⑥ 鐵鋼工業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鐵鋼工業者 中 粗鋼基準이 年間 10萬屯 이상의 製鐵·製鋼·壓延에 關하여 均衡된 一貫施設을 保有하는 者
⑦ 韓國科學技術硏究所
⑧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⑨ 韓國科學院
⑩ 韓國開發硏究院
⑪ 中小企業信用保證基金 管理機關

(나) 다음의 所得

① 農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가 引受하여 淸算하는 業體의 淸算所得과 그 業體가 出資者에게 分配하는 殘餘財産 중 法人稅法 規定에 해당하는 擬製分配로 因한 所得
② 財政證券法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하는 財政證券의 割引發行으로 因한 所得

(3) 법인세·영업세 면제소득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3. 鐵鋼工業에 대한 減免

(1)~(2)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3) 자가채굴·판매 광산업자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영업세의 감면 : 삭제

4. 地方工業開發에 대한 減免 範圍 調整

大統領令이 定하는 서울特別市의 地域 및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地方工業開發法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된 開發地區안으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工場施設을 全部 移轉하여 當該 事業을 계속 營爲하는 境遇에는 그 工場에서 생기는 事業의 所得에 對하여 그 事業을 開發地區안에서 開始한 날(試運轉 期間을 包含하지 아니함)이 屬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부터 3年內에 終了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全額을, 그 다음 2年 내에 終了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100分의 50에 상당하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함. 다만,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限함.

5. 登錄稅의 免除

(1) 對象法人 : 法人稅, 營業稅免除 對象 및 法人稅 免除所得 ③~⑪該當法人

(2) 對象登記

①~⑦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⑧ 削除(관광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등기)

⑨~⑪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⑫ 地方工業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指定을 받은 者가 開發地區안에서 사용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事業用財產에 관한 登記(立地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1回에 登記하는 것에 限함)

⑬~⑭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⑮ 國防科學硏究所의 財產에 關한 登記(新設)

6. 酒稅의 免除範圍 調整

觀光事業振興法에 의한 觀光호텔과 觀光休養業所에서 제공하는 酒類

7. 財產稅의 免除範圍 調整

(1) 法人稅, 營業稅 免除對象 및 法人稅免除所得 ③－⑪에 해당하는 法人이 그 固有

의 業務에 直接使用하는 財産

(2)~(5)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6)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하여 立地指定을 받은 者가 開發地區안에 所有하는 事業用 財産(5年間)

(7)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8) 國防科學硏究所가 그 固有의 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財産(新設)

8. 取得稅의 免除

(1) 對象法人

法人稅·營業稅 免除 對象 및 法人稅免除所得 ③~⑪에 該當하는 法人이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財産

(2) 對象不動産

①~⑥ :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⑦ 削除(관광사업용 부동산)

⑨~⑫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⑬ 地方工業開發法에 依하여 立地指定을 받은 者가 開發地區안에서 使用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事業用 不動産(立地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1回에 取得하는 것에 限함)

⑭~⑮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⑯ 國防科學硏究所가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不動産(新設)

9. 物品稅의 免除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韓國科學院, 韓國開發硏究院, 國防科學硏究所가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國內生産이 不可能한 物資로서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

(2)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3) 削除((1)에 포함)

(4)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10. 石油類稅의 免除

(1) 國軍組織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部隊 또는 機關에 納品하는 石油類(新設)
(2) 沿近海漁船舶에 使用할 目的으로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에 直接 共給하는 石油類(新設)

11. 織物類稅率의 輕減과 織物類의 免除

(1) 差減率(新設)
① 織物類稅法에 規定한 梳毛系와 同織物 : 100分의 5
② 織物類稅法에 規定한 紡毛糸와 同織物 40수 以上의 綿絲. 別揭 以外의 糸類 : 100分의 8
③ 織物類稅法에 規定한 麻糸, 人絹糸와 스프糸 : 100分 2
④ 織物類稅法에 規定한 其他 纖維 : 100分의 4

12. 通行稅率의 輕減

(1) 택시, 座席制 乘合自動車(高速버스 除外), 合乘自動車 또는 汽船 : 當該 稅率의 100分의 40을 輕減한 稅率을 適用(新設)

13. 關稅의 免除

(1)~(3) "한국과학기술연구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직접사용하기 위해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물자"에 대한 관세의 면제 규정삭제(1970년 조항 (1), (3))
(2)~(4)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14. 農地稅의 免除

(1) 농지개량 사업으로 인하여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경우
① 開田, 開畓 : 5年間

② 埋立, 干拓地 : 10年間

(2)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가격이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그 공사가 준공된 해로부터 15년간

(3)~(4) :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15. 不動產投機抑制稅의 適用特例 範圍 擴大

(1)~(2) :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3) 外貨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을 設立하기 위하여 土地를 現物로 出資한 경우(新設)

16. 適用時限의 延長

(1)~(2) :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3) 租稅減免規制法上 租稅減免은 同法에 따로 減免時限을 두고 있는 것을 除外하고는 그 時限을 1976年까지로 하였다.

1972년

◉ 법　　률 : 1972.12.14. 법　　률 제2365호(시행일 : 1972.12.14.)

〈要　　約〉

○ 주택복권당첨금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지 않는다.

○ 상속세, 증여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한다.

○ 법인세의 면제법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법인세, 영업세의 면제소득을 추가로 규정한다.

○ 등록세, 재산세, 취득세, 물품세, 직물류세 등의 면제, 소득계산의 특례,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면의 규정 중 일부를 신설하거나 조정한다.

○ 관세의 면제규정을 삭제한다.

〈改正內容〉

1. 所得稅의 免除範圍 調整

⑴~⑶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⑷ 山林法의 規定에 依한 營林計劃에 依하거나 山林開發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새로이 造林을 한 山林으로부터 생긴 所得(造林을 한 날로부터 20年)

⑸ 韓國住宅銀行이 發行하는 住宅福券 當籤金은 所得稅法에 依한 綜合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함.

2. 相續·贈與稅의 免除

⑴ 山林開發에關한法律에 依하여 새로이 造林을 한 山林의 相續 또는 贈與(新設)

3.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⑴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법인

①~㉘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⑵ 법인세 면제

㈎ 다음 법인의 소득

①~⑪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⑫ 한국원자력연구소(新設)

㈏ 다음의 소득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⑶ 法人稅·營業稅 免除所得

①~②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③ 國民體育振興基金에 關한 法律에 의한 體育進興 基金을 造成하는 法人이 煙草의 包匣紙를 利用한 廣告業務에서 생기는 所得과 收益(新設)

④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 同法에서 規定하는 文化藝術의 振興을 위하여 文學·美術·音樂·演藝 및 出版에 關한 展示를 하거나 公演을 하여 얻은 所得과 收益(新設)

4. 登錄稅의 免除 範圍 調整

(1) 法人稅, 營業稅免除對象 및 法人稅免除 所得 ③~⑫號 해당 法人

(2) 對象登記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3) 山林開發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開發地域안에서 山林의 開發을 目的으로 所有權을 取得하는 山林에 관한 登記를 받을 때에는 登錄稅를 免除함. 다만, 免除를 받은 者가 山林開發에 관한 法律에서 規定하는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에 山林廳長은 遲滯없이 이를 國稅廳長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國稅廳長은 免除한 登錄稅를 卽時 追徵하여야 함.(新設)

5. 財產稅의 免除範圍 調整

(1) 法人稅·營業稅 免除對象 및 法人稅 免除所得 ③~⑫에 해당하는 法人이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 使用하는 財產

(2)~(8)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9) 國民體育振興基金에 관한 法律에 의한 體育振興基金을 造成하는 法人이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使用하는 財產(新設)

(10) 文化藝術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文化藝術振興院이 그 固有의 事務에 直接使用하는 財產(新設)

6. 取得稅의 免除範圍 調整

(1) 對象法人

法人稅, 營業稅 免除對象 및 法人稅 免除所得 ③~⑫에 該當하는 法人이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財產

(2) 對象不動產

①~⑯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⑰ 國民體育振興基金에 關한 法律에 依한 體育振興基金을 造成하는 法人이 그 固有의 事務에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不動產(新設)

⑱ 文化藝術振興法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文化藝術振興法이 그 固有의 事務에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不動產(新設)

7. 物品稅의 免除範圍 調整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韓國科學院, 韓國開發硏究院, 國防科學硏究所, 韓國原子力硏究所가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國內生産이 不可能한 物資로서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

(2)~(4)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5) 觀光事業振興法의 規定에 依한 觀光호텔과 外國人觀光客의 宿泊에 適合하다고 交通部長官이 指定하는 宿泊施設의 改善 또는 改修(交通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改善 또는 改修命令에 따라 改善 또는 改修하는 경우에 限함)에 所要되는 資材 및 設備用品으로서 物品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物品에 對하여는 物品稅를 免除함. 이 경우 免稅에 關한 節次 및 用途變更에 따른 追徵에 關하여는 物品稅法의 規定을 準用함.(新設)

8. 織物類稅率의 輕減과 織物類稅의 免除

(1) 差減率

①~④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2) 免除(新設)

① 織物類稅法 중 아크릴糸 및 아크릴 纖維에 對하여는 織物類稅를 免除함.

② 觀光事業振興法의 規定에 依한 觀光호텔과 外國人觀光客의 宿泊에 適合하다고 交通部長官이 指定하는 宿泊施設의 改善 또는 改修(交通部長官·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의 改善 또는 改修命令에 따라 改善 또는 改修하는 境遇에 限함)에 所要되는 융단에 對하여는 織物類稅를 免除함.

이 境遇 免稅에 關한 節次 및 用途變更에 따른 徵收에 關하여는 織物類稅法의 規定을 準用함.

9. 關稅의 免除

○ 규정 삭제

10. 所得金額의 計算特例上 損金算入範圍의 調整

(1)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

①~②: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③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와 韓國原子力研究所에 關한 法律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原子力研究所에 支給되는 出捐金과 寄附金

11. 國際金融機關 等에 대한 減免範圍 調整: 이자소득관련

(1)~(4):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5) 다음 各號의 1에 揭記하는 利子를 支給하는 경우에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함

① 國家,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銀行 또는 外國換銀行이 外國으로부터 借入하여 外貨로 償還하여야 할 外貨債務에 대하여 支給하는 利子

② 外國換銀行이 外國換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非居住者로부터 外貨로 豫受받은 外貨債務에 대하여 支給하는 利子

(6)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1973년

◉ 법 률: 1973. 2.16. 법 률 제2520호(시행일: 1973. 2.16.)
1973. 3. 3. 법 률 제2567호(시행일: 1973. 3. 3.)
1973.12.20. 법 률 제2637호(시행일: 1973.12.20.)

〈要 約〉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에 임시수입부가세법을 추가한다.
○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이 범위를 확대한다.
○ 취득세, 등록세, 소득세, 인지세, 물품세 등의 감면 범위를 조정한다.
○ 지방세법과 겹치는 감면조항 등을 삭제한다.
○ 감면의 세부항목에 대한 감면시한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타의 조정을 한다.

〈改正內容〉

1. 減免의 制限(租稅減免의 根據法律에 다음을 追加)

(1)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①~⑳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㉑ 企業公開促進法

㉒ 特定地區開發促進에 관한臨時措置法

㉓ 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 관한法律

㉔ 臨時輸入附加稅法

2. 所得稅의 免除範圍 調整

(1)~(3)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4) 國民福祉年金法에 依한 老齡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

(5) 前 (4)와 같음.(1972년 조항(4))

(6) 前 (5)와 같음.(1972년 조항(5))

(7) 유네스코 活動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所得(新設)

(8)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와 農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單位農業協同組合 및 水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한 地區別漁業協同組合이 支給하는 預託金(預金을 包含)의 利子와 配當金이 각각 6月에 6千원 이하인 경우(新設)

3.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면제법인의 범위조정

①~⑱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⑲ 韓國投資公社

⑳~㉘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㉙ 工業團地開發公團(新設)

㉚ 韓國放送公社(新設)

(2) 법인세 면제

(개) 다음 법인의 소득

①~⑫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⑬ 國防科學硏究所(新設)

⑭ 韓國敎育開發院(新設)

(내) 다음의 소득

①~②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3) 법인세·영업세 면제 소득

①~④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4) 영업세 면제

• 유네스코韓國委員會의 收益(新設)

4. 造船工業에 대한 減免

(1) 對象者

造船工業振興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한 者 중 積載重量 10萬噸級 이상의 船舶建造用독크 또는 造船施設을 所有하고 造船事業을 營爲하는 者

(2) 減免期間

最初로 造船施設을 竣工한 날이 屬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와 그다음 期分 또는 事業年度開始日부터 5年內에 終了하는 期分 또는 事業年度의 所得과 收益

(3) 稅目:法人稅, 所得稅, 營業稅

5. 畜產業에 대한 綜合所得稅 免除

(1) 內國法人이 所得稅法에 依한 綜合所得金額을 畜產業에 投資하는 경우에는 그 投資金額에 相當하는 綜合所得稅를 免除함.

(2) (1)의 適用을 받고자 하는 者는 畜產業投資計劃書(全體計劃書 또는 分割計劃書)를 政府에 提出하여 그 承認을 얻어야 함.

(3) 綜合所得稅의 免除를 받은 者는 所得稅法에 의한 綜合所得金額 申告日로부터 2年內에 畜產業投資計劃書에 의한 投資를 履行하여야 하되 不得已한 事由가 있을 境遇에는 政府의 承認을 얻어 1年內에 限하여 그 期限을 延長할 수 있음.

(4) 上記 (2)의 畜產業投資計劃書를 提出한 者가 上記 (3)의 期限內에 投資를 履行하지 아니한 때에는 免除받은 綜合所得稅額에 免除받은 날로부터 上記 (3)의 期限까

지 그 稅額 100원당 日邊 10錢으로 計算한 金額을 合算한 것을 稅額으로 하여 遲滯없이 追徵함.

6. 機械工業에 대한 減免

(1) 對象 :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械工業을 營爲하는 者
(2) 法人稅, 所得稅減免 : 開始事業年度부터 3年 : 全額.
그 後 事業年度부터 2年 : 100分의 50

7. 登錄稅의 免除對象 登記의 範圍調整

(1) 대상법인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2) 대상등기
①~⑥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⑦ 輸出產業工業團地開發造成法에 의하여 設立된 工業團地開發公團의 財產에 관한 登記(삭제)
⑧ 1971년 개정당시 삭제됨.
⑨~⑮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⑯ 產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移住者가 定着을 위하여 取得한 住宅地 및 農耕地와 住宅에 관한 登記(新設)
(3) 前과 같음.(1992년 해당조항 참조)

8. 財產稅의 免除範圍 調整

(1)~(2)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3) 수출산업공업단지개발조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개발공단의 재산(삭제)
(4)~(10)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11) 유네스코活動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유네스코韓國委員會가 그 固有의 事務에 직접 使用하는 財產(新設)

9. 印紙稅의 免除範圍 追加

(1)~(6)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7) 어린이 預金通帳과 單位農業協同組合 또는 農業協同組合이 作成하는 당해 組合員의 預金 및 積金證書와 通帳(新設)

(8) 農村近代化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施行되는 農地改良事業으로 인한 財產權의 設定·移轉·變更 또는 消滅을 證明하는 證書 및 書類(新設)

10. 取得稅의 免除 對象不動產의 範圍追加

(1) 대상법인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2) 대상부동산

①~⑱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단 ⑥번 조항 삭제)

⑲ 產業基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移住者가 定着을 爲하여 取得하는 住宅地 및 農耕地와 住宅(新設)

11. 物品稅의 免除 範圍 擴大

(1)~(5)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6) 韓國放送公社가 國家的 目的을 위한 難視聽地域解消 및 海外放送強化用으로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施設資材로서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것.(新設)

12. 所得金額의 計算의 特例上 損金算入의 範圍 擴大

(1) 필요경비 또는 손금 산입

①~③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④ 重化學工業을 營爲하는 外資導入法에 依한 外國人投資企業이나 重化學工業을 營爲하는 法人에 出資할 目的으로 設立된 內國法人이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境遇에는 持株會社가 重化學工業法人으로부터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로 因하여 받는 所得(新設)

㉠ 持株會社의 所得 중 100分의 90 이상에 相當하는 金額이 重化學工業法人으로부터 利益의 配當 또는 剩餘金의 分配로 因하여 받는 所得일 것.

㉡ 持株會社가 法人稅法의 規定에 依한 公開法人이거나 持株會社에 出資한 者가 모두 同法의 規定에 의한 公開法人일 것.

13. 農地稅의 免除範圍 縮小

산림계 등이 경영하는 산림묘목지외에는 모든 면제규정을 삭제함(조항 (1)~(3) : 삭제, 조항(4) : 前과 같음)

14. 不動產投機抑制稅의 適用特例 範圍擴大

(1)~(3)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4) 韓國產業銀行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成業公社 또는 銀行法에 規定하는 金融機關이 抵當權의 實行으로 因하여 取得한 土地를 讓渡하는 境遇에 그 讓渡한 土地(新設)

1974년

◉ 법　　률 : 1974.12.19. 법　　률 제2678호(시행일 : 1975. 1. 1.)
　　1974.12.26. 법　　률 제2735호(시행일 : 1974.12. 7.)
◉ 시 행 령 : 1974. 7.18. 대통령령 제7198호(시행일 : 1974. 7.18.)

〈要　　約〉

○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전화세, 물품세, 주세 등의 감면 범위를 조정한다.
○ 감면대상이 되는 업종을 확대조정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 통행세율, 석유류세율, 전기가스세율 등을 조정한다.

〈改正內容〉

※ 개정의 전반적 흐름

同法은 1965年 制定 以來 經濟的 與件을 反映하여 많은 改正을 보여 왔는데 1974年

中에도 大幅的인 改編이 있었다. 이러한 改正作業은 旣存의 無秩序한 租稅減免體制와 稅制支援方式을 改善하여 稅制支援制度의 統一性을 期하고 租稅減免企業에 대한 事後監査의 徹底를 期하는 同時에 經濟開發에 대한 稅制支援을 보다 效率的으로 強化함으로써 結果的으로 稅制支援의 效率性을 提高하려는 方向下에 推進되었다.

(1) 減免制度의 單一化

重要產業에 對한 二重減免을 防止하기 위하여 旣存重要企業의 新規投資는 投資控除와 特別償却 中 擇一하여 減免받도록 하고 同改正法律 施行後 처음으로 重要企業은 直接減免, 投資控除, 特別償却 中 任意 擇一하도록 하였다.

(2)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特例規定 新設

產業政策的 見地에서 稅制支援이 要求되는 重要戰略產業을 選定, 重點的으로 支援하는 한편 減免主要企業의 事後管理를 強化함으로써 減免制度의 效率化를 期하도록 하였다.

(가) 減免對象 — 造船, 石油化學, 機械, 電子 등 10個의 重要戰略產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投資 또는 工場施設을 地方工業開發地區로 移轉하는 內國法人에 限하였다.

(나) 減免方法 — 直接減免(처음 3年間 法人稅 또는 所得稅의 全額免除 그後 2年間 50% 減免), 投資控除(投資額의 100分의 8, 但 國產機資材分은 10%를 法人稅 또는 所得稅에서 稅額 控除), 特別償却(投資에 使用된 事業用 固定資產의 普通減價額의 100分의 100을 減價費로서 損金에 算入토록 함) 中 擇一하여 減免받도록 하였다.

(3) 減免企業에 대한 事後管理制의 新設

重要產業에 대한 減免支援의 實效性을 確保하기 위하여 減免稅額의 產業政策目的에의 利用을 強制하는 事後管理에 萬全을 期하였다.

(가) 減免稅額과 投資控除額의 使用制限

減免相當額을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積立하도록 義務化(外國人 投資減免分은 除外)하는 同時에 同積立金은 外貨 및 銀行措入의 償還 資本轉入 등외의 用途에 充當하는 것을 禁止하였다.

(나) 減免 또는 控除稅額의 追徵

減免稅額 또는 控除額의 全部使用과 企業合理化積立金 全部使用前에 廢業 또는 解散한 境遇 등의 事由가 發生하면 政府의 年 1回 以上의 調査에 依해 그 稅額의 100원에 對해 日邊 10錢을 加算하여 追徵토록 規定하였다.

(4) 公害防止投資 稅額控除制의 新設

重要產業減免 또는 指定事業特別償却의 惠澤을 받지 않은 者가 公害防止施設投資

를 한 경우 100分의 8을 稅額控除해 주도록 하였다.

(5) 技術開發準備金에 대한 租稅特例 新設

內國人 製造業者가 技術開發準備金을 技術開發所要費用으로 計上한 경우 所得金額의 10%를 最高限度로 損費로 算入해 주도록 하였다. 그리고 合併 또는 廢業한 경우와 技術開發促進法에 依한 事後管理의 結果 同準備金의 任意使用事實 發見時는 同準備金殘額을 益金算入토록 規定하였다.

(6) 稅額減免對象의 調整

外國外交官이 購入한 乘用車, 軍直營賣店에서 販賣하는 國內製品 등에 物品稅를 免除하였고 交通이 不便한 島嶼에 就航하는 沿岸船에 海運組合이 直接供給하는 石油類에 대해서는 石油類稅를 全額免除토록 하였다. 外國投資企業의 外國勞動者에 대해서 所得稅를 5年間 免除하고 土地金庫 및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을 法人稅의 減免對象에 追加하였다.

(7) 通行稅의 免除

緊急措置에 따른 通行稅免除規定을 1年間 더 延長하는 한편 택시에 대한 輕減稅도 維持하였다.

車種	通行稅率	緊急措置	租稅減免規制法
			1975. 12.31까지(以下 全車種)
汽車	10%	完全免除	完全免除
汽船	5%	〃	〃
合乘自動車	10%	〃	〃
乘合自動車	5%	〃	〃
座席制乘合自動車(고속버스除外)	10%	〃	〃
電車, 軌道電車	5%	〃	〃
케이블카	10%	10%	〃
택시	20%	10%	通行稅法上의 稅率에 불구하고 稅率을 10%로 減免

1. 減免의 制限

(1)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① 근거법률

— 추가

• 국세기본법

— 삭제

•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특별조치법

(2) 이 法 및 條約과 1에 게기하는 法律에 의하여 減免되는 租稅 중 所得稅·法人稅와 營業稅에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加算稅(法人稅 또는 營業稅 減免法人에 대하여는 源泉徵收와 資料提出에 관한 義務不履行加算稅에 限함),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와 法人稅 特別附加稅가 包含되지 아니한 것으로 함.

2. 所得稅의 免除 範圍

(1)~(2) : 前과 같음.(1967년 해당조항 참조)

(3) 軍事援護報償法에 依한 支給給與(삭제)

(4) 國民福祉年金法에 依한 老齡年金, 障害年金, 遺族年金(삭제)

(5) 山林法의 規定에 依한 營林計劃에 依하거나 山林開發法의 規定에 依하여 새로이 造林을 한 山林으로부터 생긴 所得

(6) 韓國住宅銀行이 發行하는 住宅福券 當籤金은 所得稅法에 依한 綜合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合算하지 아니함.(삭제)

(7) 유네스코活動에關한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所得(삭제)

(8)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와 農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單位農業協同組合 및 水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한 地區別漁業協同組合이 支給하는 預託金(預金을 包含)의 利子와 配當金이 각각 6月에 6千원 이하인 경우(삭제)

3.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法人

①~⑲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⑳ 產業基地開發公社

㉑~㉗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㉘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등 聯合會

㉙~㉚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㉛ 產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產業基地開發事業 施行者로부터 土地 또는 產業基地支援施設을 引受 또는 讓受하여 管理하는 財產法人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法人(新設)

㉜ 土地金庫(新設)

㉝ 大韓浚渫公社(新設)

㉞ 私立學校敎員年金管理公團(新設)

(2) 法人稅 免除

(가) 다음 法人의 所得

①~⑤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⑥ 削除(철강공업관련 일정한 자)

⑦~⑭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나) 다음의 所得

①~②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③ 觀光團地開發促進에關한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觀光團地開發事業을 施行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觀光團地內에서 營爲하는 觀光團地開發事業으로 因하여 생기는 所得(新設)

(3) 法人稅·營業稅免除所得

①~④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⑤ 유네스코 韓國委員會의 所得과 利益(新設)

⑥ 證券去來法의 規定에 의하여 認可를 받아 設立된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의 所得과 收益(新設)

(4) 削除(영업세 면제관련 조항)

4. 鐵鋼工業에 대한 減免(削除)

5. 石油化學工業에 대한 減免(削除)

6. 地方工業開發에 대한 減免(削除)

7. 造船工業에 대한 減免(削除)

8. 機械工業에 대한 減免(削除)

※ 4~8을 9·10에 흡수

9.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特例

(1) 內國人(內國法人을 包含함)으로서 重要產業을 營爲하기 爲하여 投資하거나 工場施設을 移轉하는 者는 다음 3의 方法 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그 適用을 받을 수 있음.

(2) 重要產業이라 함은 다음의 1에 該當하는 事業을 말함.

① 石油化學工業育成法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가 營爲하는 나프타分解工業(接觸改質 및 芳香抽出工業을 包含)과 石油化學工業團地內에서 石油化學工業을 營爲하는 者에게 電氣, 蒸氣, 用水 또는 整備用役을 供給하는 事業

② 造船工業振興法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로서 積載重量 10萬噸級이상의 船舶建造用독크 또는 造船台를 所有한 者가 營爲하는 造船工業

③ 機械工業振興法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가 營爲하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機械工業

④ 電子工業振興法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가 營爲하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電子工業

⑤ 鐵鋼工業育成法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을 받은 者로서 粗鋼基準 年間 10萬噸이상을 각각 生產할 수 있는 製鐵施設과 製鋼施設을 함께 保有하는 者가 營爲하는 鐵鋼工業

⑥ 非鐵金屬製鍊事業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한 者가 營爲하는 非鐵金屬製鍊事業 中 銅鑛·鉛鑛·亞鉛鑛 및 이에 따르는 屑物을 製鍊하는 事業

⑦ 鑛業法에 規定하는 鑛物 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鑛物의 채굴 및 採鑛과 부수되는 選鑛 및 製鍊事業

⑧ 大統領令이 定하는 發電事業(發電과 함께 送電과 配電을 兼하는 境遇를 包含)

⑨ 肥料團束法의 規定에 依하여 許可를 받은 者가 營爲하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化學肥料製造業

⑩ 大統領令이 定하는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大統領令이 定하는 業種에 該當하지 아니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地方工業開發法에 依하여 指定된 工業開發奬勵地區(開發地區) 안으로 그 工場施設을 전부 이전하여 開發地區안에서 개시한 事業

(3) 免除方法 : 擇一

①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開始日(畜產業의 境遇에는 所得發生日)이 屬하는 事業年度와 그다음 事業年度開始日로부터 3年內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當該 重要產業에서 發生한 所得 (2)-⑩의 事業을 營爲하는 者에 對하여는 開

發地區안의 工場에서 發生한 所得에 限함)에 對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全額을, 그 다음 2年內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는 當該重要產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對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國際金融機構 등 및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依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稅額이 있을 때에는 그 金額을 控除한 稅額으로 함)의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稅額을 減免

② 大統領令이 定하는 投資(中古品에 對한 投資를 除外)를 한 金額의 100分의 8(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國內에서 生產 또는 製造된 資材와 機械를 使用하여 投資를 한 境遇에는 그 投資金額의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稅額을 그 投資 또는 工場移轉을 完了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함. 但 國際金融機構 등 및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依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하는 境遇에는 그 投資金額에 當該企業의 모든 株式 또는 持分에 對한 內國人投資者의 所有株式 또는 持分의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을 基準으로 하여 算出한 金額을 控除함.

③ 大統領令이 定하는 投資에 依하여 建設 또는 施設된 事業用固定資產에 對하여 減價償却範圍額의 100分의 100에 相當하는 金額을 減價償却費로 하여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

(4) (1)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產業을 營爲하는 者에 對하여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計算한 金額을 特別減價償却費로 하여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함. (新設)

(5) (1) 및 (3)의 規定의 適用을 받지 아니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新技術을 企業化한 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事業의 固有目的에 直接사용되는 主된 機械(이에 부수되는 기계를 포함함)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害防止施設에 投資하는 경우에는 (2)의 ②의 規定을 準用함(新設)

(6) (1)의 規定은 當該事業者가 그 投資 또는 이전을 개시한 때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投資計劃書 또는 이전계획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投資를 完了하거나 事業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함.(新設)

(7) (1)의 規定에 의하여 當該事業者가 選擇한 方法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된 方法은 이를 변경하지 못함.(新設)

(8) (6)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에 대하여는 (1)의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함.(新設)

(9) (2)－②의 規定에 의하여 控除할 金額이 當該事業年度의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

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의 金額은 當該事業年度의 다음 事業年度 개시일로부터 4年內에 終了하는 各 事業年度에 移越하여 그 移越된 各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이를 控除함.(新設)

⑽ 各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할 金額으로서 (2)－②의 규정에 의하여 控除할 金額과 (7)의 規定에 의하여 이월된 未控除金額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7)의 規定에 의하여 이월된 未控除金額을 먼저 控除하고, 그 이월된 未控除金額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投資 또는 이전이 完了된 부분에서 이월된 未控除金額을 먼저 控除함.(新設)

⑾ 重要產業을 영위하는 者로서 (2)－①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者가 기타의 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重要產業과 기타의 事業을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하여 經理하여야 함.(新設)

⑿ 重要產業 ⑩의 事業이 同 ① 내지 ⑨의 事業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⑩의 事業에 관하여는 (1)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新設)

⒀ 重要產業 ⑩의 事業을 영위하는 者로부터 減免·控除 또는 償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事業을 승계한 者는 그 殘餘期間中 종전의 事業者로 보고 當該 各條項의 규정을 적용함.(新設)

⒁ 重要產業 ⑩의 事業을 영위하는 者가 地方工業開發法에 의한 立地指定이 해제된 때에는 그 해제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부터 적용하지 아니함.(新設)

10. 技術開發準備金에 대한 租稅特例

(1) 內國人으로서 製造業을 영위하는 者가 기술의 개발 및 革新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技術開發準備金을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個人인 경우에는 當該 事業所得金額)의 100分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의 범위안에서 이를 그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함. 다만, 外資導入法 또는 外國換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技術을 導入한 者는 當該事業年度에 支給하였거나 支給할 導入代價에 상당하는 金額의 범위 안에서 이를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할 수 있음.

(2) (1)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準備金을 計上한 者가 材料·製品·機械裝置 또는 工程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生產方法을 探究하기 위하여 技術開發促進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技術開發費, 技術情報費 또는 技術訓鍊費를 支給한 때에는 그 費用은 이미 計上되어 있는 技術開發準備金과 먼저 相計하여야 함.

(3) (1)의 規定에 의한 必要經費, 損金에 算入한 技術開發準備金은 그 事業年度終了日의 다음날로부터 2年이 되는 날까지 (2)의 規定에 의하여 相計한 殘額은 그 2年이 되는 날의 다음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 또는 益金에 算入함.

(4) 技術開發準備金을 計上한 者가 다음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그 計上된 技術開發準備金의 殘額은 當該事由가 發生한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 또는 益金에 算入함.

① 廢業한 때.

② 合併 또는 解散한 때. 다만, 合併에 있어서는 合併後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에 當該技術開發準備金計定의 金額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함.

③ 技術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사후관리의 결과 技術開發準備金을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때.

11. 畜產業에 대한 綜合所得稅의 免除範圍 調整

(1) 內國法人이 所得稅法에 依한 綜合所得을 畜產業에 投資하는 境遇에는 그 綜合所得에 對하여 投資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에 相當하는 所得稅額 중 綜合所得稅 負擔額을 勘案하여 免除함.

(2)~(4)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12. 登錄稅의 免除範圍 調整

(1) 對象法人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2) 對象登記

①~②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③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施行되는 農地改良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으로 因하여 取得한 農地 및 農家住宅의 登記와 農地擴大開發促進에 關한 法律에 의하여 開墾된 農地의 登記.

④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⑤ 1968년 개정당시 삭제됨.

⑥ 私立學校法에 의한 學校法人의 設立과 合併의 登記 및 合併하는 때의 基本財產인 不動產移轉登記

⑨ 削除(임야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임야등기)

⑩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⑪ 石油化學工業育成法의 規定에 의한 團地造成을 目的으로 取得한 土地에 대한 登記

⑫ 地方工業開發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立地指定을 받은 者가 開發地區안에서 사용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事業用財産에 관한 登記

⑬ 援護對象者 團體設立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傷痍軍警會·大韓戰歿軍警遺族會·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光復會·4·19義擧傷痍者會 또는 4·19義擧犧牲者遺族會의 財産에 關한 登記

⑭~⑯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참조)

⑰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團地開發事業 施行者가 觀光團地開發事業을 爲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定着物과 當該觀光團地로부터 移住하는 者가 定着을 爲하여 取得하는 住宅地·農耕地 및 住宅에 關한 登記(新設)

(3) 山林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開發地域안에서 山林의 開發을 目的으로 所有權을 取得하는 山林에 관한 登記(免稅를 받은 者가 山林開發法에서 規定하는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境遇에 山林廳長은 遲滯없이 이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免稅한 登錄稅를 즉시 追徵)

13. 財産稅의 免稅範圍 調整

(1)~(6)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단 조항 (3)은 삭제)

(7) 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傷痍軍警會, 大韓戰歿軍警遺族會, 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 光復會, 4·19義擧傷痍會, 4·19義擧犧牲者遺族會의 財産

(8)~(11)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참조)

(12)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觀光團地開發事業 施行者가 所有하는 觀光團地 및 觀光團地 支援施設(新設)

14. 印紙稅의 免除範圍 調整

(1)~(5)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6)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의 組合員 또는 農民이나 漁民이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農協, 水協組合 또는 中央會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作成하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어음約定書(同一人이 받는 融資金額의 合算額이 10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例外)

(7) 어린이 預金通帳과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單位 農業協同組合 또는 漁業協同組合이 作成하는 當該 組合員의 預金 및 積金證書와 通帳

(8)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참조)

15. 取得稅의 免除範圍 調整

(1) 對象法人

法人稅, 營業稅 免除對象 및 法人稅免除所得 ③~⑭에 該當하는 法人이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財產

(2) 對象不動產

①~②: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③ 農地擴大開發促進法의 規定에 依하여 開墾한 農地

④~⑧: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단 ⑥, ⑦ 삭제)

⑨ 畜產業을 營爲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牧場用土地 및 建物로서 그 事業에 直接使用하는 것. 다만, 農水產部長官이 定하는 基準의 要件을 갖추어야 할 畜產業者가 그 要件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그 基準의 要件을 갖춘 畜產業者가 牧場用土地 및 建物을 取得한 날부터 1年內에 그 目的事業에 使用하지 아니한 때와 牧場用土地 및 建物의 全部 또는 一部를 同要件을 갖춘 날로부터 5年內에 그 目的事業 以外의 事業에 轉用하거나 讓渡한 때에는 그 部分에 對하여 이미 免除된 取得稅를 즉시 追徵(不可抗力的인 事由로 因하여 轉用 또는 讓渡하는 境遇를 除外함)

⑩ 前과 같음.(1968년 해당조항 참조)

⑪ 削除(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된 임야)

⑫ 石油化學工業育成法의 規定에 依한 團地造成을 目的으로 取得한 土地

⑬ 地方工業開發法에 依하여 立地指定을 받은 者가 開發地區안에서 使用할 目的으로 取得하는 事業用不動產, 다만 立地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2年內(5年內)에 取得하는 것에 한함.

⑭ 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關한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大韓傷痍軍警會, 大韓

戰歿軍警遺族會, 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 光復會, 4·19義擧傷痍者會, 4·19義擧犧牲者遺族會가 取得하는 不動産

⑮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⑯ 削除(국방과학연구소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⑰~⑲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참조)

⑳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觀光團地開發事業 施行者가 觀光團地 開發事業을 爲하여 取得하는 土地 및 定着物과 當該團地로부터 移住하는 者가 定着하여 取得하는 住宅地·農耕地 및 住宅(新設)

16. 物品稅의 免除

(1)~(4)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5) 削除(관광사업관련 일정한 물품)

(6)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참조)

(7) 大統領令이 定하는 外交官으로서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者가 購入하는 國産乘用自動車와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그 企業에 勤務하는 外國人用으로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最初로 購入하는 國産乘用自動車(新設)

① 外國人이 2億원 相當額 以下의 外貨를 投資한 企業 : 1대

② 外國人이 2億원 相當額을 超過하여 4億원 相當額 以下의 外貨를 投資한 企業 : 2대

③ 外國人이 4億원 相當額을 超過한 金額의 外貨를 投資한 企業 : 3대

17. 軍納物品에 대한 物品稅와 酒稅의 免除

軍이 直營하는 賣店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軍人·軍屬에게 販賣하는 物品(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에 限함)에 對하여 物品稅와 酒稅를 免除함.(新設)

18. 石油類稅의 免除

(1)~(2)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3) 交通이 不便한 島嶼에 就航하는 沿岸海運船舶에 使用할 目的으로 韓國海運組合에 直接供給하는 石油類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新設)

(4) 石油類稅法에 揭記한 방커 C油에 對하여는 同法의 規定의 稅率에 不拘하고 그 稅率은 100分의 5로 함.(新設)

19. 織物類稅率의 輕減과 織物類稅의 免稅

(1) 差減率

① 織物類稅法에 規定한 生系와 絹系 : 100分의 10

②~④ : 免除(1971년 해당조항)

(2) 免稅

①~② : 削除(1972년 해당조항)

20. 通行稅率의 輕減

(1) 汽車, 電車, 軌道電車, 乘合自動車, 座席制乘合自動車(高速버스를 除外함), 合乘自動車, 케이블카 또는 汽船 : 免除

(2) 택시는 稅率을 100分의 10으로 함.

21. 電話稅의 免除

(1) 電話稅法에 依한 私立學校(新設)

22. 電氣가스 稅率의 輕減

稅率을 100分의 5로 함.(新設)

23. 國際金融機關 등에 대한 減免의 範圍調整

(1)~(5)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6) 外國人投資者로부터 出資의 目的物로 導入되는 物品 : 物品稅 免除.

24. 不動產投機抑制稅의 適用特例 : 削除

1975년

◉ 법　　률 : 1975. 7.22.　법　　률　제2771호(시행일 : 1975. 7.22.)
　　1975.12.22.　법　　률　제2795호(시행일 : 1976. 1. 1.)

〈要　　約〉

○ 조세감면의 근거법률에 방위세법을 추가한다.
○ 법인세, 영업세의 감면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범위를 조정한다.
○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인지세, 물품세, 석유류세 등의 감면범위를 조정한다.
○ 감면의 세부항목에 대한 감면시한의 기간을 조정하는 등 기타의 조정을 한다.

〈改正內容〉

1. 租稅減免의 制限

(1)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①～㉔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㉕ 방위세법(신설)
(2)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2. 所得稅의 免除範圍 擴大

(1)～(5)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단 (3), (4) 삭제)
(6) 農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特殊農業協同組合 또는 水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業種別 漁業協同組合이 支給하는 配當과 綜合金融會社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法人이 國內에서 發行하는 원貨表示社債에 對하여 支給하는 利子에 對하여는 一般源泉徵收稅率을 100分의 5로 하며 分離課稅利子所得 또는 分離課稅配當所得으로 봄.

3.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등의 免除

(1)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公共事業에 必要한 土地 등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讓渡하거나 道路建設事業에 必要한 土地 등을 韓國道路公社에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는 當該國家機關 등의 申請에 依해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

(2) 다음의 公共事業

① 國防·軍事에 關한 事業

② 鐵道·軌道·道路·河川(댐을 包含)·港灣·運河·上水道·下水道·쓰레기 및 汚物處理場, 通信·測候·航空硏究所·試驗所·學校·保健 또는 文化施設·公園·廣場·火葬場·公共基地·屠殺場 施設에 關한 事業

③ 工業團地의 造成 및 都市計劃에 關한 事業

4.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법인세와 영업세의 면제법인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2) 법인세 면제

(가) 다음 法人의 所得

①~⑭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참조. 단 ⑥삭제)

⑮ 國際觀光公社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國際觀光公社(新設)

⑯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特定硏究機關(共同管理機構를 包含)(新設)

(나) 다음의 所得

①~③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④ 山林開發만을 目的으로 設立된 法人이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거나 山林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造林을 한 때에 그 山林所得(20年間)(新設)

(3) 법인세·영업세 면제소득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5. 海外建設業 等에 대한 租稅減免

(1) 內國人의 海外建設事業에서 생기는 所得에 대하여는 그 事業을 開始한 事業年度와 그 다음 事業年度의 開始日부터 5年內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 當該事業에서 發生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稅額을 減免함.

6. 登錄稅의 免除範圍 調整

(1) 對象法人

法人稅·營業稅免除 對象 및 法人稅 免除所得 ③~⑫號, ⑯號에 해당 法人

(2) 對象登記

①~⑫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⑬「4·19 義擧犧牲者遺族會」다음에「또는 援護團體後援會」를 삽입함.

⑭~⑰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⑱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移住者가 定着을 위하여 取得하는 住宅地·農耕地 및 住宅에 관한 登記(新設)

⑲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한 還買權의 行使로 買收하는 土地들에 관한 登記(新設)

⑳ 主務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合議하여 定하여 合併을 하는 境遇에 그 合併으로 인하여 讓受하는 財產에 관한 登記(新設)

㉑ 收復地域內土地의 地籍整理 등에 관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촉탁하는 土地에 관한 登記(新設)

7. 財產稅의 免除範圍 調整

(1) 法人稅·營業稅 免除對象 및 法人稅免除所得 ③~⑫, ⑮, ⑯號에 해당하는 法人이 그 固有의 業務에 直接使用하는 財產

(2)~(6)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단 (3) 삭제)

(7)「4·19 義擧犧牲者遺族會」다음에「또는 援護團體後援會」를 삽입함.

(8)~(10) :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11) 유네스코活動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유네스코韓國委員會가 所有하는 財產

(12)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8. 印紙稅의 免除 範圍 擴大

(1)~(8)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9)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土地 등을 國家·地方自

治團體 또는 韓國道路公社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道路公社에 讓渡하는 境遇에 그 讓渡節次上 必要에 依하여 作成되는 書類(新設)

⑽ 證券去來法의 規定에 依하여 韓國證券去來所에 上場하였거나 上場하고자 하는 株券을 韓國證券去來所가 정한 統一規格으로 바꾸기 爲하여 更新交付하는 統一規格株券(新設)

9. 取得稅의 免除範圍 調整

(1) 對象法人

法人稅, 營業稅 免除法人 및 法人稅 免除所得 ③~⑭ 및 ⑯號에 該當하는 法人이 그 固有業務에 直接使用하기 爲하여 取得하는 財産

(2) 對象不動産

①~⑬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⑭ 援護對象者團體設立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大韓傷痍軍警會, 大韓戰歿軍警遺族會, 大韓戰歿軍警未亡人會, 光復會, 4·19義擧傷痍者會, 4·19義擧犧牲者遺族會 또는 援護團體後援會가 取得하는 不動産.

⑮~⑳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단 ⑯삭제)

㉑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依한 還買權의 行使로 買受하는 不動産(新設)

㉒ 收復地域內 土地의 地籍整理등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依하여 取得하는 土地(新設)

10. 物品稅의 免除範圍 調整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韓國科學院, 韓國開發硏究院, 韓國原子力硏究所, 韓國科學硏究所, 特定硏究機關의 法人이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國內生産이 不可能한 物資로서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

(2)~(6)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참조, 단 (5) 삭제)

(7) 大統領令이 定하는 外交官으로서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者가 購入하는 國産乘用自動車 協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民間援助團體가 主務部長官의 추천을 받아 그 事業用으로 購入하는 國産乘用自動車와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그 企業에 勤務하는 外國人用으로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最初로 購入하는 國産乘用自動車

①~③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但, 物品稅를 免除받아 購入한 國產乘用自動車를 購入한 날로부터 5年內에 當該用途에 供하지 아니하거나 讓渡하였을 때에는 免除된 物品稅를 徵收함.

(8) 物品稅法에 規定된 課稅物品으로서 軍需調達에關한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防衛產業體가 生產하는 板·棒·管·帶·線·箔(新設)

11. 石油類稅의 免除範圍 調整

(1)~(3) : 前과 같음.(1971년 해당조항 참조)

(3) 沿岸을 運航하는 旅客船舶에 使用할 目的으로 韓國海運組合에 供給하는 石油類

(4)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12. 關稅의 免除

(1)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依한 外國投資家와 內國法人이 合併投資하여 設立한 肥料 및 그 關聯 化學工業生產品의 製造工場(肥料工場의 경우에는 年間生產能力이 複合肥料 60萬噸, 尿素肥料 30萬噸 이상의 것에 限함)을 建設하기 爲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機械類 및 基礎設備品으로서 國內에서 製作하기 困難한 物品 중 財務部長官이 告示하는 物品(新設)

13. 所得金額 計算의 特例上 損金算入 範圍의 調整

(1) 필요경비 또는 손금산입

①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科學技術硏究所 및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硏究機關에 支給되는 出捐金과 委託硏究費

②~④ : 前과 같음.(1973년 해당조항 참조)

14. 國際金融機關 等에 대한 減免

(1)~(4) : 前과 같음.(1970년 해당조항 참조)

(5)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① 國家, 特別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銀行·外國換銀行 또는 綜合金融會社에 관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法人이 發行하는 外貨表示債券의 利子

② 前과 같음

③ 上記 ①에 揭記하는 者가 外國으로부터 借入하여 外貨로 償還하여야 할 外貨債務에 대하여 支給하는 利子(新設)

(6)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7) 施設貸與會社가 外國으로부터 施設 등을 貸與받고 外貨로 貸與料를 支給받는 경우 : 所得稅, 法人稅 免除(新設)

(8) 外國法人이나 外國人이 出資하고 있는 內國法人에 속하는 外國換銀行이 外國에서의 外貨資金의 貸借를 알선 仲介하거나 外國으로부터의 外貨資金의 借入을 斡旋仲介하고 얻는 所得과 收益 : 法人稅, 營業稅 免除(이 경우에 外國人이 出資하고 있는 內國法人에 대하여는 그 稅額 중 당해 企業의 모든 株式 또는 持分에 대하여 外國人投資者가 所有하고 있는 株式 또는 持分이 차지하는 比率에 상당하는 金額만을 免稅(新設)

1976년

◉ 법 률 : 1976. 3.31. 법 률 제2891호(시행일 : 1976. 4. 1.)
1976.12.22. 법 률 제2932호(부가가치세실시에 따른 세법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시행일 : 1977. 7. 1.)
1976.12.22. 법 률 제2938호(시행일 : 1977. 1. 1.)

〈要 約〉

産業과 技術의 高度化를 促進하기 위하여 重要産業의 範圍를 넓혀 支援하고 技術人力開發에 對한 減免制度를 擴充하며 大都市의 人口集中을 抑制하기 爲하여 地方移轉工場에 對한 減免制度를 新設하는 한편 減免時限을 1981年 12月31日까지 延長함으로써 第4次5個年計劃을 支援하도록 하였다.

○ 重要政策事業法人에 對하여 租稅를 減免함.

○ 重要産業의 範圍를 擴大함.

— 造船工業의 減免範圍를 10萬屯에서 3千屯으로 擴大함.

— 畜産業 및 防衛産業을 重要産業으로 追加함.

— 機械 및 電子工業의 範圍를 擴大함.
○ 大都市人口集中을 抑制함.
— 地方施設移轉準備金制度를 新設함.
— 地方移轉事業에 對한 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함.
○ 中小企業의 統合을 促進함.
○ 企業의 社內職業訓練을 支援함
○ 租稅減免期間을 延長함.

〈改正內容〉

1. 重要產業法人에 對한 租稅減免

㈎ 法人稅·營業稅·登錄稅·取得稅·財產稅의(法 第4條 第1項)

技術·人力을 개발하고 輸出戰略事業과 其他政策事業을 支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特殊法人에 대하여 法人稅·營業稅·登錄稅·取得稅·財產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①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法人
② 韓國技術檢定公團
③ 韓國輸出入銀行
④ 韓國精密機器센터
⑤ 韓國反共聯盟
⑥ 漁村契

㈏ 法人稅의 免除(法 第4條 第5項)

政府施策事業을 遂行하는 信用保證基金과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管理機關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2. 重要產業에 對한 租稅支援

(1) 造船工業 支援(法 第4條의8 第2項 第2號)

從前에는 積載重量 10萬屯級 以上의 船舶建造用 독크 또는 造船臺를 所有한 者가 營爲하는 造船工業에 對하여 大型船 中心의 租稅支援을 하였으나 世界造船 景氣

의 趨勢에 따라 中小型 船舶 中心의 支援이 必要하므로 3千屯으로 基準을 擴大調整하였다.

(2) 畜産業의 支援(法 第4條의8 第2項 第11號, 令 第18條의2)

從前에는 法人稅法 및 所得稅法에서 減免하던 것을 租稅減免規制法에서 重要産業으로 定하여 다음과 같이 減免토록 하였다.

(가) 畜産業의 範圍

소·말·양·돼지·토끼·친칠라·사슴·밍크·가금 또는 꿀벌의 飼育·增殖(畜産法에 規定한 부화업자가 아닌 者가 부화업을 하는 경우 除外)·채란·채모·착유 등의 事業

(나) 減免期間

改 正 前	改 正
※ 所得稅法·法人稅法에서 規定 1969～1975年(7年間) 100% 減免 1976～1978年(3年間) 50% 減免	※ 租稅減免規制法에서 規定 所得이 發生한 事業年度와 그 다음 事業年度부터 3年間 – 100% 減免 2年間 – 50% 〃

(다) 減免方法

改正稅法에서는 畜産業에서 所得이 發生한 事業年度와 그 다음 事業年度부터 3年間은 所得稅 또는 法人稅 100%, 그 다음 事業年度分부터 2年間은 50%를 減免하게 된다. 그리고 이 法 施行日인 1997年 1月1日 以前의 旣存畜産業者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3年間 100%와 2年間 50%를 減免받지 못한 者는 계속하여 3年間 100%와 2年間 50%를 減免받도록 하였다.

(3) 防衛産業의 支援(法 第4條의8 第2項 第12號, 令 第18條의3)

防衛産業에 對하여는 改正前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別表 2〉와 〈別表 3〉에서 限定的으로 減免하던 것을 今般 改正에서는 重要産業으로 定하여 다음과 같이 支援하게 된 것이다.

(가) 防衛産業의 範圍

軍需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指定된 軍需業體가 同 法에 依하여 指定된 軍需物資를 製造하는 事業

(나) 減免方法

減免對象이 되는 "重要産業"을 營爲하는 企業의 경우와 같이 防衛産業을 營爲

하는 企業도 直接減免·投資控除와 特別償却 中 하나의 方法만을 任意로 選擇하여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機械工業 및 電子工業 減免範圍 擴大(令 別表 2 및 3, 附則 第3項)

機械工業과 電子工業의 繼續的인 育成을 위하여 減免對象業種과 品目을 大幅 擴大調整하였고, 이번 改正前 追加된 品目을 1974年 1月1日 以後 生産해 오던 者는 1977年 1月1日에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도록 經過措置를 두었다.

3. 人口分散政策의 支援

(1) 地方施設移轉準備金의 新設(法 第4條의12, 令 第24條의 4)

大都市內에서 工場施設을 가지고 事業을 營爲하는 企業이 그 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地方施設移轉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當該 事業年度와 그 後 2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地方施設移轉準備金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가) 適用對象

서울·釜山 및 大邱 등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서울特別市에 接하는 市·郡, 仁川市 및 水原市를 除外함)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個人 또는 法人

(나) 損金算入 範圍

當該事業年度 終了日 現在의 工場設備價額에 100分의 10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當該事業年度와 그 後 2事業年度에 걸쳐 各 年度마다 損金에 算入한다.

(다) 還入方法

地方施設移轉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企業이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事業年度의 終了日 以後 3年이 經過하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終了日까지 實際로 地方移轉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이 있을 때에는 그 3年이 經過되는 事業年度부터 3年에 걸쳐 各 年度마다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의 3分의 1에 該當하는 金額을 益金에 算入하고, 위 3年 以內에 地方移轉을 위하여 使用하지 아니한 金額이 있는 경우에는 그 3年이 經過되는 事業年度에 그 金額을 益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에는 當該準備金에 相當하는 稅額 100원에 대하여 1日 10전의 利子相當額을 加算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서 追徵한다.

(2) 地方移轉事業에 對한 稅額控除(法 第4條의13, 令 第17條)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도록 支援하기 위하여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稅額控除制度를 다음과 같이 新設하였다. 이때 大都市 또는 地方의 範圍는 위

地方施設移轉準備金의 경우와 같다.

(가) 適用對象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全部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個人 또는 法人

(나) 控除範圍

地方으로 工場施設을 移轉한 後 그 工場의 固有目的事業에 直接 使用하는 主된 機械施設價額의 100分의 8(國產機資材로 投資한 경우에는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그 工場施設이 完了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되, 控除받을 稅額보다 納付할 稅額이 적어서 控除殘額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事業年度부터 4年內에 移越되어 控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이 경우에는 地方施設移轉準備金制度에 의한 惠澤도 併行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4. 中小企業의 綜合支援(法 第5條 第2項·第10條 第2項)

主務部長官이 認定하는 合併奬勵業種에 該當하는 中小企業이 合併 또는 統合하는 경우에는 그 後 存續하는 企業이 該當資產을 登記할 때에 登錄稅와 取得稅를 免除받도록 하였다. 이 때 中小企業에는 法人과 個人을 包含하므로 法人과 法人間, 個人과 個人間 또는 個人과 法人間의 合併 또는 統合이 모두 該當된다.

5. 企業의 社內 職業訓練 促進(法 第5條 第2項·第9條 第13項·第10條 第2項·第11條 第3項)

企業의 社內職業訓練의 強化를 爲하여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用施設(宿泊施設을 包含함)에 直接 使用되는 土地와 建物에 對하여는 登錄稅·取得稅 및 財產稅를 免除하며 職業訓練에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物資를 外國에서 導入할 때에는 物品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이때 職業訓練用 土地로서 建物바닥 面積의 10培가 넘는 部分은 免除對象에서 除外된다.

6. 海外用役事業에 對한 租稅減免(法 第4條의10 第1項)

從前에는 海外建設事業에 對하여만 減免하였으나 앞으로는 海外建設用役·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까지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50%를 5年間 減免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對象事業 …… 海外建設事業 期間 및 減免率 …… 5年間 50% 減免	對象事業 …… 海外建設事業, 海外建設用役 • 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 期間 및 減免率 …… 改正前과 같음

7. 海外資源開發事業 支援(法 第4條의10 第2項, 令 第24條의2)

(1) 對　象

海外投資許可를 받은 內國法人이 外國에서 農產物·林產物 또는 鑛物을 開發하는 事業(當該資源의 加工業을 包含)에 投資하여 配當을 받는 경우에 當該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2) 減免條件

위의 海外資源開發事業의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無條件 免除하는 것이 아니고 當該資源保有國(投資對象國)에서 그 配當所得에 대하여 租稅를 免除받은 分에 한하여 法人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8. 減免時限 延長(法 第18條)

從前 租稅減免規制法은 그 適用時限이 第3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에 맞추어 1976年 12月 31日까지로 되어 있었으나 今般 改正에서는 第4次 5個年計劃을 支援하기 爲하여 1981年 12月31日까지로 時限을 延長하였다.

9. 租稅減免의 制限

부가가치세 등의 신규제정에 따른 조정임.

(1) 削　除

- 登錄稅法
- 營業稅法
- 物品稅法
- 石油類稅法
- 通行稅法

- 入場稅法
- 電氣가스稅法
- 織物類稅法
- 遊興飮食稅法

(2) 追　加

— 附加價値稅法(新設)

— 特別消費稅法(新設)

— 이 法 및 條約과 1에 揭記하는 法律에 의하여 減免되는 租稅 중 所得稅·法人稅·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와 酒稅에는 이 法에 特別한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는 加算稅(法人稅 免除法人에 대하여는 源泉徵收와 支給調書提出에 관한 義務不履行加算稅에 한함), 所得稅法 規定에 의한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와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가 包含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함.

10. 所得稅의 免除範圍 擴大

(1)~(6) :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7) 다음의 債券 또는 預金의 利子割引額 또는 配當金으로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것에 對하여는 所得稅를 賦課하지 아니함.(新設)

① 貯蓄機關이 發行하는 貯蓄債券의 利子와 割引額

② 家計 및 農漁民貯蓄을 增大시키기 爲한 特別預金(信用協同組合에 對한 預託金과 出資金을 包含)의 利子와 配當金

③ 納稅預金의 利子

11. 施設貸與產業에 대한 租稅 特例

(1) 施設貸與產業育成法의 規定에 의하여 財務部長官의 認可를 받은 施設貸與會社가 施設貸與로 因한 損失의 補塡에 充當하기 위하여 施設貸與損失準備金을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당해 事業年度 終了日 現在의 貸與施設價額에 100分의 2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의 範圍 안에서 이를 당해 事業年度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함.

(2) (1)의 規定에 의하여 損金에 算入한 施設貸與損失準備金은 다음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上 益金에 算入하여야 함.

(3) (1)의 規定을 適用받고자 하는 施設貸與會社는 法人稅法 規定에 의한 申告書에 施設貸與 損失準備金計定에 計上한 金額의 明細書를 첨부하여야 함.

(4) 施設貸與 損失準備金計定의 金額이 있는 法人이 合併으로 因하여 消滅한 境遇에는 그 消滅한 法人의 合併日에 있어서의 施設貸與 損失準備金計定의 金額으로서 合併후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因하여 設立된 法人에 引繼한 金額은 그 存續하거나 設立된 法人이 合併日에 가지고 있는 施設貸與 損失準備金計定의 金額으로 봄.

(5) 施設貸與會社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產業을 營爲하는 者에게 施設을 貸與한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特別減價償却費로 하여 各事業年度의 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음.

12. 登錄稅의 免除範圍 調整

(1) 對象法人 :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2) 對象登記

①~㉑ :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㉒ 主務部長官이 인정되는 合併奬勵業種을 營爲하는 中小企業의 合併 또는 統合(個人과 法人間 및 個人과 個人間의 統合을 包含함)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나 合併 또는 統合후 存續하는 法人이 당해 事業用財產을 讓受함에 따른 登記(新設)

㉓ 職業訓練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用施設(宿泊施設을 포함함)에 직접 사용되는 土地(建物바닥面積이 10培를 초과하는 土地를 제외함)와 建物에 관한 登記(新設)

㉔ 私立學校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大都市안에서 取得하는 學校用 土地·建物에 대한 權利의 取得과 그 所有權의 保存에 관한 登記(新設)

(3) 山林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開發地區안에서 山林의 開發을 目的으로 所有權을 取得하는 山林에 관한 登記를 받을 때에는 登錄稅를 免除함. 다만, 免除를 받은 者가 山林開發에 관한 法律에서 規定하는 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山林廳長은 遲滯없이 이를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市長 또는 郡守에게 通知하여야 하며 서울特別市長·釜山市長·市長 또는 郡守는 免除한 登錄稅를 즉시 追徵하여야 함.

13. 酒稅의 免除範圍 調整

觀光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客利用施設業 중 駐韓外國軍人 및 外國人船員 專用의 特殊遊興飮食店에서 제공하는 酒類

14. 特別消費稅의 免除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韓國科學院, 韓國開發硏究院, 韓國原子力硏究所, 國防科學硏究所, 特定硏究機關의 法人이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物資로서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에 對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2) 農漁村開發公社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農漁村開發公社가 直接 使用하거나 同公社가 資本金의 50% 以上을 出資한 企業體에 使用할 目的으로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機械 및 器具에 對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3) 敎育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실업계학교의 敎育 또는 職業訓練基本法의 規定에 의한 職業訓練에 直接 使用하기 爲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로서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것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4) (1) 내지 (3) 및 (9)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의 免除를 받은 物資와 機械 및 器具를 當該用途에 供하지 아니하거나 讓渡하였을 때에는 免除된 特別消費稅를 追徵함.

(5) 韓國放送公社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放送公社가 國家的 目的을 爲한 亂視聽地域解消 및 海外放送強化用으로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施設資材로서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것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6) 大統領令이 定하는 外交官으로서 우리나라에 駐在하는 者가 購入하는 國產乘用自動車協定에 의하여 登錄된 外國民間援助團體가 主務部長官의 추천을 받아 그 事業用으로 購入하는 國產乘用自動車와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이 그 企業에 勤務하는 外國人用으로 다음 各號의 區分에 의하여 最初로 購入하는 國產乘用自動車에 對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① 外國人이 2億원 相當額 以下의 外貨를 投資한 企業 : 1臺

② 外國人이 2億원 相當額을 超過하여 4億원 相當額 以下인 外貨를 投資한 企業 : 2臺

③ 外國人이 4億원 相當額을 超過한 金額의 外貨를 投資한 企業 : 3臺

(7) (6)의 規定에 該當하는 國產乘用自動車를 製造場에서 搬出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政府의 承認을 얻어야 함.

(8) (6)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받아 購入한 國產乘用自動車를 購入한 날로부터 5年內에 當該用途에 供하지 아니하거나 讓渡하였을 때에는 免除된 特別消費稅를 徵收함. 이 경우에는 그 免除 및 追徵節次에 關하여는 特別消費稅法의 規定을 準用함.

(9) 大統領令이 定하는 防衛產業을 營爲하는 者가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原資材로서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것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稅함.

(10) 國軍組織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置된 部隊 또는 機關에 納品하는 石油類에 對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11) 沿近海 漁業船舶에 使用할 目的으로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에 直接供給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12) 沿岸을 運航하는 旅客船舶에 使用할 目的으로 韓國海運組合에 供給하는 石油類에 對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13) 電氣事業의 規定에 의한 一般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할 수 없거나 相當期間 電氣供給이 困難한 島嶼로서 商工部長官 또는 同法의 規定에 의하여 그 委託을 받은 機關이 證明하는 島嶼地方의 自家發電에 使用할 目的으로 漁業協同組合에 供給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14) 國稅廳長은 (9) 내지 (13)의 規定에 의한 免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할 수 있음.

1977년

◉ 법　　률 : 1977.12.19. 법　　률 제3017호(시행일 : 1978. 1. 1.)

〈要　　約〉

○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범위를 확대한다.
○ 법인세 면제법인의 범위를 확대한다.
○ 등록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등의 면제와 관세의 감면, 소득계산의 특례규정 중 일부를 조정한다.
○ 부가가치세의 면제,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소득공제, 지방이전공장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규정을 신설한다.

〈改正內容〉

1.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等의 免除 範圍 規定

(1) 公共用地의取得 및 損失補償에關한特例法의 適用을 받는 公共事業에 必要한 土地 등을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地方自治團體組合을 包含함)에 讓渡하거나 道路建設事業에 必要한 土地 등을 韓國道路公社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道路公社에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는 當該國家機關·地方自治團體 또는 韓國道路公社의 申請에 依하여 所得稅法規定에 依한 讓渡所得에 對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法에 依한 特別附加稅를 免除함.

(2)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3) 中小企業間의 統合(個人과 法人間 및 個人과 個人間의 統合을 包含함)으로 因하여 消滅되는 中小企業이 그 事業用不動產을 統合에 依하여 設立된 法人 또는 統合後 存續하는 法人에게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는 所得稅法에 依한 讓渡所得에 對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法에 依한 特別附加稅를 免除함.(新設)

(4) 大都市안에서 事業을 營爲하는 居住者가 地方으로 移轉하기 爲하여 事業用에 供한 不動產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依한 讓渡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讓渡所得 控除額은 當該金額에 100分의 100을 加算함(新設)

(5) 集合住宅地區內의 土地를 住宅建設用地로 大韓住宅公社 또는 住宅促進法에 依하여 指定된 當該 集合住宅地區 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함으로써 생긴 所得에 對하여는 當該土地를 買入한 者가 申請하는 境遇에 限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 特別附加稅를 免除함(新設)

(6) 住宅建設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國民住宅規模 以下의 住宅建設用地로 土地金庫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土地金庫에 土地를 讓渡함으로써 생긴 所得에 對하여는 當該土地를 買入한 者가 申請하는 境遇에 限하여 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함.(新設)

2. 所得稅의 免除

(1)~(5)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단 (3), (4) 삭제)

(6) 農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特殊農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業種別 水產業協同組合 또는 中小企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中小企業協同組合이 支給하는 配當과 綜合金融會社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法人이 國內에서 發行하는 원貨表示社債에 對하여 支給하는 利子(源泉徵收稅率은 100分의 5)는 分離課稅利子所得 또는 分離課稅配當所得으로 봄

(7)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8) 韓國住宅銀行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韓國住宅銀行으로부터 支給받는 住宅福券當籤所得에 對한 所得稅의 源泉徵收稅率은 100分의 5로 하고 當該所得은 綜合所得課稅標準에 合算하지 아니함.(新設)

3.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法人稅 免除法人

①～⑱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⑲ : 削除

⑳～㉘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㉙ 工業團地管理公團

㉚～㊵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㊶ 醫療保險法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聯合會(新設)

㊷ 서울大學校病院(新設)

㊸ 證券監督院(新設)

㊹ 勤勞福祉會社(新設)

㊺ 韓國保險公社(新設)

㊻ 家族計劃硏究院(新設)

㊼ 韓國保健開發硏究院(新設)

㊽ 韓國科學財團(新設)

㊾ 韓國海外開發公社(新設)

㊿ 스카우트 活動에 關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스카우트 主管團體(新設)

51 畜産業에 의하여 設立된 畜産振興法(新設)

(2) 法人稅 免除

(가) 다음 法人의 所得

①～⑲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⑳ 國際經濟硏究院(新設)

㉑ 相互信用保證基金 管理機關(新設)

(나) 다음의 所得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3) 법인세·영업세 면제소득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4. 相續稅 및 贈與稅의 免除

(1) 前과 같음.(1972년 해당조항 참조)

(2) 相續稅法의 規定에 依한 相續財產 및 贈與財產 中에 山林法의 規定에 依한 營林計劃에 따라 造林한 山林(保安林과 採種林을 包含)이 있는 境遇 當該山林價額의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課稅價額에서 控除함.

5. 海外建設業 等에 대한 租稅減免

(1)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2) 內國法人의 各 事業年度의 所得 중 政府의 海外投資許可를 받아 大統領令이 定하는 海外資源開發事業(資源保有國의 外資導入條件에 의한 資源의 加工業을 包含함)에 投資함으로써 支給받은 配當所得이 있을 때에는 當該資源保有國에서 그 配當所得에 대하여 租稅를 免除받은 分에 限하여 法人稅를 免除하고 이를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留保所得計算에서 除外함.

(3) 大統領令이 定하는 技術用役事業에서 發生하는 所得에 對하여는 그 事業을 開始한 事業年度와 그 다음 事業年度의 開始日부터 5年內에 終了하는 事業年度에 있어서 當該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稅額을 減免함.(新設)

6.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租稅支援

(1) 稅額控除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地方으로 그 工場施設을 全部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때에 移轉後에 그 工場을 固有目的事業에 直接使用하는 主된 機械施設價額의 100分의 8(國產 機資材의 경우는 100分의 10)에 相當하는 稅額을 工場移轉을 完了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함.

但, (新設)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으로 移轉한 경우에는 그 控除率을 100分의 10(國內에서 生産 또는 製造된 資材의 機械를 使用하여 投資한 경우 100分의 12)으로 함.

(2) 所得控除

大都市안에서 事業을 營爲하는 居住者가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때에는 事業을 開始한 課稅期間과 그後 1981年 12月 31日까지 終了하는 課稅期間중 所得金額의 $\frac{5}{100}$(大統領令이 定하는 地域으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frac{10}{100}$)를 所得控除하도록 規定함.

(3)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免除

大都市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事業을 營爲하는 內國法人이 地方으로 工場을 移轉하기 위하여 當該工場垈地 및 建物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과 工場移轉과 關聯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支給받는 移轉補償金에 대하여는 그 價額이 從前의 工場價額 以上인 工場으로 移轉하는 경우에 限하여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함.

7. 登錄稅의 免除

(1) 對象法人 :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2) 對象登記

①~② : 前과 같음.(1965년 해당조항 참조)

③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하여 施行하는 土地改良事業과 農家住宅改良事業으로 인하여 取得한 農地 및 農家住宅 登記와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하여 開墾된 農地의 登記

④~㉔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3) 前과 같음.(1976 해당조항 참조)

8. 印紙稅의 免除

(1)~(2)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3)~(4) : 削除(1965년 해당조항 참조)

(5)~(6) : 前과 같음.(1974년 해당조항 참조)

(7) 어린이 預金通帳과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 單位農業協同組合 또는 地區別 水産

業協同組合 및 業種別 協同組合이 作成하는 當該組合員의 預金 및 積金證書의 通帳

(8)~(9) :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9. 特別消費稅의 免除

(1)~(13)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14) 國稅廳長은 (9) 내지 (13) 및 (15)의 規定에 의한 免除의 節次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定할 수 있음.

(15) 韓國電力株式會社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電力株式會社에 供給하는 輕油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新設)

(16) 觀光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觀光호텔의 改造 또는 補修에 所要되는 資材 및 設備用品으로서 特別消費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物品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이 경우에 免除에 關한 節次 및 用途變更에 따른 追徵에 關하여는 特別消費稅法의 規定을 準用함.(新設)

(17) 外國投資家가 外資導入法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導入하는 資本材 또는 外國投資家가 出資한 對外支給手段과 外換으로 外國人 投資企業이 導入하는 資本材에 對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이 경우에 免除에 關한 節次 및 追徵에 關하여는 外資導入法의 規定을 準用함.(新設)

10. 附加價値稅의 免除

(1) 다음 各號의 財貨의 供給에 對한 附加價値稅에 있어서는 零의 稅率을 適用함.(新設)

① 軍需調達에 關한 特別措置法의 規定에 依하여 指定을 받은 軍需業體가 供給하는 同法의 規定에 依한 軍需物資

② 國軍組織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部隊 또는 機關에 支給하는 石油類

(2) 다음 財貨 또는 用役의 供給에 對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함.(新設)

① 住宅建設促進法의 規定에 依한 國民住宅規模 이하의 住宅과 當該 住宅의 建設用役

② 沿近海漁業用船舶에 使用할 目的으로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에 直接供給하는 石油類

③ 沿岸을 運航하는 旅客船舶에 使用할 目的으로 韓國海運組合에 供給하는 石油類

④ 電氣事業法의 規定에 依한 一般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할 수 없거나 상당 期間 電氣供給이 困難한 島嶼로서 商工部長官 또는 同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委

任을 받은 機關이 證明하는 島嶼地方의 自家發電에 使用할 目的으로 地區別 水產業協同組合 및 業種別 水產業協同組合에 供給하는 石油類

11. 關稅의 免除

(1)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置된 서울大學校病院에서 導入하는 物品 중 國內製作이 곤란한 것에 對하여는 關稅를 輕減할 수 있음.

(2) (1)의 規定에 依하여 關稅를 輕減하는 物品과 그 輕減率은 財務部令으로 定함.(新設)

12. 所得計算의 特例

(1) 必要經費 또는 損金算入

① 韓國科學技術硏究所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韓國科學技術硏究所, 國際經濟硏究院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國際經濟硏究院 및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硏究機關에 支給되는 出捐金과 委託硏究費는 이를 支給한 個人 또는 法人에 대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에 의한 課稅所得計算에 있어서 이를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各各 算入함.

②~⑤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⑥ 文化藝術振興法의 規定에 의한 文化藝術基金에 支給하는 寄附金은 이를 支給한 個人 또는 法人에 대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課稅所得計算에 있어서 각각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함.(新設)

1978년

◉ 법　　률 : 1978. 3.25.　　법　　률　제3096호(시행일 : 1978. 3.25.)
　　1978.12. 5.　　법　　률　제3102호(시행일 : 1978.12. 5.)

〈3月의 改正〉

〈要　　約〉

○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등의 免除範圍를 확대한다.
○ 法人稅의 免除範圍를 확대한다.
○ 增資所得控除
○ 石炭增產 所得控除
○ 技術開發 準備金에 대한 租稅特例
○ 炭鑛保安施設準備金의 損金算入
○ 登錄稅의 免除
○ 取得稅의 免除
○ 特別消費稅의 免除
○ 附加價値稅의 免除條項의 調整
○ 紙上配當 所得計算의 特例條項 新設

〈改正內容〉

1.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등의 免除

(1)~(6) : 前과 같음.(1977년 해당조항 참조)

(7) 不動產所有權移轉登記등에關한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는 不動產에 대하여는 不動產投機抑制에關한特別措置稅를 免除함(新設)

2. 法人稅와 營業稅의 免除

(1) 法人稅免除法人

①～⑯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⑰ 大韓石炭會社(新設)

⑱～⑳ : 前과 같음.(1977년 해당조항 참조, 단 조항 ⑲ 삭제)

㉑ 農業振興公社와 農地改良組合 및 聯合會

㉒～㉛ : 前과 같음.(1977년 해당조항 참조)

(2) 法人稅의 免除

(가) 다음 法人의 所得 : 前과 같음.(1977년 해당조항 참조)

(나) 다음의 所得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3. 增資所得控除의 新設

(1) 對 象

公開法人과 大統領令이 定하는 中小企業에 該當하는 內國法人이 政府·地方自治團體 및 金融機關 以外의 者로부터 金錢出資를 받아 1979年 12月 31日까지 資本을 增加한 경우

(2) 期 間

變更登記를 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부터 198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事業年度

(3) 控除金額

增加된 資本金額 $\times \frac{\text{事業年度 중 資本增加後의 月數}}{12}$ ×金融機關의 貸出金利水準을 勘案하여 大統領令이 定하는 率

(4) 條 件

資本을 增加한 後에 出資 또는 使用人에게 業務와 直接關聯이 없이 支給한 假支給 등의 每月末日 現在의 殘額이 增加된 資本金의 100分의 10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限하여 適用함.

4. 石炭增產所得控除

(1) 對 象

內國人(內國法人을 包含)으로서 石炭鑛業을 營爲하는 者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石炭을 增產한 境遇

(2) 控除金額

當該事業年度(所得稅의 경우에는 課稅期間)의 所得金額에 100分의 30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石炭增產比率에 따라 大統領令이 定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

(3) 條 件

控除받은 所得金額을 當該事業年度의 利益處分에 있어서 廢鑛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함.

(4) 즉시 追徵事由

① 當該事業을 廢業한 때

② 當該炭鑛을 處分한 때

③ 廢鑛積立金을 處分한 때

④ 當該法人이 解散한 때(合併으로 인한 解散에 있어서 合併後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에 當該廢鑛積立金計定의 金額을 引繼한 境遇는 除外)

5. 技術開發準備金에 대한 租稅特例

(1) 內國人으로서 製造業·鑛產業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가 技術의 開發 및 革新에 所要되는 費用에 充當하기 위하여 技術開發準備金을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는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個人인 경우에는 當該事業所得金額)의 100分의 20에 相當하는 金額의 範圍안에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함.

(2) (1)의 規定에 의한 技術開發準備金을 計上한 者가 材料 製品·機械裝置 또는 工程을 改善하거나 새로운 生產方法을 探究하기 위하여 技術開發促進法이 定하는 바에 따라 技術開發費·技術情報費·技術訓練費 또는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費用을 支給한 때에는 그 費用은 이미 計上되어 있는 技術開發準備金과 먼저 相計함.

(3)~(4) : 前과 같음.

(5) (3) 및 (4)의 規定에 의하여 技術開發準備金을 總收入金額 또는 益金에 算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總收入金額 또는 益金에 算入한 金額(準備積立期間중 硏究施設投資에 使用한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除外함)에 대한 所得金額 또는 法人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10錢으로 計算한 金額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서 徵收함.(新設)

6. 炭鑛保安施設準備金의 損金算入

(1) 內國人으로서 石炭產業을 營爲하는 者가 炭鑛保安施設에 所要되는 資金에 充當하기 위하여 炭鑛保安施設準備金을 必要經費 또는 損金으로 計上한 때에 當該事業年度의 鑛業收入金額에 100分의 6을 超過하지 아니하는 範圍안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의 限度안에서 이를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함.(新設)

(2) (1)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한 炭鑛保安施設準備金은 그 準備金을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計上한 事業年度 終了日 以後 3年이 되는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부터 各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그 準備金을 48로 나눈 金額에 當該事業年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總收入金額 또는 益金에 算入함.(新設)

(3) (1)의 規定에 의하여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算入한 炭鑛保安施設準備金計定의 金額이 있는 者에게 다음 各號의 1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그 準備金計定의 金額(①의 경우에는 保安施設投資에 使用한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을 除外함)을 當該事由가 發生한 날이 屬하는 事業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總收入金額 또는 益金에 算入함.(新設)

① 準備金을 必要經費 또는 損金에 計上한 事業年度 終了日로부터 2年內에 그 準備金을 炭鑛保安施設에 投資하지 아니한 때.

② 當該事業을 廢業한 때.

③ 當該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併으로 인한 解散에 있어서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에 當該炭鑛保安施設準備金計定의 金額을 引繼한 경우는 除外함.

(4) (3)의 規定에 의하여 炭鑛保安施設準備金을 總收入金額 또는 益金에 算入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總收入金額 또는 益金에 算入하는 準備金에 대한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 100원에 대하여 日邊 10錢으로 計算한 金額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서 徵收함.(新設)

7. 登錄稅의 免除

(1) 對象法人 :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2) 對象登記

①～④ : 前과 같음.(1977년 해당조항 참조)

⑤ 不動產所有權移轉登記 등에 관한 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하여 行하는 不動產登記(新設)

⑥～㉔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3)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8. 取得稅의 免除

(1) 對象法人 : 前과 같음.(1975년 해당조항 참조)

(2) 對象不動產

①～㉔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㉕ 不動產所有權 移轉登記 등에 關한 特別措置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하는 不動產(新設)

9. 特別消費稅의 免除

(1)～(2)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3) 敎育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實業系學校 및 技能大學法의 規定에 依하여 設立된 技能大學(附設技能大學을 包含함)의 敎育 또는 職業訓練基本法의 規定에 依한 職業訓練에 直接使用하기 위하여 外國으로부터 導入하는 物資로서 國內生產이 不可能한 것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4)～(12) : 前과 같음.(1976년 해당조항 참조)

(13) 電氣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一般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할 수 없거나 相當期間 電氣供給이 困難한 島嶼로서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同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委託을 받은 機關이 證明하는 島嶼地方의 自家發電에 使用할 目的으로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에 直接供給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를 免除함.

(14)～(17) : 前과 같음.(1977년 해당조항 참조)

10. 附加價値稅의 免除

(1) 前과 같음.(1977년 해당조항 참조)

(2) ①～③ : 前과 같음.(1977년 해당조항 참조)

④ 電氣事業法의 規定에 의한 一般電氣事業者가 電氣를 供給할 수 없거나 相當期間 電氣供給이 困難한 島嶼로서 動力資源部長官 또는 同法의 規定에 依하여 그 委任을 받은 機關이 證明하는 島嶼地方의 自家發電에 使用할 目的으로 水產業協同組合에 直接 供給하는 石油類

(3) 無煙炭의 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除함.(新設)

11. 紙上配當計算의 特例

(1) 大統領令이 定하는 中小企業에서 發生한 紙上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 중 100分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輕減함.(新設)

(2) 當該 事業年度의 利益處分에 있어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的으로 積立한 積立金은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紙上配當所得金額計算上 이를 商法의 規定에 의하여 積立한 利益準備金으로 봄.(新設)

〈12月의 改正〉

〈要　　約〉

1980年代의 產業構造의 高度化 및 環境保全을 위하여 重要產業의 範圍에 航空工業과 環境保全業을 추가하였으며, 中小企業의 法人 전환, 公共事業用地, 實需要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을 완화하였고, 敎育硏究機關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기 위하여 重要學術硏究機關에 法人稅를 免除하고, 農業, 工業, 水產業, 海洋에 관한 각급학교에 支出하는 寄附金은 5年間 이월하여 損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또 海外資源開發事業과 플랜트수출의 減免을 擴大하고, 에너지節約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하였으며 또한 法人과 個人의 減免의 衡平을 위하여 그 減免率을 調整하였다.

○ 重要事業의 範圍擴大

- 航空工業
- 環境保全用物品製造業
- 環境汚染防止施設業
- 產業廢棄物處理業

○ 土地에 대한 租稅를 減免
  •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減免
  • 實需要土地에 대한 減免
  • 中小企業의 法人轉換對象土地에 대한 減免
  • 其他의 減免
○ 海外資源開發事業과 產業設備輸出支援
○ 敎育·硏究機關에 대한 支援
  • 敎育機關에 대한 支援
  • 硏究機關에 대한 支援
○ 重要機關法人에 대한 法人稅免除
○ 에너지節約施設投資稅額控除制度
○ 間接稅免除
  • 印紙稅免除
  • 特別消費稅免除
○ 地方稅免除
  • 登錄稅免除
  • 財產稅免除
  • 取得稅免除
○ 其 他
  • 持株會社의 投資株式에 대한 再評價特例
  • 住宅建設用地에 대한 減免申請期限調整
  • 個人事業者의 減免率調整

〈改正內容〉

1. 重要產業의 範圍擴大

產業構造와 技術의 高度化를 促進하고 環境保全을 위하여 減免對象이 되는 重要產業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가. **航空工業**(法 第4條의8 第2項 第13號)

航空工業振興法에 의한 許可事業者로 하였다.

나. 環境保全用物品製造業(法 第4條의8 第2項 第14號)

機械工業育成法에 의하여 登錄한 자가 營爲하는 탈유황장치, 폐수처리장치, 폐유처리장치, 해수담수화장치제조업으로 規定하였다.

다. 環境汚染防止施設業(法 第4條의8 第2項 第14號)

環境保全法에 의한 防止施設業으로 規定하였다.

라. 産業廢棄物處理業(法 第4條의8 第2項 第14號)

環境保全法에 産業廢棄物處理業으로 規定하였다.

2. 土地에 관한 租稅減免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혹은 法人稅特別附加稅를 減免하였다.

가.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減免(法 第3條의3 第10項, 令 第2條의7)

(1) 對象土地

韓國土地開發公社法에 의한 韓國土地開發公社 또는 韓國住宅公社法의 規定에 의한 大韓住宅公社에 讓渡하는 土地와 公共事業施行者(土地收用法의 適用對象이 되는 公共事業用地로서 事業認定告示前에 讓渡되는 것에 한함)에게 讓渡하는 土地에 대하여 適用한다.

(2) 申請方法

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稅標準申告) 期限內에 別紙 第14號 書式을 準用하여 作成된 申請書에 登記簿謄本과 賣買契約書 寫本 및 公共事業用地임을 確認하는 書類(大韓住宅公社 및 韓國土地開發公社의 경우는 제외)를 첨부하여 買入者가 讓渡者의 納稅地所管稅務署에 申請하도록 하였다.

(3) 減免方法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혹은 法人稅特別附加稅를 50% 減免하도록 하고, 다만, 韓國土地開發公社法의 規定에 의한 土地買入債券으로 償還받는 경우는 100% 減免하도록 하였다.

(4) 制 限

다만, 法 第3條의3第5項 및 第6項의 住宅建設用地로도 減免對象이 되는 경우는 選擇的으로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實需要土地에 대한 減免(法 第3條의3第12項第13號)

(1) 對象土地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實需要者에게 讓渡하는 土地로 하였다.

(2) 申請方法

所得稅課稅標準確定申告(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稅課稅標準申告) 制限內에 國土利用管理法의 規定에 의한 許可證寫本과 讓渡土地의 登記簿謄本 및 賣買契約書寫本을 첨부하여 별지 第14號 書式을 準用하여 作成한 減免申請書와 함께 讓渡者의 納稅地所管 稅務署長에게 하도록 하였다.

(3) 減免內容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法人稅特別附加稅의 100分의 50에 해당하는 金額으로 하였다.

(4) 制 限

土地取得日로부터 3年內에 建築物을 竣工하지 않으면 減免稅額을 追徵하도록 하였다.

다. 中小企業의 法人轉換對象土地에 대한 減免

(1) 對象土地

中小企業(所得稅法 第66條의2)의 事業用固定資產의 現物出資로서 法人設立하는 경우에 現物出資되는 土地로 하였다.

(2) 條 件

法人轉換時點에서 1年間 소급하여 계산한 出資金額의 平均의 100分의 150 以上 法人에 出資하여야 하며 여기서 出資金額은 資產에서 負債를 差減한 每月末의 金額을 말한다.

(3) 減免內容

現物出資時에 發生하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혹은 法人稅特別附加稅와 登錄稅 및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라. 其他의 減免(法 第3條의3 第17項·第18項)

農業協同組合法 또는 水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과 組合(漁村契를 包含한다) 혹은 中央會 상호간의 建物 및 土地의 讓渡와 都市再開發法의 規定에 의한 都市再開發地域內의 土地를 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에 開發事業에 관한 公告

日이후 1年內의 期間中의 土地의 讓渡에 대하여는 讓渡所得에 대한 所得稅 혹은 法人稅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3. 海外資源開發事業과 産業設備 輸出支援(法 第4條의10, 令 第24條의2)

海外資源開發事業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고, 産業設備資金(플랜트수출)에 대해서는 海外建設業과 마찬가지로 事業開始年度와 그후 5年間事業所得의 法人稅 50%(個人인 경우에는 25%)를 減免하도록 하였다.

海外資源開發事業의 範圍

改正前	改正
農産物	農産物
林産物	畜産物
鑛物	水産物
	林産物
	鑛物

4. 敎育硏究機關에 대한 支援

가. 敎育機關에 대한 支援(法 第13條 第7項·第8項)

(1) 學校法人이 全額出資한 收益事業體가 당해 學校法人에 敎育用寄附金으로 支出한 경우에는 當該事業年度의 所得金額範圍內에서 全額을 損費로 認定하도록 하였다.

(2) 農業·工業(航空工業包含)·水産海洋에 관한 各級學校에 대하여 支出되는 寄附金은 當該事業年度의 寄附金 限度額을 초과하더라도 5年內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 이월하여 損金 또는 必要經費에 算入하도록 하고 各事業年度에 支出한 指定寄附金 中 學校寄附金과 기타의 寄附金이 있는 경우 또는 當該事業年度에 지출하는 學校寄附金과 移越된 學校寄附金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의 寄附金 또는 移越된 寄附金을 먼저 損金算入하도록 하였다.

나. 硏究機關에 대한 支援(法 第13條 第1項)

다음 法人에 支給하는 出捐金 혹은 委託硏究費는 支給한 者의 所得計算上 必要經費

혹은 損金算入하도록 하였다.

(1) 韓國科學技術硏究所
(2) 國際經濟硏究院
(3) 韓國精神文化硏究院
(4) 韓國農村經濟硏究院
(5) 國土開發硏究院
(6)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硏究機關

5. 重要機關法人에 대한 法人稅免除(法 第4條)

다음 各號의 法人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① 中小企業振興公團
② 大韓赤十字社
③ 公務員 및 私立學校 敎職員醫療保險管理公團
④ 韓國精神文化硏究院
⑤ 韓國農村經濟硏究院
⑥ 國土開發硏究院
⑦ 韓國工業標準協會

6. 에너지節約施設 投資稅額 控除制度(法 第4條의7)

에너지利用을 合理化하여 경제의 效率性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節約施設 投資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減免對象은 에너지利用合理化法의 規定에 의한 施設投資이고 減免方法은 주된 機械設備投資金額의 8%(國產機資材의 경우 10%)를 投資稅額控除하도록 하였다.

事業者가 個人인 경우는 減免率調整으로 인하여 4%(國產機資材의 경우 5%)가 되도록 하였다.

7. 間接稅免除

가. 印紙稅免除(法 第6條)

(1) 特別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에게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의 適用을 받는 土地를 讓渡하는 경우 讓渡節次상 必要에 의해 作成되는 書類

(2)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組合員 또는 農漁民의 農協, 水協으로부터 융자를 받거나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어음約定書(同一人이 받는 融資金額의 合計額이 500萬원 이하인 경우에 한함)

(3) 農業協同組合으로부터 農村改良住宅資金融資를 받는 경우 혹은 住宅建築用資材의 외상구입시 作成되는 書類

(4) 農漁民이 農業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으로부터 物品을 외상으로 購入하기 위해 作成하는 書類

(5) 農地擴大開發促進法에 의한 農地造成事業에 관련되어 作成되는 書類

나. 特別消費稅 免除(法 第11條)

韓國精神文化硏究院이 國內生產 不可能한 物資를 直接 使用하기 위하여 外國에서 導入하는 物品에 대해서 特別消費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8. 地方稅免除

가. 登錄稅免除(法 第5條)

(1) 韓國外換銀行

(2) 個人中小企業의 法人轉換시 現物出資에 따라 取得되는 事業用 資產에 대한 登記

나. 財產稅免除(法 第9條)

韓國外換銀行

다. 取得稅免除(法 第10條)

個人中小企業의 法人轉換時 現物出資에 따라 取得되는 事業用資產에 대한 取得稅

9. 其 他

가. 持株會社의 投資株式에 대한 再評價特例(法 第14條)

持株會社의 投資株式을 株主의 權益을 保護하기 위해 每月 1日을 再評價日로 하여 再評價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에는 資產再評價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나. 住宅建設用地에 대한 減免申請期限 調整(令 第2條의4)

法 第3條의3第5項·第6項의 住宅建設用地에 대한 減免申請은 從前에는 所得稅課稅

標準確定申告(法人인 경우에는 法人稅 課稅標準申告, 이하 같다) 期限內였으나 이번에 土地를 讓受한 날 또는 集合住宅地區 開發事業 施行者指定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讓渡者의 納稅地所管稅務署長에게 하도록 하고 다만, 事業者指定의 지연으로 인하여 所得稅課稅標準 確定申告期限 이후에 減免申請을 하게 된 경우에는 讓渡者가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 또는 還給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法施行으로 인하여 減免申請期限이 경과된 土地에 대한 減免申請은 1979年 2月 28日까지 하도록 附則에서 規定하였다.

다. 個人事業者의 減免率調整(法 第17條의2)

個人事業者와 法人事業者間의 租稅의 衡平을 위하여 個人事業者의 減免率을 下向 調整하였다.

(1) 對 象

에너지節約施設 投資稅額控除(法 第4條의7)

特別減價償却, 新技術企業化事業(法 第3條의8第3項·第4項)

海外建設業, 產業設備輸出事業, 技術用役事業(法 第4條의10第1項·第3項)

地方移轉事業稅額控除(法 第4條의13第1項)

畜產業을 除外한 重要事業(法 第4條의8第2項)

(2) 方 法

法人事業者의 減免率, 控除率, 償却率의 50%로 하였다.

1979년

◉ 법 률 : 1979.12.28. 법 률 제3196호(시행일 : 1980. 1. 1.)
◉ 시 행 령 : 1979.12.31. 대통령령 제9697호(시행일 : 1980. 1. 1.)

〈要 約〉

貯蓄의 적극적인 誘導와 資本市場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이 勤勞者 證券貯蓄稅額 控除制度를 신설하고 大衆交通難 解消를 지원하기 위하여 버스事業에 대하여 法人稅를 면제하는 등 당면한 政府經濟施策을 수행하기 위하여 稅制上 필요한 지원을 하였다.

○ 所得稅의 免除 및 非課稅利子·配當利得의 範圍擴大
○ 住宅建設業者에게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事前減免
○ 勤勞者 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 等
○ 重要 政策事業法人에 대한 租稅減免
○ 增資所得控除期限의 延長
○ 新技術 企業化事業의 範圍擴大
○ 버스旅客運送事業에 대한 法人稅免除
○ 間接稅의 免除
  • 印紙稅의 免除
  • 特別消費稅의 免除
  • 附加價値稅의 免除
○ 地方稅 免除條項 補完
  • 登錄稅의 免除
  • 取得稅의 免除
  • 財産稅의 免除
○ 關稅의 減免
○ 其 他
  • 所得計算의 特例
  • 區分經理와 共通損益의 計算方法 補完
  • 減免稅額 相當額使用 規定 削除

〈改正內容〉

1. 所得稅의 免除 및 非課稅 利子·配當所得의 範圍擴大(法 第3條第6項, 令 第2條의2)

金融機關으로부터 지급받는 福金附預金의 當籤金에 대하여도 住宅福券 當籤所得과 같이 綜合課稅하지 아니하고 5% 分離課稅하도록 하였고, 漁村契로부터 지급받는 200萬원 以下의 出資金 또는 500萬원 以下의 預託金에 대한 배당금 및 이자에 대하여도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2. 住宅建設業者에게 讓渡한 土地에 대하여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事前減免(法 第3條의3第20項 내지 第22項, 令 第2條의8)

建築物의 建築用地로 住宅建設促進法의 규정에 의하여 登錄한 住宅建設業者에게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所得에 대하여는 당해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事前減免하도록 하였다.

가. 建築物의 範圍

建築法에 의한 建築物

나. 減免申請方法

土地를 매입한 住宅建設業者는 讓渡者의 土地賣買差益 豫定申告期限內에 別紙 第14號 書式을 준용하여 작성한 申請書에 住宅建設業者 登錄寫本·登記簿謄本·賣買契約書를 첨부하여 讓渡者의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建築物의 竣工期限

土地를 매입한 住宅建設業者는 매입한 날로부터 2年內에 建築物의 建築을 完了하여야 한다.

라. 減免稅額의 追徵

土地를 매입한 住宅建設業者가 2年內에 建築物을 건축하지 못한 경우에는 減免된 稅額에 상당하는 金額을 加算稅로 하여 住宅建設業者로부터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징수한다.

3. 勤勞者 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 等(法 第3條의4, 令 第2條의9)

脆弱性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資本市場 육성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게 되는 勤勞者 證券貯蓄에 대하여 證券貯蓄金額의 10%를 勤勞者의 綜合所得算出稅額에서 控除하고, 당해 配當金에 대하여도 所得稅·相續稅 및 贈與稅를 다음과 같이 免除하도록 하였다.

가. 勤勞者의 範圍

월정급여가 100萬원 以下인 勤勞者

나. 勤勞者 證券貯蓄金額의 範圍

勤勞者가 1981. 12. 31 以前에 證券貯蓄契約을 체결한 分으로 年間 貯蓄金額은 貯蓄契約締結 當時의 月定給與額을 年으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하고, 限度金額이 120萬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20萬원까지 貯蓄을 하여도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所得稅·相續稅 및 贈與稅의 免除

勤勞者 證券貯蓄期間의 滿了 또는 1年 以上 勤勞者 證券貯蓄을 한 勤勞者가 다음 각호에 揭記하는 사유에 해당됨으로써 勤勞者·相續人 또는 受贈者가 지급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相續稅 및 贈與稅를 免除한다.

(1) 死亡
(2) 海外로 移住한 때
(3) 事業主의 破産으로 해고된 때
(4) 事業主의 休業 또는 廢業으로 貯蓄金額을 납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貯蓄契約이 解止된 때
(5) 海外勤勞者가 疾病 또는 就業契約期間의 滿了로 歸國한 때
(6) 天災·地變으로 貯蓄契約을 解止한 때

라. 旣控除된 稅額의 追徵

(1) 證券貯蓄機關은 勤勞者가 證券貯蓄의 契約을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解止日의 翌月 10日까지 當該 源泉徵收義務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當該 源泉徵收義務者의 破産·廢業·天災地變 또는 當該 勤勞者의 退職 등의 경우에는 勤勞者의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上記 (1)의 사실을 通報받는 當該 源泉徵收義務者 및 稅務署長은 旣控除된 稅額을 追徵하여야 한다. 다만, 上記 "다項"의 각호에 揭記된 사유로 인하여 貯蓄契約을 해지한 경우에는 旣控除된 稅額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4. 重要 政策事業法人에 대한 租稅減免(法 第4條)

가. 法人稅·登錄稅·財産稅 및 取得稅의 免除(法 第4條第1項)

國家의 主要施策事業으로 政府의 出捐金이나 補助金으로 운영되는 다음 각호의 特殊法人에 대하여 法人稅·登錄稅·財産稅 및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 韓國石油開發公社
(2) 韓國資源再生公社
(3) 새마을指導者硏修院

나. 法人稅의 免除(法 第4條第2項)

私立學校育成法의 規定에 의하여 설립된 "私學育成財團"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5. 增資所得 控除期限의 延長(法 第4條의2)

公開法人과 中小企業에 해당되는 內國法人에 대하여 增資所得 控除期限을 1年 延長하여 1979. 1. 1부터 1980. 12. 31까지 增資한 分에 대하여는 1982. 12. 31以前에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 增資所得控除를 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增 資 期 限	1978. 1. 1~1979.12.31	1978. 1. 1~1978.12.31	1979. 1. 1~1980.12.31
所得控除期限	1981.12.31	1981.12.31	1982.12.31

6. 新技術 企業化 事業의 範圍擴大(令 第20條)

新技術을 企業化한 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그 事業의 固有目的에 直接使用되는 주된 機械에 대한 投資額에 대하여 8%(國產機械 10%)를 稅額控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新技術 企業化 事業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특허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 또는 韓國科學技術硏究所가 技術을 開發한 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으로 財務部長官과 협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인정하는 事業	○ "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 또는 韓國科學技術硏究所가 技術을 開發한 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 ○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은 分野別 專門硏究所(韓國原子力硏究所法의 적용을 받는 韓國原子力硏究所를 포함) 또는 科學技術處長官이 인정하는 企業附設硏究機關이 技術을 개발한 成果로서 技術開發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친 것"으로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인정하는 事業

7. 大衆交通手段인 버스旅客運送事業에 대한 法人稅免除(法 第4條의17)

大衆交通難 해소를 위한 支援策의 일환으로 自動車運送事業法 규정에 의한 버스旅客自動車運送事業을 영위하는 법인에 대하여 1979. 1. 1 以後 최초로 개시하는 事業年度의 開始日로부터 2年間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단, 高速버스 旅客自動車 運送事業은 제외하였다.

8. 間接稅의 免除

가. 印紙稅의 免除(法 第6條)

(1) 郵便對替法의 규정에 의한 郵便對替에 관한 書類
(2) 公有水面埋立法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農地造成事業에 관련하여 작성하는 書類

나. 特別消費稅의 免除(法 第11條1項)

國家主要施策事業으로 政府의 出捐金이나 補助金으로 운영하게 되는 다음 각호의 特殊法人이 直接使用할 物品으로서 國內生産이 불가능한 物品을 外國으로부터 도입하는 경우에 特別消費稅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1) 새마을指導者硏修院
(2) 國際經濟硏究院
(3) 韓國敎育開發院

다. 附加價値稅의 免除(法 第11條의2)

(1) 零稅率適用

首都圈 都市計劃 大衆交通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政府의 年次計劃으로 시행하게 되는 地下鐵建設事業의 支援策으로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地下鐵道의 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直接供給하는 地下鐵道建設用役에 대하여 零稅率을 적용토록 하였다.

(2) 附加價値稅의 免稅

다음 각호의 財貨輸入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를 免稅하도록 하였다.

(가) 地下鐵道建設用 物品으로 國內製作이 곤란한 物品
(나) 課稅事業에 供할 船舶
(다) 課稅事業에 供할 關稅法의 규정에 의한 保稅建設物品

9. 地方稅의 免除條項 補完

가. 登錄稅의 免除(法 第5條)

(1)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규정에 의한 觀光團地로부터 이주하는 者 및 公共用地의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의한 移住者가 정착을 위하여 取得하는 住宅地·農耕地 및 住宅에 관한 登記를 하는 경우 登錄稅를 免除하는 규정을 財産의 取得登記를 신속히 하고 課稅의 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移住者가 補償金을 받은 날로부터 1年 以內에 정당한 사유없이 取得登記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當該 取得財産價額이 補償金을 초과하는 경우 그 超過額"에 대하여는 登錄稅 免除를 排除하도록 補完하였다.

(2) 農漁民이 農業協同組合 또는 水産業協同組合으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擔保物에 대한 설정등기 및 收復地區內 토지의 地籍整理 等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囑託하는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한 登錄稅免除 규정을 삭제하였다.

나. 取得稅의 免除(法 第10條)

(1) 法 第4條第1項 및 第2項第2號 내지 第12號·第15號·第16號의 법인이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財産에 대하여는 取得稅를 免除하지만 取得登記日로부터 1年 以內에 그 固有目的에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免除된 取得稅를 추징하도록 보완하였다.

(2) 産業基地開發促進法의 규정에 의한 移住者 및 觀光團地開發促進法의 규정에 의한 移住者가 補償金을 받은 날로부터 1年 以內에 정당한 사유없이 財産을 取得하지 아니하거나 當該 取得財産價額이 補償金을 초과하는 경우 그 超過金額에 대하여는 取得稅免除를 배제하였다.

(3) 收復地區內 土地의 地籍整理 등에 관한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取得하는 土地에 대한 取得稅免除規定을 삭제하였다.

다. 財産稅의 免除(法 第9條第2項)

法 第4條第1項 및 第2項第2號 내지 第12號·第15號·第16號의 법인이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財産稅를 免除하던 규정을 "法人이 納期開始日 현재 그 固有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財産"에 대하여만 財産稅를 免除하도록 보완하였다.

10. 關稅의 減免(法 第12條)

다음 각호에 揭記한 物品 중 國內製作이 곤란한 物品에 대하여는 關稅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가. 地下鐵道建設用으로 導入하는 物品
나. 農業機械製造業體가 導入하는 農業機械製造用 部分品
다. 太陽에너지 利用機器 製造業體가 도입하는 太陽에너지 利用機器 製造用 機資材

11. 其 他

가. 所得計算의 特例(法 第13條第5項)

社會福祉事業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社會福祉法人이 當該收益事業에서 생긴 所得을 社會福祉事業을 위하여 지출하는 寄附金은 當該事業年度의 損金에 산입하도록 하였다.

나. 區分經理와 共通損益의 計算方法 補完(令 第24條第22項)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減免되는 事業과 其他의 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區分經理를 하도록 되어 있는 바 工場을 증설한 경우에 減免所得과 課稅所得의 區分經理가 곤란한 때에는 總工場施設價額과 증설된 工場施設價額의 비율로 按分計算할 수 있도록 보완하였다.

다. "減免稅額 相當額의 使用"規定 削除(令 第28條)

法 第16條第2項의 규정에 의한 償還 및 投資 期間中에 金錢을 새로 차입하였거나 金錢出資에 의하여 資本을 增資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借入 또는 增資金額이 먼저 償還되거나 投資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삭제하였는 바 이는 1980. 1. 1 이후 최초로 申告·決定 또는 경정하는 分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1980년

◉ 법　　률 : 1980.12.13.　　법　　률 제 3272호(시행일 : 1981. 1. 1.)
◉ 시 행 령 : 1980.12.31.　　대통령령 제10122호(시행일 : 1981. 1. 1.)

〈要　　約〉

企業의 增資를 通한 財政構造改善을 誘導하기 위하여 增資所得 控除對象의 擴大와 增資期間 및 所得控除期限을 延長하고 法人의 非業務用 不動產所有를 規制하는 등 企業體質強化를 圖謀할 수 있는 稅制上의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였다.

○ 財政證券利子 등 非課稅所得을 10% 分離課稅하고 福券當籤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도 引上함
○ 特別附加稅의 非課稅 및 減免의 排除
○ 特別附加稅 등의 分納許容
○ 增資所得控除 適用對象 擴大 및 期間延長 등
○ 에너지節約施設 投資稅額 控除申請 節次
○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庶民住宅建設用役
○ 特別消費稅가 免稅되는 軍納物品의 範圍
○ 公開法人要件에 관한 特例
○ 畜產業協同組合 및 同 中央會에 대한 稅制支援
○ 새마을運動 中央本部 등에 대한 法人稅 및 地方稅 免除
○ 其　他
  • 紙上配當所得計算의 特例規定削除
  • 贈與의 擬制規定適用排除
  • 現行法令의 未備點 補完

〈改正內容〉

1. 財政證券 利子 등 非課稅所得을 10% 分離 課稅하고, 福券當籤 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도 引上함(法 第3條 ①·④·⑥ 및 令 第2條의2①, 法 第4條③)

(1) 財產所得에 대한 課稅를 強化하여 所得間 租稅負擔의 衡平을 기하기 위하여 非課

稅되는 利子 및 配當所得 範圍를 縮小 調整함과 同時에, 同一種類의 所得에 대한 課稅는 同一稅法에서 同一하게 規定함으로써 稅法體系의 統一을 期하도록 하였는바, 그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區分 / 所得의 種類	改正前	改正	備考
○「財政證券法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하는 財政證券」「韓國銀行通貨安定證券法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하는 通貨安定證券」의 割引發行으로 인한 所得	所得稅 및 法人稅 免除	• 所得稅 : 10% 源泉徵收分離課稅 • 法人稅 課稅	所得稅法 §15 및 §144
○「特殊農業協同組合 業種別 水產業協同組合 中小企業이 支給하는 配當」 「綜合金融株式會社에 關한 法律의 適用을 받는 法人이 國內에서 發行하는 원貨表示」	5%稅率로 源泉徵收分離課稅	源泉徵收 稅率을 10%로 調整	上 同
「貯蓄機關이 發行하는 貯蓄債券의 利子와 割引額」	所得稅非課稅	10%稅率로 源泉徵收分離課稅	上 同
「金融機關이 支給하는 福券當籤所得」	5%稅率로 源泉徵收分離課稅	10%稅率로 源泉徵收分離課稅	

(2) 非課稅되는 利子 및 配當 등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改正前	改正	備考
○ 貯蓄增大와 勤勞者 財產形成支援에 관한 法律 §3의 規定에 의하여 發行한 債券의 利子와 割引額	削除	所得稅法 §15 및 §144로 移管
○ 特別預金의 利子와 配當金	○ 特別預金의 利子와 配當金	
△ 特別定期家計預金	△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 (世帶當 200萬원 以下인 것)	
△ 貯蓄預金	△ 農漁民목돈貯蓄預金 (世帶當 300萬원 以下인 것)	
△ 自由積立預金 및 農家 목돈 貯蓄預金	△ 優待家計定期積金 (世帶當 月 拂入額이 6萬원 以下인 것)	
△ 信用協同組合에 대한 預託金 또는 出資金(預託金의 경우에는 500萬원 出資金의 경우에는 200萬원)	改正前과 같음	

2. 特別附加稅의 非課稅 및 減免의 排除(法 第3條의5 및 令 第2條의10)

企業의 非業務用不動產 所有를 規制함으로써 企業體質強化를 期하기 위하여 1981. 1. 1 以後 取得한 不動產으로서 國稅廳長이 정하는 非業務用不動產 判定基準에 該當하는 것에 대하여는 同 不動產을 讓渡하는 경우 租稅減免規制法 및 法人稅法 등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附加稅를 非課稅 또는 減免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減免 또는 非課稅에 관한 規定의 適用을 排除함으로써 法人의 非業務用不動產 取得을 稅制面으로 規制할 수 있는 制度的인 裝置를 마련하였다.

3. 特別附加稅 등의 分納(法 第3條의6 및 令 第2條의11)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金融機關에 申告된 非業務用不動產을 1983. 12. 31까지 處分하여 企業의 負債償還이나 또는 增資를 使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同 不動產을 讓渡함으로 因하여 發生하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分納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分納할 수 있는 特別附加稅 등의 範圍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1980. 9. 29～1980. 10. 15까지 金融機關에 申告된 다음의 各號의 非業務用不動產을 延拂賣買함으로써 發生하는 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

(1) 法人이 所有하는 그 業務와 直接關聯이 없는 不動產

(2) 法人이 株主 또는 그 配偶者,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이 所有하는 不動產

(3) 個人事業者 또는 그 配偶者,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이 所有하는 不動產

나. 特別附加稅 등의 分納方法

(1) 分納額의 範圍

當該 不動產의 讓渡로 인하여 發生하는 所得稅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 등에 當該不動產의 讓渡金額 중 當該延拂賣買契約에 따라 收入하기로 約定된 金額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 以上의 稅額

$$※\ 分納稅額 \geq 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 \times \frac{延拂賣買契約에\ 따라\ 收入하기로\ 約定된\ 金額}{讓渡金額}$$

(2) 分納稅額의 納付期限

當該 延拂賣買契約에 따라 延拂金을 收入하기로 約定된 날이 屬하는 달의 다음 달 末日까지

(3) 分納申請節次

特別附加稅 등을 分納하고자 하는 者는 所得稅法 第95條·第100條 및 第104條 또는 法人稅法 第26條 및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와 함께 分納申請書에 分納稅額과 納付期限을 明記하여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4) 未納付 加算稅의 排除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分納하는 경우 同 分納稅額에 대하여는 所得稅法 第121條③ 및 法人稅法 第41條①－3의 規定에 의한 未納付加算稅의 適用을 排除하도록 하였다.

다. 租稅債權의 確保를 위한 納稅擔保

特別附加稅 등의 分納을 許容하는 경우 當該 稅務署長은 租稅債權의 確保를 위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에는 分納稅額에 相當한 擔保의 提供을 要求할 수 있는 바, 同 納稅擔保에 관하여는 國稅基本法 第29條 내지 第34條의 規定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 國稅基本法

第29條(擔保의 種類)	第30條(擔保의 評價)
第31條(擔保의 提供方法)	第32條(擔保의 變更과 補充)
第33條(擔保에 의한 納付와 徵收)	第34條(擔保의 解除)

라. 分納稅額의 一時徵收

稅務署長은 다음과 같은 事由가 發生하는 경우에는 分納稅額을 一時에 징수하여야 한다.

(1) 擔保의 提供 變更 또는 補充의 要求에 不應하는 경우

(2) 分納稅額을 그 納付期限內에 納付하지 아니하는 경우

○ 適用例 : 1980. 12. 31부터 1982. 12. 31까지 讓渡하는 不動產에 限하여 適用

4. 增資所得控除 適用對象 擴大 및 期限延長(法 第4條의2 및 令 第2條의5)

企業의 增資를 通한 財政構造改善을 誘導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의 適用對象을 擴大하는 反面에, 特殊關係에 있는 系列企業 相互間에 形式的인 增資를 通한 增資所得控除制度의 惡用을 防止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 要件을 強化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增資所得控除 適用對象 擴大

改 正 前	改 正
1978. 3. 25 以前에 設立된 公開法人과 中小企業法人	1980. 12. 31 以前에 設立된 全內國法人

나. 增資所得控除 適用이 排除되는 增資範圍의 擴大

政府·地方自治團體 및 金融機關으로부터의 增資分에 대하여만, 增資所得控除의 適用을 排除하고 있었던 것을 그 範圍를 調整하여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으로부터의 增資까지도 包含시켰다.

改 正 前	改 正
○ 政府·地方自治團體 ○ 金融機關 1. 銀行法 §3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 2. 韓國產業銀行 3. 中小企業銀行 4. 國民銀行 5. 韓國外換銀行 6. 韓國住宅銀行 7. 農業協同組合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8. 水產業協同組合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 (新 設) ○ (新 設)	○ 改正前과 같음 ○ 金融機關 1~8. 改正前과 같음 9. 畜產業協同組合 中央會와 그 會員組合 10. 法人稅法 施行令 §46-1①에 規定한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

다. 增資所得控除要件 強化

系列企業間의 相互 形式的인 增資를 通한 增資所得控除의 惡用을 防止하고 增資를 通하여 調達된 資金이 社外로 流出되는 것을 抑制함으로써 實質的인 企業의 財務構造 改善을 圖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화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資本을 增加한 後에 出資者 또는 使用人에게 業務와 直接關係없이 支給한 假支給金 등의 每月 末日 現在의 殘額이 增資된 금액의 100分의 10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 資本을 增加한 경우에 다음 各號의 金額을 合算한 每月 末日 現在의 殘額이 增加된 資本金額의 100분의 10을 超過하지 아니할 것 가. 出資者 또는 使用人에게 業務와 直接關聯없이 支給한 假支給金 등의 合計額

改 正 前	改 正
	나. 增資한 當該 法人과 法人稅法 令 第46條－①의 規定에 의한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의 株式을 取得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의 合計額(但, 法人稅法 第15條①－10에 規定한 機關投資者 및 法人稅法 施行令 第67條의3－①에 規定하는 株式引受機構에 대하여는 例外)

라. 增資所得控除 期間延長 및 控除率調整

增資所得控除制度는 1978. 3. 25 稅法改正 以後 累次에 걸쳐 改正되어 왔던 바 금번에도 增資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는 增資期間과 所得控除期間을 各各 1年씩 延長하고 또한 金融機關의 貸出金利 引下 調整에 따라 同 控除率도 年 24%에서 年20%로 引下 調整하였는 바 그간 改正되어온 것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區 分	增資期間	控除時限	控除率	備 考
改正前	'78. 1. 1 ～'78. 12. 31	'81. 12. 31	年16%	法律 第3096號('78. 3.25) 大統領令 第8962號('78. 4. 24)
	'79. 1. 1 ～'79. 12. 31	'82. 12. 31	〃 16%	法律 第3196號('79. 12. 28)
	'80. 1. 1 ～'80. 12. 31	'82. 12. 31	〃 24%	大統領令 第9795號('80. 2. 29)
改 正	'81. 1. 1 ～'82. 12. 31	'83. 12. 31	〃 20%	

○ 適用例 : (1) 法 第4條의2－①의 規定은 이 法施行 前에 設立된 法人이 1981. 1. 1 以後 最初로 增資하는 分부터 適用

(2) 法 第4條의2－②－2의 規定은 1981. 1. 1 以後 最初로 다른 法人의 株式을 取得하는 分부터 適用

5. 에너지節約施設投資 稅額控除 申請節次(法 第11條의2 및 令 第7條의2)

에너지利用合理化法(法律 第3181號 1979. 12. 28) 및 同 施行令(大統領令 第9931號 1980. 6. 30)이 制定公布되어 1980. 6. 30부터 施行됨에 따라 에너지節約施設投資 稅額控除 申請節次를 規定하였는 바, 同 投資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投資를 完

了한 날이 屬하는 課稅期間 또는 事業年度의 課稅標準 確定申告時 다음 各號의 書類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別紙 第11號 書式의 稅額減免控除 申請書

(2) 에너지利用合理化 施行令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動力資源部長官이 發給하는 에너지節約施設投資完了 確認書

○ 適用例 : 1981. 1. 1 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期間分 또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

6. 附加價値稅가 免稅되는 庶民住宅建設用役(法 第11條의2－②－1, 令 第26條－②)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國民住宅 建設用役 範圍를 '建設業法 또는 電氣工事法의 規定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者와 住宅建設促進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한 者가 供給하는 住宅建設用役'으로 明確히 規定함으로써 稅務當局과 納稅者의 租稅摩擦의 素地를 除去하였다.

○ 適用例 : 1981. 1. 1 以後 最初로 供給契約이 締結되는 分부터 適用

7. 特別消費稅가 免稅되는 軍納物品의 範圍(令 第27條－②)

軍이 直營하는 賣店에서 軍人事法 또는 軍屬人事法에 規定하는 者와 兵役法에 의하여 入營敎育을 받는 豫備役武官候補者 및 勤務演習召集중에 있는 軍人 또는 軍屬에게 販賣하는 國內에서 製造된 物品은 特別消費稅를 免除하고 있는 바 特別消費稅가 免除되는 物品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調整하였다. 但, 軍人事法에 의한 法(志願에 의하지 아니하고 任用된 下士를 包含한다) 士官生徒, 士官候補生 및 下士官候補生과 兵役法에 의하여 入營軍事敎育을 받는 豫備役武官候補生 및 勤務演習召集 또는 敎育召集中에 있는 者에 대하여는 18－21號에 揭記하는 物品에 限하여 免除한다.

○ 適用例 : 1981. 1. 1 以後 最初로 搬出하는 分부터 適用

改 正 前	改 正
1. (新設)	1. 空氣調節機(冷房冷風機로서 窓門形의 것에 限한다)
2. 텔레비전 受像機(黑白의 것에 限한다)	2. 텔레비전 受像機
3. 電氣솥	3. 削 除
4. 電氣냄비	4. 改正前과 같음
5. 커피 포트	5. 〃
6. 電氣煖爐 및 風爐	6. 削 除

改　　正　　前	改　　正
7. 蓄音機(音聲再生機를 包含한다)	7. 〃
8. 錄音器(音聲再生機를 包含한다)	9. 改正前과 같음
11. 冷藏器	10. 〃
12. 電氣洗濯機	11. 〃
17. 砂糖	12. 〃
18. (新設)	17. 〃
	18. 氷菓類
19. 淸凉飮料	19. 改正前과 같음
20. 嗜好飮料	20. 〃
21. 酒類	21. 〃

8. 公開法人要件에 關한 特例(法 第13條의2 및 令 第27條의4)

政府의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1980. 9. 29부터 1980. 10. 15까지 各 金融機關에 申告된 株主의 個人所有 不動產處分代金을 企業資金으로 誘引하기 위한 稅制上의 措置로서 公開法人의 株主가 個人 所有不動產을 處分하여 그 代金으로 企業에 增資함으로 因하여 增資日이 屬하는 事業年度와 그다음 事業年度 開始日부터 2年 以內에 終了하는 事業年度까지는 公開法人으로 看做될 수 있도록 各株主의 株式比率計算에 대한 特例를 規定하였다.

가. 增資의 範圍

株式比率計算의 特例가 認定되는 增資의 範圍는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1980. 9. 29～1980. 10. 15間에 金融機關에 申告된 不動產 中 法人의 株主 또는 그 配偶者·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이 所有하는 不動產의 讓渡代金으로 1982. 12. 31까지 增資하는 것에 限한다.

나. 株式比率의 計算方法

法人稅 第22條③에 規定된 公開法人의 要件은

(1) 株主의 1人과 그와 特殊關係人이 所有한 株式의 總數가 發行株式數의 100分의 51 以下일 것

(2) 證券去來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거나 韓國證券去來所를 通하여 株式이 分散된 法人으로서 發行總株式數의 100分의 1에 該當하는 株式數에 未達하는 株式을 所有한 株主 즉, 少額株主의 總所有株式이 政府가 所有한 株式數와 外國人所有株式數를 除外한 發行總株式數의 100分의 40 以上일 것

(3) 少額株主의 數가 300名 以上일 것

이와 같이 되어 있는 바 株主 個人所有 不動産을 處分하여 企業에 增資함으로 因하여 株主의 株式比率이 變動되어 公開法人의 要件이 剝奪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方法으로 計算한 各株主의 株式比率을 基準으로 하여 法人稅法上의 公開法人으로 보도록 하였다.

株式比率의 計算方法

(1) 法人稅法 第22條－③項1號의 株式比率
(公開法人要件 確認當時의 當該 株主의 株式比率)－{(增資로 因하여 變更된 當該 株式의 株式比率)－(增資前의 當該 株主 株式比率)}
(2) 法人稅法 第22條③項2號의 株式比率
(公開法人要件 確認當時의 當該 株主의 株式比率)＋{(增資前의 當該 株主株式比率)－(增資로 因하여 變更된 當該 株主 株式比率)}
○ 適用例 : 1981. 1. 1 以後 最初로 增資하는 分부터 適用

9. 畜產業協同組合 및 同 中央會에 對한 稅制支援

養畜家의 自主的인 協同組織을 育成하여 畜產業의 振興과 그 構成員의 經濟的·社會的 地位向上을 圖謀하여 國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기함에 目的을 두고 新設되는 畜產業協同組合 및 同 中央會에 대하여 農業協同組合 및 水產業協同組合과 同等하게 다음과 같은 稅制支援을 하였다.

가. 擬制分配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法 第3條①項2號)

畜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가 引受하여 精算하는 團體가 出資者에게 分配하는 殘餘財產 중 擬制分配로 인한 所得(殘餘財產의 分配로 인하여 社員, 기타 出資者가 받는 財產의 價額이 解散한 團體에 出資하기 위하여 所要된 金額)을 超過하는 金額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나. 特別附加稅의 免除(法 第3條의3項17號)

農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가 畜產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畜產業協同組合 또는 中央會에 土地 또는 建物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法人稅法 第59條의2의 規定에 의한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다. 法人稅 및 地方稅의 免除(法 第4條①項51號)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되는 組合과 中央會에 대하여 法人稅와 地方稅인 登錄稅·財産稅 및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라. 分納의 免除(法 第6條)

다음 各號의 書類에 대하여는 印紙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養畜家가 同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組合 또는 中央會로부터 融資를 받기 위하여 作成하는 消費貸借에 관한 證書 및 다음의 約定書. 다만, 同一人이 받는 融資金額의 合計額이 500萬원을 超過하는 경우에는 除外된다.

(2)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畜産業協同組合이 作成하는 當該 組合員의 預金 및 積金證書와 通帳

(3) 養畜家가 畜産業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畜産業協同組合으로부터 物品을 외상으로 購入하기 위하여 作成하는 書類

(畜産振興會에 대한 法人稅 등의 免除에 관한 經過措置) : 畜産振興會에 대하여는 畜産協同組合法의 規定에 의한 畜産業協同組合中央會가 設立될 때까지는 從前의 例에 의하여 法人稅 등을 免除

10. 새마을運動 中央本部 등에 대한 法人稅 및 地方稅 免除(法 第4條①項58號, 令 第1條의2)

새마을運動을 活性化하고 보다 높은 次元에서 昇華發展시키기 위하여 새마을運動 中央本部와 다음 各號에 揭記하는 그 傘下組織에 대하여 法人稅와 地方稅인 登錄稅·財産稅 및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 새마을指導者 中央協議會

(2) 새마을婦女會 中央聯合會

(3) 職場 새마을運動 中央協議會

○ 適用例 : 1981. 1. 1 以後 最初로 申告하는 事業年度부터 適用

11. 其 他

가. 紙上配當所得計算의 特例規定 削除(法 第13條의4－③)

"當該 事業年度의 利益處分에 있어서 法律의 規定에 의하여 義務的으로 積立한 積立金은 所得稅法 第26條의②의 規定에 의한 紙上配當所得金額 計算上 이를 商法 第458

條에 의하여 積立한 利益準備金으로 본다."는 紙上配當所得計算의 特例規定을 稅法體系의 統一을 期하기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에서 削除하고 이를 所得稅法 第26條②－3으로 移管하였다.

나. 相續稅法 第34條의4(贈與의 擬制) 規定適用排除(法 第13條의②)

內國法人이 다음과 같이 增資를 하는 경우에는 相續稅法 第23－24條의3에 규정한 擬制贈與를 排除하고 相續稅施行令 第41條②에 규정된 特殊關係있는 者로부터 「法人이 資本 또는 出資額을 增加하기 위하여 株式 또는 持分(新株)을 配定함에 있어서 當該 法人의 株主 또는 出資者가 新株를 받을 수 있는 權利(株式引受權)의 一部 또는 全部를 抛棄함으로 인하여 當該 株主引受權을 포기한 株主 등과 特殊關係에 있는 者가 그의 持分率을 超過하여 新株를 配定받은 경우에 그 超過하여 配定받은 新株의 納入金額과 相續稅法施行令 第5條①에 의한 價額과의 差額」을 받은 者는 當該 利益을 받은 때에 그 利益에 相當하는 金額을 받은 바 이는 企業體質強化對策에 의하여 申告된 大株主의 個人所有不動產을 處分하여 增資時 新株引受權의 抛棄로 인하여 特殊關係人間에 發生할 수 있는 贈與稅課稅 問題를 解決함으로써 增資를 誘導하기 위한 稅制支援策이다.

(1) 增資의 範圍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1980. 9. 29부터 1980. 10. 15까지 金融機關에 申告된 不動產 중 法人의 株主 또는 配偶者, 直系尊屬이나 直系卑屬이 所有하는 不動產의 讓渡代金으로 1982. 12. 31까지 增資하는 分

(2) 特殊關係가 있는 者(相續稅法 第41條②)의 範圍

① 讓渡者의 配偶者와 그 配偶者의 親族

② 讓渡者의 親族·親族의 配偶者와 그의 4寸 以內인 親族

③ 讓渡者의 使用人이나 使用人 以外의 者로서 讓渡者의 資產으로 生計를 維持하는 者와 이들과 生計를 같이하는 親族

④ 讓渡者 또는 前 各號에 揭記하는 者가 出資하고 있는 法人

⑤ 讓渡者의 商品 또는 製品을 特約販賣하는 者

⑥ 讓渡者의 親知

다. 現行法令의 未備點 補完(法 第17條② 및 令 第2條의4－⑥⑦)

法 第17條(減免 및 控除稅額의 追徵) 중 第1項第3號가 法律 第3096號(1978. 3. 25)로 新設되었고 令 第2條의4(住宅建設用地에 대한 所得稅의 減免) 중 第4項이 大統領令第9232號(1978. 12. 30)로 新設되었는 바 法 第17條第2項 및 令 第2條의4⑥⑦에 引用된 條文을 法令改正時 改正하지 못하였던 것을 금번 改正時 이를 바로잡아 補完하였다.

1981년

◉ 법　　률 : 1981.12.31. 법　　률 제 3481호(시행일 : 1982. 1. 1.)
◉ 시 행 령 : 1981.12.31. 대통령령 제10670호(시행일 : 1982. 1. 1.)
◉ 시행규칙 : 1982. 3.25. 재무부령 제 1519호(시행일 : 1982. 3.25.)

〈要　　約〉

지난 1960年代와 1970年代의 우리稅制는 4次에 걸친 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稅制側面에서 支援하기 위한 經濟開發支援稅制로서 그동안 우리經濟의 지속적인 成長과 産業構造의 고도화에 크게 기여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開發支援稅制는 重化學工業 등 戰略開發産業育成을 위한 租稅減免의 확대와 財産所得에 대한 課稅上의 優待措置 등 內資調達과 開發支援에 치중한 결과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 財産收入의 원활한 確保, 건실한 納稅風土 造成 등의 면에서 많은 問題點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980年代 第2의 經濟跳躍을 위하여 成長의 지속을 위한 經濟安定基盤의 定着, 能率의 向上, 社會開發의 확대 등을 추진하여 나감에 있어 租稅面에서도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 및 財政收入 調達과 所得再分配機能 등 租稅固有의 機能이 그 어느때보다도 強調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1982年 1月 1日부터 始作되는 第5次 經濟·社會開發 5個年計劃을 效果的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이 1981年 12月 31日로 그 適用時限이 만료됨을 계기로, 현행 租稅支援制度를 전면개편하였다.

○ 重要産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의 改善
- 支援對象産業의 再調整
- 支援方法의 改善

○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 中小企業施設 改替準備金을 投資準備金으로 확충
- 中小企業育成施策과 관련하여 近代化·協同化·系列化事業에 대한 租稅支援強化
- 輸出損失準備金 設定範圍 擴大
- 現物出資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時 讓渡所得稅 免除要件의 改善
- 中小企業間의 統合時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改善

- 中小企業範圍의 一部 調整

○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支援強化

-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支援
-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制度 新設
- 技術開發準備金制度의 擴充
-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租稅減免期間 延長 등
- 技術所得에 대한 支援

○ 海外建設業 등(產業設備輸出事業, 海外港灣用役事業)에 대한 法人稅減免制度 改善

-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 海外事業損失準備金 新設
- 特別償却制度의 擴充

○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 探鑛準備金을 鑛業投資準備金으로 轉換
- 石炭保安施設 準備金制度를 鑛產保安施設 準備金制度로 擴充
- 鑛夫의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支援制度 新設
- 畜產業投資에 대한 綜合所得稅免除制度 廢止
- 畜產業에 대한 重要產業減免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轉換
-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所得稅 등의 免除制度 改善
- 林地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50% 減免制度 新設

○ 地方移轉에 대한 支援制度

- 地方移轉準備金
-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 特別附加稅 免除制度 改善
-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適用

○ 財務構造改善을 위한 支援制度

- 增資所得控除 適用時限延長 및 控除率引下 調整
-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가 인정되는 增資의 範圍擴大

○ 特定設備投資促進에 대한 支援

- 特定施設投資의 範圍
- 稅額控除申請書 등의 提出

○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 其他 參考事項

○ 租稅支援의 綜合限度制 新設
- 支援手段別 綜合限度
- 特別費用의 益金算入 順位
- 投資稅額控除의 順位 및 移越控除

○ 租稅支援에 대한 事後管理制度의 改善
-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積立
- 減免控除稅額의 追徵

○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減免制度의 改善
- 公共事業用 토지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新設
- 建築用 토지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
- 2年 以上 시내버스 駐車場으로 사용한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制度 新設

○ 其 他
- 非課稅利子 및 配當所得의 範圍擴大
- 福券當籤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上向調整
- 勤勞者證券貯蓄稅額 控除制度 適用時限 延長
- 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支援制度의 改善
- 重複支援의 排除
- 推計時 租稅特例適用 排除
- 稅法體系의 整備
- 其 他

〈改正內容〉

1.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支援制度의 改善

가. 支援對象產業의 再調整(法 第12條 및 令 第10條)

(1) 重要產業에 대한 租稅支援의 沿革

—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은 第3次 또는 第4次經濟開發 5個年計劃을 稅制面에

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租稅支援對象產業은 重化學工業 등 經濟開發 5個年計劃上의 成長戰略產業을 중심으로 변천되어 왔다.

(2) 租稅減免對象產業의 再檢討 必要性

— 1980年代 經濟政策 基本方向의 轉換과 第3次 및 第4次 經濟開發計劃 當時와는 產業構造 및 對內外的인 經濟與件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支援對象產業을

○ 國內產業開發與件에 적합한 產業으로서(比較優位基準)

○ 全產業에 波及效果가 큰 중요한 산업이며(產業高度化 基準)

○ 成長段階가 開發初期段階인 幼稚產業(租稅支援 必要性 基準)에 한정하여 다음과 같이 再檢討 調整하였다.

(3) 支援對象產業의 調整內容

	改正前	改正	
		繼續支援	支援除外
1. 石油化學工業	—나프타分解工業 및 石油化學支援事業	—나프타分解工業	—石油化學支援事業
2. 鐵鋼工業	—施設容量 10萬톤 以上의 製鐵製鋼業	—製鐵業 및 特殊鋼 등 高級鋼材製造業	—一般製鋼業
3. 非鐵金屬	—銅, 亞鉛 등 非鐵金屬製鍊事業		—非鐵金屬製鍊事業
4. 機械工業	—機械要素 및 一般機械, 電氣機械 등 製造業	—機械工業	
5. 電子工業	—電子器機 —電子部品 및 材料	—電子工業	
6. 造船工業	—積載重量 3千톤級 以上의 造船臺를 所有한 者가 營爲하는 造船工業	—造船工業	
7. 化學肥料製造業	—窒素燐酸加里 등 無機質肥料製造業		—化學肥料製造業
8. 發電事業	—發電容量 10KW 以上의 發電事業		—發電事業
9. 航空事業	—航空工業	—航空工業	
10. 公害防止器機製造業	—環境保全用 物品製造業 —環境汚染防止施設業, 產業廢棄物處理業		—公害防止器機製造業은 機械工業에 包含

※ 畜產業, 鑛業, 地方移轉事業, 防衛產業은 重要產業과 區分하여 別途로 規定하였다.

(4) 機械 및 電子工業 範圍調整

— 機械工業과 電子工業의 구체적인 품목은 종전 施行令上의 品目을 원칙으로 하되 當該 品目이 全産業에서 가지는 重要性·競爭力 確保 可能性 및 成長段階 등을 基準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를 조정하였다.

〈調整內容〉

區 分	除 外 品 目	追 加 品 目
機 械 工 業	—무계목강관	—초자金型·動力傳達裝置
		—머시닝센터·로봇工作機械
		—원자로·농용트렉터
		—公害防止器機
	—製鐵·鐵鋼機械(소결기, 스택커, 코크스오븐)	—압연기
	—시멘트製造用機械 중 연속식드릴 運搬用스크탄裝置	
	—재봉기 중 단추달이재봉기, 단추구멍재봉기	—자수용재봉기
	—鐵構造物	—光學機械 중 사진기·영사기
電 子 工 業	〈電子器機〉	
	—携帶用 電子時計	—오실로스코프
	—보청기	—産業用電子制御 및 表示裝置
		—반송通信裝置
		—태이터뷰通信裝置
		—寫眞 및 모사전송裝置
		—광통신장치
		—마이크로웨이브오븐
		— 원격조정장치 (民生用 除外)
	〈電子部品〉	—광섬유
	—써미스터	—다층인쇄기판 및 프렉서블 배선판
	—발광다이오드	—릴레이
		—마그네트와이어(0.1㎜ 以下)

나. 支援方法의 改善

(1) 租稅支援方法轉換의 必要性

— 直接減免에 의한 租稅支援은 開發初期段階에 있어서 一定收益率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投資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이나 重化學工業을 중심으로 한 重要産業은

(가) 投資懷妊期間이 長期이고, 開發初期段階에서 品質 및 技術水準의 低位, 市場開拓 등으로 收益率이 낮아 支援의 實效가 적으며

(나) 또한 資本集約的인 産業으로 막대한 設備投資를 요하는 바, 投資規模에 상응하는 支援을 할 수 없다는 등의 많은 問題點이 있어 같은 支援이라도 租稅의 공평성을 크게 해하지 아니하면서 內部留保充實을 통하여 企業體質을 強化하고 競爭力을 제고할 수 있도록 租稅支援方法을 改善한 것이다.

(2) 支援方法의 改善內容

— 종전의 直接減免制度는 廢止하고 特別償却과 投資準備金制度를 新設適用함으로써 企業의 內部留保充實에 의한 競爭力 提高와 投資資金의 自體調達이 가능하도록 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特別減價償却의 適用(法 第11條 및 令 第6條)

종전의 法에서는 直接減免(3年 100%, 2年 50%) 投資稅額控除(8%, 10%) 또는 特別償却 100% 중에서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던 것을 直接減免과 投資稅額控除制度는 原則的으로 廢止하고 特別償却만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되 特別償却適用 對象資産의 範圍를 法人稅法施行規則上의 事業別 固定資産으로 하여 主된 機械와 從된 機械를 區分하는데 따르는 問題點을 해소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對 象	主된 機械裝置	事業別 固定資産
償却率	一般減價償却費의 100%	一般減價償却費의 100%

〈事業別 固定資産의 範圍〉

① 당해 重要産業에 直接 使用하는 固定資産 중 法人稅法 施行規則別表(2)上의 事業別 固定資産

② 重要産業과 其他의 事業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事業用資産은 그 資産을 주로 使用하는 事業用의 資産으로 보아, 特別償却 適用與否를 判斷

③ 重要産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事業을 영위하던 者가 그 事業用施設을 이용하여 처음으로 重要産業을 개시하거나, 그 事業用施設을 增設함으로써 重要産業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重要産業에 直接使用되는 事業用資産은 重要産業의 開始日 또는 重要産業에 해당하게 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適用例〉

- 1982. 1. 1 이후 취득한 資産부터 改正法의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다.
- 舊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第19條의 指定産業에 대한 60% 特別減價償却은 1982. 1. 1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받을 수 없다.

㈏ 投資準備金制度 新設(法 第10條 및 令 第7條)

① 目 的

投資資金의 自體調達 支援

② 設定範圍

당해 課稅年度 終了日 現在의 事業用資産價額(特別償却 適用對象이 되는 事業別 固定資産의 帳簿價額)의 100分의 5

③ 還 入

㉠ 一般的인 경우

당해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度의 終了日이후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終了日까지 당해 事業에 使用되는 事業用資産의 新規取得 또는 改替 등에 소요된 金額에 상당하는 準備金은 그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3年間 均等分割하여 益金에 산입한다.

㉡ 一般還入

損金에 산입한 投資準備金이 상기 "㉠"에 의하여 益金에 산입할 金額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準備金은 그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일시에 益金算入하고, 또한 다음의 事由가 발생한 때에도 그 事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益金에 산입하지 아니한 準備金計定의 금액을 一時益金算入한다.

i) 당해 重要産業을 廢業한 때

ii)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併으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 合併後 존속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에 당해 準備金을 引繼한 때에는 例外로 한다.

④ 利子相當加算額 追徵

投資準備金을 일시에 益金算入하는 경우에는 일시에 益金算入하는 準備金에 대한 所得稅額 또는 法人稅額 100원에 대하여 당해 投資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度의 終了日의 다음날부터 당해 準備金을 益金에 산입하는 課稅年度 終了日까지의 日邊 10錢으로 계산한 利子相當額을 추징하게 된다.

⑤ 投資準備金에 관한 明細書 등 提出

投資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하는 者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投資準備金 明細書(損金算入後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投資準備金 使用明細書)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投資稅額控除의 適用(法 第11條第2項)

① 對 象

改正法에서는 重要產業에 대하여 原則的으로 特別償却을 適用하도록 하고 다만, 機械·電子工業에 대하여는 例外的으로 投資稅額控除를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② 稅額控除對象投資의 範圍

重要產業에 해당하는 機械·電子工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事業別固定資產에 投資한 金額으로 하되, 中古品에 의한 投資와 增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投資的 支出은 投資稅額控除對象에서 제외하였다.

③ 控除稅額의 計算

控除稅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國產機資材의 範圍와 國產機資材에 대한 控除率(10%) 등은 종전과 같으나 外國產機資材에 대한 控除率은 종전의 8%에서 6%로 하향조정함으로써 國產機資材에 대한 支援을 상대적으로 강화하였다.

④ 特別償却·準備金과의 重複適用時 選擇適用

㉠ 동일한 事業用 資產投資에 대하여 特別償却과 投資稅額控除가 重複適用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適用받을 수 있다.

㉡ 投資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直前 및 直前前 課稅年度에 投資準備金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 投資計劃書 등의 提出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다음의 書類를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投資를 개시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投資計劃書

㉡ 投資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投資完了報告書와 稅額控除申請書

※ 從前法에 규정되어 있던 投資進度報告書 投資計劃變更申告書 提出制度는 폐지하였다.

(3) 經過措置

從前法에 의한 重要產業減免은 舊租稅減免規制法 第18條의 규정에 따라 1981.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課稅期間까지만 適用하도록 되어 있으나 1981年 12月 31日 이전에 事業을 개시하거나 投資를 완료하고 아직 減免期間이 經過되지 아니한 企業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旣得權을 설정함으로써 일시에 減免을 축소함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① 直接減免을 適用받고 있던 者는 殘存減免期間에 상당하는 期間동안 10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0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는 期間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殘存 100%減免期間×2—殘存 50% 減免期間).

②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고 있던 者에 대하여는 未控除殘額에 대하여 殘存控除期間동안 移越控除를 容認하며

③ 特別償却을 適用받고 있던 者에 대하여는 당해 資產의 殘存耐用年數동안 繼續 10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가. 中小企業施設 改替準備金을 投資準備金으로 擴充(法 第13條 및 令 第11條)

종전의 中小企業施設 改替準備金을 投資準備金 制度로 擴充하여 그 設定對象과 사용範圍를 擴大하였다. 其他 事項은 重要產業 投資準備金과 同一하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設定對象業種	— 製造業·鑛業을 營爲하는 中小企業	— 모든 中小企業(製造業·鑛業·建設業·水產業·運輸業)
○ 使用範圍	— 旣存施設의 改替	— 旣存施設의 改替 및 新規施設의 取得
○ 設定限度	— 事業用 固定資產價額의 15%	— 改正前과 同一

나. 中小企業 育成施策과 關聯하여 近代化·協同化·系列化 事業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1) 特別減價償却制度의 擴充(法 第14條 및 令 第12條)

종전에도 製造業 또는 鑛業을 營爲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당해 事業用資產에 대하여 50% 特別償却을 認定하고 있었으나, 改正法에서는 中小企業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여 中小企業 優先育成業種에 대하여는 重要產業과 같이 10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中小企業의 共同利用施設에 대한 特別償却(50%)을 新設 適用토록 하였다.

適 用 對 象	特別償却率
中小企業 優先育成 業種	100%
中小企業 協同化 事業計劃에 의하여 設置된 共同利用施設	50%

(2)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免除

1982年 1月 1日이후에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施設計劃이 承認된 地域의 事業施行者가 造成한 中小企業團地를 入住實需要者에게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고(法 第59條)

(3) 投資稅額控除適用

中小企業 系列化事業計劃에 따라 母企業이 受給企業에 設置하는 檢査臺 및 試驗研究施設에 대하여는 1982年 1月 1日이후 取得하는 分부터 6%·10% 投資稅額控除 50% 一時償却 중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法 第71條)

다. 輸出損失準備金 設定範圍 擴大(法 第22條 및 令 第22條)

中小企業의 輸出事業에 대하여는 一般的인 輸出損失準備金 設定範圍額에 外貨收入金額의 1%를 追加하여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輸出損失準備金의 設定範圍 調整

改 正 前	改 正
外貨收入金額의 1% 外貨所得金額의 50% ┘ 中 적은 金額	改正前의 設定範圍額에 外貨收入金額의 1%를 追加

라. 現物出資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時 讓渡所得稅 免除要件의 改善(法 第45條 및 令 第39條)

從前法은 個人中小企業이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에 있어서 모든 事業用의 資產을 一括하여 現物出資하고 또한 新設法人의 資本金이 個人事業의 1年平均 出資金(純 資產價額의 150% 이상인 경우에 限하여 現物出資 資產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一括 現物出資要件과 增資要件을 改善하여 個人事業의 法人轉換을 보다 容易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現物出資하는 資產의 範圍	모든 事業場의 資產을 一括하여 現物出資	事業別로 당해 事業에 1年 이상 直接使用된 主된 事業用資產(土地·建物·機械裝置 등)
出資金 要件	新設法人의 資本金이 個人事業의 1年間 平均 出資金의 150% 以上일 것.	新設法人의 資本金≥法人轉換하는 事業場의 1年間 平均 純資產 價額(150% 增資要件 廢止)

마. 中小企業間의 統合時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改善(法 第44條 및 令 第28條)

中小企業間의 統合(個人과 個人, 또는 個人과 法人間의 統合을 包含한다)時 讓渡所得稅 免除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從前法에서는 事業場別로 그 事業에 관한 모든 權利와 義務를 包括承繼하는 경우에 限하여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包括承繼의 어려움을 勘案하여 改正法에서는 統合의 範圍와 要件을 改善하여 事業의 同一性이 維持될 수 있는 程度로 主된 資產을 承繼하고 또한 다음의 要件을 갖춘 경우에는 讓渡所得稅를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統合의 範圍	中小企業間의 統合 業種制限 없음.	主務部 長官이 認定하는 合併奬勵業種을 營爲하는 中小企業間의 統合
要 件	〈新 設〉	— 統合으로 인하여 消滅하는 中小企業者는 統合後 存續하는 法人의 出資者地位를 가질 것. — 당해 統合으로 인하여 取得하는 持分 또는 株式價額은 消滅한 中小企業 純資產價額 以上일 것.

바. 中小企業範圍의 一部 調整(令 第11條)

稅法上 中小企業으로서 租稅特例를 適用받을 수 있는 中小企業의 要件은 原則的으로 종전과 같이 하되, 다만 相互信用金庫는 中小企業範圍에서 除外한다.

〈中小企業의 要件〉

○ 對象業種

— 製造業·鑛業·建設業·水產業 또는 運輸業을 主된 事業으로 營爲하는 企業

○ 要　　件

— 從業員數가 300人 以下이거나 有形固定資產 總額이 3億원 이하일 것.

3.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支援強化

가.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한 支援(法 第8條 및 令 第15條)

企業附設硏究所의 設置, 新技術企業化 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適用 및 試驗硏究施設, 職業訓練施設 등에 대한 特別償却(取得年度에 取得價額의 50%를 一時償却) 등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設備投資에 대하여는 從前 水準의 支援을 繼續하되 租稅支援의 效率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支援方法을 改善하여 投資稅額控除와 50% 一時償却 中에서 納稅者의 選擇에 의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投資稅額控除 適用 ○ 企業技術硏究所 設置 ○ 新技術企業化 事業 — 50% 一時償却 ○ 試驗硏究用 施設 ○ 職業訓練施設	— 投資稅額控除(6%, 10%) 또는 50% 一時償却 中에서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함. • 新技術企業化 事業 • 試驗硏究施設 • 職業訓練施設 ※ 단, 試驗硏究施設 職業訓練施設投資에 대하여는 다른 投資와는 달리 從前과 같이 投資金額의 8%(國產機資材 10%)를 稅額控除받을 수 있도록 함.

나.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制度 新設(法 第17條 및 令 第14條)

技術開發에 있어서는 設備投資보다도 技術開發費用에 대한 投資가 危險이 더 큼에도 不拘하고 지금까지 設備投資에 대하여는 投資稅額控除 또는 特別償却 등을 適用하여 왔으나 技術開發費支出에 대하여는 費用을 認定하는 외에는 별다른 支援이 없었다. 따라서 改正法에서는 技術開發投資에 대하여는 國庫에서 그 費用의 一部를 負擔하여 危險負擔을 줄여 줄 수 있도록 企業이 新製品 또는 新技術을 開發하기 위하여 支出한 技術 및 人力開發費에 대하여는 당해 支出金額을 費用으로 認定하는 외에 그 支出金額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도록 하는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制度를 新設하였다.

(1) 稅額控除適用 對象事業

- ○ 製造業·鑛業·建設業
- ○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事業
- ○ 電子計算組織의 利用技術開發 및 情報處理業
- ○ 防衛産業

(2)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를 適用받는 費用의 範圍

區 分	適 用
1. 技術開發	가. 自體開發의 경우 ① 新製品·新技術의 研究開發을 위한 研究部署에서 當該企業의 研究開發業務에 從事하는 研究要員의 人件費 ② 研究開發을 위한 材料費 ③ 製品의 試作 및 工業化 中間試驗에 必要한 經費 나. 委託開發의 경우 다음 研究機關에 대한 技術開發委託費 ① 特定研究機關 ② 産業技術研究組合 ③ 韓國産業經濟技術研究院 ④ 國防科學研究所 ⑤ 敎育法에 의한 大學 다. 內國人으로부터 特許權 등을 獲得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라. 國內의 研究機關이 開發한 技術을 獲得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區 分	適 用
2. 人力開發	마. 技術開發促進施行令에 의한 技術情報費(技術·諮問費 포함) 또는 導入技術의 消化改良費 바.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特定硏究開發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支出한 金額 가. 委託訓練費 ① 國內外의 專門硏究機關 또는 大學에 委託敎育訓練費(단, 理工系에 限함) ②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機關에의 委託訓練費 ③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의 承認을 얻어 委託訓練하는 경우의 委託訓練費 나.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職業訓練分擔金 다.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社內 職業訓練施設에 所要되는 費用

(3) 技術 및 人力開發支出에 관한 明細書 提出

稅額控除를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技術 및 人力開發費 支出에 관한 明細書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다. 技術開發 準備金制度의 擴充(法 第16條 및 令 第13條)

舊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所得金額만을 基準으로 하여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基準에 收入金額基準을 追加하여 企業規模에 相應하는 支援이 可能하도록 하는 同時에 技術開發費의 支出이 많은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대하여는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特例를 認定하고 또한 同準備金의 使用期間을 2年에서 4年으로 延長하였다.

(1) 設定限度 및 使用期間擴大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設定限度	• 所得金額의 20%	• 所得金額의 20%(30%) • 收入金額의 1%(1.5%) 중 많은 金額 ( ) : 技術集約的인 産業
使用期間	2年	4年

※ 技術集約的인 産業의 範圍

— 技術集約的인 産業은 部品數를 基準으로 한 技術開發段階가 4段階인 品目과 賣出額 對 硏究開發費의 支出比率이 平均比率 이상인 品目을 製造하는 産業

(電子工業·機械工業·航空工業·防衛産業·精密化學)으로 하였다.(具體的인 해당 品目은 施行令 別表4 參照)

(2) 技術開發準備金의 益金算入時 利子相當加算額 追徵 除外 範圍擴大

— 技術開發準備金을 技術開發費 등에 사용하고 남은 殘額을 益金에 算入할 때에 從前法에서는 硏究施設投資에 使用된 部分에 대하여만 利子相當額(年 36.5%)의 追徵을 排除하였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그 範圍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1. 硏究施設에 대한 投資 〈新 設〉	1. 改正前과 같음 2.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에 대한 出資金 3. 國內의 硏究機關이 開發한 技術의 獲得에 所要된 金額

다.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租稅減免期間 延長 등(法 第20條 및 令 第17條)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事業에 대하여는 종전의 5年間 50% 直接減免制度를 所得控除로 轉換하여 5年間 당해 事業에서 發生한 所得金額의 50%를 所得控除하도록 專門技術用役事業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調整하여 租稅支援의 實效를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技術用役事業의 範圍

改 正 前	改 正
○ 플랜트 엔지니어링 ○ 綜合建設 技術用役事業 ○ 專門技術用役事業(단, 電氣·通信·船舶·建設·建築裝備·纖維 및 原子力技術部分은 3個專門分野 이상 登錄業體에 限함)	} 改正前과 같음 ○ 專門技術用役事業(2個 이상의 專門分野에 登錄한 業體에 限함)

(2) 經過措置

(가) 技術用役事業에 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 이후 事業을 開始한 分부터 適用하되 從前法에 의하여 50% 法人稅減免을 받던 技術用役事業者로서 減免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殘存減免期間에 한하여 50% 所得控除를 받도록 하였고,

(나) 1982年 1月 1日 이전에 事業을 開始한 專門技術用役事業者로서 從前法에 의하여는 租稅減免의 對象이 되지 아니하던 者가 專門技術用役事業 範圍調整으로 새로이 所得控除를 適用받게 되는 경우에는 1982. 1. 1에 事業을 開始한 것으로 보아 向後 5年間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 技術所得에 대한 支援(法 第19條 및 令 第16條)

(1) 特許權 및 實用新案權의 讓渡 및 賃貸所得에 대한 所得稅(法人稅)減免制度 新設
從前에는 特許權 등의 賃貸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課稅하고, 讓渡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課稅하지 아니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賃貸·讓渡所得을 모두 課稅對象으로 하되, 發明家 保護를 위하여 特許權(實用新案權)의 原始事業者가 이를 他人에게 讓渡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였고, 賃貸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5年間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2) 技術輸出所得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從前法에서는 特許權 등을 外國에 提供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一律的으로 100%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原始取得者가 外國에 提供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는 非課稅(讓渡하는 경우)하거나 5年間 100% 免稅(賃貸하는 경우)하도록 하고, 特許權의 轉賣取得者가 外國에 提供하고 받는 所得이나 100% 減免期間이 經過한 後에 받는 所得(賃貸의 경우)에 대하여는 당해 所得金額의 50%를 所得控除하도록 하였다. 또한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技術輸出契約에 따라 外國人에게 技術秘法(Know-how)을 提供하고 받는 所得에 대하여도 50% 所得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바. 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 免除(法 第21條 및 令 第18條)

內國企業이 外國人技術者를 直接 고용하여 外國의 先進技術을 傳受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에 從事하는 外國人에 대하여 5年間 所得稅를 免除하여 주는 것과 같이 內國企業에 勤勞를 提供하는 外國人技術者에 대하여도, 5年間 勤勞所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1) 外國人技術의 範圍
勤勞所得稅를 免除받을 수 있는 外國人技術者는 다음의 者 중에서 事業者와의 雇傭契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6個月 이상 계속 勤務할 技術者를 말한다.

(가) 外國에서 다음의 産業分野에 5年 이상 勤務 經歷이 있거나, 또는 學士學位

이상의 學歷所持者로서 당해 分野에 3年 이상 勤務한 經歷이 있는 者.

— 製造業·鑛業·建設業·技術用役業·防衛産業·電子計算組織의 利用技術開發 및 情報處理事業

(나) 博士學位 所持者로서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專門硏究機關에서 硏究員으로 從事한 者.

(2) 稅額免除申請書 提出

所得稅를 免除받고자 하는 者는 勤勞를 提供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源泉徵收義務者를 거쳐 管轄 稅務署長에게 稅額控除申請書 등 所定의 書類를 提出하여야 한다.

4. 海外建設業 등(産業設備輸出事業, 海外港灣用役事業)에 대한 法人稅 減免制度 改善

가.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法 第26條 및 令 第25條)

대부분의 海外建設業體가 1981. 12. 31로 減免期間이 終了됨에 따라 종전의 50% 稅額 減免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轉換하여 1986. 12. 31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는 海外建設 等에서 발생한 所得金額의 50%를 한도로 하여 당해 收入金額의 2%를 所得控除하도록 하였다.

(1) 海外事業의 範圍(從前과 同一)

(가)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海外建設業

(나) 産業設備輸出促進法 第2條에 規定하는 일괄 受注方式에 의하여 産業設備를 輸出하는 事業

(다) 港灣運送事業法에 의한 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

(2) 支援方法의 轉換

改 正 前	改 正
海外事業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額의 50% 稅額 減免	海外事業에서 發生한 收入金額의 2%에 상당하는 金額(海外事業에서 發生한 所得金額의 50%를 限度로 함)을 所得控除

〈經過措置〉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制度는 原則的으로 1982. 1. 1 이후 最初로 申告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하되 다만, 從前法에 의한 50% 法人稅減免期間이 終了되지 아니한 경우

엔 1982. 1. 1 이전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는 從前法에 의한 50% 稅額減免을 適用받도록 하였다.

(3)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積立

從前法에서는 海外建設業 減免稅額에 대한 하등의 事後管理制度를 두고 있지 않았으나 改正法에서는 企業의 內部留保와 財務構造改善을 促進하기 위하여 海外建設 등 海外事業에 대하여도 所得控除를 받은 稅額은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積立하여,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轉入에만 使用할 수 있도록 그 處分을 制限하였다.

나. 海外事業 損失準備金 新設(法·第27條)

海外建設事業에서 發生하는 損失에 補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從前의 海外市場開拓準備金과 輸出損失準備金을 綜合하고 또한 損益期間의 長期化 傾向을 勘案, 그 還入期間을 延長(4年据置後, 3年分割 還入)하여 海外事業 損失準備金制度를 新設 適用하도록 하였다.

(1) 適用對象

所得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는 海外事業의 範圍와 同一하다.

(2) 設定限度

당해 課稅年度에 海外事業에서 發生한 外貨收入金額의 2%에 해당하는 金額

(3) 相對處理許容

당해 海外事業에서 契約의 取消 등으로 인한 損失이 發生한 경우에는 納稅者가 選擇하여 旣設定되어 있는 準備金과 相計할 수 있다.

(4) 搬 入

(가) 一般的인 경우

海外事業 損失準備金은 그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課稅年度의 終了日 이후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輸入損失準備金과 같이 3年間 均等하게 分割하여 益金에 算入한다.

(나) 一般益金還入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所得金額의 計算에 있어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海外事業 損失準備金의 全額을 益金에 算入한다.

① 당해 事業을 廢業한 때

② 法人이 解散한 때, 다만 合併으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된 法人에 당해 準備金을 引繼하는 때는 除外한다.

③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海外建設業 免許가 取消된 때

④ 港灣運送事業法에 의하여 海外港灣荷役 運送保管事業 免許가 取消된 때

다. 特別償却制度의 擴充(法 第28條 및 令 第26條)

海外建設業 등 國內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海外에서 이루어지는 事業이라는 特殊性을 勘案하여 從前에는 海外建設用 重機械裝備에 대하여만 限定的으로 認定하고 있던 特別償却을 改正法에서는 그 對象을 擴大하여 海外에서 당해 事業에 直接 使用되는 모든 機械裝置(法人稅法 施行規則上의 事業別 固定資產)에 대하여 30%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5. 資源開發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가. 鑛業에 대한 支援

(1) 探鑛準備金을 鑛業投資準備金으로 轉換(法 第33條 및 令 第29條)

鑛業에 대하여도 探鑛準備金制度를 鑛業投資準備金制度로 轉換하는 同時에 그 使用範圍를 擴大하여 重要產業과 같이 投資準備金의 設定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設定範圍	收入金額의 10% ┐ 所得金額의 30% ┘ 중 적은 金額	鑛業收入金額의 5%(다만, 國外에서 鑛物을 採掘하는 事業에 있어서는 當該事業 收入金額의 10%)
使用範圍	新鑛山開發을 위한 探鑛費 등에 使用	探鑛費 以外에 旣存 鑛山의 擴張을 위한 事業用 資產의 取得에도 使用이 可能하도록 함.

※ 鑛業投資準備金에 관한 其他 事項은 重要產業 投資準備金과 같다.

(2) 石炭保安施設 準備金制度를 鑛產保安施設 準備金制度로 擴充(法 第34條)

鑛產의 保安施設投資를 支援하기 위하여 從前에는 石炭鑛業에만 設定되던 保安施設準備金制度를 다른 모든 鑛業에 대하여도 鑛業收入金額의 3% 範圍內에서 鑛產保安施設 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鑛產保安施設 準備金에 대하여는 重要產業 投資準備金에 관한 事項에 그대로 準用되며 改正法에 의한 鑛產保安施設 準備金은 改正法 施行後 最初로 終了하는 課稅年度부터 計上할 수 있다.

(3) 鑛夫의 社會福祉施設에 대한 支援制度 新設(法 第36條)

鑛夫의 社會福祉를 稅制面에서 支援하기 위하여 石炭鑛業에 있어서의 鑛夫社宅에 대하여는 1982. 1. 1 이후 取得하는 分부터 50% 特別償却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나. 畜產業에 대한 支援

(1) 畜產業 投資에 대한 綜合所得稅 免除制度 廢止

從前의 租稅減免規制法은 綜合所得을 畜產業에 投資하는 경우에는 當該 投資金額이 綜合所得에서 차지하는 比率에 따라 所得稅를 50%까지 事前免除하고 또한 畜產業에서 發生한 所得은 重要產業으로 減免하도록 되어 있었던 바 畜產業 投資에 대한 所得稅 減免規定을 廢止함으로써 同一事業에 대한 過多한 二重支援은 止揚하도록 하였다.

(2) 畜產業에 대한 重要產業 減免制度를 所得控除制度로 轉換(法 第37條)

畜產業에 대한 從前의 重要產業 減免制度를 改正法에서 所得控除制度로 轉換하여 所得이 發生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 開始日로부터 5年以內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 當該 畜產業에서 發生한 所得金額에 50%를 所得控除하도록 하였다.

〈適用例〉

畜產業所得控除에 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이후 最初로 事業을 開始한 分부터 適用되며 旣存에 事業을 開始하여 重要產業減免을 받고 있던 자에 대한 經過措置는 다른 重要產業의 경우와 같다.(重要產業 減免方法 중 稅額減免을 받던 者는 殘存 減免期間에 한하여 所得控除를 適用한다)

다. 山林開發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1)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免除制度 改善(法 第38條)

山林法에 의하여 造林한 山林으로부터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 20年間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하도록 되어 있던 從前의 制度를 樹種別 成長期間(20年~40年)을 勘案하여 改正法에서는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으로서 自己가 造林한 期間이 5年 以上인 경우에는 期間制限없이 所

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2) 林地讓渡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50% 輕減制度 新設(法 第65條 및 令 第53條)
大單位 林地造成을 促進하기 위하여 山林法에 의하여 指定된 特殊開發地域內의 林地를 당해 特殊開發地域內의 事業施行者에게 讓渡時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를 事前에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 免除要件

林地의 讓渡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免除는 林地를 讓渡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期限內(讓渡者가 個人인 경우에는 資產讓渡差益 豫定申告期限內에도 할 수 있다)에 林地를 買入한 者가 稅額免除申請書를 讓渡者의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 稅額의 免除를 申請한 경우에 한하여 適用받을 수 있다.

(나) 免除稅額의 追徵

林地를 買入한 者는 당해 林地를 買入한 날로부터 5年 以內에 山林法에 의하여 造林을 하여야 하며 만약에 所定期間에 造林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買入者로부터 讓渡者에게 免除받은 稅額을 追徵하게 된다.

6. 地方移轉에 대한 支援制度

가. 地方移轉準備金(法 第41條 및 令 第35條)

地方移轉準備金의 設定對象, 設定限度 및 益金算入 등은 從前의 地方移轉準備金의 경우와 같고, 다만 從前法에서는 地方工業 開發奬勵地區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地方移轉施設 移轉準備金의 設定이 排除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大都市에서 地方으로 移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移轉地域의 區分없이 地方移轉準備金의 設定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1) 目 的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는데 所要되는 資金의 充當

(2) 設定限度

工場施設價額의 10%를 3年間 設定

(3) 還 入

○ 工場施設의 地方移轉에 所要된 部分에 상당하는 金額

— 3年間 均等分割還入

○ 未使用分

— 一時益金算入

(4) 利子相當額 追徵

未使用分 還入時에는 年利 36.5%의 利子相當額을 追徵

나.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等(讓渡所得稅 特別附加稅) 免除制度 改善(法 第42條 및 令 第36條)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경우, 從前에는 同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免除要件과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 免除要件이 相異하여 동일한 讓渡差益에 대하여 法人稅는 免除되나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는 課稅되거나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는 免除되나 法人稅는 課稅되는 事例가 發生하였다. 改正法에서는 이러한 矛盾을 是正하여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同一한 基準에 의하여 法人稅와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를 同時에 免除하도록 함으로써 工場의 移轉에 따르는 稅制上의 沮害要因을 除去하도록 하였다.

(1) 免除對象 稅目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工場垈地와 建物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과 國家·地方自治團體로부터 支給받는 移轉補償金에 대한 法人稅, 特別附加稅 및 讓渡所得稅

(2) 免除稅額의 計算

從前에는 舊工場價格 以上인 工場으로 移轉하는 경우에 한하여 舊工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를 免除하고, 또한 2年 以上 稼動한 工場의 移轉으로서 面積要件과 價格要件에 의하여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舊工場價格과 新工場價格의 比率에 의하여 舊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特別附加稅(讓渡所得稅)를 다음 算式에 의하여 同時에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算 式〉

免除稅額＝法人稅 등의 算出稅額×工場價格比率($\frac{\text{移轉後 工場價額}}{\text{移轉前 工場價額}}$)

※ 上記算式의 適用에 있어서

① 移轉前 工場價額은 移轉前工場의 土地, 建物 및 機械裝置의 讓渡價額(讓渡하지 아니한 資產은 帳簿價額)과 移轉補償金의 合計額으로 한다.

② 移轉後 工場價額은 그 工場施設의 移轉費用과 移轉한 工場의 土地, 建物 및 機械裝置의 帳簿價額으로 한다.

③ 舊工場을 먼저 讓渡하고 工場을 移轉함으로써 移轉後의 工場價額을 알 수 없

는 경우에는 그 工場價額比率을 일단 100%로 보고 舊工場의 讓渡時點에서 同工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등을 免除한다.

(3) 免除要件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免除要件은 거의 從前과 같되 그 一部를 補完하여 그 內容을 明確히 하였다.

(가)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

從前法에서는 舊工場의 讓渡期間에 대한 制限이 없었으나 改正法에서는 工場을 移轉하여 地方에서 事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1年 以內에 舊工場을 讓渡한 경우에만 舊工場의 讓渡差益에 法人稅 등을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따라서 舊工場을 讓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地方에서 事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1年 以內에 舊工場의 機械裝置를 全部 撤法 또는 閉鎖하여 당해 工場施設에 의한 操業(賃貸하여 操業하는 경우 포함)이 實質的으로 불가능한 狀態에 있는 경우에만 移轉補償金에 대한 法人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나)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

大都市의 工場을 讓渡한 날로부터 1年 以內에 新工場을 施工하고 施工日로부터 2年 以內에 준공하여 事業을 開始하여야 하며 旣存工場을 取得하는 때에는 舊工場 讓渡日로부터 1年 이내에 地方에서 工場을 取得하여 事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4) 稅額免除 申請書 등 提出

舊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등의 免除規定은 從前과 같이 大都市內 工場의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居住者인 경우에는 資產讓渡差益 豫定申告書 포함)와 함께 稅額免除申請書에 다음의 書類를 添附하여 提出하는 경우에 한하여 適用하도록 하였다.

○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에는 移轉完了申告書와 事業者登錄證寫本

○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에는 移轉計劃書

(5) 免除받은 稅額의 追徵

(가)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에 있어서는 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등을 免除받은 者가 舊工場 讓渡日로부터 1年 이내에 新工場을 施工하지 아니하거나 施工日로부터 2年內에 준공하여 事業을 開始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免除받은 稅額全額을 追徵하도록 하였고

(나) 또한 工場價額比率을 알 수 없어 免除한 稅額이 실제의 工場價額比率에 의하여 計算한 免除稅額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稅額을 지체없이 徵收하

도록 하였다.

다.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適用(法 第43條 및 令 第37條)

從前에는 大都市內의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는 경우 移轉地域(開發地區, 誘致地域)에 따라 支援方法을 달리하여 適用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移轉地域의 區分없이 投資稅額控除(6%, 10%)나 50% 一時償却 中 選擇하여 適用을 받도록 하였다.

(1) 適用對象

大都市 안에서 工場施設을 갖추고 事業을 營爲하던 者가 그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계속 당해 事業을 영위하는 경우

(2) 投資稅額控除 또는 一時償却適用

大都市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때에는 移轉後 당해 工場에서 직접 사용하는 事業別 固定資產에 대하여는 다음의 方法 中 하나를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다.

(가) 投資稅額控除 10%(外產 6%)

(나) 事業用資產의 取得價額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一時償却

(3) 適用要件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는 從前과 같이 다음의 要件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이를 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大都市內의 工場施設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계속 大都市內에서 營爲하던 事業을 營爲할 것.

(나) 大都市內에서 1年 以上 계속 稼動한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한 事業일 것.

(다)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6個月內에 大都市內의 工場을 閉鎖할 것.

(4) 移轉計劃書 등 提出

從前法에서는 移轉計劃書, 移轉進度報告書, 移轉計劃進度報告書와 移轉完了報告書를 모두 提出한 경우에 한하여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重要產業減免 또는 投資稅額控除를 適用(申請, 減免)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法에서는 申請減免을 法定減免으로 移轉하는 同時에 提出書類도 移轉計劃書와 移轉完了報告書로 대폭 簡素化하였다.

(5) 其 他

(가)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從前의 各種 支援制度를 統合整備함에 따라 從前法上 다음의 制度는 廢止되었다.

① 地方工業開發地區 移轉事業에 대한 重要産業減免(舊法 第4條의8第2項第10號)
②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所得控除(舊法 第4條의14)
③ 地方移轉에 대한 讓渡所得 特別控除(舊法 第3條의3第4項)

㈏ 改正法上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는 1982. 1. 1 이후 최초로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分부터 適用한다.

7. 財務構造 改善을 위한 支援制度

가. 增資所得控除 適用時限 延長 및 控除率 引下調整(法 第55條 및 令 第45條)

增資를 통한 企業의 財務構造改善을 誘導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는 增資期間과 控除時限을 各各 1年間 延長하고, 金融機關의 貸出金利 引下調整에 따라 控除率을 下向 調整하였다.

區 分	增 資 期 間	控除時限	控除率
改正前	'79. 1. 1~'79. 12. 31	'82. 12. 31	年 16%
	'80. 1. 1~'80. 12. 31	'82. 12. 31	24%
	'81. 1. 1~'81. 12. 31	'82. 12. 31	20%

區 分	增 資 期 間	控除時限	控除率
改正	'81. 6. 16~'81. 12. 31	'84. 12. 31	20%
	'82. 1. 1~'82. 12. 31		18%

〈適用例〉

① 改正된 增資所得控除規定은 1982. 1. 1 이전에 設立된 法人이 1982. 1. 1 이후 增資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② 1981. 6. 16부터 1981. 12. 31까지 한 增資에 대하여는 1984. 12. 31까지 所得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도록 控除期間을 1年間 延長하였다.

나.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가 認定되는 增資의 範圍擴大(法 第56條, 令 第46條)

從前法에서는 政府의 企業體質 強化對策(9. 27措置)에 따라 公開法人의 株主가 個人所有不動産을 處分하여 1982. 12. 31까지 增資한 分에 대하여만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가 認定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株價가 額面價 以下인 公開法人이 有償增資를 함

에 있어서 少額株主가 新株의 引受를 포기함으로써 發生하는 失權株를 大株主가 引受하여 增資를 하는 경우에도 公開法人要件에 대한 特例를 認定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1. 對象增資	① 企業體質強化對策에 따라 株主個人所有不動產의 處分代金으로 1982. 12. 31까지 한 增資 〈新 設〉	① 改正前과 같음 ② 株價가 額面價 以下인 公開法人이 1982. 12. 31까지 한 增資
2. 公開法人特例認定	上記의 增資로 인하여 株主의 株式比率이 變更되어 公開法人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2年間은 公開法人要件을 갖춘 것으로 認定	

8. 特定設備 投資促進에 대한 支援

가. 特定施設投資의 範圍

事業者가 1983年 12月 31日 以前에 다음의 施設에 投資를 한 경우에는 投資稅額控除(6%, 10%)나 50% 一時償却 中에서 選擇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다.

(1) 에너지利用合理化法에 의한 에너지節約施設
(2) 環境保全法에 의한 公害防止 施設
(3) 勤勞基準法에 의한 産業災害防止 施設
(4)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에 의한 中小企業系列化 事業計劃에 의하여 母企業이 受給企業에 設置하는 檢査臺 및 試驗硏究 施設

※ ① 改正法에서는 生産性 向上을 위한 施設投資 및 流通事業의 施設投資에 대하여도 租稅支援을 할 수 있는 制度的 裝置를 마련하여 必要한 경우에는 同施設投資에 대하여도 租稅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② 또한 醫療法人이 서울特別市, 直轄市 또는 道廳所在地 以外의 地域에 投資한 醫療施設에 대하여는 50% 一時償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稅額控除 申請書 등의 提出

事業者가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는 特定施設에 投資한 경우에는 投資計劃書, 稅額控除 申請書 및 다음의 書類를 所管 稅務署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

나 稅額控除 申請書의 提出與否 自體가 稅額控除 適用要件이 되는 것은 아니다.

(1) 動力資源部長官이 發行하는 에너지節約施設 投資完了確認書

(2) 環境廳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이 發行하는 公害防止施設 投資確認書

(3) 勞動部長官이 發行하는 産業災害豫防施設 投資確認書

9.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가.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從前法에 의하여 法人稅를 免除받고 있던 法人 중에서 民間企業과 競爭關係를 가지고 있는 商行爲를 目的으로 設立된 商事法人 등을 租稅의 公平性과 中立性을 考慮하여 公共法人의 범주에서 除外하여 正常課稅로 轉換하고, 公共事業 遂行을 目的으로 設立된 公社·公團은 새로이 追加하여 公共法人의 範圍를 一部 調整하였다.

公共法人 範圍調整內容

公共法人에서 除外된 法人	公共法人에 追加된 法人
○ 浦項綜合製鐵(株)	○ 韓國電氣通信公社
○ 韓國證券金融(株)	○ 韓國放送廣告公社
○ 韓國外換銀行	○ 地下鐵公社
○ 韓國信託銀行	○ 國際空港管理公團
○ 國民銀行	○ 韓國援護福祉公團
○ 中小企業銀行	○ 交通安全振興公團
○ 大韓浚渫公社	○ 에너지管理公團
○ 國際觀光公社	○ 公務員年金管理公團
○ 大韓敎員共濟會	○ 大韓結核協會
	○ 韓國船級協會
	○ 韓國學術振興財團
	○ 韓國靑少年聯盟
	○ 私立大 醫科 및 齒科大學 附屬病院
	○ 財團法人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

나. 公共法人에 대한 最低限稅 課稅

(1) 最低限稅의 課稅

改正法에 의하여 公共法人도 1982. 1. 1 이후 事業年度부터는 非營利內國法人

으로 보고 法人稅法上 收益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에 대하여는 5%의 法人稅를 負擔하게 된다.

(2) 課稅標準計算에 대한 特例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은 公共法人을 非營利內國法人으로 看做하고 있으므로 公共法人은 收益事業과 其他의 事業을 兼營하는 경우에는 法人稅法이 정하는 바에 따라 區分 經理하여야 하나, 規模가 零細하여 專門的인 稅務處理能力을 갖추기 어려운 單位農業協同組合 등에 대하여는 企業會計原則에 따라 作成한 決算財務諸表의 當期純利益(法人稅 등을 控除하기 前의 當期純利益을 말한다)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5%의 最低限稅를 課稅토록 함으로써 區分經理에 따르는 問題點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 當期純利益을 課稅標準으로 하는 公共法人

① 信用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

②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單位農業協同組合 및 特殊農業協同組合

③ 畜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別 畜產業協同組合과 業種別 畜產業協同組合

④ 水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地域別 水產業協同組合 및 業種別 水產業協同組合(農村契를 포함한다)

⑤ 中小企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業種別 協同組合 및 協同組合聯合會

⑥ 山林組合法에 의하여 設置된 契 및 組合

⑦ 葉煙草生產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葉煙草生產組合

(3) 過少申告加算稅와 未納付加算稅의 適用猶豫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1982. 1. 1이후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처음으로 5%의 最低限稅를 課稅하게 됨에 따라 稅務處理能力을 갖출 수 있는 準備期間을 賦與하여 1983. 12. 31 이전에 開始한 事業年度까지는 稅法知識의 未熟으로 過少申告하는 경우에도 過少申告加算稅와 過少申告에 따른 未納付 加算稅의 適用을 猶豫하도록 하였다.

(4) 中間豫納稅額의 計算

法人稅法의 改正으로 非營利法人도 中間豫納을 하게 됨에 따라 公共法人도 1982年부터 法人稅法의 規定에 따라 中間豫納을 하여야 되는 바, 1982年 1月 1日 이후 最初로 納期가 到來하는 公共法人의 中間豫納稅額은 直前課稅年度 決算財務諸表上 當期純利益의 2%로 하였다.

다. 其他 參考事項

(1)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5%의 最低限稅만이 課稅되므로 其他 租稅特例(租稅減免規制法上의 準備金, 特別償却, 投資稅額控除, 所得控除)는 그 適用이 排除된다.

(2)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資產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稅는 從前과 같이 繼續 非課稅된다.

(3)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1982. 1. 1 이후 開始한 事業年度부터 5% 最低限稅를 課稅하게 되어 있으므로 1981. 12. 31 이전에 開始한 事業年度에는 從前과 같이 法人稅가 免除된다.

10. 租稅支援의 綜合限度制 新設(法 第88條 및 令 第63條)

가. 支援 手段別 綜合限度

類型別	綜合限度	適用對象	備考
가. 各種 準備金 및 特別償却費 등의 特別費用	準備金 또는 特別償却을 損金에 算入하기 前 所得金額의 60%	— 法令에 의한 準備金 및 充當金을 除外한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支援性 準備金 — 12時間 以上 稼動에 따른 20% 特別償却 以外에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特別償却費	綜合限度超過分은 益金算入
나. 所得控除金額	所得控除金額을 計上하기 前 所得金額의 50%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所得控除(增資所得控除, 石炭增產所得控除, 畜產業 및 海外事業所得控除 등)	限度超過額은 消滅
다. 稅額控除	算出稅額의 40% 控除	—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 — 外國納付 稅額控除 災害損失稅額控除 등을 除外한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投資稅額控除	限度超過分은 殘存控除期間동안 移越控除

나. 特別費用의 益金算入 順位

各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書에 있어서 損金에 算入한 特別費用(準備金, 特別償却費)의 合計額이 綜合限度를 超過한 때에는 그 超過하는 分은 益金에 算入하게 되는 바 準備金과 特別償却費가 있는 경우에는 準備金부터, 準備金 相互間에 있어서는 投資準備金 또는 据置期間이 짧은 準備金부터 먼저 益金에 算入하도록 하였다.

※ 綜合限度를 超過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益金算入 順位

① 地方移轉準備金 또는 鑛山保安施設準備金

② 投資準備金(重要產業, 中小企業, 鑛業, 防衛產業, 外國航行事業)
③ 技術開發準備金
④ 價格變動準備金, 施設貸與損失準備金
⑤ 輸出損失準備金, 海外市場開拓準備金
⑥ 海外投資損失準備金
⑦ 海外事業損失準備金
⑧ 特別減價償却費

다. 投資稅額控除의 順位 및 移越控除

(1) 稅額控除順位

租稅支援의 綜合限度에 의하여 各 課稅年度의 稅額에서 控除할 各種의 投資稅額控除는 당해 課稅年度 算出稅額의 40% 範圍內에서만 控除가 認定되고 그 限度를 超過하는 것은 次年度에 移越하여 次年度의 稅額에서 控除를 받게 된다. 따라서 한 企業이 여러가지의 稅額控除를 適用받는 경우에 있어서는 어떤 稅額控除부터 먼저 控除할 것인가 하는 問題가 提起되는 바,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納稅者에게 보다 遊離하도록 하기 위하여 移越控除가 認定되지 않는 것부터 먼저 控除하도록 하였다.

※ 稅額控除의 適用順位

① 移越控除가 認定되지 아니하는 稅額控除(技術, 人力開發에 대한 稅額控除)
② 移越控除가 認定되는 稅額控除
③ 移越控除가 認定되는 稅額控除 相互間에 있어서는 먼저 發生한 稅額控除

(2) 移越控除

投資稅額控除에 대하여는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各國이 移越控除를 容認하고 있는 바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에서도 各 課稅年度의 稅額에서 控除할 投資稅額 控除額이 당해年度의 稅額控除 綜合限度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4年間 移越하여 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는 費用支出에 대한 課稅控除란 점에서 移越控除의 適用對象에서 除外하였다.

11. 租稅支援에 대한 事後管理制度의 改善

가.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積立(法 第91條 및 令 第65條)

租稅支援의 궁극적인 目的은 單純히 稅負擔을 輕減시켜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稅負擔의 輕減을 通하여 內部留保를 充實히 하게 하고 또한 企業 스스로의 成長 潛在

力을 培養시켜 주는데 있다 할 것인 바, 改正法에서는 減免控除稅額에 대한 事後管理制度를 合理的으로 改善하여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積立對象者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여 各種의 所得控除나 稅額控除를 받은 內國法人은 당해 課稅年度의 利益金 處分時 그 控除받은 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을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한다.

○ 從前法에서는 個人까지도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積立하도록 되어 있으나 個人의 경우에는 資本金과 剩餘金이 區分되지 아니하고 또한 法定의 剩餘金 處分節次가 없으므로 改正法에서는 個人을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積立對象에서 除外하였다.

○ 從前法에서는 重要產業 減免과 增資所得 控除의 경우에만 企業合理化 積立金을 積立토록 되어 있었으나 改正法에서는 그 對象을 擴大하여 稅額控除나 所得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例外없이 모두 企業合理化 積立金을 積立하도록 하였다.

(2) 積立金額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적립하여야 할 金額은 당해 課稅年度에 所得控除나 稅額控除를 받은 稅額에 相當하는 金額이다. 從前法에서는 所得控除의 경우에는 控除받은 所得金額 全體를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積立토록 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所得控除額에 대한 稅額만을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積立토록 하였다.

(3) 處分制限

○ 企業合理化 積立金은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轉入에만 使用할 수 있도록 그 處分을 制限하였고, 만약에 企業合理化 積立金을 移越缺損金 補塡이나 資本에 轉入하지 아니하고 配當 등으로 處分하였을 때에는 從前과 같이 當初 減免控除稅額과 年利 36.5%에 相當하는 利子를 追徵하도록 하였다.

○ 從前法에서는 企業合理化 積立金에 대한 使用義務規定을 別途 規定하여 長期負債의 償還이나 固定資產投資에 使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旣減免控除稅額을 追徵토록 하였으나 改正法에서는 이를 廢止하여 企業合理化 積立金에 대한 別途의 使用義務 規定은 두지 않았다.

(4) 企業合理化 積立金에 대한 經過措置

1982. 1. 1 現在 從前法에 의하여 積立되어 있는 것은 改正法에 의하여 積立한 企業合理化 積立金으로 看做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從前法에 의하여 積立한 企業合理化 積立金도 改正法 施行後에는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에 轉入만 하면 되며 別途의 使用義務는 없다.

나. 減免控除稅額의 追徵(法 第92條 및 令 第65條)

다음의 경우에는 旣減免 控除받은 稅額에 年利 36.5%의 利子를 加算하여 追徵하게 된다.

(1) 稅額控除나 所得控除를 받은 個人事業者가 당해 減免控除稅額을 2年內에 長期負債의 償還이나 5年內에 事業用 資産에의 投資에 使用하지 아니한 때

(2) 企業合理化 積立金을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에 轉入하지 아니하고 配當등으로 處分한 때

(3) 機械·電子工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法 第11條第2項), 新技術企業化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法 第18條) 또는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法 第43條)를 適用받은 者가 投資를 完了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終了日로부터 5年內에 당해 資産을 處分한 때, 다만 合併·現物出資 또는 統合에 의하여 所有權이 移轉되는 때에는 除外된다.

12.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減免制度의 改善

가. 公共事業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法 第57條 및 令 第47條)

(1) 讓渡所得稅 등이 免除되는 公共事業의 範圍

國家 등이 公共事業을 遂行하기 위하여 土地를 買入하는 경우에 發生하는 稅制上의 沮害要因을 除去함으로써 당해 公共事業을 圓滑히 遂行할 수 있도록 다음의 公共事業用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全額 免除하도록 하였다.

(가) 公共用地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別法이 適用되는 公共事業用으로,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에 讓渡하는 경우

(※ 從前法은 公共事業의 範圍를 公共用地 取得 및 損失補償에 관한 特例法과 달리 規定하고 있으나, 改正法에서는 公共事業의 範圍를 公共用地 取得 및 損失補償에 關한 特例法과 一致시켰다.)

(나) 道路建設工事에 必要한 土地를 韓國道路公社에 讓渡하는 경우(從前法과 같음)

(다) 土地收用法이나 其他 法律에 의하여 收用하는 경우(從前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 規定되어 있던 것을 吸收한 것임)

(라) 宅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宅地開發 豫定地區內의 土地를 당해 地區開發事業 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新設된 것임)

(마)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開發促進地區內의 土地를 당해 地區開發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新設된 것임)

(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産業基地開發事業 施行者에게 讓渡하는 경우(新設된 것임)

(2) 讓渡所得稅의 免除申請

公共事業用 土地 中에서 住宅開發促進法,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또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公共事業의 경우에는 당해 土地를 買入한 事業施行者가 讓渡者의 納稅地 所管稅務署長에게 稅額免除申請書를 提出하여 申請한 경우에 限하여 讓渡所得稅 등을 免除받을 수 있는 바, 그 申請은 讓渡者의 課稅標準 申告期間內(讓渡者가 個人인 경우에는 資産讓渡差益 豫定申告期間內에도 할 수 있다)에 하여야 한다.

(3) 免除稅額의 追徵

宅地開發促進法, 特定地域綜合開發에 關한 特別措置法 또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讓渡所得稅가 免除된 土地를 買入하고, 事業施行의 指定을 받은 날로부터 3年內에 開發事業을 着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免除한 讓渡所得稅 등을 事業施行者로부터 追徵하게 된다.

나.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制度 新設(法 第59條)

從前에는 法人稅法에서 地方工團開發法 또는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指定된 事業施行者에 대하여만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免除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다음의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하여도 자기가 造成한 一定한 團地를 入住實需要者에게 分讓할 때에도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特定地域開發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事業施行者가 造成한 土地 등을 入住實需要者에게 讓渡하는 경우

(2)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하여 團地造成事業의 實施計劃이 承認된 地域의 事業施行者가 造成한 中小企業團地를 入住實需要者에게 讓渡하는 경우

다. 建築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法 第63條 및 令 第51條)

從前法上의 實需要土地 稅額還給, 住宅建設業者에 讓渡한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50% 事前 免除,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實需要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50% 事前免除制度를 改正法에서는 建築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免除 規定으로 統合하여 法條文을 單純化하였는 바, 其他 稅額還給申請節次, 免除稅額에 대한 事後管理 등은 從前의 경우와 같다.

○ 實需要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50%를 事後의 還給하도록 함.

○ 住宅建設事業에 讓渡한 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50%를 事前에 免除하도록 함.

○ 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아 實需要者에게 讓渡한 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의 50%를 事前에 免除하도록 함.

라. 2年 以上 市內버스駐車場으로 使用한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制度 新設 (法 第64條, 令 第52條)

(1) 適用對象

自動車運輸事業法 第25條에 의한 事業改善命令에 따라 駐車場을 移轉할 目的으로 2年 以上 市內버스 駐車場으로 使用한 土地(建物을 包含한다)를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

(2) 免除稅額의 計算

市內버스 駐車場用土地에 대하여는 面積比率과 價額比率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中 작은 金額을 免除한다.

〈算 式〉

① 免除稅額 = 讓渡所得稅등의 算出稅額 × 面積比率$\left(\frac{\text{移轉後 駐車場用 土地面積}}{\text{移轉前 駐車場用 土地面積}}\right)$

② 免除稅額 = 讓渡所得稅등의 算出稅額 × 價額比率$\left(\frac{\text{移轉後 駐車場用土地等 價額}}{\text{移轉前 駐車場用土地等 價額}}\right)$

※ 舊駐車場을 먼저 讓渡하고, 移轉함으로써 價額比率과 面積比率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舊駐車場을 讓渡한 時點에서 일단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한다.

(3) 免除要件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하여 事業改善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年 以內에 舊駐車場을 讓渡하고 新駐車場을 取得하여 移轉을 完了한 경우에 한하여 舊駐車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免除받을 수 있다.

(4) 免除稅額의 追徵

駐車場을 新設할 目的으로 讓渡함으로써 同駐車場의 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免除받은 者에게 다음의 事由가 發生한 때에는 免除받은 稅額을 지체없이 追徵하게 된다.

(가) 事業改善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年 以內에 新駐車場을 取得하여 移轉하지 아니한 때에는 免除받은 稅額

(나)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 讓渡時點에서 免除한 稅額이 面積比率과 價額比率에 의하여 計算한 免除稅額을 超過하는 때에는 그 超過하는 部分에 相當하는 金額

(5) 稅額免除 申請書 등의 提出

駐車場用土地를 讓渡하고, 讓渡所得稅 등을 免除받고자 하는 者는 舊駐車場을 讓渡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 申告期限內에 稅額免除申請書에 다음의 書類를 添附하여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가) 市內버스旅客 自動車運送事業 免許證 寫本

(나) 自動車運送事業法 第25條에 의한 事業改善命令 寫本

(다) 讓渡한 駐車場用土地 및 새로이 取得한 駐車場用土地의 登記簿謄本

(라) 移轉前 駐車場用土地를 먼저 讓渡하는 경우에는 移轉計劃書

13. 其 他

가. 非課稅利子 및 配當所得의 範圍擴大(法 第4條 및 令 第2條)

家計·學生 및 農·漁民의 貯蓄을 增大시키기 위한 特別預金의 이자와 配當金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非課稅하도록 되어 있는 바 改正法에서는 奬學積金의 利子와 入住者貯蓄의 利子를 特別預金의 利子에 追加하여 1982. 1. 1 以後 支給받는 分부터 所得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特別預金의 利子 및 配當金의 範圍

區 分	限 度	備 考
○ 優待特別定期家計預金	世帶當 200萬원 以下	從前과 같음
○ 農·漁民 목돈貯蓄預金	世帶當 300萬원 以下	〃
○ 優待家計 定期積金	世帶當 月拂入額 6萬원 以下	〃
○ 奬學積金	加入者가 未就學兒童 國民學校·中高等學校 學生으로 1人當 50萬원(10口座) 以下	新 設
○ 入住者 貯蓄	1世帶 1口座로 月拂入額 10萬원 以下	〃
○ 信用協同組合에 대한 預託金 또는 配當金	마을金庫, 單位農業協同組合, 畜産業協同組合, 水産業協同組合 (漁村契 포함)의 預託金(500萬원 限度)과 出資金(200萬원 限度)	畜産業協同組合을 追加

나. 福券當籤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稅率 上向調整(法 第5條 및 令 第3條)

金融機關으로부터 支給받는 福券當籤所得에 대하여 從前法은 10%稅率로 源泉徵收後 分離課稅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分離課稅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한 5% 敎育稅課稅와 關聯하여 源泉徵收稅率을 15%로 上向調整하였다.

다. 勤勞者證券貯蓄稅額 控除制度 適用時限 延長

貯蓄增大 및 勤勞者財產形成支援에 관한 法律의 適用時限 延長과 關聯하여 勤勞者證券 貯蓄稅額 控除의 適用時限을 5年間 延長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適用對象	月定額給與가 100萬원 以下인 勤勞者가 1981年 12月 31日 以前에 체결한 證券貯蓄	月定給與가 100萬원 以下인 勤勞者가 1986年 12月 31日 以前에 체결한 證券貯蓄
○ 稅額控除	貯蓄金額의 10%를 綜合所得稅(勤勞所得稅)에서 稅額控除	改正前과 같음
○ 所得稅(相續稅·贈與稅)의 免除	證券貯蓄으로 인하여 支給받는 配當利子	免除對象所得의 範圍에 利子所得을 追加

區 分	選 擇 適 用
가. 投資準備金의 選擇適用	一 한 事業用 資產에 대하여 다음의 投資準備金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適用 ○ 法 第10條(重要產業投資準備金) ○ 法 第13條(中小企業投資準備金) ○ 法 第31條(外國航行事業投資準備金) ○ 法 第33條(鑛業投資準備金) ○ 法 第39條(防衛產業投資準備金)
나. 特別償却의 選擇適用	一 한 事業用資產에 대하여 다음의 特別償却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 適用 ○ 法 第11條第1項(重要產業特別償却) ○ 法 第14條(中小企業特別償却) ○ 法 第28條(海外事業特別償却) ○ 法 第32條(外國航行事業特別償却) ○ 法 第36條(鑛業特別償却) ○ 法 第40條(防衛產業特別償却)

區　　分	選　　擇　　適　　用
다. 投資稅額控除의 選擇 適用	— 한 事業用資產에 대하여 다음의 投資稅額控除가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 適用 ○ 法 第11條第11項(重要產業投資稅額控除) ○ 法 第18條(新技術企業化事業投資稅額控除) ○ 法 第43條(地方移轉事業投資稅額控除) ○ 法 第71條(特定設備投資稅額控除) ○ 法 第72條(臨時投資稅額控除)
라. 其　他	— 法 第18條의 新技術企業化 事業用資產에 대하여 다음의 投資稅額控除 또는 特別償却이 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適用 ○ 法 第18條第1項(新技術企業化事業 投資稅額控除) ○ 法 第14條(中小企業特別償却) ○ 法 第28條(海外事業特別償却) ○ 法 第32條(外國航行事業特別償却) ○ 法 第36條(鑛業特別償却) ○ 法 第40條(防衛產業特別償却)

라. 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改善

防衛產業과 外國航行事業에 대하여도 그 支援方法을 重要產業의 경우와 같이 投資準備金과 特別償却에 의한 間接支援 方法으로 轉換하였다.

(1) 防衛產業에 대한 支援制度(法 第39條·第40條 및 令 第33條)

防衛產業에 대한 支援事項(特別償却·投資準備金)은 重要產業의 경우와 같으나 防衛產業의 特殊性을 고려하여 保安維持를 위하여 特別히 設置한 建物·構築物에 대하여도 特別償却이 可能하도록 特別償却 適用對象 資產의 範圍를 擴大調整하였다.

(2)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支援制度(法 第31條·第32條 및 令 第28條)

지금까지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免除되던 外國航行事業도 課稅로 轉換하고 重要產業과 같이 投資準備金과 特別償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改正法의 規定은 1982. 1. 1 以後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된다.

마. 重複支援의 排除

租稅減免規制法은 政策目的에 따라 各種의 支援制度를 마련하고 있는 바, 같은 性質을 가지는 여러가지의 支援을 同時에 適用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

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適正水準 以上의 過多支援이 되지 않도록 하였다.

바. 推計時 租稅特例適用 排除(法 第90條)

所得稅法 第120條 또는 法人稅法 第32條第3項 但書에 의하여 推計하는 경우에는 原則的으로 租稅減免規制法上의 모든 租稅特例(準備金, 特別償却, 稅額控除, 所得控除)의 適用을 排除하도록 하였다.

다만, 個人의 경우에는 그 實情을 감안하여, 技術輸出所得에 대한 所得控除(法 第19條第4項), 石炭增產所得控除(法 第35條), 畜產業所得控除(法 第37條) 및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所得稅免除(法 第38條)의 規定은 推計할 때에도 例外的으로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 稅法體系의 整備

改正法에서는 旣存의 所得稅法과 法人稅法에 規定되어 있던 租稅特別條項을 吸收하고 地方稅減免에 關한 條項은 地方稅法에 移管하여 租稅政策法으로서의 租稅體系를 갖추도록 하였다.

(1)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上의 特例條項

從前의 所得稅法 및 法人稅法에 規定되어 있던 各種 準備金과 特別償却에 관한 規定을 吸收하여 政策目的으로 體系化하였는 바, 그 重要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輸出에 대한 支援制度(法 第6條)

輸出損失準備金, 海外市場開拓準備金, 價格變動準備金, 外貨獲得事業用資產에 대한 特別償却에 관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을 吸收規定하는 同時에

① 中小企業의 輸出事業에 대하여도 特定地域에 대한 輸出이나 機械·船舶의 輸出과 같이 外貨收入金의 1%를 追加하여 輸出損失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特例를 認定하였고

② 輸出損失準備金과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設定特例가 認定되는 輸出事業에 相互重複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輸出損失準備金·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設定特例適用 輸出事業

- ○ 機械·船舶輸出事業
- ○ 中小企業의 輸出事業
- ○ 特定地域에 대한 輸出
- ○ 延拂輸出事業

(나) 海外投資損失準備金(法 第29條)

海外投資損失準備金에 대한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의 規定을 吸收規定하는 同時에 1982. 1. 1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는 外國法人에 대한 資金의 貸與는 海外投資損失準備金의 設定對象에서 除外하였다.

㈐ 臨時投資稅額控除(法 第72條)

從前의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에 規定되어 있던 臨時投資稅額控除에 관한 條項을 吸收規定하는 同時에 政策目的에 따라 適用對象, 控除率 등을 彈力的으로 適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50% 一時償却과 選擇適用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提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收用時 讓渡所得稅 免除(法 第57條)

從前 所得稅法 또는 法人稅法上의 土地收用 및 其他 法律에 의하여 收用時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免除 規定을 吸收하여 改正法에서도 收用의 경우에는 계속하여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實需要土地稅額 還給(法 第63條)

實需要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 事後還給制度를 吸收規定하도록 하였는 바, 還給稅額·還給申請·還給要件 등은 從前과 같다.

(2) 地方稅減免條項의 整備

從前의 特定產業 또는 特定企業에 대한 地方稅(登錄稅, 取得稅, 財產稅)減免에 대한 規定은 國家의 產業政策上 國稅와의 統一的인 運用이 要求되는 事項 以外에는 地方稅法으로 移管하여 地方自治團體의 實情에 맞는 地方稅制의 運用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아. 其 他

從前法上 國際金融機構 등의 租稅減免(舊法 第15條)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 및 免稅(舊法 第11條의2), 特別消費稅의 免除(舊法 第11條)와 關稅의 減免(舊法 第12條)에 관한 條項은 改正法에서도 계속 適用하도록 하였고, 또한 財團法人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가 1988年 서울올림픽大會에 使用하기 위하여 輸入하는 物品 中 國內製作이 困難한 것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및 關稅의 減免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1982년

◉ 법　　률 : 1982.11.29. 법　　률 제 3572호(국제관광공사법 부칙)
(시행일 : 1982.11.29.)
1982.12.21. 법　　률 제 3575호(시행일 : 1983. 1. 1.)
1982.12.31. 법　　률 제 3609호(시행일 : 1983. 1. 1.)
1982.12.31. 법　　률 제 3651호(중소기업진흥법 부칙)
(시행일 : 1982.12.31.)
◉ 시 행 령 : 1982. 2.18. 대통령령 제10738호(시행일 : 1982. 2.18.)
1982.12.31. 대통령령 제10980호(시행일 : 1983. 1. 1.)
◉ 시행규칙 : 1983. 2.28. 재무부령 제 1558호(시행일 : 1983. 2.28.)

〈要　　約〉

1) 앞으로 우리 經濟는 競爭原理에 의한 市場經濟體制를 擴充해 나감으로써 經濟效率을 極大化해야 할 것인바, 稅制面에서도 지나친 高稅率構造는 民間市場經濟의 暢達 내지는 活性化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이를 適正化해가는 한편 特定事業이나 特定部門에 偏重된 많은 租稅減免(多減免)은 이를 점차 줄여 가는 것(小減免)이 바람직한 經濟運用方向이 될 것이고, 租稅本然의 中立性도 回復하여 公平課稅에 接近하게 될 것이다. 이번 稅制改編에서는 所得稅 및 法人稅의 稅率이 引下 調整되어 전반적인 企業의 稅負擔은 輕減되는 만큼, 競爭制限的인 特定部門의 租稅支援은 그 幅을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즉, 鑛業·畜產業 등 一部 特定產業에 대하여 例外的으로 許容되고 있는 直接減免인 所得控除制度를 廢止 또는 縮小調整하고 機械·電子工業 등 特定產業에 대한 準備金·特別償却의 二重的인 間接減免은 準備金制度를 廢止하여 特別償却 中心으로 適用하도록 하였고,

2) 한편, 技術·人力開發을 통한 經濟構造의 質的 內實化와 中小企業의 均衡있는 發展, 對外指向的인 持續的 成長은 1980年代 우리 經濟의 基本的 發展戰略이 될 것이므로 特定產業이 아닌 技術·人力開發, 中小企業 輸出 등 戰略的 機能部分에 대하여는 所得稅와 法人稅의 稅率引下에도 不拘하고 從來의 租稅支援制度를 繼續存置하도록 하여 相對的으로 支援을 強化하는 效果를 가지도록 하였고, 특히 賦存資源 등 資本이 不足한 우리나라의 경우 國際競爭에서 이기기 위하여는 技術開發 및 革新에 의한 生產性 向上이 가장 重要한 것이므로 技術開發에 대한 租稅支援은 이를 보다 強化하였고,

3) 1979年 이래 長期間 持續된 景氣沈滯가 다소 恢復되는 趨勢라고는 하나 아직도 우리 經濟의 活性化에는 未洽하므로, 關聯產業 波及效果 및 雇傭增大效果가 큰 住宅建設을 促進함으로써 景氣活性化에 必要한 稅制上의 措置를 새로이 마련하였고,

4) 市·道醫療院, 大韓地籍公社, 韓國가스安全公社 등을 5%의 法人稅가 課稅되는 公共法人에 추가하는 한편 기타 現行制度의 運營過程에서 나타난 一部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 企業에 대한 租稅支援調整

- 重要產業·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減免縮小
- 鑛業에 대한 減免縮小
- 畜產業에 대한 減免縮小
- 海外港灣荷役·運送業에 대한 減免縮小
- 施設貸與(Lease)業에 대한 減免縮小
- 技術開發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 社員用住宅 新築時 投資稅額控除
- 租稅支援의 綜合限度縮小 등 其他

○ 讓渡所得稅 등에 대한 租稅特例調整

- 新築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率 引下
- 國民住宅建設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對象 擴大
-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對象 擴大
- 產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規定 補完
-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免除制度 改善
- 大都市內 工場의 地方移轉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要件緩和

○ 公共法人에 대한 租稅特例補完

-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 貸借對照表 無公告加算稅 適用排除
- 課稅轉換에 따른 稅務計算 特例認定
- 法人稅 申告期限 延長
- 防衛稅 未納付加算稅 適用排除 등
-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등
- 求償債權償却 充當金制度 新設

— 農·水·畜協中央會의 寄附金 特例
— 國策銀行에 대한 非營利法人稅率 適用削除
○ 非課稅利子所得 등 기타
— 非課稅利子所得의 範圍縮小
— 15% 分離課稅되는 其他所得의 範圍調整
— 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한 租稅支援調整
— 非課稅山林開發所得의 範圍擴大
— 財務構造改善 積立金에 대한 紙上配當金額計算特例 新設
— 附加價値稅의 零稅率適用 對象擴大
— 工場 등의 構內食堂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稅 新設
— 印紙稅 免稅調整
— '86아시아競技大會의 施設에 대한 關稅 등 免稅
— 租稅特例根據法律의 追加
— 公開法人要件의 特例規定 削除

〈改正內容〉

1. 企業에 대한 租稅支援調整

가. 重要產業·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한 減免縮小

1) 投資準備金制度 廢止(法 第10條·第31條·第39條)

(1) 機械·電子 등 6個業種의 重要產業·防衛產業·外國航行事業에 대하여는 종전까지 投資準備金과 特別償却의 2가지 間接支援制度를 許容하였으나, 投資準備金制度는 廢止하였다.

投資準備金制度는 1981年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時 종전 法에서 法人稅(所得稅)免除(3年間 100%, 2年間 50%) 投資稅額控除(10%, 外國產機資材는 8%) 등 直接減免 爲主로 되어있던 租稅減免을 大幅 縮小하면서 租稅減免을 一時에 縮小調整함에 따른 衝擊을 緩和하고, 企業의 內部留保促進을 支援할 目的으로 導入된 制度이다.

그러나, 1982年 稅法改正으로 稅率이 크게 引下調整됨에 따라 企業의 稅後留保所得이 自動的으로 增加하게 되므로 內部留保支援을 위한 投資準備金制度는 廢止하였고, 앞으로는 特別償却制度만으로 運用하여 企業이 이미 投下한 資本을 早期에 回收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調整內容

改　　正　　前	改　　正
— 支援產業(機械·電子·鐵鋼·造船·航空·나프타分解工業), 防衛產業, 外國航行事業	改正前과 같음
— 支援方法	
• 投資準備金 : 機械裝置價額(外國航行事業의 경우는 航空機 및 船舶價額)의 5% → 損金算入後 3年거치 3年分割還入	廢　止
• 特別償却 : 機械裝置 또는 船舶 및 航空機에 대한 一般減價償却額의 100%	改正前과 같음

〈經過措置〉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各 課稅年度의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종전의 規定에 따라 事後管理를 한 後 一時 또는 均等分割하여 益金에 算入한다.

2) 重要產業 중 機械·電子工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率 引下調整(法 第11條第2項)

機械·電子工業은 技術集約的 高附加價値產業으로서 우리나라 產業開發與件에 適合한 產業이고 또한 技術開發의 速度가 대단히 빨라 종전부터 다른 重要產業보다는 支援을 다소 強化한다는 側面에서 特別償却 100% 대신에 投資稅額控除를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投資稅額控除制度는 機械·電子工業의 開發戰略上 重要性을 勘案하여 繼續存置하되 이번 稅制改編에서 稅率이 大幅 引下됨에 따라 投資稅額控除率을 引下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投資稅額控除	— 投資稅額控除
機械裝置價額의 [10%]	機械裝置價額의 [5%]
(外國產機資材는 [6%])稅額	(外國產機資材는 [3%])
控除選擇 適用	投資稅額控除

나. 鑛業에 대한 減免縮小

資源開發事業인 鑛業에 대한 租稅減免은 稅率의 引下調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축소하였다.

1) 直接減免인 石炭增產所得 控除制度를 廢止하였다. 즉, 前年보다 石炭生產을 增產하는 경우 그 增產比率에 따라 所得金額의 30%까지 控除하던 所得控除制度를 廢止하고

2) 鑛業에 대한 準備金 중 鑛山保安施設 準備金制度는 廢止하되, 鑛山保安施設投資는 이미 制度化되어 있는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對象인 產業災害 豫防施設投資와 事實上 그 投資의 性格이 같은 것이므로 앞으로는 鑛山保安施設에 대한 投資는 特定設備投資로서 稅制支援을 適用받도록 하였고(7.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強化篇 參照)

3) 鑛業投資準備金은 重要產業 등과는 달리 採鑛, 掘進 및 廢鑛에 所要되는 費用이 큰 鑛業으로서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그 設定을 계속 認定하되 그 支援水準만을 下向 調整하였으며

4) 鑛業에 대한 特別償却制度는 重要產業 중 다른 產業에서와 같은 취지로 그대로 存置하였다.

改正前	改正
가. 石炭增產所得控除 : (所得金額 30% 限度)	廢止
나. 鑛山保安施設 準備金 : 收入金額의 3% 損金算入 → 3年거치 3年均等分割 還入	特定設備投資 稅額控除로 轉換
다. 鑛業投資準備金 : 收入金額의 5% (海外資源開發事業은 10%) 損金算入 → 3年거치 사용후 3年均等分割 還入	鑛業投資準備金 收入金額의 2% (海外資源開發事業은 5%) 損金算入 → 3年거치 사용후 3年均等分割 還入
라. 特別減價償却 : 機械裝置價額에 대한 一般減價償却額의 100%(石炭鑛夫社宅은 50%)	改正前과 같음

〈經過措置〉

- 石炭鑛業에 대한 石炭增產所得控除는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 종전의 規定에 의한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고, 所得控除를 받음으로 인하여 積立한 廢鑛積立金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 事後管理를 계속 適用받는다.
-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鑛山保安施設準備金을 設定하여 損金에 算入할 수 있고,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事後管理한 後 一時 또는 均等分割하여 益金에 算入한다.

5) 100% 特別減價償却을 適用하는 鑛業의 範圍調整(令 別表 7)

100% 特別償却이 適用되는 鑛業의 範圍에 重要鑛種인 사문석과 토륨광을 새로이 追加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金·銀·鐵鑛 등 22個 鑛物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사문석 ○ 토륨광

다. 畜產業에 대한 租稅支援 調整

1) 企業畜產에 대한 所得控除 縮小(法 第37條)

畜產業에 대해 許容해온 直接減免인 所得控除制度는 稅率이 引下調整됨에 따라 所得控除率을 下向 調整하였다.

2) 農家副業所得에 대한 非課稅範圍 擴大(所得稅法 施行令 別表 3)

反面에 農家가 副業으로 營爲하는 畜產業에 대하여는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農家副業規模의 畜產範圍를 現實性있게 上向調整하여 畜產業의 底邊을 擴大하고, 農家所得을 實質的으로 增大할 수 있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가. 企業畜産에 대한 所得控除	○ 所得金額의 50%		所得金額의 20%
나. 農家副業規模의 畜産範圍		非 課 稅 限 度	非 課 稅 限 度
	젖 소	10마리 이하	20마리 이하
	소	20 〃 〃	30 〃 〃
	돼 지 산 양 면 양	각각 100마리 이하	각각 150마리 이하
	닭 토 끼 오 리	각각 1,000마리 이하	각각 3,000마리 이하

〈經過措置 및 適用例〉

- 1982年度中에 企業畜産業을 開始한 者는 殘存減免期間동안 종전의 規定에 따라 50% 所得控除를 받게 되며
- 農家副業畜産의 경우에는 1983年 1月 1日 이후부터 改正된 農家副業畜産規模에 의하여 所得稅를 非課稅받게 된다.

라. 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에 대한 租稅支援 縮小(法 第26條·第27條·第28條)

海外港灣荷役·運送·保管事業에 대하여는 海外事業所得控除 등이 適用되는 海外事業範圍에서 除外하여 일반적인 外貨獲得事業으로서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과 똑같이 租稅支援을 받도록 하였다.

調 整 內 譯

改 正 前	改 正
〔海外事業으로 支援〕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으로 支援〕
○ 海外事業所得控除(法 §26) : 外貨收入金額의 2%(所得金額의 50% 限度)	○ 輸出損失準備金(法 §22) : 外貨收入金額의 1%(所得金額의 50%限度)損金算入 → 1年거치 3年均等分割還入
○ 海外事業損失準備金(法 §27) : 外貨收入金額 2% 損金算入 → 4年据置 3年均等分割還入	○ 海外市場開拓準備金(法 §23) : 外貨收入金額의 1% 損金算入 → 1年据置 3年均等分割還入
○ 特別減價償却(法 §28) : 海外事業用 重機械裝置에 대한 30%特別償却	○ 特別減價償却(法 §25) : 外貨收入金額의 比率에 따라 30%까지 特別償却

〈經過措置 및 適用例〉

-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는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만 종전의 規定에 따라 所得控除를 받을 수 있으며, 控除받은 所得金額에 대한 稅額相當額에 대하여는 法 第90條 내지 第92條의 規定에 따라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積立하여야 하고 계속 事後管理를 받게 된다.
- 海外事業損失準備金 및 特別償却은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 適用받고, 1983年 1月 1日 이후 開始한 課稅年度부터는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으로서 支援을 받는다.
- 1982年 12月 31日 以前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海外事業損失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할 수 있고,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서 益金에 算入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종전의 規定에 따라 事後管理한 後 一時 또는 均等分割하여 益金에 還入한다.

마. 施設貸與(Lease)業에 대한 減免縮小(法 第53條, 令 第43條)

施設貸與會社에 대하여도 重要產業 등 다른 特定產業에서와 같은 취지로 內部留保促進을 위한 準備金制度는 廢止하고, 特別償却의 경우 12時間 以上 사용한 機械裝置에 대하여 許容되는 特別償却率을 20% 水準으로 引下 調整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施設貸與損失準備金 : 施設貸與價額의 2% 損金算入 → 翌年度 益金 算入 ○ 特別減價償却 :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 또는 技術用役事業에 대하여 貸與한 施設價額에 대한 一般減價償却의 50%	廢 止 ○ 特別減價償却 : …… …… …… …… 20%

〈經過措置 및 適用例〉

- 1982年 12月 31日 이전에 開始한 課稅年度까지 종전의 規定에 따라 準備金을 설정하여 損金에 算入할 수 있고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으로 益金에 還入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從前의 規定에 따라 益金에 還入한다.
- 引下된 特別減價償却率은 1983年 1月 1日 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分부터 適用한다.

바. 技術開發을 위한 租稅支援 強化

技術·人力開發에 대한 租稅支援은 1981稅法改正時 大幅 強化한 바 있고 이번 稅法改正에서도 다른 分野의 稅制支援은 縮小調整하면서도 技術·人力開發分野에 대한 稅制支援은 稅率引下에도 不拘하고 계속 維持함으로써 相對的으로 支援을 強化하는 한편 企業의 新技術硏究開發活動(R&D)을 支援하는 制度는 오히려 強化하여 技術革新을 통하여 國際競爭力을 提高토록 하였다.

1) 硏究試驗用施設에 對한 一時償却率 引上(法 第18條第2項)

最近 國內外의 産業社會에 있어 技術開發의 속도가 대단히 빠른 점을 감안하여 硏究試驗用 施設에 대한 一時償却率을 大幅 引上하였다.

適用對象	改正前		改正	
硏究試驗用機械및裝置	○ 10%(外國産機資材는 8%)稅額控除 ○ 50% 一時償却	중 擇 一	○ 10%(外國産機資材는 8%)稅額控除 ○ 90% 一時償却	중 擇 一

2) 試驗硏究用 見本品 및 硏究開發用品 輸入時 特別消費稅 및 關稅의 免除(法 第75條第6號, 第83條第1項第5號)

企業附設硏究所 또는 中小企業이 共同으로 設立한 産業技術硏究組合이 新製品·新技術을 開發함에 있어서 國內生産이 困難하여 外國에서 輸入하는 見本品·開發用品에 對하여는 特別消費稅 및 關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改正前	改正
〈新設〉	○ 試驗硏究用 見本品 → 特別消費稅免除 ○ 硏究開發用品 → 關稅免除

사. 特定設備投資에 對한 租稅支援 強化(法 第71條, 令 第57條)

1) 適用時限延長

內國人이 에너지 節約施設·公害防止施設 등 特定設備에 投資를 한 경우에는

- 投資金額의 10%(外國産機資材는 6%)의 稅額控除
- 取得價額의 50% 一時償却

중 擇一

하여 租稅支援을 適用받을 수 있는 바, 이러한 特定設備에 對한 投資를 계속 誘導하기 위하여 종래 1983.12.31까지로 되어 있던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租稅支援適用時期를 延長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의 時限인 1986年 12月 31日까지 繼續 租稅支援을 하도록 하였다.

2) 特定設備投資의 範圍擴大

特定設備投資의 範圍에 「鑛山保安法에 의한 鑛山保安支援施設」을 追加하여 産業災害豫防施設과 衡平을 맞추고 鑛夫의 安全事故와 災害를 防止하기 위한 投資를 誘導하도록 하였다.

鑛山保安施設의 具體的인 範圍는 施行規則에서 정하고 있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가. 適用時限	1983. 12. 31	1986. 12. 31
나. 特定設備의 範圍	• 에너지節約施設 • 公害防止施設 • 産業災害豫防施設 •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에 의하여 母企業이 受給企業에 設置하는 檢査臺 및 試驗硏究施設	改正前과 같음
	(追 加)	• 鑛山保安施設

아. 社員用 住宅新築時 投資稅額控除 新設(法 第72條의2, 令 第57條의3)

企業이 住宅을 新築하여 無住宅 從業員에게 賃貸하는 경우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도록 함으로써 企業이 低廉한 賃貸住宅供給을 통하여 住宅供給을 擴大하는 한편 從業員의 住居生活安定에 기여할 수 있도록 稅制上 뒷받침하였다.

1) 投資稅額控除 對象者

無住宅從業員(出資者인 任員은 除外)에게 賃貸하기 위하여 住宅의 總面積이 50m²(15坪) 이하인 住宅을 住宅建設 事業單位當 20戶 이상 新築하는 內國人으로서

(1) 個人의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20條에 規定하는 事業을 營爲하는 者

(2) 法人企業의 경우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의한 納稅義務가 있는 內國法人(非營利法人을 包含하되 法 別表 Ⅰ에 해당하는 公共法人은 법 第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適用이 排除된다)

2) 投資稅額控除

(1) 當該住宅을 竣工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住宅新築金額의 10%(外國産機資材를 사용하여 新築한 경우 6%)를 控除한다.

(2) 50m²(15坪) 이하인 社員用 賃貸住宅과 其他의 住宅을 함께 新築한 경우 控除稅額의 計算은 다음과 같이 한다.

$$\text{住宅新築金額} \times 10\%(\text{또는 } 6\%) \times \frac{\text{社員用 賃貸住宅의 總延面積}}{\text{住宅의 總延面積}}$$

(3) 住宅新築金額의 範圍

投資稅額控除對象이 되는 住宅新築金額은 法人稅施行令 第48條第2項 및 所得稅法施行令 第86條第1項에 規定한 取得價額으로 하되 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경우에는 그 買入代金도 包含한다.

3) 低價賃貸時 課稅排除(不當行爲計算否認의 適用排除)

無住宅 從業員에게 住宅을 低廉한 價格으로 賃貸하는 경우에도 所得稅法 第55條 및 法人稅法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不當行爲計算規定의 適用을 排除하여 低廉한 價格으로 賃貸함에 따른 經濟的 利益에 對하여 所得稅 및 法人稅의 課稅素地를 없앴다.

4) 住宅新築計劃書 등 提出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고자 하는 者는 다음의 書類를 保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1) 住宅新築을 着工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住宅新築計劃書(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경우에는 그 土地의 不動產登記簿 謄本을 添附하여야 한다)

(2) 住宅을 竣工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竣工報告書

5) 其 他

稅額控除를 받은 新築住宅을 竣工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終了日로부터 5年 이내에 讓渡하거나 無住宅從業員 以外의 者에게 賃貸 또는 다른 目的에 轉用한 때에는 控除받은 稅額을 追徵한다.

자. 租稅支援의 綜合限度 縮小 등 其他

1) 租稅支援의 綜合限度 縮小調整(法 第88條)

租稅支援이 不可避하더라도 所得이 있는 경우에는 누구나 最小限의 稅負擔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1981年 稅法改正時 最低限稅(Minimum Tax)를 導入하여 一般企業에 대하여는 租稅支援手段別(準備金, 特別償却, 所得控除, 稅額控除)로 綜合限度를 두고 있는 바, 이번 稅法改正으로 稅率이 引下調整됨에 따라 從前의 綜合限度를 계속 適用하는 경우 企業의 稅負擔水準이 지나치게 낮아지기 때문에 稅率引下 效果를 相殺시키지 아니하는 範圍內에서 綜合限度를 縮小調整하였다.

支 援 手 段 別	改 正 前	改 正
각종 準備金·特別償却	總所得의 60% 이내	總所得의 50% 이내
각종 準備金·所得控除	課稅所得의 50% 이내	改正前과 같음
각종 準備金·稅額控除	算出稅額의 40% 이내	算出稅額의 30% 이내

2) 從前法 經過措置에 대한 租稅支援綜合限度의 適用(法律 第3481號 附則 第15條 후단 新設)

從前法 附則(法律 第3481號 1981. 12. 31 全文改正) 第16條 내지 第18條의 經過措置規定에 따라 增資所得控除·重要產業減免 및 畜產業減免을 받는 경우 法 第88條의 規定에 의한 租稅支援의 綜合限度를 適用받는지 與否가 從前法 附則으로는 不分明하였는 바, 이번 稅法改正에서 이를 補完하여 1981稅法改正의 經過措置로 繼續減免을 받는 경우에도 綜合限度의 適用을 받도록 明文化하였다.

〈圖 示〉

綜合限度 縮小調整에 따른 稅負擔比較(防衛稅·住民稅 包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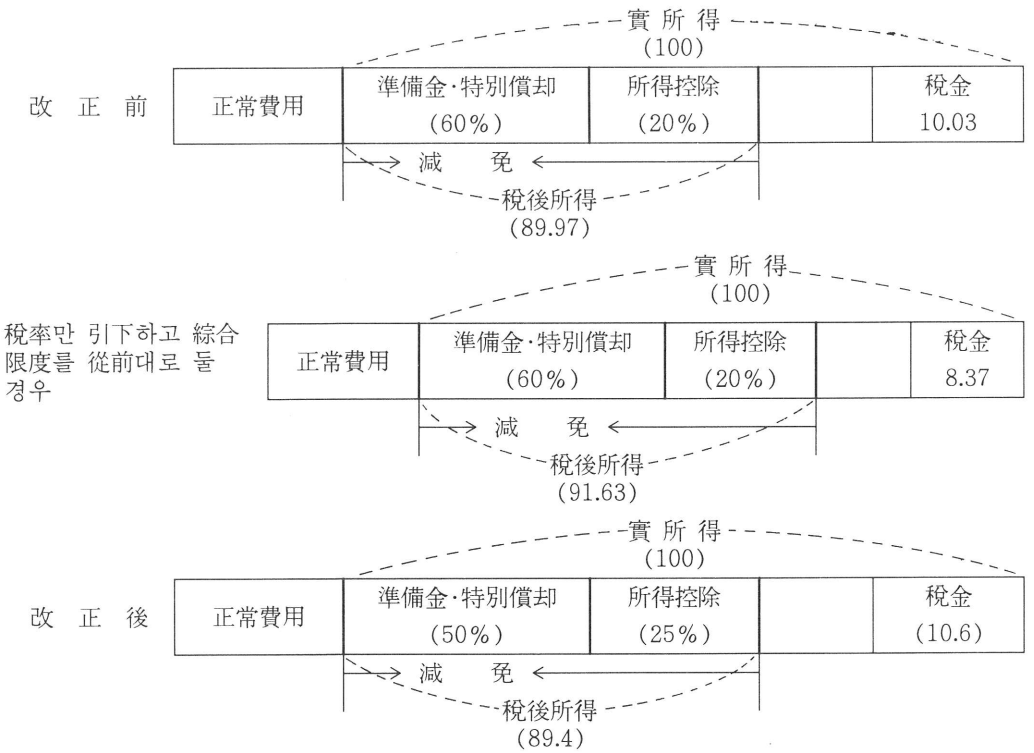

※ (1) 改正前後의 法人稅의 最高稅率로 比較

(2) 租稅支援을 最大限으로 받는 경우임.

3) 投資稅額控除를 받은 資產處分時 控除稅額追徵 對象擴大(法 第92條第1項)

租稅減免規制法上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은 資產을 投資한 날로부터 5年 이내에 處分(賣却 등)하는 경우에는 控除받은 稅額에 利子相當加算額을 加算하여 追徵토록 하고 있는 바, 이의 適用對象을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機械·電子工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 新技術企業化 事業投資 稅額控除 ○ 地方移轉事業 稅額控除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特定設備投資 稅額控除 ○ 臨時投資 稅額控除

4) 利子相當加算稅의 追徵率 引下調整(法 第13條第4項·第92條, 令 第7條·第65條)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控除 또는 免除받은 稅額 100원에 대해 日邊 10錢(年 36.5%)에 相當하는 利子相當加算額을 함께 追徵하고 있으나 現行 金融機關의 延滯金利水準을 감안하여 追徵率을 日邊 6錢(年 21.9%)으로 大幅 引下調整하였다.

(1) 投資準備金·技術發展 및 地方移轉準備金 一定期間內에 所定用途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當該 準備金을 益金에 算入하는 경우(法 第13條第4項)

(2) 法人稅를 減免 또는 控除받은 法人이 積立한 企業合理化積立金을 移越缺損金의 補塡이나 資本의 轉入 以外의 用途에 處分하거나(法 第92條第1號) 또는 所得稅를 減免 또는 控除받은 個人이 減免 또는 控除받은 稅額相當額을 固定資產에 대한 投資나 長期 借入金의 償還에 使用하지 아니하는 경우(법 第92條第3號)

(3) 投資稅額控除를 받은 당해 事業用資產을 5月 이내에 處分하는 경우(法 第92條第2號)

改 正 前	改 正
100원에 대한 日邊 10錢(年 36.5%)	100원에 대한 日邊 6錢(年 21.9%)

5) 其 他

각종 租稅特例規定이 新設 또는 廢止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補則에서 規定하고 있는

○ 區分經理(法 §86)

○ 重複支援의 適用排除(法 §87)
○ 租稅支援에 관한 綜合限度(法 §88)
○ 控除稅額의 移越控除(法 §89)
○ 推計時 稅額計算의 特例(法 §90)
○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法 §91)
○ 減免控除稅額의 追徵(法 §92) 등
關聯條文의 字句를 整理하였다.

2. 讓渡所得稅 등에 대한 租稅特例調整

가. 新築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率 引下(法 第67條의2, 令 第55條의2)

雇傭과 關聯產業에 波及效果가 큰 國內住宅景氣를 實需要 中心으로 浮揚함으로써 經濟活性化를 도모하기 위하여 一定期間內 取得한 新築住宅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率을 引下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引下稅率

法에서 규정한 內容	引下稅率(實行稅率) 〔施行令規定事項〕
가. '82.5.18~'83.6.30까지 取得한 新築住宅 5% 까지 引下可能 나. '83.7.1~'84.6.30까지 取得한 新築住宅 중 국민주택은 5%까지 引下可能 기타주택은 20% 〃	가. '82.5.18~'83.6.30까지 取得한 新築住宅 5% 로 施行 '83상반기에는 不動產景氣를 감안하여 정할 예정임(未定)

2) 新築住宅의 槪念

(1) 1982. 5. 18부터 1984. 6. 30까지 住宅을 新築하여 不動產 登記簿에 保存登記한 住宅을 原則으로 한다.

(2) 다만, 住宅建設業者가 新築하여 不動產登記簿에 保存登記한 住宅으로서 1982. 5. 18 現在 住宅建設業者의 所有로 되어 있는 住宅도 포함된다. 이는 原則的으로 1982. 5. 18부터 1984. 6. 30사이에 新築하여 保存登記한 住宅이 讓渡所得稅率의 引下惠澤을 받는 것이지만 住宅建設業者가 分讓할 住宅을 新築한 경우에는 1982. 5. 18이전에 新築하여 所有權保存登記를 하였더라도 1982. 5. 18 現在의 在庫住宅은 讓渡所得稅 引下惠澤을 받을 수 있는 新築住

宅으로 된다는 뜻이다.

이 경우에 1982. 5. 18 現在 住宅建設業者의 所有로는 되어 있어도 住宅建設業者가 割賦 또는 延拂 條件으로 賣買契約을 체결한 住宅은 除外된다.

(3) 다음의 住宅은 新築住宅에서 除外된다.

○ 所得稅法 第5條第6號(자)의 규정에 의한 高級住宅

○ 未登記 讓渡住宅

○ 國稅廳長이 정하는 特定地域內의 住宅

3) 引下된 讓渡所得稅率의 適用要件

(1) 住宅建設業者가 아닌 居住者가 住宅을 新築하는 경우

不動產登記簿에 居住者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는 것. 이때 新築住宅의 所有權保存登記는 1982. 5. 18부터 1984. 6. 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2) 住宅建設業者가 住宅을 新築하는 경우

住宅建設業者가 新築하여 所有權保存登記한 住宅을 住宅建設業者로부터 最初로 取得하여 不動產登記簿에 所有權移轉登記를 한 居住者가 당해 新築住宅을 讓渡할 때 引下된 稅率이 適用된다. 이때, 所有權移轉登記는 1982. 5. 18부터 1984. 6. 30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1984. 6. 30 現在 住宅建設業者로부터 所有權移轉登記를 받지 못한 狀態에 있는 경우, 즉 1984. 6. 30 現在 分讓만 받았든가 所有權移轉登記없이 割賦 또는 延拂條件으로 賣買契約만 체결되어 있는 住宅은 引下된 稅率이 適用되지 않는다.

4) 綜合所得稅 比較課稅 適用排除

新築住宅에 대하여 讓渡所得稅의 引下稅率을 適用하는 경우에는 所得稅法 第70條第8項의 規定에 의한 綜合所得稅 比較課稅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나. 國民住宅 建設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擴大(法 第62條, 令 第50條)

종전에는 85m²(25.7坪) 이하의 아파트建設用地에 대하여만 讓渡所得稅를 全額免除하고 있던 것을 85m²(25.7坪) 이하의 單獨·聯立住宅의 建設用地로 讓渡하는 경우에도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全額免除토록 하여 小規模 國民住宅의 供給을 促進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免除對象	• 아파트地區內 土地를 85m²(25.7坪) 이하의 아파트建設用地로 讓渡하는 경우	• 85m²(25.7坪) 이하의 聯立·單獨住宅建設用地로 讓渡하는 경우 追加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免除方法	• 土地讓渡時 : 讓渡所得稅 事前免除	• 住宅建設登錄業者·住宅公社에게 讓渡時 : 讓渡所得稅 事前免除 • 기타 住宅建設實需要者에게 讓渡時 : 住宅준공(土地讓渡日로부터 3年 이내)後 讓渡所得稅 事後還給
• 事前免除時의 追徵事由	• 建設部長官의 事業計劃書上의 竣工日까지 아파트를 竣工하지 않은 경우 土地買入者인 建設業者에게 追徵	아파트建設時는 改正前과 같음.
	(新　設)	• 아파트가 아닌 聯立·單獨住宅 建設時는 土地買入日로부터 3年 이내 住宅을 建設하지 않은 경우 土地買入者인 建設業者에게 追徵

다.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對象 擴大(法 第45條)

讓渡所得稅는 資產의 讓渡·交換뿐만 아니라 法人에 現物出資를 할 때도 課稅된다. 그러나 종래부터 個人事業을 영위하던 個人이 當該事業體를 法人으로 轉換함으로써 現物出資하게 되는 土地·建物에 대하여는 事業의 繼續性과 企業의 法人化를 支援하는 側面에서 現物出資로 인한 讓渡所得稅를 免除하여 왔다. 그런데 從前에는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個人事業, 즉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으로서 常時 從業員數 300人(建設業은 50人) 이하이거나 有形固定資產 價額이 3億원 이하인 事業을 영위하는 個人만이 그 事業을 法人으로 轉換할 때 讓渡所得稅가 免除되도록 되어 있어 오히려 法人化할 필요가 더 절실한 規模가 큰 個人事業體는 讓渡所得稅의 負擔으로 인하여 個人事業의 法人化가 어려웠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 및 水產業을 營爲하는 居住者는 從業員數, 有形固定資產 價額의 規模에 關係없이 法人轉換에 따른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適用事業者	• 中小企業을 營爲하는 個人	• 企業規模에 관계없이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 또는 水產業을 營爲하는 모든 個人

※ 中小企業의 範圍(令 第12條)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을 營爲하는 居住者로서

- 常時從業員數 300人(建設業은 50人) 이하이거나
- 또는 有形固定資產 價額이 3億원 以下인 경우

라. 產業合理化에 대한 租稅特例規定 補完(法 第46條第5項, 令 第40條第2項)

租稅減免規制法 第46條第1項 및 第2項과 第47條에 의하면 產業合理化對象으로 指定된 產業 또는 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產業合理化對象產業 또는 企業의 指定이나 指定되는 合理化對象產業 또는 企業에 대한 合理化基準은 「產業政策審議會」가 정한다) 相互間에 資產을 讓受渡하거나 現物出資를 한 때에는 그 讓渡差益에 대하여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하고 合併을 하는 경우에는 登錄稅 또는 取得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指定產業 또는 企業이 合理化基準에 의거 合併이나 資產의 讓受渡를 하는 過程에서는 規模經濟를 초과하는 過多한 不用資產이 생길 수가 있다. 따라서 產業合理化措置에 의한 企業의 統廢合 등이 우리經濟 全體의 不實化를 除去하고, 건전한 產業調整이 本來의 취지라면 직접적인 產業合理化 過程인 事業用資產의 相互讓受渡過程에서 뿐만 아니라 合併이나 讓受渡後에 合併存續法人 또는 事業用資產을 讓受받은 法人이 不用資產을 賣却할 때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排除할 필요가 있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指定產業 또는 企業이 合理化基準에 의한 合併이나 資產의 讓受를 한 후 發生하는 不用資產을 經營合理化 내지 財務構造改善을 위하여(不用資產의 範圍와 處分期限은 合理化基準에서 미리 정해야 한다) 一定期限內에 處分하는 경우에도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圖 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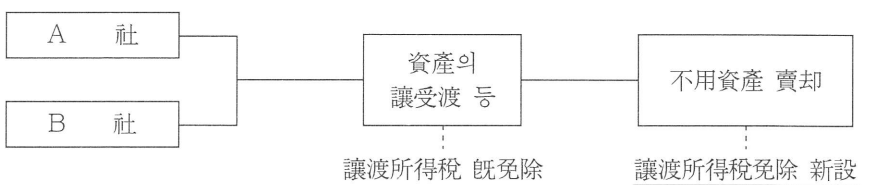

마.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制度改善(法 第58條, 令 第47條의2)

1) 免除時限調整을 통한 免除擴大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都市再開發區域內의 土地 및 建物을 再開發事業 施行者에게 讓渡할 때에는 종전부터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가 免除되어 왔고 免除받

을 수 있는 要件은 都市再開發法에 의한 再開發事業施行의 認可日로부터 당해 再開發事業에 관한 工事完了公告日 이후 1年이 되는 날까지의 期間中에 讓渡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都市再開發事業 施行節次를 보면

(1) 建設部長官이 都市計劃으로 指定告示한 再開發區域內의 土地 등의 所有者가 그들이 設立한 組合이 再開發事業을 하도록 하되(都市再開發法 第9條)

(2) 이들이 一定期間內에 施行認可申請을 하지 않을 경우 등의 事由가 있을 때는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再開發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特殊法人 중에서 再開發事業 施行者로 指定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고(都市再開發法 第10條)

(3) 이들 地方自治團體·大韓住宅公社 또는 再開發事業을 目的으로 設立된 特殊法人등으로서 再開發事業者로 指定된 者가 일정기한내에 再開發事業의 認可申請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事由가 있을 때는 일정 要件을 갖춘 第3開發者를 指定하여 再開發事業을 施行하게 할 수 있다.(都市再開發法 第11條)

이와 같이 再開發區域으로 告示된 地域內의 土地所有者가 그들이 設立한 組合의 경우를 除外하고는 모두 再開發事業 施行者로 먼저 指定을 받은 뒤에 事業認可를 받아야 되는데 종전에는 再開發事業 施行者가 事業認可를 받은 날 이후 買入하는 土地 등에 대해서만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免除했으나 앞으로는 土地所有者나 그들이 設立한 組合이 아닌 都市再開發法 第10條 또는 第11條의 규정에 의한 再開發事業 施行者에게 讓渡하는 때에는 再開發事業 施行認可를 받기 전이라도 再開發事業者로 指定만 되고 나면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여 第3開發者 등을 통한 再開發事業을 원활히 推進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반면에 종래에는 都市再開發事業의 支援을 위한 讓渡所得稅 등의 免除時 追徵 등의 事後管理指定 등이 없었으나,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이 점을 補完하였다.

2) 免除稅額에 대한 追徵事由 新設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事後管理를 強化하여 첫째, 第3開發者 등이 事業施行者로 指定받는 날로부터 1年 이내에 再開發事業 施行認可를 받지 아니하거나, 둘째, 事業施行認可를 받은 事業施行者가 建設部長官으로부터 認可받은 事業計劃書上 工事完了日까지 당해 再開發事業을 完了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免除한 讓渡所得稅 등을 買受者(事業施行者)로부터 所得稅 또는 法人稅로서 追徵하도록 新設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 免除擴大	• 都市再開發區域內의 土地 등을 都市再開發事業 施行認可後 讓渡하는 경우	改正前과 같음
	(新 設)	• 都市再開發區域內의 土地 등을 事業施行者로 指定된 者에게 同指定日이후 讓渡하는 경우 追加
• 追徵事由	(新 設)	• 事業施行者로 指定받은 날로부터 1年 이내 再開發事業 施行認可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 事業施行認可를 받은 事業施行者가 建設部長官으로부터 認可받은 사업시행계획서상 工事完了日까지 당해 사업을 完了하지 아니하는 경우

바. 大都市內 工場의 地方移轉 및 市內버스駐車場 移轉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要件 緩和(令 第36條第4項·第52條第3項)

大都市內의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거나 2年 이상 사용한 市內버스駐車場을 移轉하기 위해 舊工場 또는 舊駐車場을 讓渡하는 때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되어 있는 바 工場이나 駐車場을 먼저 移轉하고 舊工場 또는 舊駐車場을 讓渡하는 경우 종래에는 舊工場 등의 處分期限을 1年으로 하고 있었으나 大規模 工場用土地 등을 일시에 處分하기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舊工場用土地 등의 處分期限을 1年에서 2年으로 연장함으로써 正常的인 企業活動을 支援토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大都市內 工場의 地方移轉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完了하고 事業을 開始한 날로부터 [1年] 이내 舊工場을 讓渡하는 경우	.... [2年] .....
市內버스 駐車場의 移轉	事業改善(移轉)命令을 받은 날로부터 [1年] 이내 讓渡하는 경우 免除	.... [2年] ....

3. 公共法人에 대한 租稅特例 補完

가. 公共法人의 範圍調整(法 第8條 및 別表 Ⅰ)

最低限稅(Minimun Tax)인 5%의 法人稅가 課稅되는 公共法人의 範圍에 國家業務를 代行하는 등 公共性이 큰 市·道醫療院, 別定郵遞局 등 5個法人을 새로이 追加하고, 公共法人 相互間에 統廢合되었거나 設立根據法이 變更됨에 따라 公共法人의 範圍를 一部 調整하였다.

公共法人의 範圍

改正前	改正
○ 大統領令이 정하는 서울올림픽大會 推進團體	○ 財團法人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
○ 韓國技術檢定公團	○ 韓國職業訓練管理公團
○ 職業訓練法人	
○ 公務員年金特別會計 및 基金의 設置運營 등에 관한 法律에 의하여 設立된 公務員年金管理公團	○ 公務員年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公務員年金管理公團
○ 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 韓國産業經濟技術硏究院
○ 國際經濟硏究院	
(追加)	○ 別定郵遞局聯合會
	○ 韓國가스安全公社
	○ 地方公社 市·道醫療院
	○ 大韓地籍公社
	○ 韓國漁船協會

나. 賃借對照表 無公告加算稅 適用排除(法 第8條第5項)

公共法人은 대부분 그 設立根據法 등에서 決算書類의 公告에 관하여 別途의 特別規定을 두고 있거나 主務官廳으로부터 會計에 관한 監督을 받고 있으므로 法人稅法에 의한 賃借對照表 無公告加算稅(算出稅額의 10%와 收入金額의 0.5% 중 多額)의 適用을 排除토록 하여 決算書類公告에 따른 煩雜과 經費의 二重負擔이 없도록 하였다.

다. 課稅轉換에 따른 稅務計算特例 認定(法 附則 第14條)

1981年 稅法改正時 과거 전혀 法人稅를 물지 않던 公共法人에 대하여도 1982. 1. 1 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는 5%의 法人稅를 課稅토록 한 바 있다.

따라서 1982年 이후부터는 公共法人도 稅務計算上으로는 法人稅法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所得計算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81년 이전까지는 非課稅되었기 때문에 法人稅法의 規定과는 關係없이 在庫資產을 評價하거나 減價償却費를 計上하는 등 法人이 임의로 會計處理를 해왔던 실정이었다. 이와같은 法人의 獨自的인 會計慣行을 課稅로 轉換시키는 過程에서 어떻게 處理할 것인가에 관하여 從前法에서는 明確하지 않았던 것을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經過措置를 新設補完하여 1982課稅年度부터 適用토록 함으로써 公共法人의 納稅便宜를 기하도록 하였다.

1) 適用對象法人

○ 法 別表1의 公共法人

○ 1982. 1. 1 이후 法人稅가 正常課稅되는 다음의 8個法人

- 韓國外換銀行
- 中小企業銀行
- 國民銀行
- 韓國住宅銀行
- 浦項綜合製鐵(株)
- 韓國證券金融(株)
- 韓國觀光公社
- 大韓敎育共濟會

2) 課稅轉換에 따른 稅務計算 特例內容

(1) 1981. 12. 31 이전에 收益事業을 開始한 公共法人이 法人稅法에 의하여 所定期限內에 申告하여야 할 在庫資產 評價方法이나 減價償却方法을 稅務署에 申告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1982課稅年度(이하 「基準課稅年度」라 함)에도 繼續하여 1981年 이전과 같은 方法으로 在庫資產을 評價하거나 減價償却費를 計上한 경우에는 法人稅法에 의거 適法하게 그 計算方法을 申告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2) 在庫資產評價 및 減價償却方法 變更申告 特例

「基準課稅年度」부터 在庫資產 評價方法이나 減價償却法을 變更하고자 할 경우에는 法人稅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基準課稅年度의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評價 및 償却方法의 變更申告를 할 수 있도록 特例를 認定하였다.

(3)「基準課稅年度」開始日 이전에 取得한 資產의 減價償却 基礎價額

「基準課稅年度」의 直前課稅年度 終了日 現在의 帳簿價額을 基礎로 向後 減價

償却費를 計上토록 하였다.

(4) 退職給與充當金의 認定特例

「基準課稅年度」의 直前課稅年度 終了日 現在의 退職給與充當金 累計額이 法人稅法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計算한 限度를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金額은 稅務計算上 直前課稅年度의 課稅所得計算時 損金에 不算入한 것으로 보도록 하여(稅務計算上 退職給與充當金으로 認定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退職給與充當金 設定이 可能하도록 하였다.

라. 法人稅 申告期限 延長(法 第8條第4項, 令 第5條第3項 내지 第5項)

公共法人은 大部分 그 設立根據法이나 企業豫算會計法 등에서 決算確定節次 등에 관하여 별도로 規定하고 있기 때문에 法人稅法이 定한 申告期限內에 課稅標準과 그 稅額을 申告할 수 없는 問題點이 있어 公共法人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申告期限에 관한 特例를 認定토록 하였다.

1) 申告期限의 延長

公共法人의 決算確定에 관하여 規定하는 法律이 따로 있어 法人稅法上의 期限內에 課稅標準申告를 할 수 없는 公共法人은 申請에 의하여 課稅年度 終了日後 60日이 되는 날부터 2次에 걸쳐 각 1월씩 申告期限을 延長받을 수 있다.

2) 承認申請 및 通報

(1) 承認申請

申告期限을 延長받고자 하는 公共法人은 課稅年度 終了日로부터 45日 이내에 申告期限 延長承認申請書를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2) 承認通報

申告期限延長申請을 받은 稅務署長은 그 申請을 받은 날로부터 10日 이내에 承認與否를 當該 公共法人에게 通報하여야 한다.

마. 防衛稅 未納付加算稅 適用排除 등(法律 第3481號, 附則 第5條)

1) 防衛稅 未納付加算稅 適用排除

1981年 稅法改正으로 과거 法人稅를 全額 免除받던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1982. 1. 1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는 5%의 法人稅를 課稅하게 됨에 따라 稅務處理能力을 갖출 수 있는 準備期間을 賦與하기 위하여 1983年 12月 31日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 法人稅 過少申告加算稅와 過少申告에

따른 法人稅 未納付加算稅의 適用을 排除하고 있는 바 그와같은 法人稅의 過少申告와 未納付에 따라 自動的으로 發生하게 되는 法人稅分 防衛稅의 未納付加算稅도 1983. 12. 31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는 그 適用을 排除토록 補完하였다.

2) 適用對象法人의 擴大

1981年 稅法改正으로 과거 法人稅를 全額 免除받다가 1982. 1. 1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 正常課稅로 轉換된 國策銀行 등 다음의 法人에 대하여도 公共法人에서와 똑같이 稅務處理適應能力의 問題가 있기 때문에 1983年 12月 31日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는 法人稅 過少申告加算稅와 過少申告에 따른 法人稅 未納付加算稅 및 그에 따라 自動的으로 發生하게 되는 法人稅分 防衛稅의 未納付加算稅의 適用을 排除토록 補完하였다.

- ○ 韓國外換銀行
- ○ 中小企業銀行
- ○ 國民銀行
- ○ 韓國住宅銀行
- ○ 浦項綜合製鐵株式會社
- ○ 大韓敎員共濟會
- ○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
- ○ 韓國觀光公社

바.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등

1)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 追加(法 第9條第2項)

公共法人 중에서 規模가 零細하여 稅務會計能力이 不足한 信用協同組合 등 7個類型의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稅法이 規定하는 方法으로 課稅標準을 計算하는 것이 아니라 企業會計基準에 의한 當期純利益 自體를 課稅標準으로 하도록 特例를 認定하여 왔다.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農地改良組合」도 旣存의 零細公共法人에서와 같은 理由로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에 追加하는 한편 「韓國銀行」에 대하여도 無資本特殊法人인 中央銀行의 特殊性을 考慮하여 企業會計基準에 따라 作成한 決算財務諸表上의 當期純利益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5%의 法人稅를 課稅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 ○ 單位農業協同組合 및 特殊農業協同組合 ○ 地區別·業種別 畜產業協同組合 ○ 地區別·業種別 水產業協同組合 ○ 業種別 協同組合 및 協同組合聯合會 ○ 山林組合의 契 ○ 葉煙草生產組合	改正前과 같음
(追　　加)	· 農地改良組合 · 韓國銀行

2) 複式簿記 不履行에 따른 無記帳加算稅 適用排除(法 第9條第4項)

當期純利益으로 課稅하는 公共法人은 稅務處理能力이 不充分한 以外에 大部分 現金水準에 의한 會計方式으로 할 必要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公共法人(韓國銀行은 除外)에 대하여는 法人稅法이 要求하는 複式簿記方法이 아닌 單式簿記의 方法에 의하여 帳簿를 記帳하는 경우에도 法人稅法 第41條第1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無記帳加算稅(算出稅額의 30%와 收入金額의 0.1% 중 多額)의 適用을 排除토록 하였다.

사. 求償債權償却 充當制度 新設(法 第54條, 令 第44條의2)

中小企業 등이 金融機關으로부터 貸出을 받을 때, 信用保證을 主事業으로 하는 信用保證基金과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은 零細한 中小企業 등에 대하여 사실상 回收하기 어려운 巨額의 不實債權(保證해준 中小企業 등의 債務를 代拂한데 따른 求償債權)을 안고 있어 法人稅課稅 所得金額을 正確히 計算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一般 營利法人의 貸損充當金과 같은 趣旨에서 求償債權 償却充當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適用對象法人

○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保證基金

○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

2) 充當金 設定限度

當該 課稅年度終了日 現在의 信用保證總額의 2%(充當金을 損金에 算入하기 前의 所得金額을 限度로 함) 以內의 金額을 充當金으로 設定하여 損金에 算入할 수 있다.

3) 相計處理 및 益金의 還入

損金에 算入한 充當金은 다음 各號의 貸損金과 相計處理한 後의 殘額을 다음 課稅年度의 所得金額 計算時 益金에 還入한다.

(1) 債務者의 破産·強制執行·刑의 執行 또는 事業의 廢止로 인하여 回收할 수 없는 求償債權

(2) 債務者의 死亡·失踪·行方不明으로 인하여 回收할 수 없는 求償債權

(3) 其他 財務部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回收할 수 없다고 認定되는 求償債權

4) 償却債權 推尋利益의 益金算入

이미 設定된 求償債權 償却充當金으로 貸損金과 相計處理한 金額 중 그후 回收된 金額은 回收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額 計算時 益金에 算入한다.

5) 求償債權 償却充當金 明細書 提出

充當金을 損金에 算入하고자 하는 자는 當該 課稅年度 課稅標準申告時 求償債權 償却充當金에 관한 明細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아. 農·水·畜協中央會의 寄附金特例(法 第49條第7項, 令 第42條第2項)

農·水·畜協中央會의 固有目的事業인 農·漁民·養畜家와 會員組合에 대한 指導事業은 國家가 遂行하여야 할 公共性이 큰 事業인 점을 감안하여 各 中央會의 收益事業에서 發生한 所得 중 主務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한 金額을 당해 固有目的事業에 支出하는 경우에는 寄附金으로서 損金에 算入토록 함으로써 固有目的事業 遂行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다.

자. 國策銀行에 대한 非營利法人 稅率適用排除(法 第8條第3項 削除)

1981稅法改正 당시 과거 法人稅를 全額 免除받다가 1982. 1. 1 이후 最初로 開始하는 事業年度부터 課稅로 轉換된 韓國外換銀行 등 4個 國策銀行에 대하여는 갑작스런 課稅轉換에 따른 충격을 緩和하기 위하여 一般營利法人 稅率을 適用하여야 하겠지만 당분간 非營利法人 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던바 이번 稅法改正時 法人稅率이 大幅 引下되어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의 稅率 격차도 현저히 줄어들었으므로 이러한 特例適用을 削除하였다.

4. 非課稅 利子所得 등 기타

가. 非課稅 利子所得의 範圍縮小(法 §4, 令 §2)

所得種類間에 課稅衡平을 유지하고 長期的으로는 金融所得을 綜合課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非課稅限度를 事實上 管理하기 어려운 貯蓄의 利子所得을 課稅對象으로 轉換하여 1983. 1. 1 이후부터는 所得稅法의 규정에 의하여 分離課稅하도록 하였다(所得稅法, 金融所得篇 參照).

改 正 前	改 正
— 家計·學生 및 農漁民의 貯蓄增大를 위한 特別預金 등의 利子와 配當金	
가. 優待特別 定期家計預金의 利子 (세대당 200萬원 이하)	〈削 除〉
나. 農·漁民 목돈貯蓄預金의 利子 (세대당 300萬원 이하)	改正前과 같음
다. 優待家計定期積金의 利子 (세대당 月拂入額이 6萬원 이하)	〈削 除〉
라. 奬學預金의 利子 (저축계약당시 加入者가 未就學兒童, 初·中·高等學生으로 1人當 10口座에 한하며 積金總額이 50萬원 以下의 利子)	改正前과 같음
마. 入住者貯蓄(1세대 1구좌에 한하며 月拂入額이 10萬원 이하)	
— 신용협동조합(마을금고, 단위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에 대한 200만원 이하의 출자금과 5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 대한 이자 및 배당금	신용협동조합의 범위에 「특수농업협동조합」을 추가
— 總稅貯蓄組合預金의 利子	〈削 除〉

나. 15% 分離課稅되는 其他所得의 範圍調整(法 第5條, 令 第3條)

福券當籤所得은 其他所得으로서 綜合所得稅가 課稅되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86 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준비를 위한 基金造成支援을 위하여 1983年부터 發行되는 올림픽福券 當籤所得에 대하여는 종전의 住宅福券 當籤所得과 같이 綜合所得課稅對象에서 除外하여 15% 分離課稅하도록 하였다.

分離課稅對象 福券當籤所得의 範圍

改 正 前	改 正
○ 住宅福券 當籤所得 ○ 福金附預金 當籤所得 〈追 加〉	現行과 같음 ○ 아시아競技大會 및 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가 發行하는 福券當籤所得

다. 勤勞者證券貯蓄에 對한 租稅支援調整(法 第7條, 法 附則 第11條)

月給與 100萬원 이하의 勤勞者가 證券貯蓄(株式 또는 債券을 買入하기 위한 貯蓄)에 加入하는 경우에는 年間 證券貯蓄金額의 10%를 所得稅額에서 控除받는 외에 買入한 株式으로부터 받는 配當金이나 債券의 利子에 대하여 非課稅惠澤을 받아왔다.

그런데 金融資產所得의 幅넓은 非課稅는 가급적 줄여나감으로써 점진적인 綜合課稅로의 履行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必要가 있는 한편, 비슷한 稅制上 惠澤을 받고 있는 勤勞者財形貯蓄의 加入이 月給與 40萬원(1983. 1. 1現在) 이하인 勤勞者로 限定되어 있는 것과 比較해 보면 貯蓄種類 相互間 衡平이 맞지도 않기 때문에 앞으로는 勤勞者證券貯蓄에 加入할 수 있는 勤勞者의 範圍를 財形貯蓄에 加入할 수 있는 勤勞者의 範圍와 같도록 改正함으로써 勤勞者證券貯蓄 稅額控除 및 利子·配當의 非課稅範圍를 사실상 縮小시켰다. 그러나 이 改正條項은 勤勞者證券貯蓄 加入者의 範圍를 갑자기 縮小施行할 때올 수 있는 證券市場의 충격을 감안하여 1984. 1. 1 이후부터 施行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1984. 1. 1 이후부터는 財形貯蓄에 加入할 수 있는 勤勞者만이 勤勞者證券貯蓄에 加入하여 稅制上 惠澤을 받을 수 있게 된다(財形貯蓄 加入對象 勤勞者의 範圍는 財形貯蓄法 第2條第3項에 규정하고 있으며 1983. 1. 1 現在는 月給與 40萬원 이하 勤勞者로 되어 있음).

라. 非課稅 山林開發所得의 範圍擴大(法 第38條)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으로 5年 이상된 山林을 伐採 또는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山林開發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法人의 경우 法人稅)를 免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營林計劃뿐만 아니라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造林한 山林이거나 採種林·保安林 및 天然保護林에 대하여도 造林期間이 5年 以上인 경우에는 이를 非課稅되는 山林開發所得의 範圍에 追加하여 山林開發에 대한 支援을 強化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山林法에 의한 營林計劃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指定開發事業에 의하여 새로이 造林한 山林 ○ 採種林·保安林·天然保護林

마. **財務構造改善 積立金에 대한 紙上配當金額 計算特例 新設**(法 第56條의2, 令 第46條의2)

企業이 財務構造改善 積立金을 積立한 경우에는 每事業年度 紙上配當 所得金額의 20%(累積限度는 資本金의 50%) 限度內에서 紙上配當課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바. **附加價値稅의 零細率 適用對象 擴大**(法 第73條第1號)

軍需調達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指定받은 軍需業體가 供給하는 軍需物資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의 零細率을 適用하고 있는바 "警察이 作戰用으로 使用하는 物品"에 대하여도 軍需物資에 準하여 附加價値稅의 零稅率을 適用하도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 軍需業體가 供給하는 軍需物資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警察이 作戰用으로 使用하는 것을 包含

사. **工場 등의 構內食堂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稅新設**(法 第74條第1項, 令 第58條)

工場·鑛山·建設事業場 및 노선여객운송 사업자의 事業場 및 各級學校의 經營者가 當該事業場 및 學校構內食堂을 直接 經營하여 自己의 從業員 및 學生에게 提供하는 食事類인 飮食用役에 대하여 附加價値稅를 免稅토록 함으로써 事業現場의 勤勞者 또는 學生의 福利厚生을 支援토록 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新 設〉	○ 場 所 • 工場·鑛山·建設事業現場·路線旅客自動車運送事業者의 事業場·敎育法 第81條의 規定에 의한 각급학교의 構內食堂 ○ 經營者가 直接 經營하는 경우

아. 印紙稅의 免除(法 第81條第5號 및 第6號)

山林所有者 및 漁村契員이 山林組合이나 漁村契로부터 少額의 融資를 받거나 漁村契가 所屬契員의 預·積金證書와 通帳을 作成하는 경우에도 印紙稅를 免除하도록 하여 現行 農·漁民·養畜家 등에 대한 印紙稅免除와 衡平을 維持토록 하였다.

區 分	改 正 前	改 正
500萬원 이하의 融資書類에 대한 免除	○ 組合員이 信用協同組合 및 마을金庫로부터 融資받는 경우 ○ 農·漁民·養畜家가 당해 組合 및 中央會로부터 融資받는 경우	改正前과 같음
	〈追 加〉	○ 山林所有者가 山林組合으로부터 融資받는 경우 ○ 漁村契員이 農村契로부터 融資받는 경우
預·積金證書와 通帳에 대한 免除	○ 어린이 預金通帳 ○ 마을金庫組合員의 積金證書 및 通帳 ○ 信用協同組合의 〃 ○ 單位農協組合의 〃 ○ 畜產業協同組合의 〃 ○ 水產業協同組合의 〃	改正前과 같음
	〈追 加〉	漁村契의 契員의 積金證書 및 通帳

자. '86아시아競技大會의 施設에 대한 關稅 등 免除(法 第74條·第75條 및 第83條)

'88서울올림픽大會를 원활하게 推進하기 위한 稅制上 措置는 이미 '81稅法改正時 反映된 바 있지만, '86서울아시아競技大會의 경우에도 '88서울올림픽大會와 똑같이 支援토록 하였다. 卽, '86아시아競技大會를 準備하는 大韓體育會가 國內生產이 困難하여 外國에서 輸入하는 競技施設의 製作·建設 및 競技運營에 使用하는 物品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特別消費稅 및 關稅를 免除토록 하였고 또한 關稅의 경우에는 선수의 科學的 訓練用 機資材를 免稅對象 物品에 追加함으로써 '88서울올림픽 및 '86아시아競技大會를 對備하여 科學的 訓練을 통한 優秀選手養成에 寄與토록 하였다.

차. 租稅特例根據法律의 追加(法 第3條)

租稅減免規制法은 租稅政策의 效率的인 運營과 稅法體制의 維持를 위하여 租稅減免

規制法 第3條에 規定한 法律에 의하지 않고서는 租稅減免과 租稅特例의 규정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이에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을 法 第3條에 追加로 揭記하여 同法에서 規定한 租稅에 관한 特例規定의 效力을 法的으로 뒷받침하였다.

改 正 前	改 正
國稅基本法·條約 外 21個 法律 〈追 加〉	改正前과 같음 金融實名去來에 관한 法律

카. 公開法人要件에 관한 特例規定削除(法 第56條第1項, 令 第46條第2項)

1983. 1. 1 이후부터는 法人稅法上 公開法人에 대한 優待 差等稅率이 廢止됨에 따라 稅法上 公開法人要件 및 그에 대한 特例는 實益이 없게 되어 法 第56條第1項 및 令 第46條第2項에 규정되어 있는 公開法人 要件에 관한 特例規定을 削除하였다.

從前法에서는 9. 27 企業體質強化 對策으로 公開法人의 大株主가 個人所有 不動產을 處分하여 1982. 12. 31까지 增資한 경우나 株價가 額面價 以下인 公開法人이 有償增資를 함에 있어 少額株主가 新株의 引受를 포기함으로써 發生하는 失權株를 大株主가 引受하여 增資를 하는 경우에 大株主 및 少額株主의 株式比率이 變動됨에 따라 公開法人의 要件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도 增資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 다음 2개 課稅年度까지는 公開法人으로 認定할 수 있도록 特例規定을 두고 있었다.

1983년

◉ 법 률 : 1983.12.19. 법 률 제 3660호(시행일 : 1983.12.19.)
1983.12.31. 법 률 제 3699호(군수조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
(시행일 : 1983.12.31.)
◉ 시 행 령 : 1983.12.29. 대통령령 제11283호(시행일 : 1983.12.29.)

〈要 約〉

'86서울아시아競技大會를 보다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아시아競技大會를 主管하는 「서울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및 「大韓體育會」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와 같은 租稅支援을 하였고 租稅支援의 對象이 되는 中小企業의 範圍를 中小企業 基本法上의 中小企業者와 一致시켜 中小企業에 대

한 政策 相互間의 效率을 높이도록 하였으며,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對象과 사용범위를 넓혀 冒險資本(Venture Capital)投資 등 新技術開發을 積極 支援토록 稅制上 뒷받침해 주도록 하였고 또한 다른 法律의 改正에 따라 관련되는 引用規定을 整備하는 한편, 기타 現行制度의 運營過程에서 나타난 一部 未備點을 補完하였다.

○ 信用協同組合 등이 支給하는 利用高配當을 非課稅所得에 追加
○ 公共法人의 範圍調整
○ 重要產業에 該當하는 電子工業의 範圍擴大
○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
  — 中小企業의 範圍調整
  — 中小企業特定設備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實施
○ 技術開發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 技術開發 準備金制度 擴充
  — 新技術企業化事業의 範圍擴大
○ 流通近代化施設에 대한 租稅支援
○ '86아시아競技大會 準備를 위한 租稅支援規定補完
○ 特別附加稅 分納適用對象 範圍擴大
○ 實需要土地稅額 還給申請節次 補完
○ 免稅石油類供給對象인 漁業用 船舶의 範圍擴大
○ 租稅減免의 事後管理制度補完
○ 기타 執行上 未備點 補完

〈改正內容〉

1. 信用協同組合 等이 지급하는 利用高配當을 非課稅所得에 追加(令 第2條第1項第7號)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單位農業協同組合 등의 組合員이 당해組合으로부터 支給받는 出資金(200萬원 이하에 한함)에 대한 配當金과 預託金(500萬원 이하에 한함)의 利子所得에 대하여는 所得稅를 非課稅하고 있다.

그러나 信用協同組合法 第4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면 信用協同組合은 당해 利益金중 積立金을 控除한 殘餘剩餘金은 總會의 決議에 의하여 納入出資金에 比例하여 組合

員에게 配當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이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組合員의 組合利用高에 比例한 配當을 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前者를 「出資配當金」이라 한다면 後者는 「利用高配當金」이라 말할 수 있는 바 出資金이 200萬원 이하인 組合員이 받는 「利用高配當金」에 대하여도 「出資配當金」과 같이 所得稅를 非課稅하도록 하였다.

非課稅되는 利子 및 配當의 範圍

改正前	改正
信用協同組合·마을金庫·單位農業協同組合·特殊農業協同組合·畜產業協同組合·水產業協同組合과 農村契가 組合員에게 支給하는 • 預託金의 利子(500萬원 이하의 預託金을 한도로 함) • 出資配當金(200萬원 以下의 出資金을 한도로 함)	改正前과 같음
(追 加)	利用高配當金(200萬원 以下의 出資金에 한한다)

2. 公共法人의 範圍調整(法 別表 Ⅰ)

國家業務를 代行하는 등 公共性이 큰 特別法人에 대하여는 公共法人으로 하여 最低限稅(Minimum Tax)인 5%의 法人稅를 課稅하고 있다.

1983稅法改正에서는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등 3個의 特別法人을 公共法人에 새로이 追加하였고 設立根據法이 變更됨에 따라 公共法人의 範圍를 다음 表와 같이 一部 調整하였다.

그중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의 경우는 民法 第3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종전의 大韓體育會內部의 한 機關에 不過하였던 것이 1982年 12月 31日字로 國民體育振興基金에 관한 法律이 「國民體育振興法」으로 改正되면서 「大韓體育會」도 國民體育振興法上의 特別法人이 되었고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는 그 附設機關으로 하되 大韓體育會와는 별도의 法人格을 갖게 됨과 同時에, 올림픽支援關係法律인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도 1982年 12月 31日字로 「서울아시아競技大會 및 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으로 改正하여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동등한 租稅支援을 해주도록 關係規定을 改正한 바 있다.

따라서 '86아시아競技大會를 보다 원활하게 推進토록 하기 위하여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와 「大韓體育會」도 公共法人에 追加한 것이고, 또한 韓國女性開發院法이

1982年 12月 31日字로 制定됨에 따라 女性과 關聯된 問題에 관한 調査硏究, 女性의 能力開發을 위한 敎育訓練 및 女性活動에 대한 支援 등의 業務를 갖고 있는 特別法人인 「韓國女性開發院」이 1983年 上半期에 設立되었는바 이를 公共法人에 追加한 것이다.

公共法人의 範圍

改正前		改正	
號	法人格	號	法人格
20	「서울올림픽 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의 適用을 받는 「財團法人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	20	「서울아시아競技大會·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支援法」의 適用을 받는 「財團法人 서울올림픽大會組織委員會」 및 大韓體育會附設 「서울아시아競技大會組織委員會」
45	「相互信用金庫法」의 規定에 의한 「相互信用保障基金管理機關」	45	「信用管理基金法」에 의하여 設立된 「信用管理基金」
48	「國民體育振興基金에 관한 法律」에 依한 「體育振興基金管理機構」	48	「國民體育振興法」에 의하여 設立된 「國民體育振興財團」과 「大韓體育會」
	〈新 設〉	87	「韓國女性開發院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女性開發院」

3. 重要產業에 해당하는 電子工業의 範圍擴大(令 別表2, 電子工業의 業種 및 品目)

高度의 技術蓄積을 요할 뿐만 아니라 先進高度 技術產業의 先導品目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저응용기기」와 「로봇」을 生產하는 電子工業도 重要產業인 電子工業의 品目에 追加하였다.

따라서 이와같은 電子工業을 영위하는 事業者는

가. 당해 事業用固定資產(機械 및 裝置)에 대하여 100% 特別減價償却을 適用받거나

나. 事業用資產의 取得分에 대해 5%(外國產機資材를 使用한 경우는 3%)의 投資稅額控除 중 하나의 方法을 선택하여 租稅支援을 받게 되었다.

4.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

가. 中小企業의 範圍調整(令 第11條 및 別表 9, 10)

規模가 零細한 中小企業에 대한 별도의 租稅支援을 하기 위하여 稅法(法人稅法 및

所得稅法)에서 中小企業의 範圍를 정하기 시작한 것은 1978年 稅法 改正時부터이다. 따라서 그간 우리 經濟는 量的으로나 質的인 面에서 많은 變化가 있었던 바 改正前의 中小企業의 範圍가 現實에 맞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中小企業의 範圍에 관하여는 中小企業基本法(商工部所管), 稅法(財務部所管인 租稅減免規制法) 및 中小企業銀行法(財務部所管)에서 각기 소관 政策目的에 따라 相異하게 規定하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中小企業者는 勿論 政府各部處間에서도 中小企業에 대한 政府政策을 立案하거나 遂行함에 있어 어느 경우에는 中小企業에 해당되다가도 다른 경우에는 中小企業에서 除外되는 등의 事由로 法을 適用함에 있어 不便이 많았다.

지난 1982.12.31. 中小企業基本法의 制定으로 中小企業의 範圍가 調整됨을 계기로 하여 稅法上 中小企業의 範圍도 이와 一致시킴으로써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의 實效性을 거두도록 하였는 바, 그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中小企業의 業種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業種은 改正前과 같다. 中小企業基本法上으로는 「商業·其他서비스業」이 中小企業이 業種에 해당하나, 稅法에서는 除外하고 있으며, 또 「水產業」은 中小企業基本法上 中小企業業種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稅法上으로는 中小企業의 해당 業種에 包含시키고 있다.

中小企業의 業種

中小企業基本法	稅法(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製造業 鑛業 建設業 運輸業	中小企業基本法과 같음
商業, 其他 서비스業	水產業

(2) 中小企業의 基準

中小企業의 基準은 中小企業基本法令上의 中小企業者의 範圍와 一致시켰다. 즉 改正前에는 有形固定資產價格 基準(3억원 이하)과 從業員基準(300人 以下 단 建設業은 50人 以下) 중 하나의 基準에만 適合하면 中小企業으로 보도록 하고 있었으나 改正令에서는 從業員基準(一般的 基準)을 原則으로 하고, 勤勞集約的인 產業의 경우에는 人員基準을 늘려 擴大 適用토록 한 반면, 資產規模가 큰 企業은 從業員數가 300人 以下인 경우라도 中小企業에서 除外하도록 特例基準을 마련하였다.

(가) 一般的 基準

(나)의 特例基準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一般的인 中小企業의 業種은 다음 基準

에 의하여 中小企業에 해당하는지 與否를 판정한다.

改　　正　　前	改　　正
○ 常時使用하는 從業員數가 300人(建設業은 50人) 以下이거나 ○ 有形固定資產 總額이 3億원 以下이어야 함.	○ 常時使用하는 從業員數가 300人(建設業은 200人) 以下이어야 함(一般的 基準). ○ 業種別로 從業員數와 資產總額의 特例基準을 마련함〔(나)參照〕.

(나) 特例基準

「從業員數에 대한 特例」와 「業種別 資產總額에 따른 特例基準」의 2가지로 나누어진다.

— 從業員數에 대한 特例(令 別表9)

從業員數에 대한 特例로는 다음 表와 같이 毛紡績業 등 22個事業에 대하여는 常時使用하는 從業員數 500人까지 擴大適用받을 수 있고 無煙炭鑛業 등 2個業種에 대하여는 최고 700人이 되는 企業까지도 中小企業으로 보도록 한 반면에 電氣通信工事業과 電氣工事業의 경우에는 常時使用하는 從業員數가 100人을 초과할 때에는 中小企業에서 除外된다.

該　當　業　種	範　圍　基　準
○ 무연탄 鑛業 ○ 家庭用 도기제품 製造業 ○ 毛紡績業 ○ 人造纖維紡績業 ○ 연승 및 漁網製造業 ○ 纖維표백·染色 및 整理業	常時 使用하는 從業員數가 700人 以下인 企業
○ 衣服製造業(男子用洋服製造業·男子用셔츠·作業服 및 관련 衣服製造業·女子外衣製造業·가죽 및 毛皮衣服製造業·한복·衛生服 等 달리 分類되지 아니하는 衣服製造業에 한한다) ○ 書籍出版 및 賃加工에 의한 製本業 ○ 고무신製造業 ○ 플라스틱신발 製造業 ○ 家庭用유리製品 製造業 ○ 벽타일製造業 ○ 鑄造業 및 밸브製造業 ○ 金屬製 식탁용품 및 金屬製 衛生用品 製造業 ○ 手工具製造業(農業用 手工具製造業을 除外한다) ○ 電子部品 및 材料製造業 ○ 電球製造業	常時 使用하는 從業員數가 500人 以下인 企業

該 當 業 種	範 圍 基 準
○ 自動車部品 製造業(기관, 차축, 기어변속기製造業을 除外한다) ○ 船舶部品 製造業 ○ 안경製造業 ○ 事務 및 회화용품 製造業 ○ 장난감 製造業 ○ 비누製造業(화장비누製造業을 除外한다) ○ 自動車運送業(市內버스製造業, 市外버스運送業, 전세버스運輸業 및 貨物自動車 運輸業에 한한다)	
○ 電氣通信工事法에 의한 電氣通信工事業 ○ 電氣工事業法에 의한 電氣工事業	常時使用하는 從業員數가 100人 以下인 企業

— 業種別 資產總額에 따른 特別基準(令 別表10)

다음 表와 같이 資產規模가 큰 企業에 대하여는 該當 業種別로 資產總額의 規模에 따라 一定基準(40億원부터 80億원까지 4區分함)을 超過하는 企業은 中小企業에서 除外되는 바 앞에서 說明한 「從業員數에 대한 特例」에도 該當되는 業種이고 「資產總額에 대한 特例」에도 該當되는 業種의 경우에는 두 特例要件에 모두 適合해야만 稅法上 中小企業에 該當되는 것이다(다시 말해서 어느 하나의 基準에서도 벗어나면 中小企業이 될 수 없다).

該 當 業 種	資產總額의 規模基準
○ 鑛業(金屬鑛業을 除外한다.) ○ 纖維·衣服 및 가죽產業(纖維표백·染色 및 整理業을 除外한다) ○ 장신구 및 關聯製品 製造業 등 其他 製造業	40億원 초과
○ 飮食料品 및 담배製造業 ○ 纖維표백·染色 및 整理業 ○ 나무 및 나무製品 製造業 ○ 非金屬鑛物製品 製造業(石油 및 석탄제품제조업을 除外한다)	60億원 초과
○ 金屬鑛業	70億원 초과
○ 종이 및 종이製品 製造業 ○ 印刷 및 出版業 ○ 化學物과 化學·纖維·石炭·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製造業 ○ 組立金屬製品·機械 및 裝備製造業 ○ 第1次 金屬工業	80億원 超過

(3) 中小企業者에 대한 經過規定

稅法에서는 中小企業에 該當하던 者가 規模 擴大 등의 사유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는 그 事由가 發生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開始日로부터 2年間은 中小企業으로 보도록 별도로 規定하였는바 그 事由라 함은 다음과 같다.

中小企業에 해당하던 者가

① 規模의 擴大 및 다른 中小企業者와 合併한 경우

② 銀行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金融機關으로부터 資金의 貸出을 받아 規模가 擴大된 경우

③ 中小企業基本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近代化實踐計劃의 승인을 얻어 近代化된 경우

④ 中小企業振興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轉換計劃의 承認을 얻어 事業轉換을 한 경우

⑤ 中小企業振興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同化實踐計劃의 承認을 얻어 協同化事業을 행한 경우

⑥ 個人企業이 法人企業으로 轉換된 경우

⑦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計劃의 承認을 얻어 系列化된 경우

〈事 例〉

中小企業「甲會社 : 종업원수 250人」과 中小企業「乙會社 : 종업원수 280人」이 合併하여 規模가 擴大(종업원수 530人)된 경우 合併企業에 대하여 中小企業으로 보는 期間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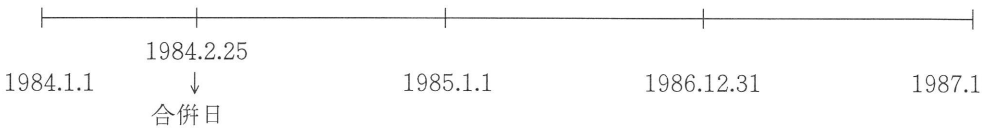

※ 合併日이 속하는 課稅年度 開始日(1984.1.1)로부터 2年間(1986.12.31까지)이다.

〈適用例〉

— 改正前의 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에 該當하던 者가 改正規定에 의하여 中小企業에 該當하지 않게 된 때에는 改正令 施行日(1983.12.29) 以後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까지는 中小企業으로 본다. 따라서 改正前 令 第11條 第2項의 規定에 의하면 增設·中小企業間의 合併 또는 統合으로 인하여 有形固定資產 總額이 3億원을 超過한 경우에는 2年間은 中小企業으로 보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이에 該當되어 殘存留保期間이 있는 경우에도 1983年 12月 29日 以後 最初로 開始하는 課稅年度까지는 改正前의 規定에 의한 殘存留保期間의 效力이 維持되는 것이다.

〈事 例〉

— 다음 企業의 경우 中小企業으로서의 해당기간은?

(例 1)

企 業 狀 況	改 正 前	改 正
○ 業種 : 金屬鑛業 ○ 從業員數 : 250人 ○ 資產總額 : 80億 ○ 事業年度 : 1.1～12.31	— 從業員數基準에 적합하여 中小企業에 해당되었음	— 資產總額基準(金屬鑛業 : 70億원)에 따라 中小企業에서 除外

※ 改正令 施行日(1983.12.29) 이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年度(1984.1.1～1984.12.31)까지만 中小企業에 해당된다.

(例 2)

企 業 狀 況	改 正 前	改 正
○ 業種 : 酒類製造業 ○ 從業員數 : 400人 ○ 資產總額 : 40億 ○ '83.7.20 製造施設을 擴張하여 從業員數가 250人에서 400人으로 增加되었음 ○ 事業年度 : 7.1～6.30	— 종전 令§11②의 規定에 따라 '83.7.1～'85.6.30(2년간)은 中小企業에 해당	— 一般的 基準(從業員數 300人)에 不適合하여 中小企業에서 除外

※ 이 경우에도 改正令 施行日(1983.12.29)이후 최초로 開始하는 課稅年度(1984.7.1～1985.6.30)까지는 中小企業에 該當한다.

나. 中小企業 特定設備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制度 實施(令 第57條第1項第6號)

租稅減免規制法 第71條에 의하면 產業政策支援에 있어 機能別手段으로서 特定設備投資稅額 控除制度를 두고 있다. 즉 종래 1981年 租稅減免規制法 全面改編 以前의 特定業種別 減免 위주의 支援制度는 줄여 나가는 대신 우리 產業의 전반에 걸쳐 共通的인 努力이 必要한 部門은 業種에 관계없이 支援을 하도록 하였는데 「에너지 節約施設」·「公害防止施設」·「產業災害豫防施設」 등은 具體的인 施設을 정하여 施行하여 왔으나 「生產性向上施設」 部門은 法 第71條에 支援根據만 마련되어 있었을 뿐이고 施行令 이

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하여 이때까지 施行이 留保되어 왔었다.

이번 施行令 改正에서는 中小企業에 該當하는 事業者가 工程 改善이나 施設의 自動化, 老朽施設의 改替 및 勤勞者 福祉向上 등 生産性向上 施設에 投資를 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特定設備投資로서의 租稅減免을 받도록 하였다.

(1) 具體的인 生産性向上 施設의 範圍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는 施設의 範圍는 中小企業의 工程 改善, 施設의 自動化, 老朽施設改替 및 勤勞者 福祉施設로 하되, 施行規則에서 具體的으로 별도 規定된다.

(2) 減免方法

投資한 生産性向上 施設에 대하여

○ 50% 一時減價償却과

○ 10%(外國産機資材 使用時에는 6%) 投資稅額控除 중 하나를 선택하여 減免을 받을 수 있다.

(3) 減免節次

生産性向上 施設에 投資하여 稅額控除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書類를 소관 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① 投資를 開始한 때에는 投資計劃書(規則別紙 第1號書式)

② 投資를 完了한 때에는 稅額控除申請書(規則別紙 第3號書式)에 勞動部長官이 發行하는 勤勞福祉向上 施設投資確認書 또는 主務部長官이 發行하는 生産性向上 施設投資確認書를 添附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5. 技術開發에 대한 租稅支援 強化

가. 技術開發 準備金制度 擴充(令 第13條第1項第5號)

(1) 準備金設定 對象擴大

金融資本이 新技術企業化 資金으로 많이 供給될 수 있도록 金融·保險業을 영위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도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同 適用對象인 金融·保險業者는 法人稅法 施行令 第37條의2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法人들이다.

① 銀行法에 의한 認可를 받아 設立한 金融機關

② 韓國産業銀行

③ 中小企業銀行

④ 國民銀行
⑤ 韓國住宅銀行
⑥ 韓國外換銀行
⑦ 韓國輸出入銀行
⑧ 長期信用銀行
⑨ 信託業法에 의한 認可를 받아 信託業을 영위하는 法人
⑩ 短期金融會社
⑪ 綜合金融會社
⑫ 相互信用金庫
⑬ 信用保證基金과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
⑭ 農業協同組合 中央會
⑮ 水產業協同組合 中央會
⑯ 畜產業協同組合 中央會
⑰ 保險業法에 의한 保險事業者
⑱ 證券去來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證券去來所와 同法에 의하여 許可를 받은 證券金融會社

(2) 使用範圍 擴大

技術開發準備金을 設立한 金融·保險業者는 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한 날로부터 4年 이내에 新技術企業化 事業에의 出資를 주된 事業으로 하는 內國法人(Venture Capital Co.)에 대한 出資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技術開發準備金을 Venture Capital Co.에 出資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金融·保險業에 한정되며 다른 業種에까지 擴大되는 것은 아니다.

나. 新技術企業化 事業의 範圍擴大(令 第15條第1項第2號)

新技術을 企業化한 事業이라 함은 特許받은 開發成果 등을 처음으로 企業化한 事業을 말한다.

新技術을 企業化하는 데는 항상 危險性과 不確實性을 내포하기 때문에 이러한 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事業用資產(機械 및 裝置)을 取得한 경우에는

- 50%一時減價償却과
- 10%(外國產機資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6%) 投資稅額控除 중 하나를 選擇하여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技術開發促進法 第10條의3의 規定에 의하면 同一 또는 同種의 製品을 生產하는 事業者는 「產業技術硏究

組合」을 設立하여 "技術向上을 위한 硏究開發의 實施와 그 成果의 管理에 관한 事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同組合에서 開發된 새로운 技術의 開發成果를 처음으로 企業化하는 事業도 「新技術 企業化事業」으로 인정하여 特許받은 開發成果 등을 企業化하는 경우와 같은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6. 流通近代化 施設에 대한 租稅支援(令 第57條第1項第7號)

產業政策上 必要하다고 인정한 特定設備投資에 대하여는

- ○ 50%一時減價償却과
- ○ 10%(外國產機資材를 使用한 경우는 6%) 投資稅額控除 중 하나를 選擇하여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으나 「流通近代化施設」에 대하여는 支援의 根據(法 第71條)만 마련되어 있었고 그 適用對象이 되는 施設의 範圍는 정하지 아니하여 施行이 留保되어 왔었다. 이번 施行令 改正에서 生產性向上 施設(中小企業篇 參照)과 함께 流通近代化 施設投資에 대하여도 特定設備投資로서의 支援이 可能하도록 施行令에 規定했는바 支援對象이 되는 流通近代化 施設範圍는 施行規則에서 規定한다.

7. '86아시아競技大會 準備를 위한 租稅支援規定 補完

앞으로 開催하게 될 '86서울아시아競技大會와 '88서울올림픽大會를 보다 원활하게 推進하기 위한 稅制上의 支援은 1981年 및 1982年 稅法 改正時 이미 一次 措置된 바 있다.

그러나 1982定期國會에서 서울아시아競技大會 및 올림픽大會支援 關係法律을 再整備하면서 大韓體育會 內部의 한 機關으로 되어 있던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를 大韓體育會의 附設機關으로 하되 大韓體育會와는 別途의 法人格을 갖는 推進團體로 轉換함과 同時에 同組織委員會에 대하여도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와 同等한 稅制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서울올림픽 및 서울아시아競技大會 支援關係法律이 보완되었기 때문에 租稅減免 規制法上의 關係支援規定도 다음과 같이 補完하였다.

가. 公共法人으로 最低限稅課稅(法 別表 I)

'86서울아시아競技大會를 推進하는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및 「大韓體育會」도 5%의 最低限稅가 課稅되는 公共法人의 範圍에 追加하였다.(公共法人篇 參照)

나. 寄附金 損金算入의 特例를 認定함(法 第49條第2項第5號 및 第4項)

(1) 內國人이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에 寄附金을 支出하는 경우에는 이미 全額 損金(또는 必要經費)에 算入하도록 조치되어 있다.
內國人이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에 支出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도 全額 損金에 算入토록 하여 同 競技大會를 推進함에 所要되는 財源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2) 또한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가 收益事業을 營爲함으로써 發生한 收益事業의 所得을 固有目的事業인 올림픽大會의 準備와 運營을 위하여 支出하는 때(寄附金으로 됨)에는 課稅所得金額을 計算함에 있어 이미 全額損金(公益性法人의 경우에는 法人稅法에서 60%까지 損金認定)에 算入하도록 조치되어 있는 바,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도 同一한 寄附金의 損金算入特例를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國內生産이 困難한 物品을 輸入時 附加價値稅 등 免除(法 第74條第2項第5號, 第75條第5號 및 第83條第1項第4號)

'86아시아競技大會 및 '88서울올림픽大會는 國際競技大會로 모든 施設이 國際的인 規格 以上의 水準으로 갖추어져야 되는 바 「國家地方自治團體」「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 및 「大韓體育會」가 서울아시아競技大會 및 올림픽競技大會의 製作建設 및 競技運營에 사용할 目的으로 輸入하는 物品 中 國內生産이 困難하여 輸入하는 것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및 關稅를 免除토록 1981年 및 1982年 稅法改正時 이미 措置한 바 있다.

따라서 1983年의 租稅減免規制法 改正에서는 「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가 輸入하는 同 物品에 대하여도 똑같이 間接諸稅를 免稅토록 措置하였다.

8. 特別附加稅 分納 適用對象 範圍擴大(令 第55條第1項 및 第2項)

企業體質強化 對策에 따라 金融機關에 申告된 非業務用 不動産을 1982年 12月 31日까지 處分하여 企業의 負債償還이나 또는 增資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同 不動産을 讓渡함으로 인하여 發生하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分納할 수 있도록 했었는 바,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政府投資機關이 所有하는 不動産을 延拂賣買契約에 따라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特別附加稅에 대해서도 分納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그 分納稅額과 納付期限은 財務部長官이 主務部長官과 協議하여 정하도록 하였다.

9. 實需要 土地稅額 還給申請節次 補完(令 第51條第5項 但書)

建築法에 의한 建築物의 建設用地로 土地를 讓渡한 뒤 이를 取得한 實需要者가 당해 土地를 買入한 날로부터 3年 以內에 建築物을 建築한 때에는 당해 土地의 讓渡에 따라 納付한 讓渡所得稅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그 土地를 讓渡한 者에게 還給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土地讓渡者가 稅額을 還給받고자 할 때에는 建築物이 竣工된 날로부터 3月 以內에 建築用土地 稅額還給申請書에 「建築物이 준공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와 「당해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를 納付한 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添附하여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이 경우 土地를 取得한 者가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 確定申告期限前에 당해 建築物을 竣工한 때에는 土地讓渡者가 讓渡所得稅를 納付도 하지 아니한 狀態에서 實需要土地稅額 還給申請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土地를 讓渡한 者는 實需要土地稅額 還給申請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지가 애매하며, 適期에 還給申請을 하지 못하는 事例가 있어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 申告期限前에 당해 建築物을 竣工한 때에는 讓渡所得稅 課稅標準 確定申告期限(翌年 5月 31日)까지 還給申請書를 提出할 수 있도록 하였다.

〈事 例〉

- ○ 土地讓渡 : 1983.3.1
- ○ 實需要者(土地買入者)가 1983.7.1 建築物을 竣工하였으나
- ○ 土地讓渡者는 土地讓渡差益에 대한 豫定申告納付를 履行하지 아니하였음.
- ○ 이 경우 讓渡所得稅 還給申請日은?

改 正 前	改 正
○ 竣工日로부터 3個月 이내 (1983.9.30)	○ 所得稅 確定申告期限까지 可能 (1984.5.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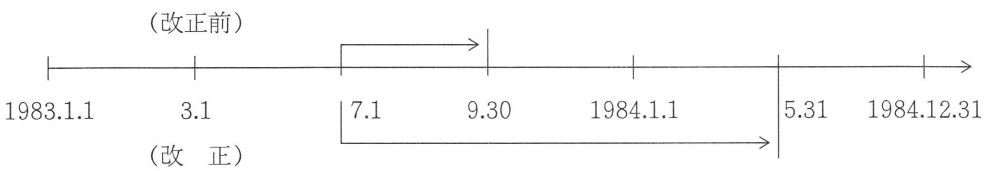

※ 改正前에는 讓渡所得稅를 納付도 하지 아니한 狀態에서 稅額還給申請을 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음.

10. 免稅石油類 供給對象인 漁業用船舶의 範圍擴大(法 第74條第1項第2號 및 令 第58條第2項)

沿近海漁業用 船舶에 사용할 目的으로 水產業協同組合에 直接供給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를 免除하고 있었는 바, 同 附加價値稅와 特別附價稅가 免除되는 石油類를 사용할 수 있는 漁業用船舶의 範圍에 다음과 같이 沿岸區域漁業用船舶도 追加하며 沿近海漁業間에 衡平을 維持토록 하였다.

免稅油類를 사용하는 漁業用船舶의 範圍

改 正 前	改 正
沿近海漁業用 船舶 〈追 加〉	改正前과 같음 沿岸區域漁業用 船舶 ○ 水產業法 第8條의 規定에 의한 免許漁業用 船舶 ○ 水產業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試驗 또는 敎習漁業用 船舶 ○ 水產業法 第22條의 規定에 의한 申告漁業用 船舶

〈參考〉 沿近海漁業 등의 定義

(1) 沿近海漁業

水產業法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近海區域을 主操業區域으로 하는 漁業과 沿岸區域을 主操業區域으로 하는 漁業을 말하는 바,「前者」에 해당하는 漁業은「機船底引網漁業」「트롤漁業」 및「母船式漁業」으로 漁船·漁具마다 水產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또한 後者에 해당하는 漁業은「帆船底引網漁業」·「海獸漁業」·「海藻採取漁業」으로 이경우에는 漁船·漁具마다 道知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2) 沿岸區域漁業

○ 免許漁業

道知事의 免許를 받아서 事業을 영위하는 漁業으로「養殖漁業」·「定置漁業」·「第1種共同漁業」·「第2種共同漁業」 및「第3種漁業」으로 區分한다.

○ 試驗 또는 敎習漁業

水產廳長이 指定한 試驗硏究機關 또는 敎育機關에서 試驗硏究 또는 敎習을

하는 漁業으로 이 경우에는 水產業法 第8條(免許漁業)·第11條(水產廳長의 許可漁業)·第12條(道知事의 許可漁業)·第22條(申告漁業)·第23條(遠洋漁業의 許可)의 規定에 不拘하고, 水產廳長 또는 道知事의 承認을 받아야 하는 漁業이다.

○ 申告漁業

免許漁業·水產廳長 또는 道知事의 許可漁業·遠洋漁業 이외의 漁業을 말하는 바, 이 경우에는 漁船·漁具마다 道知事에게 申告하도록 되어 있다.

11. 租稅支援의 事後管理制度 補完(令 第65條第6項)

事業者가 事業用資產 등(機械 및 裝置)을 取得하여 重要產業 投資稅額控除 등 諸稅額控除를 適用받은 경우에는 租稅減免의 事後管理手段으로 稅額控除를 받은 당해 資產은 取得後 5年까지 계속하여 당해 事業에 使用할 것을 條件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稅額控除를 받은 당해 資產을 5年이 經過되기 前에 處分하는 때에는 控除받은 稅額相當額은 물론 稅額을 控除받은 날로부터 資產을 處分한 날까지의 期間에 대하여 100원에 대한 日邊 6錢의 率로 計算한 利子相當 加算額을 合算하여 追徵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해 資產의 處分 中「現物出資·合併 等 事業의 承繼로 인하여 所有權이 移轉되는 때」에는 控除받은 稅額 等을 追徵하지 않도록 하고 있었는바, 同 追徵除外對象에「耐用年數가 經過된 資產을 處分하는 경우」도 追加하였다.

12. 其他 執行上 未備點 補完(令 第19條第4項 및 第24條第1項)

海外港灣 荷役運送保管事業(이하 "海外港灣事業"이라 함)에 대하여는 1981稅法改正時「海外事業」으로 하여 法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事業 所得控除(外貨收入金額의 2%로 하되 所得金額의 50%를 한도로 함), 法 第27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事業損失準備金(外貨收入金額의 2%를 損金算入後 5年 거치 3年 分割還入) 및 法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事業用 資產에 대한 100% 特別減價償却을 適用받도록 하다가 1982稅法改正時 所得稅 및 法人稅率이 大幅 引下되어 產業에 대한 租稅支援을 縮小調整하는 過程에서「海外港灣事業」에 대하여는 "海外事業의 範圍"에서 除外토록 하는 한편 一般 外貨獲得事業으로서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과 똑같은 租稅支援을 받도록 한 바 있다.

따라서「海外港灣事業」은 1983年 1月 1日이후 開始하는 課稅年度부터는 法 第22條

의 規定에 의한 輸出損失準備金·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海外市場 開拓準備金 및 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30% 特別減價償却을 適用받아야 했는 바 그중 輸出損失準備金은 令 第19條第1項第2號의 規定에 의한「外國에서 用役을 提供하는 事業」으로 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었으나 海外市場 開拓準備金의 設定 對象인「用役을 外國에 提供하는 者」와 30% 特別減價償却規定의 適用對象인「外貨獲得事業」의 範圍에「海外港灣事業」이 구체적으로 게기되지 못하여 實質的으로 輸出 및 外貨獲得事業으로서의 租稅支援을 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1983施行令 改正時 同支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關係規定을 補完하였다.

適用對象範圍補完

區　　分	改　正　前	改　　正
海外市場 開拓準備金 適用對象인 用役을 外國에 提供하는 者	• 技術用役業의 登錄을 한 外國人 • 國際旅行斡旋業의 登錄을 한 內國人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海外港灣事業의 登錄을 한 內國人
30% 特別減價償却 適用對象인 外貨獲得事業(輸出事業)	• 製造業·鑛業·水產業 • 觀光宿泊業의 登錄을 한 觀光事業 (追　加)	改正前과 같음 • 海外港灣事業의 登錄을 한 用役事業

1984년

◉ 법　　률 : 1984. 4. 9. 법　　률 제 3722호(시행일 : 1984. 4. 9.)
1984. 8. 8. 법　　률 제 3752호(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부칙)
(시행일 : 1984. 8. 8.)
◉ 시 행 령 : 1984. 4. 9. 대통령령 제11402호(시행일 : 1984. 4. 9.)
1984. 6.14. 대통령령 제11440호(시행일 : 1984. 6.14.)
1984. 9.18. 대통령령 제11510호(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시행령부칙)
(시행일 : 1984. 9.18.)
1984. 9.22. 대통령령 제11511호(병역법시행령 부칙)
(시행일 : 1984. 9.22.)
◉ 시행규칙 : 1984.10. 5. 재무부령 제 1627호(시행일 : 1984.10. 5.)

〈要　　約〉

○ 安定成長의 持續과 우리나라 企業의 國際競爭力 強化를 위하여는 借入金 등 間接金融에 의한 企業資金調達보다는 自己資本의 增大가 시급하므로 增資企業 및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하여 租稅支援을 함으로써 企業의 有償增資를 적극 誘導할 수 있도록 함.

○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이 施行됨을 계기로 農漁村所得源 開發事業者에 대하여도 中小企業 優先育成業種과 동등한 水準의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이 租稅特例規定을 新設

○ 新技術事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의 企業資金을 供給해주는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의 再投資財源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Venture Capital의 投資株式 讓渡差益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非課稅

○ 製造業 및 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者가 生產性向上 施設投資時 投資稅額控除를 받도록 하였고, 또한 技術集約的인 產業의 범위를 擴大하여 보다 많은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토록 하여 損金에 산입토록 하는 한편 10%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硏究要員의 범위확대 등 中小企業 및 技術, 人力開發部門에 租稅支援을 強化하였으며, 기타 制度의 施行過程에서 나타난 一部 未備點을 補完

〈改正內容〉

1. 技術·人力開發을 위한 租稅支援擴大

가. 技術集約的인 産業의 範圍擴大(令 別表4)

製造業·鑛業 등을 영위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所得金額의 20%와 收入金額(外形)의 1% 중 많은 金額을 技術開發準備金으로 損金에 算入토록 하고 4年間에 걸쳐 技術開發에 所要되는 費用과 相計處理토록 하여 法人稅의 課稅를 이연시켜주고 있다.

그런데 機械工業, 電子工業, 航空工業, 防衛産業 및 精密化學工業의 경우는 技術開發의 속도가 빠를 뿐만 아니라 수준높은 技術을 集約한 製品을 生産하는 産業으로서 技術開發에 따른 硏究·開發費(R&D)가 많이 지출되는 점을 감안하여 技術開發準備金 設定時 一般企業보다 50% 할증한 所得金額의 30%와 收入金額의 1.5% 중 많은 金額을 損金에 算入토록 特例를 인정하고 있는 바, 다음 품목을 製造하는 전자공업도 同租稅特例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技術集約的인 産業의 범위에 追加하였다.

追 加 品 目

業 種	區 分	品 目
電 子 工 業	○ 전 자 기 기 ○ 전 자 품 목	○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 ○ 컬러브라운관용 섀도마스크 ○ 소형전동기 ○ 인쇄회로용 동박적층판 및 동박 ○ 리이드프레임

나.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의 株式讓渡差益 非課稅(法 第18條의2, 令 第15條의2 및 規則 第6條의2)

金融資本이 新技術事業化資金으로 많이 供給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83年 施行令 改正時 技術開發準備金 設定對象에 金融·保險業을 追加하는 한편 金融保險業은 이 準備金을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에 출자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1984年 稅法改正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지원조치로서 新技術을 開發 또는 應用하여 이를 事業化하는 中小企業(新技術事業會社)에의 出資를 주된 事業으로 하는 內國法人(新技術事業 投資會社)이 新技術事業會社의 株式이나 出資持分을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讓渡差益(Capital Gain)에 대하여는 法人稅를 非課稅함으로써 新技術事業 投資會社가 新技術事業會社에의 再投資財源 마련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는 바 그 租稅支援 內容은 다음과 같다.

(1) 租稅支援內容

新技術事業 投資會社 등에 대한 租稅支援을 圖示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 金融·保險業者는 技術開發準備金을 損金에 算入하고 同相當額을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에 出資토록 함 ※ 法人稅 4年間 課稅移延	― 新技術事業 投資會社가 新技術事業會社에의 投資株式處分時 株式讓渡差益을 益金不算入 ※ 法人稅 非課稅	― 新技術事業會社가 租減法令18―①에 해당되면 「新技術企業化事業」으로서 10% 投資稅額 控除 惠澤도 可能 ※ 新技術企業化事業 支援

(2) 新技術事業 投資會社 및 新技術事業會社의 範圍

(가)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의 範圍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免除의 適用을 받을 수 있는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의 範圍는 다음과 같다.

① 特別法에 의하여 設立된 法人으로서 新技術事業會社에의 投·融資業務를 주된 事業으로 하는 法人(例 :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

② 韓國科學技術院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科學技術院이 출자하여 新技術事業會社에의 投·融資業務를 주된 事業으로 하도록 設立된 法人(例 : 韓國技術振興株式會社)

③ 短期金融業法에 의한 短期金融會社가 出資하여 新技術事業會社에의 投·融資業務를 주된 事業으로 하도록 設立된 法人(例 : 韓國開發投資株式會社)

(나) 新技術事業會社의 範圍

新技術事業 投資會社가 신기술사업회사에 출자한 株式을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法人稅가 非課稅되는 바 同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는 出資對象인 新技術事業會社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경우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에 出資한 者와 特殊關係에 있는 法人은 新技術事業會社에서 除外된다.

① 特許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사업화하는 法人

②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또는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企業附

設硏究所 및 産業技術 硏究組合이 開發한 技術의 成果를 事業化하는 法人

③ 機械工業振興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하여 指定된 特定機械工業의 品目 및 그 部分品을 生産하는 法人

④ 電子工業振興法 第3條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電子工業 고도화계획에 의한 대상사업의 品目 및 그 部分品을 生産하는 企業과 同法 第7條의 규정에 의한 국산화촉진 기기의 품목 및 그 부분품을 생산하는 法人

⑤ 實用新案法에 의하여 등록된 新規의 考案을 事業化하는 法人

⑥ 中小企業振興法 第12條의 규정에 의하여 創業造成實施計劃의 承認을 얻은 企業으로서 商工部長官이 인정하는 新技術을 保有한 法人

⑦ 中小企業振興法 第38條第1項第7號의 규정에 의한 新技術企業化를 위하여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業種을 영위하는 法人

⑧ 外資導入法 第23條의 규정에 의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導入된 技術을 事業化하는 法人

다. 技術 및 人力開發費 稅額控除 對象擴大(規則 第6條第1項第1號)

製造業 및 鑛業 등을 營爲하는 企業이 技術 및 人力開發費를 支出한 때에는 支出한 金額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支出한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稅額控除對象이 되는 費目을 租減法 施行令 別表6에 규정되어 있음) 그중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硏究員에 支給하는 給與는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바 硏究員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技術 및 人力開發費 稅額控除의 對象을 확대하였다.

硏究員의 範圍

改 正 前	改 正
— 自然科學分野의 碩士學位 以上의 學位를 가진 者	— 自然科學分野의 碩士學位 以上의 學位를 가진 者 또는 自然科學分野의 學士學位를 가진 者로서 技術開發促進法 第8條의3第1項 각호에 규정에는 機關에서 硏究員으로 3年 以上 근무한 者
—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기술계기사의 1級 以上의 資格을 가진 者	— 改正前과 같음

〈參 考〉

技術開發促進法 第8條의3第1項의 機關

① 特定硏究機關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硏究機關

○ 한국과학기술원
○ 한국에너지연구소
○ 한국동력자원연구소
○ 한국표준연구소
○ 한국기계연구소
○ 한국통신연구소
○ 한국과학연구소
○ 한국전기통신연구소
○ 한국전자기술연구소
○ 한국과학재단

② 企業附設硏究所(自然系分野의 學士 以上의 學位를 가진 연구전담요원 10人 以上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연구시설을 갖춘 硏究所임)

③ 產業技術 硏究組合

④ 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⑤ 國公立 硏究機關

2. 農漁村所得源 開發事業에 대한 租稅特例 新設(第11條의2)

農漁村所得을 增大하기 위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이 1983年 정기국회에서 制定된 바 있다. 이는 農漁村地域에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유치하여 農漁民의 所得을 增大함으로써 農漁村經濟의 均衡있는 發展을 도모함에 그 目的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政府支援의 一環策으로 農漁村所得源 開發事業者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租稅支援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가. 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租減法 第40條의2)

(1) 適用對象者

농어촌소득원개발촉진법에 의한 農工地區 또는 農漁村副業團地에서 農漁村所得源 開發事業을 영위하거나 농산물 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內國人이다.

(2) 損金算入 限度

課稅年度 終了日 現在 당일 사업에 사용하는 事業用資產價額(기계 및 장치가액)의 15%에 상당하는 金額을 準備金으로 計上하여 損金에 算入한다. 이 경우 面積이 100㎢ 이하인 도서지역(다시 말해서 제주도, 거제도, 강화도, 진도, 남해도를 除外한 도서)안에서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는 事業者는 事業用資產價額의 20%에 상당하는 金額을 準備金으로 計上할 수 있다.

(3) 益金還入 等 事後管理

損金에 算入한 準備金의 使用 및 益金에의 還入 기타 미사용준비금의 事後管理 要領 등에 관한 것은 中小企業投資準備金과 同一하다.

나. 特別減價償却(법 제40조의3)

(1) 適用對象者

앞의 投資準備金損金算入 適用對象과 同一하다.

(2) 特別減價償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機械 및 裝置에 대하여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의 100%에 상당하는 金額을 特別減價償却費로 하여 各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時 損金에 算入한다.

다. 租稅支援의 綜合限度 및 重複支援의 排除

租稅減免規制法 第87條 및 第88條의 규정에 의하면, 各種 投資準備金 및 特別減價償却 規定을 適用함에 있어 同一한 事業用 資產에 대하여 2個 以上의 租稅特別規定이 중복될 때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租稅支援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한 納稅義務者는 누구나 最小限의 稅負擔은 해야 한다는 國民皆稅原則에 따라 租稅支援의 綜合限度制를 두고 있다.

따라서 租減法 第87條의 規定에 의하여 農漁村所得源 開發事業을 영위하는 者가 中小企業·重要事業 등에 해당되어 다른 投資準備金 또는 特別減價償却規定이 중복적용될 때에는 선택적으로 하나의 投資準備金과 特別減價償却만을 適用받을 수 있으며, 또 조감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綜合限度規定도 適用받게 된다.

3. 增資所得 控除制度 實施

우리 經濟는 견실한 通貨管理에 의한 安定的 成長을 지속하고 企業의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러한 課題는 企業이 銀

行借入 등 間接金融을 줄이고 필요한 資金을 가능한 한 現金增資 등 直接金融方式으로 조달하지 않으면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現稅制上 제도금융을 통한 利子所得은 單一稅率로 분리과세되고 있는데 반하여 大株主의 配當所得은 최고 55%까지, 累進稅率로 綜合課稅되고 있어 企業主가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企業에 增資하여 配當을 받는 것보다 自己資金을 예금하고 借入金으로 企業經營을 하는 것이 有利한 面이 없지 않은 實情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점을 增資所得 控除制度에 의하여 多少 완화시킴으로써 企業主의 여유자금을 自己企業에 出資하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를 또다시 施行토록 하였다.

가. 所得控除對象 增資範圍

종전 몇차례 실시해오던 증자소득공제제도 아래서는 國家, 地方自治團體 및 增資企業과 特殊關係 있는 法人 이외의 株主가 現金出資에 의한 資本增加의 경우만을 所得控除토록 하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모든 內國法人으로부터의 增資分은 所得控除 適用對象에서 除外토록 하여 원칙적으로 個人株主에 의한 現金增資만을 所得控除對象으로 하였다. 이 경우 株式을 時價發行함에 따라 株主가 株式額面價額을 초과하여 現金을 拂入함에 따라 발생하는 株式額面發行 超過額도 增資所得控除 適用對象이 된다.

나. 增資期間·增資所得控除 期間 및 控除率

改正法 施行日인 1984. 4. 9 이후 1985. 12. 31까지의 기간내에 資本을 增加한 경우 資本增加後부터 租減法 適用時限인 1986. 12. 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토록 증자소득 공제기간을 허용하였으며, 한편 控除率은 금융기관의 대출금리가 대폭 인하조정되어 施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연12%로 정하였다. 또 한편 소득공제기간 계산시 종전 몇차례 실시해온 증자소득공제제도 아래서는 "적용시한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로 규정되어 있어 증자법인의 사업연도가 적용시한 이전에 종료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적용시한일까지의 기간은 소득공제가 배제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공제적용 시한일인 1986.12.31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한 경우라도 그 이후 198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모두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區 分	從 前	改 正
• 증 자 기 간	'81.6.16~'82.12.31	'84.4.9~'85.12.31
• 공 제 기 간	'84.12.31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	'86.12.31까지의 기간
• 공 제 율	18%	12%

〈例 示〉

9月末 法人인 「甲」株式會社가 1984.4.15 100億원을 增資한 경우 各 課稅年度別 增資所得金額(個人株主가 全額出資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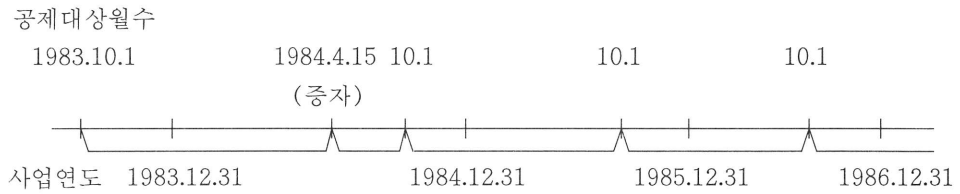

1) 증자후 1차년도(1983.10.1~1984.9.30)

$$100억원 \times \frac{5(5\sim9月)}{12} \times 12\% = \boxed{4.9}\ 억원$$

2) 증자후 2차년도(1984.10.1~1985.9.30) 및 증자후 3차년도 (1985.10.1~1986.9.30)

$$100억원 \times \frac{12}{12} \times 12\% = \boxed{12}\ 억원$$

3) 증자후 4차년도(1986.10.1~1987.9.30)

$$100억원 \times \frac{3(10\sim12月)}{12} \times 12\% = \boxed{3}\ 억원$$

※ 개정전 법에서는 증자후 4차년도는 소득공제가 배제되었으나, 개정법에서는 소득공제적용 가능함.

다. 所有控除 要件強化

종전의 增資所得 控除制度에서는 法人이 資本을 증가한 후 출자자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과 증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을 합산한 매월말일 현재 잔액이 증자금액의 10%를 초과할 때에는 증자소득공제를 排除하였다. 그런데 개정법에서는 上記 요건 중 후자의 주식취득제한의 범위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법인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였다. 다만, 이 경우 신기술사업 투자활성화 등의 특수사정이 있는 경우를 감안하여 다음 몇가지 유형의 주식취득의 경우는 배제요건에서 제외하였다.

- 외국법인
- 신기술사업투자회사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
- 주무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법인

〈適用例 및 經過措置〉

① 改正된 增資所得控除規定은 1984. 4. 9 이전에 設立된 法人이 1984. 4. 9 이후에 增資한 分부터 適用한다.

② 종전법의 규정에 의거 1982. 12. 31 이전에 增資한 法人으로 殘存控除期間이 있는 者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增資所得控除를 適用받는다.

4. 우리社株組合員의 株式取得時 稅額控除 擴大(法 第7條의2 및 令 第4條의2)

우리社株取得時 稅額控除制度는 우리社株組合員이 自己會社의 株式을 취득하는 경우 組合員이 納付할 綜合所得稅額에서 株式取得價額의 一定額을 稅額控除해주는 租稅支援制度이다. 또한 從業員持株制度는 종업원들이 自己會社의 株式을 나누어 가짐으로써 勞使協助를 바탕으로 한 근로의욕고취로 生產性을 提高시킴과 아울러 종업원의 財產形成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로 종전에는 이에 대한 租稅支援으로 稅額控除制度를 所得稅法 第74條에서 規定하고 있었다. 지난해 從業員持株制의 확산을 위하여 종래 所得稅法에서 規定하고 있던 것을 租稅減免規制法으로 移管함과 동시에 給與額으로만 株式을 取得할 수 있었던 것을 家計의 여유자금으로도 취득할 수도 있도록 株式取得要件을 완화하였고 또한 稅額控除率도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가. 稅額控除 適用對象의 範圍調整

稅額控除對象 金額은

첫째, 組合員이 自己會社의 株式을 우리社株組合을 통하여 取得하는 경우로

- ○ 株式取得前에 株式取得을 위하여 組合에 貯蓄한 金額과
- ○ 株式取得後에 株式取得價額의 償還을 위하여 우리社株組合에 納入한 金額이 대상이 된다.

종전에는 給與額 중의 一定額을 저축하여 同貯蓄額으로 株式을 取得하거나 株式取得後 償還하도록 制限을 했으나 改正法에서는 給與額 이외에 家計餘裕資金으로 貯蓄을 하거나 株式取得代金의 償還을 위하여 納入한 金額도 稅額控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稅額控除 適用對象金額의 限度가 改正前에는 月定給與額의 年間合計額의 50%로 되어 있던 것을 改正法에서는 月定給與 年間平均金額이 40萬원 以下인 者는 종전과 같이 月定給與 年間合計額의 50%를 그대로 존치토록 했으나 月定給與 年平均金額이 月40萬원을 超過한 者에 대해서도 당해연도 月定給與 年間合計額의 30%내에서만 稅額控除를 받도록 그 限度를 制限하였다.

둘째, 우리社株組合員에게 支給할 賞與金이나 退職金을 自己會社가 發行한 株式으로 支給하는 경우에는 株式取得價額이 全額 稅額控除對象이 된다.

나. 稅額控除方法

稅額控除率은 다음과 같이 대폭 上向調整하였고 控除稅額이

改 正 前	改 正
稅額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5	稅額控除對象金額의 100分의 15

다음의 금액을 초과시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 ○ 退職金을 당해 法人이 發行한 株式으로 支給받은 경우에는 退職金에 대한 算出稅額
- ○ 기타의 경우는 당해연도 甲種勤勞所得에 대한 綜合所得算出稅額 즉, 所得稅法이나 租稅減免規制法에서 규정하고 있는 他稅額控除와 같이 次年度에 移越控除되거나 他綜合所得 등의 算出稅額에 대해서까지 稅額控除를 許容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同稅額控除는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貯蓄稅額控除로 보도록 하여 控除받은 稅額相當額에 대하여는 防衛稅 納稅義務가 免除된다.

다. 稅額控除時期와 기타 事後管理

稅額控除時期 事後管理 등의 要領에 관한 것은 改正前과 大同小異하다.

(1) 稅額控除時期

다음 各號에 게기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에서 控除한다.

① 株式取得을 위하여 우리社株組合에 貯蓄한 경우에는 그 貯蓄日

② 株式取得을 위하여 金融機關 등으로부터 資金을 貸與받은 경우에는 그 金額의 償還日

③ 賞與金이나 退職金을 株式으로 支給받은 경우에는 당해 株式의 支給日

(2) 稅額控除申請書 등 提出

① 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者는 所得稅課稅標準 確定申告할 때 우리社株取得時의 稅額控除申請書를 첨부하여 관할 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所得에 대한 所得稅를 원천징수할 때 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所得의 支給日 7日前까지 당해 源泉徵收義務者에게 稅額控除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② 우리社株組合은 稅額控除를 받은 우리社株組合員에 대한 韓國證券金融(株) 또는 金融機關이 發給한 貯蓄證明書 또는 株券預託證明書를 稅額控除를 받은 달의 翌月 末日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③ 우리社株組合員이 賞與金이나 退職金으로 株式을 支給받음으로써 稅額控除를 받은 때에는 韓國證券金融(株)이 發給한 1年間 引出制限條件附의 株券預託證明書를 稅額控除 받은 달의 末日까지 提出하여야 한다.

(3) 旣控除한 稅額에 대한 事後管理

우리社株組合은 우리社株組合員에게 다음의 사유가 發生한 때에는 同事實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지체없이 通報하여야 하며 同事實을 通報받은 源泉徵收義務者 또는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은 우리社株組合員이 旣控除받은 稅額相當額을 지체없이 追徵해야 한다.

① 株式取得前에 株式取得을 위하여 우리社株組合에 貯蓄한 金額 중 당해 法人의 株式을 取得하지 않고 引出한 경우

② 우리社株組合員이 取得한 株式을 取得日로부터 1月 이내에 韓國證券金融(株)에 預託하지 아니하거나, 預託日로부터 1年이 경과되기 전에 引出한 경우

5. 특정설비 중 中小企業의 生產性向上施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實施(規則 第21條第7項)

租稅減免規制法 第71條의 규정에 의하면 產業政策支援에 있어 機能別 支援手段으로서 特定設備投資 稅額控除 制度를 두고 있다.

즉, 종래 1981年 租稅減免規制法 全面 改編 이전의 特定業種別 減免 위주의 支援制度는 줄여나가는 대신 우리 產業의 전반에 걸쳐 공통적인 努力이 필요한 部門은 特定業種에 관계없이 支援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중 「에너지節約施設」「公害防止施設」「產業災害豫防施設」 등은 구체적인 施設을 정하여 施行하여 왔으나 「生產性向上施設」 部門은 法 第71條 및 令 第57條에서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事業者가 工程改善이나 施設의 自動化·老朽施設의 改替 및 勤勞者 福祉向上 等, 生產性向上 施設을 投資한 때에는 租稅減免을 받도록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具體的인 施設投資의 범위는 規則에서 정하도록 하여 施行이 留保되어 왔었는 바, 그중 우선적으로 「老朽施設의 改替 및 勤勞者 福祉向上 施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施設의 범위를 정하여 特定設備投資로서의 租稅支援을 받도록 하였다.

가. 老朽施設의 改替 및 勤勞者福祉向上 施設의 範圍

製造業 및 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이 취득하는 다음의 機械裝置와 施設이다.

- ○ 事業에 직접 사용하는 事業別 固定資産 중 내용연수가 經過된 것을 改替하기 위한 機械裝置로 中古品에 의한 投資는 除外된다.
- ○ 工場·鑛業에 종사하는 勤勞者를 위한 寄宿舍. 이 경우, 租稅支援은 建物 및 構築物에 한한다.

나. 減免方法

投資한 生産性向上施設에 대하여

- ○ 10%(外國産機資材 사용시는 6%) 投資稅額控除
- ○ 50% 一時減價償却 중 하나를 선택하여 減免을 받을 수 있다.

6. 特定設備 중 유통근대화시설에 對한 投資稅額控除 實施

企業이 生産性向上施設·에너지節約施設·公害防止施設·産業災害豫防施設 等 産業政策上 필요하다고 認定한 特定設備投資에 대하여는

- ○ 10%(外國産機資材 使用時는 6%) 投資稅額控除와
- ○ 50% 一時減價償却 中 하나를 선택하여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同特定設備 중 投資範圍를 정하지 아니하여 施行이 保留되어 왔던 流通産業近代化施設의 投資對象을 새로이 정하여 租稅支援을 받도록 하였다.

즉, 새로이 지원대상이 되는 流通産業近代化 施設의 範圍는 市場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連鎖化事業者로 지정된 者가 連鎖化事業을 하기 위한 施設로 그 範圍는 다음表와 같고 이 경우 中古品에 의한 投資는 租稅支援對象에서 제외된다.

流通産業近代化施設(規則 別表6)

區 分	適 用 範 圍
1. 저 온 보 관 고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위한 저온보관고의 온도 조절을 위한 기계장치
2. 운 반 용 화 물 자 동 차	— 적재정량 1톤 이상의 상품운반 화물자동차로 냉동·냉장·보냉이나 인양장비가 된 것
3. 포 장 기	— 농수산물의 규격화와 상품성제고를 위한 동력포장기
4. 판 매 용 진 열 대	— 농수산물과 이의 가공품을 진열판매하는 고정식용기로서 냉동·냉장 또는 온장기능을 갖는 것(냉동·냉장 또는 온장을 위하여 필요한 부수설비를 포함한다)

7. 醫療法人에 대한 特別減價償却 對象資産 調整(規則 第21條第8項)

서울特別市·直轄市·道廳所在地 이외의 地域에서 醫療法에 의한 醫療法人을 영위하는 事業者에 對하여는 당해 醫療業에 직접 사용하는 投資資産에 대하여는 50% 一時減價償却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50% 一時減價償却 對象資産이 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2의 機械 및 裝置로 되어 있어 醫療業의 固定資産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기기는 特別減價償却 對象資産에서 除外되어온 問題點이 있어 이를 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1의 의료기기로 調整하여 실질적인 租稅支援이 되도록 하였다.

特別減價償却對象資産

改 正 前	改 正
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2의 事業別 固定資産(機械 및 裝置)	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1의 醫療機器 ○ 뢴트겐·기타 電子管을 사용하는 機器 ○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 調製機器 ○ 치과진료용 유니트 ○ 기타 의료기기

8. 地方移轉에 대한 租稅特例 중 大都市 範圍의 一部調整(令 別表8 중 備考)

首都圈과 釜山 및 大邱直轄市(이하 "대도시")안의 工場을 大都市圈 이외의 地域(이하 "地方")으로 移轉하는 때에는

첫째, 租減法 第41條의 규정에 의한 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과

둘째, 租減法 第42條의 규정에 의한 舊工場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및 特別附加稅(個人企業은 讓渡所得稅)의 免除

셋째, 租減法 第43條의 규정에 따라 方法으로 이전한 공장의 기계, 장치에 대한 10% 투자세액공제 또는 50% 一時償却 중 하나를 선택하는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이 租稅支援對象이 되는 大都市(令 別表8에 규정되어 있음)의 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종전에는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단지가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대도시내에 있다 할지라도 대도시로 보지 않고 地方으로 보아 왔다. 따라서 지역적으로 같은 대도시내에 있으면서도 대도시의 공장을 같은 대도시내의 공단으로 이전할 때는 租稅支援을 받지만 反面에 공단내의 공장을 정작 地方으로 移轉하려 할 때는 租稅支援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대도시공단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때에도 똑같은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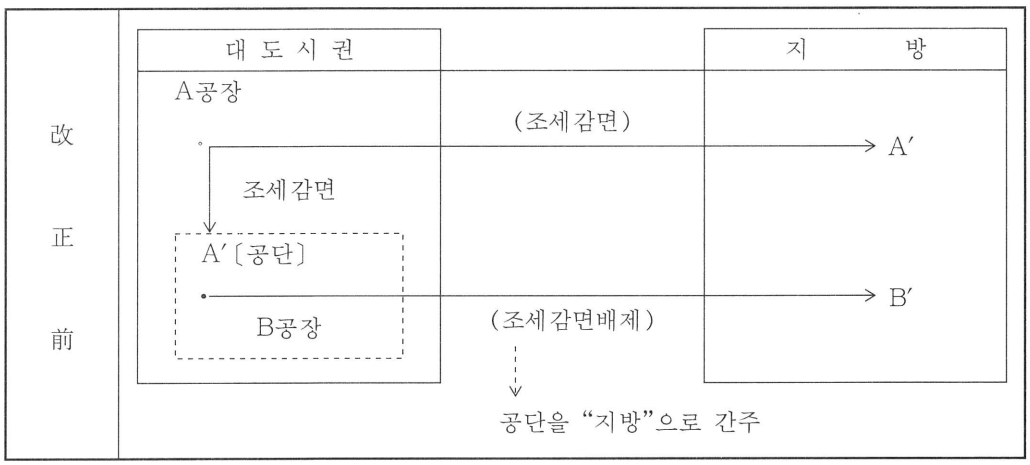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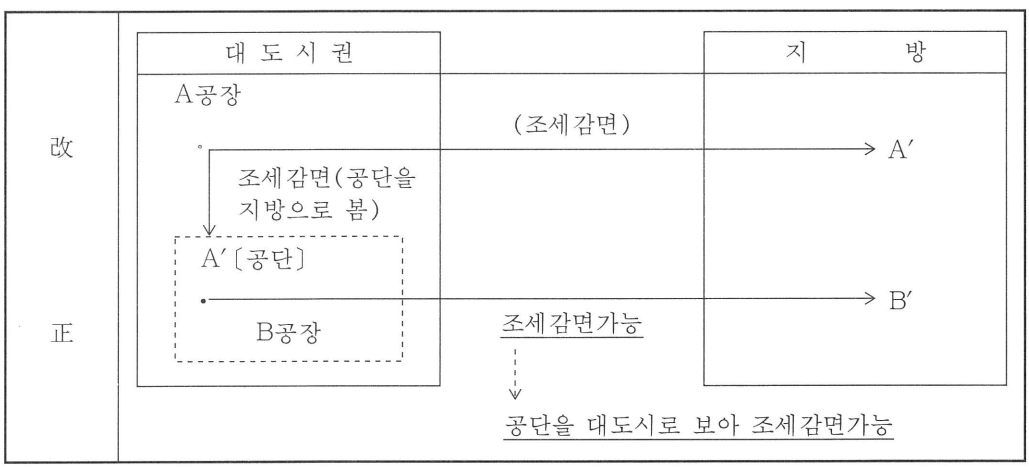

9. 中小企業의 指定系列化 品目의 委託契約書에 대한 印紙稅免除(法 第18條 第12號 新設)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에 의하면 商工部長官이 指定한 系列化品目을 納品하는 경우 그 契約書作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印紙稅法에서는 都給契約에 관한 證書로 契約書 每1통마다 기재금액 5천원 이하에 대해서는 10원으로부터 최고 1億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15만원까지의 印紙稅를 納付(印紙稅를 첨부)토록 指定하고 있었는 바, 同契約書類 作成에 대하여는 印紙稅를 免除토록 하여 母企業과 受給企業間의 계열화를 促進토

록 하였으며 또한 中小企業의 權益保護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10. 外國人出資企業에 대한 法人稅減免期間 調整(法 第68條第2項第2號 및 第4項)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一般的인 租稅減免에 관하여는 外資導入法의 규정에 의하고 있는 反面, 국제금융기구 또는 국제금융기구와 외국인이 공동으로 出資한 企業(이하 "外國人出資企業"이라 함)에 대한 租稅減免은 租稅減免規制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國際金融機構가 직접 出資한 企業에 대하여는 국제금융기구가 출자한 持分에 대하여 期間制限없이 法人稅를 전액 免除하고 또한 同 外國人出資企業으로부터 국제금융기구가 支給받는 配當金에 대하여도 전액 非課稅하며, 國際金融機構와 外國人이 공동으로 출자한 外國人出資企業의 경우에는 出資持分에 대한 法人稅 및 同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및 所得稅를 5年間 100% 그후 3年間 50%의 減免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1983年 外資導入法 全面改編時 外國人投資企業의 出資持分에 대한 法人稅 및 同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및 所得稅를 5年間 100%, 그후 3年間 50% 減免해 주던 것을 5年間만 100% 減免하도록 그 期間을 축소조정한 바 있다.

따라서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여 減免을 받고 있는 外國人出資企業 중 國際金融機構와 外國人이 공동으로 出資한 企業에 대한 法人稅와 配當金에 대한 法人稅 및 所得稅의 減免期間도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과 같이 5年間만 100% 減免받도록 하여 外資導入法에 의한 外國人投資企業과 租減法에 의한 外國人出資企業에 대한 減免期間을 一致시켰다.

〈適用例 및 經過措置〉

同 改正規定은 1984. 7. 1 이후 최초로 出資를 完了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따라서 1984. 6. 30 이전에 외국인출자자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完了한 경우 外國人出資企業 및 外國人出資者에 대한 租稅減免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5年間 100% 그후 3年間 50% 減免을 받는다.

11. 其 他

가. 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관한法律의 폐지에 따른 租稅減免에 관한 經過措置 마련 (法 第3條第1項第17號 削除 및 附則 第10條)

1983年 外資導入法 全面改編時 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관한法律을 폐지함과 동시에 同法律에 규정되어 있던 內容은 改正된 外資導入法에서 吸收統合한 바 있다. 이에 따

라 租減法 第3條第1項第17號에 게기되어 있던 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관한法律을 削除하였고 다음과 같은 經過規定을 마련하였다.

〈經過措置〉

1984.6.30 이전에 公共借款의導入및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하여 체결된 公共借款協定 및 契約分에 대한 租稅減免은 종전 규정에 따라 租稅減免을 받는다.

나. 外國人觀光客 등이 구입하는 財貨에 대한 間接稅特別根據 新設(法 第74條의2)

앞으로 '86아시아경기대회 및 '88서울올림픽대회와 같이 큰 國際行事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것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 찾아오는 外國人觀光客이 보다 많은 物品을 사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물품구입시 부담하게 되는 附加價値稅 및 特別消費稅를 事前免稅 및 零稅率適用 또는 事後還給할 수 있는 稅制上 根據規定을 마련하였는 바 이에 관한 具體的인 것은 施行令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다. 外國人專用 遊興飮食店에 提供되는 酒類에 대한 免稅規定 中 未備點補完(法 第82條第2項 新設)

주한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 전용유흥음식점에 供給하는 酒類도 수출 및 군납용 酒類와 같이 酒稅를 免除하고 있다. 또한 酒稅納付稅額을 計算함에 있어 이미 課稅되었거나 課稅될 酒類를 原料로 하여 제조한 酒類에 대하여는 算出한 酒稅額에서 그 원료용 酒類에 對한 酒稅相當額을 공제하되 원료용 주류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상당액은 없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나 수출 등 외화획득용으로 販賣되는 酒類에 대하여는 酒稅가 免除되기 때문에 항상 공제세액이 산출세액을 초과하게 되어 이 경우에는 그 초과되는 공제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特例를 인정하여 원료용 주류공제세액제도의 實效性을 유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租減法 第82條의 규정에 따라 외국군인 및 외국인선원용 유흥음식점에서 供給하는 酒類의 경우 酒稅는 免除토록 하고 있으나 원료용 酒類稅額控除의 특례규정은 인정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에 제공되는 酒類에 대해서도 수출용 및 군납용 등 他免稅酒類와 같이 原料稅額控除의 特例를 인정토록 하여 租稅支援의 형평을 유지토록 하였다.

1985년

◉ 법　　률 : 1985.12.23. 법　　률 제 3796호(시행일 : 1985.12.23.)
◉ 시 행 령 : 1985. 6.28. 대통령령 제11710호(시행일 : 1985. 6.28.)
　　1985.12.31. 대통령령 제11814호(시행일 : 1985.12.31.)
◉ 시행규칙 : 1986. 3.31. 재무부령 제 1672호(시행일 : 1986. 3.31.)

〈要　　約〉

○ 서민의 家計貯蓄을 통한 財產形成을 지원함으로써 貯蓄增大 雰圍氣를 조성하기 위하여 少額家計貯蓄에서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5%의 所得稅만 低率課稅토록 함.

○ 효율적 資源配分을 통한 企業體質 改善과 競爭力 강화를 위하여 종전 產業合理化稅制를 보완함.

○ 地方經濟의 均衡있는 발전을 위하여 首都圈안의 法人本社를 地方으로 이전하는데 대한 稅制支援으로 「法人本社 地方移轉準備金의 損金算入」, 「首都圈안의 法人本社 讓渡差益免稅」 및 「地方移轉本社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를 신설함.

○ 기업의 設備投資促進을 통한 安定成長을 도모하기 위하여 機械裝置投資에 대한 限時的인 臨時投資稅額 控除制를 시행하고 특히 國產機械類使用을 더욱 促進함으로써, 國際收支改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國產機械投資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함.

○ 私立大學 附屬病院에 대하여 學校敎育을 위한 寄附金의 損金算入限度와 私學法人財產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對象을 확대함으로써, 學校法人의 收益活動을 지원하여 私學의 財政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함.

○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稅制支援을 강화함.
- 技術集約的인 產業의 範圍擴大
- 技術開發準備金 사용 範圍擴大
- 新技術企業化事業의 範圍擴大
- 硏究試驗用施設·職業訓練用 施設의 範圍擴大
- 技術·人力開發費 範圍擴大
- 技術用役事業의 範圍擴大

○ 營農費를 절감시켜 農家所得增大를 지원하기 위하여 農機械用油類에 대한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를 면제함으로써, 農機械普及促進으로 農業生產性을 제고하고 農村勞動力 부족 현상에 대처하며 현재 면세되고 있는 沿近海漁業用 油類와의 課稅衡平을 도모함.

○ 기타 종전 制度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보완함.

〈改正內容〉

1. 稅金優待 少額家計貯蓄(法 §4의2, 令 §2의2, 規則§1의2)

家計貯蓄支援을 위해 1人當 500만원 이하의 少額家計貯蓄에 대해서는 敎育稅·防衛稅·住民稅가 모두 면제되고 所得稅만 5%의 優待稅率로 저율분리과세받을 수 있는 少額家計貯蓄制度가 새로이 마련되었다.

가. 利用對象者

個人이면 누구나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稅金優待 少額家計貯蓄制度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法人은 물론 法人格이 없는 團體라도 그 團體名義로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外國人이라도 國內에 住所가 있거나 1年 以上 居所를 둠으로써 소득세법상의 居住者에 해당되면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으나 非居住者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나. 稅金優待 對象貯蓄의 범위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는 貯蓄을 취급하는 貯蓄機關과 해당 저축상품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稅金優待少額家計貯蓄

저 축 기 관		세 금 우 대 대 상 저 축			종 합 통 장
		거치식저축	적립식저축	대출목적저축	
○ 은행(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농·수·축협 중앙회 포함)	일반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가계우대 정기적금	○ 상호부금 ○ 주택부금	○ 세금우대종합 통장
	신탁	○ 불특정 금전신탁	○ 적립식 목적신탁		
○ 우체국		○ 정기예금	○ 정기적금		○ 세금우대체신 예금종합통장
○ 상호신용금고		○ 차입금		○ 신용부금	○ 세금우대상호신용 금고종합통장

다만, 1년 이상의 長期貯蓄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대상저축이라 하더라도 1년 미만인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정기예금에는 공모주청약 정기예금이나 주택청약 정기예금과 같은 목적부예금은 포함되나 복리자유적립식 정기예금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불특정금전신탁에는 만기에 원리금을 일시 지급하는 갑종과 신탁이익을 일정기간마다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을종이 모두 포함되나, 개발신탁이나 가계금전신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稅金優待 綜合通帳

예금주 각자의 형편에 따라 상기의 稅金優待 對象 貯蓄 중 어느 한가지만 이용하든가 또는 여러가지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 통장으로 여러가지 貯蓄去來가 가능한 종합통장방식을 도입하여 銀行預積金은 稅金優待 綜合通帳을, 郵遞局은 稅金優待 遞信預金 綜合通帳을, 相互信用金庫의 경우에는 稅金優待 相互信用金庫 綜合通帳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1) 1人1通帳

稅金優待 綜合通帳(稅金優待 遞信預金 綜合通帳, 稅金優待 相互信用金庫 綜合通帳)은 은행, 우체국, 상호신용금고 등 모든 저축기관을 총괄하여 1人에 1通帳만 허용된다.

따라서 稅金優待貯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자기가 거래하고자 하는 特定貯蓄機關의 特定店鋪(예 : A銀行 甲支店) 하나만을 선정하여 稅金優待 綜合通帳을 개설 이용할 수 있고 일단 稅金優待 綜合通帳을 개설한 후에는 계속 그 通帳을 이용해야 된다.

貯蓄契約이 만료되거나 중도해지로 이미 개설한 稅金優待 綜合通帳을 완전히 해지한 후에는 다른 貯蓄機關에 가서 새로이 稅金優待 綜合通帳을 다시 만들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A銀行 甲支店의 通帳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郵遞局이나 相互信用金庫 등 다른 저축기관은 물론 동일은행내 타점포에 또 하나의 稅金優待綜合通帳을 개설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稅金優待 綜合通帳을 중복하여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通帳開設日字를 기준으로 개설일자가 가장 빠른 통장하나만 적법한 稅金優待 綜合通帳으로 인정받고 나머지 통장에 대해서는 세금우대적용이 배제된다. 이 경우 비록 먼저 開設한 통장에 預置되어 있던 저축을 모두 인출, 殘高가 전혀 없는 경우라도 당해 통장 자체를 완전히 해지하기 전에는 계속 유효한 통장으로 인정하여 1

人1通帳制가 적용된다.

이와같이 稅金優待 綜合通帳은 모든 저축기관을 총괄하여 특정점포에 대해 1人1通帳만 허용된다는 점에서 은행, 신탁회사 등 여러 貯蓄機關에 分割去來가 가능한 다점포방식으로 運營되는 日本의 마루우와 차이가 있다.

(2) 稅金優待貯蓄을 하나의 通帳으로 綜合去來

稅金優待 綜合通帳으로 자기가 거래하는 貯蓄機關이 취급하는 여러가지 稅金優待貯蓄 商品 中 어느 한가지만 선택하여 이용하든가 아니면 다수의 稅金優待貯蓄 商品을 혼합이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A은행 B지점에서 통장을 개설한 경우 당해 지점에서 취급하는 稅金優待貯蓄 商品 中 정기예금 한가지만 이용할 수도 있고, 500만원 한도내에서 정기예금, 가계우대 정기적금, 상호부금 등 여러가지 稅金優待貯蓄 商品에 조금씩 나누어서 混合去來하는 것도 가능하다.

稅金優待 綜合通帳은 한 통장에 여러가지 저축상품을 混合利用할 수 있으므로 처음에는 한 종류의 저축만 가입하였다가 나중에 다른 종류의 저축에 추가 예입하는 것도 가능하며, 또한 기왕에 예치되어 있던 貯蓄이 만기가 되어 인출하거나 中途解止한 후에도 당해 통장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3) 貯蓄元金基準 500만원 以下

세금우대 종합통장에 의해 去來할 수 있는 貯蓄의 限度는 貯蓄元金基準으로 500만원까지이다. 따라서 500만원을 초과하여 稅金優待 綜合通帳에 예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또한 貯蓄元金을 基準으로 하는 만큼 利子分은 한도를 계산하는데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거치식상품(定期預金, 借入金, 불특정금전신탁 등)은 당초의 예치금액에 의하여 정기적금(가계우대 정기적금, 적립식목적신탁)과 같은 적립식상품은 契約期間中의 月賦金의 合計額으로, 부금(주택부금, 상호부금 및 신용부금)은 給付前 月賦金의 合計額을 기준으로 500만원 초과여부를 가리게 된다.

- 据置式商品 : 預置金額
- 積立式商品 : 月賦金×契約期間中의 拂入回數
- 貸出目的商品 : 給付前月賦金×契約期間中의 拂入回數

통장을 처음 개설할 때 1회에 500萬원까지 전부 예치하지 않고 수회에 걸쳐 여러가지 저축에 추가 가입하는 경우에는 추가가입시점에서 그때그때마다 旣存 貯蓄分과 合算하여 500萬원 한도초과 여부를 가려 한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稅金優待 綜合通帳에 추가예입시킬 수가 있다.

라. 稅金優待內容

稅金優待 綜合通帳에 1年 이상 예치된 저축에 대해서는 敎育稅·防衛稅·住民稅가 모두 면제되고, 소득세도 5%의 낮은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세금우대저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이 종래의 16.75%에서 5%로 낮아지게 되므로 세금이 줄어든 만큼 稅後利子가 더 많아지게 되어 그만큼 實質金利引上 效果가 있게 된다.

稅金優待 綜合通帳에 예치된 저축이라 하여 무조건 5% 優待稅率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저축기관에 실제로 예치·불입 또는 신탁된 기간이 1年 이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거치식저축의 경우에는 預置日로부터 기산하여 1年 以上이 되어야 하고 적립식저축(적금, 부금, 적립식목적신탁 등)은 첫 부금納入日로부터 기산하여 1年 이상이 되어야만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다.

利子所得에 대한 稅金

	一般預金利子	稅金優待貯蓄
· 所得稅	利子의 10%	利子의 5%
· 敎育稅	〃 5%	—
· 防衛稅	所得稅額의 10%	—
· 住民稅	〃 7.5%	—
計	16.75	5%

(1) 計座別로 稅金優待 적용

세금우대(5% 저율과세)는 개개의 貯蓄計座別로 적용된다.

저축기관이 취급하는 여러 종류의 저축을 하나의 종합통장으로 混合利用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같은 통장속에서도 개개의 계좌별로 그 가입·만기 또는 해지일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통장개설일만을 기준으로 하여 1年이 넘었다고 나중에 들어간 것까지 모두 5%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계좌별로 당해 저축의 契約日(적금·부금의 경우는 첫 부금납입일)을 기준으로 1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5%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2) 契約期間 滿了前 中途解止의 경우

少額家計貯蓄에 대한 세금우대는 실제로 貯蓄機關에 예치 등이 되어 있던 기간이 1年 이상이냐 1年 미만이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契約期間滿了 與否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즉, 契約期間滿了前에 중도 해지한 경우라도 실제로 저축기관에 예치된 기간이 1年 以上(적금·부금의 경우에는 첫 賦金納入日로부터 1年 以上)이면 5% 優待稅率이 적용되고 1年 미만이면 정상세율에 의한 세금을 물게 된다.

마. 源泉徵收

稅金優待 綜合通帳에 여러 개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경우에도 個個의 計座別로 실제 저축기관에 예치·신탁·불입된 기간(적금·부금의 경우는 첫 賦金納入日로부터)이 1年 以上인지의 여부를 가려 5%의 優待稅率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예·적금의 경우처럼 16.75%의 세금을 징수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된다.

(1) 滿期日 또는 契約解止時 元利金을 一時支給하는 貯蓄의 경우

원리금을 一時支給하는 저축에 있어서는 저축계약이 만료되어 원리금을 지급할 때 바로 5% 優待稅率을 적용하여 利子所得稅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이 경우 契約期間 滿了前 中途解止를 한 때에는 당해 저축계좌 개설일로부터 기산하여 中途解止日까지(적금·부금의 경우에는 最初 賦金納入日부터 解止日까지)의 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5% 優待稅率을, 1年 미만이면 一般 預·積金의 경우와 같이 所得稅(10%), 敎育稅(5%), 防衛稅(소득세액의 10%), 住民稅(소득세액의 7.5%)를 합하여 16.75%의 원천세를 징수하게 된다.

(2) 一定期間마다 利子를 支給하는 貯蓄의 경우

만기시에 원리금을 일시 지급하지 않고 契約期間中 一定期間마다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저축을 1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源泉稅를 精算하는 절차가 따른다.

○ 稅金優待가 배제되므로 해지할 때 정상세율(16.75%)과 우대세율(5%)간의 差額을 추가로 징수하여 국고에 불입하여야 한다.

중도해지시 당해 저축기간중에 지급할 이자의 총액 ×	10%(所得稅) 5%(敎育稅) 1%(防衛稅) 0.75%(住民稅)	−	기납부소득세액(각 이자 지급시점에서 기왕에 5%의 세율을 적용하여 징수한 소득세액)	= 추가 징수할	• 所得稅 • 敎育稅 • 防衛稅 • 住民稅

계약기간 만료전에 중도 해지한 경우라도 실제의 예치·불입·신탁기간이 1년이 넘었으면 세금우대가 적용되므로 源泉稅를 정산해야 되는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3) 稅金優待 綜合通帳을 重複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

稅金優待 綜合通帳은 1人1通帳만 허용되므로, 重複하여 여러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통장개설일이 가장 빠른 것 하나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稅金優待適用이 배제된다.

각 貯蓄機關이 분기별로 少額家計貯蓄 明細書를 제출하면 국세청에서는 이를 가지고 중복통장 여부를 체크하여 重複通帳에 대해서는 그 사실을 해당 저축기관에 통보해 주게 된다. 國稅廳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貯蓄機關은 당해 중복통장을 세금우대 못받는 다른 一般通帳으로 전환하고 이때 이미 그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저축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5%의 소득세만 징수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에 따라 세액을 精算하여야 한다.

바. 二重通帳 管理方法

(1) 少額家計貯蓄 明細書

은행·우체국·상호신용금고가 예금주와 약관을 맺고 세금우대 종합통장을 개설하거나 해지한 때에는 分期別로 당해통장의 開設 및 解止狀況(예금주의 성명·주민등록번호·세금우대 종합통장번호·통장개설일 및 해지일 등)이 기입된 少額家計貯蓄 明細書를 반드시 電算處理하여 分期終了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月 1日~ 3月 31日分 : 4月末
- 4月 1日~ 6月 30日分 : 7月末
- 7月 1日~ 9月 30日分 : 10月末
- 10月 1日~12月 31日分 : 翌年 1月末

소액가계저축 명세서는 通帳別로만 그 開設 및 解止狀況을 제출하면 되고 個個貯蓄計座에 대한 것까지를 제출할 必要는 없다.

소액가계저축 명세서는 단위점포별로 소관원천징수의무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산업무를 총괄하는 곳에서 일괄하여 국세청에 직접 제출하는 것도 관계없다.

(2) 二重通帳與否 체크 및 처리

국세청에서는 각 저축기관이 제출한 소액가계저축 명세서를 모두 취합 전산처리하여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二重通帳여부를 체크해서 重複通帳이 있으면 이에 대한 명세서를 해당 저축기관에 통보해주게 된다.

국세청으로부터 중복통장통보를 받은 해당 저축기관에서는 즉시 그 통장을 일반통장으로 전환하고 만약에 이미 지급된 이자에 대해 5%의 우대세율을 적용해서 소득세만 징수한 것이 있을 때에는 차기이자지급일에 稅額을 精算하여 국고에 불입해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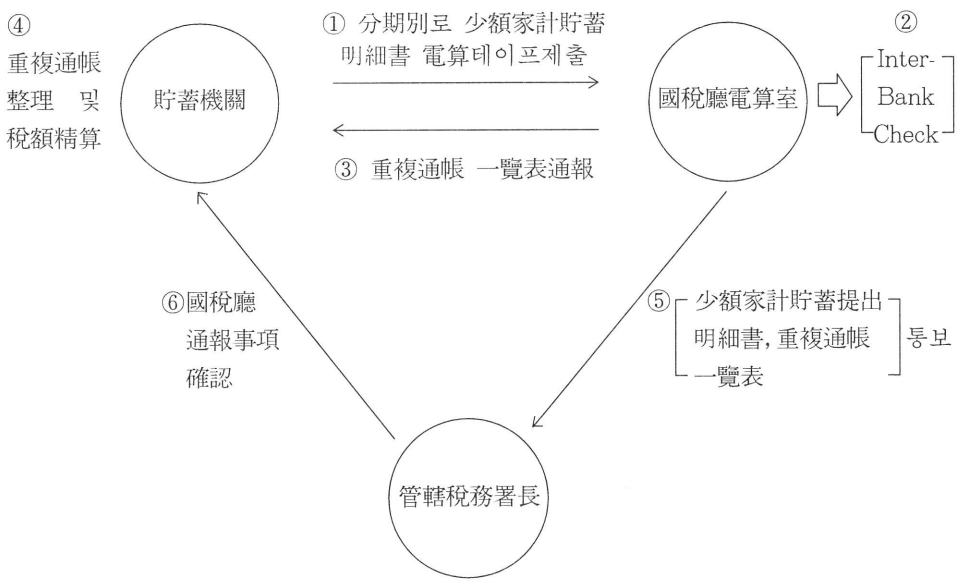

〔參考〕 少額家計預金支援制度要約

貯 蓄 名	加 入 資 格	加 入 限 度	稅制支援內容	備 考
1. 勤勞者財產形成貯蓄(財形法)	— 月給與 60만원 이하의 근로자 — 해외 취업자	— 月給與額의 30%까지(단, 月給與의 30%가 8만원 이하일 때에는 8만원까지) — 월 30만원까지	— 利子所得稅 非課稅 — 貯蓄額의 15% 稅額控除	— 稅額控除額은 基金에 納付 — 만기에 법정장려금으로 지급
2. 勤勞者證券貯蓄(租減法)	— 月給與60만원 이하의 근로자	— 年給與額의 30%까지	— 利子·配當所得 非課稅 — 貯蓄額의 10% 稅額控除	— 稅額控除額은 저축자에게 바로 환급
3. 우리社株組合貯蓄(조감법)	— 모든 從業員		— 저축액의 15% 세액공제 ※세액공제한도 ·연급여액의 50%(月給與 40만원 초과자는 30%)×15%	— 저축액은 우리사주 주식취득에 사용 — 주식취득전에는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 또는 금융기관에 예탁 — 회사별로 종업원이 조합 구성

貯 蓄 名	加 入 資 格	加 入 限 度	稅制支援內容	備 考
4. 國民貯蓄組合貯蓄(財形法)	— 10人 이상 근무하는 관공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로서 月給與 2만원 이상 — 農協, 水協, 各種 商工組合, 기타 이에 준하는 동업조합 또는 동업단체의 구성원	— 每月 月給與의 2% 이상 저축	— 利子所得稅 非課稅	— 財形法에 의한 강제 저축 — 死亡·退職時 元利金 一時支給
5. 農漁家목돈마련貯蓄(租減法)	— 경작면적 2ha(6천평)이하의 農漁家	— 세대당 300만원 한도	— 利子所得稅 非課稅	— 農·水·畜協의 單位組合에서 취급 — 勤勞者 財產形成貯蓄과 같은 方式으로 운영
6. 信用協同組合, 마을金庫, 單位農協預託金(조감법)	— 組合員		— 500만원 이하의 예탁금(출자금은 200萬원 이하)이자 비과세	
7. 奬學積金(조감법)	—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교 학생	— 1人10구좌(1구좌 5만원)	— 利子所得稅 非課稅	
8. 入住者貯蓄(조감법)	— 無住宅 세대주	— 1세대1구좌로 월불입액 10만원 이하	— 利子所得稅 非課稅	— 住宅建設促進法

2. 產業合理化 稅制補完

가. 產業合理化 稅制를 보완하게 된 背景

우리 經濟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緊急한 課題 中의 하나가 不實企業問題라는 데 대하여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우리의 경우에 있어서 不實企業은

○ 企業主의 방만한 企業經營이나 타인자본에 의한 무리한 企業擴張 등 個別企業의 單純한 不實經營에 따른 不實企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 最近에 들어서는 海運業에서 볼 수 있는 海外需要의 격감 등 國際與件의 변화 또는 개발도상국과의 競爭深化, 新技術, 尖端技術의 등장으로 國際競爭力의 약화·상실 등 經濟構造·產業構造의 전환기에 있어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經濟環境의 質的인 變化 즉 일부 構造不況에서 不實企業이 발생되고 있다는데 특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

최근 國際經濟動向은 新技術·新商品을 앞세워 철저한 競爭을 벌이고 있고, 技術開發이라든지 施設의 再投資, 경영의 革新 또는 競爭力 있는 商品·業種으로의 신속한 변신 등을 간단없이 추구해도 國際競爭力 優位確保가 어려운 마당이다.

이러한 國際經濟環境을 감안해 볼 때 우리 經濟全般의 입장에서 資源의 效率的 配分과 經濟能率 沮害要因이 되고 있는 不實企業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輸出·雇傭 등 經濟成長을 持續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產業全般의 體質改善과 國際競爭力 強化라는 側面에서

○ 사양 또는 구조적 不況으로 인한 不實企業의 정리 및 競爭力 있는 業種으로의 신속한 事業轉換과

○ 비주력계열기업 및 기업부동산의 처분을 통한 專門主力 企業育成이 緊要할 뿐 아니라

○ 최근 不實企業 增加로 인한 은행의 不實債權 누증이 金融機關 고유기능면에까지 障碍要因이 됨은 물론 國民經濟 전반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관점에서 產業合理化稅制를 補完하여 企業整理過程에서 障碍가 되는 稅金問題를 해소하여 產業合理化를 촉진하는 것은 우리 經濟의 競爭力提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다.

나. 產業合理化 稅制의 補完內容 要約

□ 從前 產業合理化 支援內容 □

종전부터 租減法에는 산업합리화 추진을 위한 지원내용이 다음과 같이 일부 있었다.

○ 즉, 政府에 설치된 產業政策審議會에서 합리화대상으로 지정된 기업 상호간에 合併을 하거나 자산을 讓受渡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稅金을 면제하고

○ 合理化指定企業이 債務를 면제받거나 면제한 경우에 稅金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의 규정만으로는 다양하고 複雜하게 이루어지는 不實企業의 정리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稅金面에서의 障碍要因을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활하고 신속

한 整理에 未洽한 점이 없지 않았고,

특히 斜陽 또는 構造的 不況으로 不實化된 企業이나 산업으로 하여금 競爭力있는 다른 業種으로 과감하게 事業轉換을 하도록 유도하는 裝置가 없었던 것이다.

□ 이번에 補完된 內容 □

(1) 企業整理에 따르는 資產處分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合理化指定企業 相互間에 자산을 서로 讓受渡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 去來銀行에 바로 넘겨 企業債務와 相計시키는 경우

○ 去來銀行을 통하여 成業公社·土開公에 讓渡하거나 委託處分하는 경우

○ 產業政策審議會에서 자산인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者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에도 그 資產讓渡에 따른 差益에 대하여 法人稅 및 讓渡稅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2) 整理企業을 원활하게 引受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기업을 인수할 때에는 통상 實査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 過程에서 발견된 資產不足分(세법상 經營主가 인출한 소득으로 봄)에 대한 稅金은 產業合理化의 경우에 한하여 기업의 源泉徵收業務 대신 經營上 責任이 있는 前經營主가 直接 納稅토록 함으로써 끝까지 責任을 지도록 하였으며

○ 產業合理化로 지정된 기업의 企業主 등이 기업채무를 갚아주기 위하여 個人所有財產을 기업에 무상으로 내놓을 경우 기업이 받는 贈與利益에 대해 기업의 債務를 상환하는 範圍內에서 法人稅를 면제하며

○ 合理化指定企業을 정리함에 있어서 母企業이나 關係會社가 정리기업을 위하여 保證한 債務를 대신 인수하거나 辨濟함에 따라 발생한 損失은 그 債務를 인수 또는 辨濟한 關係會社의 所得計算시 費用으로 認定하도록 하였다.

(3) 그리고, 競爭力있는 업종으로의 事業轉換 및 合理化投資를 지원하기 위하여

○ 合理化指定企業이 사업전환을 위해 종전시설 등 資產을 處分(賣却)하거나 非主力系列企業整理를 위해 出資株式을 處分(賣却)함에 따라 발생한 缺損金의 移越控除期間을 3年에서 5年으로 연장하고,

○ 그 處分代金으로 전환하려는 업종 또는 主力業種에 施設投資를 하는 경우 投資額의 10%를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하는 投資稅額控除나 特別償却(원래 감가상각금액에 100% 追加償却 認定) 중 選擇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金融機關이 不實債權整理를 지원하기 위하여

○ 金融機關이 流入不動產을 유입후 2年內에 處分할 때 讓渡稅를 면제하고

○ 不實企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金融機關의 貸損金은 再評價積立金과 바로 相計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合理化企業의 선정 및 合理化基準

산업합리화에 대한 租稅支援은「산업정책심의회」에서 合理化對象企業을 선정하고 또한 동 심의회에서 정하는 合理化基準에 의한다.

(1) 合理化對象企業

합리화대상기업은 産業政策審議會에서 산업의 합리화 및 振興을 위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産業 중에서 선정한다.

① 國民生活의 安定에 必要한 物資를 生産하거나 서비스를 提供하는 産業으로서 그 産業의 合理化 및 振興이 國民生活의 負擔을 顯著하게 輕減할 수 있는 것

② 國家의 基幹産業으로서 關聯産業을 振興하게 하고 國民經濟 전반에 걸쳐 顯著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③ 機資材 또는 原料를 生産供給하는 産業으로서 그 合理化 및 振興이 生産性을 顯著하게 擴大할 수 있는 것

④ 輸出生産 觀光事業 그밖의 外資獲得事業으로서 그 産業의 合理化 및 振興이 國際收支의 改善에 기여할 수 있는 것

⑤ 農家副業 또는 農·水·畜産物의 加工産業으로서 그 産業의 振興이 農·漁民 및 養畜家의 所得을 顯著하게 增大시킬 수 있는 것

(2) 選定節次

「合理化對象企業의 選定節次」는 다음과 같이 4가지 類型으로 구분된다.(산업합리화지원기준, 1986. 2. 24 산업정책심의회 의결)

① 産業構造調整을 위하여 必要한 경우

㉮ 對 象

○ 不況産業

- 國內外 市場與件의 變化 등으로 인하여 一時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産業

○ 斜陽産業

- 開發途上國과의 競爭深化, 新技術, 尖端技術의 登場으로 國際競爭力을 喪失하여 構造的으로 斜陽化하고 있는 産業

○ 有望幼稚産業

- 앞으로 國民經濟上 比重이 현저하게 높아질 것으로 期待되는 産業으로서
- 現在는 産業規模·技術 등의 隘路要因으로 國際競爭力이 未洽하나

- 企業의 統廢合 등 合理化措置로 國際競爭力 確保가 可能하다고 認定되는 産業

㈏ 節 次

○ 該當 業界의 申請 또는 主務部長官이 職權으로 對象産業을 선정

○ 主務部長官이 合理化計劃을 수립하여 産業政策審議會에 상정

○ 産業政策審議會에서 당해 산업을 合理化對象으로 지정하고 合理化計劃을 확정



② 系列企業群의 主力業種 專門化 유도

㈎ 對 象

○ 당해 企業群이 系列企業 전체를 대상으로 한 專門化計劃을 수립하여 非主力業種企業을 처분하고, 主力業種 中心으로 專門化하는 경우에 租稅支援하되

○ 현재 參與業種數가 과다하여 專門化를 위한 整備가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與信管理對象 系列企業群 中 主要 企業群을 優先對象으로 하여 專門化 유도

〈主力業種의 選定基準〉

- 國際競爭力을 갖추기 위해서는 大企業이 經營하기에 適合한 業種
- 현재의 經營規模는 작으나, 앞으로 막대한 投資所要가 豫想되는 業種
- 현재 당해 企業群의 特性으로 보아 企業群이 專門化하여 集中的으로 육성하는 데 유리한 業種
- 기타 大企業이 參與하기에 不適合한 企業 또는 業種이 아닐 것
  (例 : 中小企業 固有業種 또는 系列化業種 등 제외)

㈏ 節 次

○ 對象企業群이 專門化計劃을 수립하여 主去來銀行과 協議를 거쳐 財務部에 제출

○ 財務部는 專門化計劃을 關聯部處(主力業種의 所管部處)와 協議한 후 産業政策審議會에 상정

- 財務部 및 關係部處 共同提案

○ 産業政策審議會에서는 아래와 같은 事項을 고려하여 專門化計劃을 확정 (調整이 필요한 경우 당해 企業群과 事前協議)

〈主要檢討事項(例示)〉

- 企業群別 主力業種의 數 및 專門化 정도
- 主力企業製品의 市場構造(獨寡占型 또는 競爭型)
- 專門化 이후 主力企業의 財務構造
- 企業群別 賣却對象企業의 數 및 賣却可能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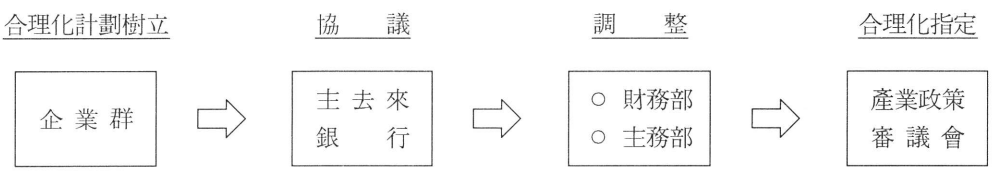

③ 中小企業 固有業種 및 系列化業種 企業의 整理

㉮ 對 象

○ 企業群 또는 大企業이 中小企業 固有業種 또는 系列化業種에 이미 參與하고 있는 경우로서

○ 당해 業種에 參與하고 있는 系列企業(事業專門 또는 設備包含)을 개별적으로 整理하는 경우

㉯ 節 次

○ 企業群 또는 大企業이 整理計劃을 樹立하여 商工部長官에 제출

○ 商工部長官이 處分計劃을 검토한 후 産業政策審議會에 상정하여 合理化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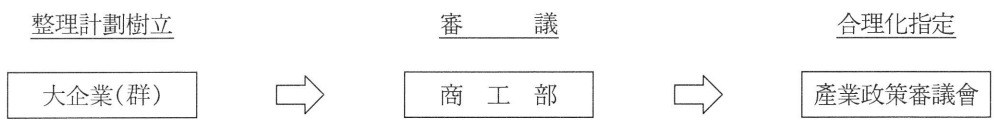

④ 不實債權의 圓滑한 整理를 위하여 必要한 경우

㉮ 對 象

○ 不實企業群의 全面 整備

- 與信管理對象 系列企業群 中 系列企業의 상당수가 不實하여 당해 企業群을 전면적으로 整備하는 경우로서

- 系列企業間 支給保證 등으로 不實系列企業의 債務가 건실한 他系列企業에 擴散되어 企業群 全體의 不實化 및 不實債務의 累增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 不實企業群을 全面整備時 去來銀行의 막대한 缺損을 초래하는 경우

○ 기타 國民經濟의 健全한 發展을 위하여 産業政策審議會가 다음 事項을 검토하여 개별 不實企業의 整備에 대한 租稅支援이 不可避하다고 認定하는 경우

- 國民經濟의 對外信用維持 및 重大한 衝擊防止를 위해 필요한 경우
- 당해企業의 從業員 또는 受給企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金融機關의 巨額缺損을 補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中小企業의 合理化促進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節 次

○ 不實企業(群)의 (主)去來銀行이 整理計劃을 수립하여 財務部에 제출

○ 財務部는 당해 企業業種의 主管部處와 協議한 후 産業政策審議會에 상정

○ 産業政策審議會에서 당해 企業(群)의 整理計劃을 확정하고 당해 企業을 合理化對象으로 지정

- 不實企業群은 對象系列企業 全體를 合理化 對象으로 指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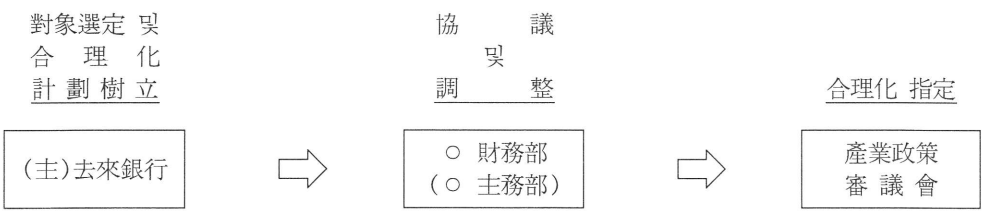

㈐ 合理化基準

「合理化基準」은 産業政策審議會에서 合理化對象産業 또는 企業의 合理化와 振興을 위하여 다음 事項에 관하여 具體的인 基準을 별도로 정하는 것인바, 特定企業이 産業合理化 對象企業으로 指定받았다 하더라도 同 審議會에서 定하는 「具體的인 合理化基準」에 따라 特例規定의 適用을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同 基準에서는 租稅支援의 對象과 方法까지도 정하게 된다.

① 生産의 專門化 또는 系列化

② 企業의 合併 등. 이 경우에는 適正한 生産의 規模와 方法 기타 目標를 정하여야 한다.

③ 事業의 整理 또는 業種의 轉換
④ 施設投資(設備의 改替 또는 擴張을 포함한다)의 適正化
⑤ 資本의 增加 기타 財務構造의 改善
⑥ 技術의 開發 및 革新
⑦ 處分資産(廢棄資産을 포함한다)의 處分方法 및 處分期限
⑧ 債務의 免除·保證債務의 引受 또는 辨濟의 範圍
⑨ 企業引受方法 및 企業引受時의 資産不足에 관한 사항
⑩ 事業轉換 및 이에 따른 固定資産의 處分과 事業轉換 施設投資에 관한 사항
⑪ 非主力業種 및 非主力企業의 處分方法 및 處分期限
⑫ 主力業種 및 主力業種 施設投資에 관한 사항
⑬ 第1號 내지 第12號 外의 必要한 사항

라. 合理化 指定企業 合併時의 支援

(1) 取得稅 및 登錄稅 免除(租減法 §46①)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合併을 하는 경우에는 登錄稅 및 取得稅를 免除한다. 登錄稅의 免除對象은 合併時 資本增加에 따른 登錄稅와 合併時 財産의 所有權 移轉登記에 따른 登錄稅 등 合併과 관련한 登記·登錄時 登錄稅를 免除한다. 그리고 登錄稅가 免除되기 때문에 登錄稅分 防衛稅도 免除된다. 그리고 法人이 合併을 하는 경우에는 合理化 指定企業이 아니더라도 地方稅法 第1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取得稅가 課稅되지 아니한다.

(2) 法人合併時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 免除(租減法 §48②, 同令 §41)

法人이 合併을 하는 경우에 合併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法人(被合併法人)에게 淸算所得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合併時에 발생하는 淸算所得이라 함은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을 말하는 것으로서 一般的으로 帳簿價額대로 合併을 하는 경우에는 淸算所得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帳簿價額 以上으로 合併하는 경우에는 淸算所得이 발생한다.

被合併法人의 淸算所得	=	被合併法人의 株主가 合併時 合併法人으로부터 받는 ○ 合併法人의 株式價額과 ○ 合併交付金의 합계액	−	被合併法人의 合併日 현재 自己資本 총액

이와 같이 淸算所得에 대하여는 被合併法人에게 法人稅를 課稅한다.

그러나 租減法 第47條第1項 各號에 規定하는 合理化 對象企業間에 主務部長官과 財務部長官이 協議하여 認定하는 合併을 하는 경우에는 淸算所得에 대한 法人稅는 면제한다. 이 경우에도 防衛稅(淸算所得 法人稅減免分에 대한 防衛稅)는 課稅됨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3) 法人合併時 擬制配當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 免除

(租減法 §48①, 同令 §41)

合併時 被合併法人의 株主에게 擬制配當이라 함은 다음 算式에 의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被合併法人株主의 擬制配當	=	被合併法人의 株主가 合併法人으로부터 받은 合併株式價額과 合併交付金	−	당초 被合併法人의 株式取得價額

이와 같은 擬制配當에 대하여는 株主에게 所得稅 또는 法人稅가 課稅된다.

그러나 租減法 第47條第1項 各號에 규정하는 合理化 對象企業間에 主務部長官과 財務部長官이 協議認定하는 合併을 하는 경우에는 擬制配當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면제한다. 이 경우에도 防衛稅는 과세된다.

마. 合理化 指定企業 資產處分時 支援

(1) 資產讓渡差益 免稅(租減法 §46②)

合理化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다음의 방법으로 자산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그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및 特別附加稅와 讓渡所得稅를 면제한다.

① 다른 合理化 指定企業에 讓渡하는 경우

② 金融機關과 협의하여 成業公社 또는 韓國土地開發公社에 讓渡하거나 委託하여 讓渡하는 경우(金融機關 또는 成業公社가 法院에 경매신청하여 처분하는 경우 포함)

③ 金融機關에 代物辨濟하는 경우

④ 產業政策審議會에서 認定하는 者에게 양도하는 경우

〈意 義〉

企業整理時 외상매입금이나 借入金 또는 賃金債務 등을 갚기 위하여 資產을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같이 資產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讓渡差益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讓渡差益에 대하여 稅金을 과세할 경우 그만큼 借入金의 償還財源이

줄어들게 되므로 企業은 資產處分을 주저하게 되어 企業整理가 지연되는 등 많은 問題點이 발생된다. 따라서 企業整理過程에서 障碍가 되고 있는 이와 같은 稅金을 면제함으로써 資產處分의 원활화를 기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①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讓渡時 減免

合理化 指定企業의 合理化基準에 따라 讓渡하는 경우에 減免되므로 合理化指定을 받지 아니한 企業은 물론 合理化指定 전에 讓渡한 경우는 減免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合理化基準에 따라」 讓渡하여야 하므로 合理化基準에 規定된 處分期限이나 處分方法 등에 따라야 한다.

② 讓渡方法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다음의 方法으로 讓渡하는 경우에 減免된다. 따라서 合理化 指定企業이 다음에 정한 方法으로 讓渡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제3자에게 讓渡하는 경우에 減免을 받을 수 없다.

○ 다른 合理化 指定企業에 讓渡하는 경우



○ 金融機關과 協議하여 成業公社 또는 韓國土地開發公社에 讓渡하거나 委託讓渡하는 경우(金融機關이나 成業公社가 法院에 競買申請을 하여 競買處分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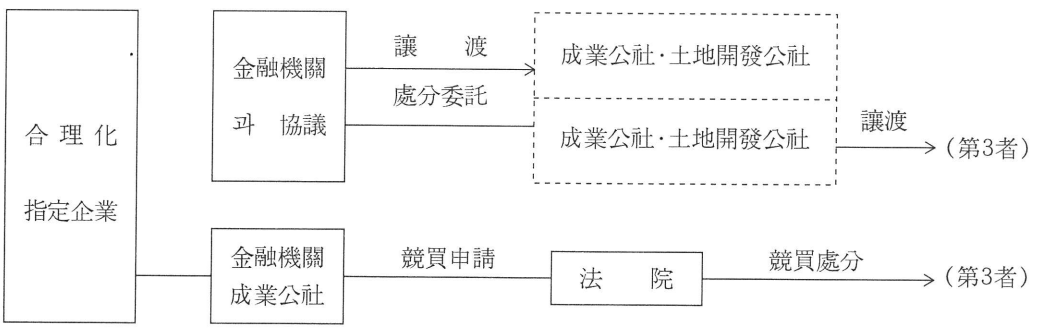

이 경우 企業整理時 대부분의 경우 銀行借入金 문제가 있기 때문에 金融機關과 協議하도록 한 것이며 「金融機關」이라 함은 銀行法에 의한 金融機關, 韓國產業銀行, 韓國企業銀行, 國民銀行, 韓國住宅銀行, 韓國外換銀行, 長期信用銀行, 農業協同組合中央會,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를 말한다.

○ 合理化 指定企業이 金融機關에 대한 債務를 상환하기 위하여 代物辨濟하는 경우

즉, 合理化 指定企業이 金融機關에 대한 債務를 금전으로 償還하는 것이 아니고 不動產, 有價證券 등 資產으로 대신 갚는 경우를 말한다.

○ 產業政策審議會에서 認定하는 者에게 讓渡하는 경우

위 ①~③의 方法에 의해 讓渡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을 考慮하여 產業政策審議會에서 認定하는 者에게 讓渡할 수 있다.(租減令 §39의2)

- 관련 中小企業에 미치는 영향
- 관련 產業에의 波及效果
- 企業投資 및 生產規模의 적정성 여부
- 生產의 專門化와 系列化
- 事業讓受人의 財務構造의 健實化 여부
- 事業讓受人의 經營 및 資金能力

③ 資產의 讓渡差益에 대하여 法人稅 및 特別附加稅를 면제

合理化 指定企業이 讓渡하는 資產이 土地·建物·構造物 등 不動產인 경우에는 法人稅 및 特別附加稅와 讓渡所得稅를 면제받으며, 不動產外의 資產인 경우에는 特別附加稅가 課稅되지 아니하므로 法人稅만 免除받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法人稅나 特別附加稅 및 讓渡所得稅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所得割住民稅도 면제되나 防衛稅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2) 資產處分損失로 인한 缺損金控除期間 연장(租減法 §46의①·②)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事業用 固定資產 및 投資株式을 廢棄하거나 法第46條의2第2項 各號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讓渡함으로써 발생한 缺損金은 法人稅法第8條(缺損金 3年 移越控除)에 불구하고 5年間 移越控除 허용

〈意 義〉

斜陽 또는 不況產業이 事業轉換을 위해 종전 施設을 처분하거나 主力業種育成을 위하여 非主力業種 또는 非主力 系列企業의 시설이나 株式을 처분하는 경우는 일시에 많은 損失이 발생하게 되므로 일반 缺損金과 같이 3年間만 移越控除를 허용할 경우 향후 3年內 발생할 所得에서 다 控除받지 못하는 問題點이 발생된다. 따라서 缺損金의 控除期間을 5年으로 연장함으로써 事業轉換 초기의 稅負擔을 輕減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①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事業用資產을 廢棄하거나 讓渡時 적용

合理化指定전에 廢棄하거나 讓渡하는 경우는 適用을 받을 수 없으며 合理化指

定 후에도 合理化基準에 따라 廢棄하거나 讓渡하는 경우에 適用된다.

② 處分損失에 대해 5年間 移越控除가 許容되는 資產의 範圍

당해 事業에 직접 사용되던 固定資產 즉 土地·建物·構築物·車輛·重機·備品·船舶 등의 有形固定資產과 營業權·特許權 등의 無形固定資產 및 株式을 처분함에 따라 發生한 損失에 대하여 適用된다. 따라서 당해 事業에 사용되지 않던 資產(예 : 非業務用資產)이나 固定資產外의 資產 즉 在庫資產이나 받을 어음, 채권 등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非主力 系列企業 등을 整理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投資株式을 讓渡하는 形式에 의하므로 이를 위하여 株式을 포함한 것이다.

③ 業務用 固定資產과 株式을 廢棄하거나 讓渡함에 따라 발생한 損失에 대하여 적용

廢棄하는 경우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아니나, 讓渡하는 경우는 法 第46條第2項 各號의 1에 정하는 방법으로 讓渡하여야 하며, 임의로 제3자에게 讓渡하는 경우는 缺損金控除 기간연장의 特例를 적용받을 수 없다.

* 讓渡의 方法은 "가. 資產讓渡差益 免除"에서 설명한 방법과 같다.

④ 5年間 移越控除가 許容되는 缺損金(租減令 §39의3②)

資產의 廢棄日이나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缺損金 중 당해 資金의 廢棄나 讓渡에 관련된 缺損金에 대하여 적용되며, 例를 들어 合理化企業의 缺損金 3억 중 2억이 資產을 廢棄하거나 讓渡함에 따른 缺損金이라 할 경우 2억에 대하여만 5年控除가 허용되며, 資產處分損은 5억이나 다른 部門에서 利益이 2억 발생하여 企業全體의 缺損金은 3억일 경우 資產處分損 5억 중 2억은 他事業部門의 利益 2억과 이미 相計되었으므로 殘額 3억에 대하여 5年間 移越控除가 許容된다.

당해 資產을 廢棄하거나 讓渡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缺損金 중 당해 資產의 廢棄나 讓渡에 관련된 缺損金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는 다음을 말한다.

○ 資產處分損(廢棄損 포함)이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을 超過하는 경우는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例) : 資產處分損은 5억이나 다른 事業에서 2억의 利益이 發生하여 당해 企業全體의 缺損金은 3억일 경우 資產處分損 5억 중 2억은 다른 事業에서 利益과 相計되었으므로 殘額 3억에 대하여만 5年間 移越控除

○ 資產處分損(廢棄損 포함)이 당해 事業年度의 缺損金 以下인 경우는 資產處分損 全額

(例) : 資產處分損은 4억이며, 다른 事業部門에서 1억의 缺損이 발생하여 당해 企業全體의 缺損金은 5억일 경우 資產處分損으로 인한 缺損金 4억에 대하여 5年間 移越控除 許容

⑤ 缺損金의 控除順序

5年間 移越控除가 許容되는 缺損金과 기타의 缺損金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當該事業年度 終了日을 基準으로 하여 移越하여 控除받을 수 있는 期間이 가장 짧은 것부터 順次로 공제한다.(租減令 §39의3③)

(3) 合理化 指定企業이 取得한 資產에 대한 免稅

① 資產取得에 따른 取得稅 및 登錄稅의 免稅(租減法 §46② 후단)

合理化 指定企業(A)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다른 合理化 指定企業(B)에게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讓受企業(B)에 대해서는 그 資產의 讓受에 따른 登錄稅 및 取得稅도 免除한다.

즉, 資產讓受에 따른 取得稅 및 登錄稅의 면제는 合理化 指定企業間에 資產을 讓受渡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讓渡企業이나 讓受企業 중 어느 한 企業이라도 合理化 指定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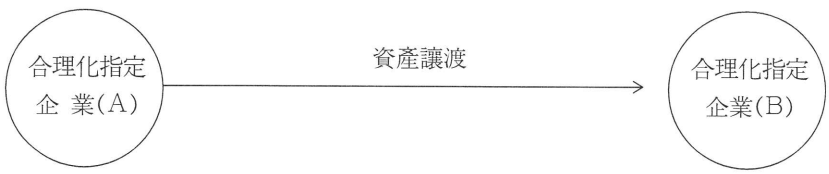

② 合理化 指定企業 取得資產 再評價時 取得時期 特例(租減法 §46③)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合併을 하거나, 資產의 讓受를 한 경우에는 再評價法을 적용함에 있어서 合併 또는 資產의 讓受로 인하여 取得한 資產의 취득시기는 被合併法人 또는 資產讓渡企業이 처음 取得한 날로 한다.

③ 合理化 指定企業이 取得한 資產의 讓渡差益 면세(租減法 §46⑤)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의한 合併이나 資產의 讓受로 인하여 발생한 불용자산을 經營合理化 또는 財務構造 改善을 위하여 合理化基準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면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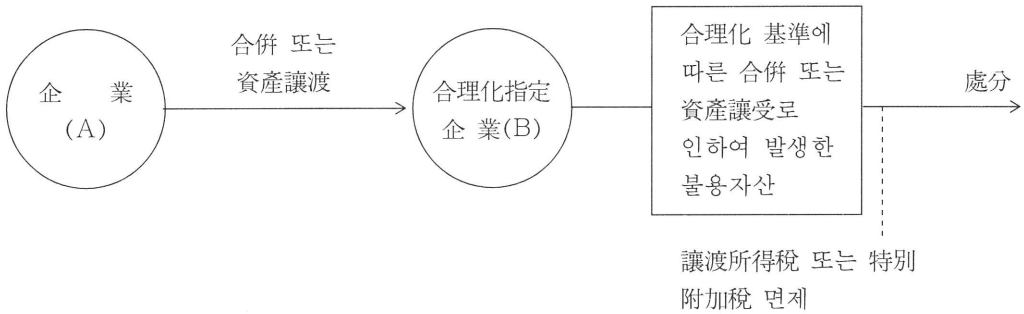

○ 合理化基準에 따라 合併하거나 資産을 讓受함에 따라 발생한 不用資産에 대하여 적용된다.

例를 들어 A企業도 社屋을 가지고 있고 B企業도 社屋을 가지고 있는데 B企業이 A企業을 吸收合併함에 따라 社屋 중 하나는 不必要하게 된 경우 그 不用資産을 讓渡하는 경우에 適用된다. 따라서 合併이나 資産을 讓受하기 전부터 不用資産에 該當하는 것을 讓渡時는 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 당초 B企業에 吸收合併되거나 資産을 讓渡한 A企業은 合理化 指定企業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不用資産을 處分하는 B企業은 合理化指定을 받은 企業이어야 한다.

○ 합리화기준에 정해진 不用資産의 處分內容(不用財産目錄, 處分時期 등)에 따라 讓渡하는 경우에 면세된다.

바. 企業引受 圓滑化 圖謀

(1) 債務免除損 또는 保證債務引受損의 損金認定

> ○ 內國人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合理化 指定企業의 債務를 免除하거나 合理化 指定企業에 대한 保證債務를 引受 또는 辨濟한 때에는 債務를 免除한 금액 또는 保證債務를 引受하거나 辨濟한 金額을 損金에 算入한다.(租減法 §46의2③)

〈意 義〉

缺損의 累積으로 資産보다 債務가 많은 企業을 整理하는 경우 超過債務額에 대해서는 當該整理企業의 債權者가 債權을 포기하거나 債務를 保證한 關係會社 등이 債務를 引受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와 같이 債權을 포기하거나 保證債務를 引受한 關係會社는 그만큼 損失이 발생하나, 稅法上 債權任意抛棄損이나 保證債務引受로 인한 損失은 損金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系列企業整理時 母企業 등 關

係會社의 負擔이 加重되므로 企業整理가 늦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이 損失에 대해서도 例外的으로 損金으로 인정하여 줌으로써 企業의 整理 및 引受를 원활히하려는 데 그 目的이 있다.



① 債務를 免除(債權 포기)하거나, 保證債務 引受·辨濟企業은 合理化 指定企業이 아니어도 적용된다. 그리고 債務免除기업(B)과 整理企業(合理化 指定企業A)이 特殊關係가 있는가 여부와는 관계없다.

② 債務를 免除받는 기업은 合理化 指定企業이어야 한다.

③ 合理化基準에 따라서 債務를 免除하거나 保證債務引受時 適用된다. 따라서 合理化基準에 債務免除 또는 保證債務引受 및 辨濟에 관한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合理化指定받은 후 이와 같은 행위가 일어나야 한다.

④ 損金으로 算入되는 金額 및 損金算入時期

○ 合理化 指定企業의 債務를 免除하는 경우(즉, B기업이 合理化指定 기업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 債務免除時點에 損金으로 計上됨

○ 合理化 指定企業에 대한 保證債務를 引受·辨濟하는 경우

: 合理化指定 이전부터 保證債務關係가 있어야 하며, 保證債務를 引受(保證債務를 引受하게 되면 保證債務者가 主債務者가 된다)한 후 辨濟하는 경우는 引受時點에 損金으로 計上하고, 保證債務를 引受함이 없이 바로 主債務者에 대신하여 辨濟하는 경우에는 辨濟時點에 損金으로 計上한다.

⑤ 債務免除損 또는 保證債務引受·辨濟損失은 一般 缺損金과 같이 3年間 移越控除 許容 債務免除損 등은 기업의 일반결손금과 같이 3년간 이월공제된다.

(2) 債務免除益에 대한 益金不算入 또는 贈與稅 면제(租減法 §46의2④)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債務의 免除를 받거나 債務를 免하게 된 때에는

○ 合理化 指定企業이 法人인 경우 : 債務免除益은 益金不算入
(法人稅課稅對象에서 제외)

○ 合理化 指定企業이 個人인 경우 : 贈與稅 非課稅

① 債務의 免除 등을 받은 企業은 合理化 指定企業이어야 한다.

② 合理化基準에 따라 債務의 免除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合理化基準에 債務의 免除 등에 관한 사항이 規定되어 있어야 하며, 合理化指定 以後에 債務의 면제를 받아야 한다.

③ 債務의 免除를 받거나 債務를 免하게 된 때

「債務의 免除를 받은 때」라 함은 合理化 指定企業이 債權者로부터 직접 債務를 면제받은 경우를 말하며, 「債務를 免하게 된 때」라 함은 合理化 指定企業의 債務를 保證한 保證債務者가 債務를 引受하여간 경우를 말한다.

즉, 合理化 指定企業이 債權者로부터 직접 債務를 免除받거나 다른 企業이 債務를 引受해감에 따라 債務를 免하게 되어 부채가 감소되는 것을 말한다.

④ 負債減少額(채무면제익)의 益金不算入(法人의 경우)

債務免除益은 法人의 課稅所得計算上 益金不算入하나, 移越缺損金이나 당해 年度 缺損이 있는 경우는 債務免除益 중 移越缺損金이나 당년 缺損金의 보전에 充當한 금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차감한 殘額을 益金不算入한다.

⑤ 負債減少額에 대한 贈與稅 면제(個人의 경우)

個人이 債務를 면제받거나 면하게 되는 경우에는 相續稅法 第34條의3에 의하여 贈與稅가 課稅되는 것이나, 이와 같은 경우는 贈與稅를 면제한다.

(3) 出資者로부터의 受贈益 益金不算入(租減法 §46의2⑤)

>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당해 法人의 債務 償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法人의 出資者 등 個人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資產의 價額 중 債務償還에 충당한 금액은 益金不算入함.(法人稅를 과세하지 아니함)

〈意 義〉

企業主 등이 企業의 債務를 갚아주기 위하여 企業에 個人所有 不動產을 無償讓渡後 企業이 이를 처분하여 處分代金으로 企業債務를 償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企業의 受贈利益에 대하여는 法人稅가 課稅된다.

따라서 受贈利益에 대해 法人稅가 과세되는 만큼 債務償還資金이 부족하게 되고 企業主로부터의 受贈效果가 줄어들게 되므로 受贈利益 중 債務償還에 충당한 금액에 대해서는 法人稅를 과세하지 않도록 하여 企業整理 및 引受의 원활을 도모하였다.

①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받은 受贈益에 대하여 적용

合理化基準에 受贈에 관한 사항, 그리고 受贈財產으로 행하는 債務償還內容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② 合理化 指定企業이 出資者 등 타인으로부터 받은 受贈益에 대하여 적용「出資者 등 他人」으로부터의 受贈益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贈與者가 출자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누구든 무방하다.

그리고 출자자 등 他人이 법인에게 不動產을 무상으로 주는 경우는 당연히 讓渡所得稅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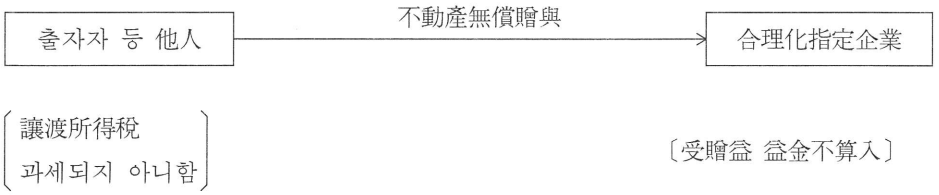

그러나 출자자 등 他人이 擔保로 제공된 不動產을 合理化 指定企業에 무상으로 주는 경우 擔保額만큼은 債務를 法人이 引受하는 것이므로 이 때는 有償讓渡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贈與하는 자에게 讓渡所得稅가 課稅된다.

③ 受贈益 중 益金不算入額

資產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당해 資產을 時價(時價가 不分明한 경우는 감정가액 또는 地方稅課稅 時價標準額)로 評價한 금액을 受贈利益으로 계상한다.

이 受贈利益 중 債務償還에 충당한 금액만 益金不算入하며, 債務償還에 충당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한다. 그리고, 受贈利益 중 移越缺損金이나, 당해年度 缺損金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 殘額을 基準으로 한다.

④ 益金不算入하는 경우는 법인세는 물론 住民稅와 防衛稅도 당연히 과세되지 아니한다.

(4) 引受企業의 認定賞與 源泉稅 納付義務排除 및 事實上 代表者에 대한 과세 (租減法 §46의2⑦, 法令 §94의2①)

○ 內國人이 合理化 指定企業을 合理化基準에 따라 引受함에 있어 나타난 資產不足額을 代表者 등에게 認定賞與處分하는 경우에는 당해 合理化 指定企業은 당해 처분금액에 대한 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아니하며,

○ 이 경우 出資者인 理事 중에서 당해 法人을 代表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신고한 때에는 그 申告한 代表者에게 인정상여에 대한 所得稅를 과세함.

〈意 義〉

企業引受(大株主持分引受·合併·特定事業의 包括讓受)時에는 통상 企業財産을 實査에 의하여 精算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不足資産(架空資産·簿外負債)이 表出되고, 稅務上으로 不足資産은 부족자산 표출당시 代表者의 賞與所得으로 간주되는 한편 企業은 賞與所得에 대한 源泉徵收納付義務를 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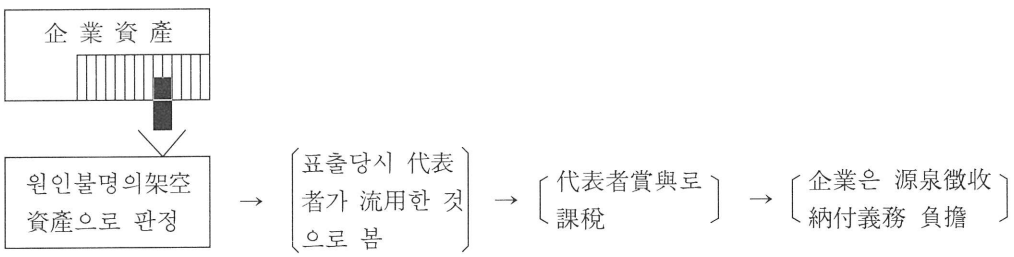

인수기업은 認定賞與에 대한 源泉稅를 代表者로부터 받아서 세무서에 納付하여야 하나 代表者로부터 받아내기가 곤란하여 사실상 引受企業이 부담하게 되므로 기업인수를 기피하거나, 인수기업의 過重한 稅負擔으로 企業整理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따라서 引受企業에 대한 源泉稅納付義務를 배제하고, 또 당시의 實質的인 代表者에게 認定賞與所得稅를 과세하도록 함으로써 企業引受圓滑化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企業을 引受하는 者는 合理化 指定企業이 아니어도 무방하나, 당해 기업(整理企業)은 合理化企業으로 指定을 받아야 한다.

② 合理化基準에 따라 合理化 指定企業을 引受하여야 한다.
따라서 合理化指定後에 合理化基準에 明示한 바에 따라 당해 기업을 引受하여야 한다.

企業引受의 方法에는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 合理化 指定企業을 合併하는 方法

〔A法人〕+〔合理化 指定企業〕 $\xrightarrow{\text{合併}}$ 〔A法人 또는 合理化 指定企業〕

○ 合理化 指定企業의 대주주 출자지분 또는 株式의 讓受合理化 指定企業의 大株主持分을 양수하는 것으로서, 大株主라 함은 持分比率과는 관계없이 당해 법인의 출자자 중 가장 많은 주식을 주주(당해 주주와 特殊關係 있는 者 포함)를 말한다. 그리고 기존주식을 양수하는 방법 이외에 合理化 指定企業이 新株를 발행하게 하여 新株를 인수함에 의하여 大株主가 되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合理化 指定企業의 事業의 包括讓受

당해 기업의 채권과 채무를 모두 包括的으로 양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合理化基準에 따라 합리화 지정기업을 引受함에 따라 나타난 資產不足額에 관련한 인정상여처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합리화지정후 審査를 해봐야 不足資產 규모가 把握될 것이므로 合理化基準에서는 不足資產의 내역 등을 표시할 수는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며, 이때는 審査時限 등을 정해주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④ 자산부족과 관련한 인정상여처분시 법인의 源泉稅納付義務 排除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 당해 법인은 인정상여에 대한 所得稅 源泉徵收義務를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해 所得歸屬者(認定賞與處分을 받는 자)가 이를 綜合所得에 合算하여 所得稅를 바로 申告·納付할 義務를 지게 된다.

⑤ 實質代表者에게 認定賞與 所得稅 과세

일반적으로 原因不明의 架空資產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法人을 代表하는 代表理事에게 認定賞與에 대한 所得稅를 과세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법인등기부상 代表理事로 되어 있는 者는 名目上 代表者일 뿐이고, 사실상 당해 법인을 所有하면서 經營에도 깊숙히 參與하는 實質的인 代表者가 있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당해 법인에게 源泉稅納付義務가 免除되는 경우로서 出資者인 理事 중에서 당해 법인을 代表하고 있는 者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申告한 때에는 그 申告한 者를 代表者로 하여 그에게 認定賞與所得稅를 課稅하도록 함으로써 實質課稅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사. 產業合理化에 따른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 施設投資支援

> 合理化 指定企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事業을 轉換하거나 主力業種을 育成하기 위하여 事業用固定資產을 讓渡하여 그 讓渡代金으로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에 投資한 경우에는 10%(外產은 6%) 投資稅額控除 또는 100%特別償却 중 선택하여 適用받을 수 있다.

〈意 義〉

앞에서 설명한 合理化 指定企業 合併時의 稅制支援, 資產處分時의 支援 및 企業引受時의 支援 등은 產業合理化過程에서 발생될 수 있는 稅金(產業合理化를 하지 않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음)을 소극적으로 解決하여 주는 것이지만, 產業合理化를 위하여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에 投資하는 경우에는 積極的으로 投資額의 10%를 稅金에서 控除하여 주거나 조기에 投資資本을 회수할 수 있도록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100%를 추가로 상각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에 投資하는 者는 合理化 指定企業이어야 한다.

(2) 合理化基準에 따라 資產의 讓渡가 이루어지고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 投資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讓渡의 方法은 앞에서 설명한 合理化 指定企業이 資產處分時 資產讓渡差益 免除를 받기 위한 양도방법(4가지)에 따라야 한다.

(3) 對象資產은 당해 事業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건물·구축물·차량·중기·비품 등의 有形固定資產과 營業權·特許權 등의 無形固定資產 및 株式 등을 말하며, 당해 事業에 사용되지 않던 非業務用資產이나 在庫資產 등이 포함되지 않음은 물론이다.

(4) 投資稅額控除나 特別償却을 적용받을 수 있는 限度는 投資한 事業用資產全額이 아니라 事業轉換이나 主力業種育成을 위하여 事業用 固定資產 處分代金의 範圍내이다. 投資稅額控除가 적용되는 "事業用資產"은 조감법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2 事業別 固定資產(機械 및 裝置)의 耐用年數表(甲)의 設備를 말한다.

(5) 10%投資稅額控除와 100%特別償却 중 적용받을 방법의 선택은 당해 企業의 과세소득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나, 일반적으로 正常的인 利潤을 내고 있는 企業은 間接支援方式인 特別償却보다 直接支援方法인 投資稅額控除方法을 선호하고 있다.

아. 金融機關의 不實債權 整理支援

(1) 金融機關 流入不動產 양도시 免稅(租減法 §46의4①, 同令 §39의5)

金融機關이 產業合理化 指定企業으로부터 流入한 부동산이나 不實企業으로부터 流入(流入의 유형은 競賣取得 또는 代物辨濟取得 등 不拘)한 不動產을 流入日로부터 2年(1차에 한하여 6月 연장가능)내 處分時 讓渡差益에 대하여 特別附加稅 免除

① 特別附加稅 免除對象資產은 產業合理化 指定企業으로부터 取得한 資產은 물론 合理化 指定企業이 아닌 企業으로부터 抵當權의 實行으로 인하여 取得한 資產 또는 債權의 辨濟를 받기 위하여 취득한 資產을 말한다.

② 讓渡期限은 金融機關이 당해 資產을 取得한 날로부터 2年내이며 金融機關이 당해 資產을 取得한 날로부터 2年 이내에 公賣를 하였으나 流札된 경우 訴訟繼續 등으로 인하여 處分期限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主務部長官이 認定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6月의 범위안에서 延長할 수 있다.

(2) 不實企業整理에 따라 발생한 金融機關의 貸損金은 再評價積立金과 相計許容 (조감법 §46의4②)

再評價積立金과의 상계는 移越缺損金 및 資產取得과 관련한 외화채무의 換率評價損失에만 許容되던 것을 不實企業整理에 따라 발생한 金融機關의 貸損金도 再評價積立金과 相計할 수 있도록 함

〈意 義〉

통상적인 貸損金은 이미 설정된 貸損充當金과 보전이 가능하나 企業整理에 따른 거액의 貸損金은 貸損充當金으로 보전이 困難하여 金融機關에 많은 損失을 발생시킴. 따라서 貸損充當金을 초과하는 貸損金은 再評價法의 규정에 불구하고 再評價積立金과의 相計를 許容하도록 한 것임.

① 再評價積立金의 相計는 資產再評價法 제28조에 의하여 再評價稅의 納付·資本에의 轉入·再評價日이후 발생한 貸借對照表上의 移越缺損金의 補塡·換率調整計定上의 金額과의 相計만 許容하고 있었으나

② 金融機關은 貸損充當金을 초과하는 貸損金이 발생한 경우에는 韓國銀行 銀行監督院長의 承認을 얻어 再評價積立金과 相計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法人本社 地方移轉에 대한 稅制支援

首都圈內에 所在하는 法人本社를 地方으로의 移轉을 유도하여 實質的인 地方經濟活性化와 地域間 均衡發展을 圖謀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大都市(首都圈, 釜山 및 대구직할시)안의 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는 경우에만 租稅支援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首都圈안의 法人本社를 首都圈外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경우에도 工場의 地方移轉에 상응하는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이 法人本社 地方移轉時 稅制支援制度를 마련하였다.

또한 종전의 大都市圈의 범위는 工場의 地方移轉促進을 위해 稅制支援制度를 마련했던 1970年代 중반 당시의 大都市圈으로 이를 10여년간 調整없이 계속 운영해 왔었으나 그 동안의 都市計劃의 變更, 首都圈근처의 衛星都市의 밀집화의 首都圈의 광역화로 實質的인 首都圈은 보다 擴大되어 왔다. 이번 改正시에는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別表8의 首都圈의 범위를 建設部 고시 第254號 首都圈整備基本計劃(1984.7.11)과 일치시켰다.

가. 大都市 範圍再調整(令 별표8)

大都市圈의 範圍 중 首都圈의 地域을 首都圈整備 基本計劃과 일치시켰는바, 이는 現行 地方稅法施行令 第79條의6에 規定된 大都市의 범위와도 같다.

大都市圈의 範圍

區 分	地域	
	從 前	改 正
1. 首 都 圈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직할시 다.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라. 고양군 원당읍, 벽제면, 신도읍, 지도면, 중면 마. 양주군 주내면, 백석면, 장흥면 〈新 設〉 사. 남양주군 와부읍, 구리읍, 미금면, 진접면, 진건면, 별내면 아. 광주군 광주읍, 동부읍, 초월면, 남종면, 중부면, 퇴촌면, 서부면 자. 시흥군 의왕읍, 소래읍, 남면, 과천면, 수암면, 군자면 차. 용인군 수지면 카. 화성군 반월면 〈신 설〉 파. 김포군 계양면, 고촌면 하. 양평군 강하읍, 양서면, 서종면	(종전과 같음) 라. 고양군 (종전과 같음) 바. 포천군 소흘면 사. 남양주군 아. 광주군 동부읍, 서부면 자. 시흥군 차. 용인군 구성면, 수지면, 기흥면, 남사면 카. 화성군 오산읍, 반월면, 매송면,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 태안면 타. 평택군 진위면, 서탄면 파. 김포군 김포읍, 고촌면, 검단면, 계양면 〈삭 제〉
2. 부산직할시 및 대구직할시 〈備 考〉	그 관할구역 1. 第1號 및 第2號의 경우에 工業團地管理法의 適用을 받는 工業團地를 除外한다. 다만, 大都市圈안의 工業團地管理法의 適用을 받는 工業團地에서 第1號 및 第2號外의 地域으로 工場施設을 移轉하는 경우에 당해 工業團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第1號의 경우에 産業基地開發促進法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이 指定한 半月特殊地域은 除外한다. 〈一部追加〉	〈종전과 같음〉 〈삭 제〉 …… …… …… 半月特殊地域과 工業配置法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指定한 仁川直轄市 남동유치地域을 除外한다.

〈大都市圈 範圍調整에 관한 經過措置〉

- 令 別表8의 改正規定은 이 영 施行後 最初로 양도하거나 移轉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改正令 施行前에 종전의 別表8의 規定에 의하여 大都市圈地域에서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損金에 算入한 地方移轉準備金에 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나. 法人本社의 地方移轉準備金(法 §41의2, 令 §35의2)

法人本社 地方移轉準備金의 목적은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首都圈外의 地域으로 移轉하는데 所要되는 資金을 자체적으로 調達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서 首都圈이라 함은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別表8의 大都市圈의 範圍 中 首都圈을 말한다. 法人本社 地方移轉準備金의 認定限度는 당해 事業年度 終了日 現在의 社屋價額 또는 貸借保證金의 10%이다. 社屋價額은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인 建物의 帳簿價額을 말하며 직접 使用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text{建物의 帳簿價額} \times \frac{\text{當該 法人이 직접 使用하는 建物의 延面積}}{\text{建 物 延 面 積}}$$ 만을 말한다.

또한 賃借하여 使用하는 경우에는 傳貰金을 포함한다.

이때 準備金은 4年間 認定할 수 있고 이 期間中 新本社로 使用하기 위한 垈地와 建物의 取得(賃借의 경우는 賃借保證金) 및 移轉費用으로 使用한 금액은 準備金의 최초 認定日로부터 4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부터 3年間 均等分割 還入시키며, 이때까지 使用하지 아니한 準備金은 일시에 還入하면서 租減法 第13條第4項을 適用하여 課稅移延받은 法人稅額에 100원에 대한 日邊 6錢의 率(年21.9%)로 利子相當額을 追徵한다.

폐업이나 해산하는 경우에 準備金 全額을 益金還入함은 技術開發準備金 등 다른 準備金과 같으며 移轉計劃書의 提出 및 法人本社 地方移轉準備金에 관한 明細書의 提出은 工場의 地方移轉準備金의 경우와 같다.

〈適用例〉

改正法 施行日인 1985.12.23 이후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移轉하기 위하여 最初로 損金算入하는 分부터 適用하는 것으로 12月末 法人의 경우 1985事業年度부터 同 租稅特例를 適用받을 수 있다.

다. 法人本社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등 免除(法 §42의2, 令 §36의2)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垈地와 建物을 讓渡하여 首都圈外의 地域으로 移轉時 이와 關聯된 法人稅와 特別附加稅를 免除한다.

(1) 免稅額의 計算

$$\text{免除對象所得에 대한 算出稅額} \times \frac{\text{당해 法人이 業務用으로 직접 使用한 面積}}{\text{讓渡한 建物의 延面積}} \times \frac{\text{規定대로 使用하였거나 使用할 금액의 合計額}}{\text{讓渡한 垈地와 建物의 處分代金}}$$

算式 中 "당해 法人이 業務用으로 직접 使用한 面積"은 讓渡日로부터 소급하여 2年 동안 당해 法人이 직접 使用한 面積 中 가장 작은 때의 面積을 말하며 "規定대로 使用하였거나 使用할 金額의 合計額"은 다음 各號의 合計額이다.

①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垈地와 建物을 首都圈外의 地域에서 取得 또는 賃借한 後 직접 使用하지 아니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取得價額에 建物延面積에서 당해 法人이 직접 使用하는 面積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金額

② 本店 讓渡日로부터 1年 以內에 당해 法人의 業務에 직접 使用되는 固定資產(本店 垈地와 建物제외)의 取得費用

③ 本店 讓渡日로부터 1年 以內에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垈地와 建物에 의하여 擔保된 借入金의 상환에 사용한 金額

(2) 免稅要件

① 本店 讓渡日로부터 3年 以內에 首都圈外의 地域으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移轉하거나(先讓渡 後移轉 : 3年)

② 首都圈外의 地域으로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移轉한 날로부터 2年 以內에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垈地와 建物을 讓渡하는 경우에 한한다(先移轉 後讓渡 : 2年) 法人稅 등의 免除後 免稅要件이 갖추어지지 않은 때에는 다음의 稅額을 追徵한다.

追 徵 事 由	追 徵 金 額
•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首都圈外의 地域으로 移轉하지 아니한 때	• 免除稅額 全額
• 讓渡후 首都圈안에 당해 法人의 業務를 遂行하기 위한 필요한 人員 등을 감안한 基準 이상의 事務所를 둔 때	• 免除稅額 全額
• 規定된 用途外로 使用한 경우	• 免除稅額 × 用途外 使用한 金額 / 讓渡價額

※ 規制對象이 되는 首都圈안 事務所基準

① 首都圈外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移轉한 후에 首都圈안의 事務所에 근무하는 事務職從業員數가 首都圈外로 移轉하기 전에 首都圈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던 事務職從業員數(移轉日로부터 소급하여 2年間 每月 末日 현재 근무하는 平均 從業員數로 한다)의 25% 이상인 사무소

② 首都圈外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移轉한 후에 首都圈안의 사무소 面積이 다음 算式에 의하여 계산한 面積 以上인 사무소 150m²+(首都圈外로 移轉한 후의 首都圈안의 事務所에 근무하는 事務職從業員數×10m²)

〈提出書類〉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 : 移轉計劃書, 處分代金 使用計劃書, 免除申請書, 移轉進行〔完了〕報告書, 處分代金 使用明細書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 : 免除申請書, 移轉完了報告書

라. 法人本社 地方移轉 投資稅額控除(法 §43의2, 令 §37의2)

首都圈안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法人이 本店 移轉日로부터 2年 以內에 구본점을 讓渡하거나 또는 本店讓渡日로부터 3年 以內에 本店을 首都圈外의 地域으로 移轉한 경우에 首都圈안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用의 建物處分代金 또는 賃借保證金을 한도로 하여 首都圈外의 地域에서 當該 業務에 直接 使用한 本店 또는 主事務所用의 建物을 取得한 價額에 대하여 10%(外產의 경우에는 6%)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을 수 있다. 이때 首都圈外의 地域에서 취득한 건물을 本社로 직접 使用하지 아니하는 部分이 있는 경우에는 建物取得價額에 建物面積에서 당해 法人이 직접 使用하는 面積이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計算한 금액에 대하여만 投資稅額控除가 적용된다.

新本社 建物을 取得함에 따라 10% 投資稅額控除를 받는 시기는

첫째,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에는 首都圈外의 地域에서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建物을 取得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法人稅申告時 稅額控除를 받고,

둘째, 先移轉(取得) 後讓渡의 경우에는 舊本社를 讓渡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法人稅申告時 稅額控除를 받는다. 法人本社 地方移轉 投資稅額控除를 適用받고자 하는 法人은 首都圈外의 地域에서 新本社 建物을 取得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先移轉 後讓渡의 경우에는 舊本社建物 讓渡日이 속하는 事業年度)의 法人稅 課稅標準申告時 稅額控除申請書와 移轉完了報告書를 提出하여야 한다.

租稅支援의 重複支援排除, 綜合限度의 適用, 控除稅額의 移越,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積立 및 事後管理 등은 다른 投資稅額控除制度와 동일하다.

4.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 實施(令 §57의2)

가. 對象法人

製造業·鑛業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 個人·法人 모두 該當되나 租減法 第8條에 의한 公共法人은 除外한다.

나. 對象投資

景氣活性化에 큰 影響을 줄 수 있는 機械·裝置〔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2 事業別固定資產(機械 및 裝置)의 耐用年數表(갑)의 設備〕로서 1985.6.28~1986.6.30 사이의 投資分이다.

旣存設備를 生產能力이 큰 設備로 改替하거나 生產能力이 顯著히 增加되도록 旣存設備를 擴張하는 것은 增設로 보아 新規投資에 包含시킬 수 있으나 단순히 원상의 회복을 위한 交替나 단순한 資本的 支出은 除外한다. 또한 金融리스의 경우는 控除對象의 投資이나 운용리스는 控除對象의 投資가 아니다.

다. 投資稅額 控除時期

投資가 1課稅年度中에 전부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투자가 이루어진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한다.

그러나 投資가 2個 以上의 課稅年度에서 걸쳐서 完了된 경우 또는 1986年 6月 30日 現在 投資가 完了되지 아니하고 建設 또는 製作이 進行中에 있는 경우에는 納稅者의 便宜를 제공하기 위하여 당해 投資가 完了된 課稅年度 또는 1986年 6月 30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2個 課稅年度에 걸쳐 投資된 금액전체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를 일괄해서 받거나 各 課稅年度別로 나누어 控除받을 수도 있도록 하였다.

라. 投資金額의 計算

(1) 機械·裝置의 購入·設置로 投資가 이루어지는 경우
國內에서 買入하는 경우는 機械裝置의 引渡日(檢收를 거치는 경우는 檢收日)에 投資한 것으로 보고 輸入의 경우에는 通關日에 投資한 것으로 보며 投資金額은 法人稅法施行令 第48條第2項 및 소득세법시행령 第86條第1項을 準用하여 買入價額에 登錄稅·取得稅 및 기타 附帶費用을 加算하여 計算한다.

(2) 機械·裝置를 建設·製作하여 投資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때에도 한 課稅期間中에 投資가 시작되어 終了되는 경우에는 당해 投資에 소

요된 工事(製作)費 또는 都給金額(都給의 경우)이 投資金額이 된다.
그러나 2개 課稅年度에 걸쳐 投資가 이루어지거나 1986.6.30 現在 投資가 完了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課稅期間중 投資金額은

[作業進行率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 / 實地支出한 金額] 중 큰 金額이다.

〔사례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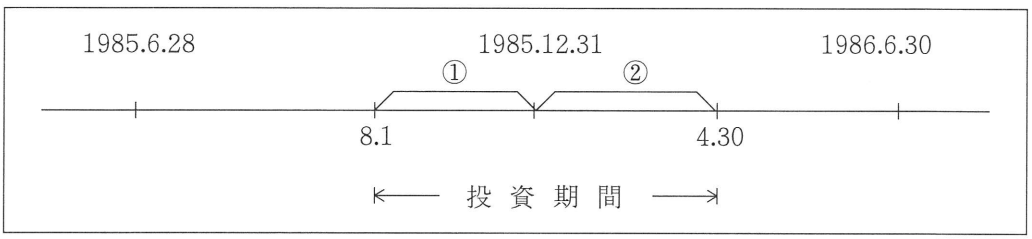

— 4.30이 속하는 課稅年度에만 控除받는 경우 : 總工事費(都給金額)
— 2개 課稅年度에 控除받는 경우
①의 投資金額

[① 期間中 作業進行率에 의한 投資金額 / ① 期間中 現金支給額] 중 큰 金額

②의 投資金額
總工事費(또는 都給金額)－①의 投資金額

〔사례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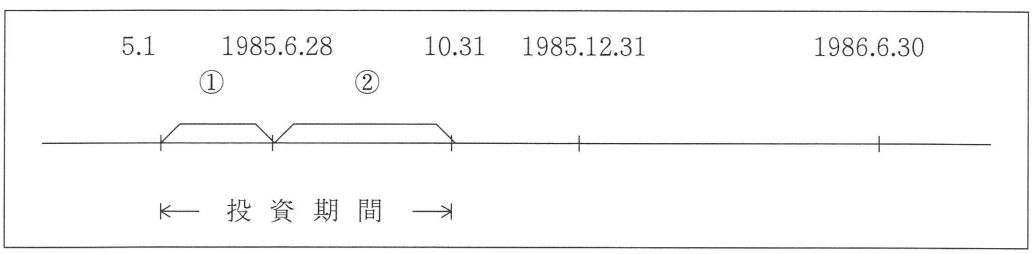

②의 投資金額 總工事費 [(①의 期間의 作業進行率에 의한 投資金額 / ①의 期間의 現金支給金額) 중 적은 金額]

〔사례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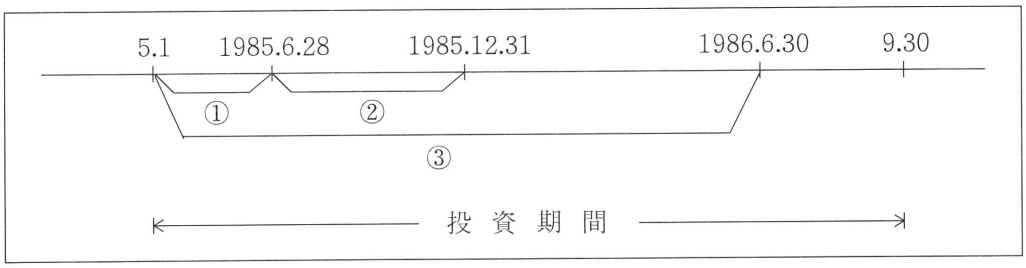

(1) 1985.6.28～1985.12.31 課稅年度의 投資金額 : (i)(ii) 중 큰 金額

②期間중 作業進行率에 의한 投資金額－①期間중 作業進行率에 의한 投資金額 ····· (i)

②期間中 現金支給額－①期間中 現金支給額 ····· (ii)

(2) 1986.1.1～1986.6.30 課稅年度의 投資金額 :

(iii)(iv) 중 큰 金額－1985投資金額(1)

③期間중 作業進行率에 의한 投資金額－①期間중 作業進行率에 의한 投資金額 ····· (iii)

③期間中 現金支給額－①期間中 現金支給額 ····· (iv)

마. 控除率

投資稅額控除率은 國產機資材를 投資한 경우에는 10%이나 外國產機資材의 경우에는 3%(法上으로는 6%까지 可能하지만 시행령에서 3%로 策定)로 하여 相對的으로 國產機資材를 이용한 投資에 惠澤을 크게 하였다.

5. 私學育成支援

가. 私立大學 附屬病院의 100% 寄附金認定(法 §49)

私立大學 附屬病院에서 발생된 所得을 學校敎育에 使用하는 경우에는 法人稅法 第42條의2第1項第2號에 의하여 非營利公益法人으로 60% 寄附金特例가 인정되고 나머지 所得에 대해 5% 法人稅를 課稅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私學은 國民敎育을 담당하는 敎育機關으로서 國家發展에 크게 寄與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財政面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勘案하여 私立大學 附屬病院에서 발생된 所得을 學校敎育을 위하여 支出하는 경우에는 全額 損金認定토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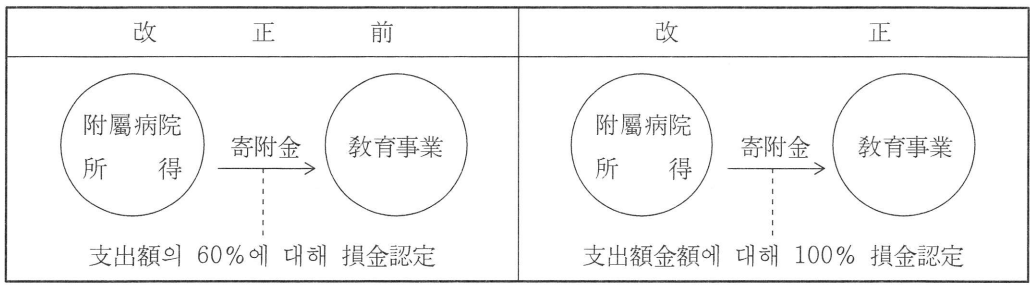

나. 私學財團의 低收益性 資產處分時 特別附加稅 免除(法 §67의3, 令 §5의3 및 規則 §20의3)

學校法人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는 法人稅法 第59條의3 및 法人稅法施行令 第124條의8의 規定에 의하여 校地, 校舍(강당 포함), 體育場(실내체육장 포함), 실습 또는 硏究施設 기타 敎育에 적접 사용되는 施設 또는 設備로서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것 등 敎育目的에 직접 使用하던 것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이미 非課稅되고 있고, 기타 資產(非敎育用土地 등)은 그 處分代金을 讓渡日로부터 3年내에 敎育事業에 使用하는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3年內에 使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3年 범위내에서 1차에 한하여 소관 稅務署長의 승인을 얻어 使用한 경우에만 特別附加稅가 非課稅되었으나 이번 改正으로 학교법인이 1985.12.31 以前에 이미 取得하여 보유하고 있던 林野 등 低收益性資產을 讓渡하고 다른 收益用財產을 代替取得하는 경우에도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대체취득할 수 있는 다른 收益用 財產의 範圍〉

① 所得稅法 第17條第1項 各號((第10號를 제외한다) 또는 동법 第18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利子所得 또는 配當所得 또는 配當所得을 發生하는 金融資產

② 法人稅法 第1條第1項 各號(第3號를 제외한다)의 1에 規定하는 收益事業에 使用하는 固定資產. 다만, 法人稅法施行令 第124條의6第1項第2號 내지 第5號에 해당하는 土地 등과 法人稅法施行規則 第18條第3項第11號 및 賣買事業用 土地 등은 제외함.

〈追徵事由 및 追徵稅額計算〉

— 追徵事由

① 土地 등의 讓渡日로부터 1年 이내에 收益用財產을 代替取得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代替取得한 收益用財產을 取得日로부터 3년 이내에 處分하는 경우(處分 후 그 處分金額을 取得日로부터 3년 이내에 敎育事業에 使用하는 경우는 제외)

— 追徵金額計算

$$\text{特別附加稅 免除稅額} \times \frac{\text{追徵事由 해당 金額}}{\text{低收益性資產의 讓渡金額}}$$

〈提出書類〉

特別附加稅 免除申請書

收益用財產 取得明細書 또는 敎育事業使用明細書

6. 技術 및 人力開發支援

1981年 稅法改正時 租稅減免의 폭을 대폭 縮小하면서도 技術開發에 대하여는 대폭 그 支援을 擴大한 바 있다. 또한 1982年 稅法改正時에도 特定產業에 대한 租稅減免은 縮小하면서도 技術開發部門에 대하여는 종래의 租稅支援制度를 계속 존치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支援을 강화하는 效果를 가지도록 함으로써 民間主導의 技術開發에 의한 生產性向上으로 國際競爭力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는 바 이번 改正시 새로이 등장하고 있는 尖端科學技術의 租稅支援을 강화하고 施行過程에서 보완이 요구되는 사항을 추가로 反映하였다.

가. 技術集約的인 產業의 範圍 擴大(令 별표 4)

製造業·鑛業·建設業 등을 영위하는 內國人이 技術의 開發 또는 革新에 소요되는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技術開發準備金을 損金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課稅年度 收入金額의 1%와 所得金額의 20% 중 많은 金額을 한도로 하여 支援받을 수 있다. 그리고 技術集約的인 產業에 대하여는 一般的인 技術開發準備金의 50%를 추가하여 設定할 수 있는바, 技術集約的인 產業에 다음 產業을 추가하였다.

技術集約的인 產業(令 §13② 關聯)

業 種	品 目
1. 機械工業	㈎, ㈏(생 략) ㈐ 產業用로봇
2. 電子工業 가. 電子器機	①~⑤(생 략) ⑥ 情報通信 및 放送用의 뉴미디어 電子器機 ⑦ 電子式 醫療器機 ⑧ 自動制御裝置 ⑨ 電子式計測裝備

業　　種	品　　目
나. 電子部品	①～⑨(생　략) ⑩ 세금선 ⑪ 고순도규소봉 및 박판 ⑫ 전자관용 유리 ⑬ 자기헤드
3. 航空工業	(생　　략)
4. 防衛產業	(생　　략)
5. 精密化學	①～⑤(생　　략) ⑥ 안　　료 ⑦ 계면활성제 ⑧ 고무 및 플라스틱 첨가제
6. 新素材產業	
가. 新金屬材料 製造業	① 초내열내식합금 ② 비정질합금 ③ 형상기억합금
나. 精密窯業 (화인세라믹스) 製造業	① 電子電氣用 세라믹스 ② 機械構造用 세라믹스 ③ 高溫耐火用 세라믹스 ④ 生化學用 세라믹스 ⑤ 光學用 세라믹스
다. 고기능성 고분자재료 제조업	① 폴리아미드 ② 폴리아세탈 ③ 고성능분리막 ④ 전도성수지
라. 복합재료 제조업	① 섬유강화플라스틱 ② 섬유강화금속
7. 유전자산업	① 의약품 ② 농약품 ③ 식　품

나. 技術開發準備金 使用範圍 擴大(令 별표5)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한 內國人은 準備金을 設定한 課稅年度의 終了日 이후 4年이 되는 날까지 技術開發費, 導入技術의 소화개량비, 技術情報費 등 租減法施行令 별표5의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基準에 使用하여야 한다. 이 使用基準에 다음을 追加하였다.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基準

區　　分	費　　用
1.~10 11. 非營利法人 研究機關(科學技術分野를 研究하는 경우에 한한다) 育成	(생　　략) 非營利法人의 研究機關에 대한 出捐金

다. 新技術企業化 事業의 範圍擴大 등(令 §15)

投資한 機械·裝置價額의 10%(外國産은 6%)에 상당하는 金額을 投資를 完了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는 方法 또는 投資한 機械·裝置를 取得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時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에 불구하고 取得價額의 50%에 상당하는 金額을 일시에 減價償却費로 하는 方法 중 選擇 適用 받을 수 있는 新技術企業化 事業의 對象이 될 수 있는 新技術의 범위에 다음을 追加하였다.

(1) 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이 開發한 技術의 成果
(2) 國·公立 研究機關이 開發한 技術의 效果
(3) 非營利法人의 研究機關(科學技術分野를 研究하는 경우에 한함)이 開發한 技術의 成果
(4)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新規의 고안

또한 新技術企業化 事業의 認定方法을 변경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主務部長官과 협의하여 認定하던 것을 科學技術處長官이 主務部長官의 의견을 들어 財務部長官과 協議하여 認定하도록 하였다.

라. 研究試驗用 施設·職業訓練用 施設의 範圍擴大(規則 §6)

10%(외산의 경우 8%) 投資稅額控除와 90% 一時償却 중 選擇適用 받을 수 있는 研究試驗用 施設 및 職業訓練用 施設의 範圍가 法人稅法施行規則 별표2 事業別固定資産(機械·裝置) 耐用年數表(갑)의 設備로 제한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研究試驗에 필요한 施設이 稅制惠澤對象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종전의 施設외에 法人稅法施設規則 別表1 機械裝置 이외의 固定資産 耐用年數表 중에서도 事務用器機 및 컴퓨터, 電話設備 其他의 通信器機, 時計, 試驗 또는 測定器機, 光學器機 및 寫眞製作器機 등 固定資産을 追加하였다.

마. 技術·人力開發費 範圍擴大(令 별표6, 規則 §6)

製造業, 鑛業, 建設業 등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할 수 있는 內國人의 各 事業年度에

技術 및 人力開發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 중 租減法施行令 별표6에 정하는 費用에 대하여는 費用을 損金으로 認定하는 외에 이 費用의 10%에 相當하는 金額을 당해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는 바 동 별표6 費用란의 被委託開發機關에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企業附設硏究所, 敎育法에 의한 專門大學, 國·公立硏究機關 및 非營利硏究機關(科學技術分野를 硏究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追加하였다.

또한 人力開發 중 職業訓練基本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資格檢定에 必要한 費用 및 職業訓練基本法 第2條第4號의 事業內職業訓練을 實施하는 事業主가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職業訓練生에게 支給하는 手當, 食費 및 職業訓練用品도 稅額控除對象으로 하여 技術·人力開發이 促進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技術用役事業의 範圍擴大(令 §17)

종전에는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登錄한 用役事業者(同法 施行令 별표3의 技術部門의 用役을 提供하는 專門技術用役者는 당해 별표3에 規定한 2개 이상의 專門分野를 登錄한 用役業者에 한함)가 技術用役育成法에 規定하는 技術用役을 提供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事業을 開始한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의 開始日로부터 3年 이내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事業에서 발생된 所得金額의 50%에 相當하는 金額을 所得控除하여 왔다.

그 결과 技術用役育成法 중 通信(專門分野 : 電氣通信), 情報處理(專門分野 : 情報處理) 등 專門分野가 1個만 있는 技術用役事業 부분은 대부분 所得控除에서 除外되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專門化가 요구되는 점을 勘案하여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하여 登錄한 모든 用役業者는 所得控除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의 範圍 擴大(規則 §6의2③)

新技術事業會社의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 그 讓渡差益에 대해 免稅가 適用되는 新技術投資會社의 範圍에 韓國產業銀行이 出資하여 新技術事業會社에의 投·融資業務를 主된 事業으로 하도록 設立된 法人인 韓國技術金融株式會社를 포함하였다.

7. 農漁民의 所得增大 支援

가. 農機械用 油類에 대한 間接稅 免除(法 §74①, 令 §58 및 規則 §21의3)

연근해어업용 선박과 水產業法 第13條, 第18條 및 第22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沿岸區域 漁業用 船舶에 使用할 目的으로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에 直接 供給하는 石油類에

대하여 附加價値稅와 特別消費稅를 免除하는 것과 같이 農業機械化促進法에 의하여 農水產部長官이 普及機種으로 고시한 農業機械 등에 使用할 目的으로 農業協同組合中央會에 直接 供給하는 石油類에 대하여도 間接稅 免除를 擴大하였다. 이때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에 供給하는 石油類의 範圍는 石油事業法에 規定하는 石油製品을 말하며, 農業機械에 使用하는 石油製品別 연간 免稅限度量은 財務部長官이 農水產部長官과 協議하여 決定한다.

普及機種으로 고시한 農業機械

①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쟁기, 로터리, 배토기, 트레일러, 로터리파종기, 비닐피복기, 동력비료살포기, 휴립복토기

②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프라우, 로타베이터, 트레일러, 로터리파종기, 휴립복토기

③ 이앙기 및 육모파종기

④ 동력분무기 및 인력분무기

⑤ 주행식분무기(스피드 스프레이어 포함)

⑥ 동력살분무기

⑦ 바인더

⑧ 휴대용 동력예취기

⑨ 콤바인

⑩ 곡물건조기

⑪ 자동탈곡기

⑫ 농용양수기

⑬ 농영엔진

⑭ 볏짚절단기

普及機種과 유사한 農業機械(令 §21의3)

① 동력중경제초기

② 동력수확기

③ 농산물건조기

④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⑤ 동력상토조제기

⑥ 동력이식기

⑦ 농업용난방기(농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비닐하우스·온실용 및 농가축산용에 한함)

⑧ 사료절단기
⑨ 농업용병충해방제기
⑩ 농업용양수기
⑪ 동력예취기
⑫ 동력탈곡기
⑬ 동력휴립기
⑭ 동력배토기
⑮ 동력시비기
⑯ 동력탈각기
⑰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⑱ 농산물결속기
⑲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
⑳ 농산물세척기
㉑ 동력심경기
㉒ 동력혈굴기
㉓ 동력구절기
㉔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㉕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나.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 대한 支援(法 §3)

租稅減免規制法은 동법 第3條에 列擧된 法律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租稅特例 및 減免을 할 수 없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1985定期國會에서 통과된 農漁家목돈마련貯蓄에 관한 法律(法律 第3797號, 1985.12.23)을 租減法 第3條에 열거함으로써 이 법에 의한 租稅減免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도 世帶當 300萬원 이하의 農漁家목돈마련貯蓄의 利子에 대하여는 租減法 第4條 및 租減法施行令 第2條第1項第2號에 의하여 非課稅되어 왔으나, 이 貯蓄制度는 1976.4.1부터 法的 根據없이 行政措置로만 施行되어 오다가 이 制度의 施行過程에서 貯蓄奬勵金 支給財源確保 등에 어려움이 있어 "農漁家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法律"을 제정하여 法的根據를 마련하였던 것이다.

이 법에서는 農漁民목돈마련저축의 利子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 등을 규정하고 있다.

8. 特別附加稅의 非課稅 및 減免이 排除되는 非業務用 不動產 判定基準의 明示化(租減法施行規則 §20의2)

가. 改正內容

1980年度 9.27措置(企業體質強化對策)이후에는 非業務用不動產의 取得을 積極 抑制하기 위하여 1981.1.1 이후 取得한 不動產으로서 非業務用不動產에 해당되면 모든 特別附加稅 非課稅·減免規定의 適用을 排除하도록 하면서 그 非業務用不動產 判定基準을 國稅廳長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번 改正에서는 이를 施行規則에 明示化하면서 종전의 國稅廳長이 정하여 告示했던 非業務用不動產의 範圍를 調整·補完하였다.

〈改正 非業務用不動產의 範圍〉

(1) 讓渡日까지 1年 이상 계속하여 당해 法人의 業務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한 것 (賣買事業用 不動產을 포함한다)

(2) 法人稅法施行規則 第18條第3項第2號 내지 第13號에 해당하는 것

上記 改正規定을 適用함에 있어서 不動產價額, 主業判定 및 收入金額의 計算에 대하여는 法人稅法上 特別附加稅免除(2年 이상 業務用資產讓渡)時 適用하는 非業務用不動產 判定基準과 同一하도록 하였으며 아래 不動產에 대하여는 非業務用 與否에 불구하고 非課稅·減免規定을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非業務用不動產의 範圍에서 除外되는 不動產〉

(1) 대물변제로 취득한 不動產으로서 取得日로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것

(2) 建築物 또는 施設物이 소실·철거 또는 도괴되기 직전일까지 1年 이상 계속하여 당해 法人의 業務에 直接 使用한 不動產으로 소실·철거 또는 도괴의 事由로 業務用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事由가 발생한 날로부터 2年(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것

(3) 法人이 事業의 一部 또는 全部를 休業·農業 또는 移轉하기 직전일까지 1年 이상 계속하여 당해 法人의 業務에 直接使用한 不動產으로서 休業·廢業 또는 移轉의 事由로 業務用에 直接 使用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事由가 發生한 날로부터 2年이 經過되지 아니한 것

(4) 法人稅法施行規則 第18條第4項第1號 및 第4號 내지 第10號에 해당하는 것

1986년

◉ 법　　률 : 1986. 1. 8. 법　　률 제 3806호(공업발전법 부칙)
(시행일 : 1986. 7. 1.)
1986. 5.12. 법　　률 제 3851호(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부칙)
(시행일 : 1986.11.13.)
1986.12.26. 법　　률 제 3865호(시행일 : 1987. 1. 1.)
1986.12.31. 법　　률 제 3910호(관광진흥법 부칙)
(시행일 : 1987. 7. 1.)
◉ 시 행 령 : 1986. 6.28. 대통령령 제 11937호(공업발전법시행령 부칙)
(시행일 : 1986. 7. 1.)
1986. 6.30. 대통령령 제 11942호(시행일 : 1986. 7. 1.)
1986.12.31. 대통령령 제 12035호(시행일 : 1987. 1. 1.)
◉ 시행규칙 : 1987. 4.11. 재무부령 제 1710호(시행일 : 1987. 4.11.)

〈要　約〉

○ 適用時限 延長
— 1986年末까지 限時法으로 되어 있는 租稅減免規制法의 適用時限을 第6次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과 連繫하여 5年 延長함.

○ 中小企業育成 支援
— 農漁村地域 및 技術集約型 創業中小企業에 대하여 一定期間 所得稅·法人稅·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를 減免함.
— 中小企業이 事業轉換을 위해 讓渡하는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壤渡稅를 免除함.
— 中小企業의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 投資를 10% 投資稅額控除 대상인 生産性向上 施設의 範圍에 追加함.
—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新技術事業 金融會社 등 Venture Capital 會社 및 組合 등에 대한 稅制支援을 強化함.

○ 技術人力開發 支援
— 技術開發準備金의 損金算入限度額을 1% 내지 1.5%에서 1.5%내지 2.0%로 引上하고, 中小企業은 500萬원을 追加 設定 許容함.
— 技術人力開發費 중 增加支出分에 대하여는 20% 稅額控除 및 4年間 移越控除를 許容함.
— 技術開發準備金 設定 및 稅額控除對象이 되는 費用의 範圍를 擴大함.
— 國産機械類의 使用促進을 위해 外國産機資材投資에 대한 稅額控除率을 縮小함.

○ 農漁村均衡發展支援
— 農工地區入住企業에 대하여 一定期間 所得稅·法人稅를 減免함.

- 農漁民과 庶民의 財産形成支援을 위해 農·水·畜協 등의 預託金·出資金의 非課稅限度를 大幅 引上함.
- 不在地主 등이 所有하는 一定規模 農地·草地·山林地 등을 自耕農民에게 讓渡·贈與時 讓渡·贈與稅를 免除함.
- 自耕農民이 營農에 從事하는 1子女에게 一定規模의 農地 등을 贈與時 贈與稅를 免除함.
- 其他 天然果實飮料에 대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하고, 農漁民 融資書類에 대한 印紙稅 免除限度額을 引上함.

○ 賃貸住宅建設支援
- 1986年 1月 1日 이후 新築한 庶民用 住宅을 長期賃貸한 후 讓渡할 경우 讓渡所得稅를 賃貸期間이 5年 以上인 때에는 50퍼센트, 10年 以上인 때에는 100퍼센트 免除함.
- 企業의 社員用賃貸住宅의 新築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對象을 50제곱미터(15坪) 이하에서 85제곱미터(25.7坪) 이하로 擴大하고, 이를 新築뿐만 아니라 購入의 경우에도 適用하도록 함.

○ 海外事業支援
- 海外事業과 關聯하여 外國에서 納付한 稅額에 대하여는 稅額控除의 方法과 損金算入의 方法 中 企業이 選擇한 方法에 의한 惠澤을 받도록 함.
- 海外投資 損失準備金의 設定限度額을 海外投資金額의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引上함.
-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時限을 1986年末에서 1991年末까지로 延長함.

○ 올림픽事業支援
- 組織委員會의 選手村·記者村아파트 分讓에 따른 特別附加稅 등을 免除함.
- 組織委員會의 作成文書에 대하여 印紙稅를 免除함.
- 財團法人 서울障碍者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를 公共法人에 追加하고, 障碍者올림픽事業에의 寄附金은 金額 損金 認定함.

○ 工業發展法의 制定에 따라 從前의 重要産業에 대한 特別償却制度는 이를 廢止하는 대신 同法에 의한 合理化施設投資에 대한 支援方式으로 轉換함.

○ 都市再開發事業 施行者의 分讓建物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의 減免對象을 縮小하고, 또한 國民住宅 외의 建築用地로 讓渡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50퍼센트 減免하였으나 이를 課稅對象으로 轉換함.

○ 5퍼센트 所得稅만 課稅되는 少額家計貯蓄의 範圍에 1,000萬원 이하의 老後生活年金信託을 追加함.

○ 10퍼센트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流通産業 近代化施設의 範圍에 先進管理技法인 販賣時點 情報管理施設(P·O·S)을 追加하고, 一部 公害防止施設의 範圍를 擴大함.

○ 기타 現行制度의 運營過程에서 나타난 一部 未備點을 補完함.

〈改正內容〉

1. 稅金優待 少額家計貯蓄의 範圍 擴大(令 § 2의2, 規則 §1의2)

가. 槪 要

1980年代 以後 持續的인 物價安定으로 實質金利가 保障되고, 所得水準 및 醫療技術의 發達로 平均壽命이 高齡化되어 감에 따라 俸給生活者 등 個人의 老後生活의 安定을 위하여 年金型 長期貯蓄商品인 "老後生活年金信託"이 施行되었는 바,(1987. 1. 5 施行)稅制面에서 이러한 長期家計貯蓄을 誘導하고, 國民의 老後生活安定도 支援하기 위하여 1,000萬원 以下의 老後生活年金信託을 所得稅만 5% 低率分離課稅되는 現行 少額家計貯蓄의 範圍에 追加하였다.

나. 稅金優待 老後生活年金信託

(1) 利用對象者

現行 老後生活年金信託 運用要綱에 의하면 만 30세 이상의 實名의 個人이면 老後生活年金信託의 委託者가 될 수 있으며, 受益者는 委託者 本人 또는 委託者가 지정하는 實名의 個人이다. 따라서 法人 또는 法人格이 없는 團體는 除外되는 반면 外國人의 경우에도 國內에 住所가 있거나 1年 以上 居所를 둠으로써 所得稅法上의 居住者에 該當하면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다.

(2) 對象商品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는 對象商品은 銀行法 第3條에 規定하는 金融機關(1987年 3月 現在 7個 市中銀行, 10個 地方銀行 및 韓國外換銀行)이 取扱하는 老後生活年金信託으로서 通帳에 의하여 去來되는 것을 말한다.

다. 稅金優待의 要件

(1) 1人1通帳일 것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는 老後生活年金信託은 同 信託取扱 金融機關 全部를 통하여 實名의 1人1通帳에 한한다. 따라서 同 信託通帳을 重複하여 加入한 경우에는 최초 加入한 通帳을 除外한 나머지 通帳은 契約日로부터 遡及하여 一般金錢信託으로 轉煥處理되고 稅金優待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現在 施行되고 있는 少額家計貯蓄인 稅金優待綜合通帳과는 別途로 信託設定者(委託者)別로 1人1通帳이 許容되므로 實質的으로 實名 1個人當 1,500萬원까지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 信託期間 2年 이상일 것

老後生活年金信託은 信託方法에 따라 積立式과 据置式의 2種이 있는데, 積立 또는 据置期間은 5年 以上 年單位로 하여 信託하도록 되어 있으나, 稅金優待가 되는 것은 實際 信託한 期間이 2年 以上이어야 한다. 즉 信託契約日로부터 2年 이내 中途解止한 것은 除外되지만, 2年 經過後 契約期間 滿了日前에 中途解止하는 경우는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다.

(3) 信託元金 1,000萬원 以下일 것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는 老後生活年金信託의 信託限度는 원금(据置式은 据置金額, 積立式은 滿期時까지의 積立額의 合計額)을 基準으로 하여 1,000萬원 以下이다. 따라서 1,000萬원을 초과하여 稅金優待를 받을 수 있는 老後生活年金信託 通帳에 預置하는 것은 許容되지 아니한다.

라. 通帳管理方法

老後生活年金信託을 取扱하는 金融機關은 老後生活年金信託 通帳을 開設하거나 中途解止한 때에는 分期別로 當該 通帳의 開設 및 解止狀況(委託者의 姓名, 住民登錄番號, 通帳番號, 開設 및 解止日)이 記入된 信託型貯蓄用으로 따로 마련된 少額家計貯蓄明細書(別紙 13－2號 書式)를 반드시 電算處理하여 分期終了 다음달 末日까지 源泉徵收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國稅廳은 各 金融機關이 提出한 少額家計貯蓄 明細書를 聚合·電算處理하여 2重 通帳加入與否 등을 체크하고, 重複通帳이 있으면 이를 該當 金融機關에 通報하여 適切한 措置를 취하게 된다.

2. 非課稅 利子所得의 範圍 擴大(法 §4, 令 §2)

가. 槪 要

庶民의 財産形成을 支援하기 위하여 一般銀行, 郵遞局, 相互信用金庫의 少額家計貯蓄에 대하여 稅金優待制度가 施行된 것과 衡平을 맞추어 農·漁民이나 庶民의 相互紐帶 및 協同을 目的으로 하는 農·水·畜協 등 組合이 取扱하는 預託金, 出資金의 利子所得稅 非課稅 限度를 引上하여 農·漁家 등의 財産形成을 支援하는 한편, 學年에 關係없이 均等하게 되어 있는 奬學積金의 非課稅 限度를 高學年인 中·高等學校 學生의 경우에는 그 限度金額을 引上하였다.

나. 預託金·出資金의 非課稅 限度 引上

(1) 改正內容

單位農業協同組合, 特殊農業協同組合, 畜產業協同組合, 水產業協同組合(漁村契包含), 信用協同組合 및 새마을金庫에서 取扱하는 預託金 및 出資金의 利子 및 配當所得에 대한 非課稅 範圍를 各各 다음과 같이 引上하고, 從前에 施行令에서 規定하였던 限度金額으로 規定하였다.

區 分	從 前	改 正
預 託 金	500萬원 以下	1,000萬원 以下
出 資 金	200萬원 以下	500萬원 以下

또한, 出資金에 대한 利用高配當의 경우는 從前에는 出資金이 200萬원 以下인 組合員에 限하여 利用高配當에 대한 所得稅를 非課稅하였기 때문에 出資金이 200萬원을 초과하는 組合員의 경우는 전혀 惠澤을 받지 못하였으나, 이를 一般出資金配當과 같이 出資金을 基準으로 하여 500萬원 以下의 出資分에 대한 利用高配當은 非課稅되도록 하였다.

다. 奬學積金의 非課稅 限度 引上

從前은 利子所得稅가 非課稅되는 奬學積金의 範圍가 未就學兒童, 國民學校, 中學生, 高等學校 學生은 모두 同一하게 1人當 10口座 이내 積金總額 50萬원 以下였으나, 高學年일수록 公納金 등 敎育費가 많이 所要되는 점을 勘案하여 中學校, 高等學校 學生의 경우는 100萬원 以下로 非課稅 範圍를 擴大하였다.

3. 中小企業創業에 대한 支援制度 新設(法 §15, §84, §85, §85의2, 令 §12의2)

가. 槪 要

中小企業은 한 나라의 經濟를 지탱하는 根幹으로서 雇傭吸收力과 成長潛在力이 높기 때문에 많은 有望中小企業을 創出·育成시키는 것은 우리 經濟가 當面한 重要한 課題이다. 이러한 趣旨에서 中小企業創出支援法이 1986. 5. 12. 制定·施行되어 創業節次의 簡素化, 創業相談 등 諸般支援을 하고 있음, 이에 맞추어 稅制面에서도 中小企業의 創業基盤造成을 위하여 創業初期段階의 稅負擔을 劃期的으로 輕減하였다.

나.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減免

(1) 減免對象 創業中小企業

減免對象인 創業中小企業은 製造業·鑛業을 營爲하는 中小企業으로서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5條第1項에서 規定하는 技術集約型 中小企業과 農漁村地域 中小企業을 1986. 1. 1 이후 創業하여 營爲하는 者이다.

〈農漁村地域 中小企業〉

農漁村地域은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上의 農漁村地域에서 首都圈整備計劃法上의 首都圈을 除外한 地域이며, 이러한 農漁村地域에서 創業한 企業으로서 製造業·鑛業을 營爲하는 中小企業이면 모두 減免 對象이다. 즉,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하여 市長·郡守로부터 事業計劃承認을 받아 創業한 中小企業과 創業支援法과 關係없이 自力으로 創業하는 中小企業 모두 該當된다.

〈參 考〉 農漁村地域의 範圍

○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上 農漁村地域
- 郡의 地域 中 農業·林業 또는 水產業을 主產業으로 하는 地域
  (全國의 모든 郡地域)
- 다음의 市地域
  江原道 束草市
  忠淸北道 堤川市
  全羅北道 井州市, 南原市
  全羅南道 錦城市
  慶尙北道 金泉市, 榮州市
  慶尙南道 忠武市, 三千浦市
- 其他 經濟企劃院長官이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農村地域으로 告示한 市(觀光·工業都市를 除外한 人口 20萬 以下의 市)

〈經濟企劃院 告示 86－2(1986. 5. 2)〉
- 江 原 道 : 三陟市, 江陵市, 東海市, 太白市, 春川市, 原州市
- 忠淸北道 : 忠州市
- 忠淸南道 : 公州市, 溫陽市, 大川市, 天安市
- 全羅北道 : 群山市, 裡里市
- 全羅南道 : 麗水市, 順天市
- 慶尙北道 : 永川市, 店村市, 尙州市, 安東市
- 慶尙南道 : 金海市, 鎭海市

告示된 地域은 人口 20萬 以下의 市 地域이지만 慶州, 西歸浦, 浦項, 龜尾, 麗川, 昌原 등은 觀光, 工業都市이므로 告示에서 除外됨.

○ 首都圈整備計劃法上 首都圈의 範圍(農漁村地域 範圍에서 除外) : 서울特別市와 仁川直轄市 및 京畿道 全地域

〈技術集約型 中小企業〉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은 中小企業創業支援法 施行令 別表2에 規定된 각종 事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이다.

이러한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은 그 確認이 어려운 점이 있어 減免申請時의 納稅者便宜를 圖謀하기 위하여 主務部長官 또는 主務部長官이 指定하는 機關의 長은 納稅者가 技術集約型 中小企業 該當與否의 確認을 요구할 때는 즉시 確認해 주도록 하는 協力義務規定을 두었다.(令 § 12의2, ③)

〈參 考〉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의 範圍**

〈中小企業創業支援法 施行令 別表2〉

1. 工業發展法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工業基盤技術開發事業의 成果를 企業化하는 事業
2. 中小企業振興法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創業造成實施計劃의 승인을 얻은 事業
3. 中小企業振興法 第38條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 企業化를 위하여 商工部長官이 정하는 業種의 事業
4. 中小企業系列化促進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系列化品目의 事業
5. 技術開發促進法 第2條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認定하는 新技術의 事業 및 技術開發促進法施行令 第14條의 規定에 의하여 科學技術處長官이 告示한 國內開發이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技術의 事業
6. 實用新案法에 의하여 登錄된 新規의 고안을 企業化하는 事業
7. 外資導入法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導入된 技術의 事業
8. 特定研究機關育成法에 의한 特定研究機關,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企業附設研究所, 產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產業技術研究組合, 非營利法人의 研究機關 및 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에서 開發한 技術의 成果 또는 研究成果를 企業化하는 事業
9.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別表4의 品目의 事業
10. 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를 企業化하는 事業
11. 投資會社의 出資(投資組合의 資金에 의한 出資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에 의한 創業者의 事業으로서 投資會社의 出資의 지분이 創業開始日로부터 創業審議會가 정하는 一定한 期間동안 당해 創業者의 株式 또는 資本金 總額의 100분의 10 이상인 자가 營爲하는 事業
12. 商工部長官이 技術開發促進과 部品 및 素材의 輸入代替를 위하여 創業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고시하는 品目의 事業

※ 現在까지는 第11號에서 規定하는 "創業審議會가 정하는 일정기간"은 2年이며, 第12號의 規定에 의하여 "商工部長官이 告示하는 品目은 704個〔商工部告示 第86－26號(1986. 7. 24) 및 第86－32號(1986. 9. 5)〕이나 經濟事情의 變化에 따라 調整될 수 있음.

〈中小企業의 範圍〉

減免對象인 技術集約型 및 農漁村地域 創業中小企業은 製造業 및 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으로서 이 경우 中小企業은 租減法 第13條 및 同法 施行令 第11條에 規定하는 中小企業을 말한다.

(2) 減免期間 및 減免率

創業中小企業에 대하여는 所得稅·法人稅·財產稅·取得稅·登錄稅가 일정기간 減免된다.

(가) 所得稅·法人稅 減免

創業中小企業은 당해 事業(製造業·鑛業 또는 技術集約型事業)에서 발생한 所得에 대한 所得稅·法人稅가 創業日에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후 3年內 終了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100%, 그후 2年內 終了하는 課稅年度에 있어서는 50% 減免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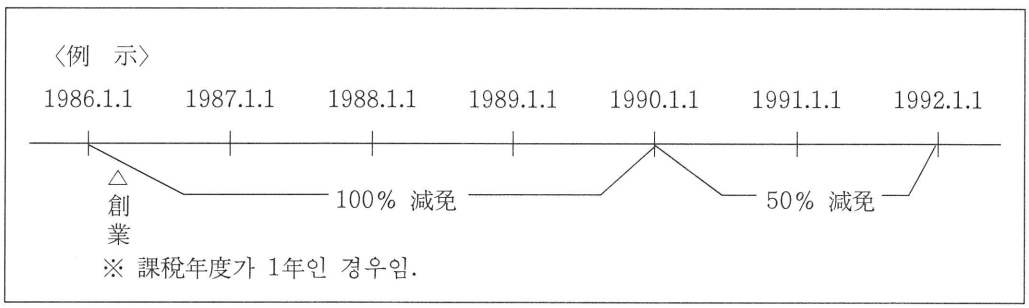

다만, 創業中小企業에 該當하는 外國人出資企業(內國法人) 등이 創業中小企業으로서 50% 減免을 받는 경우에는 租減法 第68條 및 外資導入法에 의하여 減免되는 所得稅·法人稅를 제외한 稅額에 대하여 減免率을 적용한다. 즉, 租減法 第68條에 의하여 外國人出資比率에 따라 所得稅가 50% 減免되는 경우는 同 減免稅額을 제외한 나머지 稅額(당초 所得稅의 50%)에 대하여 50%를 減免하기 때문에 당초 納付할 所得稅의 25%는 納付하여야 한다.

(나) 財 產 稅

創業中小企業은 당해 事業을 영위하기 위하여 所有하는 事業用財產에 대하여는 創業日로부터 5年間 財產稅가 50% 減免된다. 다만, 外國人出資企業이 租減法 第68條 또는 外資導入法에 의하여 財產稅가 減免되는 경우에는 당해 稅額을 제외한 稅額에 대하여 50% 減免率을 適用한다.

(다) 取得稅·登錄稅

創業中小企業이 創業日로부터 2年 以內 取得하는 事業用 不動產(法人設立登記 포함)에 대하여는 取得稅·登錄稅가 50%減免된다. 다만, 外國人出資企業이 租減法 第68條 및 外資導入法에 의하여 取得稅가 減免되는 경우는 당해 稅額을 제외한 稅額에 대하여 減免率을 適用한다.

(3) 創業日 및 創業의 範圍

(가) 創 業 日

租稅減免의 기준이 되는 創業日은 法人의 경우는 法人設立登記日, 個人의 경우는 附加價値稅法施行令 第7條의 事業者登錄證 交付日을 말한다.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서는 創業日을 개인의 경우에 「事業開始日」(製造業 : 製造開始日, 鑛業 : 採鑛日)로 하고 있으나 事業開始日을 減免基準日로 하는 경우 事業開始를 위해 取得하는 事業用財產에 대한 取得稅·登錄稅 등을 감면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事業開始前에도 申請·交付가 可能한 事業者登錄證 交付日을 감면의 起算日이 되는 創業日로 보도록 하였다.

(나) 創業의 範圍

改正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減免對象 創業中小企業의 範圍를 「中小企業創業支援法 第25條에서 規定하는 技術集約型 및 農漁村地域中小企業을 創業하여 영위하는 者」로 하고 있으므로 創業의 範圍도 中小企業創業支援法上의 "創業"의 範圍를 따르는 것이 原則이다.

따라서 減免을 받을 수 있는 創業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事業을 새로이 開始하는 것이다.

- ○ 事業承繼後 承繼前의 事業과 同種의 事業을 계속하는 경우
- ○ 個人事業者의 法人轉換, 法人組織變更 등 企業形態를 變更하여 同種事業을 영위하는 경우
- ○ 廢業後 廢業前의 事業과 同種事業을 영위하는 경우

※ 同種事業이란 韓國標準產業分類表上의 同一 細分類業種을 말하며, 業種을 追加하여 새로이 事業을 開始하는 경우는 追加業種의 賣出額이 70/100 이상인 경우는 同種業種으로 보지 아니한다.

(4) 區分經理

創業中小企業에 該當하는 事業과 기타의 事業을 겸영하는 경우(例 : 技術集約型 事業과 기타의 事業兼營)에는 法人稅施行令의 該當條項에 따라 事業別로 區分經理하여야 한다.

〈適 用 例〉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減免은 1986. 1. 1 이후 創業한 中小企業부터 적용되며 所得稅·法人稅는 改正 租減法 公布日(1986. 12. 26)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適用하고, 地方稅인 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의 減免은 改正 租減法 施行日(1987. 1. 1) 이후 최초로 取得·登錄 및 納期開始分부터 適用된다.

다만, 1986. 7. 19 고시된 道稅不均一課稅에 관한 條例에 의하여 農漁村地域에서 創業한 中小企業의 경우에 한하여 取得稅·登錄稅를 1986. 7. 19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은 제외되며 農漁村地域의 범위는 直轄市와 인접한 市郡地域이 제외되는 등 租減法上의 創業中小企業의 範圍와 차이가 있다.

〈地方稅 適用例 : 取得稅·登錄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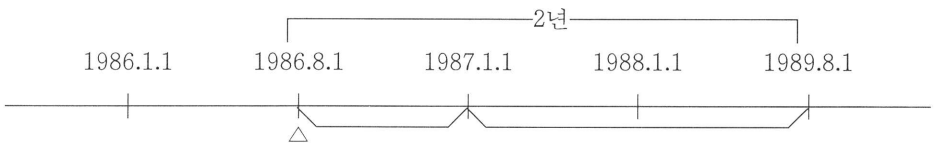

4. 冒險資本(Venture Capital)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

가. 槪 要

創業中小企業이나 新技術을 事業化하려는 企業에게 創業資金 또는 新技術事業資金을 供給하기 위한 目的으로 設立되는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와 新技術事業 金融會社 등 冒險資本(Venture Capital)의 健實한 育成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러한 V.C회사, V.C회사가 資金을 動員하기 위하여 結成·運營하는 組合 및 V.C회사의 個人株主에 대한 租稅支援을 擴大 또는 新設하였다.

나. V.C會社에 대한 支援擴大

(1) 株式讓渡差益 免除(法 § 18의2)

從前에는 韓國技術開發(주), 韓國技術振興(주), 韓國開發投資(주), 韓國技術金融(주) 등 4개의 新技術事業 投資會社가 新技術事業會社의 株式이나 出資持分을 讓渡할 때 讓渡差益에 대하여 法人稅를 免除하였으나, 新技術事業 金融支援

에 관한 法律과 中小企業創業支援法이 制定되면서 同法에 의하여 新技術事業金融會社 및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 등 Venture Capital 회사가 設立됨에 따라 이러한 Venture Capital會社가 同法의 規定에 의한 新技術事業者·創業者 등 Venture企業에 投資한 株式이나 出資持分을 讓渡함에 따라 發生하는 讓渡差益에 대하여 法人稅를 免除하도록 改正하였다.

(2) 投融資 損失準備金의 損金算入(法 § 54)

從前에는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技術開發㈜에 대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條件附 融資한 金額의 40%를 損失準備金으로 認定하여 損金에 산입토록 하였으나, 이를 Venture Capital 會社 全體에 대하여 당해 課稅年度 投·融資 金額의 50%範圍內에서 投·融資 損失準備金을 적립하여 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는 中小企業創業支援法에 의하여 創業者에 대한 投資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課稅年度에 投資한 金額의 50%까지 損失準備金을 적립하여 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新技術事業 金融會社

新技術事業 金融會社는 新技術事業金融支援法에 의하여 新技術事業者에 대하여 投資 및 融資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당해 課稅年度에 投資한 金額과 販賣額의 一定比率로 償還받는 條件으로 融資한 조건부 融資金額의 合計額의 50%까지 損失準備金으로 적립하여 損金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 V.C會社의 個人株主에 대한 支援(法 §5, §6)

Venture Capital 會社는 Venture企業에 대한 創業 資金支援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V.C會社가 支援資金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V.C會社의 個人株主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支援制度를 新設하였다.

區 分	支 援 內 容
○ 配當所得 分離課稅	○ V.C會社의 個人株主가 V.C會社로부터 받는 配當金에 대하여 10% 分離課稅로서 과세종결
○ 株式讓渡時 租稅減免	○ V.C會社의 個人株主가 V.C會社의 株式이나 出資持分을 讓渡할 시 留保利益剩餘金 增加分에 대한 擬制配當稅 免除

라. V.C投資組合에 대한 支援(法 §5, §6)

V.C會社는 冒險企業에 대한 投·融資 資金을 원활히 조달하기 위하여 個人으로부터 資金을 조달하는 이외에 中小企業創業支援 및 新技術事業 金融支援에 관한 法律에 의거하여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 및 新技術事業 投資組合(V.C 投資組合)을 結成하여 동원한 資金을 創業者 및 新技術事業者에게 投·融資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V.C投資組合의 組合員에 대하여도 V.C會社의 個人株主와 같은 支援을 하도록 하였다.

區 分	支 援 內 容
○ 配當所得 등의 分離 課稅	○ 創業者·新技術事業者로부터 組合이 配當을 받은 때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V.C組合이 組合員에게 配當時 10%원천징수로 분리과세
○ 出資持分 등의 讓渡時 租稅減免	○ V.C組合이 創業者 등의 株式이나 持分讓渡時 留保利益剩餘金 增加額에 대한 擬制配當稅免除

5. 技術 및 人力開發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

가. 槪 要

政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國際競爭社會에서 우리 經濟가 持續的으로 成長해 나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技術開發에 대한 投資擴大가 必要하다고 보아 重要產業 등 餘他部門에 대한 租稅減免은 縮小하면서도 技術開發部門에 대하여는 支援을 強化하였다.

特히 1986年은 國際收支가 처음으로 黑字로 전환되었는 바, 이러한 基調를 持續해 나가기 위하여는 國產機械類·部品 및 素材의 개발이 중요하므로 國產機械類 등의 使用을 促進할 수 있도록 投資에 대한 稅制支援制度를 보완하고, 기타 현행 技術開發準備金制度 및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制度의 施行過程에서 補完이 要求되는 一部 事項을 改善함으로써 보다 많은 企業이 技術開發을 위한 稅制支援制度를 有用하게 活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技術開發準備金制度 補完

技術開發準備金制度는 企業의 技術開發投資를 誘引·促進하기 위하여 企業이 4年 以內 技術開發에 投資할 金額을 미리 準備金으로 積立한 경우 이를 損金으로 認定해주는 稅制支援制度이다. 이는 技術開發을 위해 同 準備金을 設定하는 企業에게는 一定期間 稅金納付를 移延시키는 效果가 있는 間接 減免制度로서 금번 改正에서는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限度 및 使用範圍를 引上 또는 擴大하는 이외에 還入方法을 改善하였다.

(1) 設定限度 上向調整(法 §16)

從前에는 當該 課稅年度 收入金額의 1%(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別表4의 技術集約產業에 該當되는 企業은 1.5%)와 所得金額의 20퍼센트(技術集約產業은 30%) 중 많은 金額을 限度로 認定할 수 있었으나, 금번 改正에서는 收入金額基準의 設定限度 比率을 1.5퍼센트 내지 2퍼센트까지 上向調整하였다. 특히, 中小企業(조감법 제13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임)에 대해서는 앞에서 說明한 收入金額 基準設定限度를 引上하는 외에 收入金額基準에 關係없이 定額으로 500萬원을 追加設定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大部分의 中小企業의 경우 外形規模가 零細하여 收入金額基準으로 設定限度를 引上하는 것은 實效性이 적기 때문에 收入金額에 關係없이 一定額을 追加로 設定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限度

區 分	從 前	改 正
一般企業	收入金額의 1% (1.5%) 所得金額의 20% (30%) 중 많은 金額	收入金額의 1.5% (2%) 所得金額의 20% (30%) 중 많은 金額
中小企業		위 限度金額에 定額으로 500萬원을 加算한 金額

* ( )는 技術集約的인 產業(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別表 4」의 品目을 製造하는 事業을 말한다)의 경우임.

(2) 使用基準의 明確化 및 範圍擴大(令 別表 5)

앞에서 說明한 技術開發準備金 積立金額은 法定使用期間인 4年 以內에 技術開發準備金 使用基準인 「別表 5」에 適合하게 使用하여야 한다. 즉, 技術開發準備金 使用基準이란 技術開發準備金을 積立한 者가 이를 使用하여 技術開發에 投資할 수 있는 對象範圍를 定하여 놓은 것으로서 準備金 使用對象 與否가 分明해야 企業이 支出時마다 필요한 會計處理를 할 수 있고, 使用否認에 따른 追徵도 예방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이번 改正에서는 現行基準 중 用語의 定義 및 使用範圍가 不分明한 部分은 이를 보다 명확히하여 適用에 混亂이 없도록 하였다. 特히 企業이 設定한 技術開發準備金을 硏究開發費用으로 使用할 수 있는 "企業의 硏究部署"에 대한 槪念이 不分明하여 適用過程에서 一部 혼란이 있었

는 바, 금번 改正시에는 "企業의 硏究開發 專擔部署"라는 用語로 바꾸고 그 具體的인 定義는 技術開發促進法施行規則上의 "企業의 硏究開發 專擔部署"의 槪念과 一致시켜 그 範圍를 분명히하였다.

企業의 硏究開發 專擔部署의 範圍
(技術開發促進法施行規則 第3條의3)

第3條의3(企業의 硏究開發 專擔部署) 令 別表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基準 第1號 가목의 規定에 의한 企業의 硏究開發專擔部署는 令 第13條의2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企業附設硏究所와 다음 各號의 要件을 갖춘 企業內의 硏究開發 專擔部署로 한다.

1. 科學技術分野의 硏究開發業務를 擔當하는 部署임을 알 수 있는 名稱으로 되어 있을 것
2. 科學技術分野의 硏究開發業務가 主要業務로 되어 있을 것
3. 科學技術分野의 學士 以上의 學位를 가졌거나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系의 技士1級以上의 技術資格을 가진 자(中小企業基本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中小企業者의 경우에는 專門大學에서 科學技術分野에 관한 學科의 소정의 課程을 이수하고 卒業한 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되거나 "國家技術資格法에 의한 技術系의 技士2級 以上"의 技術資格을 가진 者) 1人 以上을 硏究專擔要員으로 상시 確保되어 있을 것
4. 다른 部署와 事務室이 分離되어 있을 것

이러한 使用基準의 명확화 이외에 새로 使用對象으로 追加된 內容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從 前		改 正
○ 硏究機資材 購入費用만 該當	⇨	○ 硏究用機資材를 購入할 能力이 不足한 企業을 支援하기 위해 貸借費用(리스료)도 追加
○ 國內外 科學技術者에게 支給한 技術諮問費 등 技術情報費	⇨	○ 中小企業이 中小企業振興工團 등 技術指導機關에 技術指導를 받고 支出한 費用도 技術情報費에 追加
○ 韓國技術開發(株)에의 出資金	⇨	○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및 新技術事業 金融會社에의 出資金

從 前		改 正
○ 硏究機關, 大學, 個人에 대한 委託開發費	⇨	○ 다음의 機關에 대한 委託 및 共同技術開發費 • 大學 또는 專門大學 • 國·公立硏究機關 및 政府出捐硏究機關 • 非營利法人硏究機關(科學技術分野 限定) • 專擔部署保有企業 • 產業技術硏究組合 ○ 大學 또는 專門大學敎授에 대한 委託開發費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基準(別表 5)

從 前		改 正	
區 分	費 用	區 分	費 用
1. 技術開發費	① 企業의 自體技術開發을 위한 硏究部署要員의 人件費, 材料費 및 試驗硏究費와 工業化 中間試驗 및 示範製作에 必要한 經費 ② 硏究機關 또는 敎育法에 의한 大學이나 個人에게 委託하는 技術開發用役費	1. 技術開發 및 導入技術의 消化改良費	가. 自體技術開發 財務部令에서 定하는 企業의 硏究開發 專擔部署(以下 "專擔部署"라 한다)에서 自體技術開發을 위한 다음의 費用 ① 專擔部署職員의 人件費 ② 專擔部署에서 硏究用으로 使用하는 見本品·部品·原材料와 試驗類購入費(示範製作에 所要되는 外注加工費를 包含한다) 및 試驗硏究費 ③ 專擔部署에서 直接使用하기 위한 硏究用物品·機資材·裝備·施設의 賃借에 必要한 費用 나. 委託 및 共同技術開發 ① 다음의 機關에서 技術開發用役을 委託함에 따른 費用 및 이들 機關과의 共同技術開發을 遂行함에 따른 費用 ㉠ 敎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 ㉡ 國·公立 硏究機關 ㉢ 政府出捐硏究機關 ㉣ 非營利法人인 硏究機關(科學技術分野를 硏究하는 경우에 限한다) ㉤ 專擔部署를 保有한 企業 ㉥ 産業技術硏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産業技術硏究組合
2. 導入技術의 消化改良費	① 導入된 技術의 分析·適用을 위한 調査硏究費 ② 導入技術의 工程改善 등 改良에 所要되는 經費(裝備·材料費 등)		

從 前		改 正	
區 分	費 用	區 分	費 用
			② 教育法에 의한 大學 또는 專門大學에 所屬된 個人(助敎授 以上에 限한다)에게 技術開發用役을 委託함에 따른 費用
3. 技術情報費	① 國內外 科學技術者의 技術諮問費 ② 科學技術關係 刊行物의 購入費 ③ 情報團體加入費 및 그 會費 ④ 科學技術關係 國際學術會議參席費	2. 技術情報費	가. 國內外 科學技術者로부터 技術諮問을 받음에 따른 費用 나. 科學技術關聯 圖書 및 刊行物購入費 다. 情報團體加入費 및 그 會費 라. 科學技術關聯 國內外學術會議(세미나, 워크숍, 심포지엄을 包含한다) 參席費
	〈新 設〉		마.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한 技術指導를 받기 위하여 中小企業이 支出한 費用
	⑤ 其他 國內外 科學技術情報獲得을 위한 經費		바. 其他 國內外 科學技術情報獲得을 위한 經費
4. 技術訓練費	① 自體訓練 또는 國內外 委託訓練費 ② 技術開發에 관한 세미나 開催 參席費 ③ 國內外 機能競技大會 參加費 또는 國家技術資格檢定應試經費 ④ 國際技能올림픽大會 韓國委員會에 機能奬勵基金으로 支出하는 寄附金 또는 出捐金	3. 技術訓練費	가. 自體訓練 또는 國內外 委託訓練費 나. 技術開發에 관한 세미나 開催 參席費 다. 國內外 技能競技大會 參加費 또는 國家技術資格檢定應試經費 라. 國際技能올림픽大會韓國委員會에 技能奬勵基金으로 支出하는 寄附金 또는 出捐金
5. 硏究施設	① 硏究所에 直接 공여되는 建物購入費	5. 硏究施設	가. 專擔部署建物(構築物을 包含한다)의 建築·增築·設置 및 購入에 따른 金額
	② 硏究用物品·機資材·裝備·施設의 設置 및 購入에 필요한 經費		나. 專擔部署에서 直接使用하기 위한 硏究用物品·機資材·裝備·施設의 設置 및 購入에 必要한 費用

從 前		改 正	
區 分	費 用	區 分	費 用
6. 中小企業 技術指導	① 母企業의 受給企業에 대한 技術指導에 必要한 經費 ② 其他 中小企業의 技術向上을 위하여 必要한 經費	6. 中小企業 技術指導	中小企業에 대한 技術指導에 所要되는 費用
7. 特定研究機關 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研究機關에 대한 出捐	① 特定研究機關에의 委託研究用役費 ② 特定研究機關育成을 위한 研究費	7. 研究機關의 育成	가.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研究機關에 대한 出捐金 나. 非營利法人인 研究機關(科學技術分野를 研究하는 경우에 限한다)에 대한 出捐金
8. 工業所有權의 出願 및 實施	① 國內外 工業所有權 獲得을 위한 出願料 또는 特許料로 支給되는 經費 ② 國內開發技術의 獲得을 위하여 支出한 金額	8. 開發技術의 活用	가. 國內外 工業所有權獲得을 위한 出願料 또는 特許料로 支給되는 經費 나. 國內開發技術의 獲得을 위하여 支出한 金額
9. 產業技術研究組合의 育成	產業技術研究組合에 納付하는 賦課金	9. 產業技術 研究組合의 育成	產業技術研究組合育成法에 의한 產業技術研究組合에 納付하는 會費, 研究開發分擔金 등 賦課金
10. 新技術事業 投資會社에의 出捐	①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技術開發株式會社에 대한 出資金 ② 第15條의2第2項第2號에 該當하는 新技術事業投資會社에 대한 出資金(金融·保險業者가 出資하는 경우에 限한다)	10. 新技術事業 金融會社등에의 出捐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 및 新技術事業 金融會社에 대한 出資金
11. 非營利法人 研究機關(科學技術分野를 研究하는 경우에 限한다)育成	非營利法人의 研究機關에 대한 出捐金		〈削 除〉
(備 考)	第5號·第8號의② 및 第10號의 金額은 技術開發準備金과 相計하지 아니한다.	(備 考)	第4號·第7號의 나 및 第9號의 金額은 技術開發準備金과 相計하지 아니한다.

(3) 益金還入方法 改善(法 §16③)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한 企業이 法定使用期間(4년) 이내 技術開發準備金을 使用할 때에는 旣設定한 準備金과 優先的으로 相計하여야 한다. 그런데 技術開發準備金 使用基準 중 硏究施設取得 등과 같은 資本的 支出金額은 技術開發 準備金과 直接 相計가 不可能하며, 準備金設定以後 4年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時 全額益金 還入하도록 되어 있는 바, 금번 改正時 資本的支出分에 대한 益金還入方法을 改善하였다.

즉, 技術開發準備金의 法定使用期間이 終了되는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부터 資本的支出金額의 累計額을 36으로 나눈 金額에 當該 課稅年度의 月數를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益金還入시키도록 함으로써 硏究施設取得 등 資本的 投資를 하는 企業에 대한 稅負擔이 緩和될 수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硏究施設取得 등 資本的 支出金額	• 準備金 設定後 4年째 되는 날 全額益金還入	• 準備金 設定後 4年째 되는 날부터 3年間 分割還入

〔註〕 資本的 支出金額 :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別表 5」의 備考란에 規定한 것으로서 다음의 金額을 말한다.

○ 硏究開發 專擔部署 建物의 購入·增築費用과 專擔部署에서 直接使用하기 위한 硏究用物品·機資材·裝備·施設의 設置 및 購入에 따른 費用
○ 國內開發技術의 獲得을 위하여 支出한 金額
○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 및 新技術事業 金融會社에 대한 出資金

(4) 未使用에 대한 利子相當加算稅率 引下(令 §7)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한 企業이 法定使用期間內에 準備金을 使用하지 않았거나 기타 租減法 第16條第4項 各號에 該當하는 事由로 인하여 未相計된 準備金殘額(準備金과 相計되지 않는 資本的支出金額은 除外함)을 全額益金에 還入시킬 때에는 100원에 대한 일변 6錢(年利 21.9%)의 利子相當加算額을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 加算하여 徵收하게 되어 있는 바, 금번 改正에서 益金還入時 適用되는 利子相當加算稅率을 引下하였다.

現 行	改 正
100원에 대한 일변 6錢(年 21.9%)	100원에 대한 일변 5錢(年 18.25%) ※ 法人稅 未納付加算稅率과 一致시킴.

(5) 事後管理基準의 緩和

從前에는 準備金을 設定한 金額이 廢業·解散하거나(合併으로 인한 解散의 경

우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 또는 合併으로 인하여 設立되는 法人이 當該 技術開發準備金 設定을 引繼한 경우는 除外) 技術開發促進法에 의한 事後管理의 결과 科學技術處長官에게 積立申告한 內容과 달리 任意로 使用한 事實이 發見된 때에는 廢業·解散·任意使用한 事實이 發生한 課稅年度의 所得金額 計算時 未使用準備金을 全額 益金還入시켜 왔으나 금번 改正時 任意使用에 대한 益金還入規定을 削除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準備金을 設定한 企業은 당초 科技處에 申告한 使用目的과 關係없이 法定使用期間인 4年 以內에 「別表 5」에 揭記한 基準에만 맞게 使用하면 準備金을 正當하게 使用한 것으로 認定받을 수 있게 된다.

다.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制度의 補完(法 §17, 令 §14)

企業이 技術開發 등에 使用하기 위하여 미리 技術開發準備金을 設定하는 경우에는 이를 損金에 算入하도록 稅制支援을 하는 이외에 실지 技術·人力開發費用에 使用한 때에는 그 支出한 費用의 10퍼센트를 納付할 法人稅 또는 所得稅에서 다시 控除해 주고 있는 바, 금번 改正時에는 企業의 技術·人力開發費 支出을 매년 擴大해 가도록 誘導하기 위하여 當該年度에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10%稅額控除 이외에 직전 2年間 平均支出한 金額보다 增加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하여는 추가로 10%의 稅額控除와 아울러 移越控除를 許容하는 한편, 稅額控除의 對象이 되는 技術·人力開發費(租減令 別表 6)의 範圍도 擴大하였다.

(1) 增加支出된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追加稅額控除

從前에는 技術·人力開發을 하고자 하는 企業은 租稅減免稅制法施行令 「別表 6」에 의거하여 支出할 때 支出金額의 10퍼센트를 投資한 課稅年度의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하여 왔으나 技術·人力開發에 대한 投資를 더욱 促進시키기 위하여 當該課稅年度에 支出한 金額이 직전 2年間 支出한 技術 및 人力開發費의 年平均支出額을 초과하여 支出한 경우에는 超過支出된 金額에 대하여 10퍼센트의 追加稅額控除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超過支出된 部分에 대해서는 總20퍼센트의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또한 從前에는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額이 租稅支援의 綜合限度(算出稅額의 30%)를 超過하는 分에 대해서 租稅의 移越控除가 許容되지 않았으나 앞에서 說明한 超過支出金額에 대해 10퍼센트의 稅額控除를 追加로 받는 分에 대해서는 4年間 移越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支出金額×$\frac{10}{100}$	○ 支出金額×$\frac{10}{100}$ ○ 超過金額×$\frac{10}{100}$
○ 移越控除 : 不可	○ 移越控除 : 超過支出金額의 未控除殘額에 대해서 4年間 移越控除 許容

이 경우 직전 2年間 支出한 技術 및 人力開發費의 年平均支出額의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다.

- 一般的인 경우 : $\frac{\text{當該課稅年度開始日로부터 소급하여 직전 2年間 支出한 技術·人力開發費의 合計額}}{2} \times \frac{\text{當該課稅年度의 月數}}{12}$

- 直前事業期間이 2年 未滿인 경우 : $\frac{\text{직전 2年 未滿에 支出한 金額을 24月로 換算한 技術·人力開發費의 金額}}{2} \times \frac{\text{當該課稅年度의 月數}}{12}$

- 年平均 支出額을 計算함에 있어서 月數의 計算은 달력에 의해서 하고, 事業年度開始日이 속하는 月이 1月 未滿인 경우에는 1月로 하고 事業年度終了日이 속하는 月이 1月 未滿인 경우에는 이를 算入하지 아니한다.

〈事　例〉

– 事業年度 1.1～12.31(繼續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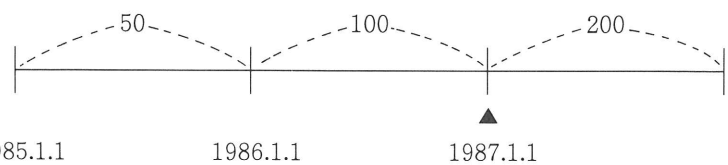

① 當該 課稅年度支出額 : 200
② 直前 2年間 支出額의 合計額 : 150
③ 直前 2年間 支出한 年平均額 : $\frac{150}{2} \times \frac{12}{12} = 75$
④ 增加支出金額 : 200－75＝125

— 事業年度 1.1～12.31(1986.1.1 新設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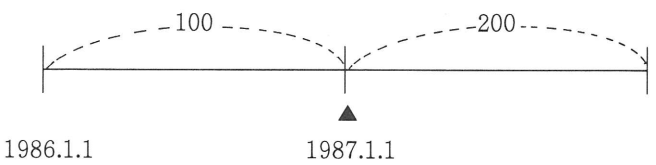

① 當該 課稅年度支出額 : 200

② 直前 2年間 支出額의 合計額(24個月 未滿이므로 換算) : 200

③ 直前 2年間 支出한 年平均額 : $\frac{200}{2}\times\frac{12}{12}=100$

④ 增加支出金額 : 200－100＝100

— 事業年度 1.1～6.30(繼續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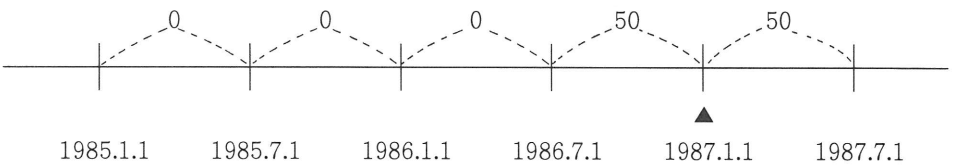

① 當該 課稅年度支出額 : 50

② 直前 2年間 支出額의 合計額 : 50

③ 直前 2年間 支出한 年平均額 : $\frac{50}{2}\times\frac{6}{12}=12.5$

④ 增加支出金額 : 50－12.5＝37.5

— 事業年度 1.1～6.30(1986. 7. 1 新設企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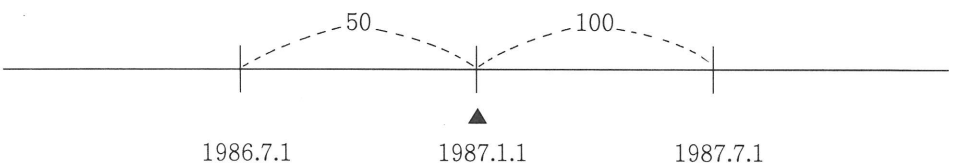

① 當該 課稅年度支出額 : 100

② 直前 2年間 支出額의 合計額(24個月로 換算) : 200

③ 直前 2年間 支出한 年平均額 : $\frac{200}{2}\times\frac{6}{12}=50$

④ 增加支出金額 : 100－50＝50

— 直前 2年間 技術·人力開發費支出이 전혀 없는 경우 : 超過支出金額은 없음.

(2) 技術 및 人力開發費의 範圍擴大(令 別表 6, 規則 §6)

稅額控除對象이 되는 技術·人力開發費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는 한편, 費目의 內容도 技術開發準備의 使用基準과 관련하여 一部 調整하고, 用語도 明白히 하였다.

令 別表 6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 • 산업기술연구조합·대학에 의뢰한 委託開發費만 해당 ○ 연구용기자재 購入비용만 해당 ⇨ ○ 技術人力에 대한 국내외 전문 ⇨ 연구기관·직업훈련기관 또는 대학에의 委託訓練費만 해당	○ 硏究開發專擔部署 보유기업 및 대학교수 개인에게 의뢰한 委託開發費도 추가 ○ 연구용기자재 賃借비용도 추가 ○ 中小企業이 中小企業振興公團에 技術硏修를 받고 지출한 비용 추가 ○ 국내외 기업 및 韓國生産性本部에의 과학기술분야 위탁훈련비 追加
○ 다음과 같은 一定資格소지자의 인건비 • 자연과학분야 碩士學位 이상자 • 자연과학분야 學士學位 이상으로서 특정연구기관 등의 硏究員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자 ⇨ • 技術系技士 1급 이상 소지자 ⇨ ○ 특정연구기관연구원, 자연과학분야 大學敎授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新 設)	○ 중소기업에 한하여 연구요원의 자격요건을 완화 • 과학기술분야 學士 이상자 • 技術系技士 2급이상 소지자 ○ 專門大學敎授 및 外國人技術者에게 지급하는 기술자문료 追加 ○ 기업과 연구기관·대학(전문대학포함)·산업기술연구조합 및 他기업연구개발 전담부서와 共同으로 硏究·開發하는 비용 追加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別表 6)

現 行		改 正 案	
區 分	費 用	區 分	費 用
1. 기술개발	가. 자체개발의 경우 ① 신제품, 신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부에서 당해기업의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연구개발을 위한 재료비 ③ 제품의 시작 및 공업화 중간시험에 필요한 경비 나. 위탁개발의 경우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제1항 각호의 기관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과학기술 분야을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지급한 기술개발용역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연구요원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② 전담부서에서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부품·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시범제작에 소요되는 외주가공비를 포함한다) 및 시험연구비 ③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용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임차에 필요한 비용 나. 위탁 및 공동기술 개발 ① 다음의 기관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국·공립 연구기관 ㉰ 정부출연 연구기관 ㉱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現 行		改 正 案	
區 分	費 用	區 分	費 用
	〈신 설〉		② 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한다)에게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다. 내국인으로부터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라. 국내의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마.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에 의한 기술정보비(기술자문비를 포함한다) 또는 도입기술의 소화개량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과 같음
	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삭 제〉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훈련비(단, 이공계에 한한다) ②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2. 인력개발	가. 위탁훈련비 ① 국내외의 전문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의 위탁교육 훈련비(다만, 이공계에 한한다) ②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위탁훈련비 ③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탁훈련하는 경우의 위탁훈련비
	〈신 설〉		④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한 기술연수를 받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現 行		改 正 案	
區 分	費 用	區 分	費 用
	〈신 설〉		⑤ 기타 자체기술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국내외의 위탁훈련비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나.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분담금 다.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사내 직업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종전과 같음
	〈신 설〉		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국가기술자격 검정응시경비

라. 新技術企業化 事業의 範圍調整(法 §18, 令 §15)

○ 國內開發技術의 企業化를 誘引·促進하기 위한 事後的인 租稅支援制度인 新技術企業化 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制度는 內國人이 國內에서 開發된 新技術을 企業化하기 위하여 新技術企業化 事業用資產에 投資하는 경우 同 投資金額에 대해 一定率을 稅額控除 또는 一時 償却해주는 制度이다.

이러한 新技術企業化 事業用資產에 대한 投資時 適用하여 오던 外產機資材에 대한 稅額控除率 또는 一時償却率을 引下하여 國產機資材의 使用을 유도하였고 新技術企業化 事業의 範圍를 調整하였다.

從 前	改 正
○ 特許받은 國內技術의 開發成果를 企業化한 것 ○ 特定硏究機關 등의 開發技術을 최초로 企業化한 것 ○ 實用新案法에 의하여 등록한 新規 考案을 최초로 企業化한 것	技術開發促進法 第8條의2 및 동 施行令 第1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產新技術製品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을 최초로 企業化한 것 追加

마. 研究試驗用 施設의 範圍 明瞭化(規則 §6)

內國人이 技術開發을 위해 研究試驗用 施設·職業訓練用 施設 등에 投資하거나 동 施設을 取得하였을 경우에는 投資金額의 一定率을 投資를 完了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納付할 稅額에서 控除받거나 取得金額의 一定率을 취득한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시 損金에 算入할 수 있는데 금번 改正에서는 이 중 研究試驗用 施設의 범위를 研究開發 專擔部署에서 使用하는 研究·試驗施設로 하여 그 범위를 명백히 하였다.

바. 外國人技術者에 대한 所得稅減免制度 改善(法 §21, 令 §18)

일정요건에 該當하는 外國人技術者가 國內에서 內國人에게 勤勞를 제공하고 支給받는 勤勞所得에 대하여는 最初로 勤勞를 提供한 날로부터 5年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發生한 勤勞所得에 대하여 勤勞所得稅를 免除하는 바, 이와같이 勤勞所得稅를 免除받는 外國人技術者의 經歷要件 및 國內勤勞期間을 改善·補完함으로써 外國人技術者의 國內誘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外國人技術者의 不必要한 國內滯留期間의 延長을 막을 수 있도록 하였다.

外國人技術者의 資格要件 調整

區 分	從 前	改 正
○ 經歷要件	– 外國人技術者가 다음의 産業分野에서 5年以上 從事하였거나 學士學位 以上의 學歷을 가지고 當該分野에서 3年 以上 從事한 技術者로서 다음의 事業者와의 雇傭契約에 의해서 繼續하여 6個月 以上 勤務하는 外國人 • 製造業·鑛業·建設業·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業·電子計算組織의 利用技術開發 및 情報處理事業·防衛産業에 관한 特別措置法에 의한 防衛産業物資의 加工·組立·整備 및 研究事業 – 博士學位 所持者로서 特定研究機關育成法의 適用을 받는 特定研究機關에서 研究要員으로 勤務하는 外國人 〈新 設〉	左同, 단, 6個月 以上 勤務해야 하는 要件을 削除 – 技術用役育成法에 의한 技術用役契約에 의하여 國內에서 技術用役을 提供하는 外國人 (學歷·經歷要件 없음)

사. 外國產機資材 投資에 대한 減免縮小

現行 租減法에서는 企業의 投資를 유인하기 위하여 投資金額의 一定率을 控除해주는 投資稅額控除制度 및 取得產業에 대한 一時償却制度 등을 운용하고 있는바, 從前에도 外國產機資材 投資에 대하여는 國產機資材 投資보다 投資稅額控除率 및 一時償却率을 낮게 適用하여 왔으나 금번 改正時 外國產機資材에 대한 投資稅額控除率 및 一時償却率을 더욱 引下함으로써 相對的으로 國產機資材 投資에 대한 支援을 더욱 強化하여 國產機資材 使用이 促進되도록 하였다.

投資稅額控除率 및 一時償却率의 範圍調整

適 用 對 象	投資稅額控除率		一時償却率	
	國產機資材	外國產機資材	國產機資材	外國產機資材
○ 新技術企業化施設(法 §18①)	10%	6%→3%	50%	50%→30%
○ 技術開發을 위한 硏究·試驗用施設(法 §18②)	10%	8%	90%	90%
○ 職業訓練用施設(法 §18②)	10%	8%→3%	50%	50%→30%
○ 地方移轉工場(法 §43)	10%	6%→3%	50%	50%→30%
○ 法人本社地方移轉(法 §43의2)	10%	6%→0%	—	—
○ 事業移轉施設(法 § 46의3)	10%	6%		
○ 特定設備(法 §71)	10%	6%→3%	50%	50%→30%
○ 臨時投資稅額控除施設(法 §72)	10%	6%→3%	50%	50%→30%
○ 社員用賃貸住宅(法 §72)	10%	6%→0%	—	—

※ 外國產機資材에 대한 臨時投資稅額 控除率은 從前부터 施行令에서 3%로 되어 있었음.

6.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補完(令 §34, 令 §36)

가. 槪 要

서울 등 大都市에 密集되어 있는 產業施設 등으로 인한 公害·住宅·交通問題를 해소하는 한편, 地方經濟 活性化를 통한 地域間 均衡發展도 도모하기 위하여 現在 大都市 工場 및 本社의 地方移轉을 위한 조세지원제도로서 移轉前 準備金 設定, 移轉時 讓渡差益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免除, 移轉後 投資稅額控除制度를 두고 있는 바, 금번 改正에서는 大都市工場의 지방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大都市 工場의 지방이전시 양도소득세 등이 감면되는 要件을 대폭 완화하였다. 즉 종전에는 移轉後 공장의 價額이 移轉된 工場價額 이상이어야 양도소득세 등을 全額 減免 받을 수 있던 것을

移轉後 工場價額이나 면적 중 어느 하나라도 종전공장보다 큰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을 全額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大都市圈의 범위에 光州市와 大田市를 새로이 追加하였다.

7. 中小企業의 事業轉換에 대한 稅制支援 新設(法 §45의2, 令 §38의2)

가. 槪 要

製造業을 영위한 中小企業이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원활하게 事業轉換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旣存工場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차익에 대한 法人稅·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는 中小企業 事業轉換에 대한 支援制度를 신설하였다.

나. 適用對象

製造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이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하여 고시하는 事業轉換 對象業種(轉換前事業)을 사업전환 대상업종이 아닌 製造業(轉換事業)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전공장을 양도할 때에 적용한다.

事業轉換이란 中小企業振興法에 의하여 고시하는 事業轉換 對象業種(제조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이 당해 事業에 직접 사용하던 機械裝置·工場建物 및 그 부속토지를 공장단위별로 양도하고, 事業轉換 對象業種이 아닌 다른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 事業用資產을 취득하여 새로운 事業(轉換事業)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事業轉換 對象業種의 指定告示는 현저한 수요감소가 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業種, 技術水準의 현저한 落後로 제품의 生產性·性能 및 品質 등에 있어서 競爭力이 크게 惡化되었거나 惡化가 예상되는 業種, 貿易環境 變更 등으로 수출이 극히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業種, 기타 環境汚染防止措置 또는 安全規制措置 등으로 事業轉換의 必要性이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事業轉換을 원하는 中小企業者의 경우에는 事業轉換計劃을 작성하여 中小企業振興公團 理事長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中小企業振興法 §10)

다. 免除稅額의 計算

①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法人稅·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 算出稅額 × ② 轉換事業의 事業用資產 取得價額 / ③ 轉換前事業의 事業用資產 讓渡價額

위의 산식 중 ③轉換前事業의 事業用資產 讓渡價額은 轉換前事業의 機械裝置, 工場建物 및 그 附屬土地價額과 事業轉換과 관련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支給받는 補助金 및 移轉補償金의 합계액을 말한다.

그리고 ②轉換事業의 事業用資產 取得價額은 轉換事業에 投資한 機械裝置·工場建設 및 그 附屬土地價額과 工場의 移轉費用의 합계액을 말한다.

라. 事業轉換期間

(1) 先 事業轉換, 後 讓渡의 경우 : 轉換事業을 개시한 날로부터 2年 以內에 轉換前事業의 事業用資產을 讓渡하여야 한다.

(2) 先 讓渡, 後 事業轉換의 경우

○ 새로운 工場 施工 : 轉換前 事業의 事業用資產 讓渡日로부터 1年 以內에 시공하고 施工日로부터 2年 以內에 竣工하여야 한다.

○ 旣存工場 取得 : 轉換前 事業의 事業用資產 讓渡日로부터 1年 以內에 취득하여 轉換事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마. 減免稅額의 追徵

(1) 先 讓渡, 後 事業轉換의 경우 : 위의 기간내 事業轉換하지 아니하거나 事業轉換後 2年 이내에 廢業한 때에는 免除稅額 全額을 추징한다. 또한 讓渡當時 100% 免除 후 실제 事業用 資產價額比率에 의해 계산한 免除稅額이 이미 免除한 稅額에 미달할 때에는 그 초과 면제한 稅額을 추징한다.

(2) 轉換事業 開始日로부터 2年 以內에 轉換事業의 事業用資產을 處分하는 때 : 免除稅額에 당해 處分資產價額이 免除받은 事業用資產價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계산한 稅額을 추징한다.

바. 免除申請

事業用資產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課稅標準申告(거주자는 資產讓渡差益 豫定申告)시 稅額免除申請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提出하여야 한다.

○ 先 讓渡, 後 事業轉換의 경우에는 事業轉換計劃書

○ 先 事業轉換, 後 讓渡의 경우에는 事業轉換完了報告書

8. 農漁村 均衡發展을 위한 稅制支援

가. 農工地區 入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 新設(法 §40의4, 令 §33의3)

(1) 槪 要

農漁村所得源 開發을 위하여 農工地區 入住企業에 대하여는 入住日로부터 創業中小企業과 같이 所得稅 및 法人稅를 減免하는 稅制를 新設하였다.

(2) 對象企業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에 의한 農工地區에 入住하여 農漁村所得源 開發事業을 영위하는 內國法人 및 個人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農工地區의 범위

農工地區는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上의 農漁村地域 중에서 農漁村所得源開發促進法 第24條에 규정하는 中央農漁村所得源開發委員會의 審議를 거쳐 市長·郡守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地域은 제외된다.

① 工業團地, 重化學工業團地가 있는 읍·면

② 首都圈整備計劃法上 首都圈 中 移轉促進圈域, 制限整備圈域

③ 서울特別市 및 直轄市와 인접한 읍·면

農工地區 指定에 있어서는 地方自治團體가 먼저 立地를 選定한 후 入住工場을 誘致하는 一般指定과 民間企業이 推進主體가 되어 먼저 入住工場을 確定한 후 농공지구지정을 받는 特別指定이 있다.

참고로 1987. 1. 20 현재 農工地區指定 및 開發現況은 다음과 같다.

〈參 考〉

農工地區 現況

○ 完工 農工地區

(1987. 3. 30 現在)

位 置	規 模	入住工場(分讓率)	
	千坪	個	%
江原道 橫城郡 橫城邑	49	16	(100)
忠北道 鎭川郡 鎭川邑	16	10	(100)
忠南道 公州郡 長岐面	26	13	(100)
全北道 南原郡 東面	14	6	(100)
全南道 咸平郡 鶴橋面	28	8	(77)
慶北道 永川郡 古境面	15	9	(100)
慶南道 咸陽郡 咸陽邑	12	8	(100)
合 計 (7個 地區)	160	70	(97)

○ 指定 農工地區 : 35個(敷地造成中 또는 準備地域)

位置	規模	入住工場(分讓率)	
	千坪	個	%
忠北道 中原郡 周德面	47	14	(100)
〃 陰城郡 陰城邑	19	14	(100)
〃 永同郡 永同邑	20	10	(100)
全北道 任實郡 信平面	17	3	(100)
〃 金堤郡 黃山面	20	5	(75)
江原道 春城郡 南面	32	14	(100)
忠南道 天原郡 稷山面	52	12	(100)
〃 燕岐郡 全東面	45	22	(100)
全南道 靈岩郡 新北面	40	1	(60)
江原道 洪川郡 南面	13	5	(100)
忠南道 錦山郡 福壽面	32	19	(100)
忠北道 陰城郡 三城面	45	5	(100)
慶南道 密陽郡 密陽邑	25	3	(100)
忠北道 槐山郡 道安面	27	5	(100)
忠南道 牙山郡 湯井面	29	3	(100)
〃 天原郡 東面	20	4	(100)
〃 天原郡 木川面	25	4	(100)
全南道 羅州市 가야동	30	4	(43)
〃 長城郡 東和面	23	4	(60)
慶北道 安東郡 南善面	16	2	(75)
〃 尙州市 外畓面	20	6	(87)
〃 星州郡 善南面	20	9	(100)
慶南道 蔚州郡 上北面	40	11	(100)
〃 咸安郡 郡北面	25	8	(56)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32	8	(100)
충북도 영동군 용산면	79	3	(100)
〃 청원군 부용면	52	3	(100)
〃 진천군 덕산면	28	6	(100)
경남도 합천군 율곡면	30	1	(50)
〃 양산군 정관면	75	20	(100)
경북도 영주시 가흥2동	38	8	(88)
〃 영천군 화산면	36	7	(100)
경남도 창녕군 남지읍	15	3	(48)
전북도 정주시 영파동	54	1	(93)
전남도 무안군 삼향면	62	4	(100)
合計 (35個 地區)	1,183	257個	

(나) 農工地區 入住企業

農工地區 入住企業에는 다음과 같은 企業(및 分工場)이 포함되며 大企業, 中小企業 구분없이 모두 적용된다.

① 당초부터 農工地區內에서 創業한 企業

② 他地域에서 事業을 해오다가 農工地區로 移轉한 企業

③ 他地域에서 事業을 하는 자가 農工地區에 設置한 分工場

(3) 租稅特例

農工地區 入住企業에 대한 所得稅 및 法人稅의 減免은 創業中小企業의 경우와 同一水準으로 減免한다. 즉 農工地區로 入住한 날이 屬하는 課稅年度와 그 후 3年內 終了하는 課稅年度는 所得稅·法人稅를 100% 免除하고 그후 2年內 終了하는 課稅年度는 50% 減免한다.

地方稅인 取得稅·登錄稅 및 財産稅의 減免에 대하여는 "새마을工場 等에 대한 取得稅·登錄稅免除에 對한 조례"에 의해 100% 免除되고, 財産稅는 "公共·市·郡 새마을工場 등에 대한 財産稅 免除 및 不均一課稅에 관한 조례"(首都圈 및 直轄市는 除外, 1986. 12. 10)에 의해 1年間은 100% 免除하고 그後 3年間은 50% 免除된다.

이 경우 農工地區 入住企業에 대한 減免의 기산점이 되는 入住日은 다음과 같다.

○ 農工地區에서 法人을 設立하는 경우에는 法人設立登記日

○ 工場을 農工地區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法施行令 第11條의 규정에 의한 事業者登錄證 再交付日

○ 個人이 농공지구에서 事業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는 附加價値稅法施行令 第7條의 규정에 의한 事業者登錄證 交付日

(4) 其 他

(가) 區分經理

農工地區 入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가 適用되는 事業과 기타의 事業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法人稅法施行令에서 정하는 區分經理를 하여야 한다.

(나) 重複支援의 排除

農工地區 入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에 의하여 減免을 받는 경우에는 新技術企業化 事業 등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地方移轉事業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등, 法人本社 地方移轉投資 稅額控除, 産業合理化에 따른 事業轉換 또는 主力業種施設에 대한 租稅特例, 特定設備投資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臨時投資稅額控除 및 社員用賃貸住宅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 選擇適用

同一한 工場에 대하여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와 農工地區 入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가 동시에 適用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適用을 받는다.

創業中小企業과 農工地區 入住企業에 대한 규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創業中小企業과 農工地區 入住企業의 比較

區 分	創業中小企業	農工地區 入住企業
對 象	— 製造業·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으로서 創業者	— 農工地區에 入住한 모든 企業
租稅支援基準日	— 創業日 ○ 法人：法人設立登記日 ○ 個人：事業者登錄證交付日	— 入住日 ○ 法人設立：法人設立登記日 ○ 個人設立：事業者登錄證交付日 및 分工場 設置 ○ 工場移轉：事業者登錄證 再交付日
租稅支援內容	— 所得稅·法人稅： ○ 創業年度와 그후 3年間 100% 免除 ○ 그후 2年間 50% 免除 — 登錄稅： ○ 創業日로부터 2年間 取得하는 事業用 財産에 대한 登錄稅 50% 免除 ○ 法人設立登記에 대한 登錄稅 50% 免除 — 取得稅：創業日로부터 2年內 取得하는 事業用不動産에 대한 取得稅 50% 免除 — 財産稅：創業日로부터 5年間 事業用 財産에 대한 財産稅 50% 免除	— 所得稅·法人稅： ○ 入住年度와 그후 3年間 100% 免除 ○ 그후 2年間 50% 免除 — 取得稅·登錄稅：100% 免除 — 財産稅 ○ 1年間 100% 免除 ○ 3年間 50% 免除

나. 自耕農民에게 讓渡하는 農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法 §67의6, 令 §55의5)

(1) 概 要

相續으로 인한 農地의 細分化를 방지하여 自耕農民의 耕作面積을 擴大시킴으로써 農村의 均衡發展을 기하고자 不在地主 등을 포함한 農地 등의 所有者가 直系尊·卑屬, 兄弟姉妹의 관계에 있는 自耕農民에게 農地 등을 讓渡하는 경우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는 規定을 新設하였다.

免除對象 農地는 1986. 12. 31現在 소유한 농지로 제한하여 새로운 농지를 取

得하여 讓渡하는 事例를 防止하도록 하였고 減免適用받는 讓渡時限을 1991. 12. 31까지 制限하여 不在地主가 조속히 自耕農民에게 농지를 讓渡하도록 誘導하였다.

또한, 免除對象農地에 草地, 山林地도 포함하여 畜産農民 등을 支援하도록 하였다.

(2) 改正內容

(가) 免除對象農地

○ 相續稅法 第11條의3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農地 등(농지 6,000坪 이내, 草地 30,000坪 이내, 山林地 60,000坪 이내)으로서 法 第67條의7의 規定에 의하여 自耕農民의 直系尊·卑屬, 兄弟姉妹로부터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하여 贈與稅를 免除받은 경우에는 免除된 農地 등을 포함하여 免除限度를 計算한다(法 第67條의8의 규정에 의한 營農 1子女의 農地免稅限度는 별도로 計算하는 것임).

○ 都市計劃法 第17條에 規定하는 住居地域·商業地域 및 工業地域에 所在하는 농지 등은 사실상 농지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免除對象 農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나) 自耕農民의 定義

自耕農民은 農地讓渡者와 直系尊·卑屬, 配偶者 또는 兄弟姉妹의 關係에 있는 자로서 다음 要件을 充足한 者를 말한다.

○ 農地 등의 所有地와 동일한 또는 인접한 市·邑·面에 居住하는 자일 것.

○ 農地 등의 取得日 現在 만18세 이상으로서 2年 以上 繼續하여 營農에 從事하고 있는 자일 것.

따라서, 農地取得日 現在 自耕農民은 營農에 종사하는 자로서 取得日로부터 소급하여 2年 以上 營農에 從事하는 事實이 確認되어야 한다.

(다) 稅額免除申請

農地를 讓受받은 自耕農民이 農地 등의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標準 申告期限內에 財務部令이 정하는 稅額免除 申請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讓渡者의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添附書類)

○ 自耕農民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표등본, 이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의 제출은 주민등록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여부와 거주사실, 연령확인을 위한 서류)

○ 自耕農民의 농지세 납세증명서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서류명의에 관계없이 사실확인이 가능한 인우보증서를 포함한다)

㈑ 免除稅額追徵 등

農地를 讓受받은 自耕農民이 정당한 사유없이 8年 以內에 讓渡하거나 營農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自耕農民으로부터 免除稅額과 利子相當額을 追徵한다.

— 다음의 경우는 正當한 事由가 있는 것으로 보아 免除稅額을 追徵하지 아니한다.

① 土地收用法, 기타 법률에 의한 收用의 경우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讓渡하는 경우

③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 促進法에 의한 換地에 의하여 농지등이 농지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變更된 경우

④ 自耕農民이 사망한 경우

⑤ 자경농민이 海外移住法에 의하여 해외이주를 하는 경우

⑥ 所得稅法 第5條第6號㈐目 및 ㈑目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또는 대토의 경우
(이 경우에는 종전농지의 자경기간과 교환·분합 또는 대토후의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되어야 함.)

— 利子相當額 計算(期間×利子率)

利子相當額은 과세표준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추징사유발생일까지의 期間에 일변 5전의 利子率을 곱하여 計算한다.

從前의 利子計算에 관한 租減法規定(施行令 第65條第7項)에서는 利子計算期間을 과세표준신고일부터 추징사유발생일까지로 하였으나, 本 新設規定에서는 當該期間을 이자부담의 형평을 위하여 신고일에 관계없이 申告期限 익일부터 追徵事由發生日까지로 하였다.

다. 自耕農民에게 贈與하는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 免除(法 §67條의7, 令 §55條의6)

(1) 槪 要

1986. 12. 31現在, 農地·草地·山林地를 所有하는 者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인 自耕農民에게 그 所有農地 등을 1991.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自耕

農民의 申請에 의하여 贈與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2) 贈與者의 要件

贈與者는 1986. 12. 31現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農地·草地·山林地를 所有하는 者(不在地主 포함)이어야 한다.

〈要件 1〉

都市計劃法 第17條에 規定하는 住居地域 및 工業地域 및 工業地域외에 所在하는 農地·草地·山林地일 것.

〈要件 2〉

① 農地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稅課稅對象이 되는 農地(非課稅, 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일 것.

② 草地는 草地法의 規定에 의한 草地일 것.

③ 山林地는 山林法의 규정에 의한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따라 새로이 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山林地(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 포함)일 것.

(3) 自耕農民의 要件

受贈者인 自耕農民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者이어야 한다.

〈要件 1〉

贈與者의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일 것.

〈要件 2〉

당해 農地·草地·山林地의 소재지와 동일 또는 인접한 시(서울특별시와 직할시 포함)·읍·면에 居住하는 자일 것.

〈要件 3〉

당해 農地·草地·山林地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일 것.

(4) 贈與稅免除 對象農地의 규모

自耕農民이 증여받은 農地·草地·山林地로서 贈與稅의 免除對象이 되는 農地 등의 合計面積은 農地는 6천평, 草地는 3만평, 山林地는 6만평을 限度로 한다. 한편 1986. 12. 31현재 農地 등을 소유하는 者가 直系尊卑屬 또는 兄弟姉妹인 自耕農民에게 그 所有農地 등을 1991. 12. 31까지 讓渡하는 경우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 第67條의6의 규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를 면제하는 바, 受贈者가 이 규정에 의하여 讓渡所得稅가 免除된

農地 등을 讓受한 때에는 당해 農地 등을 포함하여 贈與稅免除 對象農地 등의 面積을 계산한다.

(5) 免除申請節次

農地·草地·山林地를 贈與받은 者가 위 규정에 의하여 贈與稅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贈與稅課稅價額 申告期限내에 稅額免除申請書에 다음의 書類를 첨부하여 住所地 管轄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自耕農民의 戶籍謄本 및 住民登錄票謄本, 이 경우 住民登錄票謄本의 제출은 住民登錄票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나) 自耕農民의 農地稅納稅證明書 또는 영농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당해 농지 등에 대한 贈與契約書寫本

(라) 自耕農民의 農地 등 保有明細書

(6) 免除稅額의 徵收

贈與稅가 면제되는 農地·草地·山林地를 贈與받은 自耕農民이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農地 등을 贈與받은 날로부터 8년 이내에 讓渡하거나 당해 農地 등에서 직접 營農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의 免除稅額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自耕農民으로부터 지체없이 徵收한다.

(가) 정당한 사유의 범위

① 土地收用法 기타 법률에 관한 收用의 경우

② 國家·地方自治團體에 讓渡하는 경우

③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한 換地에 의하여 農地 등이 農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④ 自耕農民이 사망한 경우

⑤ 自耕農民이 海外移住法에 의하여 海外移住를 하는 경우

⑥ 所得稅法 第5條第6號(마)목 및 (차)목의 규정에 의한 農地의 交換·分合 또는 代土의 경우(종전의 農地의 自耕期間과 交換·分合 또는 代土후의 농지의 自耕期間을 합산하여 8년이 되는 때에 한한다.

⑦기타 財務部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利子相當額의 계산

免除稅額에 대한 利子相當額은 다음 算式에 의하여 계산한다.

면제받은 증여세액	×	면제받은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액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	연 18.25%

라. 營農1子女에게 贈與하는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 免除(法 §67의8, 令 §55의7)

(1) 改正內容

營農後繼者에 의한 農村均衡發展을 지원하기 위하여 自耕하는 農民이 營農에 從事하는 1子女에게 一定規模의 農地·草地·山林地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贈與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가) 自耕하는 農民(贈與者)의 範圍

自耕하는 農民은 當該 農地·草地·山林地의 所在地와 동일 또는 인접한 市(서울特別市와 直轄市 포함)·邑·面에 居住하는 者로서 당해 農地 등의 贈與日로부터 소급하여 2年 이상 繼續하여 直接 營農에 從事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나) 營農1子女(受贈者)의 範圍

營農1子女라 함은 自耕하는 農民의 直系卑屬 中 다음의 要件을 모두 갖춘 者로서 이 規定에 의하여 最初로 贈與稅를 면제받아 農地·草地·山林地를 취득하는 1人을 말한다.

〈要件 1〉

당해 農地 등의 所在地와 同一 또는 隣接한 市(서울特別市와 直轄市 포함)·邑·面에 居住하는 者일 것.

〈要件 2〉

당해 農地 등의 取得日 現在 만18歲 以上인 者로서 그 取得日로부터 소급하여 2年 以上 繼續하여 直接 營農에 從事하고 있는 者일 것.

(다) 農地 등의 範圍

당해 農地·草地·山林地는 다음의 要件을 갖추어야 한다.

〈要件 1〉

都市計劃法 第17條에 規定하는 住居地域·商業地域 및 工業地域 외에 所在하는 農地·草地·山林地일 것.

〈要件 2〉

① 農地는 地方稅法의 規定에 의하여 農地稅課稅對象이 되는 6천평 以內의

農地(非課稅·減免 및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일 것.

② 草地는 草地法의 規定에 의한 3만평 以內의 草地일 것.

③ 山林地는 山林法의 規定에 의한 營林計劃 또는 指定開發事業에 따라 새로이 造林한 기간이 5年 以上인 6만평 以內의 山林地(保安林·採種林 및 天然保護林의 山林地 포함)일 것.

㈑ 免除申請節次

農地·草地·山林地를 贈與받은 者가 위의 規定에 의하여 贈與稅를 免除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稅額免除申請書에 다음의 書類를 添附하여 贈與稅課稅價額申告期間內에 所管稅務署長에게 提出하여야 한다.

① 贈與者와 營農1子女의 戶籍謄本 및 住民登錄票謄本. 이 경우 住民登錄票謄本의 提出은 住民登錄證의 提示로 갈음할 수 있다.

② 贈與者 및 營農1子女의 農地稅納稅證明書 또는 營農 事實을 確認할 수 있는 書類

③ 당해 農地 등에 대한 贈與契約書寫本

④ 營農1子女의 農地 등 保有明細書

㈒ 免除稅額의 徵收

贈與稅가 면제되는 農地·草地·山林地를 贈與받은 營農1子女가 다음과 같은 正當한 事由없이 당해 農地 등을 贈與받은 날로부터 8年 以內에 讓渡하거나 당해 農地 등에서 직접 營農에 從事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農地 등에 대한 贈與稅의 免除稅額과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利子相當額을 營農1子女로부터 지체없이 徵收한다.

① 正當한 事由의 範圍

○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한 收用의 경우

○ 國家·地方自治團體에 讓渡하는 경우

○ 土地區劃整理事業法 또는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한 換地에 의하여 農地 등이 農地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地目으로 變更된 경우

○ 營農1子女가 死亡한 경우

○ 營農1子女가 海外移住法에 의하여 海外移住를 하는 경우

○ 所得稅法 第5條第6號㈋목 및 ㈌목의 規定에 의한 農地의 交換·分合 또는 代土의 경우(종전의 농지의 自耕期間과 交換·分合 또는 代土後의 農地의 自耕期間을 合算하여 8年이 되는 때에 한한다.)

○ 기타 財務部令이 定하는 不得已한 事由가 있는 경우

② 利子相當額의 計算

免除稅額에 대한 利子相當額은 다음 算式에 의하여 계산한다.

$$\left(\begin{array}{l}\text{면제받은}\\ \text{증여세액}\end{array}\right) \times \left\{\begin{array}{l}\text{免除받은 증여세에 대한 과세가액}\\ \text{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추징사유가}\\ \text{발생한 날까지의 기간}\end{array}\right\} \times \begin{array}{l}\text{연}\\ 18.25\%\end{array}$$

마. 天然果實飮料 및 天然果汁이 함유된 淸凉飮料에 대한 特別消費稅免除(法 §78의2, 令 §59의2)

과실재배 농가의 所得增大와 國民保健 向上을 위하여 特別消費稅法上 天然果實飮料와 과즙이 一定比率 이상 함유된 淸凉飮料에 대하여 特別消費稅를 免除토록 하였다.

天然果實飮料에 대한 지금까지의 課稅慣行은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 등의 規格 및 基準"과 "韓國工業規格"에서 果實飮料에 대한 과즙의 함량 등을 參考하여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것만을 課稅하여 왔다.

따라서 이번 免稅措置로 과즙이 10% 이상 함유된 天然果實飮料가 事實上 免除된 것이며 과즙이 10% 이상 함유됐으나, 탄산가스가 5/10,000 이상 함유되어 淸凉飮料로 分類 課稅되던 製品도 課稅衡平上 免稅되도록 하였다.

租稅減免規制法	租稅減免規制法施行令
第78條의2(天然果實飮料 등에 대한 特別消費稅 免除) 農家所得의 增大를 위하여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第3種第3號의 淸凉飮料 중 天然果汁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比率 이상 含有된 것과 同條 同項 同種 第7號의 天然果實飮料(果菜類의 것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991年 12月 31日까지 特別消費稅를 免除한다.(1986. 12. 26 新設)	第59條의 2(天然果實飮料 등에 대한 特別消費稅 免除) ①法 第78條의2에서 "大統領令이 定하는 比率"이라 함은 特別消費稅法 第1條第2項第3種第7號 天然果實飮料(果菜類의 것을 包含한다)의 天然果汁 含有率을 말한다.(1986. 12. 31 新設) ②法 第78條의2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消費稅가 免除되는 淸凉飮料 및 天然果實飮料에 대하여는 特別消費稅法 第9條·第10條·第20條·第21條·第23條·第25條 및 第26條의 규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1986. 12. 31 新設)

9. 賃貸住宅 建設을 위한 稅制支援

가. 長期賃貸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法 §67의4, 令 §55의4)

(1) 減免對象 住宅

長期的으로 小型賃貸住宅의 건설을 촉진하여 無住宅庶民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減免對象住宅은 원칙적으로 1986. 1. 1 이후 신축한 국민주택규모(專用面積 25.7坪) 이하의 住宅으로 한정하였으나 不動產景氣 沈滯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시키고자 1985. 12. 31 이전에 신축된 아파트로서 1986. 1. 1 現在 入住된 사실이 없는 주택도 포함하였다.

또한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土地로서 建物延面積의 2배 이내의 土地를 減免하도록 규정하여 讓渡所得稅 優待稅率 適用時의 國民住宅의 범위 등과 일치시켰다.

(2) 減免主體 및 減免率

(가) 個人의 경우에는 賃貸戶數에 制限없이 讓渡所得稅를 減免토록 하였고 法人이 賃貸事業을 하는 경우에는 住宅을 5戶 이상 임대하여야 減免토록 하였다.

(나) 個人이나 法人 모두 주택을 5年 以上 賃貸한 후 讓渡하는 경우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減免하되, 減免率은 賃貸期間에 따라 差等을 두어 長期賃貸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賃 貸 期 間	減 免 率	讓渡所得稅率(特別附加稅率)
5년 이상~10년 미만	50%	15%(12.5%)
10년 이상	100%	0%(0%)

(3) 賃貸住宅 申告

○ 住居者와 內國法人이 住宅의 賃貸를 開始한 경우에는 임대개시일로부터 3月 이내에 財務部令이 정하는 住宅賃貸 申告書 賃貸內容을 기재하여 申告하도록 하였는바, 居住者의 경우에는 同申告書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고, 國內法人의 경우에는 法人의 本店 또는 主事務所 所在地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 한편 1986. 1. 1 이후 賃貸한 期間을 소급하여 인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1987. 1. 1 以前에 賃貸한 경우에는 1987. 3. 31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다.

(4) 賃貸期間 計算方法 등

○ 住宅賃貸期間은 사실상 賃貸한 期間을 通算하여 계산하는 것으로서 原則的으

로 賃貸住宅 申告時 提出한 賃貸開始內容, 賃貸契約書, 賃借人의 住民登錄票 謄本 등에 의하여 計算하도록 하였다.

(가) 法人인 賃貸住宅事業者가 5戶 미만의 住宅을 임대한 기간은 賃貸住宅期間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나) 合併의 경우 被合併法人이 賃貸한 期間을 合併法人이 주택임대기간에 合算하여 計算한다.

(다) 相續의 경우 被相續人이 賃貸한 期間을 相續人의 住宅賃貸期間에 合算하여 計算한다.

(라) 기존 賃借人의 퇴거로부터 다음 賃借人의 入住日까지의 賃貸契約準備期間으로서 3月內의 기간은 임대기간에 算入한다.

(5) 稅額免除 申請

減免要件을 충족한 住居者와 內國法人은 당해 賃貸住宅을 讓渡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 申告期限內에 財務部令이 정하는 稅額免除申請書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住所地(法人의 경우에는 本店 또는 主事務所의 所在地)管轄 稅務署長에게 提出한다.

(添附書類)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임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 임대주택에 대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건물대장등본(국민주택 규모 확인을 위한 서류)

○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서류

나. 社員用 賃貸住宅에 대한 租稅支援(法 §72의2, §57의3)

企業의 社員用 賃貸住宅의 新築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對象을 50m²(≒15평) 이하에서 85m²(≒25.7坪) 이하로 擴大하고 住宅을 구입하여 賃貸하는 경우에도 10%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對 象 者

法人이나 개인企業者가 無住宅從業員(出資者인 任員을 제외)에게 賃貸하기 위하여 國民住宅(이에 부수되는 당해 建築延面積의 2배 이내의 土地를 포함)을 新築하거나 購入한 때에는 住宅取得金額의 10%에 상당하는 金額을 당해 주택의 竣工日 또는 購入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한다.

內國法人은 1回에 5호 이상의 賃貸住宅을 新築하거나 購入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中小企業이 社員用賃貸住宅을 新築하거나 購入하는 때에는 新築 및 購入戶數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從前에는 外國産機資材를 使用한 경우에도 6% 投資稅額控除를 적용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外國産機資材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制度를 폐지하고 國産機資材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10%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 投資稅額의 計算

(가) 賃貸住宅과 其他의 住宅을 함께 新築 購入하는 경우

$$\text{당해 주택취득(신축·구입)금액} \times \frac{10}{100} \times \frac{\text{社員用賃貸住宅의 總延面積}}{\text{住宅의 總延面積}}$$

(나) 申 請

- 住宅新築을 着工한 때 : 住宅新築計劃書(土地를 새로이 買入한 때에는 그 土地의 不動産登記簿謄本)
- 住宅을 준공하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 : 竣工·購入報告書

10. 海外事業에 대한 支援制度 新設

가. 外國納付稅額 損金算入의 特例(法 §28의2)

內國人의 國外源泉所得과 關聯하여 外國에서 納付하였거나 納付할 稅額은 外國人의 算出稅額에서 一定한 金額을 한도(外國納付稅額 控除限度)로 稅額 控除된다.

이는 同一한 所得에 대하여 國內와 外國에서 二重으로 課稅되는 것을 防止하여 內國人의 海外進出을 促進하기 위한 國內法上 支援制度이다.

그러나 이러한 外國納付稅額控除는 算出稅額에 國外源泉所得이 당해 事業年度의 課稅標準金額에서 차지하는 比率을 곱하여 算出한 金額을 한도로 認定되고 있어 國外源泉所得은 있으나 國內事業所得의 缺損으로 算出稅額이 없는 경우 또는 어느 進出國家에서는 利益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進出國家에서는 缺損이 나서 全體的으로 國外源泉所得이 缺損인 경우 등에는 同制度의 惠澤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海外에 進出하는 內國人을 보다 적극적으로 支援하기 위하여 外國納付稅額에 대하여 旣存의 稅額控除方法 以外에 損金算入方法을 追加로 認定하여 納稅者의 任意意思에 따라 外國納付稅額 控除方法과 外國納付稅額의 損金算入方法 中 어느 하나를 選擇하여 適用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기서 注意를 要하는 것은 稅額控除를 받는 경우 控除限度額을 超過하는 金

額에 대하여 다시 損金算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當該課稅年度의 外國納付稅額 全體에 대하여 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의 어느 한 方法을 選擇하여야 한다.

나. 外國納付稅額의 擬制(法 §28의3)

우리나라와 租稅條約이 締結된 國家에 國外源泉所得이 있는 內國人이 그 國家에서 當該 國外源泉所得에 대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減免받은 경우에 당해 減免稅額相當額은 同租稅條約이 定하는 範圍안에서 그 相對國에서 納付한 稅額으로 擬制하여 內國人의 稅務計算上 外國納付稅額控除 또는 損金算入의 對象이 되도록 하였다.

이는 흔히 看做外國納付 稅額控除(T.S.C)라고 불리우며 一般的으로 租稅條約에서 開發途上國家의 經濟發展을 支援하기 위하여 開發途上國이 外國人投資國家에 대하여 租稅減免을 하는 경우 減免받은 稅額을 事實上 減免받지 않고 納付한 것으로 간주하여 進出하는 國家의 外國納付稅額에 包含시킴으로써 開途國의 租稅減免効果가 實質的으로 外國投資者에게 귀속될 수 있도록 規定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그간 우리나라가 外國과 締結한 旣存 租稅條約에서도 이러한 規定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事實上 國內法上의 根據規定이 未洽하여 이를 施行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그 施行根據를 마련함으로써 外國과 締結한 租稅條約의 實効性을 提高하고 內國人의 海外進出을 積極 支援하게 되었다.

따라서 同 規定은 우리나라와 租稅條約이 締結된 國家에 進出하는 內國人으로서 當該 租稅條約에서 그 內容을 規定하는 範圍에 한하여 適用된다.

다. 海外投資 損失準備金의 設定限度額 引上(法 §29)

國際收支가 黑字로 轉換됨에 따라 海外投資를 더욱 장려하기 위하여 海外投資 損失準備金의 認定限度額을 당해 課稅年度 종료일 현재 海外投資額의 10%에서 15%로 引上하였다.

다만, 農產物·畜產物·水產物·林產物·鑛物 등의 資源開發事業에 대하여 投資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해외투자액의 20%로 變動이 없다.

라. 海外事業에 대한 所得控除 適用時限延長(法 §26)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하여 免許를 받은 海外建設業과 產業設備輸出促進法 第2條에 規定하는 一括受注方式에 의하여 產業設備를 輸出하는 事業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는 1986. 12. 31 이전에 終了하는 課稅年度까지 당해 事業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의 2%(所得控除의 50% 한도)를 所得控除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租稅減免規制法의 一般適

用時限까지 適用받을 수 있도록 改正함으로써 所得控除適用時限을 1991. 12. 31까지 延長하였다.

11.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特定設備의 範圍擴大

가. 槪 要

현행 租減法에서는 産業經濟發展을 위한 機能別支援政策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生産性向上施設, 公害防止施設, 流通近代化施設 등 우리의 産業經濟全般의 차원에서 기업의 投資誘因이 필요한 8개분야의 特定設備投資에 대하여 投資額의 10%를 납부할 法人稅 또는 所得稅에서 控除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는바, 이번 施行規則改正으로 중소기업의 生産性向上을 위한 시설로서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投資에 대한 支援을 新設하고, 公害防止施設과 流通近代化施設 投資도 지원대상이 되는 投資의 範圍를 擴大하였다.

나. 中小企業 生産性向上을 위한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 投資에 대한 支援新設(規則 §21⑥)

特定設備로서의 10%投資稅額控除 또는 50% 一時償却을 받을 수 있는 生産性向上施設의 범위는 中小企業의 「工程의 改善·施設의 自動化」·「老朽施設의 改替」 및 「勤勞者福祉向上 등」 生産性向上施設 등으로 1983年 施行令改正時 制度化하였고, 그 구체적인 施設의 범위는 財務部令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였고, 1984年 施行規則改正時에 처음으로 製造業 및 鑛業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대해서만 「老朽施設改善」과 「勤勞者의 寄宿舍」 投資時 租稅支援을 받도록 하여 施行해 오던 중 이번 施行規則改正에서 그동안 施行을 留保해오던 「工程의 改善·施設의 自動化」에 관한 施設의 範圍를 새로이 규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製造業, 鑛業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 耐用年數가 경과된 기계장치를 改替하는 投資 ○ 공장·광산勤勞者用 寄宿舍 投資	— 製造業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投資 新設 (추가) → 新規·增設·改替投資 모두 적용

投資稅額控除對象이 되는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은 총 77종설비로서 類型別 對象設備는 다음 表와 같다.(別表 8)

類　　型	投資稅額控除對象設備
— 工程改善施設(25개)	
○ 공정개선을 위한 試驗·檢査 및 測定設備	○ 제품 또는 부품의 性能自動試驗機 ○ 材質을 자동으로 檢査·分析하는 機器 등 4種 설비
○ 工程短縮 및 自動化를 위한 設備	○ 塗裝 및 鍍金工程을 자동화한 설비 ○ 제품을 자동 計量, 包裝, 結束하는 包裝機 등 19種 설비
○ 공정개선을 위한 컴퓨터設備	○ 공정개선을 위한 소형컴퓨터 등 2種 설비
— 自動化施設(52개)	
○ 컴퓨터 및 로봇 應用設備	○ 動作自由度가 3 이상인 産業用 로봇 ○ 마이크로컴퓨터 지피組立機 등 6種 설비
○ 원료·부품 등의 연속반복 供給 및 移動 設備	○ 바늘의 運動, 被裁縫物의 위치를 자동으로 작동하는 縫製機 ○ 電子式방법으로 모·화섬 등 원료를 일정하게 공급하는 카드기 등 13種 설비
○ 자동成形, 切斷 등 加工施設	○ 數値制御式 공작기계 ○ 속도, 압력, 온도 및 스크루회전수를 자동으로 조정하는 成形機 등 12種 설비
○ 자동접합, 조립 등 精密作動設備	○ 전자부품을 平面에 自動接着하는 기계 ○ 自動制御裝置의 프로그램에 의해 필름 등을 균일하게 감아주는 卷取機 등 9種 설비
○ 自動計測, 計量設備	○ 부품 등의 양을 指定·入力된 수량대로 세어주는 計數機 ○ 일정온도를 自動調節·記錄하는 장치 등 5種 설비
○ 自動洗滌, 乾燥, 染色設備	○ 電氣 電子式 및 超音波를 이용한 洗滌機 등 3種 설비 ○ 세라믹원료를 5미크론 이하로 自動粉碎하는 기계 ○ 化學物質을 용도별로 自動配合하는 기계 등 4種 설비
합　　계	77種 설　　비

다. 기업의 公害防止施設 投資에 대한 支援強化(規則 別表3)

현행 租減法上 個別 기업이 설치하는 각종 公害防止施設(탈유황장치, 集塵施設, 폐가스·폐수처리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과 專門處理業者가 설치하는 産業廢棄物 및 廢油처리시설에 대하여는 10%의 投資稅額控除를 해주고 있으나 專門處理業者(産業

廢棄物 處理事業者·廢油處理事業者)가 설치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는 産業廢棄物 處理施設 및 廢油處理施設을 專門處理業者 이외에 개별기업이 스스로 설치하는 경우 등 同 施設을 설치하는 경우는 모두 稅制支援을 받을 수 있도록 支援을 다음과 같이 強化하였다.

從 前	改 正
○ 환경보전법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業을 영위하기 위한 産業廢棄物處理施設 ○ 海洋汚染防止法에 의한 廢油處理事業을 영위하기 위한 廢油處理施設	○ 廢棄物處理法에 의한 産業廢棄物處理施設 ○ 海洋汚染防止法에 의한 廢油處理施設

라. 流通施設 近代化를 위한 販賣時點 情報管理施設(POS)投資에 대한 支援 新設 (規則 §21⑦, 別表 6)

현행 租減法上 流通近代化施設에 대한 지원은 주로 農水産物의 운반·보관 등에 필요한 設備에 치중하여 왔는바, 이를 擴大하여 流通物品의 전반에 걸쳐 體系的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販賣時點 情報管理施設(POS) 投資를 하는 경우에도 10%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流通近代化 施設投資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擴大하였다.

從 前	改 正
— 連鎖化事業者의 ○ 냉동, 냉장장치 등을 갖춘 運搬用貨物自動車 ○ 農水産物 低溫保管庫, 包裝機, 판매용 陳列臺	— 販賣業者(도·소매업진흥법상의 連鎖化事業者, 市場, 都賣센터, 大規模小賣店 開設者)의 販賣時點 情報管理施設(POS) 投資(컴퓨터, 단말기 및 관련주변기기 등) 新設

※ 販賣時點情報管理制度(Point of Sales System)
: 商品包裝에 인쇄한 Bar-Code를 光學式方法으로 판독하여 販賣狀況 등을 自動處理·活用하는 先進管理方法.

12. 重要産業에 대한 支援廢止 및 工業發展法에 의한 合理化施設投資에 대한 支援新設

가. 概 要

기계·전자공업 등 각종 産業에 대한 個別育成法이 廢止되고 工業發展法이 제정됨을 계기로 하여 이번 租稅減免規制法 改正時 기계·전자공업 등 5個重要産業에 대한 支援

制度를 廢止하는 대신에 工業發展法에 의거 指定된 合理化 業種의 施設投資에 한하여 支援하는 方式으로 轉換하였다.

나. 重要產業에 對한 支援制度 廢止 및 航空工業에 대한 特別償却 支援存置(法 §40)

工業發展法이 제정(1986. 1. 8)되면서 產業에 대한 個別育成法인 기계공업진흥법·조선공업육성법·전자공업진흥법·철강공업육성법·석유화학공업육성법·비철금속제련사업법·섬유공업근대화촉진법 등 8個 法律이 廢止되고 產業에 대한 育成·支援에 관한 事項이 工業發展法으로 統合됨에 따라 稅制面에서도 從前의 個別育成法에 의하여 支援하던 기계공업·조선공업·전자공업·철강공업·나프타분해공업·항공공업 등 6個 重要產業 중 航空工業을 除外한 5個 重要產業에 대한 100% 특별상각제도(機械·電子工業은 5% 投資稅額控除와 選擇)를 廢止하였다.

航空工業은 個別 育成法인 航空工業振興法이 工業發展法에 흡수·통합되지 않았으므로 航空工業은 防衛產業의 次元에서 사업용 資產에 대하여 100% 特別償却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重要產業에 대한 經過措置〉

1987. 1. 1현재 從前의 重要產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은 다음과 같은 經過措置가 適用된다.

- ○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償却을 適用받던 資產은 殘存耐用年數期間에 한하여 從前의 規定을 계속 適用함.
- ○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던 資產에 대한 1987. 1. 1 現在 未控除稅額 및 控除稅額에 대한 事後管理에 대하여는 從前의 規定을 계속 適用함.

다. 工業發展法에 의한 合理化施設 投資支援 新設(法 §71)

工業發展法에 의하면 競爭力強化가 必要하거나 過剩設備狀態가 長期間 계속될 우려가 있는 業種을 合理化 業種으로 指定하고 당해 業種의 合理化를 촉진하기 위해서 合理化 計劃을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바, 稅制側面에서는 당해 合理化 指定 業種이 合理化計劃에 따라 施設을 投資하는 경우 당해 施設에 대하여 特定設備로서 10% 投資稅額控除 또는 50% 一時償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경우 施設投資支援은 合理化 計劃上의 合理化期間내에 投資完了된 分에 한하여 適用된다. 投資稅額控除對象이 되는 合理化施設投資의 內容 및 投資期間은 다음과 같다.

合理化 施設(規則 별표 9)

合 理 化 業 種	對 象 設 備	投 資 期 間
○ 合金鐵製造業 (규소철, 망간철, 규소망간철제조업)	— 전기로(15,000KVA)	1989. 6.30까지
○ 建設重裝備製造業 (불도저, 로더, 자주식 크레인, 모타그레더, 굴삭기제조업)	— 新製品開發, 核心部品의 개발 및 제작 또는 品質向上을 위한 設備로서 ○ 品質 및 性能試驗·檢査設備 ○ 電算化 設備 등 5個 設備	1988. 6.30까지
○ 自動車製造業	— 主要部品 등의 製造하기 위한 設備로서 ○ 열처리설비 ○ 工程制御用 컴퓨터설비 등 8개 設備	1989. 6.30까지
○ 디젤엔진製造業 (300마력 이상으로서 자동차용은 제외)	— 엔진部品을 제조하기 위한 設備로서 ○ 特殊形象 가공설비 ○ 部品의 形象, 缺陷측정설비 등 5개 設備	1989. 6.30까지
○ 織物製造業	○ 近代化된 직기, 정경기, 가호기 등 6개 設備	1989. 6.30까지
○ 染色加工業	— 近代化된 염색기, 나염기, 폭출기 등 3개 設備	1988.12.31까지

13. 其 他

가. 讓渡所得의 減免範圍縮小

政府는 技術開發·中小企業支援 등을 中心으로 한 機能別 支援으로 減免制度를 개편하고 財產所得인 讓渡所得에 대한 減免은 段階的으로 縮小할 方針이다.

이번 租減法 改正에서는 讓渡所得에 대한 減免制度 中 租稅支援의 必要性이 相對的으로 적다고 認定되는 都市再開發事業者에 대한 減免과 實需要者에 대한 建築用 土地 讓渡에 대한 減免을 배제하여 課稅로 轉換하였다.

(1)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對象 縮小(法 §58)

(가) 槪 要

都市再開發事業에 대한 稅制減免 등으로 都市再開發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촉진한 점도 있으나 都市再開發事業者에 대한 減免은 개발사업자 특히, 大企業의 都心地所在 不動產의 선호를 유발하는 要因이 된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改正에서는 都市再開發事業 施行者가 建築物을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는 減免을 排除하여 課稅로 轉換하였다.

(나) 改正內容

從前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면 都市再開發 事業區域內의 토지소유자가 土地·建物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과 事業施行者가 都市再開發 事業計劃에 따라 建築한 建物 및 부수토지를 再開發事業에 관한 공사완료의 공고일 以後 1年 以內에 讓渡함으로써 發生하는 所得에 대하여 讓渡所得稅와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이번 改正에서는 都市再開發事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土地所有者가 土地 등을 事業施行者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從前과 같이 減免되도록 하였으나, 事業施行者가 第3者에게 讓渡하는 경우는 讓渡所得稅 등 免除規定을 삭제하여 課稅로 轉換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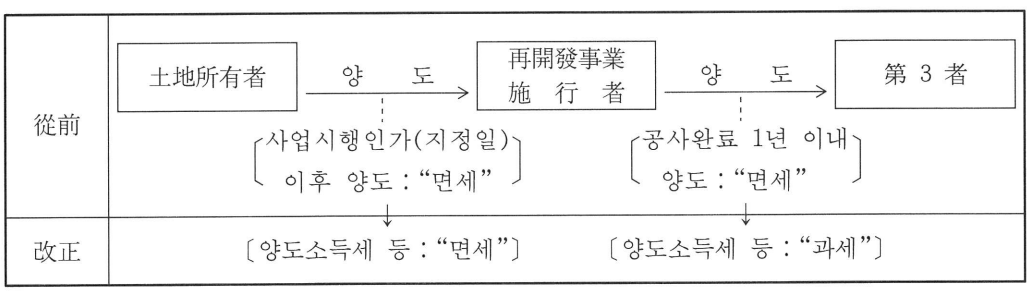

〈適 用 例〉

改正規定은 1987. 1. 1 이후 最初로 都市再開發法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의 認可 또는 指定을 받은 者가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1986. 12. 31 이전에 都市開發事業施行의 認可 또는 指定을 받은 者가 1987. 1. 1 이후 讓渡하는 分에 대하여는 從前法에 의하여 減免을 받게 되므로 現在 進行中인 都市再開發事業의 추진에는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2) 建築用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 廢止(法 §63, 令 §50, 令 §51)

(가) 改正內容

從前의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하면 建築用地로 토지를 讓渡하는 경우, 이를 取得한 實需要者가 3年 以內에 建築物을 建築하면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 상당액을 사후환급하거나 사전면제하여 實需要土地供給을 촉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建築用土地讓渡의 경우 토지양도자에게는 巨額의 讓渡所得이 발생함에도 減免하는 결과가 되어 讓渡所得稅의 實效性을 半減시키는 주요한 要因이 되고 있었으며 대형주택이나 대형건물의 신축을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資源의 效率的 配分面에서도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指摘되었다.

따라서 租稅減免規制法 改正에서는 同減免規定을 삭제하여 建築用地로 土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讓渡所得稅를 課稅하도록 하였다.

다만, 國民住宅建設用地로 土地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과 같이 讓渡所得稅 등이 100% 免除되거나 還給되므로 庶民用住宅供給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適 用 例〉

1987. 1. 1 이후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따라서 1986. 12. 31 이전에 建築用土地로 양도한 경우에는 讓渡日로부터 3年 以內에 建築物을 건축하면 從前의 規定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50%를 免除내지 還給을 받을 수 있다.

(3) 國民住宅建設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 免除(法 §62, 令 §50)

㈎ 改正內容

建築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等의 免除規定이 이번 改正에서 削除됨에 따라 同 規定을 準用하던 國民住宅建設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條項을 改正하였다.

改正된 內容의 대부분은 國民住宅建設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등의 還給權의 讓渡 등에 관한 規定으로서 從前의 建築用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면제규정에서 규정하였던 것을 그대로 條文整理하여 옮긴데 불과하나, 다만 讓渡所得稅 등이 免除되는 國民住宅建設用地의 범위가 從前과 달라진다.

從前에는 國民住宅이 定着된 面積이 10배 이내의 토지를 면제받을 수 있어서 최고 257坪까지 免除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改正에서 國民住宅延面積의 2배 이내의 토지로 縮小하여 최고 51.4坪까지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사실상 대지가 257坪이나 되는 住宅을 國民住宅으로 보아 減免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아번 改正에서 실질적인 庶民用 國民住宅建設用地에 대해서만 減免받도록 하여 現行 所得稅法上 讓渡所得稅의 優待稅率 30%를 適用받는 國民住宅에 부수되는 토지의 範圍와 이번에 新設되는 長期賃貸住宅 讓渡時 면제받는 賃貸住宅의 부수토지의 범위와 일치시켰다.

(나) 讓渡所得稅 등이 免除되는 國民住宅建設用地의 範圍 縮小

從 前		改 正
國內住宅이 定着된 面積의 10배 이내의 土地	→	國內住宅延面積의 2배 이내의 土地

나. 올림픽事業의 支援

(1)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 및 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가 서울올림픽大會 및 서울아시아경기大會의 수행을 위하여 選手 및 記者用으로 사용하는 共同住宅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特別附加稅 및 그 防衛稅를 免除하도록 하였다.(法 §67의5)

(2) 서울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서울아시아競技大會 組織委員會 및 서울장애자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하여 印紙稅를 免除토록 하였다.(法 §81)

(3) 財團法人 서울장애자올림픽大會 組織委員會를 公共法人에 추가하고, 障碍者올림픽사업에 支出하는 寄附金도 全額 損金算入하는 寄附金으로 處理토록 하였다.(別表 §49②5)

다. 減免稅額 등 追徵時 적용되는 利子相當加算率 下向調整(令 §7②, §65⑦)

技術開發準備金 등 各種 準備金 設定後 사용기간중 사용기준에 맞도록 사용하지 않은 金額을 益金에 算入하는 경우와 企業合理化 積立金 등 減免에 따른 條件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減免받은 稅額을 추징하는 경우 適用하는 利子 相當加算額의 加算率을 法人稅未納 加算稅率과 일치시킴으로써 下向調整하였다.

〈利子追徵 對象準備金〉

- 中小企業投資準備金
- 技術開發準備金
- 鑛業投資準備金
- 農漁村所得源開發 事業投資準備金
- 地方移轉準備金
- 法人本社地方移轉準備金

〈利子相當加算追徵率〉

從　　前	→	改　　正
일변6전		일변5전
(연 21.9%)		(연 18.25%)

〈事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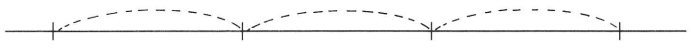

1987.1.1 △ 1988.1.1 施設投資 1000 ↓ 投資稅額控除適用 (1,000×10%=100)

1989.1.1 △ 1990.1.1 施設處分 ↓ 追　徵
- 減免額：100
- 加算稅：100×加算稅率(0.0005)×기간(일수)

라.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의 適用時限 終了(令 §57의2)

政府는 景氣調節을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財政政策을 수행할 수 있는 수단으로 企業의 施設投資를 誘引할 수 있는 裝置를 갖고 있다.

즉, 景氣가 침체되었을 때는 이의 치유책으로 企業의 投資額에 대해

- 投資稅額控除(3% 또는 10%限度)
- 또는 一時償却(30% 또는 50%限度)

┐
├ 의 方法으로
┘

稅制支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稅制支援對象이 되는 投資의 범위와 그 支援의 幅은 大統領令으로 委任하여 이를 彈力的으로 運營하도록 하고 있다. 同制度가 施行된 1982. 1. 1 이후 政府는 그동안의 景氣를 감안하여 數次에 걸쳐 臨時投資 稅額控除制度를 施行하여 왔으나, 지난해부터는 輸出을 주도로 景氣가 好轉되어 가는 추세에 있다고 판단되어 1986. 12. 31까지의 時限附로 운영되어오던 臨時投資 稅額控除制度의 適用時限을 時限대로 終了하였다.

따라서 1987. 1. 1 이후의 投資分부터는 臨時投資稅額控除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마. 公共法人의 範圍調整(法 別表)

다음의 法人을 法人稅가 5%로 최저한 課稅되는 등의 租稅支援을 받는 公共法人의 範圍에 追加하였다.

— 社會淨化運動組織育成法의 적용을 받는 財團法人 現代社會硏究所

— 海運業法에 設立된 韓國海運技術院
— 工業發展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生産性本部
— 消防法의 적용을 받는 韓國消防檢定公社
— 한국가스공사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가스公社
— 韓國專賣公社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專賣公社
— 에너지經濟硏究院法에 의하여 設立된 에너지經濟硏究院
— 韓國國防硏究院法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國防硏究院
— 法律救助法에 의하여 設立된 大韓法律救助公團

바. 市內버스 駐車場用 土地에 대한 讓渡稅免除規定 補完(令 §52)

自動車運輸事業法에 의한 事業改善命令日로부터 2年 이내에 종전에 사용하던 駐車場用 土地를 讓渡하고 移轉할 駐車場用土地 取得時에는 讓渡所得稅를 免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번 改正에서 事業改善命令日로부터 2年 이내에 移轉할 駐車場用土地를 取得하지 아니하는 경우 免除稅額을 추징하도록 하여 讓渡時限과 取得時限을 一致시켰다.

사. 株式併合에 따른 印紙稅 免除(法 §81 §13號)

商法改正에 따른 株式併合의 일환으로 종전 500원의 株券을 5,000원 이상의 새로운 株券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印紙稅를 免除하였다.

1987년

◉ 법　　률 : 1987. 5.30. 법　　률 제 3930호(근로자의 거주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시행일 : 1988. 1. 1.)
1987.11.28. 법　　률 제 3939호(시행일 : 1987.11.28.)
◉ 시 행 령 : 1987. 7. 1. 대통령령 제12212호(관광진흥법 시행령 부칙)
(시행일 : 1987. 7. 1.)
1987.11.24. 대통령령 제12279호(근로자의 거주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시행일 : 1988. 1. 1.)
1987.12.31. 대통령령 제12333호(시행일 : 1987.12.31.)
◉ 시행규칙 : 1987.12.31. 재무부령 제 1737호(시행일 : 1987.12.31.)

〈要　　約〉

○ 他地에서 생활하는 많은 근로자와 학생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安定된 住居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寄宿舍에 대한 지원을 대폭 擴大하여
- 寄宿舍建設用地로 土地를 讓渡하는 경우에 土地讓受者가 3年 이내에 당해 토지에 寄宿舍를 건축한 때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土地讓渡者에게 還給토록 하고
- 제조·광업·운수업을 영위하는 企業이 종업원을 위해 기숙사를 新築하거나 購入한 때에는 부지매입가액을 포함한 寄宿舍取得價額의 10%를 納付할 稅額에서 공제하도록 함과 아울러 寄宿舍建物에 대하여 100% 特別償却을 추가로 허용하며
- 文敎部長官 또는 勞動部長官 등의 추천을 받아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해 전업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所得稅·法人稅 및 그 防衛稅를 免除하도록 하였음.

○ 住宅賃貸事業의 活性化를 통해 庶民의 住居生活이 보다 安定될 수 있도록 住宅賃貸事業者가 임대에 供하는 國民住宅에 대하여 100%의 特別償却을 허용하였음.

○ 「勞動者의 住居安定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새로이 시행되는 勞動者의 長期住宅資金償還에 따른 勤勞所得稅의 減免分에 대하여는 防衛稅로 免除토록 함으로써 勤勞者에게 적용되는 재형저축세액공제 등의 各種 勤勞所得稅額控除制度와 衡平을 이루도록 하였음.

○ 個人企業이 보다 발전가능성이 있는 法人企業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인기업의 法人轉換 및 기업간의 統合에 대한 지원제도를 擴大하여

- 個人企業이 事業讓受渡方式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때에도 事業用資産의 양도에 따른 讓渡所得稅全額 및 新設法人이 양수한 事業用資産을 취득·등기함에 따른 取得稅·登錄稅의 50%를 면제하도록 하고
- 投資稅額 未控除殘額이 있는 개인기업이 이월공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統合 또는 法人轉換時 新設(存續)法人이 당해 미공제세액을 이월공제잔여기간내에 承繼하여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며
- 개인인 創業中小企業 또는 農工地區入住企業이 감면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統合 또는 法人轉換時 新設(存續)法人이 잔존감면기간 동안 所得稅·法人稅·財産稅를 承繼하여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 의료시설이 부족한 農漁村地域의 주민들이 보다 良質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평균 의료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의료취약지역에 病院級 이상의 의료기관 新設을 적극 지원하였는바

- 의료취약지역에 新設되는 病院 또는 綜合病院에 대하여는 所得稅·法人稅를 신설연도와 그후 3년간은 100%, 그후 2년간은 50%를 免除토록 하고
- 기존의 病院 또는 綜合病院이 의료취약지역에 分院을 설치하는 때에는 分院所得에 대하여 5年間 감면하는 외에 分院의 시설투자금액의 10%(외산기자재 사용시는 8%)를 本院이 納付할 所得稅·法人稅에서 控除토록 하였음.

○ 企業公開를 촉진하여 資本市場이 건전하게 育成·發展될 수 있도록 企業을 公開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매물가가 25% 이상 增加하지 않은 경우에도 매월1일을 재평가기준일로 하여 資産再評價法에 의한 資産再評價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와같이 企業公開를 전제로 한 資産再評價特例가 허용됨에 따라 1987, 1988년의 기간중 企業公開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공개를 지연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1987, 1988년중에 공개하였거나 공개하는 기업은 1989년말까지 동일한 방법으로 再評價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從業員持株制의 실시를 장려하기 위하여 從業員持株制를 실시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增資所得控除를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높은 控除率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增資額 중 종업원증자분이 20% 이상인 경우에는 增資所得控除 對象金額 全額에 대하여 18%(上場·中小法人은 20%)의 높은 控除率을 적용함.
- 增資額 중 종업원증자분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 중 從業員增資額에 대하여만 18%(上場·中小法人은 20%)의 높은 控除率을 적용하고 나머지 증자소득공제 대상금액에 대하여는 法人稅法上의 증자소득공제율(一般法人은 15%, 上場·中小法人은 18%)을 적용함.

○ 우리사주취득시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株式取得限度額을 引上하여 월급여 60만원 以下인 者는 연간급여액의 50%, 월급여 60만원 超過者는 연간급여액의 30%로 함.

○ 私立學校의 財政難이 완화될 수 있도록 기업의 私立學校에 대한 寄附金의 損金算入限度額을 인상하여 私立學校에 대한 기부금은 全額을 損金에 算入토록 함.

○ 傳統家業을 계승하는 미풍양속이 확산될 수 있도록 5年 이상 계속한 家業을 부모 등으로부터 相續받은 경우에는 相續받은 家業用財産價額의 20%를 차감하여 相續稅課稅價額을 계산토록 함.

○ 소프트웨어개발산업을 育成하기 위하여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者에 대한 技術開發支援制度를 확충·보완하였는바

-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人件費 및 프로그램의 維持·補修·開發費用을 技術開發準備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프로그램개발업을 技術集約的産業에 추가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設定限度를 擴大하는 한편
- 學士 以上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1년 이상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人件費를 技術人力開發稅額 控除對象費用에 추가함.

○ 非營利法人硏究機關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外國人技術者에 대하여 5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 國家別 貿易均衡을 도모하기 위해 수입초과국가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輸出損失準備金 및 海外市場開拓準備金의 거치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10%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特定設備의 범위 중 産業災害豫防施設에 국소배기장치 등 3종6품목을 추가하고,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에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金型自動交換裝置를 추가하였음.

○ 국산의료기기제조업을 지원하기 위해

- 의료기기제조업을 技術集約的産業에 추가하여 技術開發準備金을 더 많이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의료기기 구입시 一時償却이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산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一時償却을 허용함.

○ 1987. 6. 1부터 우체국에서 취급하고 있는 가계우대정기적금을 稅金優待 少額家計貯蓄의 범위에 추가하여 同預金의 利子에 대하여는 所得稅만 5%의 저율로 과세하도록 하였음.

○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未備點을 補完함.

〈改正內容〉

1. 國民住居生活 安定支援

가. 學生 및 勤勞者의 寄宿舍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

현재 많은 學生과 勤勞者들이 自身의 本家를 떠나 他家에서 하숙·자취 등을 하고 있는바, 이들의 住居費用을 줄이고 보다 安定的으로 學業 또는 勤勞에 전념할 수 있도록 寄宿舍에 대한 支援制度를 대폭 擴充하여

첫째, 內國人이 寄宿舍의 建設用地로 土地를 讓渡하고 이를 취득한 者가 一定期限內에 寄宿舍를 建築한 때에는 당해 土地를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그 土地를 讓渡한 內國人에게 還給토록 하고,

둘째, 企業이 그 從業員을 위하여 寄宿舍를 建築하거나 購入한 경우에는 寄宿舍 取得價額의 10%를 稅額控除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寄宿舍 建物에 대하여 100% 特別償却을 할 수 있게 하며,

셋째, 寄宿舍 運營事業者에 대하여는 寄宿舍 運營事業에서 發生하는 所得에 대한 所得稅·法人稅 및 그 防衛稅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1) 寄宿舍建築用地로 土地讓渡時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 免除(法 §72의4)

內國人이 寄宿舍建設用地로 土地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一定期限內에 당해토지에 기숙사를 건축하면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還給토록 함으로써 기숙사를 짓고자 하는 者가 보다 용이하게 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가) 寄宿舍의 範圍

이 경우에 寄宿舍라 함은 ①유치원·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 및 大學 等이 포함되는 敎育法 第81條에 규정된 學校(技能大學 包含)가 所屬學生을 위하여 建設하는 寄宿舍 ②製造業·鑛業·運輸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이 所屬勤勞者를 위하여 건설하는 寄宿舍 ③文敎部長官 또는 文敎部長官이 指定하는 者의 推薦을 받아 學生을 위하여 寄宿舍를 운영하는 者가 건설하는 寄宿舍 및 勞動部長官 또는 勞動部長官이 指定하는 者의 推薦을 받아 勤勞者를 위하여 寄宿舍를 運營하는 者가 건설하는 寄宿舍를 말한다.

(나) 寄宿舍 建築用地

寄宿舍 建築用地라 함은 寄宿舍 建設用地로 讓渡하는 裸垈地로서 寄宿舍 建物延面積의 2倍 以內의 土地를 말하며 所得稅法 第70條第7項에 규정하는 未

登記 讓渡土地는 除外한다.

寄宿舍를 건설함에 있어서 寄宿舍와 그 以外의 建物을 함께 건설하는 경우 還給稅額은 다음 算式에 의하여 計算한 金額으로 한다.

還給金額＝當該 讓渡土地의 讓渡差益에 대한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算出稅額 × $\frac{\text{寄宿舍建物 延面積}}{\text{寄宿舍建物延面積＋그 以外의 建物의 延面積}}$

이 경우 寄宿舍建物 延面積에는 寄宿舍運營上 필요한 福祉厚生施設 等의 附帶施設의 面積이 포함된다.

㈐ 還給要件 및 節次

土地를 양도하면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일단 納付한 後 讓渡日로부터 3年 以內에 寄宿舍가 竣工되는 境遇에는 이미 納付한 稅額을 양도자에게 還給토록 하는 事後還給制度를 채택하였으며 還給節次는 다음과 같다.

① 寄宿舍가 竣工된 날로부터 3月 이내에 寄宿舍建設用 土地稅額還給 申請書를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提出(첨부서류)

- ○ 寄宿舍가 竣工된 사실을 證明하는 書類
- ○ 土地에 대한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를 納付한 사실을 證明하는 書類
- ○ 文敎部長官 等 또는 勞動部長官의 推薦을 받은 寄宿舍 運營事業者인 경우에는 그 推薦書類
- ○ 還給받을 權利를 讓渡받은 者인 경우에는 寄宿舍建設用 土地稅額 還給權讓渡書

② 還給申請을 받은 稅務署長은 寄宿舍建設用 土地稅額 還給金을 결정하고 그 決定日로부터 30日 以內에 還給

③ 還給申請은 還給申請當時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하도록 하였음.

종전의 국민주택건설용지 환급신청의 경우에는 土地를 讓渡한 者가 納稅地(住所地 또는 本店所在地)를 이전하였을 경우에는 移轉前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讓渡所得稅를 결정한 稅務署長)에게 申請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금번 개정시 국민주택건설용지 환급신청은 물론 기숙사건설용지 환급신청의 경우에도 還給申請當時의 納稅地 管轄稅務署長에게 申請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納稅者의 편의를 도모하였음.

(2) 企業의 寄宿舍投資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制度 擴充 및 寄宿舍建物에 대한 100% 特別償却 허용(法 §72의5)

製造業·鑛業·運輸業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從業員을 위해 寄宿舍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는 寄宿舍取得價額의 10%를 納付할 所得稅·法人稅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기숙사건물에 대하여는 추가로 100%의 特別償却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종업원 福祉向上을 위한 기숙사 투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擴大하였다.

(가) 製造業·鑛業·運輸業을 영위하는 內國人에 대하여 適用

종전에는 제조업·광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한하여 종업원을 위한 寄宿舍投資에 대해 投資稅額控除制度를 적용하고 있었으나, 適用對象企業의 범위를 확대하여 製造·鑛業外에 運輸業을 추가하였으며 中小企業은 물론 從業員數가 많아 寄宿舍施設이 더욱 필요한 大企業도 投資稅額控除를 適用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寄宿舍 取得價額

10% 稅額控除되는 寄宿舍 取得金額도 종전에는 寄宿舍建物(構築物 포함)에 한정하였으나 이를 擴大하여 寄宿舍建物外에 寄宿舍建物 延面積의 2倍 以內의 土地(신규로 購入하는 분에 한함. 즉, 企業이 종래부터 所有하고 있는 土地의 價額은 제외함)를 포함토록 하였다. 다만, 寄宿舍를 新築함에 있어서 外產의 資材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社員用 賃貸住宅에 대한 投資稅額控除의 경우와 같이 稅額控除를 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또한 寄宿舍 投資에 대한 稅制支援制度가 脫稅手段으로 惡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寄宿舍에 대해 投資稅額控除를 받은 자가 寄宿舍의 竣工日 또는 購入日로부터 5年 以內의 당해 寄宿舍를 從業員用 寄宿舍外의 다른 用途로 轉用한 경우에는 減免稅額을 追徵하도록 事後管理規定을 두었다.

〈投資稅額控除의 例〉

寄宿舍 取得價額 10億(寄宿舍敷地 4億, 建物價額 6億)인 경우 投資稅額控除額

종 전 : 6,000萬원(建物價額 6億×10%)을 法人稅 또는 所得稅 納付稅額에서 공제받음.

개정후 : 1億(10億×10%)을 法人稅 또는 所得稅 納付稅額에서 공제받음.

(다) 寄宿舍建物에 대해 100% 特別償却 추가 허용

투자세액공제와는 별도로 寄宿舍建物에 대하여는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의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金額을 特別減價償却費로 하여 각 과세연도에 損金算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寄宿舍建物에 對하여는 每年 一般減價償却額의 2倍를 減價償却할 수 있게 되어 減價償却期間이 半으로 단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100% 特別償却의 例〉

○ 寄宿舍 建物價額 6億 • 철골조의 경우 稅法上 耐用年數는 45年임

○ 매년 減價償却費로 計上할 수 있는 金額

• 종 전 : 1,380萬원

• 개정후 : 2,760萬원(1,380+1,380萬원)

(3) 專業的인 寄宿舍運營事業者에 대한 減免(法 §72의6)

專業的인 寄宿舍運營事業者에 대하여는 寄宿舍運營事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所得稅·法人稅 및 그 防衛稅를 免除하도록 함으로써 勤勞者와 學生의 住居費用이 그만큼 輕減될 수 있도록 하였다.

專業的인 寄宿舍運營事業者라 함은 ① 文敎部長官 또는 文敎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의 推薦을 받아 學生을 위하여 寄宿舍를 運營하는 者 ② 勞動部長官 또는 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者의 推薦을 받아 勤勞者를 위하여 寄宿舍를 運營하는 者를 말하는 바, 個人이나 營利法人은 물론 宗敎團體, 鄕友會, 宗親會 等이 운영하는 寄宿舍 等을 예로 들 수 있다.

나. 住宅賃貸事業者의 賃貸事業用 國民住宅에 대한 特別減價償却 허용(法 §72의3)

無住宅者가 보다 安定的인 住居生活을 영위할 수 있도록 住宅賃貸事業에 대한 支援을 강화하였는 바, 住宅賃貸事業者가 당해 事業에 사용하는 國民住宅에 대하여는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의 100分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별감가상각비로 하여 각 課稅年度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 이를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住宅賃貸事業者

長期賃貸住宅 讓渡時 讓渡所得稅 및 特別附加稅가 면제되는 住宅賃貸事業者와 마찬가지로 個人인 경우는 國民住宅規模 以下의 賃貸住宅을 1戶 以上, 法人인 경우에는 國民住宅規模 以下의 賃貸住宅을 5戶 以上 賃貸하는 者를 말한다.

(2) 國民住宅

專用面積이 85m²(約 25.7坪) 以下인 住宅을 말하는 바, 長期賃貸住宅에 대한 讓渡稅免除가 적용되는 國民住宅과는 달리 5년 이상 임대에 공하지 않은 國民住宅에 대하여도 特別償却이 허용된다.

다. 勤勞者의 長期住宅資金 償還에 따른 勤勞所得稅 減免分에 대해 防衛稅도 免除 (法 §7⑦)

종 전	개 정
〈新 設〉	— 住居安定法 ○ 勤勞者가 長期住宅資金을 貸出받아 國民住宅 規模 以下의 住宅을 取得·賃借 또는 개량한 후 이를 償還할 경우 償還額의 10%를 納付할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에서 控除함. — 租減法 ○ 住居安定法에 의한 住宅資金 償還稅額 控除에 대한 防衛稅도 免除함.

勤勞者의 住宅購買力 向上을 支援하여 勤勞者가 내집마련이 가능토록 뒷받침하기 위하여 勤勞者의 住居安定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法律(이하 "住居安定法"이라 함)이 制定·公布(1987.5.30, 法律 第3930號)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바, 同法에서는 住宅貯蓄利子에 대한 非課稅, 住宅資金償還額에 대한 稅額控除, 事業主의 住宅補助金支援에 대한 非課稅, 賃貸住宅事業者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 住宅資金償還額에 대한 稅額控除에 대하여는 그 防衛稅도 면제하도록 租減法에서 규정하였다.

住宅資金償還稅額 控除制度란 勤勞者가 長期住宅資金을 대출받아 國民住宅 規模 以下의 주택을 取得·賃借 또는 개량한 후 이를 償還할 경우 償還額의 10%를 납부할 勤勞所得稅 算出稅額에서 공제하여 주는 제도를 말하는 바,

租稅減免規制法에서 防衛稅까지 면제하도록 한 것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각종 稅額控除制度와 衡平을 기하기 위한 것이며, 防衛稅法 第4條第1項第2號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防衛稅의 課稅標準은 所得稅算出稅額에서 所得稅法에 의한 稅額控除 및 租減法에 의한 勤勞者證券貯蓄 稅額控除額을 차감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租減法에서 住宅資金償還 稅額控除를 所得稅法에 의한 稅額控除로 보도록 규정함으로써 防衛稅도 非課稅되도록 한 것이다.

2. 個人企業의 法人轉換 支援

가. 事業讓受渡方式에 의한 法人轉換時에도 讓渡所得稅 및 取得稅·登錄稅 감면(法 §45, §84③, §85③)

종 전	개 정
製造業·鑛業·建設業·運輸業·水產業을 영위하는 個人事業者가 사업장별로 당해사업에 1年 이상 사용한 사업용자산을 現物出資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讓渡所得稅 全額 및 新設法人이 現物出資받은 부동산을 取得·登記함에 따른 取得稅·登錄稅 全額을 면제함.	事業讓受渡方式에 의하여 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에도 讓渡所得稅 全額 및 取得稅·登錄稅의 50%를 면제함.

첫째, 個人企業이 보다 용이하게 法人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個人企業이 現物出資方式外에 事業讓受渡方式에 의하여 法人으로 전환하는 때에도 事業用資產의 讓渡에 따라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讓渡所得稅 金額과 新設法人이 讓受한 事業用資產을 取得·登記함에 따른 取得稅·登錄稅의 50%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둘째, 租減法 第44條에 규정된 統合에 의하여 存續하거나 新設되는 法人 또는 第45條에 규정하는 法人轉換에 따라 신설되는 法人에 대하여는 統合 또는 轉換전의 個人企業 당시의 投資稅額 未控除殘額을 移越控除 殘餘期間內에 承繼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함과 아울러 個人企業 당시에 적용받던 創業中小企業 또는 農工地區入住企業에 대한 所得稅減免 및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財產稅減免을 殘餘減免期間 동안은 承繼하여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事業讓受渡方法

讓渡所得稅 등이 감면되는 事業讓受渡方法이라 함은 法人設立日로부터 소급하여 1年 以上 個人事業을 영위하던 者가 발기인이 되어 個人企業의 1年間 平均純資產價額 以上을 出資하여 法人을 설립하고, 法人設立日로부터 3月 以內에 당해 法人에게 個人企業의 모든 權利와 義務를 포괄적으로 讓渡하는 것을 말한다. 事業讓受渡方式의 要件을 이와같이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事業讓受渡方式에 의한 法人轉換이 現物出資方式에 의한 法人轉換에 비해 그 節次가 훨씬 간편한 까닭에 이를 이용하여 讓渡稅 등을 免脫하는 事例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 免除 對象資產

事業讓受渡의 對象이 되는 資產은 個人企業을 包括讓受渡함에 따른 모든 事業用資產이지만, 讓渡所得稅 등이 감면되는 資產은 現物出資의 경우와 같이 個人

事業者가 당해사업에 1年 以上 사용한 事業用資産에 한한다.

(3) 減免比率

讓渡所得稅는 現物出資의 경우와 같이 全額을 면제하도록 하였으나, 取得稅·登錄稅는 地方財政事情을 고려하여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取得稅·登錄稅 減免水準과 같이 50%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현재 大都市內에서 신설되는 工場의 경우에는 取得·登錄稅가 5배로 重課되고 있는 바,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取得稅·登錄稅가 2.5배로 重課되는 결과가 된다.

(4) 追徵規定 신설

종전에는 事後管理規定이 없어 法人轉換後 廢業하거나 現物出資資産을 처분하더라도 免除稅額을 추징할 수 없는 問題點이 있었으나, 이번 改正時 事後管理規定을 신설하여 法人設立後 2年 이내에 當該事業을 廢業하거나 現物出資資産 또는 事業讓受渡資産을 처분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稅額을 法人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도록 補完하였다.

〈追徵稅額의 計算〉

○ 法人設立日로부터 2年 以內에 廢業하는 경우 → 免除받은 稅額全額

○ 法人設立日로부터 2年 이내에 現物出資資産 또는 事業讓受渡資産을 처분하는 경우 → 免除稅額 × $\frac{\text{당해 處分價額}}{\text{免除받은 事業用資産價額}}$

다만,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사업을 廢業하거나 사업용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추징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① 租減法 第42條(大都市內 工場地方移轉에 따른 法人稅 等 면제) 또는 同法 第45條의2(中小企業 事業轉換에 따른 讓渡所得稅 等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로서 工場을 地方移轉하거나 事業轉換하기 위하여 당해事業을 廢業하거나 또는 事業用資産을 처분하는 경우

② 法人轉換後 事業用資産이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의 규정에 의하여 收用된 경우

③ 法令에 의하여 부득이 法人의 事業을 폐업하거나 事業用資産을 처분하는 경우

나. 統合 또는 法人轉換時 投資稅額 未控除殘額의 移越控除承繼 및 創業中小企業·農工地區 入住企業의 減免承繼 허용(法 §44④, ⑤, §45⑤)

個人企業의 法人轉換에 따른 讓渡所得稅 및 取得稅·登錄稅 減免制度를 擴大함과 아울러 統合 또는 法人轉換에 따라 신설(존속)되는 法人에 대하여는 個人企業 당시에 적용받던 減免惠澤 中 일부를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추가로 지원하였는 바, 첫째로, 投資稅額 未控除殘額이 있는 個人企業이 이월공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統合 또는 法人轉換함에 따라 신설(존속)되는 法人에 대하여는 당해 投資稅額 未控除殘額을 통합

또는 법인전환 당시의 移越控除 殘餘期間內에 종료하는 각 課稅年度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둘째, 個人인 創業中小企業 또는 農工地區 入住企業이 減免期間이 만료되기 전에 統合 또는 法人轉換함에 따라 신설(존속)되는 法人에 대하여는 당해 創業中小企業 등에 적용되는 감면을 통합 또는 法人轉換 당시의 殘存減免期間內에 종료하는 課稅年度까지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 統合 또는 法人轉換

여기서 統合 또는 法人轉換이라 함은 租減法 第44條의 규정에 의한 合併奬勵業種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間의 統合 및 同法 第45條의 규정에 의한 現物出資 또는 事業讓受渡에 의한 法人轉換을 말한다.

양자는 個人企業의 法人에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支援制度라는 점에서는 같으나 조감법 제45조에 규정하는 法人轉換은 하나의 個人企業이 하나의 법인기업으로는 바뀌는 것이며, 同法 제44조에 규정하는 統合은 複數의 개인기업이 합쳐서 하나의 法人企業으로 되거나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이 합쳐서 하나의 법인기업으로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投資稅額 未控除殘額

投資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稅額 中 租稅支援의 綜合限度(算出稅額의 30%를 한도로 稅額控除)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한 稅額은 4年間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바, 이와 같이 이월된 공제가능세액 중 統合 또는 轉換시점에서 아직 控除받지 못한 金額을 말한다.

(3) 移越控除 殘餘期間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4年의 期間中 통합 또는 법인전환시점에서 미경과된 기간을 말하며 당해 미경과기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말까지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4) 創業中小企業·農工地區 入住企業 減免承繼

所得稅減免은 설립연도와 그후 3년간은 100%, 그후 2년간은 50%인바, 統合 또는 法人轉換 시점에서 미경과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감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동일한 減免比率(100% 또는 50%)로 法人이 감면받을 수 있다.

財產稅減免의 承繼는 創業中小企業에만 적용되는 바,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재산세는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를 감면토록 되어 있으므로 5년의 기간중 統合 또는 法人轉換 당시 미경과된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납기까지 法人이 승계하여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財產稅의 감면승계는 통합 또는 법인전환 이전에 취득한 事業用 財產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3. 農漁村醫療受惠 基盤擴大 支援

전 의료시설의 90%(1987. 6 현재 16,462개 중 14,483개) 정도가 市地域에 집중되어 있어 農漁村地域인 郡地域에서는 양질의 의료수혜기회가 적을 뿐만 아니라 1988年부터 실시되는 전국민의료보험제도의 원활한 실시를 위해서도 현재 병원시설 등이 취약한 農漁村地域에 종합병원 또는 병원급의료시설의 유치가 시급한 당면 과제로 되어 있는바, 稅制面에서도 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醫療脆弱地域에 신설되는 病院 또는 綜合病院에 대하여는 所得稅 및 法人稅를 개설연도와 그후 3年간은 100%, 그후 2年간은 50%를 면제하고, 綜合病院 등이 醫療脆弱地域 안에서 分院을 開設하는 경우 分院所得에 대해 5年간 감면하는 외에 그 施設投資金額의 10%(外產機資材의 경우는 8%)에 상당하는 金額을 本院이 納付할 稅金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醫療脆弱地域에 新設되는 病院 또는 綜合病院에 대한 감면(法 §40의5①)

종 전	개 정
(新 設)	의료취약지역안에서 病院 또는 綜合病院을 開設하여 의료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병원 또는 종합병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개설연도와 그후 3년간은 100%, 그후 2년간은 50%를 면제함.

(1) 醫療脆弱地域

醫療脆弱地域이라 함은 민간의료기관수나 병상수가 우리나라 郡地域 全體平均(의료기관수 12개, 병상수 116개)보다 적은 지역으로서 租減法施行令 別表7의2에 규정하는 다음의 지역을 말한다.

구 분	지 역
1. 경 기 도	가평군
2. 강 원 도	홍천군·횡성군·양구군
3. 충 청 북 도	단양군·진천군
4. 충 청 남 도	금산군·서천군
5. 전 라 북 도	진안군·고창군·부안군
6. 전 라 남 도	광양군·화순군·진도군·함평군·영암군·담양군·장흥군
7. 경 상 북 도	성주군·봉화군·고령군·청도군·예천군·영양군
8. 경 상 남 도	남해군·사천군·고성군

(2) 病院 또는 綜合病院

여기서 病院 또는 綜合病院이라 함은 의료법에 규정된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병원에는 치과병원과 한방병원도 포함되며, "病院" "齒科病院" 또는 "韓方病院"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그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2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사 및 치과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입원환자 8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진료과목이 적어도 內科·一般外科·小兒科·産婦人科·放射線科·痲醉科·病理科 및 齒科가 설치되어 있고 각과마다 필요한 전문의를 갖춘 의료기관을 말한다.

(3) 開設日

開設日이라 함은 종합병원 등을 開院하여 의료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① 醫療法에 의한 醫療法人을 설립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法人設立登記日

② 醫療法에 의한 醫療法人이 分事務所를 설치하여 개설하는 경우에는 分事務所設置登記日

③ 個人이 개설하는 경우에는 事業者登錄證 交付日

④ ①~③외의 경우에는 事業者登錄證 再交付日

(4) 減免方法

創業中小企業과 같이 開設日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3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 全額을, 그다음 2년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50%에 상당하는 稅額을 감면한다.

(5) 減免申請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조감법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인 稅額減免申請書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醫療脆弱地域에 分院設置時 投資稅額控除 허용**(法 §40의5③)

종 전	개 정
(新 設)	病院 또는 綜合病院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의료취약지역안에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기 위하여 施設投資를 한 때에는 당해 施設投資金額의 10%(외산의 경우는 8%)에 상당하는 금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도록 함.

(1) 投資稅額 控除對象施設

綜合病院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病院建物은 물론 醫療機器 및 병상·구급차 등의 醫療裝備가 필요하겠으나, 投資稅額 控除對象이 되는 시설은 病院建物 및 당해 醫療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產 中 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1의 제6호(8)에 규정된 다음의 醫療機器에 한한다.

① 뢴트겐, 기타 전자관을 사용하는 기기

② 소독살균용 또는 수술기기

③ 調劑機器

④ 치과진료용 유니트

⑤ 光學檢査機器 등

(2) 稅額控除率

病院 또는 綜合病院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醫療脆弱地域에 分院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分院에서 발생하는 所得에 대해 醫療脆弱地域 新設病院으로서 5年間 감면하는 것은 물론 分院을 설치하는 病院 또는 綜合病院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算出稅額에서 施設投資額의 10%(외산인 경우는 8%)를 공제하도록 하였다.

租稅減免規制法上 投資稅額控除는 일반적으로 국산기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10%, 외산기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3%의 控除率을 적용하고 있으나, 法人本社地方移轉, 社員用賃貸住宅 및 企業寄宿舍投資 稅額控除時에는 국산에 대하여만 10%의 控除率을 적용하고 있으며 硏究試驗用 施設投資에 대하여는 아직 외국산의 사용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 외산기자재 사용분에 대하여도 8%의 높은 控除率은 적용하고 있는바, 醫療脆弱地域 分院施設에 대하여도 硏究試驗用施設과 마찬가지로 외산에 대하여 8%, 국산의 경우는 10%의 控除率을 적용토록 하였다.

(3) 減免申請

投資를 개시하거나 완료할 때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의 서류를 所管稅務署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投資를 開始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投資計劃書

② 投資를 完了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投資完了報告書와 稅額控除申請書

4. 資本市場育成 支援(法 §56의2)

資產再評價法에 의하여 재평가대상자산의 取得日(재평가를 한 자산은 직전재평가일)

로부터 都賣物價가 25% 이상 上昇한 경우에 한하여 課稅年度 開始日을 기준으로 資產再評價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우량주식의 공급확대를 통해 資本市場이 건전하게 育成發展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업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資產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 要件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企業公開를 전제로 資產再評價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再評價要件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도 資產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로 봄

일반적으로 資產再評價法에 의한 再評價要件이 구비되지 못한 경우, 즉 都賣物價가 25% 이상 상승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재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任意再評價로 간주하여 稅務計算上 재평가 효력이 부인되거나 再評價差額을 益金에 가산하여 20% 내지 30%의 높은 세율(法人의 경우)로 과세되므로, 再評價差額에 대해 3%의 再評價稅만 과세되는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의 경우에 비해 현저한 不利益을 입게 된다. 그러나 企業公開를 전제로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도매물가가 25% 이상 상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再評價를 허용하고, 이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간주하여 재평가차액에 대해 3%의 再評價稅만 납부하도록 特例를 허용한 것이다. 또한 법인의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개시일을 기준으로 재평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기업공개를 전제로 再評價를 實施하는 경우에는 매월 1일을 기준으로 再評價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게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再評價後 2年 以內에 企業公開를 完了해야 함

企業公開를 전제로 재평가를 한 法人이 재평가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업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재평가를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않고, 任意再評價로 보아 재평가차액을 益金에 算入하여 법인세율로 과세하게 된다.

다. 1987·1988年中 公開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先公開後 再評價 허용

이와 같이 企業公開를 전제로 한 再評價特例制度가 도입됨에 따라 최근에 이미 企業을 公開키로 결정하고 소정의 절차를 進行시키고 있는 기업들이 재평가실시를 이유로 企業公開를 遲延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하여, 1987.1.1부터 1988.12.31까지의 기간중에 공개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먼저 企業을 公開한 후에도 1989.12.31까지 재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同一하게 再評價特例를 허용하였다.

5. 從業員持株制 活性化 支援

가. 從業員持株制 實施企業에 대한 增資所得控除 優待

기업이 차입보다 自己資本에 의하여 資金을 調達함으로써 財務構造를 改善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비생산적인 용도에 사용된 借入金의 支給利子를 損金不算入하는 한편 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增資金額의 一定率을 과세소득에서 공제하는 增資所得控除制度를 시행하고 있는 바, 法人이 內國法人外의 者로부터 金錢出資를 받아 增資하는 경우 上場法人이나 中小法人은 당해 증자분의 18%, 一般法人은 15%를 증자등기일로부터 3년간 법인소득에서 공제하고 있다.

이번 조세감면규제법개정에서는 기업이 솔선하여 從業員持株制度를 活性化해 나가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종업원지주제를 실시하는 企業에 대한 稅制支援을 擴大하였는 바 從業員持株制를 실시하는 企業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적용함에 있어 上場法人 또는 中小法人인 경우에는 현행 增資所得控除率 18%를 20%로, 一般法人인 경우에는 15%를 18%로 상향 조정함과 동시에 企業이 增資額의 20% 이상을 從業員에게 配定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높은 控除率이 적용되는 對象金額에 差等을 두었는바,

① 우리社株組合員의 出資金額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 以上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 중 내국법인외의 자로부터 出資받은 金額全額

② 우리社株組合員의 出資金額이 자본증가액의 100분의 20 未滿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 중 우리社株組合員의 出資金額에 대하여만 높은 控除率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종 전	개 정
內國法人이 내국법인 이외의 자(개인이나 외국법인)로부터 金錢出資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경우에는 당해 資本增加額의 15%(상장, 중소법인의 경우는 18%)를 3년간 課稅所得에서 공제함.	從業員持株制를 실시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增資所得控除를 적용함에 있어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資本增加額의 20% 以上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 중 내국법인 이외의 자로부터 출자받은 금액 全額에 대하여 18%(상장, 중소법인은 20%) ○ 우리사주조합원의 출자금액이 資本增加額의 20% 未滿인 경우에는 자본증가액 중 우리社株組合員의 出資金額에 대하여만 18%(상장, 중소법인은 20%)의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

〈事 例〉

上場法人이 3億원 增資時(종업원증자분 1억원)의 減免額

종 전	개 정
○ 증자소득공제 : 3억×18%=5천4백만 ○ 법인세감 : 5천4백만×30%×3년= 4천850만	○ 증자소득공제 : 3억×20%=6천만 ○ 법인세감 : 6천만원×30%×3년= 5천4백만 * 감면증가액 : 540만원

나. 우리社株取得時 15% 稅額控除되는 株式取得限度額 引上 등(令 §4의2②, ⑧)

우리사주취득시 15%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는 株式取得限度를 확대하여, 종전에는 월급여 40만원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월급여 40만원 이하자에게는 年間給與 合計額의 50%까지, 월급여 40만원 초과자에게는 연간급여액의 30%까지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던 것을 월급여 60만원 근로자를 基準으로 하여 月給與 60萬원 이하 자에 대하여는 年間給與額의 50%, 60萬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年間給與額의 30%를 한도로 취득하는 주식에 대하여 15%稅額控除를 허용토록 하였다.

우리社株 取得時 稅額控除되는 株式取得限度額

종 전	개 정
○ 월급여 40만원 以下者 : 연간 급여액의 50% ○ 월급여 40만원 超過者 : 연간 급여액의 30%	○ 월급여 60만원 以下者 : 연간 급여액의 50% ○ 월급여 60만원 超過者 : 연간 급여액의 30%

〈事 例〉

월정급여액 60만원 勤勞者의 稅負擔輕減 比較(상여금 400%가정)

	종 전	개 정	증 가 액
연간급여합계액 (상여금포함)	960만	960만	
株式取得限度額	288만 (960만×30%)	480만 (960만×50%)	+192만
稅額控除額	43.2만	72만	+28.8만

또한 종전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을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預託한 후 예탁일로부터 1년 이내에 引出하는 경우에는 控除받은 稅額을 追徵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원이 退職으로 인하여 인출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인출하더라도 공제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補完하였다.

6. 私學支援(法 §49②)

우리나라 敎育機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私立學校는 國·公立學校와 마찬가지로 교육을 통해 많은 人的資源을 양성함으로써 國家發展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나 그 運營費의 대부분이 學生들의 納付金으로 充當되고 있어 재정형편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번 稅法 개정시 企業이 私立學校에 施設費, 敎育費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國·公立學校에 대한 寄附金과 같이 全額을 損金에 算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私學財政이 보다 충실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종 전	개 정
기업이 私立學校에 기부하는 기부금은 指定寄附金限度內에서 損金認定함. 다만, 지정기부금한도 초과액 중 實業系學校의 新·增設을 위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 한도내에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企業이 私立學校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는 全額 損金算入 허용

여기서 私立學校라 함은 敎育法 第81條에 규정된 다음의 學校를 말한다.

- ○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 ○ 교육대학, 사범대학
- ○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개방대학
- ○ 기술학교, 고등기술학교
- ○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 ○ 특수학교
- ○ 유치원
- ○ 각종학교

〈適用例〉

- ○ 이 法 施行 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허용
- ○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실업계학교의 新·增設을 위한 기부금으로서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된 寄附金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속 이월

공제하거나 이 법 施行日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全額損金算入하는 方法 中 선택하여 適用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음.

7. 傳統家業의 傳承支援(法 §67의9)

敬老孝親思想과 傳統家業의 傳承 등 우리고유의 美風良俗의 확산을 통한 국민의 건전한 社會經濟生活 定着을 위하여 5年 以上 계속한 中小自營事業을 父母 등으로부터 相續받은 경우에는 總相續財產價額에서 家業用財產價額의 20%를 차감하여 相續稅課稅價額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가. 輕減對象業種

傳統家業으로서 相續稅가 경감되는 業種은 所得稅를 감면하여 주는 長期繼續事業者의 業種의 範圍(所得稅法施行令 第164條第5項第1號 및 同施行規則 第79條第3項)와 같이 畜產業·水產業·鑛業·製造業·小賣業·飮食店業·宿泊業 기타 國稅廳長이 정하는 業種으로 하였다.

나. 減免排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相續稅 輕減惠澤을 받을 수 없다.

(1) 相續稅法 第20條의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해 家業用 財產을 누락하여 申告한 경우

(2) 相續稅法 第4條第1項의 규정에 의하여 相續稅課稅價額에 가산하는, 相續開始前 3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에게 贈與한 財產의 價額과 相續開始前 1年 이내에 被相續人이 相續人의 者에게 贈與한 財產의 價額 중에 당해 家業用財產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다. 免除稅額의 추징

產業用財產을 相續받은 相續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家業用財產을 相續開始日로부터 5年 이내에 처분하거나 당해 家業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相續開始當時의 相續稅課稅價額에 算入하여 相續稅를 지체없이 징수하게 되며 다만, 다음과 같은 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추징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추징이 면제되는 정당한 事由〉

○ 家業을 相續받은 相續人이 死亡한 경우

○ 家業을 相續받은 相續人이 海外移住法에 의하여 海外移住하는 경우
○ 相續받은 家業用財産이 土地收用法 其他 法律에 의하여 收用된 경우
○ 相續받은 家業用財産을 國家·地方自治團體에 讓渡하는 경우
○ 기타 財務部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8. 技術開發支援

가. 프로그램개발업에 대한 技術開發支援制度 확충·보완(令別表 4, 5, 6)

오늘날과 같은 첨단기술 및 情報化시대에 있어서 産業構造의 선진화와 技術立國의 조기실현을 위해서는 모든 産業技術의 근간이 되는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절실하다고 하겠다. 정부도 최근 소프트웨어育成促進法을 제정하여 소프트웨어개발산업에 대한 綜合的인 지원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稅制面에서도 소프트웨어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제도를 擴大·補完하였는 바,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Computer Program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人件費 및 프로그램의 維持·補修·開發을 위한 비용을 技術開發準備金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補完하였으며 프로그램개발업을 技術集約産業에 추가하여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限度를 擴大하고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를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 대상비용에 추가하였다.

종 전	개 정
(新 設)	—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는 ○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人件費 및 프로그램의 維持·補修·開發을 위한 費用을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추가함. ○ 프로그램개발업을 기술집약적 산업에 추가하여 技術開發準備金 設定限度를 확대함. ○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요원의 人件費를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대상비용에 추가함.

(1) 프로그램開發을 業으로 영위하는 者에 대하여 적용

영리를 목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을 開發·販賣하는 事業者에 대하여 적용되며 一般企業에 부속된 연구부서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技術集約產業

기술집약산업이라 함은 技術開發準備金을 일반산업보다 더 많이 설정할 수 있는 산업을 말하며 프로그램개발업이 技術集約產業에 추가됨에 따라 收入金額의 2%와 所得金額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일반산업의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한도는 收入金額의 1.5%와 所得金額의 20% 중 많은 금액이다.

(3)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 대상비용인 硏究要員의 人件費

프로그램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人件費는 모두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技術·人力開發費로서 10%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는 硏究要員의 人件費는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지고 당해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한정하였다.

나. 非營利法人 硏究機關의 硏究活動 支援 등(令 §18)

非營利法人 硏究機關의 硏究活動을 지원하기 위해 동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外國人技術者를 근로소득세가 면제되는 외국인 기술자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비영리 법인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해서도 근로를 제공한 날로부터 5年間 勤勞所得稅를 면제토록 하였고, 기타 特定硏究機關에서 硏究員으로 근무하는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박사학위 요건을 삭제하였다.

勤勞所得稅가 免除되는 外國人技術者

종 전	개 정
○ 技術用役契約에 의해 기술을 제공하는 外國人 ○ 外國에서 제조업 등의 分野에 5年 以上 종사한 技術者로서 당해분야의 國內事業者에게 勤勞를 제공하는 外國人	○ 非營利法人硏究所에서 근무하는 外國人도 勤勞所得稅가 면제되는 外國人技術者의 範圍에 추가
○ 博士學位所持者로서 特定硏究機關에서 硏究員으로 근무하는 外國人	○ 박사학위 요건 삭제

여기서 非營利 法人硏究機關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연구기관을 말한다.

〈非營利 法人硏究機關의 要件〉

○ 設置根據 : 과학기술연구를 목적으로 民法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설치

○ 施設要件 : 獨立된 建物을 보유하고 自然界分野의 學士學位 이상의 학위를 가진 硏究專擔要員 10인 이상을 상시 확보할 것

→ 科技處長官의 確認要

9. 輸入超過國家에의 輸出에 대한 支援(令 §19)

輸出·觀光 등 外貨獲得事業을 영위하는 자가 수출 등에서 발생하는 損失이나 海外市場開拓에 필요한 費用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輸出損失準備金과 海外市場 開拓準備金은 일반적으로 2年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益金에 환입하도록 되어 있으나, 국가별 무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輸入超過國家에 수출하는 경우에 기계·선박의 수출의 경우와 같이 5년거치후 3년간 분할 환입하도록 하였다.

10. 投資稅額 控除對象인 特定設備의 範圍調整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公害防止施設 등 特定設備에 대한 투자유인방법으로 기업이 당해 特定設備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외산의 경우 3%)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투자한 금액의 50%(외산의 경우 30%)를 취득한 연도에 일시를 償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特定設備 중에 일부 施設을 追加하였다.

가. 產業災害 豫防施設의 範圍擴大(規則 別表4)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에 국소배기시설 등 3종 6개 품목을 추가하였다.

추가되는 내용

구 분	적 용 범 위
• 국소배기장치 등	○ 유기용제증기의 발산원 밀폐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 분진제거, 자연가솔린 또는 연등의 중독방지를 위한 국소배기장치 ○ 사업장에 설치하는 전체 환기장치
• 가스검지기 등	○ 폭발성가스검지기 및 경보장치
• 작업환경 측정기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용장치
• 기 타	○ 보일러 등 압력용기의 방폭장치, 폭발피해의 확산방지를 위한 격벽 ○ 컨베이어의 급정지장치

나.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에 금형자동 교환장치 추가(規則 別表8)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의 범위에 금형을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형교환장치를 추가하였다.

11. 其　　他

가. 國產醫療機器 製造業 支援

의료기기의 國產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제조업을 기술집약적인 產業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損金算入限度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구입시 一時償却이 허용되는 의료법인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산의료기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하여 一時償却을 허용하였다.

(1) 醫療機器製造業의 技術開發準備金 設定限度擴大(令 別表4)

의료기기제조업을 技術集約的인 產業의 범위에 추가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설정한도를 확대하였는바, 의료기기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收入金額의 2% 또는 所得金額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중 많은 금액을 技術開發準備金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기기라 함은 法人稅法施行規則 別表에 규정된 의료기기를 말한다.

(2) 醫療機器 구입시 一時償却이 허용되는 醫療法人의 範圍擴大(令 §57)

종전에는 病院의 大都市集中現象을 緩和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청소재지이외의 지역에 있는 醫療法人이 醫療機器를 購入하는 경우에 한해 同醫療機器를 取得한 날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소득금액계산시 取得金額의 50%(외국산의 경우 30%)를 一時에 償却하여 損金에 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금번 改正時 국산의료기기 구입을 촉진하기 위해 國產醫療機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醫療法人에게 一時償却을 허용하였다.

종　　전	개　　정
○ 特別市·直轄市·道廳所在地 이외의 지역의 醫療法人이 의료기기구입시 50%(외국산 30%) 일시상각 허용	○ 國產醫療機器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지역의 醫療法人에게 50% 일시상각을 허용

나. 大都市圈의 範圍調整(令 別表8)

"光州直轄市와 全羅南道의 관할구역 변경 및 송정시·광산군 廢止에 관한 法律"이 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의 송정시 및 광산군이 1988.1.1부터 光州直轄市에 편입되었는

바, 하남공업단지를 大都市圈의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大都市圈내에 소재한 工場을 하남공업단지로 移轉하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地方移轉에 따른 稅制支援 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다. 遞信家計優待 定期積金은 稅金優待 少額家計貯蓄의 범위에 추가(規則 §1의2)

"遞信預金·保險에 관한 法律施行規則"의 改正으로 1987.6.1부터 郵遞局에서도 家計優待定期積金을 취득할 수 있도록 되었는바, 동 遞信家計優待 定期積金을 은행에서 취급하는 家計優待定期積金과 같이 稅金優待 少額家計貯蓄의 範圍에 추가하였다. 이에 따라 郵遞局에서 취급하는 家計優待定期積金의 利子에 대하여도 敎育稅·住民稅·防衛稅를 부가하지 아니하고 所得稅만 5%의 低率로 分離課稅하게 된다.

라. 老後生活年金信託에 대한 源泉徵收時期 特例認定(令 §2의2)

노후생활연금신탁의 收益에 대하여는 일반신탁과 달리 신탁수익을 원본에 가산할 때마다 利子所得稅를 源泉徵收하지 않고 신탁계약기간이 滿了하는 때에 총신탁수익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일괄하여 源泉徵收하도록 함으로써 가계의 財産形成을 支援하였다.

마. 免稅油類를 구입할 수 있는 農業機械의 範圍調整(規則 別表7)

현재 農業用機械에 사용하는 油類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農業機械에는 農林水産部에서 보급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급기종으로 告示하여 자금지원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농수산부 보급기종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종이 있는 바, 이번에 農林水産部 告示로 普及이 일반화된 일부기종이 1988.1.1부터 普及機種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들 기종을 재무부령이 정하는 기종에 추가함으로써 계속 면세유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바. 公企業의 民營化支援(法 §48의2, §81, §84①, §85①)

정부는 포항제철, 한국전력, 외환은행 등 政府가 出資하고 있는 公企業 中 일부기업을 民營化하기로 계획하고 구체적인 작업을 추진중이다. 현재 商法上의 會社간의 組織變更時는 형식적으로 組織만 변경될 뿐, 그 실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직변경시에 발생되는 淸算法人稅 등을 면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公企業이 民營化하기 위해 商法上의 商事法人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공기업청산에 따른 淸算法人稅와 組織變更한 法人이 引受하는 財産에 대한 取得·登錄稅 및 民營化와 관련하여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印紙稅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公企業이라 함은 政府가 5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政府投資機關과 기타 政府가 出資하고 있는 法人으로서 特別法에 의해 設立된 法人을 말한다.

사. **公共法人의 範圍調整**(法 別表)

5% 特例稅率이 적용되는 公共法人에 다음의 法人을 추가하였다.

- ○ 국립공원관리공단
- ○ 한국관광공사
-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 환경관리공단
- ○ 국민연금관리공단
- ○ 한국산업안전공단

아. **中小企業基本法 施行令의 改正에 따른 租減法上의 中小企業의 範圍擴大**(中小企業基本法 施行令 §2의2)

租減法上 各種 支援을 하고 있는 中小企業의 범위는 中小企業基本法施行令의 中小企業의 범위와 일치시키고 있는 바, 이번에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감법상의 中小企業의 범위도 자동적으로 확대되었다.

종업원수 300인 이하인 一般的 基準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나 노동집약적산업이나 裝置產業에 적용되는 종업원수와 자산규모의 特例基準을 대폭 緩和하였다.

종전에는 무연탄광업 등 勞動集約的인 업종에 대하여 종업원수가 최고 700명까지 中小企業을 보던 것을 자동화부품제조업 등에 대하여는 종업원수가 최고 1,000명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從業員數 特例基準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업종이 82개 업종에서 98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으며, 裝置產業은 최고 120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던 것을 최고 300億까지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適用例〉

- ○ 1988.1.1부터 시행
- ○ 중소기업의 기준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事業年度 終了日 현재를 基準으로 판단하므로 1988.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改正된 基準에 의해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기업은 당해 課稅年度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며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게 된 기업은 당해 課稅年度와 그 다음 課稅年度까지만 중소기업으로 보게 된다.

1988년

◉ 법　　률 : 1988.12.26. 법　　률 제 4021호(시행일 : 1989. 1. 1.)
◉ 시 행 령 : 1988.12.31. 대통령령 제12566호(시행일 : 1989. 1. 1.)
◉ 시행규칙 : 1989. 2.23. 재무부령 제 1776호(시행일 : 1989. 2.23.)

〈要　　約〉

○ 公共法人에 대하여 현재는 一律的으로 5퍼센트의 優待稅率을 適用하고 있으나, 農·畜·水協單位組合 등은 現行 5퍼센트의 세율을 계속 適用하되, 이외의 公共法人에 대하여는 課稅標準 3億원을 基準으로 하여 그 이하인 경우에는 10퍼센트의 稅率을 適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15퍼센트의 稅率을 適用하도록 함.

○ 對外經濟與件變化에 따라 輸出産業에 대한 지원을 縮小하는 등 個別産業에 대한 減免制度를 整備함.

○ 移越缺損金이 있는 企業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그 缺損金을 差減한 所得金額의 범위내에서만 損費로 인정되도록 함으로써 企業의 과다한 기부금지출을 抑制함.

○ 都市再開發事業 施行者에게 土地를 讓渡하는 경우 등에는 讓渡稅를 全額免除하였으나 50퍼센트만 減免되도록 調整함으로써 課稅의 衡平을 제고함.

○ 國際金融機構 등이 출자한 기업에 대한 租稅減免을 廢止하는 등 外國資本의 도입과 관련된 減免制度를 大幅 축소 또는 廢止함으로써 國內外 기업간의 課稅衡平을 도모함.

○ 農藥·農機械 등 農業用機資材와 漁業用機資材에 대하여는 附加價値稅 零稅率을 적용하여 農·漁民의 稅負擔을 경감함.

○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술집약적산업 중 精密化學産業의 범위에 觸媒·添加物類 및 試藥의 제조업을 추가함.

○ 개인기업이 工場을 지방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舊工場을 양도할 경우 工業配置法상의 工場基準面積을 초과하는 土地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讓渡所得稅를 減免받을 수 없도록 함.

○ 중소기업의 生産性向上 投資稅額控除對象인 공정개선 및 自動化施設의 범위를 종전에는 기계장치의 품목별로 구분하던 것을 앞으로는 기능별로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그 대상을 擴大·調整함.

○ 單位農業協同組合 등에 대한 預託金의 利子所得에 대하여 所得稅가 非課稅되는 대상에 農業協同組合法, 水產業協同組合法 및 畜產業協同組合法상의 準組合員 중 組合의 區域에 居住하는 個人으로서 組合의 事業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準組合員이 되는 자를 추가함.
○ 電話使用料에 대한 防衛稅의 稅率을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경감하여 電話使用에 대한 稅負擔을 緩和함.

〈改正內容〉

1. 公共法人에 대한 減免 縮小

가. 稅率引上(租減法 §8①)

○ 한국은행 등 公益業務를 수행하는 特別法人에 대하여는 공공법인의 범위에 포함시켜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5%의 優待稅率을 적용하여 왔으나 법인간 課稅衡平을 도모하고 稅制의 中立性을 提高하기 위하여 농·축·수협단위조합 등 當期純利益 課稅法人을 제외한 공공법인의 세율을 상향조정하였다.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所得金額에 관계없이 5%	○一般公共法人 • 課稅標準 3億원 이하 : 10% • 課稅標準 3億원 초과 : 15% ○韓國銀行을 제외한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 : 종전과 같이 5% 유지

※ 5%의 優待稅率이 적용되는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 단위농업협동조합 및 특수농업협동조합
- 지역별 축산업협동조합 및 업종별 축산업협동조합
-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물제조 수산업협동조합(어촌계를 포함)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협동소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계 및 조합
- 엽연초생산조합
- 농지개량조합

(2) 適用例

198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세율을 적용한다. 그리고 법인세율이 상향조정된 공공법인의 1989년도분 법인세 및 방위세의 中間豫納稅額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직전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의 직접사업연도의 법인세산출세액을 계산하여 1989년도분 中間豫納稅額을 납부하면 된다.

(3) 公共法人의 實質稅負擔率

(단위 : %)

	법인세율	방 위 세 율	주 민 세 율	합 계
―一般公共法人				
• 과표 3억 이하	10	• 과표 8천만원 이하 : 5 • 8천만원 이상 3억 이하 : 7.1	• 0.75	• 15.75 • 17.85
• 과표 3억 초과	15	• 3억 이상 5억 이하 : 6.6 • 5억 초과 : 8.25	• 1.125	• 22.725 • 24.375
―當期純利益課稅法人	5	• 8천만원 이하 : 5.5 • 8천만원 이상 5억 이하 : 7.6 • 5억 초과 : 9.5	• 0.375	• 10.875 • 12.975 • 14.875

나. 當期純利益 課稅制度 改善(租減法 §9②但書)

농·축·수협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등 10개 유형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당해법인의 決算財務諸表上 當期純利益을 과세표준(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부문을 합산하되 세무조정을 배제함)으로 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였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법인들도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하고 법인세법상 非營利法人 課稅方法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 경우 當期純利益 課稅方法을 포기한 법인은 향후에는 當期純利益課稅를 적용받을 수 없게 되며 법인세법상 複式簿記義務를 이행하여야 된다.

그리고 當期純利益課稅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

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直前事業年度 終了日(신설법인은 사업자등록증 교부신청일)까지 포기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2. 輸出事業에 대한 支援縮小

輸出事業에 대하여는 수출손실준비금·해외시장개척준비금·가격변동준비금 등 특별상각제도에 의하여 지원을 하여 왔다.

그러나 國際收支黑字基調의 정착에 따른 대외통상마찰 소지가 있는 輸出關聯 減免制度의 축소 필요성과 수출산업과 내수산업간의 경쟁의 중립성 회복 등 對內外 經濟與件變化에 부응하여 지원제도의 일부를 축소하였다.

가. 價格變動 準備金制度의 廢止(租減法 §24)

輸出事業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수출할 물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在庫資產價額의 5%를 價格變動準備金으로 설정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당해 제도를 폐지하였다.

나. 特別減價償却費의 設定對象 縮小(租減法 §25)

輸出事業에 대한 특별감가상각비의 설정대상자를 제조업·광업 및 수산업의 수출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한정하였다. 설정범위는 종전과 동일하게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의 30% 범위내에서 설정할 수 있다.

종 전	개 정
○제조업·광업·수산업의 수출산업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한 관광사업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을 한 용역사업	○제조업·광업·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

3. 個別產業에 대한 減免縮小

가. 海外事業에 대한 特別償却制度 廢止(租減法 §28)

海外建設業 등이 해외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의 30%를 特別償却費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1989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는 설정할 수 없게 된다.

나. 施設貸與産業에 대한 特別償却廢止(租減法 §53)

施設貸與會社가 내국인에게 대여한 시설에 대하여는 20% 特別償却을 허용하였는데 이를 폐지하였다.

다.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特別償却 縮小(租減法 §32)

外國航行事業에 대한 100% 特別償却制度를 50% 특별상각제도로 축소한다.

4. 外資導入關聯 減免縮小

가. 國際金融機構 등 出資企業에 대한 租稅減免 廢止(租減法 §68·70 ②)

(1) 外國人出資企業에 대한 法人稅·財産稅 등 減免 廢止
國際金融機構 및 共同出資者가 출자한 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방위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持分別로 無期限(국제금융기구 출자지분) 또는 5년간(공동출자지분) 면제하는 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1989년 1월 1일 이후 新規出資分부터는 과세로 전환한다. 다만, 旣存出資者를 위하여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外國人出資者가 내국법인에 출자를 완료한 경우에 外國人出資企業 및 外國人出資者에 대한 조세감면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2) 國際金融機構 등 外國人投資者의 配當所得 減免 廢止
國際金融機構 또는 共同出資者가 외국출자기업으로부터 受取하는 배당에 대하여 적용되던 無期限(국제금융기구 수취분) 또는 5년간(공동출자자 수취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의 면제제도를 폐지한다.
따라서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규투자에 의한 배당에 대하여는 과세로 전환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가 지급받는 配當所得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 제도가 폐지되어도 國際金融機構協定에 의하여 계속 면제를 받게 된다.

(3) 國際金融機構 등 出資企業의 導入物品에 대한 減免 廢止(租減法 §70①)
국제금융기구 등 외국인출자자가 출자의 목적으로 도입하는 물품에 대한 特別消費稅와 防衛稅의 면제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의 목적으로 198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되는 물품에 대한 特別消費稅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다.

나. 外貨關聯 各種 利子所得에 대한 減免 調整(租減法 §69)

(1) 國際金融機構 등의 受取利子에 대한 免稅廢止

국제금융이나 共同借款供與者 및 債權承繼者가 지급받는 利子所得에 대한 소득세·法人稅와 防衛稅의 면제제도를 폐지하였다.

따라서 新規契約分부터 과세로 전환되며, 종전에 대부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 면제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 등의 수취이자는 조세감면규제법상 당해 제도가 폐지되어도 國際金融機構協定에 의하여 계속 면제된다.

(2) 外國銀行 국내지점의 外貨出資利子에 대한 免稅 廢止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를 폐지한다.

따라서 新規契約分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3) 기타 縮小事項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債券利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인세)를 면제하였는데, 앞으로는 일반 내국법인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이자는 新規發行分부터 과세로 전환된다.

(나) 外貨債務利子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대상 및 범위를 축소하여 "외국환은행이 외국환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 도입하는 外貨債務利子"에 한정하여 면제된다.

(다) 외화표시어음이자 및 비거주자 외화예금이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면제제도를 폐지하였다.

(라)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外貨資金 斡旋·仲介所得에 대한 법인세 면제제도를 폐지하였다.

(4) 外國換銀行의 off－shore 金融去來利子 免除規定 新設

金融産業의 國際化를 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off－shore 금융거래관련 支給利子 및 受取利子에 대한 면세규정을 신설하였다.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자금을 예수 또는 차입하여 비거주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 및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이자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

從前免稅	改正	備考
① 國際金融機構 및 공동차관 공여외국인이 수취하는 이자	① 削除(廢止)	— 國際金融機構가 수취하는 이자는 國際金融機構設立協定에 의하여 계속 면제
② 國家 또는 內國法人이 발행하는 外貨表示債券利子 및 수수료	② 국가·地方自治團體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外貨表示 債券利子 및 수수료	— 면제대상에 지방자치단체 포함
③ 국가 또는 내국법인이 外國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償還하여야 할 外貨債務에 대한 支給利子 및 수수료	③ 외국환은행이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 차입하여 외화로 상환하여야 할 外貨債務利子 및 수수료	— 외국환은행의 외국금융기관차입이자만 免稅
④ 외국환은행이 인수·매입 또는 발행하는 外貨表示어음에 대한 利子 및 割引額	④ 削除(廢止)	— 내국수입유산스어음의 이자 및 할인액 減免廢止
⑤ 외국환은행의 비거주자 外貨預受金額에 대한 지급이자 및 수수료	⑤ 〃	
⑥ 외국인·외국법인이 출자한 外國換銀行의 외화자금 알선중개소득	⑥ 〃	
⑦ 外國銀行國內支店의 外貨貸付利子	⑦ 〃	
⑧ 施設貸與會社의 外國施設使用代價로서 外貨로 지급하는 대여금	⑧ 〃	

〈適用例〉

이 법의 개정규정은 1989. 1.1이후 최초로 차입하거나 預受하는 外貨債務利子 및 수수료에 대하여 適用하며 이 법 施行 당시 종전의 第69條 규정에 의하여 차입하거나 預受한 外貨債務利子, 手數料, 외화대부이자 등의 租稅減免은 從前의 규정이 계속 適用됨.

다. 기타 外貨導入關聯 租稅優待措置 廢止(租減法 §51·77)

(1)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용으로 구입하는 국산승용차에 대한 特別消費稅 免除制度를 폐지하였다.

(2)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출자할 목적으로 설립된 持株會社가 受取하는 配當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한다.

5. 讓渡所得稅 減免縮小(租減法 §58·59·60·61)

開發事業支援과 관련된 양도소득세 감면율의 축소방침에 따라 收用 등 공공사업용 토지확보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0% 감면을 50% 감면으로 축소하였다.

(1)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都市再開發事業 施行者에게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전액면제하였으나 감면율을 50%로 축소하였다. 다만, 당분간 都市再開發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규정의 시행을 1989년 7월1일 이후 讓渡하는 토지부터 적용하게 된다.

(2) 特定地域綜合開發促進法에 의한 사업시행자, 공업배치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中小企業進興法에 의한 사업시행자,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전액 양도소득세 면제에서 50% 감면으로 축소하였다.

(3)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토지를 양도하고 土地讓渡代金의 전액을 토지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에서 50% 감면을 축소하였다.

(4) 농협단위조합과 축협단위조합간의 토지 등을 양도시 特別附加稅 全額免除制度를 폐지하였다.

6. 中小企業支援制度의 補完

가. 都·小賣業을 中小企業 業種에 追加(租減法 §11)

중소기업에 대한 稅制支援對象을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및 수산업으로 한정하여 세제지원을 하였는데, 도매업과 소매업도 중소기업 업종에 추가하여 流通産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도·소매업의 범위는 일반적 기준으로 常時 使用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하이어야 되나, 중소기업기본법상의 從業員特例規定에 의하여

- 소매업의 경우 시장개설허가를 받은 綜合小賣業의 경우에는 300인 이하도 해당되며,
- 일반도매업의 경우에는 30인 이하, 연쇄화사업자인 都賣業者의 경우에는 300인 이하인 기업도 中小企業에 해당하게 된다.

나. 中小企業 投資準備金을 설정한 個人企業의 法人轉換時 加算稅 追徵要件 緩和 등 (租減法 §13④)

投資準備金을 설정한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세법상 폐업에 해당되게 되어 폐업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환입함과 동시에 加算稅를 징수하였는데, 앞으로는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가 중소기업간의 통합 또는 法人轉換인 경우 당해 準備金을 적법하게 사용한 分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하였다.

그리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의2가 개정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설정한 후 설정 목적 외에 사용한 분에 대하여 加算稅賦課率이 종전 100원에 대하여 일변 5전(연18.25%)에서 일변 4전(연 14.6%)으로 下向調整되게 되었다. 이 개정규정의 적용은 198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된다.

다. 創業中小企業과 外投企業間의 重複支援 排除(租減法 §87⑦)

租稅減免規制法上의 창업중소기업감면,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감면과 외자도입법상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감면을 선택해서 하나만 적용받을 수 있도록 重複支援排除規定을 신설하였다. 다만, 종전에 창업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라. 生産性向上 施設인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의 範圍調整(租減規則 별표8)

中小製造業에 使用하는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에 投資할 경우 投資金額의 10%(외산 3%)를 納付할 세금에서 控除받거나 投資完了年度에 자산취득가격의 50%(외산 30%) 특별감가상각방법을 선택해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工程改善 및 自動化施設의 範圍를 擴大 調整하여 中小企業의 稅負擔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종전에 78개의 개별시설 등을 열거하였는데, 동일한 성능을 갖고 있는 機械裝置는 業種에 關係없이 동일한 稅制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機能別로 機械裝置를 열거하였고, 또한 CAD·CAM 설비 등 尖端機械裝置를 大幅 追加하였다.

이에 대한 適用時期는 施行規則 공포일(1989. 2. 23) 以後에 投資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개정규칙 시행일 現在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를 完了하였거나 投資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다.

(尖端分野의 機械裝置 事例)

- 원료·原資材·部品·完製品을 保管·貯藏·반출입하기 위한 自動倉庫시스템
- CAM設備(工場自動車設備) 및 CAD設備(設計自動化設備)
- 原料·原資材·部品 또는 完製品을 必要로 하는 위치까지 自動으로 搬送하는 機能을 갖춘 무인반송시스템
- 製造工程의 改善, 生産管理 및 資料管理를 위한 컴퓨터 本體 및 여타 周邊設備 등(同一性能 機械裝置의 事例)

從 前	改 正
○ 지퍼조립기·볼펜부품자동조립기 ○ 세라믹原料의 自動粉碎機	○ 部品 등을 自動으로 組立 또는 挿入하는 自動組立機 ○ 材料의 입출·粉碎를 自動으로 制御하는 自動粉碎機

7. 寄附金特例制度 補完(租減法 § 49·50)

法人稅法 등에서 寄附金의 損費認定 範圍를 縮小함에 따라 조감법에서도 寄附金의 損金認定 範圍 등을 縮小하였다.

韓國科學技術院 등 學術硏究團體, 文化藝術振興基金, 私立學校 또는 政治資金 등으로 出捐하는 寄附金은 全額 損金으로 인정하였는데, 앞으로는 稅務會計上의 移越缺損金이 있는 企業이 寄附金을 支出할 경우는 損費認定의 範圍를 縮小하였다. 즉 當該 企業의

稅務會計上의 移越缺損金을 차감한 當該 課稅年度의 所得金額의 範圍內에서 損金認定받을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科學技術振興基金으로 出捐하는 寄附金과 科學技術處長官이 推薦하는 個人 또는 團體에 硏究費 또는 硏究施設費로 支出하는 寄附金에 대한 全額損金算入制度를 廢止하였다. 다만, 科技處長官이 推薦하는 團體 등에 대한 寄附金은 이미 設立된 團體들을 支援하기 위하여 1990年 12月 31日까지 寄附하는 金額은 종전처럼 損金認定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8. 技術關聯 支援

가. 技術所得에 대한 減免制度의 補完(租稅法 §19)

외화획득장려 측면에서 外國에 技術移轉時 세제상 우대하는 制度를 國內技術移轉 促進을 위해서 國內에 技術移轉時 우대하는 制度로 轉換하였다.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特許權·實用新案權의 原始取得者 • 讓渡時 : 所得稅·法人稅 全額 면제 • 대여시 : 소득세·법인세 5년간 면제 ○ 製造秘法의 보유자 • 외국에 양도·대여시 : 50% 소득공제	⇨	○ 特許權·實用新案權의 原始取得者 및 製造秘法의 보유자 • 국내의 양도·대여시 : 전액 免除 • 外國에 讓渡·貸與時 : 50% 減免
○ 特許權·實用新案權의 중도 취득자 • 외국에 讓渡·貸與時 : 50% 所得控除		(廢 止)

(2) 製造秘法의 範圍

내국인이 스스로 硏究開發한 것으로서 科學技術分野에 속하는 技術秘法(工業所有權, 海外建設用役 및 技術硏究用役은 제외)을 말한다.

나. 技術開發 支援制度는 租稅支援의 綜合限度에서 除外(租減法 §88)

(1) 技術開發準備金

조세감면규제법상 損金으로 계상된 準備金과 特別償却額의 합계액이 當該 課稅

年度 所得金額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損金이 인정이 되지 않는데, 기술개발준비금은 綜合限度 適用對象에서 제외하여 준비금으로 설정한 전액을 비용으로 인정받게 된다.

(2)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각종 投資稅額控除額의 합계액이 當該課稅年度 所得稅 또는 법인세 算出稅額의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받도록 하고 있는데,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技術人力開發費 세액공제는 綜合限度 適用對象에서 제외하여 당해연도 納付할 세액에서 全額 控除받을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상 각종 稅額控除額의 합계액이 當該年度 所得稅 또는 法人稅 산출세액을 초과함에 따라 當該年度에 공제받지 못하게 되는 금액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2항의 增加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는 다음 과세연도부터 4년간 移越하여 控除받을 수 있다.

(3) 稅額控除의 順序

세액공제 중 일반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증가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종합한도관련 세액공제간의 공제순서는 다음 순서로 공제받을 수 있다.

첫째, 세액공제 중 移越控除가 認定되지 아니하는 一般技術, 人力開發費 稅額控除

둘째, 세액공제 중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제1항에 의하여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綜合限度關聯 稅額控除

셋째,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增加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또한 移越控除가 인정되는 稅額控除相互間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控除한다.

다. 技術集約產業의 範圍 擴大(租減令 별표4)

세제상 우대를 받을 수 있는 技術集約產業 중 정밀화학산업의 범위에 촉매·첨가물류 및 시약의 제조업을 추가했다.

9. 海外投資促進 支援

國際收支 黑字財源을 해외투자에 적극 活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손실준비금의 損金算入限度를 확대하였다.

종전의 一般海外投資는 投資額의 15%, 海外資源開發投資는 投資額의 20%를 준비금으로 설정하였는데, 앞으로는 一般海外投資도 해외자원개발투자와 같이 투자액의 20%

를 海外投資損失準備金으로 설정할 수 있다.

이의 적용은 해외투자의 支援側面에서 1989. 1. 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10. 從業員持株制 支援 擴大 및 國民株普及 支援

가. 從業員持株制의 支援 擴大(租減法 §4의2)

(1) 우리社株 配當所得의 低率分離課稅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5% 저율분리과세(교육세·방위세·주민세는 면제)되도록 신설하였다.

(2) 低率分離課稅의 要件

(가) 우리社株組合員이 그 법인의 주식을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할 것

(나) 우리사주조합원이 少額株主基準에 해당할 것

(다) 주식의 額面價額의 합계액이 500만원 한도 이내일 것

500만원을 초과시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優待對象에서 제외

(라) 配當所得支給日 현재 한국증권금융주식회사에 3년 이상 예탁된 것일 것

이 경우 개정규정의 적용은 과거에 예탁된 우리사주의 경우도 198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配當所得부터 適用한다.

(3) 우리社株 相續時 相續稅非課稅(租減法 §7의3)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주식으로서 액면가액기준 500만원 이하에 상당하는 주식은 相續稅課稅價額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國民株信託利益의 非課稅(租減法 §4)

포철주 등 政府所有株式을 國民株로 매각함에 따라 근로자 등의 財產形成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민주신탁의 이익에 대하여 소득세 비과세규정을 신설하였다.

여기서 국민주신탁이라 함은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政府所有株式을 배정받은 자로부터 수탁받은 자금으로 당해 주식 등을 취득·운용하고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을 지급하는 신탁을 말한다.

11. 農漁村支援

가. 農·漁村用 機資材에 대하여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租減法 §73)

비료·농약·농기계 및 어구 등 어업용기자재에 대하여 附加價値稅 零稅率을 적용하여 농·어민의 稅負擔이 緩和되도록 하였다.

※ 13 내용 참고

나. 干拓地 등의 讓渡時 讓渡所得稅 免除(租減法 §67의10)

不在地主가 소유한 간척지 등을 실제 경작하는 賃借農民에게 양도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간척지 등의 양도시 讓渡所得稅 免除規定을 신설하였다.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은 1976년 12월31일 이전에 간척 또는 개간이 완료된 농지를 1988년 12월31일 현재 20년 이상 賃借하여(임차권을 상속받은 경우에 피상속인의 임차권을 포함) 경작해온 소작농민에게 199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다만, 감면대상인 간척지 등의 범위는 간척지의 양도에 관한 특별법이 별도 제정된 후에 규정하기 위하여 정하지 않았으며, 개정규정의 추후 간척지의 범위와 감면절차를 대통령령에서 정한 후에 적용받을 수 있다.

다. 農·漁民 融資書類에 대한 印紙稅 免除範圍 擴大(租減法 §81)

농·축·수협단위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으로부터 農·漁民 등이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한 인지세의 면제한도를 종전에는 융자금액 1,500만원까지 면제하였는데, 앞으로는 3천만원까지 융자받는 경우에도 인지세를 면제한다.

라. 自耕農民에게 農地讓渡時 義務耕作期間 短縮 등(租減法 §67의6)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농지 등을 양수받은 자경농민이 양수한 날로부터 8년 이내에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직접 營農에 종사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도록 하고 있는데, 義務耕作期間을 5년으로 단축하여 농어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제기본법상의 租稅債權消滅時效와도 일치를 시켰다.

또한 농고졸업생 등 영농계획자인 자경농민에게 농지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의 하나인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서 2년간 사전영농종사" 요건을 배제하여 讓渡所得稅 減免要件을 완화하였다. 영농계획자의 범위는 농어민후계자기금육성법에 의한 농어민후계자, 교육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를 말한다.

12. 電話使用料에 대한 防衛稅 輕減(租減法 §82의2)

電話使用料에 대한 세부담이 종전의 절반수준으로 완화된다.

從 前	改 正
○ 전화세 : 전화사용료의 15%	○ 전화세 : 전화사용료의 10%
○ 방위세 : 전화사용료의 10%	○ 방위세 : 전화사용료의 2%

※ 방위세 인하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으로 조치

13. 農·漁業用 機資材에 대한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에 관한 特例規程·施行規則(租減法 §73關聯)

〈要 約〉

○ 供給對象 農·漁民
  — 農 民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作物生産業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
  — 漁 民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漁業에 종사하는 자(법인은 제외)
○ 農·漁業用 機資材의 범위
  — 肥 料 : 비료관리법상의 비료
  — 農 藥 : 농약관리법상의 농약, 단 솔잎흑파리약과 貯穀해충약은 제외
  — 農機械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경운·파종·이앙·방제·기타 農作業을 效率的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農業機械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44종, 별표1 참고)
  — 漁業用機資材 : 어망·浮子·기타 沿近海漁業 및 內水面漁業活動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자재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12개 품목, 별표2 참고)
○ 書式制定
  — 월별판매액합계표 및 농협·수협(어촌계) 納品確認書
  — 농·어민 販賣記錄表
○ 施行日 :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89. 1.1부터 소급적용됨
○ 기타 참고사항 : 농협재고분에 대하여도 零稅率 적용함.

○ 시 행 령 : 1989. 2.21 대통령령 제12626호(시행일 : 1989. 2.21)
○ 시행규칙 : 1989. 2.23 재무부령 제 1778호(시행일 : 1989. 2.23)

〈主要內容〉

가. 特例制度의 施行背景 및 槪要

(1) 施行背景

○ 당초에는 離農現象이 매년 심각성을 더해가는 농촌의 人力不足現象을 해소하고, 농업생산성제고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다른 營農資材에 비하여 고가인 農機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 農·漁村의 균형발전을 위한 세제지원 차원에서 農·漁民의 生産輕減을 위하여 對象 農·漁業用機資材를 비료·농약·농기계·어업용기자재로 하고, 대상 농·어민도 모든 農·漁民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게 되었다.

(2) 制度槪要

○ 農·漁民이 비료·농약·농기계·어구 등을 製造業體·代理店 등에서 구입할 때 (농·어민이 농·수협·어촌계를 통하여 구입하는 경우 포함) 附加價値稅 零稅率適用價格으로 구입하고,

○ 農·漁民에게 직접 공급한 代理店 등 販賣商은 구매자의 주소·성명·販賣價額 등을 기재한 農·漁民販賣 記錄表를 작성 사업장에 비치하고, 월별판매액합계표 및 농·수협(어촌계) 납품확인서(농·수협·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한 분에 한함)를 附加價値稅 申告書에 添附하여 신고하면 附加價値 영세율을 적용받는 제도임.

(3) 施行時期

이 제도는 1989년 제1기 附加價値稅 申告分부터 적용한다.

나. 零稅率 供給對象 農·漁民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는 附加價値稅 零稅率이 적용되는 農·漁業用機資材의 공급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對象 農·漁民을 각각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농작물을 생산하는 모든 農民과 漁業에 종사하는 모든 어민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農業 또는 漁業活動을 기업적으로 경영하는 법인형태의 기업형 농·어업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1) 農 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作物生産業에 종사하는 자. 단, 법인은 제외(특례규정 §2①)

○ 벼·보리·콩·감자·고구마 등의 보통작물, 감귤류·사과·배·포도·복숭아 등의 과수작물, 줄기채소·열매채소·뿌리채소 등의 채소작물, 약용작물·섬유작물·유기작물·기호작물·향신작물 등의 공예작물, 화초·잔디·관상수 등의 화훼작물, 버섯재배·콩나물 생산 등의 시설작물, 농작물의 종자·묘목·육모·버섯종균생산 등의 종묘생산업을 말하며, 축산업·양잠업·임업은 작물생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漁 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漁業(內水面漁業에 포함)에 종사하는 자. 단, 법인은 제외(특례규정 §2②)

○ 近海 및 沿岸海域에서의 수산동·식물을 채취 또는 포획하는 해면어업, 해면이나 내수면에서의 연체동물과 해조류를 양식하는 양식어업, 內水面漁業活動을 말한다.

다. 零稅率 適用對象 農·漁業用 機資材

(1) 肥料管理法上의 보통비료(특례규정 §3①)

— 肥料의 종류(비료관리법 §2, 2)

○ 보통비료(영세율 적용대상) : 무기질 질소비료, 무기질 인산비료, 무기질 가리비료, 복합비료, 유지질비료, 석회질비료, 규산질비료, 고토비료, 망강비료, 붕소비료, 미량요소 비료, 기타비료

○ 부산물비료(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퇴비, 구비, 부숙겨, 재(초·목회), 녹비, 분뇨잔사, 부엽토, 아미노산발효 부산비료(액), 건계분, 건조축산폐기물, 토양미생물제제(미생물효소) 및 토양활성제제비료

※ 판매용으로 생산되는 부산물비료는 대부분이 조경용, 화훼용 및 정원용으로 이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일반영세농가의 영농부담을 줄여준다는 당초의 입법취지에는 맞지 않는 점이 있어 관계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제외되었음.

(2) 農藥管理法上의 農藥(특례규정 § 3③)

— 농약의 종류

○ 살균제 ○ 살충제 ○ 제초제 ○ 생장조정제 ○ 전착제

— 零稅率이 적용되는 농약은 농약관리법상의 농약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약(416개 종류)을 말하여, 직접 농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산림해충방제용의 솔잎혹파리약(테믹입제)과 양곡저장용의 저곡해충약(인화늄정제, 메칠브로마이드훈증제)은 영세율 적용대상 농약에서 제외하였다.

(3) 農機械(특례규정 §3③, 시행규칙 §2)

— 미작·맥작·과수·채소·원예 등 작물생산업에 필요한 농기계. 단, 낫·호미·괭이·쟁기 등 소농구와 농기계의 수리용 부분품을 제외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

1. 동력경운기 및 부속사업기(쟁기·로타리·철차륜·굴착기·파종기·휴립기·휴립복토기·비닐피복기·비닐살포기·배토기·예취기·굴취기·트레일러) 2. 농용트랙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터베이타·해로우·진압기·철차륜·심토파쇄기·그레이더·도자·로다·스크레이터·백호우·시비기·파종기·휴립복토기·채소이식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혈굴기·제초기·분뇨살포기·퇴비살포기·비료살포기·액비살포기·액비주입기·하베스터·쵸퍼·트레일러) 3. 관리기 및 부속작업기(쟁기·로타리·써레·시비기·파종기·시비파종기·이앙기·이삭기·토양소독기·비료살포기·중경제초기·휴립기·비닐피복기·배토기·구굴기·굴착기·그루처리기·혈굴기·제초기·복토기·바인더·예취기·잡초기·굴취기·트레일러) 4. 동력이앙기 5. 주행형 동력분무기 6. 스피드 스프레이어 7. 바인더 8. 콤바인 9. 곡물건조기 10. 주행형탈곡기 11. 예도형예취기 12. 동력중경제초기 13. 동력수확기 14. 농산물건조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난방기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병충해방제기 20. 농업용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결속기 29. 농산물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굴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38. 육묘상자 39. 육묘상자세척기 40. 육모파종기 41. 농업용스프링쿨러 42. 인력이앙기 43. 인력분무기 44. 선과기

(4) 漁業用機資材(특례규정 §3④, 시행규칙 §3)

— 어망·浮子·자동조상기 등 범용성이 적고 沿近海魚業 및 內水面漁業에 필수적인 기자재로 하였다.

— 漁業用機資材 중에서 로프는 양식어업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일반건설용·광산용 및 가정용로프와 사실상 구분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프판매시마다 구입자가 漁民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구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適用對象에서 제외되었다.

— 漁船은 영세어가를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어선까지 零稅率適用을 확대하는 것은 당초 입법취지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都市零細民과의 課稅衡平上의 문제가 있어 제외되었다.

[별표 2]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

1. 어 망
2. 부 자
3. 집 어 등
4. 자동조사기
5. 양 망 기
6. 양 승 기
7. 통 발
8. 초 호
9. 낚 시
10. 연 승
11. 발 장
12. 해녀용 잠수복·잠수복지·물안경 및 태왁

라. 適用節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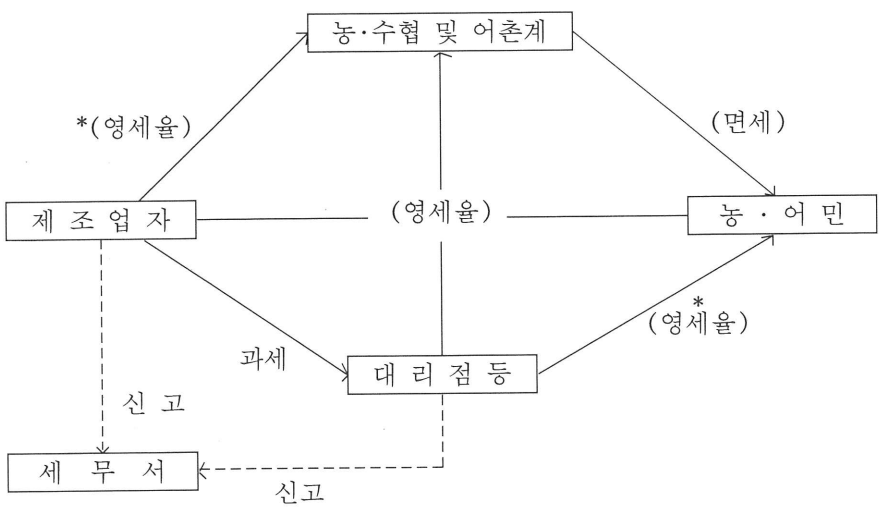

(1) 製造業體 및 代理店 등에서 農·漁民에게 直接 供給時(특례규정 §4.1 §5, 시행규칙 §4)

— 製造業體 및 代理店 등에서 農·漁民에게 직접 공급할 때는 農·漁民 販賣記錄表(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에 비치하고 매월, 2개월 또는 3개월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月別販賣額合計表(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零稅率適用을 받게 된다.

○ 農·漁民販賣記錄表에는 구매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구입물품의 품명·단가·수량·판매가액을 기재토록 하고 있으나, 1거래당 판매가격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성명·주소·품명·판매가액만을 기재토록 하여 供給節次를 간소화하였다.

(2) 農·水協 및 漁村契를 통하여 農漁民에게 공급시(특례규정 §4. 2, §5, 시행규칙 §4)

— 製造業體 및 代理店 등에서 農·水協 및 漁村契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할 때는 농·수협 및 어촌계의 당해 기관장이 발행한 農協·水協(어촌계) 納品確認書(별지 제2호서식)를 받아 매월 2월 또는 3월마다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零稅率 適用을 받게 된다.

— 농·수협·어촌계에서는 農·漁民販賣記錄表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農協·水協(어촌계) 재고분에 대한 零稅率 適用(특례규정 부칙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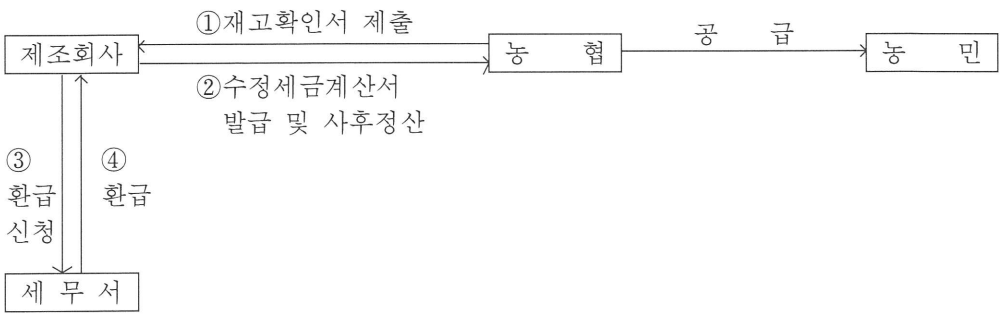

— 農·水協(漁村契)의 경우에는 농·어민이 필요로 할때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農·漁業用機資材를 사전에 확보하여 창고에 貯藏·供給하고 있다. 특히, 농협의 경우에는 우발적인 병충해 등의 이유로 연간에 걸쳐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으며

— 農·水協이 1988. 12말 이전에 과세로 공급받은 분은 농수협이 구입단계에서 부담한 매입부가가치세가 원가에 산입되어 對 農·漁民販賣價額의 인상원인

이 있을 뿐만 아니라 1989. 1. 1이후 공급받은 분과의 이중가격 형성문제가 있다.

— 이러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農·水協이 1989. 1. 1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고분에 대하여는 1989. 1. 1이후 당초공급자의 사업장에 환입되어 다시 공급된 것으로 보아 修正稅金計算를 교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따라서 1988. 12. 31이전에 농협·수협(어촌계)에 農·漁業用機資材를 공급한 사업자는 농협·수협(어촌계)의 長이 확인한 在庫確認書를 제출받아 修正稅金計算書를 발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고확인서를 첨부하면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農·水協의 재고분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다.

[별지 제1호서식]

월 별 판 매 합 계 표				
공 급 자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월 별	⑦ 품 명	⑧ 판 매 가 격	⑨ 비 고
합 계			

위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를 공급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지장

22226－49411민
1989. 2.14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2호서식]

농 협 · 수 협 (어 촌 계) 납 품 확 인 서

공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급	③ 성 명		④ 주 민 등 록 번 호	
자	⑤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⑥ 공급연월일	⑦ 품 명	⑧ 규격	⑨ 수량	⑩ 단가	⑪ 공급가액	⑫ 비고

위와 같이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를 공급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급받는자 상 호 서명 또는 ㊞

성 명

사무소소재지

22226－49511민
1989. 2.14승인

190㎜×268㎜
(신문용지 54g/㎡)

[별지 제3호서식]

농·어 민 판 매 기 록 표

구 매 자			구 입 물 품				비고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품 명	단 가	수 량	판매가액	

(주) 1거래당 판매가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단가·수량란은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22226－49611비
1989. 2.14 승인

380㎜×268㎜
(신문용지 54g/㎡)

14. 其 他

가. 釜山交通公團에 공급하는 지하철도 건설용역에 대하여 附加價値稅 零稅率適用制度 신설(조감법 §73)

나.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심신장애자용 보장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社會福祉支援 強化(조감법 §74)

다. 非營利法人인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비과세제도 신설(조감법 §75)

라. 觀光호텔용 建築資材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폐지(조감법 §76)

마. 서울올림픽의 마무리지원

○ 國民體育振興財團이 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재산을 인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 면제 신설(조감세 §81)

○ 올림픽경기물품으로 수입한 물품을 5년 이내에 처분시 特別消費稅 및 關稅 추징면제규정을 보완(조감법 §79)

바. 農·畜·水協單位組合에 대한 예탁금의 비과세대상을 당해조합원 및 준조합원으로 한정(조감령 §2)

* 준조합원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법 제22조의2제1항제2호, 축협법 제19조제1항제2호 및 수협법 제26조의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조합을 말한다.

사. 地方移轉企業이 구공장 양도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보완(조감령 §36⑥)

從 前	改 正
○ 個人企業이 구공장 양도시 양도소득세 전액면제 ○ 법인의 경우 기준면적 超過土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 배제	○ 個人事業者인 경우도 공업배치법 규정에 의한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하는 土地讓渡分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배제

1989년

◉ 법　　률 : 1989. 6.16. 법　　률 제 4128호(지방세법 부칙)
(시행일 : 1990. 1. 1.)
1989.12.30. 법　　률 제 4165호(시행일 : 1990. 1. 1.)
◉ 시 행 령 : 1989. 7. 4. 대통령령 제12750호(시행일 : 1989. 7. 4.)
1989.12.30. 대통령령 제12881호(시행일 : 1990. 1. 1.)
◉ 시행규칙 : 1989.12.30. 재무부령 제 1806호(시행일 : 1989.12.30.)
1990. 4.10. 재무부령 제 1822호(시행일 : 1990. 4.10.)

〈要　　約〉

○ 機關投資者가 국·공채를 보유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에 따라 法人稅를 일부 감면(50/100, 75/100)하고 개인이 500만원 이내의 國·公債를 보유하는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만 100분의 5의 저율로 分讓課稅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함과 아울러 中産層의 財産形成을 지원하도록 함.

○ 수도권안에 산업시설 및 기업활동이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고,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企業이 地方移轉을 유도함과 아울러 地方産業의 經營與件向上을 지원하기 위하여

- 수도권안에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본사건물을 취득한 경우 일반 減價償却範圍額의 50%범위안에서 特別償却을 허용함.
- 지방으로 이전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이후 3년간은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그후 2년간은 소득세·법인세 100분의 30을 減免하는 제도를 신설함.
-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事業用 資産價額의 100분의 10의 범위안에서 投資準備金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이전촉진권역안에서 創業하는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그외 수도권지역에서 창업하는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에 대하여도 창업연도와 그후 3년간은 소득세·법인세의 50%, 그후 2년간은 30%로 減免을 대폭 축소함.
- 향후 수도권안에서 創業·增設投資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투자세액공제, 특별감가상각 등 조세감면을 배제하고, 수도권안에서 조성한 土地 등을 양도하거나

수도권안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讓渡所得稅의 減免을 배제하도록 함.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진 기존의 업종을 폐지 또는 축소하고 事業轉換對象業種으로 전환 또는 추가하는 경우 事業轉換日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년간은 전액(사업전환 대상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50%), 그 다음 2년간은 50%(사업전환 대상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30%)를 감면함.

○ 國際貿易産業博覽會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를 公共法人으로 지정하고, 동 위원회가 영위하는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소득을 박람회 개최의 準備·運營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이를 全額 損費로 인정하며, 국제무역산업박람회에 참가하는 기업이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100만원의 범위안에서 이를 損費로 산입하도록 함.

○ 投資促進 및 技術開發 支援을 위하여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허용기간을 投資着手時期에 관계없이 1990. 6. 30까지 투자분으로 연장함.

— 技術開發準備金 설정시 우대되는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를 8종 62개에서 10종 99개 품목으로 확대함.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技術·人力開發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 기술인력개발비 稅額控除 對象費用에 포함시킴.

— 技術開發準備金 使用基準에 민간생산기술연구소 등에 대한 출연금,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出資金 등을 포함시킴.

— 中小企業의 老朽施設 改替를 위한 시설투자의 범위를 내용연수가 100분의 80 이상 경과된 것(종전 :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확대함.

— 특정설비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에너지 절약시설 및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를 조정하고, 特定設備 投資稅額 控除對象에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확장한 시설을 포함함.

○ 其他 改正事項

— 어촌계에 대한 預託金 利子所得의 비과세 수혜대상에 준계원을 포함.

— 소득세가 15%로 분리과세 源泉徵收되는 복표당첨소득에 체육복표를 추가함.

—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외 14개 法人을 公共法人으로 추가 지정함.

— 시·읍승격, 직할시 편입 등 行政區域 改編에 따라 대도시지역을 정리함.
○ 공공사용토지의 양도에 대한 감면의 축소, 각종의 감면요건 강화 등 양도세와 관련한 사항을 조정·보완한다.
○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국민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의 개정을 한다.

〈改正內容〉

1. 漁村契에 대한 預託金利子所得의 非課稅 受惠對象에 準契員을 포함(規則 §1의2)

어촌계의 성격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단위농업협동조합에 해당되므로 과세형평상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이 配當金에 대한 비과세 對象者의 범위에 어촌계의 準契員을 추가로 포함시킴.

2. 低率 分離課稅되는 少額家計貯蓄의 範圍擴大(規則 §1의3)

투자신탁회사의 國·公債型 證券投資信託을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만 5%의 세율로 저율분리과세하는 少額家計貯蓄의 범위에 추가시켜 소득수준의 상승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金融商品 選好傾向에 부응함과 아울러 국·공채의 수요기반 확충을 도모하였다. 여기서 國·公債型 證券投資信託이라 함은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국·공채(국채, 지방채, 통화안정증권, 금융채를 말함)를 그 발행자로부터 인수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稅金優待額家計貯蓄

구분	저축기관		세금우대대상저축			종합통장
			거치식저축	적립식저축	대출목적저축	
종전	○銀行(산업은행, 장기신용은행 및 농·수·축협 중앙회 포함)	일반	○정기예금	○정기적금 ○가계우대 정기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세금우대 종합통장
		신탁	○불특정 금전신탁	○적립식 목적신탁		
	○郵遞局		○정기예금	○정기적금		○세금우대 체신예금 종합통장
	○相互信用金庫		○차입금		○신용부금	○세금우대 상호신용 금고종합 통장
추가	○證券投資信託業法에 의한 委託會社		○거치식 수익증권 저축	○적립식 수익증권 저축		○세금우대 수익증권 저축종합 통장

3. 債券市場 活性化를 위한 債券利子所得에 대한 減免制度 新設

通貨管理 및 財政需要의 충족 등을 위해 국·공채의 발행규모가 날로 증대되어 감에 따라 債券市場의 需要基盤을 확충함과 아울러 채권의 長期保有를 유도함으로써 채권시장의 장기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관투자자와 個人投資者의 국·공채의 長期保有利子所得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다.

가. 機關投資者의 債券利子所得에 대한 法人稅 減免(法 §4의3, 令 §2의5, 規則 §1의6)

(1) 槪 要

기관투자자가 國·公債를 일정기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일부 감면하는 제도로서, 이는 實勢金利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는 국·공

채에 대하여 기관투자자의 채권인수에 따른 損失補塡 및 資金負擔을 완화함으로써 국·공채의 원활한 소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 機關投資者의 範圍(法令 §23의3①)

①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②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
③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④ 한국외환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외환은행
⑤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⑥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⑦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⑧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⑨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⑩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상호신용금고
⑪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⑫ 국민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은행
⑬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⑭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⑮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⑯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⑰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⑱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당해 기금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⑲ 법률에 의하여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

* ⑫~⑲ : 1989. 12. 30 추가신설
* ⑱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71호(23개 법인)
* ⑲ :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72호(7개 법인)

(3) 減免對象 債券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법 §4의2①II)
②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通貨安定證券(영 §2의3①)
③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산업금융채권(규칙 §1의4①)
④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하는 장기신용채권(규칙 §1의4①)
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중소기업은행이 발행하는 중소기업금융채권(규칙 §1의4①)

⑥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한국주택은행이 발행하는 주택채권(규칙 §1의 4①)

⑦ 한국외환은행법폐지법률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국환금융채권(규칙 §1의4①)

(4) 減免對象 利子所得

① 상환기간이 1년 미만인 국·공채(단기채) : 발행일부터 상환일까지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② 상환기간이 1년 이상인 국·공채(장기채) : 발행일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함으로써 발생한 이자와 할인액

③ 장기채를 발행일부터 1년 이상 보유하고 중도에 양도한 경우에는 중도매매차익 중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

* 법인세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준비금을 설정한 利子所得은 제외함

(5) 減免稅額의 計算方法

(가) 基本計算式

○ 法人稅 減免稅額 = 법인세 산출세액 × $\frac{\text{감면대상이자와 할인액}}{\text{총수입금액}}$ × 감면비율

($\frac{50}{100}$, $\frac{75}{100}$)· 이 경우 $\frac{\text{감면대상이자와 할인액}}{\text{총수입금액}}$ 은 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 이와같은 한도를 둔 것은 주로 非營利法人인 기관투자자의 경우 감면대상 利子相當額이 총수입금액(예 : 중도매매차익만 있는 경우)보다 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당해 총수입금액을 한도로 減免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나) 事例別 減免稅額의 計算方法

과세방법	채권의 상환기간	이자지급방법	중도양도여부	비고(사례)
과세표준신고에 의한 감면	단기채 (1년 미만)	만기일시지급	중도양도	세제지원배제
			만기보유	①
		수시지급	중도양도	세제지원배제
			만기보유	②
	장기채 (1년 이상)	만기일시지급	중도양도	③
			만기보유	④
		수시지급	중도양도	⑤
			만기보유	⑥
원천징수분리과세 방법선택시의 감면	단기채 (1년 미만)	만기일시지급	중도양도	세제지원배제
			만기보유	⑦
		수시지급	중도양도	세제지원배제
			만기보유	⑧
	장기채 (1년 이상)	만기일시지급	중도양도	원천징수분리과세방법선택불가
			만기보유	⑨
		수시지급	중도양도	⑩
			만기보유	⑪

* ○ 사업연도 : 1.1~12.31
  ○ 수시이자지급 국·공채: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것을 가정

[事例 ①]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단기채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課稅標準申告에 의해 당해이자소득을 감면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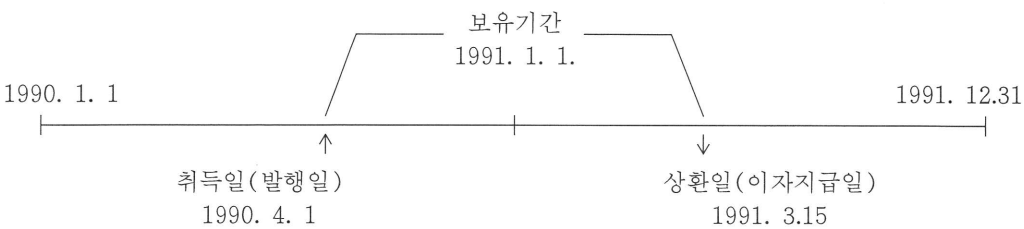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0사업연도)

— 減免稅額

○ 1991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1991감면대상이자}}{\text{1991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times \frac{50}{100}$

[事例 ②]

중도에 이자가 지급되는 短期債를 만기까지 보유하고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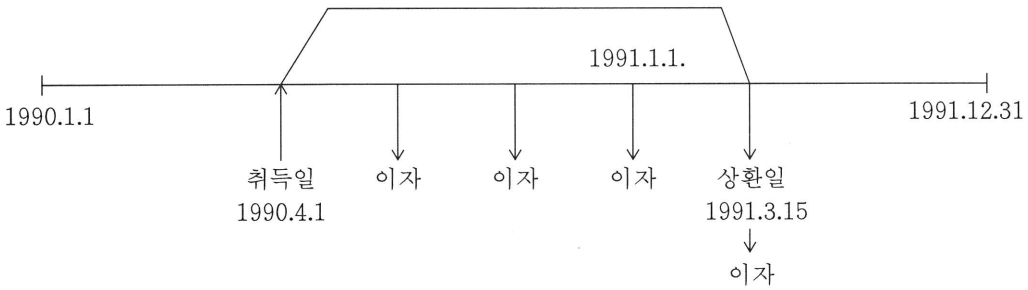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인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1)

— 減免稅額

○ 1991사업연도분 … 1991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1991감면대상이자}}{\text{1991총수입금액}} \times \frac{50}{100}$$

○ 1990사업연도분 … 1990법인세 산출세액

$$\times \frac{\text{1990감면대상이자}}{\text{1990총수입금액}} \times \frac{50}{100}$$

※ 1990사업연도분이라 함은 1991사업연도에 감면요건이 충족됨으로써 1990사업연도에 감면받지 못한 이자를 말하며, 1990사업연도분 감면세액도 1991사업연도의 法人稅 申告期限內에 감면 신청을 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이하 같다).

[事例 ③]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長期債를 중도에 양도하고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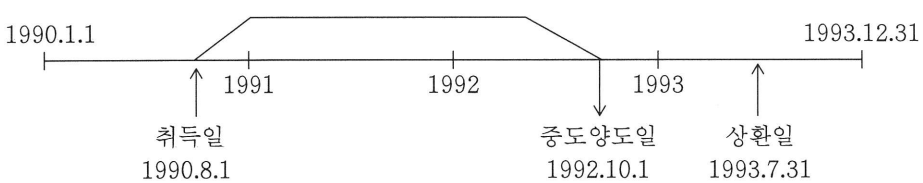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중도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1992)

— 減免稅額

○ 1992법인세 산출세액 × $\frac{\text{보유기간 이자상당액}}{\text{1992총수입금액}}$ × $\frac{75}{100}$

[事例 ④]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長期債를 滿期까지 보유하고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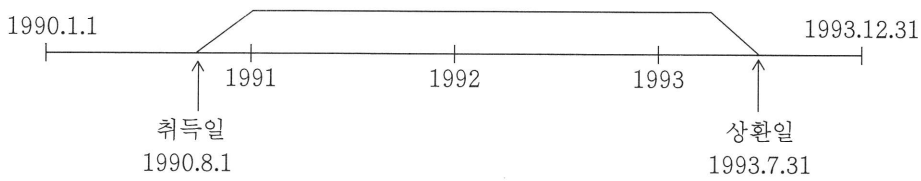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3)

— 減免稅額

○ 1993법인세 산출세액 × $\frac{\text{1993감면대상이자}}{\text{1993총수입금액}}$ × $\frac{75}{100}$

[事例 ⑤]

중도에 이자가 지급되는 長期債를 中途·讓渡하고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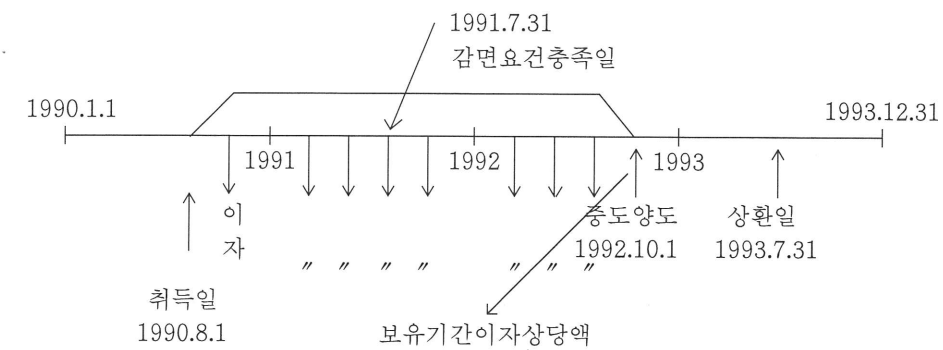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최초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1991)

○ 그 이후 중도양도일까지의 매 사업연도(1992)

— 減免對象

○ (1991사업연도)=1991산출세액 $\times \frac{\text{1991감면대상이자}}{\text{1991총수입금액}} \times \frac{75}{100}$

○ (1990사업연도)=1990산출세액 $\times \frac{\text{1990감면대상이자}}{\text{1990총수입금액}} \times \frac{75}{100}$

○ (1992사업연도)=1992산출세액 $\times \frac{\text{1992감면대상이자+보유기간이자상당액}}{\text{1992총수입금액}} \times \frac{75}{100}$

[事例 ⑥]

중도에 이자가 지급되는 長期債를 滿期까지 保有하고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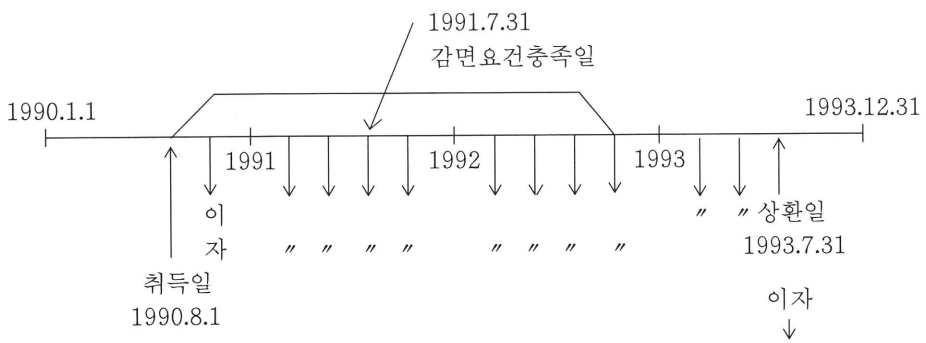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최초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1991)

○ 그 이후 상환일까지의 매 사업연도(1992·1993)

— 減免稅額

○ (1991사업연도)=1991산출세액 $\times \frac{\text{1991감면대상이자}}{\text{1991총수입금액}} \times \frac{75}{100}$

(1990사업연도)=1990산출세액 $\times \frac{\text{1990감면대상이자}}{\text{1990총수입금액}} \times \frac{75}{100}$

○ (1992, 1993사업연도)=산출세액 $\times \frac{\text{감면대상이자}}{\text{당해연도 총수입금액}} \times \frac{75}{100}$

[事例 ⑦]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短期債를 滿期까지 保有하고 원천징수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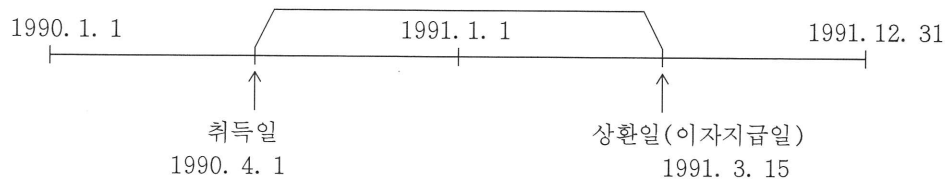

— 源泉徵收

○ 이자지급시점에서는 정상적으로 원천징수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1)

— 減免稅額(환급세액)

○ 원천징수된 법인세액 $\times \frac{50}{100}$

○ 방위세는 원천징수세율을 기준으로 할증(이하 원천징수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같음)

[事例 ⑧]

중도에 이자가 지급되는 短期債를 滿期까지 保有하고 원천징수분리과세 방법을 선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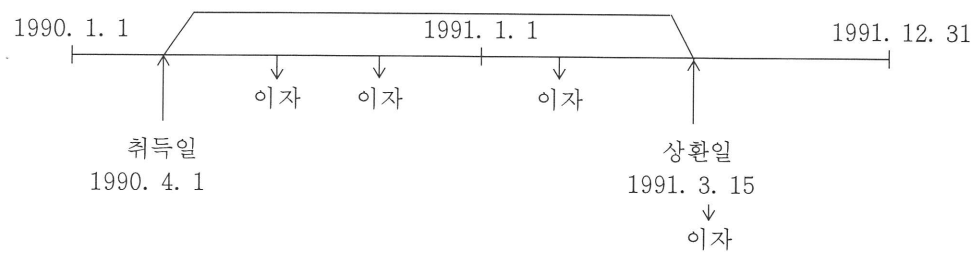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1)

— 減免稅額

(1991원천징수법인세액 + 1990원천징수된 법인세액 중 1990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분)$\times \frac{50}{100}$

[事例 ⑨]

만기에 이자가 지급되는 長期債를 滿期까지 保有하고 원천징수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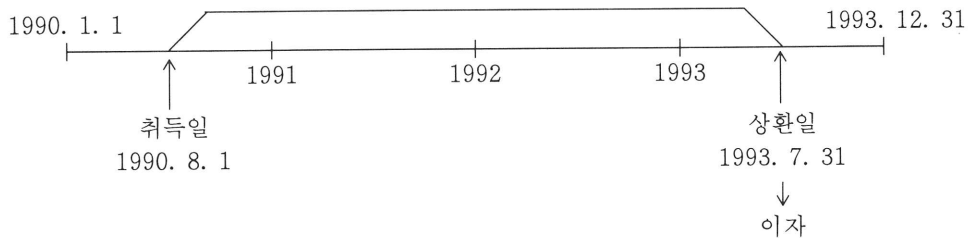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3)

— 減免稅額

○ 1993원천징수 법인세액 × $\frac{75}{100}$

[事例 ⑩]

중도에 이자가 지급되는 長期債를 中途·讓渡하고 원천징수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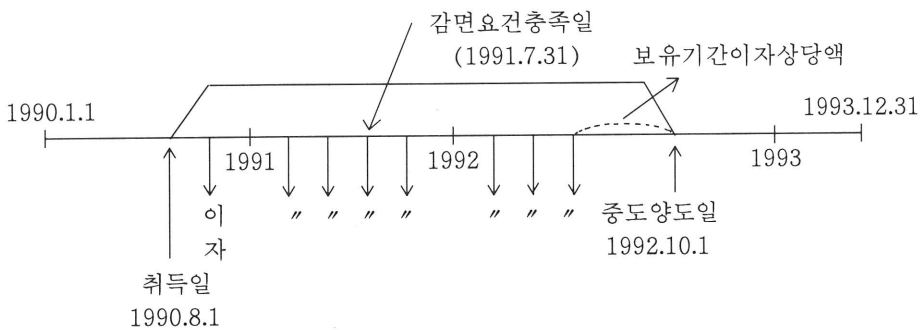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최초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1991)

○ 그 이후 중도양도일까지이 매 사업연도(1992)

— 減免稅額

(1991사업연도)

(1991원천징수법인세액 + 1990원천징수 법인세액 중 1990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분) × $\frac{75}{100}$

○ 1992원천징수법인세액 × $\frac{75}{100}$

※ 1992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감면이 가능 [事例 ⑪]

중도에 이자가 지급되는 長期債를 滿期까지 保有하고 과세표준신고에 의해 감면받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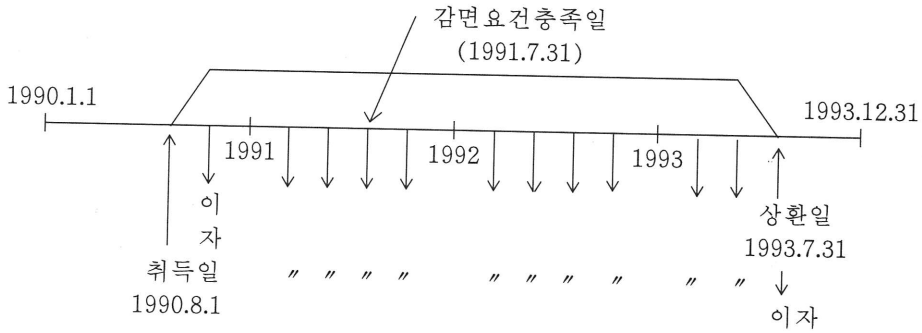

— 減免對象 事業年度

○ 최초로 감면요건이 충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1991)

○ 그 이후 상환일까지의 매 사업연도(1992, 1993)

— 減免稅額

(1991사업연도)

○ (1991원천징수법인세액 + 1990원천징수법인세법 중 1990사업연도에 신고하지 않은 분) × $\frac{75}{100}$

(1992, 1993사업연도)

○ 당해연도 원천징수법인세액 × $\frac{75}{100}$

㈐ 減免節次

① 法人稅 課稅標準申告에 의해 減免받는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관할세무서장에게 減免申請을 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인 稅額減免申請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수시이자지급 국·공채의 이자소득에 대한 稅額의 減免은 보유기간이 1년이 경과된 후에 행하되 그 감면세액은 當該 利子所得이 발생한 사업연도별로 계산하는 것이며 따라서, 최초로 減免要件이 충족된 사업연

도에 당해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분의 감면 대상이자에 대하여 각각 減免申請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의 감면에 따라 환급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6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源泉徵收 分離課稅方法으로 減免받고자 하는 경우

감면받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法人稅課稅標準申告期限內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원천징수된 세액 중 감면받고자 하는 세액을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인 源泉徵收 分離課稅 稅額減免申請書에 의거 환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환급절차에 대하여도 국세기본법 제6장의 환급규정이 준용된다.

〈適用例〉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90. 1. 1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업금융채권 등 5개 금융채에 대하여는 1990. 4. 10이후 발생하는 것부터 적용함.

나. 個人의 少額債券 利子所得에 대한 所得稅 減免

(1) 槪 要

개인이 장기보유한 少額債券 利子所得에 대하여 소액가계저축과 같이 소득세만 100분의 5로 低率 分離課稅하는 제도로서, 개인에 대하여도 채권투자의 유인을 부여하여 채권의 수요기반을 확충함과 아울러 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개인의 少額債券 利子所得에 대한 減免制度를 새로이 신설하였다.

(2) 減免對象 債券

국채·지방채·통화안정증권 및 산업금융채권 등 금융채로서 機關投資者의 경우와 동일함.

(3) 稅制支援要件

㈎ 금액한도

액면금액기준 500만원 이하의 國·公債에 한하여 그 이자소득을 감면하며 500만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한도내의 금액도 減免받을 수 없다.

㈏ 1인1통장(등록)

전금융기관을 통하여 1인1통장 또는 1등록으로 보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重複通帳(등록)이 있는 경우는 가장 먼저 開設하거나 등록한 分만 減免받을 수 있다.

㈐ 取得方法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업허가를 받은 법인으로 부터 還賣期間에 따른 사전약정이율을 적용하여 還買受 또는 還賣渡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득(예 :

환매채)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 實名要件

소액가계저축과 같이 實地名義에 의해 개설 또는 등록하여야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 預託 또는 登錄要件

당해 國·公債를 다음 절차에 의해 예탁 또는 등록하고 계속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減免받을 수 있다.

① 預託하는 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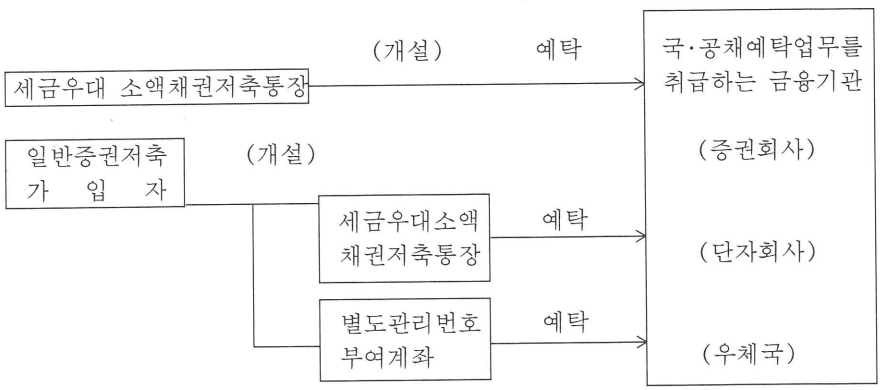

② 登錄하는 방법

국채법 및 공사채등록법의 규정에 의하여 債券證書를 발행하지 않고 등록하는 방법. 채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필증에 의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4) 減免稅額 計算方法

隨時利子支給 國·公債의 경우 이자가 지급되는 시점에서 세금우대를 적용하여 源泉徵收를 하고, 상환일 이전에 인출하거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에는 追徵한다. 또한 국·공채를 중도에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을 안분하여 減免稅額을 적용하고, 保有期間 以前分에 대하여는 일반세율을 적용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5) 減免節次

국·공채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 少額債券貯蓄 減免申請書를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국·공채의 예탁 또는 등록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국·공채

예탁(등록)명세서를 분기종료일 다음달 말일까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適用例〉

조세감면규제법 시행일인 1990. 1. 1이후 최초로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산업금융채권 등 5개금융채에 대하여는 1990. 4. 10이후 발행하는 것부터 적용함.

〈개인의 少額債券 利子所得에 대한 稅金優待 適用事例〉

○ 상환기간:3년
○ 이자총액(단리계산의 경우) : 3,000] 으로 가정

① 滿期에 이자가 지급되는 債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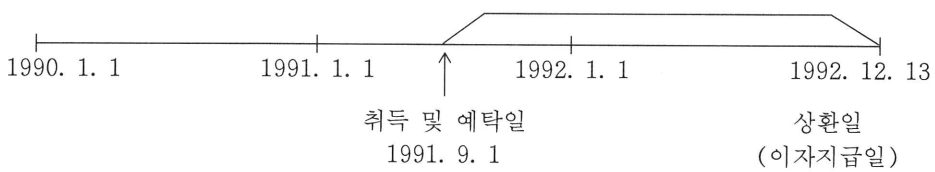

— 원천징수세액

○ 세금우대분(보유기간분)

$$3{,}000 \times \frac{487}{1{,}095(365 \times 3)} \times 5\% = 66$$

○ 일반분

$$3{,}000 \times \frac{608}{1{,}095} \times 16.75\% = 279$$

② 中途에 이자가 지급되는 債券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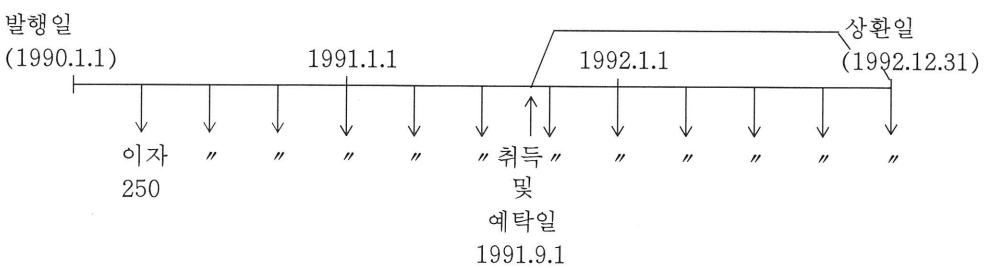

— 원천징수세액

○ 1991. 9. 30. 이자지급분

• 세금우대분

$$250 \times \frac{30}{92} \times 5\% = 4$$

· 일반분

$$250 \times \frac{62}{92} \times 16.75\% = 28$$

○ 1991. 12. 31이후의 매이자지급분 : $250 \times 5\% = 12$

4. 地域均衡發展을 위한 稅制支援制度의 補強

지금까지 企業의 地方移轉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 손금산입제도, 지방이전을 위해 구공장이나 본사 사무소를 처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지방으로 이전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공장과 법인 본사사옥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制度, 지방이전 신공장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지방이전 법인에 대한 법인등록세 면제 등 여러가지 지원제도를 시행하여 왔으나, 이번에 이를 더욱 강화시키기 위하여 수도권 내에서 새로이 創業하거나 增設投資를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외자도입법상의 조세감면을 배제 또는 축소함으로써 수도권에 産業施設 및 企業活動이 집중되는 현상을 억제하고 수도권 내에 소재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한편, 地方移轉 企業 및 地方所在 企業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여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상대적으로 제고시킴으로써 地域間 隔差解消와 均衡發展을 도모하도록 함.

가. 都市圈 안의 技術集約型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減免 排除·縮小(法 §15)

(1) 從前의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

(가) 創業中小企業의 類型

① 농어촌지역(경기도를 제외한 郡地域 및 인구 20만 이하의 일부 시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② 技術集約型(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별표2) 창업중소기업(지역제한 없음)

(나) 稅制減免 內容

① 소득세·법인세 :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후 3년간은 전액 감면, 그후 2년간은 50% 감면

② 취득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50% 감면

③ 등록세 :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부동산에 대하여 50% 감면

④ 재산세 : 창업일로부터 5년간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50% 감면

(2) 改正內容

(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移轉促進圈域 안에서 창업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일체의 조세감면을 배제함.

(나) 수도권정비계획법상 制限整備圈域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와 그후 3년간은 소득세·법인세의 50% 감면, 그후 2년간은 30%로 감면의 폭을 축소함.

首都圈整備計劃法上 移轉促進圈域

서울특별시, 의정부, 구리시, 미금시, 하남시, 고양군, 양주군 주내면·백석면·장흥면, 포천군 소흘면, 남양주군

※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시행령 별표8의 수도권)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移轉促進圈域과 制限整備圈域을 합한 地域과 동일함.

〈適用例〉

1989. 12. 31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創業中小企業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나. **首都圈 外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法人本社의 特別減價償却 許容新設**(法 §43의3, 令 §37의3)

(1) 適用要件

수도권 안에 本店 또는 主事務所를 둔 법인이 수도권 외의 地域으로 移轉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垈地와 建物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先讓渡 後移轉)

(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수도권 안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垈地와 建物을 양도하는 경우(先移轉 後讓渡)

(2) 適用時期

(가) 先讓渡 後移轉의 경우 : 이전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부터 적용

(나) 先移轉 後讓渡의 경우 : 수도권 안의 본점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事業年度부터 적용

(3) 特別減價償却費 計上範圍

$$\boxed{\text{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건물에 대한 일반감가상각 범위액}} \times \frac{50}{100} \times \frac{\text{당해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text{당해건물의 연면적}}$$

(4) 適用中止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移轉한 법인본사 社屋에 대하여 특별감가상각비를 損金으로 계상하는 법인이 수도권안에 당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1의 기준 이상의 事務所를 둔 경우, 당해 사무실을 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事務職 從業員數가 수도권외로 이전하기 전에 수도권안에 사무소에 근무하던 사무직 종업원수(이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간 매월말일 현재 근무하는 평균종업원수로 한다)의 100분의 25

(나) 150㎡ + (수도권외로 이전한 후의 수도권안의 사무소에 근무하는 사무직 종업원수 × 10㎡)

(5) 重複支援 排除 및 租稅支援 綜合限度

(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법인본사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법인본사 지방이전 투자세액공제와 이 규정에 의한 특별감가상각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法 87⑨)

(나)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종합한도의 대상임.

다. 首都圈 外의 地域으로 移轉하는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新設(法 §43의4, 令 §37의4)

(1) 適用要件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으로서 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操業停止命令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경우

(가) 당해공장을 首都圈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타인에게 讓渡하거나 구공장에 남아있는 공장시설을 전부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先移轉 後讓渡)

(나) 首都圈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공장시설을 갖추고 조업을 한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新工場을 새로이 건설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舊工場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여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을 개시할 것.(先讓渡後移轉)

(2) 減免內容

首都圈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함.

(3) 減免申請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課稅標準申告時 재무부령에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4) 其他要件

(가) 區分經理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租稅特例를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의 기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함.

(나) 重複支援 배제

이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지방이전사업 투자세액공제,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投資稅額控除 適用이 배제된다. 또한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외자도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조세감면, 농공지구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또는 事業轉換中小企業에 대한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음.

(다) 企業合理化積立金의 積立

당해 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企業合理化積立金으로 적립하여야 함.

라. 首都圈外의 地域에 소재하는 企業의 投資準備金 損金 算入 制度新設(法 §43의5)

(1) 適用對象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生産施設을 갖추고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中小企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법인의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법 §13 적용)

(2) 損金算入 範圍

$$\boxed{\text{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용자산의 장부가액}} \times \frac{\text{사업연도월수}}{12} \times \frac{10}{100}$$

※ 사업용자산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표(갑)에 해당하는 설비(운휴중에 있는 것은 제외함)

(3) 準備金의 使用基準

(가) 使用期限

당해 投資準備金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

(나) 使用範圍

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事業用資産의 신규취득 또는 개체 등 자본적 지출에 사용하여야 함.

(4) 益金算入

(가) (3)의 使用基準에 따라 사용한 준비금은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당해 사업연도 월수/36을 곱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나) (3)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다) 다음의 각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準備金計定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①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②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에 당해 投資準備金計定의 금액을 인계한 경우는 제외한다.

(5)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

(4)의 (나) 및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投資準備金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과 이자율을 적용한 利子相當加算額을 추정한다.

(가) 기간 :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로부터 당해 투자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나) 이자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의3에 규정하는 율(일변4전)

(6) 投資準備金 明細書 提出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산입하고자 하는 내국인은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2(2)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등투자준비금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7) 重複支援 排除 및 租稅支援 綜合限度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투자준비금, 광업투자준비금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종 特別減價償却 및 準備金을 합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특별감가상각비 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을 말함)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法 § 88①)

마. 首都圈안의 新·增設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 등 新說(法 §43의6, 令 §37의5)

(1) 首都圈안의 新說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法 §43의6①)

(가) 排除對象

1990. 1. 1이후 수도권 안에서 創業(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사업장을 新設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首都圈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

(나) 適用 排除되는 規定

① 조감법 제14조(중소기업 특별감가상각)

② 조감법 제18조(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 및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또는 일시감가상각)

③ 조감법 제25조(수출사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④ 조감법 제32조(외국항행사업용 항공기·선박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⑤ 조감법 제36조(광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⑥ 조감법 제40조(방위산업·항공공업용 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⑦ 조감법 제71조제1항(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또는 일시감가상각)

⑧ 조감법 제72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⑨ 조감법 제72조의2(사원용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⑩ 조감법 제72조의5(기숙사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2) 首都圈안의 增設投資에 대한 租稅減免排除(法 §43의6②)

(가) 排除要件

1990. 1.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내국인이 수도권안에 所在하는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 다만, 기존의 사업용 고정자산을 代替하기 위한 투자는 제외한다.

(나) 適用 排除되는 規定

① 조감법 제14조(중소기업 특별감가상각)

② 조감법 제18조제1항(신기술기업화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또는 일시감가상각)

③ 조감법 제71조제1항제1호(생산성 향상을 위한 施設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다) 例外規定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다음의 공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공업단지관리법 시행령 별표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②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③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④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지지구

(3) 首都圈안의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한 租稅特例適用制限 新設(法 §43의6③④)

(가) 수도권안에서 創業하거나 새로이 사업장을 新設하는 경우

1990. 1. 1이후 수도권안에서 創業하거나 새로이 사업장을 新設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租稅減免을 하지 아니한다.

(나) 1990. 1. 1 전부터 수도권안에서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外國人投資企業이 1990. 1. 1 이후 증자를 한 경우 수도권(나.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은 제외함)안에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증자분에 대한 외자도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바. 地方移轉 法人本社 建物에 대한 投資稅額控除額의 追徵條項 新設(令 §37의2④)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법인본사 또는 主事務所를 이전하여 이전후의 地方所在 法人本社 또는 주사무소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를 받은 법인이 수도권 안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기준 이상의 사무소(Ⅳ. 2라. 적용중지 참조)를 둔 때에는 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이전 법인본사 건물에 대한 特別減價償却의 경우와 형평을 기하도록 하였다.

5. 中小企業의 構造調整促進을 위한 支援制度 新設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産業構造의 高度化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이 취약해진 기존의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創業에 준하는 租稅支援惠澤을 부여함.

가. 事業轉換 中小企業에 대한 法人稅 등 減免(法 §45의3)

(1) 適用對象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의 經營安定 및 構造調整促進에 관한 特別措置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전환계획에 따라 사업을 전환하는 자

(2) 支援內容

(가) 기존의 업종을 讓渡 또는 廢止하고 새로운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세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말함)으로 전환하는 경우

① 減免要件

사업전환 승인(사업전환 희망자의 신청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업종을 양도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② 減免內容

事業轉換日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당해 轉換事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나) 기존의 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① 減免要件

사업전환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事業轉換 承認日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 이하로 기존의 업종규모를 축소하고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總賣出額의 100분의 7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 減免內容

事業轉換日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당해 전환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이 경우 旣存業種의 매출액이 사업전환의 승인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나 새로이 추가한 업종의 매출액이 總賣出額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과세연도에는 조세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이때 사업전환일이라 함은 가)의 減免要件을 충족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3) 減免申請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세액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其 他

기존의 업종과 새로운 업종을 區分 經理하여야 하며, 減免稅額에 相當하는 금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은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法 §43의4, Ⅳ. 3. 참조)와 동일하다.

6. 國際貿易產業博覽會 개최에 대한 稅制 支援制度 新設

1993년 8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 대전직할시 대덕연구단지에서 國際貿易產業博覽會를 개최할 예정으로 국제무역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정부의 예산지원과 각 행정부처의 지원하에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조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서울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지원과 같은 수준으로 稅制支援을 함과 동시에 무역박람회에 참가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필요한 稅制支援制度를 마련하였다.

가. 國際貿易産業博覽會 組織委員會에 대한 支援

(1) 내국인이 박람회조직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과 출연금에 대하여는 당해 과세연도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전액 損金算入 허용함(法 §49②).

(2)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당해 收益事業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당해 사업연도의 所得金額範圍 안에서 이를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法 §49④).

(3) 박람회조직위원회가 박람회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서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關稅 면제(法 §74, §75, §83).

(4) 박람회조직위원회가 작성하는 문서에 대한 印紙稅 免除(法 §81)

(5) 박람회조직위원회를 저율의 法人稅率이 적용되는 공공법인으로 지정함(별표 112호).

나. 國際貿易産業博覽會 參加準備金의 損金算入(法 §54의3)

(1) 適用對象

박람회조직위원회와 展示參加契約을 체결한 법인

(2) 準備金 設定期間

1990.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1992.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3) 準備金 設定範圍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당 100만원

(4) 支出費用과 相計

참가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참가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그 비용을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參加準備金과 먼저 상계하여야 한다.

(5) 益金算入

(가) 1993. 12. 31까지 국제무역산업박람회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事業用固定資産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1993.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사업연도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나) 손금에 산입한 참가준비금 중 박람회참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박람회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용 固定資産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준비금은 1993.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 박람회 참가준비금 계정의 금액이 있는 법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所得金額計算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準備金計定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① 전시참가계약이 해지된 때

② 당해사업을 폐업한 때

③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한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당해 參加準備金計定의 금액을 인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6)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

(5)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에 당해 投資準備金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세액과 법인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과 이자율을 적용한 利子相當加算額을 追徵한다.

㈎ 기간 : 당해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당해 投資準備金을 익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 이자율 : 일변 4전

다만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종료후 폐업하거나 해산한 경우로서 국제무역산업박람회의 참가를 위하여 필요한 事業用固定資產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7) 參加準備金明細書 등 提出

참가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참가준비금 명세서(1993. 12. 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있어서는 참가준비금 사용명세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8) 租稅支援 綜合限度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지원 종합한도의 적용을 받는다.

7. 投資促進 및 技術開發 支援 擴大

가. 臨時投資稅額 控除 制度 限時的 運用(令 §57의2)

원貨切上·賃金上昇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기업가들의 투자마인드가 크게 위축되고, 특히 製造業分野에 있어서 투자 및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있어 세제면에서 제조업·광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1989. 7.1부터 臨時投資 稅額控除制

度를 실시하였다.

투자의 조기착수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9. 12. 31까지 투자착수분에 한하여 1990. 6. 30까지의 투자금액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를 허용하도록 하였으나 그간의 경제여건에 비추어 지속적인 投資促進支援策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1989. 12. 31까지 투자에 착수하였는지 여부에 불구하고 1990년 상반기까지 투자한 것이 대하여는 모두 稅額控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1989. 7. 4개정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 대상업종 : 제조업·광업
- 대상자산 : 사업용기계장치(중고품은 제외)
- 세액공제율 : 투자금액의 10%(외국산 : 3%)
- 실시기간 : 1989. 7.1~1990. 6.30(1년간)

1989. 12. 30개정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從前(1989. 7. 4 개정)	改 正
실시기간 : 1989. 7. 1~1990. 6. 30 1989. 12.31까지 투자 착수분에 한함	실시기간 : 1989. 7. 1~1990. 6. 30 (투자착수기간제한 규정 삭제)

나. 技術集約的 産業의 範圍擴大(令 별표 4)

기술개발준비금 설정시 우대되는 技術集約的 産業의 範圍를 현행 8종 62개 품목에서 10종 99개 품목으로 대폭 확대조정하여 첨단산업 등의 기술개발을 위한 稅制支援의 폭을 확대하였다.

〈추가된 품목〉

○ 기계공업 : 반도체장비, 정밀금형 등
○ 전기공업 : 고주파제어방식 용접기, 진공차단기용 밸브 등
○ 정밀화학 : 기능성 색소, 염·안료 중간제 등
○ 신소재산업 : 제진합금, 자성자료, 초고인성 합금 등
○ 석유화학 : 고순도 페놀아세톤, 에폭시 등

※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확대적용
- 일반산업 : 수입금액의 1.5%와 소득금액의 20% 중 많은 금액
- 기술집약적산업 : 수입금액의 2%와 소득금액의 30% 중 많은 금액

다.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範圍 擴大(令 별표 5)

(1) 연구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등 일부 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技術開發準備金의 사용기준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基準 範圍에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民間生産技術硏究所에 대한 출연금을 포함시켰다.

(2) 기술집약적 중소기업의 創業支援資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을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출자금과 같이 技術開發準備金 使用基準에 포함시킴.

[별표 5] 技術開發準備金의 使用基準

구 분	비 용	
	從 前	改 正
1.~5.	(생략)	(종전과 같음)
6. 연구기관의 육성	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에 대한 출연금	가. (종전과 같음)
	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를 연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출연금	나. (종전과 같음)
	〈신 설〉	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출연금
7.·8.	(생략)	(종전과 같음)
9. 신기술사업금융회사 등에의 출자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대한 출자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금
10.	(생 략)	(종전과 같음)

라. 大企業이 中小企業의 技術·人力開發을 위하여 支出하는 費用에 대하여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 許容(令 별표 6)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協業關係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의 기술수준을 향상시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지도·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 對象費用에 포함시켰다.

[별표 6] 技術·人力開發 稅額控除를 適用받는 비용

구 분	비 용	
	從 前	改 正
1. 技術開發 2. 人力開發	(생 략) 가.~라.(생략) 〈추 가〉	(종전과 같음) (종전과 같음) 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이 아닌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마. 中小企業의 老朽施設改替를 위한 産業性向上 施設投資範圍 擴大(規則 §21⑥)

중소기업이 老朽施設의 改替를 위한 施設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외국산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등에서 공제하는 바(法 §71①) 그 투자세액 공제대상을 종전에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事業別固定資産(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事業別 固定資産 中 내용연수가 경과된 것으로 하던 것을 내용연수의 100분의 80 이상이 경과된 것으로 하여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從 前	改 正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耐用年數가 經過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한다)	제조업·광업에 직접 사용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및 장치)의 내용연수표(갑)의 사업별 고정자산 중 耐用年數의 100분의 80이 경과된 것을 개체하기 위한 기계장치(중고품을 제외한다)

바. 에너지節約施設의 範圍調整(規則 별표2)

特定設備投資 稅額控除對象이 되는 시설인 에너지節約 施設의 범위에 전동기·용접기 등 技術開發에 따라 보편화된 설비는 이를 제외하거나 해당요건을 강화하고 에너지절약형 분리농축장치 등 에너지절약효과가 큰 새로운 설비를 추가하였다.

- 除外例 : 전기사용설비류 중 전동기, 용접기, 고성능버너 등
- 追加例 : 에너지절약형 분리농축장치 등

〈適用例〉

1990. 4. 10 이후 최초로 투자가 완료된 것부터 적용하되, 改正規定에 의거 제외

된 시설로서 1990. 4. 10 현재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투자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함.

사. 產業災害 豫防施設의 範圍擴大(規則 별표4)

特定設備投資 稅額控除對象이 되는 시설인 產業災害 豫防施設의 범위에 소음방지장치 등 5종 11개의 시설 또는 설비를 추가하였다.

[例 : 소음방지장치, 시험전원차단장치, 검진기, 화학설비, 추락방지시설]

8. 非常對備業務 遂行을 위해 補強·擴張한 施設에 대한 租稅支援 新設

가. 適用對象

非常對備資源管理法의 규정에 의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가 정부의 시설보강 및 확장명령에 따라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보강 또는 확장한 시설(法 § 71①9)

나. 減免內容

○ 施設投資金額의 100분의 3(국산기자재의경우 100분의 10) 稅額控除 ┐선택
○ 당해자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국산기자재의 경우 100분의 50) 일시상각 ┘적용

다. 提出書類

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투자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投資計劃書를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세액공제신청서와 함께 시설의 보강 및 확장명령을 발한 주무부장관의 施設投資確認書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其 他

동일한 자산에 대한 重複支援排除,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 등의 사항은 다른 투자세액공제 제도와 동일하다.

9. 其 他

가. 外國에서 發行한 有價證券 讓渡差益에 대한 法人稅 등 免除條項 新設(法 §69 ⑦, 令 §55의1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外貨證券(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발행되는 외화증권을 말한다)을 非居住者 또는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그 방위세를 면제한다.

나. 分離課稅 源泉徵收(稅率 : 15%)되는 복표당첨소득의 範圍調整(令 §3)

발행이 중단된 올림픽복권 당첨소득을 삭제하고 서울올림픽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를 추가하였다.

從 前	改 正
,○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주택복권 당첨소득	○ 종전과 같음
○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지원법에 의하여 각 조직위원회가 발행하는 복권의 당첨소득	○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발행하는 체육복표 당첨소득

다. 公共法人의 추가지정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의 14개 법인을 公共法人으로 추가지정함.

公共法人의 範圍

從 前		改 正	
20	서울아시아경기대회·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서울올림픽대회조직위원회 및 대한체육회부설 서울아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와 재단법인 서울장애자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	〈삭제〉
88	한국정화운동조직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현대사회연구소	88	〈삭제〉

從 前		改 正	
	〈신 설〉	104	인삼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5	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부산교통공단
		106	독립기념관법에 의하여 설립된 독립기념관
		107	소비자보호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소비자보호원
		1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09	청소년육성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청소년연구원
		110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
		11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112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위원회지원법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 국제무역산업박람회조직원회
		113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114	통신개발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통신개발연구원
		115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산원
		116	모자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가족계획협회
		117	한국노동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노동연구원

10. 讓渡稅

가. 企業事業用 土地의 讓渡에 대한 減免 縮小(法 §57, §60, §66의3)

(1) 改正趣旨

그동안 個人에게 양도하는 경우보다 法人에게 양도하는 경우가 稅負擔이 무거워 土地所有者들이 법인과의 거래를 기피하는 여건에서 公共用地의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讓渡稅를 폭넓게 감면하여 왔으나, 1989. 8. 1 所得稅法 施行令

改正으로 법인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개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기준시가로 과세토록 함으로써 稅負擔이 대폭 경감되었고, 補償基準이 대폭 현실화되는 등의 여건이 변동되어 수용에 대한 조세감면의 필요성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고, 또한 事前協議買收에 대하여는 50%만 감면하면서 수용의 경우에는 전액 면제하는 현행 지원제도로는 수용을 유도하여 公共用地의 취득을 오히려 어렵게 하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을 뿐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아무리 공공정책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토지보유로 얻은 자본이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 과세형평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2) 調整된 減免內容

국가·지방자치단체에게 양도하는 경우와 사업시행 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이거나 사업시행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가 1천명 이상인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讓渡(收用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전액 면제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양도세를 50%만 감면토록 하였다.

※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대규모사업의 범위(§47, 규칙 §18)

○ 택지개발촉진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 : 100만㎡ 이상(다만, 당해사업지역에 국민주택만 건설할 경우:6만6천㎡ 이상)

○ 댐건설사업,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한 사업 : 165만㎡이상

토지개발공사·주택공사·도시개발공사(서울·대구)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50% 감면하는데 도시개발공사가 추가된 것은 설립목적이나 사업내용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와 동일하므로 課稅衡平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공공사업용지로 양도되는 토지가 양도일 현재 土地超過利得稅法의 규정에 의한 遊休土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감면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遊休土地 보유를 얻은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였다.

그러나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遊休土地 與否에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양도세를 전액 면제토록 하는 經過措置를 둠으로써 제도의 변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나. 國民住宅 建設用地의 讓渡에 대한 減免 縮小(法 §62, §66의3)

國民住宅 建設用地의 양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을 축소한 이유는 公共事業用地의 경우와 동일하다.

종전에는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이를 취득한 자가 3년 이내에 국민

주택을 건설하면 양도세는 환급하고, 주택공사·토지개발공사·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讓渡稅를 사전에 면제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事後還給制度를 폐지하고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를 50%만 감면토록 축소한 것이다. 주택공사나 토지개발공사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세가 50% 감면되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이 경우에도 公共事業用地의 경우와 같이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규정에 의한 遊休土地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세감면을 배제토록 하였다.

다. 土地開發公社·住宅公社의 土地 등 讓渡에 대한 減免縮小(法 §59)

토지개발공사 및 주택공사가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종전에는 法人稅法에서 特別附加價値稅를 비과세하였으나 동 규정을 삭제하고 租稅減免規制法에서 감면율을 50%로 축소하였는데 이는 다른 공공사업시행자와의 課稅衡平을 도모하고 공공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50%만 감면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과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도 特別附加稅의 50%를 감면함으로써 課稅衡平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라. 特別開發地域내의 林地讓渡에 대한 減免規定 등 廢止(法 §64, §65)

종전에 특수개발지역 내의 林地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50% 감면하고, 시내버스운송사업자가 사업개선명령에 의하여 이전할 목적으로 주차장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讓渡所得稅를 면제하였으나 이러한 감면제도의 실익이 적을 뿐만 아니라 임야가 投機行爲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감면제도를 폐지한 것이다.

마. 減免要件 強化

(1) 工場移轉에 대한 減免要件 強化(令 §36, §55의10)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거나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讓渡稅를 免除하면서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보다 작고 신공장의 면적도 구공장의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追徵하였으나

$$\text{면제세액} \times \left(1 - \frac{\text{신공장의 가액}}{\text{구공장의 가액}}\right)$$

이러한 減免制度가 양도세 부담의 회피목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만 讓渡稅를 면제하기 위하여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보다 작거나 신공장의 면적이 구공장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만큼 追徵토록 하였다.

○ 면제세액 × (1 − 신공장의 가액 / 구공장의 가액)
○ 면제세액 × (1 − 신공장의 면적 / 구공장의 면적)
→ 중 큰 금액

(2) 減免對象인 長期賃貸 住宅數 調整(法 §55의4)

법인이 5호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特別附加稅를 50% 감면(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개인의 경우에는 1호의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도 讓渡所得稅를 감면하였으나 세무관리가 어렵고 사실상 1세대다주택을 장려하게 되는 문제점 등이 있어 개인·법인 공히 5호 이상의 주택을 장기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만 讓渡稅가 감면되도록 하였다.

(3) 減免後 2年 이내 廢業時 減免稅額 追徵(法 §42 등)

대도시 안의 공장을 地方으로 이전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讓渡稅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 제도가 양도세부담의 회피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전 후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이러한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免除稅額을 追徵토록 하였다.

이러한 규정은 종전에 法人轉換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등에 일부 적용되어 왔으나, 이번에 대부분의 양도세 감면규정에 이러한 事後管理要件을 規定한 것이다. 다만, 土地收用法 등에 의하여 수용되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폐업 또는 工場處分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추징을 배제토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였다.

(4) 社會福祉法人·宗敎法人의 土地讓渡價額 使用目的 制限(法 §67의14)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되 學校法人의 경우와 같이 토지 등의 讓渡價額을 3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 減免稅額을 追徵하도록 하였다.

(5) 利子相當加算額의 追徵(法 §40의6 등)

대부분의 양도세 감면에 대하여는 減免條件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당초의 減免稅額만 추징하며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이 부당하게 감면받는 사례가 있어도 이에 대한 제재조치가 미흡하였다.

이번의 개정에서는 모든 양도세 감면에 대하여 감면세액 추징시에는 利子相當額을 가산하여 징수토록 함으로써 減免稅額에 해당하는 금액의 기간이익을 목적으로 감면제도가 변칙적으로 이용되는 사례를 방지토록 한 것인 바, 이 경우 利子相當加算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대상기간은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課稅標準申告期間의 다음날부터 추징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이며 적용률은 일변 4전이다.

利子相當加算額의 징수규정이 신설된 조문은 다음과 같다.

조 문	내 용	추 징 사 유
法 §42	공장의 지방이전	○ 지방이전을 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내에 폐업, 공장처분
法 §42의2	법인본사 지방이전	○ 지방이전을 하지 아니한 때 ○ 수도권 안에 일정규모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2년내 폐업 ○ 처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새로 취득한 자산을 2년 이내 처분
法 §44	중소기업간의 통합	○ 통합후 2년내 폐업 또는 취득자산 처분
法 §45	법인전환	○ 2년내 폐업 또는 현물출자자산 처분 ○ 5년내 주식 등의 50/100 이상 양도
法 §45의2	중소기업의 사업전환	○ 2년내 폐업 또는 전환자산 처분
法 §57	공공사업용 토지	○ 3년 이내에 공공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때
法 §58	도시재개발사업	○ 일정기한내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
法 §62	국민주택건설용지	○ 3년내(아파트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는 경우
法 §67의3	학교법인의 토지 등 양도	○ 3년내 일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法 §67의4	5년 이상 경영한 목장	○ 이전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내에 폐업, 처분
法 §67의7	2년 이상 가동한 공장(개인)	○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때 ○ 2년내 폐업 처분
法 §67의13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법인)	○ 대체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때 ○ 2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대체취득한 자산처분
法 §67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의 업무용 토지 등	○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 自耕農民에게 농지를 양도·증여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부터 추징규정이 있었음(法 §67의6).

바. 學校法人의 不動產讓渡에 대한 追徵要件 明確化(令 §55의3)

종전에 學校法人이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하고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特別附加稅를 면제하였는데 양도하는 토지 등이 교육사업용 재산인 경우에는 시행령에 使用用途의 제한이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의 규정과 상치되고 있었다.

따라서 법인세법상의 감면규정을 租稅減免規制法으로 이전하면서 양도자산의 종류에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3년 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만 特別附加稅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사. 首都圈 所在 不動產의 讓渡에 대한 讓渡稅 減免排除(法 §66의2)

공장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수도권 안에서의 이전을 포함)할 목적으로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하거나 수도권 안에서 대체취득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免除를 배제토록 하였다.

이 경우 旣得權의 침해가 없도록 1990년 1월 1일 이후에 取得한 토지 등에 대하여만 적용토록 하면서 법인전환·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기업이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수도권 내의 工業團地나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減免排除 規定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이 되도록 하였다.

〈適用例〉

① 公共事業施行者가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수도권 내에서 공단 등을 조성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감면을 배제토록 하였다.

② 다만, 개정규정의 시행 이전에 事業施行의 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아. 農地의 讓渡·贈與에 대한 申請要件 緩和(令 §55의5 등)

일정규모의 농지 등을 自耕農民에게 양도·증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받으려면 一定期間內에 반드시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면제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은 세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고 세무관계서비스를 받을 기회가 적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간내에 減免申請을 하지 않더라도 감면요건을 갖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讓渡所得稅 등을 면제토록 하였으며 시행령 개정을 통

하여 申請期限을 없애고 동 규정은 개정규정의 시행 전에 농지 등을 양도 또는 증여한 것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減免規定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자. 代替取得에 따른 特別附加稅 減免이 否認되는 非業務用 不動產의 範圍調整(令 §55의11)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토지 등의 讓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토지·건물 또는 機械裝置를 취득한 경우에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나, 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감면이 배제되었는데 동 감면제도가 악용될 소지를 축소함으로써 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不勞資本利得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토지절약적인 생산투자를 통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기업의 건전한 경영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減免排除對象을 확대한 것이다.

從前의 減免排除對象인 非業務用 不動產

(1) 지급이자손금부인기준에 의한 비업무용 부동산
(2) 지급이자 손금부인 기준에 의하여 업무용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비업무용 부동산은, ①목장용·매매사업용·임대사업용 토지 등 ②주차장용 토지 ③사업장과 독립하여 설치한 운동장·경기장·연수원 및 휴양소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 ④운동설비운영업 또는 경기장운영업에 제공되는 체육장용 초지 등 ⑤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용 토지 등

새로 특별부가세 減免排除對象으로 추가되는 非業務用 不動產

①자가용전용 주차장용 토지 ②예비군훈련장용 토지 등 ③기업의 운동장·경기장·연수소 및 휴양소 등으로 사용되는 토지 등 ④임야·염전 ⑤8년 이상 자경한 경우 이외의 농경지 ⑥블록·토관·기타 석물의 제조장 ⑦유흥음식점용 토지 등

11. 附加價値稅 關聯

가.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國民住宅 및 國民住宅 建設用役의 範圍調整(法 §62①, §74①1, 令 §50②)

(1) 國民住宅의 定義 明瞭化

從 前	改 正
○ 국민주택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國民住宅規模 以下의 주택을 말함(法 §62①).	○ 國民住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함(法 §62①).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住宅建設促進法施行令 第30條第1項의 但書의 규모를 말함(令 §50②).

그동안 國民住宅을 정의함에 있어서 대법원에서는 반드시 國民住宅基金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國民住宅規模 以下(1세대상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의 주택으로 보고 있어 집행상 다소 문제가 있었던 것을 본 규정의 정비로 인하여 이를 해소하였다(大法院 判例 86다카 1441, 1988. 2.23외 다수). 따라서 國民住宅基金에 의한 자금지원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당 住居專用面積이 85㎡ 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은 國民住宅으로 본다는 것으로 명료화한 것이다.

(2) 國民住宅 建設用役의 範圍 擴大(令 §58①)

從 前	改 正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國民住宅 建設用役의 범위 ○ 建設業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 電氣工事業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 및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國民住宅建設用役	— (左同) • 電氣通信工事業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와 • 消防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것을 추가함.

國民住宅의 건설원가 인하를 통하여 庶民住宅建設供給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설비공사와 소방설비공사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전기통신설비공사는 1981. 12부터 전기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거 일반건설공사와 분할발주되어 과세로 공급되고 있었으나 改正令에서는 면세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消防設備工事는 건설공사(스프링쿨러)와 전기설비공사(자동화재 탐지설비, 화재경보기)로 발주되고 있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으나 소방법에 의하여 소방설비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消防設備用役만을 독립적으로 공급하게 되는 경우에도 면세가 되도록 명문화하였다.

나. 非常對備資源管理法에 의한 試製品 및 資源動員 用役의 零稅率 適用(法 §73.1)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重點管理業體가 訓練實施命令에 따라 생산공급하는 시제품(국방부에 납품)과 인적·물적 자원동원에 대하여는 비상대비동원훈련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零稅率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試製品 制作은 주무부장관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명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試製品의 공급이 아니거나 명령에 따라 기업체가 비축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 內水面漁業用 船舶 및 海女脫衣場用 煖房設備에 供給하는 石油類에 대한 間接稅 免除(令 §58②)

(1) 內水面漁業用 船舶으로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는 間接稅 免除(令 §58②2, 法 §78.1)

- 沿近海 및 沿岸區域漁業用 船舶에 공급되는 석유류 면세규정과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內水面漁業用 船舶으로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도 間接稅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 선박의 범위는 內水面漁業開發促進法에 의한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漁船法에 의해 등록된 동력어선(추진기관이 설치된 모든 어선)을 말하고(規則 §21의4)
- 免稅油類 供給節次에 따른 사후관리는 내수면어업의 특성에 따라 農協에서 관리토록 하였음.

(2) 裸潛漁業 從事者(해녀)의 更衣室用 煖房設備에 사용될 石油類의 免稅(令 §58②①)

- 잠수기 어업형태가 아닌 裸潛漁業從事者(해녀)의 操業環境改善을 위하여 탈의장에 사용되는 石油類에 대하여 면세토록 개정하였으며
- 면세유류 供給節次에 따른 사후관리는 수협에서 관리토록 하였다.

라. 農業機械의 範圍 및 免稅油類 供給節次 制度改善(令 §58, 規則 §21의4)

(1) 免稅油類 供給이 적용되는 農業機械의 범위정비(規則 §21의4)

農業機械化促進法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이 보급기종으로 고시한 농업기계와 재무부령이 정하는 農業機械(개정전 시행규칙 별표7 참조)로 면세대상 농업기계의 범위를 이원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개정령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도록 이를 단일화하였다.(별표7)

[별표7] 農業機械의 範圍

1.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중 쟁기·로터리
2. 농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중 푸라우·로타베이터·트레일러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한다)
5. 스피드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한다)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한다)
9. 주행형탈곡기
10. 예도형 동력예취기
11. 동력중경제초기
12. 동력수확기
13. 농산물 건조기
14.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15. 동력상토조제기
16. 동력이식기
17. 농업용난방기(비닐하우스용·온실용 또는 농가의 축산용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농림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에 한한다)
18. 동력절단기
19. 농업용병충해 방제기
20. 농업용양수기
21. 동력예취기
22. 동력탈곡기
23. 동력휴립기
24. 동력배토기
25. 동력시비기
26. 동력탈각기
27. 동력탈피기 및 박피기
28. 농산물 결속기
29. 농산물 운반대 및 운반차
30. 농산물 세척기
31. 동력심경기
32. 동력혈굴기
33. 동력구절기
34. 동력가지절단기 및 파쇄기
35. 동력수피기 및 파쇄기
36. 동력파종기
37. 동력비닐피복기

〈參 考〉 **普及機種**(농림수산부고시 제89－1호. 1989. 1. 6)

1.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중 쟁기·로터리
2. 농용 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중 푸라우·로타베이터·트레일러
3. 동력이앙기
4. 주행형 동력분무기(약액탱크가 부착된 것에 한함)
5. 스피드 스프레이어
6. 바인더
7. 콤바인(자탈형에 한함)
8. 곡물건조기(순환식에 한함)
9. 관리기
10. 주행형 탈곡기
11. 예도형 동력예취기

(2) 免稅油類 供給節次 制度改善

종전에는 과세로 공급받는 油類를 일단 免稅로 판매한 후 농협중앙회로부터 免稅油類를 되돌려 받는 消費貸貸方法을 적용함으로써 업무가 번잡하게 되고 盛需期에 공급한 油類를 비수기에 상환받게 되는 계절유 문제가 있었으나 개정령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免稅油類 供給節次를 다음과 같이 개선하였다.

① 단위농업협동조합은 농민의 農機械現況을 파악(令 §58②2號에서 대상농기계를 단위농협에 신고토록 함)하여 재무부장관과 농림수산부장관이 합의한 연간 使用限度量 範圍內에서 농민으로부터 免稅油 代金을 받고 면세티켓을 발급하고

② 농민은 티켓을 주요소에 제출하고 면세로 유류를 공급받는다.

③ 注油所는 티켓을 수시로 단위농협에 제출하여 대금을 수령하며(농민에게 판매후 2개월 이내에 단위농협에 제출하여야 함)

④ 단위농협은 월별 또는 15일 간격으로 免稅供給確認書를 주유소에 교부한다.

⑤ 주유소는 교부받은 免稅供給確認書를 1개월 이내에 대리점에 제출하고 확인된 상당액의 유류를 면세로 공급받거나(공급시기는 제출일임) 당초에 과세로 공급받은 석유류가 대리점에 환입되어 면세로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稅金計算書를 수정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令 §58⑦).

⑥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방법에 있어 대리점에서는 주유소로부터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당초 세금계산서를 주서로 소멸시키고 免稅供給에 따른 계산서를 같은 날짜에 교부하는 것임(대리점과 정유회사간 거래의 경우에도 동일).

⑦ 주유소·대리점·정유회사는 稅務申告時에 免稅供給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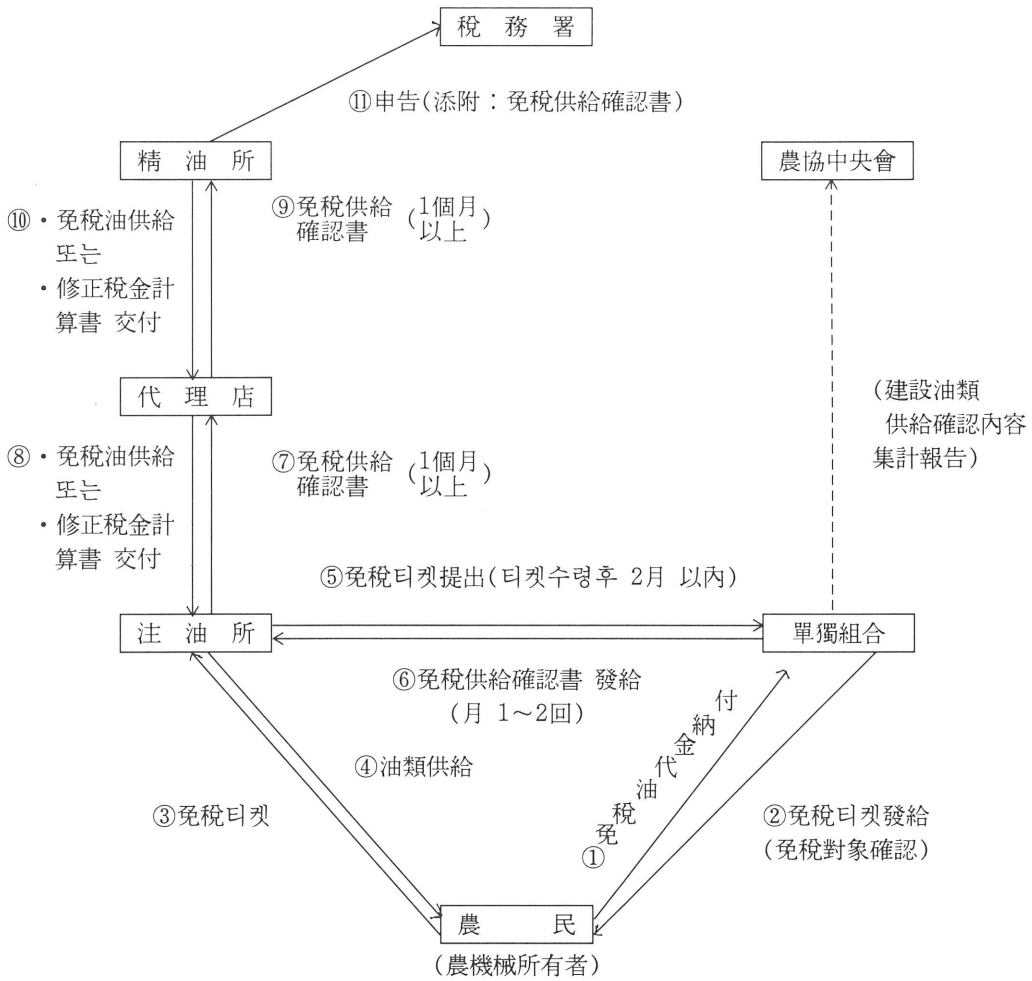

마. 其他事項

(1) 인삼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의 농업용 기자재 구입시 零稅率 適用(法 §73.4)

농협이 영세율로 구입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와의 衡平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삼협동조합 및 엽연초생산조합이 농업용기자재 구입시 영세율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2) 農業經營 및 農作物의 代行用役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除(法 §74①7, 令 §59⑨)

영농조합법인 및 委託營農會社가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 VAT가 면제되도록 하였다.

1990년

◉ 법　　률 : 1990. 8. 1. 법　　률 제 4239호(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부칙)
(시행일 : 1990. 8. 1.)
1990.12.31. 법　　률 제 4285호(시행일 : 1991. 1. 1.)
1990.12.31. 법　　률 제 4308호(지하철도건설및운영에관한법률 부칙)
(시행일 : 1990.12.31.)
◉ 시 행 령 : 1990. 1. 3. 대통령령 제12899호(환경처직제 부칙)
(시행일 : 1990. 1. 3.)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6호(시행일 : 1990. 5. 1.)
1990. 6.22. 대통령령 제13027호(시행일 : 1990. 6.22.)
1990.12.31. 대통령령 제13202호(시행일 : 1991. 1. 1.)
◉ 시행규칙 : 1991. 1.12. 재무부령 제 1840호(시행일 : 1991. 1.12.)
1991. 3.13. 재무부령 제 1850호(시행일 : 1991. 3.13.)

〈要　　約〉

○ 근로자의 財產形成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장기저축 또는 증권저축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所得稅를 일정범위안에서 非課稅하도록 조정하였다.

○ 法人稅가 저율로 과세되는 공공법인에 대하여 그 適用稅率을 종전의 방위세를 포함한 부담률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 중소기업의 技術·人力開發 및 設備投資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하여 그 지출액의 10%를 稅額控除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職業訓練費 中 일부 비용과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15%를 稅額控除하도록 하였다.

— 中小企業이 生產性 向上設備에 투자를 하는 경우 종전에는 투자금액의 10%를 당해기업이 납부해야 할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控除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控除率을 投資金額의 15%로 상향조정하고, 일반 설비투자를 하는 경우에도 投資金額의 5%를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 中小企業이 投資金額을 마련하기 위하여 投資準備金을 설정하는 경우 종전에는 기계·장치가액의 15% 범위 안에서 損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損金認定範圍를 20%로 상향조정하였다.

— 企業의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企業이 技術開發準備金을 설정하는 경우 收入金額의 1.5%(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2%) 범위

내에서 損金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損金認定範圍를 收入金額의 3%(기술집약적 산업의 경우 4%)로 대폭 확대하였다.

- 地域均衡發展을 위하여 개발이 필요한 특정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入住 후 3년간은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50%, 그후 2년간은 3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 大規模開發事業 등에 필요한 토지를 讓渡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토지를 讓渡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종전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100분의 50 또는 100분의 70만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 法人이 社員用住宅을 취득하여 無住宅從業員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0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非業務用不動產을 1991년 12월31일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 醫療法人의 의료기기 등에 투자를 하는 경우 投資金額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의료시설에 투자하기 위하여 投資準備金을 설정하는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損費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정책목적상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감면함에 있어서 소득이 있으면 법인의 경우에는 최소한 감면전 所得金額의 12%를,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면전 事業所得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의 30%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하며, 土地의 讓渡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讓渡所得稅는 연간 3억원 한도내에서만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는 最低限稅制를 도입하였다.
- 增資所得控除率을 상장법인과 중소법인은 100분의 12로 하고, 그외의 법인은 100분의 10으로 하여 종전의 법인세법상 방위세 납부 후의 實質所得控除率과 같은 수준으로 하였다.
- 5년 이상 경영한 牧場을 이전하는 경우 新牧場의 면적이나 가액에 관계없이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면제하였으나, 앞으로는 新牧場의 면적이나 금액의 범위안에서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과 課稅의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製造業 등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臨時投資 稅額控除制度의 適用時限을 1991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 적용하도록 하였다.

〈改正背景〉

최근 국내의 경제여건이 빠르게 변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경제정책을 稅制面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租稅減免規制法은 매년 改正되어 왔다.

금년은 우리나라 재정수입의 큰 몫을 점하고 있는 防衛稅의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각 세법에서 稅率體系의 조정 등 전반적인 稅制改編이 실시되었으며, 租稅減免規制法에서는 공공법인의 세율조정, 증자소득공제율의 조정 등 명목세율을 방위세 부담을 포함한 實質稅負擔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제기되었으며, 우리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업의 기술 및 인력개발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하여도 각종 지원을 보강하도록 하였다.

또한 租稅制度의 中立性과 公平性을 높이도록 不動產讓渡所得에 대한 減免範圍를 縮小하고, 最低限稅制度의 도입, 양도소득세 감면의 綜合限度制가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자의 재산형성과 저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勤勞者長期貯蓄 非課稅制度가 신설되는 등 큰 폭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改正內容〉

1. 勤勞者 등의 財產形成支援을 위한 利子所得 등에 對한 稅制支援

가. 勤勞者 長期貯蓄 및 勤勞者 長期證券貯蓄의 非課稅制度 新設(減法 §4)

(1) 支援內容

근로자가 매월 월급여의 일정한도 내에서 불입하는 長期貯蓄 및 長期證券貯蓄에 대하여는 利子·配當所得을 非課稅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從 前		改 正
월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 근로자 재형저축 • 근로자 증권저축 • 근로자 주택저축	⇨	현행 우대저축제도와는 별도로 모든 근로자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 근로자 장기저축 추가 • 근로자 장기증권저축 추가

(2) 勤勞者 長期貯蓄 非課稅制度 등의 要件

〈근로자 장기저축제도〉

— 非課稅要件

- 加入對象 : 일용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
- 貯蓄契約 :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하는 계약기간 3년 이상의 장기저축
- 貯蓄限度 : 월급여액 중 30만원한도(1년간 360만원)이며, 월정액급여가 30만원에 미달될 때에는 月定額給與까지 불입가능함. 여기서 月定額給與라 함은 勤勞者 長期貯蓄 契約을 체결하는 달의 月定額給與로 함.

— 取扱金融機關

- 勤勞者住宅安定法의 규정에 의한 은행 등 금융기관
- 遞信官署
- 相互信用金庫

— 利子所得稅의 감면방법

- 계약기간 3년 전에 지급되는 이자소득 : 우선 소득세 비과세
-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 契約解止時는 貯蓄機關이 減免稅額追徵. 다만, 저축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등의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追徵排除

〈勤勞者 長期證券貯蓄의 要件〉

— 가입대상 등은 근로자 장기저축과 동일하나 저축한도는 연간급여액 중 360만원 한도이며, 연간급여액이 360만원에 미달할 때에는 연간급여액까지 저축가능하다. 이 경우 연간급여액은 장기증권저축계약을 체결하는 달의 月定額給與를 年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 取扱金融機關 : 증권회사

※ 근로자 장기저축과 근로자 장기증권저축을 모두 가입한 경우에는 연간 720만원까지 비과세

나. 所得稅만 5%로 低率 分離課稅되는 少額貯蓄 등의 範圍擴大

(1) 少額家計貯蓄의 限度上向調整(減令 §2의2, 2의3)

중산층 이하 계층의 재산형성지원 및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세가 5%로 낮게 과세되는 少額貯蓄의 限度를 종전 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즉, 일반금융저축은 소득세 20%, 주민세 1.5%가 과세되나 少額家計貯蓄 등은 소득세만 5%로 과세되며, 가입대상자는 實名의 1인1통장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從 前		改 正
• 소액가계저축 : 1인당 500만원 한도 • 소액채권저축 : 1인당 500만원 한도	⇨	• 1인당 800만원 • 1인당 800만원

(2) 5%의 저율로 과세되는 우리社株 配當所得의 상향조정(減令 §2의4)

노사관계 안정을 위하여 從業員持株制의 지속적인 지원과 아울러 少額家計貯蓄 범위의 상향조정에 맞추어 우리社株 配當所得의 세제상 우대범위를 상향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한도이내인 우리사주 배당소득	⇨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800만원 이내

(3) 少額保險差益에 대하여 소득세만 5% 低率 分離課稅(減法 §4의2Ⅳ)

보험계약 유지기간이 3년 미만인 短期貯蓄性保險에서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한하여 20% 분리과세 하되, 少額保險에 대하여는 少額家計貯蓄과 같이 5% 低率로 分離課稅한다.

※ 3년 이상 가입한 보험은 계속 비과세함.

〈少額保險의 範圍〉

보험료불입액이 800만원 이하인 보험계약

※ 참고(소득세법 개정내용)

〈保險差益이 課稅되는 貯蓄性保險의 範圍〉

—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금융권의 보험으로 한정

- 민영보험회사의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 농·수·축협중앙회의 생명공제 및 손해공제
- 체신보험

〈保險差益의 計算〉

보험차익 = 만기보험금 또는 중도해약환급금 − 불입보험료

다. 기타 貯蓄支援制度 및 源泉徵收稅率 調整

(1) 학생들의 장학적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한도 확대(減令 §2(1))

從 前		改 正
• 국민학생, 미취학아동 : 50만원 • 중·고교생 : 100만원	⇨	• 국민학생 : 100만원 • 중·고교생 : 200만원

(2) 예탁금의 이자소득 등이 비과세되는 단위조합의 범위에 인삼협동조합도 포함 (減令 §2의(2))

從 前		改 正
단위조합에 대한 당해 조합원의 1,000만원 이하 예탁금,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의 이자 및 배당금은 비과세 • 단위농업(특수농업)협동조합, 축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	〈추가〉 • 인삼협동조합

(3) 복권당첨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율 조정(減法 §5)

從 前		改 正
주택복권 등에 대하여 15%의 소득세원천징수	⇨	25%로 분리과세 원천징수

(4) 中小企業創業 投資會社 등에 출자함으로 발생하는 配當所得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소득세법상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의 상향조정에 맞추어 10%에서 20%로 상향조정

2. 技術·人力開發에 對한 支援強化

가. 技術開發準備金의 設定限度 上向調整(減法 §16)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기술의 개발 또는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技術開發準備金의 積立限度를 종전보다 2배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지원제도의 단순화를 위하여 소득금액기준 및 중소기업의 추가인정제도를 폐지하였다.

從 前		改 正
• 수입금액의 1.5(2)% • 소득금액의 20(30)% • 중소기업은 5백만원 추가인정	⇨	중 많은 금액→수입금액의 3(4)%

※ ( )은 기술집약적 산업

나. 職業訓練費(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率 上向調整(減法 §17)

技能人力의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技能人力을 養成하는 경우에 대하여 稅制支援의 폭을 확대한다.

從 前		改 正
인력개발비 지출액의 1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기업이 직접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당해 비용(사내직업훈련비)에 대한 공제율을 15%로 인상

사내 職業訓練費의 범위는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한 사내직업훈련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실습재료비,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수당·식비 및 직업훈련용품, 직업훈련교재비, 기술자격검정에 필요한 비용 및 직업훈련교사의 급여 등을 말한다.

다. 소프트웨어 開發業에 대한 所得控除(減法 §20)

기술집약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의 육성, 정보화시대의 도래 및 S/W 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연도와 그후 5년간 소득금액의 50%를 공제하는 세제지원제도의 범위에 컴퓨터 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을 추가하였음.

從 前		改 正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기술용역사업자	⇨	(추가)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의 신규사업자

라. 研究試驗用 見本品 輸入時 特別消費稅 免除對象機關 擴大(減法 §75)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는 대상기관에 기업의 企業附設研究所보다 규모가 작은 研究開發專擔部署를 포함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음.

從 前		改 正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술부설연구소 • 산업기술연구 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추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마. 企業의 社內技術大學(院) 運營에 대한 支援(令 별표6, 規則 §6⑩,⑪)

기업이 종업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社內技術大學 및 大學院의 운영경비를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技術·人力開發費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1)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社內技術大學 등의 要件

세제지원대상이 되는 社內技術大學(大學院을 포함)의 要件은 과학기술분야의 교육훈련을 위한 전용교육시설, 교과과정 등을 갖춘 社內教育訓練機關으로서 科學技術處長官이 財務部長官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社內教育訓練機關을 말함.

(2) 稅額控除對象費用

- ○ 교육훈련용 교재비, 실험실습비 및 교육용품비
- ○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 ○ 사내기술대학 등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실험실습용 물품자재비, 장비 또는 시설의 임차비
- ○ 사내기술대학 등의 교육훈련생에게 교육훈련기간중 지급한 교육훈련수당 및 실비

바. 生産性 向上을 위한 技術人力開發費稅額控除 對象의 擴大(令 별표6, 規則 §6⑥ ⑨)

기술인력비 세액공제대상에 기업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지출하는 人力開發費를 추가하였다. 稅額控除對象費用은 다음 비용 중 교육훈련시간이 24시간 이상인 교육과정의 것에 적용하도록 하였다.

- ○ 품질관리, 경영관리, 생산관리, 설비관리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비 중 교재비, 실험실습비, 강사료, 교육훈련수당, 식비 등의 비용
- ○ 공업표준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工業標準協會, 공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生産性本部, 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디자인포장센터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는 경우의 그 委託訓練費

사. 人件費가 稅額控除되는 企業의 硏究開發 專擔部署 硏究要員의 要件緩和(規則 §6②)

소규모의 연구개발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稅制支援을 強化하고, 현행 기술개발촉진법상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요건과 일치시켜 제도의 단순화를 도모함.

從 前		改 正
• 과학기술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가진 자(중소기업은 학사 이상자) • 학사 이상자로서 3년이상 연구기관 근무경력자	⇨	• 과학기술분야 학사학위 이상자 (중소기업은 전문대졸업 이상)

아. 投資稅額 控除對象이 되는 職業訓練用 施設 및 硏究試驗用施設의 範圍擴大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직업훈련을 지원하고, 기업간에 산업기술을 공동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職業訓練用 施設 및 硏究試驗施設의 범위를 확대함.

從 前		改 正
• 회사내 자체직업훈련시설 • 기업부설연구소 등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연구시험용 시설	⇨	(추가) •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 •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연구시험용 시설

자. 其他 技術開發 支援事項

(1) 기술개발준비금을 일반기업보다 많이 설정할 수 있는 技術集約産業의 범위에 다음 산업을 추가하였다(減令 별표4).

- 전자기기업종에 '衛星放送 및 通信送受信機' 품목추가
- 전자부품업종에 '콘넥터, 평면현 및 대형브라운관(25인치 이상), 磁性材料' 품목을 추가
- 프로그램개발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데이터베이스' 품목을 추가

(2)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및 기술인력개발비 稅額控除를 적용받는 비용의 확대(減令 별표5 및 별표6)

-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의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生産技術硏究院 및 民間生産技術硏究所의 技術指導를 받고 지출한 비용

3. 中小企業育成을 위한 稅制支援 擴大

가. 中小企業에 對한 投資稅額 控除制度 新設(減法 §14의2)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회계처리절차가 복잡한 間接支援制度를 直接支援制度로 전환함으로써 보다 실효성이 있는 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종전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한 特別減價償却制度는 폐지하는 한편,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모든 中小企業(제조, 광업, 건설, 운수, 수산, 도·소매업,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등)이 사업용 기계장치(중고품에 의한 투자는 제외) 등에 투자한 경우에는 投資金額의 5%(외국산 3%)를 납부할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稅額控除하도록 한다.

또한 記帳能力이 없는 개인의 경우에는 推計決定時에도 投資稅額控除를 인정하도록 하였다.

〈稅額控除對象이 되는 사업용자산의 범위〉

사업용 자산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 固定資產에 해당되는 기계장치를 말함. 다만 운수업의 경우에는 차량 및 운반구(승용자동차로서 자가용은 제외)와 선박을 포함하여 중소운수업의 세금부담이 가벼워지도록 하였다.

〈適用例〉

가. 1991년 1월 1일 이후 투자가 완료하는 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稅金負擔 輕減效果를 크게 하였고, 동일한 투자자산에 대하여는 臨時投資稅額控除 등과 중복적용은 배제되도록 하였다.

나. 또한 종전 중소기업 특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감가상각내용년수 완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特別減價償却費를 損費로 計上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中小企業의 技術·人力開發費에 대한 稅額控除率 上向調整(減法 §17)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에 대하여는 稅額控除率을 15%로 상향조정하여 대기업보다 우대한다.

從　　前		改　　正
기술·인력개발비 지출액의 1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	⇨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세액공제율을 15%로 상향조정

다. 中小企業의 生產性 向上 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率 上向調整(減法 §71)

중소기업의 技能職·技術職 인력부족난을 완화시키는 한편 自動化設備投資를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競爭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자가 自動化施設에 투자하는 경우 投資稅額控除率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투자금액의 10%(외국산 3%)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	생산성향상설비 중 자동화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공제율을 15% (외국산 5%)로 인상

라. 中小企業 投資準備金 損金算入 範圍의 擴大(減法 §13)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投資準備金 損金算入限度를 상향조정하도록 하였음.

從 前		改 正
• 사업용 자산가액의 15%	⇨	• 20% 확대

특히 운수업의 경우 투자준비금 설정대상이 되는 자산의 범위에 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중소운수업의 세금부담이 가벼워지도록 하였다.

마. 中小企業의 範圍擴大(減令 §11)

기술집약적인 高附加價値產業의 육성, 情報化時代의 도래 및 S/W수입개방에 대비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세제상 우대되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從 前		改 正
• 제 조 업 • 광 업 • 건 설 업 • 운 수 업 • 수 산 업 • 도·소매업	⇨	(추가) •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업

바. 特定開發 促進地域 入住中小企業에 대한 租稅特例 新設(減法 §40의8)

지역간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특정개발 촉진지역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地方移轉中小企業에 대한 稅制支援과 동일수준의 혜택을 부여함.

○ 공장입주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은 소득세, 법인세의 50% 감면
○ 그후 2년간은 소득세, 법인세의 30% 감면

4. 企業의 設備投資促進을 위하여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 施行期間 延長

(減令 §57)

제조업 중심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 공제의 시행기간을 1년간 연장한다.

從 前		改 正
• 실시기간 : 1989.7.1~1990.12.31투자금액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	• 1991.12.31까지 1년 연장 • 선상수산제조업 추가

※ 어군탐지기, 양·투망(승)기트롤원치류를 구입시는 포함됨.

〈船上水產製造業에 관한 適用例〉

가.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나. 새로이 臨時投資稅額控除 對象에 해당하게 된 設備投資로서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투자에 착수하여 1991년 1월 1일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1991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금액은 당해 投資總額에서 1990년 12월 31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09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과 1991년 1월 1일 이후에 당해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5. 公共法人의 法人稅率 調整

가. 法人稅率 調整

방위세가 폐지됨에 따라 公共法人의 法人稅率을 종전 방위세를 포함한 부담률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다만,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單位農·水·畜協 등에 대하여는 10% 法人稅率을 적용하도록 하고, 最低限稅의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도록 하였다.

從前(防衛稅 포함시)		改 正
• 단위농·수·축협 5%(10.5~14.5%) • 일반 — 과표 3억원 이하 10%(15~16.5%) • 일반 — 과표 3억원 초과 15%(16.5~23.25%)	⇨	• 10% • 17% • 25%

〈適用例〉

가. 1991년 1월 1일 이후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부터 적용한다.

나. 다만, 1991년도 中間豫納額의 계산은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에 개정세율을 적용하여 납부한다.

나. 公共法人으로 追加된 法人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韓國法制硏究院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法制硏究院

6. 增資所得 控除制度의 補完

가. 增資所得 控除制度를 限時的으로 運營(減法 §55)

금년부터 종전 법인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增資所得 控除制度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규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하였다. 즉,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통한 競爭力 堤高가 요망되거나, 자본시장정책과 관련하여 주식공급물량의 조정상황 등을 감안하여 增資所得控除制度를 운영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기간제한이 없음	⇨	1991. 12. 31까지 증자하고 자본에 관한 변경등기를 한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이 1991년 12월 31일까지이므로 시행령에서 법 체계상 더 길게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나. 增資後 非業務用 不動產 등 取得時 增資所得控除 適用排除

從 前		改 正
증자후 가지급금 또는 타법인주식 취득가액이 증자금액의 10% 초과시 적용배제	⇨	(추가) 증자후의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증자소득금액에서 제외

增資를 한 후 36월 이내에 非業務用不動產(減法 §13의3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資產變更登記日로부터 각 사업연도종

료일까지 非業務用不動産의 취득가액 및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제외한 후 增資所得控除를 적용한다.

취득할 당시에는 非業務用不動産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였으나 추후 비업무용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업연도부터 增資所得 控除金額을 다시 계산하여 증가된 법인세를 비업무용으로 확정된 사업연도에 利子相當加算額을 추가하여 납부한다.

다. 增資所得控除의 調整

종전 增資所得控除를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규정에 의하여 割增分 防衛稅를 납부함에 따라 명목상 공제율과 실제기업이 공제받는 공제율과는 차이가 있었으나, 防衛稅法 폐지를 계기로 하여 종전의 방위세 납부 후의 實質所得控除率 수준으로 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일반법인 : 15% • 상장법인 : 18% 중소법인 *우리사주 출자금액은 2~3% 가산	⇨	• 일반법인 : 10% • 상장법인 : 12% 중소법인 *우리사주 출자금액은 5% 가산

우리社株 出資金額은 종전에 우리社株의 出資比率이 20%를 기준으로 20% 이상인 경우에는 증자액 전체에 2~3%의 추가공제를 허용하고, 20% 미만인 경우에는 우리社株 出資金額에 대하여 2~3%의 追加控除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제도의 단순화와 從業員持株制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社株 出資金額의 5%를 추가로 所得控除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增資所得控除制度가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됨에 따라 증자소득공제액에 대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利益剩餘金 처분시 企業合理化積立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適用例〉

1991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분부터 개정된 增資所得控除率을 적용하며,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증자한 것으로서 1991년 1월 1일 현재 殘存控除期間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여 개정된 공제율을 적용한다.

7. 讓渡所得稅 減免制度 調整

가. 國家 등에 讓渡하는 경우와 大規模 開發事業에 對하여 讓渡時 讓渡所得稅의 減免縮小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收用의 경우, 대규모의 택지개발사업 또는 댐건설사업으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 讓渡所得稅를 전액 면제하던 것을 50~70% 감면으로 축소하였다.

從 前		改 正
• 대규모개발사업용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	⇨	• 50% 감면으로 축소 • 다만, 대규모 개발사업용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5년 이상 보유하였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사업인정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전에 취득한 것은 70% 면제

〈改正理由〉

○ 아무리 정책지원목적상 필요한 경우라도 자기노력과 관계없이 地價上昇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면세하는 것은 소득종류간 과세형평상 바람직하지 못함.

○ 告示地價의 시행으로 보상가격이 많이 현실화 되었고 割增課稅되던 防衛稅도 1991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원효과가 커졌고,

○ 事業施行 주체와 규모에 따라 감면율이 달라져 민원이 야기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50% 감면으로 통일하되, 자기의사와 관계없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 등 장기보유부동산을 양도시에는 감면을 70%로 하여 높게 적용함.

〈適用例〉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대규모 개발사업용 등으로 양도하는 경우는 종전과 같이 전액면제(유휴토지라도 면제)한다.

나. 讓渡所得稅 減免의 綜合限度制(減法 §88의2 新設)

개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다음의 讓渡所得稅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1년간 세액기준으로 3억 限度 내에서만 면제하는 조세감면의 綜合限度制를 도입하였다.

○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등 각종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 도시개발사업자에게 양도
○ 국민주택·기숙사의 건설용지로 양도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

減免稅額의 합계를 계산함에 있어서 근로자 등의 기숙사건설용 토지로 讓渡함에 따라 기숙사 준공후 사후 還給받는 경우에는 환급세액을 기숙사가 준공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감면세액으로 봄.

〈改正理由〉

- 정책목적상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한 사람이 10억원 이상의 土地讓渡所得을 얻은 경우까지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은 高所得者에게 지나친 혜택을 주어 衡平上 문제가 있어 감면액에 한도를 설정하되, 중산층의 住居生活安定支援 및 産業의 생산기반 補塡을 지원하기 위해 1世帶1住宅, 自耕農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이번 세제개편에서 最低限稅(Minimum Tax)가 도입되는 사업소득세와 과세형평 유지

〈適用例〉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한다(1991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따라서 1991년중 국가 등에 收用되거나 대규모 개발사업용으로 讓渡時에도 감면세액으로 연간 3억원까지만 감면되고, 3억원 초과하는 부분은 正常課稅되게 됨.

다. 企業이 社員用 賃貸住宅을 代替取得하기 위하여 非業務用 不動産 讓渡時 特別附加稅 減免(減法 §67의15)

社員用住宅(임대·분양 포함)을 대체 취득목적으로 2년 이상 사용한 事務用不動産을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제도 외에 근로자 등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限時的으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였다.

從 前		改 正
법인이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사원용주택을 대체취득시 특별부가세 면제	⇨	(추가) 법인이 사원용주택을 신축하여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1990. 12. 31 이전에 취득한 비업무용 토지 등을 1991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50% 감면

○ 대체취득하는 社員用住宅 및 附隨土地의 범위

• 사원용주택의 범위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 부수토지의 범위 : 주택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

○ 無住宅從業員의 範圍

• 출자자인 임원을 제외한 모든 사원

○ 감면요건

• 先讓渡 後取得 :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또는 분양

• 先取得 後讓渡 : 주택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토지 등 양도

○ 감면세액의 계산

$$\text{減免稅額} = \text{산출세액} \times \frac{\text{사원용주택 취득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금액}}{\text{토지 등의 양도가액}} \times \text{감면율(50\%)}$$

라. 5年 이상 經營한 牧場의 移轉時 讓渡所得稅 免除要件 強化

牧場移轉時 동일한 경영규모를 유지시켜 주려는 制度 본래의 취지를 살리면서 목장이전을 이용한 양도소득세 회피행위를 방지할 수 있도록 2년 이상 稼動工場을 이전하는 경우와 균형을 맞추어 감면요건을 강화하였다.

從 前		改 正
5년 이상 경영한 구목장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일정두수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신목장부지 취득시 양도소득세 면제	⇨	신목장의 면적·금액기준 중 하나라도 구목장의 면적·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다음 중 적은 금액을 감면세액으로 함. • 면적기준 : 산출세액 × 신목장대지면적 / 구목장대지면적 • 금액기준 : 산출세액 × 신목장가액 / 구목장가액

마. 기타 讓渡所得稅 關聯事項

(1) 讓渡所得稅 減免排除對象 遊休土地의 범위(減法 §66의3)

유휴토지라 하더라도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감면을 인정하도록 한다.

從 前		改 正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배제 •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減法 §57) • 국가 등에 양도하는 토지감면 (減法 §60) • 도시재개발사업용 토지감면 (減法 §58) • 국민주택건설용지 감면(減法 §62)	⇨	개인이 1990. 1. 1이후에 취득한 유휴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감면배제

(2) 干拓地 등의 양도에 대한 讓渡稅 免除

간척지 등의 양도시 양도세가 면제되는 기간을 연장하여 경작자인 농민 등에게 농지가 양도되도록 지원함.

從 前		改 正
• 1988. 12. 31현재 20년 이상 임차하여 경작한 농지를 • 경작농민에게 • 1990. 12. 31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면제	⇨	• 좌 동 • 경작농민, 농어촌진흥공사에게 • 1991. 12. 31까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면제

(3) 개인이 國家·地方自治團體에 산림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공사업용지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50% 감면

(4) 법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목장용, 매매사업용, 賃貸事業用除外)으로 직접 사용한 후, 農漁民支援施設을 移轉할 목적으로 讓渡하는 경우의 토지 등에 대하여도 特別附加稅를 면제하도록 하였다(시행령 제55조의11). 免除要件은 농·축·수협(중앙회 포함)의 법령, 정관 또는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용 부동산 등의 農漁民支援施設을 양도하고 동일유형이 農漁民支援施設을 신규취득시에만 적용함.

8. 醫療法人에 대한 支援擴大

全國民醫療保險의 확대실시, 의료수가의 규제 등에 따른 의료법인의 경영애로 및 投資不振을 해소하기 위하여 醫療法人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였다.

가. 醫療機器에 대한 投資稅額 控除制度 新設(減法 §71의2)

의료법에 의한 醫療法人 또는 비영리법인의 醫療機關이 의료기기(중고품은 제외)를 구입하는 경우 10%(외국산 8%)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거나 투자금액의 50% 일시상각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나. 醫療施設 投資準備金 損金算入制度(減法 §71의3)

의료법인 등의 의료시설의 투자재원을 위하여 醫療施設 投資準備金을 설정시는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준비금의 설정한도는 의료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20% 범위내에서 설정 가능하며 投資準備金의 사용은 준비금설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의료기기나 병원건물의 신축 또는 購入資金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렇게 사용한 금액은 準備金設定日의 4번째부터 3년간 분할하여 益金에 還入하여야 한다.

未使用金額에 대해서는 益金算入時 법인세와 함께 利子相當加算稅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 醫療法人이 輸入하는 尖端醫療用 機器에 대한 關稅輕減(減法 §83)

從 前	改 正
〈관세경감대상〉	〈추 가〉
• 지하철도 건설용 물품 • 농업기계제조용 부분품 • 태양에너지 이용기기 제조용기자재 • 박람회조직위가 수입하는 박람회 시설의 제작·건설·운용에 사용하는 물품	⇨ • 비영리의료법인이 수입하는 첨단 의료용기기

라. 기타 醫療法人 支援事項(令 §42의2)

의료법인을 기부금 손금산입의 특례가 인정하는 非營利公益法人의 범위에 추가함에 따라 醫療法人이 수익사업의 소득을 무료진료 등 자선사업, 의학조사 연구사업에 사용시 非營利公益法人과 같이 收益事業所得의 60% 범위 내에서 손비인정, 그리고 의료법인에 대하여는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9. 最低限稅制度의 導入(減法 §88·§88의2)

가. 導入背景

종전에는 특정기업이 각종 조세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지원이 綜合限度制度의 방위세의 비과세·감면세액의 割增課稅로 인하여 최소한의 세금부담이 있었다.

즉, 농공지구 입주기업이 법인세를 전액 감면받더라도 방위세법에 의하여 방위세는 일반기업보다 50% 割增하여 납부함에 따라 國民皆稅의 原則에도 부합되었다.

그런데 금년부터 방위세법이 폐지됨에 따라 종전의 최소한의 방위세 부담(法人 : 소득의 6~11.25%, 개인 : 산출세액의 15~30%)조차 안하게 됨에 따라 정책목적상 세금을 감면해 주는 경우라도 세부담의 형평성, 國民皆納, 財政確保의 측면에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最小限稅制度를 도입하였다.

나. 最低限稅制度의 內容

從 前		改 正
〈조세지원 종합한도제〉 • 특별상각, 준비금 손금산입 한도 : 손금산입전 소득이 50% 이내 • 소득공제 : 공제전 소득의 50% 이내 • 세액공제 : 산출세액의 30% 이내 ※방위세 : 할증과세	⇨	〈최 저 한 세〉 〈법인〉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12% • 각종 감면후의 산출세액 → 중 많은 금 액 〈개인〉 • 각종 감면전의 산출세액 × 30% • 각종 감면후의 산출세액 → 중 많은 금 액 〈개인의 양도소득세〉 • 개인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1년간 세액기준으로 3억원 한도내에서만 감면 적용

〈最低限稅 適用對象 所得〉

① 법인 : 當期純利益 公共法人을 제외한 법인의 법인세(특별부가세, 가산세 및 각종 이자상당가산액을 제외한 법인세)

- 농·축·수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제1항제1호의 적용을 받는 당기순이익과세 공공법인(법인세율 10%)은 最低限稅 12%보다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最低限稅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② 개인 :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을 제외한 개인의 사업소득임.

③ 外國法人 등 :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 등에만 內國人과 동일하게 적용함.

다. 法人의 最低限稅 適用方法

•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 12% • 각종 감면후의 산출세액	중 많은 금액

(1) '각종 감면전의 과세표준' 계산시 '감면'의 범위

① 각종준비금 및 특별상각(괄호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조문임)

— 租稅減免規制法上 減免制度 : 주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13), 기술개발준비금제도(16), 신기술기업화사업에 대한 일시상각(18), 수출손실준비금제도(22),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제도(23), 수출사업특별상각(25), 해외사업손실준비금(27), 해외투자손실준비금(29), 외국항행특별상각(32), 광업투자준비금(33), 광업특별상각제도(36), 방위산업특별상각(40),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준비금(40의2), 농어촌소득원특별상각(40의3), 지방이전준비금(41),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41의2), 지방이전 사업일시상각(43),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이전하는 법인본사 특별상각(43의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기금(43의5),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지원(46의3), 투융자손실준비금(54),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준비금(54의3),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일시상각(71), 의료기기사업에 대한 일시상각(71의2), 의료시설투자준비금(71의3), 임시투자세액공제 등(72), 사원용임대주택에 대한 특별상각(72의3), 기숙사에 대한 특별상각(72의5②), 중소기업 특별상각제도의 경과규정(부칙22), 중요산업감면의 경과규정(법률 제3865호 부칙 §14)

— 외자도입법상 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상각(외도법 §14), 증자의 조세감면(외도법 §16)

※ 現行 外資導入法 規定은 1991年 3月 1日부터 特別償却制度는 廢止되며 외자도입법 관련 最低限稅制度의 시행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적용됨에 따라 실질상 적용은 안됨.

— 法人稅法上의 特別減價償却制度 :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일시상각제도(취득가액의 90%를 일시상각하는 제도)

② 所得控除金額, 非課稅所得 및 익금불산입금액(괄호 안은 조세감면 규제법 조문임)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익금불산입(18의2), 기술소득양도시 50% 소득공제(19③), 기술용역사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20),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26), 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37),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48), 증자소득공제(55)

③ 과세표준의 범위 : 조세감면규제법상 준비금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사입한 금액을 포함함.

(2) '각종 감면후의 산출세액' 계산시 '감면'의 범위

① '(1)'의 각종 준비금 및 특별상각

② '(1)'의 소득공제금액, 비과세소득 및 익금불산입금액

③ 세액공제제도(괄호 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조문임)

—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14의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7), 신기술기업화사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18),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에 대한 세액공제(40의5③), 지방이전사업에 대한 세액공제(43), 법인본사 지방이전 세액공제(43의2), 중소기업통합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44④), 법인전환시 세액공제의 이월공세(45⑤), 산업합리화에 따른 사업전환시 세액공제(46의3),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71), 의료기기 투자세액공제(71의2), 임시투자세액공제(72), 사원용임대주택 투자세액공제(72의2), 기숙사투자세액공제(72의5①), 중요산업지원의 경과규정(법률 제3865호 부칙 §14)

④ 法人稅의 免除 및 減免(괄호 안의 조세감면규제법 조문임)

—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의 감면(4의3), 창업중소기업감면(15), 기술소득에 대한 면제(19의①),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면제(38), 농공지구 입주기업감면(40의4),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감면(40의5①),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조세특례(40의7),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40의8),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면제(42의①),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면제(42의2①), 소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43의4), 중소기업간 통합시 조세특례 승계(44⑤ 및 ⑧), 법인전환시 조세감면 승계(45⑤),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법인세면제

(45의2),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45의3), 산업합리화의 조세특례(46의②),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면제(69), 기숙사운영사업자에 대한 조세특례(72의6)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조감법 §40의6) 규정은 최저한세 적용대상이 아님.

—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감면

(3) 最低限稅 計算後에 공제할 수 있는 稅額控除

— 법인세법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 세액공제

— 법인세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 의제외국납부 세액공제(減法 §28의3)

— 지방세법 제2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세공제

라. 個人의 最低限稅 適用方法

• 각종 감면전의 산출세액 × 30% • 각종 감면후의 산출세액	중 많은 금액

(1) '各種 감면전의 算出稅額'의 계산시 '감면'의 범위

① 각종 준비금 및 特別償却制度(괄호 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조문임)

— 중소기업투자준비금제도(13), 기술개발준비금(16), 신기술기업화사업(18), 수출손실준비금(22), 해외시장개척준비금(23), 수출사업특별상각(25), 해외사업손실준비금(27), 해외투자손실준비금(29), 외국항행사업특별상각(32), 광업투자준비금(33), 광업특별상각(36), 방위산업특별상각(40),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준비금(40의2), 농어촌소득원 사업특별상각(40의3), 지방이전준비금(41), 지방이전사업 일시상각(43),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투자준비금(43의5), 산업합리화 지원(46의3), 기숙사 운영사업자의 조세특례(72의6)

—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감면

— 특정설비투자(71), 임시투자세액공제(72), 사원용임대주택 특별상각(72의3), 기숙사특별상각(72의5②), 중소기업특별상각제도의 경과규정(부칙 §22), 중요산업감면 경과규정(법률 제3865호 부칙 §14)

— 소득세법상 에너지절약시설 및 공해방지시설 일시상각제도

② 소득공제금액

— 기술용역사업 소득공제(20), 해외사업소득공제(26), 축산업소득공제(37)

(2) '각종 감면후의 算出稅額'의 계산시 '감면'의 범위

① '(1)'항의 각종 준비금 및 특별상각제도

② '(1)'항의 소득공제금액

③ 세액공제금액(괄호 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조문임)

—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14의2),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17), 신기술기업화사업 세액공제(18),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에 대한 세액공제(40의5③), 지방이전사업 세액공제(43), 중소기업통합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44④), 법인전환시 세액공제의 이월공제(45⑤), 산업합리화(46의3), 특정설비투자 세액공제(71), 임시투자세액공제(72), 기숙사투자세액공제(72의5①), 중요산업지원의 경과규정(법률 제3865호 부칙 §14)

— 소득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기장세액공제, 동법 제74조의 저축세액공제

④ 所得稅의 非課稅 및 免除 등(괄호 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조문임)

— 창업중소기업감면(15), 농공지구 입주기업감면(40의4),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감면(4의5①),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중소기업의 조세특례(40의8), 수도원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43의4), 중소기업간통합시 조세감면승계(44⑤ 및 ⑧), 법인전환시 조세감면 승계(45⑤),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45의3)

(3) 최저한 계산후에 控除할 수 있는 稅額控除

— 소득세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

—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세액공제

— 의제외국납부 세액공제(減法 §28의3)

마. 最低限稅 計算後에 追加되는 加算稅 등

(1) 가산세

(2)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각종 준비금의 익금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利子相當加算額과 減免稅額을 追徵하는 경우(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 또는 납부하는 경우를 포함)에 있어서의 利子相當加算額

(3) 조세감면규제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및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 법인세, 감면세액의 追徵額

바. 各種 減免으로 所得稅 및 法人稅의 算出稅額이 最低限稅보다 적어지는 경우 減免適用順序

(1) 申告納付의 경우(수정신고의 경우를 포함)

각종 감면제도 중에는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임의로 선택하여 적용함.

(2) 정부가 所得稅, 法人稅를 更正하는 경우(괄호안은 조세감면규제법 조문임)

납세자에게 유리한 감면부터 적용되도록 감면배제순서를 정함.

〈減免制度의 배제순서〉

① 기술개발준비금(16), 광업투자준비금(16), 국제무역박람회 참가준비금(54의3)

② 투융자손실준비금(54)

③ 중소기업투자준비금(13),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준비금(40의2), 지방이전준비금(41),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41의2), 지방기업투자준비금(43의5), 의료시설 투자준비금(71의3)

④ 수출손실준비금(22), 해외시장개척준비금(23), 해외사업손실준비금(27), 해외투자손실준비금(29)

⑤ 각종 특별상각제도(減法 §88①Ⅰ 등에 규정된 특별상각제도)

⑥ 租稅減免制度法上 각종 稅額控除(減法 §88①3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

이 경우 동 규정에 열거된 조문순서론에 따라 순차로 적용을 배제하되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나중에 발생한 것부터 적용배제하며, 동일한 과세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 중 기술·인력 세액공제(17)와 기타 세액공제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기술·인력 세액공제를 우선 적용하며,

⑦ 所得稅·法人稅의 減免 등

국·공채이자에 대한 법인세감면(4의3), 창업중소기업감면(15), 기술용역사업 등 소득공제(20), 해외사업소득공제(26), 축산업소득공제(37), 산림개발소득의 면제(38), 농공지구입주기업(40의4),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감면(40의5), 위탁영농회사감면(40의7), 특정개발촉진지역 입주중소기업감면(40의7), 지방이전기업 조세감면(43의4), 중소기업통합시 조세감면승계(44⑤·⑧), 법인전환시 조세감면승계(45⑤),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조세감면(45의3),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감면(69), 기숙사운영감면(72의6),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감면

⑧ 所得稅·法人稅의 免除
기술소득에 대한 면제(19), 지방이전 법인세면제(42), 수도권안 법인본사 양도차익의 법인세면제(42의2),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법인세면제(45의2), 산업합리화감면(46②), 증자소득공제(55)

⑨ 擬制配當 및 淸算所得에 대한 非課稅(48)

⑩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의 익금불산입(18의2)

사. 適用例

199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외자도입법 제14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199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부칙 §19).

또한 투자세액공제대상 금액 중 最低限稅制度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것은 추후 4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부칙 §25).

아. 農漁民支援을 위한 印紙稅 減免對象 擴大

— 농가의 경영규모 적정화 및 農·畜·水産物의 계약재배, 출하·판매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등을 印紙稅 免除對象에 추가(減法 §81)

從 前		改 正
〈면제대상〉 • 농어민 등이 농협 등으로부터 융자받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한도 3천만원) • 어린이 예금통장, 농·수·축협이 작성하는 조합원의 예금통장 • 농지개량사업으로 인한 재산권의 설정·변경 등에 관한 서류 등 16개유형	⇨	〈추 가〉 •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분합 등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 농어민이 농·수·축협 및 그 중앙회 등과 농·축·수산물의 계약재배·출하·판매·가공·보관을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자. 農·漁業用 石油類에 대한 附加價値稅, 特別消費稅 免除對象 擴大

從 前		改 正
• 농업기계용 석유류 • 연근해 등 어업용선박에 사용하는 것 • 해녀 탈의장 난방시설용	⇨	〈추 가〉 • 김, 멸치, 오징어, 미역건조 시설용 석유류

10. 其他事項

가. 企業公開促進을 위한 再評價 特例制度 廢止(減法 §56의2)

〈特例制度 內容〉

資產再評價法上 再評價要件

○ 도매물가상승률 : 취득일(직전재평가일)부터 25% 이상 상승시에만 재평가

○ 재평가기준일 : 각사업연도 개시일

〈從前租減法上 特例〉

○도매물가상승률에 관계없이 재평가 가능

○ 매월 1일을 기준으로 재평가 가능

〈廢止理由〉

○ 再評價特例의 적용에 따른 再評價積立金을 재원으로 公開 前 무상증자를 통하여 대주주가 세금부담없이 많은 이익을 얻고

○ 공개러쉬현상으로 物量供給이 과다하게 되어 資本市場의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

〈經過規定〉

○ 199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再評價(再評價基準日을 기준으로 함)를 한 법인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韓國證券去來所에 주식을 상장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산임의평가증으로 보아 法人稅 추징

• 資產再評價差益을 資本에 전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사업연도 법인세를 다시 계산하여 追加納付稅額이 있는 경우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法人稅申告時 가산세, 방위세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나. 家業相續에 대한 相續稅 特例規定 補完

從 前		改 正
가업상속시 사업용재산가액의 2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별도공제	⇨	주택공제, 농지공제, 가업상속공제금액 등 물적공제금액을 합쳐서 1억원 범위내에서 공제

※ 가업의 범위

축산업, 수산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다. 域外金融去來(off－shore去來)와 關聯된 有價證券의 範圍 擴大(減法 §69⑥)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면제대상 역외금융업무의 범위 • 외화자금조달 －비거주자로부터의 예수 또는 차입 • 외화자금운용 －비거주자에게 대여	⇨	• 외화자금조달 －유가증권의 국외발행 추가 • 외화자금 운용 －비거주에 대한 자금예치 및 －비거주자 발행 외화표시증권의 인수 또는 매매 추가

〈改正理由〉

先進金融技法의 도입을 통한 우리나라 金融產業의 발전을 위하여 外國換銀行이 취급하는 免稅對象 域外金融業務의 범위를 확대함.

11. 附加價値稅 關聯

－ 農·漁業用機資材에 대한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에 관한 特例規定 및 施行規則 中 改正內容

1990. 12. 31일 대통령령 제13203호 및 1991. 3. 5 재무부령 제1845호로 공포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營農組合法人과 委託營農會社의 稅制支援

(1) 改正內容

종 전	개 정
농기계 등 농업용기자재를 일반농민(개인)이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농업용기자재를 구입시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令 §20①).

(2) 改正理由

農民의 營農費 負擔을 경감하여 주기 위하여 營農組合法人과 委託營農會社가 직접 農業用機資材를 구입시 영세율을 적용토록 하였다.

나. 動力피복 開閉機 및 集魚用 安定機 등을 零稅率 適用對象 機資材에 追加

(1) 비닐하우스 보온자재를 개폐하는데 사용되는 동력피복 개폐기를 영세율 적용대상 농기계에 추가하였다.

(2) 집어용램프뿐만 아니라 안정기, 홀더, 지지대 등 集魚用機資材에까지 영세율 적용을 확대함으로써 집어등의 설치 또는 개체시에도 實質的인 惠澤을 받도록 함.

1991년

◉ 법　　률 : 1991. 1.14. 법　　률 제 4332호(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법 부칙)
(시행일 : 1991. 4.15.)
1991. 8.10. 법　　률 제 4394호(공중전기통신사업법 부칙)
(시행일 : 1991.12.11.)
1991.12.14. 법　　률 제 4436호(한국공항공단법 부칙)
(시행일 : 1991.12.14.)
1991.12.27. 법　　률 제 4451호(시행일 : 1991.12.27)
◉ 시 행 령 : 1991. 6.28. 대통령령 제13407호(시행일 : 1991. 6.28.)
1991.10.31. 대통령령 제13493호(시행일 : 1991.11. 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5호(시행일 : 1991.12.31.)
◉ 시행규칙 : 1992. 3. 3. 재무부령 제 1878호(시행일 : 1992. 3. 3.)

〈要　　約〉

○ 適用時限 延長

— 租稅減免規制法의 적용시한을 「1991년말까지」에서 「1996년말까지」로 5년간 연장함.

○ 과세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減免縮小

— 法人의 特別附加稅에 대하여도 개인의 양도소득세와 같이 감면의 한도제를 신설하여 법인이 각종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연간 특별부가세 總 算出稅額의 7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감면받도록 함.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讓渡稅減免을 폐지함.

— 공장이나 목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공장의 가동기간을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목장의 경영기간을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함.

—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임대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法人이 保有하고 있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업무용부동산에 한해 讓渡稅減免을 허용함.

— 增資所得控除를 다음과 같이 축소조정함.

- 控除期間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製造業은 종전과 같이 3년으로 유지함.
- 上場法人에 대한 공제율을 12%에서 10%로 인하함.
- 법인설립후 2년 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증자소득공제의 적용을 배제함.

- 公共法人이 수익사업용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자산재평가세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함.
- 방위산업과 항공공업이 사업용자산에 대한 100퍼센트 特別減價償却制度를 폐지함.

○ 政府施策의 效率的 遂行을 위한 支援制度의 補強

— 産業의 競爭力提高 支援

- 임시투자세액공제의 施行期限을 「1991년말까지」에서 「1992년 6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되, 大企業은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함.
- 尖端技術設備에 투자한 경우 투자 금액의 10퍼센트를 稅額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尖端技術設備 投資稅額 공제제도를 시행함.
- 人件費支出額에 대해 技術 및 人力開發費稅額控除가 적용되는 훈련기관의 범위에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를 추가함.
- 中小企業의 접대비손비 인정한도 기본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인상함과 아울러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추가함.

— 勤勞者·農漁民 등 庶民 福祉增進 支援

- 무주택 종업원용 주택건설용지로 기업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讓渡稅 50% 減免制度를 신설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을 전액손비로 인정함.
- 기업이 보육시설을 취득하는 경우 建物取得價額의 10% 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讓渡하는 경우의 讓渡稅減免率을 5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함.
- 農·水·畜協 單位組合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저축한도를 예탁금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출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함.
- 장애자용 보장구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稅制度를 零稅率制度로 전환함.

— 대전세계박람회 개최지원

-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 박람회참가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확대 보완하여 건물연면적(㎡)당 100만원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도록 하던 것을 건물연면적(㎡)당 300만원과 참가계약부지면적(㎡)당 150만원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하도록 함.
- 박람회용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90% 상당액을 일시에 減價償却할 수 있도록 함.
- 박람회참가자가 國內生産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박람회용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함과 아울러 關稅의 65%를 경감하도록 함.

—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讓渡稅 減免制度 調整

- 公共事業用地로 土地 등을 양도함에 있어서 협의양도의 경우에는 讓渡稅의 50%를, 수용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70%(5년 미만 보유시는 50%)를 감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협의양도와 수용의 경우 모두 讓渡稅의 70%(5년 미만 보유시는 50%)를 감면하고 채권으로 보상받는 경우에는 讓渡稅의 100%(5년 미만 보유시는 80%)를 減免하도록 함.

— 大都市工場의 地方移轉 支援制度 補完

-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讓渡稅를 면제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구공장과 신공장의 「價額比率」과 「面積比率」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구공장과 신공장의 「가액비율」을 기준으로 감면하도록 함.
-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선양도 후이전), 종전에는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는 경우에 한해 讓渡稅를 減免하던 것을 앞으로는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면 양도세를 감면하도록 함.
- 支援對象이 되는 공장의 범위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추가함.

— 社會間接資本 投資擴充支援

- 社會間接資本에 투자하는 法人이 투자금액의 15%까지 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이를 損費로 인정하도록 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제도를 신설함.

— 부가가치세 관련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대한 특례규정

〈改正內容〉

1. 適用時限의 延長(法 §93)

租稅減免規制法의 適用時限을 1991년 12월 31일에서 1996년 12월 31일로 5년간 延長하였다. 이는 現行 租稅減免規制法이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稅制面에서 뒷받침하기 위하여 同 計劃과 연계하여 5년단위로 운용하고 있는 바, 1992년부터 시작되는 제7차 經濟社會發展 5個年計劃이 제6차계획의 운용기조인 산업의 경쟁력제고 지원, 지역간·부문간 균형발전 도모, 經濟社會의 안정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7차계획을 稅制面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2. 課稅의 공평성 제고를 위한 減免縮小

가. 讓渡稅減免의 縮小

(1) 法人의 特別附加稅에 대한 減免限度制 新設(法 §88의3, 令 §64)

1990年末 稅法改正時 防衛稅가 폐지되는 것을 계기로 정책목적상 減免을 받는 경우에도 減免稅額에 부과되던 방위세할증 부담수준의 稅金은 내도록 하는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인이 讓渡所得稅를 減免받는 경우에는 연간 稅額基準으로 3억원 한도내에서만 減免하도록 하는 讓渡所得稅減免의 한도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와같이 개인의 讓渡所得稅에 대한 減免의 한도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과의 과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해 法人의 特別附加稅에 대하여도 일정한도내에서만 감면받도록 하는 減免의 한도제를 도입하여 法人이 각종 特別附加稅를 減免받는 경우 연간 減免稅額은 特別附加稅 算出稅額의 70%를 넘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이와 같은 特別附加稅의 減免限度制는 모든 減免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의 減免에 한해 適用된다.

- ○ 수도권내 法人本社를 수도권외로 이전시의 減免(法 §42의2)
- ○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減免(法 §57)
- ○ 都市再開發 事業用地에 대한 減免(法 §58)
- ○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減免(法 §59)

○ 國家·地自體·土開公·住公 등에 讓渡하는 토지에 대한 減免(法 §60)
○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減免(法 §62)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減免(法 §67의4)
○ 10년 이상 經營牧場에 대한 減免(法 §67의11)
○ 5년 이상 사용한 業務用土地 등에 대한 減免(法 §67의13)
○ 사원용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減免(法 §67의15)
○ 기숙사건설용지에 대한 減免(法 §72의4)

또한 減免稅額의 한도액 계산시 기준이 되는 특별부가세 算出稅額이라 함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特別附加稅 算出稅額의 총 합계액에서 減免의 한도제가 적용되지 않는 減免에 대한 特別附加稅 算出稅額의 合計額을 차감한 金額을 말한다.

참고로 減免의 한도제가 적용되지 않는 減免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

① 國稅基本法, 條約 및 租稅減免規制法 제3조제1항에서 規定하는 法律(租稅減免에 관한 사항을 規定할 수 있는 法律)에 의해 特別附加稅가 減免되는 경우

② 租稅減免規制法에서 規定하는 特別附加稅 減免 중 다음의 減免

○ 大都市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減免(法 §42)
○ 中小企業間의 統合에 따른 減免(法 §44)
○ 中小企業의 사업전환에 따른 減免(法 §45의2)
○ 合理化指定企業의 資產讓受渡時의 減免(法 §46)
○ 금융기관의 저당권실행 등에 따른 감면(法 §46의4)
○ 農·水·畜協 組合間의 자산양도에 대한 減免(法 §61)
○ 敎育事業用土地에 대한 減免(法 §67의3)
○ 干拓地 등에 대한 減免(法 §67의10)
○ 社會福祉 事業用土地 등에 대한 減免(法 §67의14)

한편 개인의 讓渡所得稅에 대하여 稅額基準으로 연간 3억원을 한도로 감면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어 法人의 特別附加稅 減免稅額에 대하여도 연간 3억원까지는 「算出稅額의 70%」기준과 관계없이 전액 減免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1991년부터 개인에 대한 讓渡所得稅減免의 限度制 施行 ○ 年間 減免稅額限度 3억원	— 法人에 대하여도 特別附加稅減免의 限度制 新設 ○ 年間 減免稅額은 特別附加稅 算出稅額의 70%를 限度로 함(단, 3억원까지는 全額)

(2) 個人의 讓渡所得稅에 대한 減免의 限度制 補完(法 §88의2)

法人의 特別附加稅에 대한 減免의 限度制施行과 관련하여 讓渡稅 減免의 限度制를 適用받는 減免이 개인과 法人間에 형평을 이룰 수 있도록 개인의 讓渡所得稅減免의 限度制를 適用받는 減免의 範圍에 다음의 減免을 추가하였다.

○ 10년 이상 경영목장에 대한 減免(法 §67의11)

○ 5년 이상 가동공장에 대한 減免(法 §67의12)

(3)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한 讓渡稅減免 폐지(법 §59①, 10)

그간 國土開發事業의 支援을 위해 공유수면매립법의 規定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讓渡하는 讓渡稅의 50%를 減免하는 制度를 운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개발이익의 환수측면에서 동 제도를 폐지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공유수면매립법의 規定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취득한 매립지 양도시 讓渡稅 50% 減免	— 廢止

〈適用例 및 經過措置〉

○ 1992. 1. 1 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 1991. 12. 31 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를 1994. 12. 31까지 讓渡時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함.

(4) 代替取得을 위한 부동산 讓渡時의 減免要件 強化(法 §67의11, §67의12, §67의13)

그간 일정기간 사업에 供한 목장이나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讓渡하는 경우에는 사업규모가 유지될 수 있도록 구목장 또는 구공장의 처분에 따른 讓渡稅를

면제하는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牧場의 경우에는 5년 이상, 공장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경영하는 것을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공장의 경우 사업개시후 정상가동하는 데에는 사실상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종전의 요건은 현실에 맞지 않는 면이 있으므로 이를 보다 강화하여 5년 이상 가동한 경우에 한해 減免하도록 함과 아울러 목장의 경우에도 자경농지에 대한 減免要件(8년 이상 경작)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10년 이상 경영한 경우에 한해 감면이 이루어지도록 보완하였다.

從 前	改 正
— 5년 이상 經營한 목장을 이전목적으로 讓渡時 讓渡稅 100% 免除 — 개인 또는 法人이 2년 이상 가동공장을 이전목적으로 양도시 양도세 100% 免除	— 목장 經營期間을 연장 ○ 「5년 이상」→「10년 이상」 — 공장가동기간을 연장 ○ 「2년 이상」→「5년 이상」

〈適用例 및 經過措置〉

○ 1992. 1. 1 이후 讓渡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 1992. 1. 1 현재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으로서 1992. 12. 31 이전에 그 목장을 讓渡하거나 그 목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목장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1992. 1. 1 현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으로서 1992. 12. 31 이전에 그 공장을 讓渡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기 전에 신공장으로 이전하여 事業을 개시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5)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임대주택취득 목적으로 企業이 보유한 부동산을 讓渡時 業務用에 한하여 讓渡稅減免許容(法 §67의15)

法人이 무주택종업원을 위해 사원용주택을 신축하거나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2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特別附加稅를 減免하도록 하고, 非業務用土地의 경우에도 1990년말 이전에 취득한 것을 무주택종업원을 위한 사원용주택을 취득하여 임대(분양은 제외)할 목적으로 1991년말까지 讓渡하는 경우에는 特別附加稅를 50% 減免하도록 하여 종업원의 주거안정을 도모함과 아울러 非業務用土地의 조기처분을 유도해 왔다. 이번 改正에서는 非業務用土地에 대한 減免은 예정대로 1991년말로 종료되도록 하는 한편 事務用土地의 경우에도 공장대체취득에 따른 減免과 균형을 맞추어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한해 減免하도록 減免要件을 강화하였다.

從 前	改 正
— 法人이 국민주택규모의 종업원용 주택을 新築·取得하여 임대·분양할 목적으로 2년 이상 業務用으로 사용한 토지를 讓渡時 特別附加稅 100% 免除 ○ 다만, 非業務用土地는 1991. 12. 31까지 讓渡時 特別附加稅 50% 減免	— 非業務用土地에 대한 減免 廢止 — 減免對象이 되는 事務用 土地의 경우에도 감면요건 強化 ○「2년 이상」 業務用으로 사용→「5년 이상」

〈適用例 및 經過措置〉

○ 1992. 1. 1 이후 讓渡하는 분부터 適用하되

○ 1992. 1. 1 현재 2년 이상 事務用으로 사용한 토지로서 1992. 12. 31 이전에 그 토지를 讓渡하거나 그 토지를 讓渡하기 전에 종업원용 주택을 新築·取得하여 賃貸·分讓한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6) 유휴토지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減免排除 擴大(法 §66의3)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로서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에의 規定에 의한 유휴토지에 대하여는 租稅減免規制法上의 讓渡稅減免중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減免(法 §57), 都市再開發 事業用地에 대한 減免(法 §58), 國家등에 讓渡하는 경우의 감면(法 §60),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감면(법 §60) 등 일부 減免의 適用을 배제하던 것을 法人의 非業務用土地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의 배제규정과 형평을 맞추어 租稅減免規制法의 規定에 의한 모든 讓渡所得稅減免의 適用을 배제하도록 보완하였다.

(7) 신축주택에 대한 讓渡稅減免制度를 한시적으로 운영(法 §67의2)

1982. 5. 18일부터 1983. 6. 30까지의 기간중에 신축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한 讓渡所得稅 課稅時 별도의 낮은 特例稅率(5%)을 적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동 제도를 앞으로 3년간만 더 시한을 두어 한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1994년말까지 당해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特別稅率의 適用을 받을 수 있으며 1995년 이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과세된다.

이는 특정기간중에 취득한 부동산을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언제 양도하더라도 特例規定이 적용되도록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과세철차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1982. 5. 18～1983. 6. 30 기간중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讓渡時에는 讓渡稅 별도세율 (5%) 적용 ※ 현행 양도소득세율 • 국민주택 : 30% • 일반주택 : 40%～60%	— 당해 신축주택을 1994. 12. 31까지 讓渡하는 경우에 한해 5% 特例稅率 適用

나. 增資所得 控除制度의 縮小調整(法 §55, 令 §45)

企業의 직접금융을 촉진하여 재무구조의 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배당소득에 대한 法人稅와 所得稅의 이중부담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를 일부 축소조정하였다. 이는 동 제도가 본래의 취지인 증자유인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 반면, 최근에 減免規模가 크게 늘어남으로써 기술개발·중소기업·농어촌 등 여타 주요 지원과의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이를 보완함과 아울러 1991년부터 배당소득에 대한 Gross－up制度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이번에 증자소득공제를 축소조정한 내용을 보면 첫째,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되 製造業의 競爭力을 支援하기 위한 측면에서 製造業을 영위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3년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業種別로 增資所得控除期間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製造業과 기타의 業種을 겸영하는 法人의 경우에는 증자후 2년 초과 3년 이내의 기간중에는 어떻게 製造業의 增資所得控除金額을 계산하느냐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事業別收入金額을 기준으로 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을 增資所得控除金額으로 하도록 하였다.

이 경우 製造業과 기타의 業種을 兼營하는 法人의 증자후 2년 초과 3년 이내의 기간의 增資所得控除金額을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ext{증자소득공제금액} = \text{공제대상증자액} \times \frac{\text{제조업수입금액}}{\text{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times \frac{\text{증자후 25월이 되는 달 이후의 월수}}{12} \times \text{공제율}$$

위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범위는 고정자산의 讓渡價額, 債務免除益 등 接待費 限度計算時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구체적으로는 法人

稅法施行令 제43조제1항제1호 내지 제8호의 收入金額)은 역시 제외하도록 하였으며, 다만, 製造業 이외의 事業에서 발생한 收入金額이 전체 收入金額의 10%에 미달하는 사업연도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전체수입금액을 製造業의 收入金額으로 보아 增資所得控除金額을 계산하도록 簡素化하였다.

둘째, 上場法人에 대한 공제율을 인하조정하며 中小法人과 上場法人에 대하여는 여타법인보다 높은 12%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上場法人에 대하여는 여타法人과 같이 1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中小法人에 한해 종전과 같이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셋째, 적용대상증자의 범위를 축소하여 법인설립후 2년 이내의 증자분에 대하여는 增資所得控除의 適用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現行의 受權資本制度下에서 法人設立당시 受權資本의 일부(25%)만을 갖추어 事業을 개시한 후 단기간내에 용이하게 增資가 가능한 점을 이용하여 설립당시에 의도적으로 충분한 資本金을 갖추지 않고 추후 증자를 행하는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공제기간 : 3년 – 공제율 ○ 상장법인 : 12% ○ 중소법인 : 12% ○ 여타법인 : 10% – 적용대상증자 ○ 증자시기의 제한없음	– 공제기간 : 2년(단, 제조업은 3년) – 공제율 ○ 상장법인 : 10% ○ 중소법인 ┐ ○ 여타법인 ┘ (종전과 같음) – 적용대상증자 ○ 설립후 2년 이내의 증자분은 적용배제

〈適用例〉

○ 法 또는 令 시행후 최초로 資本에 관한 변경 등기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 法 또는 令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資本增加額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規定에 의함.

다. 기타 축소된 감면 내용

(1) 公共法人에 대한 資產再評價稅 非課稅制度 廢止(法 §8②)

公共法人이 收益事業에 供하는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세를 비과세하던 것을 앞으로는 여타 非營利法人의 경우와 같이 자산재평가세를 과세하도록 하여 법인간 과세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1년간의 재평가유예기간을 두어 改正規定은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최

초로 재평가일이 도래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2) 防衛産業·航空工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制度 廢止(法 §40)

防衛産業과 航空工業 등 特定産業의 事業用資産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의 100%상당액을 특별감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産業間 과세의 중립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山林開發所得에 대한 減免要件 強化(法 §38)

山林法에 의한 영림계획 또는 특수개발지역사업에 의해 새로이 조림한 산림, 채종림, 보안림, 천연보호림으로서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을 벌채하거나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免除하고 있는 바, 면제요건을 강화하여 앞으로는 10년 이상 조림한 경우에 한해 減免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통상 산림의 경우 최소한 10년 이상은 조림하여야만 原資材 등으로 활용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보다 장기조림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適用例 및 經過措置〉

法 施行當時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벌채 또는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3. 政府政策의 효율적 수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支援制度의 補強

가. 産業의 競爭力提高 支援

(1)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조정 및 시행기간 연장(令 §57의2 및 규칙 §21①)

臨時投資 稅額控除制度는 政府가 민간설비투자의 촉진을 통한 경기회복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9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동 제도가 시행된 이래 1989년말, 1990년말 두차례에 걸쳐 시행기간을 연장하여 1991년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번 稅法改正時 아직도 제반 경제여건이 불투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다시 1992년 6월말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번에 시행기간을 연장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도를 일부 조정하였는바, 첫째 製造業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기계장치 즉 租稅減免規制法 施行規則 별표8에 규정된 공정개선 및 자동화 시설(현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이 동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5% 상당액을 납부할 稅額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고 광업을 영위하는 大企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

이 대기업에 대해 임시투자 세액공제 적용대상설비의 범위를 축소조정한 것은 동 제도가 장기간 시행됨에 따라 가급적 단기간내에 조속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실효성이 저하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製造業과 鑛業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종전과 같이 모든 사업용 기계장치투자에 대해 적용하도록 하였다.

둘째, 종전에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은 그 10% 상당액을, 외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3%상당액을 稅額控除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1992년 이후부터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외산기자재투자에 대하여 臨時投資稅額控除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것은 최근 외산기계류의 수입급증이 國際收支赤字가 累積되고 있는 주요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대상투자 ○ 모든 제조·광업의 기계장치 투자 — 공제율 ○ 국산기계장치 : 10% ○ 외산기계장치 : 3% — 시행기간 ○ 1989. 7. 1~1991. 12. 31	— 대상투자 ○ 중소제조업·중소광업의 기계장치 투자 ○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기업의 기술개발·품질개선 등을 위한 기계장치 투자 ○ 국산기계장치에 한해 10% — 시행기간 ○ 1992. 6. 30까지 6개월 연장

〈適用例〉

1992년 1월 1일 이후 投資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고로 臨時投資稅額控除는 시행령 제57조의2제1항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投資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과세연도마다 투자한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稅額控除를 받거나 投資가 완료된 과세연도에 총투자금액에 대해 일괄하여 稅額控除를 받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종전의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1991년 12월 31일 현재 投資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1년 12월 31일에 投資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여 199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課稅年度에 투자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改正에 있어서는 종전과는 달리 적용대상기업, 적용대상설비 및 적용대상투자(국산여부)의 범위가 조정된 점을 감안하여 종전의 부칙 제3조제1항의 規定은

改正을 하지 않고 그대로 효력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번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시행기간 연장에 불구하고 1991년 12월 31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일단 1991년 12월 31일로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稅額控除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992년 1월 1일 이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改正된 내용에 따라 새로이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을 받게 되며 1992년 6월 30일 현재 投資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에는 1992년 6월 30일에 投資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받도록 하였다.(개정 시행령 부칙 §8①)

(2)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시행(規則 §21⑨ 및 규칙 별표 10)

尖端技術設備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制度는 현행 租稅減免規制法 제71조로 운영하고 있는 특정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중 생산성향상설비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制度의 일종으로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투자금액의 10%(외산기자재를 사용한 투자금액은 3%)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거나 투자연도에 투자 금액의 50%(외산기자재를 사용한 경우는 30%)를 일시에 減價償却할 수 있도록 支援하는 制度이다.

동 제도는 製造業의 競爭力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1990년 5월 1일자로 租稅減免規制法 施行令 제57조제1항제6호의2에 規定된 바 있으나 그동안 임시투자 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는 관계로 施行規則에 위임된 대상설비에 범위는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있었다. 이번에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가 축소조정됨에 따라 대상 설비의 범위를 규정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는바, 尖端技術設備는 尖端技術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그 구체적인 범위는 租稅減免規制法 施行規則 별표 10에 規定하였다. 尖端技術設備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는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모두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投資에 대한 세액공제와의 형평을 감안하여 製造業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해 적용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1990. 5.1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 ○ 그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시행되는 관계로 구체적인 대상설비의 범위는 정하지 않고 있었음.	— 첨단기술설비의 범위 규정 ○ 생산자동화 및 제어설비, 가공 및 품질향상설비, 자동계측·검사·계량설비 등으로서 ○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적용 ※ 구체적인 설비의 범위는 조감법시행규칙 별표 10참조

참고로 尖端技術設備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制度의 시행에 따라 租稅減免規制法 제71조제1항제1호의 生産性向上 施設投資에 대한 稅額控除制度를 設備投資의 유형별로 요약해서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투 자 유 형	적용대상기업	공 제 율	비 고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투자	○ 중소기업(제조업)	○ 15%	令 §57③, 규칙 §21⑩,
○ 노후시설(내용연수가 80% 이상 경과된 기계장치)의 개체투자	○ 중소기업(제조업·광업)	○ 10%	令 §57①6호, 규칙 §21⑥
○ 첨단기술설비투자	○ 대기업, 중소기업 공통	○ 10%	令 §57①6호의 2, 규칙 §21⑨

〈適用例〉

규칙시행일(1992년 3월 3일)이후 투자분부터 適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99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한 분으로서 규칙시행전에 이미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규칙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시행후 3월 이내에(1992년 6월 2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규칙시행전에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규정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3) 人件費支出額에 대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연구원의 범위 확대(규칙 §6②)

研究員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현행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으로서 그 支出額의 10%(중소기업은 15%) 상당액을 납부할 稅額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는 과학기술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전문대졸업 이상)나 기술계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사2급 이상)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한해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위 등 자격요건에 관계없이 모든 연구원에 지급하는 인건비에 대해 동 稅額控除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人件費가 稅額控除되는 연구원의 범위를 확대한 것은 학위 등의 자격은 없으나 산업계에 장기간 종사함으로써 사실상 학위소지자보다 우수한 자질과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자격요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排除되는 등의 불형평을 완화함과 아울러 기업이 실질적으로 우수한 연구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세액공제대상 연구원의 범위 ○ 과학기술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계의 기사 1급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자	— 세액공제대상 연구원의 범위 ○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

(4) 技術 및 人力開發費 稅額控除가 적용되는 위탁훈련비의 범위확대(규칙 §6⑨)

현재 종업원의 生産性向上을 위한 인력개발비로서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회사내 자체교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전문교육기관에 품질관리 등에 관한 훈련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종업원의 위탁훈련비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종업원의 위탁훈련비가 稅額控除되는 전문교육기관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동 지원제도를 보강하였는바, 종전에는 공업표준화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공업표준협회, 공업발전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생산성본부,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대한 위탁훈련비에 대해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과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에 지급하는 위탁훈련비에 대하여도 기술 및 人力開發費 稅額控除制度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유사훈련기관간에 지원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다음 기관에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 및 설비관리에 관한 훈련위탁시 그 위탁훈련비의 10%를 세액공제 ○ 한국공업표준협회 ○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추　　가)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5)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범위 명확화(令 별표 6 §2호마목, 규칙 §6⑫)

종전에는 製造業을 영위하는 大企業이 製造業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포

괄적인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실제로 어떤 비용이 그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혼선이 있는 등 집행면에서 일부 분명치 않은 점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그 대상 비용의 범위를 다음의 비용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執行上의 혼란과 마찰이 없도록 하였다.

○ 지도요원의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 직업훈련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 직업훈련용 기자재, 장비, 시설의 임차비용
○ 국내 전문연구기관에의 위탁교육비 및 기술자문비

(6) 디자인과 포장기술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한 지원(令 별표 5 §1호나목, 令 별표 6 §1호나목)

산업디자인·포장진흥법에 의해 설립된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에 기술개발 용역을 위탁하고 지급하는 비용이나 동 개발원과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함에 따른 비용을 技術開發準備金 및 技術人力開發費 세액공제 대상의 범위에 추가하여 제품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였다.

(7) 기술소득에 대한 減免制度의 보완(法 §19③, 令 §16②)

그간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또는 과학기술분야의 기술비법을 획득·개발하여 보유하는 자가 이를 양도하거나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기술소득)에 대하여는 기술개발에 투자된 노력과 비용을 감안하여 조세지원을 허용함으로써 기술개발의욕을 고취·장려하는 제도를 운용해 왔다.

동 제도의 운용에 있어서는 개발된 특허권이나 노하우 등의 국내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내국인에게 讓渡·貸與하는 경우에는 所得의 全額을, 외국인에게 讓渡·貸與하는 경우에는 소득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차등지원을 하고 있는바, 개발된 신기술을 국내에 이전하고자 하여도 양수자가 없어 국내이전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불가피하게 국외에 이전하는 경우에는 국내이전의 경우와 같이 기술소득 全額을 감면하도록 하여 조세지원의 형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였다.

여기서 "국내이전이 불가능한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의 規定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特許權 등의 새로 개발된 기술이 國內에서 商品化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科學技術處長官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從 前	改 正
○ 特許權 등을 國內에 이전하고 얻는 소득 : 100% 면제 ○ 특허권 등을 國外에 이전하고 얻는 소득 : 50% 감면	○ 국내에서 상품화가 불가능하여 국외이전시에는 내국인에게 讓渡하는 경우와 같이 면제

(8) 중소기업에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인상(法 §15의2)

중소기업이 지출한 접대비는 연 600만원과 자본금의 2% 및 수입금액의 0.2%를 합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던 것을 중소기업의 세부담경감측면에서 기본금액 연 600만원을 1,20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중소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 한도

從 前		改 正	
○ 600만원 ○ 자본의 2% ○ 수입금액의 0.2%	합계	○ 1,200만원 (좌 동) (좌 동)	합계

(9)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增資所得控除 許容(令 §45①)

종전에는 內國法人으로부터 현금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增資所得控除의 適用을 배제하고 다만 機關投資者가 출자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增資所得控除를 허용하고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창업중소기업이나 신기술사업자가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증자소득공제가 허용되는 內國法人出資者의 범위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法律에 의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과 신기술사업 투자조합에 출자한 法人이 당해 조합을 통해 출자하는 경우를 추가하였다.

從 前	改 正
— 內國法人 중 機關投資者가 출자한 분에 한해 증자소득공제 허용	— 增資所得控除가 허용되는 內國法人出資者의 범위확대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 신기술사업 금융회사 ○ 신기술사업 투자조합 (추가)

⑽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 확대(令 §11)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추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중소기업 해당업종〉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수산업 ○ 도매업·소매업 ○ 건축·공학 및 기술검사 서비스업 ○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추 가)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나. 勤勞者·農漁民 등 서민복지증진 지원

⑴ 從業員用 주택건설용지로 企業에게 토지 양도시 讓渡所得稅·特別附加稅 50% 감면(法 §62, 令 §50)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讓渡하는 경우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를 감면하고 있는 바, 무주택종업원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국민주택을 짓고자 하는 企業에게 당해 종업원용 주택건설용지로 토지를 讓渡하는 경우에도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여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였다.

이 경우 企業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아니라도 무방하나 다만 1회에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해야 하며 무주택종업원이라 함은 출자임원(上場法人의 소액주주는 제외)이 아닌 자로서 주택이 없는 종업원을 말한다. 이 경우 企業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업원용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거나 폐업·해산하는 경우 및 종업원용 국민주택을 신축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주택을 처분하거나 종업원용으로 임대하는 용도가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企業으로부터 減免받은 讓渡所得稅 또는 特別附加稅를 추징하게 된다.

從 前	改 正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 기업에게 종업원용 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 50% 감면

(2)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기부금의 전액 손비인정(法 §49②7)

勞動部長官訓令인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에 의해 기업내에 설치·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하여 일정한도내에서 損費로 인정하고 있었으나 앞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기업내에 별도의 法人으로 설립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지출하는 寄附金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내에서 전액 損費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는 1991. 7에 제정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이 1992.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 법의 취지에 맞추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사내근로복지기금운영준칙(노동부훈령)에 의해 운영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비인정 ※ 지정기부금의 손비인정한도 : 자본의 2%＋소득의 7%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기업이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 손비인정

(3) 보육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제도 도입(法 §72의 7)

현재 企業이 종업원을 위해 사원용임대주택 또는 기숙사를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납부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보육시설(탁아소)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에도 그 取得價額의 10%를 세액공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1991. 1. 14자로 영유아보육법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同法에 의해 상시 500인 이상의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사원용임대주택이나 기숙사투자의 경우에는 새로이 토지를 구입한 경우 그 부속토지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도 10% 세액공제가 인정되나 보육시설 투자의 경우에는 부속토지 취득금액에 대하여는 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다르다. 보육시설에 대한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보육시설을 착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보육시설신축계획서를, 준공하거나 구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는 준공·구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육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자가 당해 보육시설의 준공일 또는 구입일부터 5년 이내에 종업원의 자녀를 위한 보육용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에는 감면받은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추징한다.

從 前	改 正
— 기업이 사원용임대주택이나 기숙사를 신축·구입시 취득가액의 10%상당액을 세액공제	— 기업의 보육시설(탁아소)을 신축·구입시에도 건물취득가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

(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讓渡稅 감면확대(法 §67의4)

현재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특별부가세의 50%를, 10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를 감면하고 있는 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2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당해 임대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所得稅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율을 50%에서 100%로 확대하여 임대주택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보강하였다.

從 前	改 正
— 5년 이상 임대주택 ○ 양도세 50% 감면 — 10년 이상 임대주택 ○ 양도세 100% 감면	○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사업자(20호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시 감면율을 100%로 확대

(5) 非課稅되는 상호금융기관저축의 가입한도 인상(法 §4, 令 §2②, 규칙 §2)

農漁民이나 상호 유대관계가 있는 자들이 구성한 조합, 즉 농·수·축협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에 대한 1,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5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에 대하여는 所得稅와 住民稅를 非課稅하고 있는 바, 農漁民을 비롯한 庶民의 저축증대와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非課稅貯蓄의 가입한도를 예탁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출자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다.

從 前	改 正
— 농·수·축협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인삼협동조합의 저축 비과세 한도	
○ 예탁금 : 1,000만원	○ 예탁금 : 2,000만원
○ 출자금 : 500만원	○ 출자금 : 1,000만원

다만, 비과세한도의 인상 등에 따라 동 저축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기 위해 1992. 7. 1이후부터는 소정의 통장에 의해 거래하는 분에 한해 비과세하도록 하였는 바, 비과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통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통장의 명칭과 기재사항에 관한 요건으로서 통장은 「비과세예탁금 종합통장」 또는 「비과세 출자금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구별하여 가입자별로 통장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둘째, 통장의 거래방법에 관한 요건으로서 가입자는 실명으로 非課稅預託金 綜合通帳과 非課稅 出資金通帳에 각각 1통장에 한해 가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동일인이 같은 종류의 통장에 둘 이상 가입하였을 경우에는 먼저 개설된 통장으로 거래하는 분에 한해 非課稅되며 나중에 개설된 통장은 일반통장으로 보아 여타 일반저축과 같은 稅率로 課稅한다.

셋째, 통장의 거래금액한도에 관한 요건으로서 預託金綜合通帳의 경우에는 2,000만원을 출자금통장의 경우에는 1,000만원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만약 동 거래금액한도를 초과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게 된 날부터는 당해 통장을 비과세통장으로 보지 아니하며 따라서 일단 거래한도를 초과한 후에는 나중에 거래금액이 적어져 거래한도를 충족한다 하더라도 재차 비과세통장으로 환원될 수 없다.

넷째, 취급금융기관의 자료제출의무로서 非課稅預託金 綜合通帳과 非課稅 出資金通帳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반기별(6개월)로 반기종료 다음달 말일까지 非課稅預託金 明細書 또는 非課稅出資金 明細書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讓渡稅 또는 贈與稅의 면제기한 연장(法 67의6, §67의7 및 令 §55조의5)

1986. 12. 31 현재 농지·초지·산림지를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소유농지 등을 1991. 12. 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양도세나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 제도의 적용대상인 자경농민의 자격범위를 농지 등의 소재지 및 농지 등의 소재지와 인접한 行政區域(시·구·읍·면)에 거주하는 자로 한정하던 것을 농지 등으로부터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하여 확대하였다.

從 前	改 正
— 1986. 12월말 현재 農地 등을 소유하는 자가 ○ 자경하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게 1991. 12월말까지 양도·증여시 양도소득세·증여세 면제	— 적용시한 연장 ○ 감면대상 토지 : • 1986년말 현재 보유농지→1991년말 현재 보유농지 ○ 감면시한 연장 : • 1991년말까지→1996년말까지

(7) 인지세가 면제되는 농민의 범위확대(法 §81)

農民이 농협중앙회나 단위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소비대차증서 등의 융자관련서류를 작성하는 경우 융자금액이 3천만원 이내인 경우에는 당해 작성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비과세하고 있는 바, 農民의 範圍에 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上에 農民의 範圍에 포함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를 추가하였다.

從 前	改 正
— 농민이 농협으로부터 3천만원 이내의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해 인지세 면제	— 인지세가 비과세되는 농민의 범위에 ○ 영농조합법인 및 위탁영농회사를 추가

(8) 이전시 讓渡稅가 免除되는 農漁民支援施設의 範圍 조정(규칙 §20의9⑨)

農漁民支援施設이라 함은 농·수·축협과 그 중앙회가 사업수행을 위해 보유하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을 말하며 이와같은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도록 하고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하는 경우 特別附加稅가 免除되는 法人의 範圍에 농지개량조합 및 그 연합회와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를 추가하여 농어민지원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간에 과세형평이 유지되도록 하였다.

(9) 장애인용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法 §73. 6, 法 §74①6, 令 §57의13, 令 §58⑦)

의수족·휠체어·보청기 등 장애인용 보장구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로 전환하였다. 이는 장애인이 보장구를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위한 것이다.

⑽ 特別消費稅 및 酒稅가 免除되는 군 직영매점 판매물품의 범위 확대(令 §60②)

현재 군 직영매점에서 판매하는 물품 중 생활필수품적 성격의 물품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와 주세를 면제하도록 하여 군장병의 복지증진을 지원하고 있는 바, 면제대상물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從 前	改 正
— 군 PX면세대상 물품 ○ 창문형 공기조절기 ○ TV수상기, VTR ○ 축음기, 녹음기 ○ 냉장고, 전기세탁기 ○ 청량음료·기호음료·주류	— 추 가 ○ 분외형공기조절기 (다만, 냉방냉풍기에 한하여 스탠드형, 멀티형은 제외) ○ 전자레인지

다. 大田世界博覽會 開催 支援

(1)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法 §67의5)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의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特別附加稅를 免除하도록 하는 制度를 신설하였다.

이는 1988년 서울올림픽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올림픽조직위원회가 올림픽개최용으로 사용한 선수 및 기자용 아파트 등 부동산을 양도시 特別附加稅를 면제한 것과 같이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원활히 事業을 수행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위한 것이다.

(2) 박람회 참가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인상(法 §54의3, 令 §44의3①)

1989년말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시 대전세계박람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박람회 참가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제도를 도입하면서 동 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박람회용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당 100만원을 한도로 한 바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손비인정한도를 ㎡당 100만원에서 ㎡당 30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함과 아울러 박람회참가 계약서상의 부지면적을 기준으로 ㎡당 150만원까지 설정할 수 있는 부지면적기준을 추가하여 두가지 기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박람회용 건물의 연면적만을 기준으로 하여 준비금을 설정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최종설계가 확정될 때까지 준비금의 설정이 곤란 할 뿐 아니라 상징탑

이나 돔식 건물 등의 경우에는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고, 아울러 박람회참가자의 예상투자규모가 증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당 100만원	○ 참가계약 부지면적×㎡당 150만원 ○ 전시용 건물의 연면적×㎡ 300만원 중 선택

(3) 박람회용 고정자산에 대한 일시상각제도 신설(法 §54의4, 令 §14의4, 규칙 §17의3)

박람회조직위원회와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法人이 박람회전시용으로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연도에 취득가액의 90% 상당액을 일시에 減價償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박람회참가기업의 고정자산취득에 따른 자금부담이 완화되도록 지원하였다. 90% 일시 減價償却이 허용되는 固定資產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박람회전시용 건물과 구축물
○ 박람회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장치
○ 전시용 영상장치, 조명장치 및 전기음향기기
○ 자기부상열차, 궤도차 및 그 관련설비
○ 박람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고정자산과 그 부속설비

(4) 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범위 확대 및 관세경감

(가) 박람회참가자가 수입하는 박람회용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 면제(法 §75, 令 §58의2)

종전에는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박람회용 물품에 한해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박람회참가자가 國內生產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박람회용물품에 대하여도 特別消費稅를 면제하도록 하여 박람회용물품이 원활히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을 보강하였다. 동 제도가 적용되는 박람회참가자는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직접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를 비롯하여 당해 참가계약체결자 또는 박람회조직회와 전시시설의 제작·건설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한다. 따라서 도급계약체결자와 재차 도급계약을 체결한 자, 즉 不都給者는 지원대상에

서 제외되며 박람회조직위원회와 직접 박람회참가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단순히 위락시설이나 편의시설에의 참가계약을 체결한 자는 동 지원이 적용되지 않는다.

(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박람회용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제(法 §76, 令 §58의3)

종전에는 박람회용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國內生産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特別消費稅免除制度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시 박람회조직위원회 또는 박람회 참가자가 박람회용으로 사용하는 國內生産物品 중 박람회전시시설의 제작 또는 건설을 위해 직접 사용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동 지원을 적용받을 수 있는 박람회참가자의 범위는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박람회참가자와 일치한다.

(다) 박람회참가자가 박람회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法 §83①)

종전에는 대전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박람회시설의 제작·건설이나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 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한해 관세를 65% 경감하던 것을 박람회참가자에 대하여도 동 지원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라. 讓渡稅減免制度 補完

(1)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讓渡稅減免制度 調整(法 §57, 法 부칙19②, 令 §47)

종전에는 公共事業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公共事業의 시행자에게 공공사업용지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50%를 감면하고, 대규모 개발사업용지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 등의 보유기간에 따라 감면율에 차등을 두어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讓渡稅의 70%, 5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讓渡稅의 50%를 감면하도록 하되 다만, 법률부칙에 特例規定을 두어 토지수용의 경우와 대규모 개발사업용지로 토지 등을 1991년말까지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稅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협의에 의하여 讓渡하는 경우와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율을 동일하게 조정하여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讓渡稅의 70%를 5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의 50%를 감면하도록 하고 대규모 개발 사업용지로 讓渡하는 경우의 특례제도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公共事業에 대한 채권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용지보상대금을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讓渡稅의 30%를 추가로 감면하도록 하여 5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讓渡稅의 100%를, 5년 미만 보유한 경우에는 讓渡稅의 8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감면율의 特例가 적용되는 채권이라 함은 토지수용법과 公共用地의 取得 및 손실보상에 관한 特例法의 規定에 의해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발행하는 土地報償債券을 말한다.

한편 이번 改正에서는 公共事業이 여러해에 걸쳐 진행되는 점을 감안하여 改正法律 부칙(제16조제2항)에 特例規定을 두어 協議하여 양도하는 경우든 수용되는 경우든 관계없이 1992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改正規定에 불구하고 讓渡稅가 전액 免除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공공사업용지로 협의양도시 : 50% 감면 — 대규모개발사업용지로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 ○ 5년 이상 보유 : 70% 감면 ○ 5년 미만 보유 : 50% 감면 * 다만, 부칙 §14에 의하여 1991년말까지 讓渡時는 100% 免除	— 협의양도 및 수용시의 감면율을 동일하게 조정하되 채권보상시의 감면을 우대 5년 이상 5년 미만 ○ 협의양도 : 70%(100%) 50%(80%) ○ 토지수용: 70%(100%) 50%(80%) ( ) : 채권보상시의 감면율 * 다만, 부칙 §16에 의하여 1992년말까지 讓渡時는 100% 免除

(2) 工場地方移轉에 따른 減免制度 補完

(개) 減免要件 改善(令 §36①, 令 §35⑤)

그간 대도시에 소재하는 공장을 대도시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에 따라 발생하는 讓渡差益에 대하여 法人稅 特別附加稅 또는 讓渡所得稅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算出稅額에 신공장의 대지면적이 구공장의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면적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산출세액에 신공장의 가액이 구공장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比率(價額比率)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 減免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免除稅額을 계산함에 있어서 신공장과 구공장의 價額比率에 의해서만 계산하도록 하고 面積比率에 의한 減免稅額을 계산하는 기준은 삭제하도록 減免稅額의 계산방법을 개선하였는 바, 이는 종전의 規定이 지방에 기 보유하고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부지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적비율 기준에 의해 감면을 받을 수 없어 기업의 토지취득을 유도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업의 토지취득욕구를 억제함과 아울러 생산력제고를 위한 기계장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측면에서 신공장의 투자가액을 기준으로 면제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감면 세액은 신·구 공장의 『면적비율』과 『가액비율』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함 ○ 산출세액 × 신공장대지면적 / 구공장대지면적 ○ 산출세액 × 신공장가액 / 구공장가액	— 면제세액 계산시 ○ 신·구공장의 『가액비율』에 의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 『면적비율』은 삭제

한편,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요건으로서 구공장을 먼저 讓渡하고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는 경우(선양도 후이전)에는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고 시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공장을 竣工하여 사업을 개시하도록 하고 있던 것을 이번 改正에서는 불필요한 간섭을 축소한다는 측면에서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減免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그 요건을 간소화하였다. 지방의 신공장으로 먼저 이전하고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선이전 후양도)의 減免要件은 신공장 이전후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도록 하는 종전의 요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선양도 후이전 • 구공장 양도후 1년내 신공장 시공 • 시공일로부터 2년내 신공장 준공	○ 구공장 양도후 3년내 준공
○ 선이전 후양도 • 신공장 이전후 2년내 구공장 양도	○ (현행과 같음)

〈適用例 및 經過措置〉

1992. 1. 1 이후 讓渡하는 것부터 적용하되 1992. 1. 1 현재 구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지원대상공장의 범위에 자동차정비공장을 추가(令 §35, 규칙 §12의4)

大都市工場의 地方移轉에 따른 지원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그간 製造工場에

한해 支援하던 것을 자동차정비공장도 지원대상의 공장의 범위에 추가하여 支援하도록 하였다. 이는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 사실상 製造工場과 유사한 점을 감안하여 지원형평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支援對象이 되는 自動車整備工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61조에서 規定하는 1급자동차정비업과 2급자동차정비업의 사업장을 말하며 자동차정비공장이 지방이전 지원대상인 공장의 범위에 추가됨에 따라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製造工場에 대하여 적용되는 각종 지원제도, 즉 지방이전준비금의 손금산입, 지방이전에 따른 讓渡稅 免除, 지방이전투자 세액공제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그간 양도세면제대상인 공장부속토지의 범위는 製造工場에 대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로 한정하여 운용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입지기준면적이 상공부장관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상 納稅者가 그 내용을 용이하게 알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製造工場의 경우 地方稅法施行令(제84조의4제3항제6호)의 規定에 의한 입지기준면적으로 하여 보다 納稅者가 알기 쉽도록 하였다.

아울러 이번에 지원대상공장의 범위에 추가된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도 製造工場과 동일하게 범위에 추가된 자동차정비공장의 경우에도 製造工場과 동일하게 일정기준면적 이내의 공장부속토지에 한해 讓渡稅 免除를 받을 수 있도록 規定을 보완하였는 바, 공장건축물의 바닥면적(시설물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에 法人稅法施行規則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과 당해 사업의 허가당시 關係法令에 의한 최소기준면적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을 한도로 讓渡稅 免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지방의 범위에 대전 제4공단을 추가(令 별표8)

현재 大都市圈에 소재하는 공장이 대도시권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각종 지원을 함에 있어서 大都市圈에 소재하는 일부 공단 등에 대하여는 공장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 공단을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즉, 지방으로 간주하여 입주공장에 대해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조성중인 대전직할시내에 소재하는 대전 제4공단도 大都市圈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대전 제4공단에 입주하는 공장이 지방이전과 관련한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마. 附加價値稅 關聯

○ 農·漁業用 機資材에 대한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에 대한 特例規定

(1) 農民의 範圍調整(특례규정 §2)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作物生産業에 종사하는 자	— 複合農業에 종사하는 자 추가

(나) 改正理由

農業用機資材 구입시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을 받는 농민의 범위를 개정된 韓國標準産業分類表에 맞추어 조정하였다.

※ 韓國標準産業分類表 개정(통계청, 1991. 9.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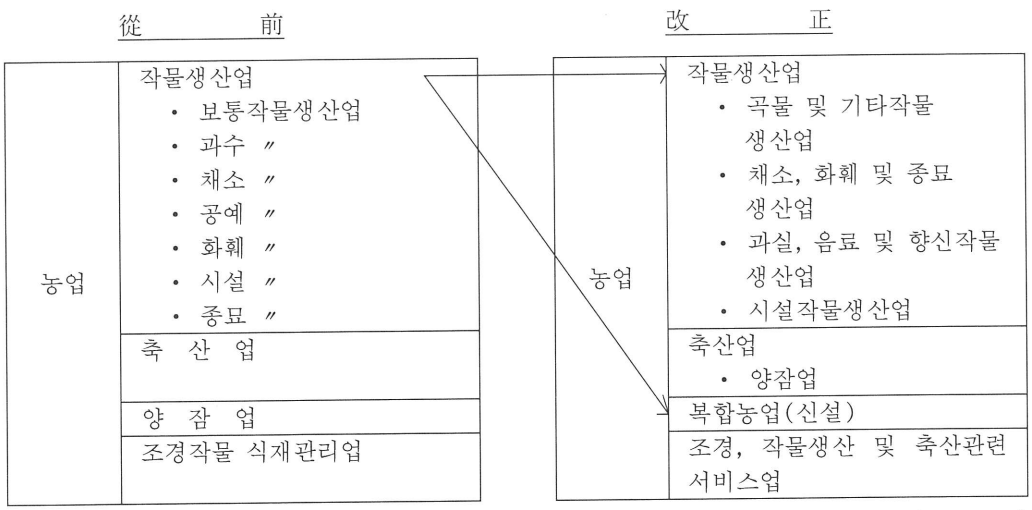

* 복합농업 … 축산활동과 작물생산활동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서 한편의 전문화율이 66% 미만

바. 기타 보완사항

(1)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 신설(法 §71의4 §57의10)

도로·항만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의 투자확충을 통해 국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함과 아울러 유통비용절감 등으로 산업의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法人에 投資準備金을 積立

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하는 制度를 신설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회간접자본의 범위〉

○ 도로법에 의한 도로
○ 전원개발에 관한 特例法에 規定된 전원설비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規定된 수자원개발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종말처리 시설
○ 항만법에 規定된 항만시설
○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에서 정하는 신공항사업시설, 항공법에 規定된 공항시설

〈적용대상법인〉

○ 韓國道路公社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도로공사
○ 한국전력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공사
○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

〈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한도〉

당해 사업연도에 사회간접자본에 투자한 금액의 15%

〈투자준비금의 익금환입〉

○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 이내에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에 소요된 금액은 5년거치 3년분할 환입
○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5년이 되는 해에 일시에 익금환입(감면세액상당액에 일변3전 또는 4전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 추징)
○ 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 폐업하거나 해산할 때에는 당해 폐업하거나 해산한 사업연도에 준비금계정의 잔액을 일시에 익금환입(사회간접자본투자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의 감면세액상당액에 일변 3전 또는 4전의 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추징)

〈減免節次〉

○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投資準備金 明細書를 제출
○ 投資準備金을 損費에 산입한 후 5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投資準備金 使用明細書를 제출

(2) 公害防止施設 등 特定設備投資 稅額控除 對象設備의 범위 조정

현재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 산업재해예방시설 등의 특정설비에 투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10%(외산 3%) 상당액을 세액공제하거나 투자한 年度에 투자금액의 50%(외산 30%)를 일시에 減價償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다만, 공해방지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해 일시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2조 또는 法人稅法施行令 제51조의 規定에 의해 투자금액의 90%를 일시에 減價償却할 수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와 같은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시설중 공해방지시설, 에너지절약시설과 산업재해예방시설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조정(令 제57조 제1항, 규칙 별표3)

環境保全法이 대기환경보전법 등 6개법으로 분법화되고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는 등 환경관련법규의 改正에 맞추어 租稅減免規制法上 지원대상인 공해방지시설의 자구를 조정하는 한편, 정부의 환경시책이 보다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등의 각종 시설에 부착되어 그 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체크하는 공해측정시설을 추가하고 大氣汚染防止施設의 범위에 비산먼지를 억제하기 위한 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의 범위에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을 각각 추가함과 아울러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시설 중 황을 감소 또는 제거시키기 위한 탈황시설에 대하여는 1993년 6월말까지 투자하는 분에 한해 공해방지 시설 投資稅額 控除의 적용을 받도록 하였는 바, 이는 최근에 강화된 환경기준이 1993년 7월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이전에 投資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10%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 대기오염방지시설, 소음·진동방지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 폐유처리시설 (신설)	○ 방지시설에 부착된 측정시설과 비산먼지억제시설 추가 ○ 재활용시설 추가 (좌 동) ○ 탈황시설('93. 6까지 투자분에 한함)

〈適用例〉

○ 施行令 改正으로 대상설비에 추가된 폐기물의 재활용시설과 탈황시설의 경우에는 1992년 1월 1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適用한다.

○ 施行規則改正으로 대상설비에 추가된 공해측정시설과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경우 규칙 시행일(1992년 3월 3일)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1992년 1월 1일이후 투자한 분으로서 規則施行前에 이미 投資가 완료되거나 規則施行日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분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시행후 3월 이내에(1992년 6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규칙시행전에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규칙시행일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에너지절약시설의 範圍調整(規則 別表2)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에 축냉설비(냉축열 또는 수축열 방식의 냉방 또는 냉장설비)를 추가하였는 바, 축냉설비라 함은 공장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서 여름철에 電力需要가 적은 야간에 동 설비를 이용하여 전력을 저장하였다가 電力需要가 많은 晝間에 貯藏해 놓은 電力을 供給할 수 있는 設備를 말한다. 또한 종전에는 기존시설을 에너지 節減效果가 10% 이상인 것으로 대체하는 설비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확인하는 설비에 한해 支援했던 것을 앞으로는 에너지節減效果가 10% 이상의 것으로서 新規로 投資되는 설비로서 에너지管理公團 理事長이 확인하는 설비에 대하여도 지원하도록 하였다.

〈適用例〉

規則 施行日(1992年 3月 3日)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1992年 1月 1日 이후 투자한 분으로서 規則施行前에 이미 투자가 完了되었거나 規則施行日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분에 대하여 投資稅額控除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規則施行後 3월 이내에(1992年 6月 2日까지) 管轄稅務署長에게 그 사실(規則施行前에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規則施行日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라는 事實)을 신고하여야 한다.

㈐ 產業災害豫防施設의 範圍調整(規則 別表4)

產業災害豫防施設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거나 신설하였는 바 그 조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粉塵除去를 위한 局所排氣裝置에 한해 지원하던 것을 全體排氣裝置 및 除塵·集塵裝置도 지원대상에 포함

○ 事業場에 設置하는 全體換氣裝置에 한해 支援하던 것을 局所排氣裝置 및 空氣淨化裝置에 대하여도 支援

○ 化學設備의 範圍에 壓力放出裝置, 漏出防止裝置 및 프레임어레스터(역화방지기)를 추가

○ 墜落防止施設의 範圍에 自動윈치를 追加

○ 爆發危險이 있는 場所에 爆發被害의 擴散防止를 위해 設置하는 격벽에 한해 支援하던 것을 방폭전기기기와 配線에 대하여도 支援

○ 遠心分離機, 遠心脫水機 등에 設置된 덮개 또는 인터록裝置를 追加

〈適用例〉

規則施行日(1992年 3月 3日) 以後 投資分부터 適用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1992年 1月 1日 以後 投資한 分으로서 規則施行前에 투자가 完了되었거나 規則施行日 현재 투자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申告하여야 한다.

(3) 駐車專用施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制度 新設(法 §71의5, 令 §57의11)

대도시 등에서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駐車難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駐車專用施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制度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駐車場業을 주된 사업으로 營爲하는 者가 당해 사업에 공하는 駐車施設에 대하여 建物 및 構築物의 경우에는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의 100%를, 機械式施設의 경우에는 一般減價償却 範圍額의 50%를 特別減價償却費로 計上할 수 있게 되었다.

駐車場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者에 한해 지원하도록 한 것은 百貨店이나 商街 等과 같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附屬駐車施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駐車施設設置에 대한 誘引效果가 미미한 점을 감안하여 특별히 駐車施設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駐車場業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駐車場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지의 여부는 사업별 事業收入金額이나 당해 課稅年度의 終了日 현재 有形固定資產 價額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駐車場業의 收入金額이나 有形固定資產 價額 중 하나라도 여타 사업의 收益金額이나 有形固定資產 價額보다 큰 경우에는 駐車場業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지원대상이 되는 駐車施設의 범위는 駐車場法에 의한 路外駐車場으로서 상시 20臺 以上의 자동차를 收容할 수 있는 시설로 한정하였는 바, 이는 가급적 큰 규모의 駐車施設에 한해 지원함으로써 보다 지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4) 農·水·畜協中央會의 固有目的事業 轉出寄附金의 손비인정 한도 조정(規則 §16의12)

현재 農·水·畜協中央會가 當該 事業年度의 收益事業에서 發生한 所得을 固有目的事業의 수행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이를 公益目的寄附金으로 보아 直前事

業年度의 固有目的事業費와 收益事業所得을 감안하여 農林水產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협의하여 결정한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손비인정한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農林水產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收益事業 소득의 60% 이상으로 함	⇨	○ 農林水產部長官이 財務部長官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 收益事業所得에서 移越缺損金을 差減한 金額의 90%를 限度로 함

이와 같이 손비인정한도를 조정하도록 한 것은 일부 中央會의 경우 固有目的事業費 轉出寄附金에 대한 손비인정제도와 移越缺損金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여 收益事業所得에 대해 최소한의 세부담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5) 貯蓄支援制度 補完

(가) 少額家計貯蓄의 범위조정(規則 §1의3)

利子所得에 대하여 소득세만 5%의 세율로 源泉徵收分離課稅(住民稅는 非課稅)하는 少額家計貯蓄의 범위에 證券金融會社에서 취급하는 公募株 請約預置金을 추가하였다. 이는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는 예금 중에서 公募株請約預金이나 住宅請約預金 등의 특정목적의 예금에 대하여도 少額家計貯蓄으로 支援하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少額家計貯蓄의 範圍 ○ 은행의 定期預金·定期積金·住宅賦金·金錢信託 등 ○ 체신관서의 定期預金·定期積金 등 ○ 相互信用金庫의 신용부금 등 ○ 投資信託會社의 수익증권저축	○ 證券金融會社의 公募株 請約預置金 추가

(나) 少額債券貯蓄의 범위조정(규칙 §1의4①)

國·公債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所得稅만 5%의 세율로 源泉徵收分離課稅(住

民稅는 非課稅)하는 少額債券貯蓄의 範圍에 韓國輸出入銀行이 發行하는 輸出入金融債券을 追加하여 產業金融債券 등의 餘他 金融債와 支援 형평을 維持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少額債券貯蓄의 範圍 ○ 國債·地方債 ○ 通貨安定證券 ○ 產業金融債券 ○ 長期信用債券 ○ 中小企業金融債券 ○ 住宅債券 ○ 外國換金融債券	○ 輸出入金融債券 追加

㈐ 勤勞者長期貯蓄 取扱金融機關의 範圍調整(令 §2③)

利子所得에 대해 所得稅와 住民稅가 非課稅되는 勤勞者長期貯蓄 取扱金融機關의 範圍를 다음과 같이 확대하였다.

從 前	改 正
― 勤勞者長期貯蓄 取扱金融機關 ○ 銀行 ○ 住宅銀行, 國民銀行, 中小企業銀行 ○ 農·水·畜協中央會 ○ 遞信官署 ○ 相互信用金庫 ○ 投資信託會社	― 追加 ○ 韓國產業銀行 ○ 長期信用銀行

(6) 重複支援 排除規定(法 §87⑦, ⑧)

從前에는 內國人이 동일한 공장에 대하여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5년간 稅額減免, 農工地區入住企業에 대한 5년간 稅額減免 등의 각종 일정기간 稅額減免制度 중 하나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減免期間이 終了된 후에도 여타 일정기간 稅額減免制度는 適用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었다. 이는 동일한 工場에 대하여 과도한 支援을 排除하기 위한 것이나 이와 같이 運營하는 경우, 예를 들어 首都圈地域에 창업한 技術集約型 中小企業이 일정기간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후에는

여타 일정기간 稅額減免制度를 활용(例 : 農工團地에 入住)할 유인이 없어지게 되는 등 각종 일정기간 稅額減免 制度를 運營하는 취지에 배치되는 問題點이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러한 問題點을 감안하여 特定事由로 인해 一定期間 稅額減免制度를 適用받은 기업이 당해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여타 一定期間 稅額減免制度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다만, 동일한 課稅年度에 둘 이상 課稅減免制度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도록 보완하였다.

(7) 一部 組合의 組合員에 대한 所得의 歸屬時間 등 조정

(가)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과 新技術事業 投資組合의 組合員에 대한 源泉徵收 特例 許容(法 §5④)

現在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과 新技術事業 投資組合의 組合員에게 歸屬되는 配當所得 중 個人組合員에게 歸屬되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源泉徵收의 特例를 認定하고 있다. 즉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이 創業中小企業으로부터 지급받는 配當所得에 대하여는 원래 創業中小企業이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에 이를 支給할 때 持分別로 각 組合員에게 歸屬되는 것으로 보아 配當所得에 대한 源泉徵收를 하지 않아도 되는 법인조합원을 제외한 個人組合員에 대해 源泉徵收를 하여야 하나 租稅減免規制法에서 이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創業中小企業이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에게 配當所得을 支給할 때 源泉徵收를 하지 않고 추후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이 실제로 組合員에게 支給할 때 個人組合員에 대해 그 持分別로 源泉徵收를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改正에서는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과 新技術事業 投資組合의 組合員에게 歸屬되는 利子所得과 株式型證券投資 信託收益의 分配金에 대하여도 이와 동일한 특례를 인정하여 金融機關이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 등에게 利子나 株式型證券投資 信託收益의 分配金을 支給할 때 源泉徵收를 하지 않고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 등이 추후 組合員에게 실제로 이를 支給할 때 個人 또는 法人組合員의 持分別로 源泉徵收하도록 하였다. 이는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 등이 餘裕資金을 金融機關에 預置함에 따라 수시로 발생하는 利子所得 등에 대하여 金融機關이 組合에게 이자를 支給하는 때마다 일일이 組合員의 持分別 源泉徵收를 해야 하는 과세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방지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나) 證券市場安定基金 組合員의 損益의 歸屬時期 調整(法 §74의4)

證券市場安定基金은 證券市場의 安定的인 育成·發展을 支援하기 위해 주로 機關投資者 등의 法人이 출자하여 설립한 團體로서 現行 稅法에서는 基金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同基金의 조합원이 基金을 통해 上場法人에게 출자함으로써 지급받는 配當所得에 대해 益金不算入하도록 하는 등 지원을 하고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同 基金이 餘裕資金을 運用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組合員에 歸屬되는 時期를 조정하여 지원을 보강하였는 바, 종전에는 證券市場安定基金의 運用收益은 一般組合과 같이 基金의 事業年度終了日에 각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하던 것을 기금이 운용수익을 조합원에게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조합원에게 귀속되도록 특례를 인정하였다.

이는 證券市場安定基金의 運用收益에 대하여 여타 一般組合과 같이 事業年度終了日에 각 組合員에게 所得이 歸屬되는 것으로 보아 法人稅를 과세하는 경우에는 운용수익 중 法人稅相當額만큼은 조합원에게 配當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기금의 運用規模가 축소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소지가 있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8) 外國換銀行의 免稅對象 外貨資金調達事務의 範圍擴大(法 §69②)

현재 外國換銀行이 外貨資金을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支援하기 위해 外國換銀行이 外國換管理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外國金融機關으로부터 차입하여 外貨로 償還하는 債務, 즉 銀行借入(Bank Loan)과 外貨債券(Bond)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 및 手數料에 대해 면세하고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外國換銀行이 外貨資金을 보다 원활히 調達할 수 있도록 면세되는 外貨債務의 範圍를 擴大하여 債券과 유사한 어음형태의 外貨債務, 즉 外貨表示어음(CP)과 外貨預金證書(CD)의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도 면세하도록 하였다.

이는 최근 국제수지적자의 지속으로 적자보전을 위한 外貨資金의 調達需要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바, 外貨債券과 銀行借入만에 의한 資金調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國際金融市場에서 資金調達手段으로 널리 活用되고 있는 어음형태의 資金調達手段을 보다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從 前	改 正
— 外國換銀行이 外國銀行機關으로부터 차입하여 外貨로 償還하는 外貨債務(Bank Loan 등)의 지급이자 및 수수료 면세	— 外國換銀行이 發行·賣却하는 外貨表示어음(USCP 등) 또는 外貨預金證書(FRCD 등)의 지급이자 및 手數料 免除

(9) 其他 補完事項

(가) 求償債權 償却充當金 損金算入對象法人의 範圍調整(法 §54의2①)

현재 信用保證事務를 영위하는 法人에 대하여는 求償債權 償却充當金 적립시 損費로 認定하는 制度를 運營하고 있다. 求償債權 償却充當金制度는 金融機關의 貸損償却充當金의 損金算入制度와 유사한 것으로서 信用保證事務를 영위하는 金融機關이 被保證者의 債務를 代位辨濟함에 따라 發生한 求償債權 中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貸損에 充當하기 위해 充當金을 積立하는 경우 일정한도내에서 이를 損費로 認定하는 制度이다.

그간 이와같은 求償債權 償却充當金을 設定할 수 있는 法人을 信用保證基金, 技術信用保證基金,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에 限定하던 것을 同 法人들과 유사한 業務를 수행하고 있는 住宅金融信用基金을 追加하여 支援衡平을 維持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다음의 基金이 求償債權 償却充當金 적립시 信用保證總額의 2%를 한도로 損費 설정 ○ 信用保證基金 ○ 技術信用保證基金 ○ 農林水產業者 信用保證基金	⇨	○ 住宅金融信用保證 基金追加

(나) 增資後 增資所得控除의 適用이 배제되는 他法人株式所得의 범위에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등에 出資하여 取得하는 法人의 株式을 除外(令 §45①7)

增資後 支出한 假支給金이나 他法人株式 取得價額이 增資金額의 10%를 超過하는 경우에는 增資所得控除의 適用을 排除하되 다만 對物辨濟로 取得하는 株式 등 不可避한 境遇와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 等 株式을 取得하는 경우에는 이를 規制對象인 『他法人株式』으로 보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 바,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이나 新技術事業 投資組合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하는 法人의 株式은 『他法人株式』으로 보지 않도록 例外認定範圍를 확대하여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 等의 資金造成이 보다 용이해지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增資所得　控除適用時　규제대상인『他法人株式』취득의 예외 ○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의 株式 ○ 新技術事業 金融會社의 株式 等	(追　加) ○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에 出資함으로써 취득하는 法人의 株式 ○ 新技術事業 投資組合에 出資함으로써 取得하는 法人의 株式

㈐ 公共法人의 範圍 調整(法 별표, 令 5③)

法人稅가 별도의 낮은 稅率로 課稅되는 公共法人의 範圍에 다음의 法人을 추가하였다.

○ 韓國行政硏究院
○ 對外經濟政策硏究院
○ 產業디자인包裝開發院
○ 大韓鹽業組合
○ 韓國障碍人福祉體育會
○ 障碍人雇傭促進工團
○ 韓國無線局管理事業團
○ 韓國電氣安全公社
○ 韓國勞動敎育院
○ 韓國租稅硏究院
○ 釜山直轄市都市開發公社
○ 金剛渡船公社

1992년

◉ 법　　률 : 1992.12. 8. 법　　률 제 4521호(시행일 : 1992.12. 8.)
◉ 시 행 령 : 1992. 6.30. 대통령령 제13668호(시행일 : 1992. 6.30.)
1992.12.31. 대통령령 제13804호(시행일 : 1992.12.31.)
◉ 시행규칙 : 1992. 6.22. 재무부령 제 1886호(시행일 : 1992. 6.22.)
1993. 3. 2. 재무부령 제 1912호(시행일 : 1993. 3. 2.)

〈要　　約〉

○ 中小製造業 臨時特別稅額 減免制度 新設
— 中小製造業에 대하여 1992년 사업실적분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20% 내지 40%를 경감
○ 産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지원 확대
— 技術 및 人力開發 支援 擴大
• 技術人力開發費 증가지출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지출분의 20%(중소기업 25%)에서 30%(중소기업 35%)로 상향조정함.
•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額의 이월공제기간을 4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위탁훈련기관의 범위에 부산상공회의소연수원을 추가함.
• 技術開發準備金의 익금환입기간을 연장함
• 新技術企業化 事業用資産에 대한 일시상각률을 50%(외산 30%)에서 90%(외산 50%)로 인상함.
— 設備投資支援 強化
•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適用時限을 「1992년 12월말까지」에서 「1993년 6월말까지」로 6개월간 연장하고 대기업의 경우 기술개발 및 品質改善을 위한 국산기계설비에 한해 적용하던 것을 중소기업과 같이 모든 國産機械設備에 대해 적용하도록 함.
• 신발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工業發展法에 의한 신발산업 합리화계획에 따라 기계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외산 3%) 상당액을 납부할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함.
— 수출지원 보장

- 自社固有商標에 의한 수출에 대하여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輸出額의 1～2%에서 2～3%로 상향조정함.

— 情報産業 支援 擴大

- 創業支援, 中小企業支援, 技術開發支援 등 각종 租稅支援을 받을 수 있는 정보산업의 범위를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업」에서 「情報處理 및 기타 컴퓨터 운용관련업」과 「부가통신업」으로 확대함.

○ 環境關聯 지원 보강

-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5% 상당액을 한도로 준비금 적립시 기업의 損費로 인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의 損費認定制度를 신설함.
- 재활용가능 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간주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廢資源買入價額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 투자금액의 10% 상당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는 공해방지시설의 범위에 畜産廢水處理施設, 汚水淨化施設 및 防音·防振施設을 추가함.

○ 地域間 均衡發展을 위한 支援制度의 補完

- 지방이전준비금의 損費認定限度를 공장시설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에서 15%로 상향조정함.
- 大都市에 소재하는 仁川鑄物 地方工業團地 등 5개 공업단지를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동 공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지방이전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濟州道地域에서 創業하는 중소제조업에 대하여 창업연도와 그후 5년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함.
- 林業用機資材에 대하여도 農·漁業用 機資材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 양도소득세 감면제도의 개선

-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100%에서 보유기간 및 補償方法에 따라 50%～100%로 縮小調整하되, 1992.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경우에는 계속하여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함.

○ 기타보완 사항

- 社會間接資本에 투자한 금액의 15% 상당액을 한도로 준비금 적립시 損費로 인정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의 적립대상법인에 한국가스공사를 추가함.

- 國立大學校病院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하여도 사립학교법인에 지출하는 寄附金과 같이 전액 損費로 인정하도록 함.
- 駐車施設에 대한 50%～100% 특별감가상각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駐車場業을 주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함.

〈改正內容〉

1. 中小製造業에 대한 臨時特別稅額 輕減制度 新設(法 §15의3, 令 §23의4)

가. 輕減背景

국민경제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최근 대내외 經濟與件의 변화로 그 어느때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으로나마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技術人力開發, 設備投資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中小製造業에 대한 臨時特別稅額 減免制度를 마련하였다.

나. 輕減內容

製造業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제조업소득)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 20%～40%를 감면받게 된다.

區 分	製造業所得金額	減 免 率
居 住 者	5천만원 이하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5천만원 초과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內國法人	1억원 이하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1억원 초과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다. 減免稅額計算 方法

(1) 製造業所得에 대한 算出稅額 및 減免稅額計算 方法

法 人 企 業		個 人 企 業	
—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移越缺損金, 비과세소득, 소득공제액을 差減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減免稅額 계산		— 제조업소득에서 人的控除額을 차감한 금액을 課稅標準으로 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減免稅額 계산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각 사업연도소득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 제조업소득(과표) × 세율 / 법인세 산출세액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	○ 제조업수입금액 — 필요경비(이월결손금 포함) ○ 製造業所得 — 인적공제 ○ 製造業所得(課標) × 세율 / 소득세 산출세액
감면세액 계산 방법	제조업소득 1억원 이하분 × 세율(20%) × 감면율(40%) 1억원 초과분 × 세율(34%) × 감면율(20%) 계 감면세액	감면세액 계산 방법	제조업소득 5천만원 이하분 × 세율 × 감면율(40%) 5천만원 초과분 × 세율 × 감면율(20%) 계 감면세액

(2) 製造業所得分 超過留保所得에 대한 減免稅額計算 方法

중소제조업에 대한 臨時特別稅額 減免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조업에서 발생한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法人稅도 같은 감면율에 의하여 감면하게 된다.

① 製造業에서 발생한 초과유보소득의 계산

제조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超過留保所得을 계산한다.

• 超過留保所得 × $\frac{\text{제조업소득}}{\text{과세표준}}$ (100/100을 초과시에는 100/100을 한도로 함)

②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의 계산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은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세액을 제조업소득 1억원 이하분에 대한 法人稅 算出稅額과 1억원 초과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按分하여 나온 금액에 해당 減免率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 제조업에서 발생한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frac{\text{제조업소득 1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text{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times 40\%(\text{감면율})$$
- 제조업에서 발생한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
$$\frac{\text{제조업소득 1억원 이하분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text{제조업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 \times 20\%(\text{감면율})$$

라. 其他事項

① 『獨占規制및公正去來에관한法律』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中小企業調整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臨時特別稅額 減免의 적용이 배제된다(법 §15의3①단서).

② 『中小企業 臨時特別稅額 減免』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稅額減免申請書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영 §12의4①) 그러나 임시특별세액 감면은 당연 減免事項이므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③ 中小製造業과 其他 事業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제조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 경리하여야 한다.(법 §86)

④ 帳簿記帳을 하지 못하여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⑤ 『中小企業 臨時特別稅額 減免』은 조세감면규제법상 다른 감면제도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으며(법 §87), 최저한세(법 §88) 및 企業合理化 積立金의 적립(법 §91)에 관한 규정 등은 다른 減免制度의 경우와 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事例 1	製造業과 其他事業 兼業時 減免稅額計算 方法(法人)

구 분			사 례 1	사 례 2
			○ 제조업소득금액 2억 ○ 기타소득금액 2억 ┘4억	○ 제조업소득금액 2억 ○ 기타소득금액△1억 ┘1억
현행 부담 세액	과 세 표 준		4억원	1억원
	세 액		1억원 × 20%(세율) + 3억원 × 34% = 1억2,200만원	1억원 × 20%(세율) = 2,000만원
감면세액	제조업소득금액		2억원	2억원
	감면세액	1억원 이하분	1억원 × 20%(세율) × 40% = 800만원	1억원 × 20%(세율) × 40% = 800만원
		1억원 초과분	[5,400만원(1억원 × 20% + 1억원 × 34%) − 2,000만원 (1억원 × 20%)] × 20% = 680만원	[5,400만원(1억원 × 20% + 1억원 × 34%) − 2,000만원 (1억원 × 20%)] × 20% = 680만원
		계	1,480만원	1,480만원
납부할 세액			1억 720만원 (12,200만원 − 1,480만원)	520만원 (2천만원 − 1,480만원)
최 저 한 세			4억원 × 12% = 4,800만원	1억원 × 12% = 1,200만원
부 담 세 액			1억 720만원	1,200만원 * 최저한세 적용

事例 2	超過留保所得이 있는 法人의 減免稅額計算 方法 (제조업소득금액 3억원, 초과유보소득 3천만원)

구 분		제조업소득(3억원)에 대한 법인세	초과유보소득(3천만원)에 대한 법인세	합 계
현행부담세액		1억원 × 20% + 2억원 × 34% = 8,800만원	3천만원 × 25% = 750만원	9,550만원
감면세액	1억원 이하분	1억원 × 20% × 40% = 800만원	750만원 × $\frac{2,000만원}{8,800만원}$ × 40% = 68만원	868만원
	1억원 초과분	[8,800만원 − (1억 × 20%)] × 20% = 1,360만원	750만원 × $\frac{6,800만원}{8,800만원}$ × 20% = 116만원	1,476만원
	합 계	2,160만원	184만원	2,344만원
부담세액		6,640만원	566만원	7,206만원

※ 임시특별세액 감면액 계산서 작성례 : 별첨

[별지 제17호서식 부표1] (앞면)

과세연도	. . . ~ . . .	임시특별세액감면액계산서	상호	

※관리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 표란은 납세자가 기입하지 마십시오.

1. 내국법인

①제조업소득				④세율	⑤산출세액(③×④)	⑥감면율	⑦감면대상세액(⑤×⑥)
②감면대상소득금액		③구분소득금액					
⑧사업소득	3억원	⑨1억원이하금액	1억원	20%	2천만원	40%	8백만원
		⑩1억원초과금액	2억원	34%	68백만원	20%	1,360만원
		⑪소계(⑨+⑩)	3억원		88백만원		2,160만원
⑫초과유보소득	3천만원	⑬사업소득1억이하해당금액 (⑫ × ⑤란의⑨ / ⑤란의⑪)	682만원	25%	170만원	40%	68만원
		⑭사업소득1억초과해당금액 (⑫ − ③란의⑬)	2,318만원	25%	580만원	20%	116만원
		⑮소계(⑬+⑭)	3천만원		750만원		184만원
⑯합계(⑪+⑮)							2,344만원

2. 거주자

⑰제조업소득			⑳세율	㉑산출세액(⑲×⑳)	㉒감면율	㉓감면대상세액(㉑×㉒)
⑱감면대상소득금액	⑲구분소득금액					
	㉔ 5천만원이하금액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세율		40%	
	㉕ 5천만원초과금액		소득세법 제70조제1항의 세율		20%	
㉖ 합계(㉔ + ㉕)						

22226-58111 일
1993. 2. 9 승인

210㎜ × 297㎜
신문용지 54g/㎡

2. 産業의 競爭力 強化를 위한 支援 擴大

가. 技術 및 人力開發을 위한 支援 擴大

(1)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制度의 補完

① 稅額控除率 調整(法 第17條, 令 第14條第2項)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제도의 控除率을 향후 技術開發에 보다 많은 투자가 誘導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율	
○ 경상지출분 ┌ 대 기 업 : 10%	┌ 대 기 업 : 5%
└ 중소기업 : 15%	└ 중소기업 : 10%
○ 증가지출분 ┌ 대 기 업 : 20%	┌ 대 기 업 : 30%
└ 중소기업 : 25%	└ 중소기업 : 35%

주) 증가지출분 : 직전 2년간 평균지출액 초과분

현재 技術人力開發費 支出額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출액을 직전 2년간의 平均支出額(경상지출분)과 그 초과지출액(증가지출분)으로 나누어 控除率을 차등운용하고 있는 바, 종전에는 경상지출분에 대해 대기업 10%, 중소기업 15%를, 증가지출분에 대해 경상지출분에 각 10%씩을 추가하여 大企業 20%, 中小企業 25%의 공제율을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경상지출분의 경우 大企業 5%, 中小企業 10%로 축소하는 대신 증가지출분에 대하여는 각 25%씩을 추가하여 대기업 30%, 중소기업 34%로 공제율을 대폭 확대 적용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개정한 것은 종전에도 技術人力開發의 增加投資를 유도하기 위해 공제율을 차등 운용하고 있었으나 經常支出分에 대한 공제율이 10~15%로 너무 커서 상대적으로 증가투자에 대한 유인이 축소되는 문제점을 補完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종전에는 대기업이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 중에서 사내직업훈련을 위한 비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과 같은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우대하던 것을 앞으로는 製造業을 영위하는 대기업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중소기업과 같은 控除率을 적용하도록 하여 대기업에 대한 優待費用의 범위를 확대하여 部品製造中小企業과 組立大企業間의 보다 긴밀한 기술개발협력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② 移越控除期間 延長(法 第89條)

臨時投資 稅額控除額, 生產性向上 施設投資 稅額控除額 등 각종 투자세액공제액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으로서 당해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最低限稅의 적용으로 인해 다 控除받지 못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4년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경우에는 移越控除期間을 1년 더 연장하여 5년간 移越하여 控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改正한 것은 기술인력개발비에 대한 투자를 여타 설비투자보다 우대하여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같이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額과 投資稅額控除額의 이월공제기간이 달라짐에 따라 공제순서도 納稅者에게 유리하게 보완하였다. 즉, 종전에는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를 함에 있어서

첫째,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移越된 稅額控除額이 있는 경우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하고,

둘째, 이월된 세액공제액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공제하도록 控除順序를 정하고 있던 것을

셋째,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과 투자세액공제액의 발생연도가 같은 경우에는 投資稅額控除額을 먼저 控除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다.

이는 이월공제기간이 짧은 투자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가 보다 많은 控除惠澤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適用例〉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과 공제순서의 보완내용 공히 법(1992. 12. 8)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시 말하면 法 施行後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支出基準」에 관한 적용례를 별도로 두지 않고 일반적 적용례인 「年度基準」을 적용하도록 하였으므로 예를 들어 法 施行(1992. 12. 8)전에 개시된 과세연도에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4년째 移越控除받은 경우 개정된 法 規定에 따라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1년간 더 연장하여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다.

③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對象 委託訓鍊機關의 範圍 調整(規則 第6條第9項第2號)

特定 委託訓練機關에 품질관리·경영관리·생산관리·설비관리에 관한 훈련으로서 교육시간이 24시간 이상인 훈련을 委託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기술인력개발 세액공제대상비용의 범위에 포함시켜 委託訓練을 통한 종업원

의 技術能力向上을 지원하고 있는 바, 대상위탁훈련기관의 범위에 商工會議所法에 의하여 설립된 釜山商工會議所의 硏修院을 추가하였다.

從 前	改 正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위탁훈련기관의 범위 ○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 한국공업표준협회 ○ 한국생산성본부 ○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 ○ 사단법인 한국능률협회	(좌 동) ○ 부산상공회의소연수원 추가

(2) 技術開發準備金의 益金還入期間 延長(法 第16條)

기술개발준비금에 대한 優先相計制度를 폐지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기간을 연장하였다.

從 前	改 正
—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환입기간 ○ 비용성지출액 : 지출연도에 준비금과 상계(익금환입) ○ 자산성지출액 : 준비금적립후 4년거치 3년균등분할 익금환입	○ 지출연도에 관계없이 준비금 적립후 4년 거치 3년균등분할 환입 (좌 동)

종전에는 기술개발 준비금제도의 適用對象費用을 두가지 類型으로 구분하여 대상비용 중 연구개발 전담부서건물의 취득비용,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사용하기 위한 硏究用物品·機資材·裝備 및 시설의 구입비용,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나 新技術事業 金融會社에 대한 출자금 등의 자산적 성격이 있는 비용에 대하여는 여타 투자준비금의 경우와 같이 준비금 적립후 4년거치 3년 分割하여 익금에 還入하도록 하고 자산성지출에 해당하지 않는 여타 모든 비용에 대하여는 비용을 지출한 연도에 기 積立한 準備金과 우선적으로 상계하도록 하여 비용의 성격에 따라 益金還入期間에 차등을 두고 있었다.

이번 개정에서는 동 준비금의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면에서 비용성지출에 대하여도 資產性支出의 경우와 같이 준비금과 즉시 상계하지 않고 준비금 적립후 4년거치 3년간 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하도록 하였다.

(3) 新技術企業化 事業用資産에 대한 投資稅額控除制度의 補完(法 第18條第1項第2號)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에 投資하는 경우의 일시감가상각률을 상향조정하여 신기술기업화를 위한 자산투자시의 부담이 輕減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신기술기업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다음 방법 중 선택) ○ 투자금액의 10%(외산 3%)세액공제 ○ 취득가액의 50%(외산 30%)일시상각	(좌 동) ○ 취득가액의 90%(외산 50%)일시상각

종전에는 신기술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계장치에 투자하는 경우 10%(외산 3%) 稅額控除와 50%(외산 30%) 일시감가상각 방법 중 택일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일시감가상각을 선택하는 경우의 支援을 補強하여 減價償却率을 90%(외산 50%)로 대폭 上向調整하였다. 이와같이 개정한 것은 현재 기술개발준비금,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과 같이 연구개발단계에서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개발된 기술을 實用化하는 단계에서는 지원이 상대적으로 未洽한 점을 감안하여 實用化段階에서의 支援을 強化하기 위한 것이다.

나. 設備投資支援 強化

(1)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의 施行期間 延長(令 第57條의2)
설비투자촉진을 위해 1989. 7부터 시행중인 임시투자 세액공제제도의 시행기간을 延長하고 적용대상투자의 범위와 稅額控除率을 일부 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시행기간 ○ '89. 7～'92. 12말까지	○ '93. 6말까지 6개월 연장
— 대상투자 ○ 대기업(제조) :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을 위한 국산기계장치 ○ 중소기업(제조·광업) : 모든 국산기계장치	○ 대기업 : 모든 국산기계장치 ○ 중소기업 : (좌동)
— 세액공제율 ○ 대 기 업 : 10% ○ 중소기업 : 10%	○ 대 기 업 : 7% ○ 중소기업 : (좌동)

臨時投資 稅額控除制度는 1992년말까지 시행하도록 하던 것을 최근 製造業을 비롯한 산업의 설비투자가 지속적으로 沈滯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993년 6월말까지 시행기간을 6개월간 추가로 연장하였다.

또한 投資의 活性化를 위해서는 전체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조대기업의 투자촉진이 時急하므로 대기업에 대한 적용대상투자의 범위를 擴大하여 종전에는 대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 즉 자동화설비에 한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와 같이 모든 事業用 國產機械裝置로 擴大하였다.

다만 大企業의 경우 이와같이 對象投資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으로 세액공제율을 종전의 10%에서 7%로 하향조정하여 과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현재 尖端技術設備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외산 3%) 상당액을 세액공제하는 尖端技術設備 投資稅額控除制度가 시행중이므로 종전의 기술개발이나 품질개선을 위한 설비투자 중 첨단기술설비투자 부분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適用을 받지 않고 尖端技術設備 投資稅額控除의 적용을 받게 되면 종전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適用例〉

1993년 1월 1일 이후 最初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199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投資가 개시되어 1993년 1월 1일 이후에도 투자가 계속되는 경우에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연도에 일괄하여 稅額控除를 받는 경우에는 199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투자분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 對象投資와 控除率을, 그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여 공제를 받아야 한다.

(2) 신발產業合理化를 위한 設備投資 支援(規則 別表 9)

工業發展法에 의하여 시행중인 신발산업합리화(합리화기간 1992. 3. 1~1995. 2. 28)를 세제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신발산업합리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租稅減免規制法上「공업발전법에 의한 合理化施設 投資稅額控除」의 적용대상에 추가하였다.

從　　前	改　　正
— 공업발전법에 의한 합리화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 〈지원방법〉 ○ 투자금액의 10%(외산 3%) 상당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 〈대상투자〉 ○ 현재 적용대상 없음	〈지원방법〉 (좌 동) 〈대상투자〉 ○ 신발산업합리화를 위한 설비투자 추가

공업발전법에 의한 신발산업의 합리화를 稅制面에서 뒷받침하여 주요 수출업종인 신발산업의 지속적인 육성·발전을 기하기 위해 신발산업합리화 시설투자에 대해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는 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適用對象期間〉

○ 규칙시행일(1993. 3. 2)～합리화기간 종료일(1995. 2. 28)

〈適用對象業種〉

○ 신발제조업 중 운동화류 제조업·총고무화류 제조업·작업화제조업·신발창제조업·신발갑피제조업

〈適用對象設備〉

○ 신발창제조설비 : 고무혼련가공지, 반자동 및 자동프레스, 밑창가공설비

○ 신발갑피제조설비 : 재봉기 및 재봉관리시스템, 재단기

○ 조립(제화)설비 : 제화컨베이어, 래스팅머신, 압착기, 인젝션머신, 건조 및 냉각장치

〈適用例〉

규칙 시행일(1993. 3. 2)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適用하되 合理化期間 종료일(1995. 2. 28) 이전에 투자가 完了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따라서 규칙 시행일 이후 합리화기간 종료일까지 繼續投資가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투자가 1995. 2. 28 현재 完了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투자분이 모두 동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除外된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다. 輸出支援(法 第22條)

自社固有商標에 의한 輸出을 促進하기 위해 固有商標輸出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를 상향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비인정한도 ○ 일반수출 : 수출액의 1% ○ 특례수출 : 수출액의 2% * 특례수출의 범위 • 선박·기계·신발·섬유수출 • 10% 미만 국가 수출 • 무역역조국가 수출 • 중소기업의 수출	○ 일반수출 : 수출액의 1%(고유상표 2%) ○ 특례수출 : 수출액의 2%(고유상표 3%)

海外市場 開拓準備金을 적립하는 경우 일반수출은 輸出額의 1%까지, 무역역조국가 수출 등 特例輸出의 경우에는 수출액의 2%까지 損費로 인정하던 것을 자사고유상표에 의한 수출의 경우에는 각 1%p씩 한도를 늘려 일반수출은 수출액의 2%, 특례수출은 輸出額의 3%까지 손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개정한 것은 자사고유상표에 의한 수출이 注文者商標에 의한 수출(OEM수출)에 비해 海外市場開拓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우리 수출기업의 고유상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경우 輸出損失準備金(일반수출 1%, 특례수출 2%)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을 모두 積立하는 경우 주문자상표수출의 경우 종전에는 輸出額의 4%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 자사고유상표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액의 5%까지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라. 情報產業에 대한 支援 擴大

(1) 支援對象業種의 範圍 擴大(法 第20條, 令 第11條, 第13條, 第17條, 別表 4, 別表 5, 別表 6)

컴퓨터관련산업인 情報產業에 대해 제조업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대상업종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從 前	改 正
— 5년간 50% 소득공제적용대상 및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업종 ○ 컴퓨터조직 및 프로그램개발업 — 기술개발준비금 및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적용대상 ○ 전자계산기조직의 이용기술개발 및 정보처리사업 — 기술개발준비금이 우대되는 기술집약산업 ○ 프로그램개발업 및 관련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표상 『情報處理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72)』과 『附加通信業(64203)』으로 확대 ※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72)의 범위 ○ 컴퓨터설비자문업(721) ○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722) ○ 資料處理業(723) ○ 데이타베이스업(724)

종전에는 정보산업 중 주로 컴퓨터프로그램업에 한해 각종 조세지원을 하던 것을 標準産業分類表上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부가통신업」 등 거의 모든 情報關聯産業으로 지원대상업종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산업분류기호 72)」은 컴퓨터설비자문업(721),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공급업(722), 자료처리업(723), 데이타베이스업(724), 사무·회계·계산기기유지 및 수리업(725)으로 세분되는 바, 이중 단순 서비스업종인 사무·회계·계산기기유지 및 수리업(725)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포함되며, 산업분류상 전기통신업의 일종으로서 電氣通信回線에 컴퓨터를 접속시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업(산업분류기호 64203)도 컴퓨터관련산업임을 감안하여 支援對象에 추가하였다.

이에따라 앞으로 情報産業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創業支援

○ 사업개시후 5년간 50% 소득공제 허용

* 단, 부가통신업은 創業支援對象에서 除外됨

② 技術開發準備金의 損金算入 및 技術集約産業으로 우대

○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시 損費로 認定받을 수 있으며 기술집약산업에 해당되어 일반산업의 손비인정한도인 매출액의 3%보다 1%p 많은 賣出額의 4%까지 손비 인정

③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適用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適用받을 수 있게 되어 경상지출분은 支出額의 5%(중소기업은 10%), 증가지출분은 지출액의 30%(중소기업은 35%) 상당액을 납부할 稅額에서 控除 가능

④ 技術開發準備金과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適用 優待

○ 현재 기술개발준비금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 중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에 종사하는 연구원에 한해 준비금과 稅額控除 적용대상 비용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情報産業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여부에 불문하고 연구원의 인건비에 대해 기술개발지원제도의 적용 가능

○ 또한 소프트웨어나 데이타베이스의 유지·보수·개발비용에 대하여 일반산업과는 달리 기술개발준비금의 적용 가능

⑤ 中小企業 支援

○ 정보산업이 중소기업 해당업종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현행 세법상 각종 중소기업특례(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接待費損費 認定優待, 增資所得控除優待 등) 제도의 적용 가능

(2)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對象 硏究員 人件費의 範圍 擴大(規則 第6條第3項)

종전에는 情報產業에 종사하는 연구원으로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보유한 자가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담당한 자에 한해 그 인건비를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對象 費用으로 지원하던 것을 앞으로는 학위요건을 삭제하여 1년 이상 硏究開發業務를 담당한 자이면 학사학위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稅額控除適用對象 硏究員으로 보도록 지원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는 情報產業 이외의 업종의 경우에 학위요건 보유여부에 관계없이 연구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과 형평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3. 環境關聯 支援 強化

가. 에너지節約施設 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制度 新設(法 第71條의6)

에너지절약을 위한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損費로 認定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그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촉진책의 一環으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외산 3%)를 세액공제하거나 取得價額의 90%(외산 동일)를 일시상각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해 왔는 바, 이에 추가하여 투자준비금의 損費認定을 허용함으로써 지원을 크게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준비금을 적립하고자 하는 과세연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한도로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실적이 없더라도 투자한 연도와 같은 금액인 투자금액의 15%씩을 한도로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1회 투자에 대해 3년간 합계 投資金額의 45%까지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2년 연속 투자가 이루어지는 등 連續的으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각 投資單位別로 3년간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에너지절약시설에 投資한 實績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適用을 받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 1회 투자에 대해 투자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준비금설정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投資年度에 준비금을 設定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이후 2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는 준비금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나. 再活用可能 廢資源에 대한 附加價値稅 看做買入稅額 控除制度 新設(法 第74條의 3, 令 第58條의2)

폐자원이나 중고품을 수집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간주매입세액 공제제도를 신설하여 稅負擔을 輕減함으로써 폐자원 등의 蒐集活動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종전에는 廢資源 등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자원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일반가계로부터 구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없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세금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도 폐자원이나 중고품매입가액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동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제도의 취지와 사후관리문제 등을 감안하여 適用對象 廢資源·중고품과 사업자의 범위를 한정하였는 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適用對象品目〉

○ 古鐵, 廢紙,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자동차관리업에 의한 중고자동차

〈適用對象事業者〉

○ 古物營業法에 의하여 고물상영업허가를 받은 자

○ 廢棄物管理法에 의하여 폐기물의 再活用申告를 한 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의 허가를 받은 자

○ 合成樹脂廢棄物處理事業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適用節次〉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또는 예정신고시 계산서·간이계산서 또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신고서(규칙 별지 제4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다. 公害防止施設 投資稅額控除 對象施設의 範圍 擴大(令 第57條第1項第2號, 規則 別表 3)

公害防止施設 投資稅額控除가 적용되는 대상시설의 범위에 일부 시설을 추가하였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從 前	改 正
— 공해방지시설의 범위	
○ 집진시설·폐가스처리시설·비산먼지억제시설	(좌동)
○ 廢水處理施設	○ 축산폐수정화시설·오수정화시설 추가
	○ 방음·방진시설 추가
○ 소음·진동방지시설	
○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좌동)
○ 廢油處理施設	
○ 탈황시설	

4. 地域間 均衡發展 支援

가. 地方移轉 支援制度 補完(法 第41條, 第41條의2, 令 別表 8)

대도시소재 공장이나 수도권소재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地方移轉準備金을 적립하는 경우 損費認定限度를 확대하여 종전에는 공장시설가액(공장건물 및 기계장치가액)이나 본사건물가액(또는 임차보증금)의 10%까지 損費로 認定하던 것을 15%로 引上하였다. 따라서 현재 대도시공장이나 수도권 법인본사의 지방이전을 위한 준비금은 이전전 4년간 設定을 許容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4년간 합계 공장건물가액 등의 40%까지 損費로 認定받던 것을 앞으로는 60%까지 손비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대도시내 소재 공단으로서 대도시권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공단의 범위에 아산국가공업단지 중 포승단지, 인천주물 지방공업단지(이상 수도권), 녹산국가공업단지(부산), 光州尖端科學國家 工業團地, 평동지방공업단지(이상 광주)를 추가하여 동 공단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地方移轉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濟州道地域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制度 新設(法 第40條의9)

제주도지역의 개발을 위해 濟州道開發特別法(1991. 12. 31 공포,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세제면에서 濟州道開發事業이 圓滑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補強하여 제주도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하였다. 이에따라 앞으로 제주도지역에서 創業하는 中小企業으로서 1996년말까지 창업하는 경우 所得稅 또는 法人稅를 창업연도와 그 후 5년간 100% 면제받을 수 있는 바, 동 제도는 다음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適用對象業種〉

○ 농·임·수·축산물의 제조 또는 가공업

○ 전통민속주의 제조업

○ 관광토산품의 제조업

다. 林業用 機資材에 대한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法 第73條第4號, 零稅率 特例規程, 同 特例規程施行規則)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되는 林業用 機資材에 대하여도 농·어민에게 공급되는 농·어업용 기자재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여 林業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임업에 종사하는 자」라 함은 林業 중 營林業 또는 伐木業에 종사하는 자로서 법인을 제외하며 「林業用 機資材」라 함은 임업에 사용되는 동력천공기, 약제주입기, 산불진화용 펌프, 동력기계톱, 원치 및 물받이형 미끄럼틀을 말한다.

5. 讓渡稅 減免制度의 改善

가.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讓渡稅 減免率 縮小(1991. 12. 27改正 租減法 附則 §19②)

從　　前	改　　正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公共事業의 施行者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收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면제	— 당해 토지 등의 保有期間 또는 보상방법에 따라 50～100% 감면 현금보상시 / 채권보상시 ○5년 이상 보유 : 70%감면 / 100%감면 ○5년 미만 보유 : 50%감면 / 80%감면 — 다만, 1992. 12. 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100%면제

〈改正理由〉

— 정부는 응능부담의 원칙과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양도세 감면율을 축소하면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된 공공용지 채권보상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권으로 보상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보상하는 경우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미 시행중인 公共事業地區에 있어서는 사업의 계속성과 동일사업지구내 토지에 대한 감면율 적용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종전과 동일한 감면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나. 아파트 建設用地에 대한 讓渡稅減免 事後管理 強化(租減法 §50⑤)

從 前	改 正
—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 建設用地로 양도시 양도세를 감면한 후 — 買入者(주택건설등록업자)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지 않은 경우 買入者로부터 감면세액 추징	— 아파트 建設用地 매입일부터 3년내 건설부장관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를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추가

〈改正理由〉

— 아파트 이외의 국민주택(예 : 단독주택) 建設用地의 경우 買入者(주택건설등록업자)가 매입일부터 3년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으나, 아파트 건설용지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 아파트를 건설하지 아니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을 뿐 사업계획승인기한에 관하여는 규정이 없음에 따라 아파트건설이 늦어지게 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한 것이다.

* 1992. 4 감사원 질문에 대하여 개정·보완할 계획으로 답변한 바 있음

다. 社員用住宅 取得을 위한 土地讓渡時 減免要件 強化(租減令 §55의14⑨)

從 前	改 正
— 社員用住宅 取得目的으로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 100% 감면 ○ 다만 업무용과 기타용도 겸용시 양도일전 2년동안 업무용으로 직접 사용한 면적이 가장 적은 때의 면적을 기준으로 함	— .... ○ ..... 5년 ....

〈改正理由〉

—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에 있어서 감면대상 자산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종래 조감법에서 사원용주택 취득을 위한 업무용토지 양도시 業務用使用期間을 『2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를 『5년 이상』으로 강화한 것과 동일한 맥락에서 개정하였다.

라. 濟州開發事業에 대한 讓渡稅 減免(租減法 §60①7號, 令 §49⑥·⑦新設)

[법]
—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者』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土地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 50% 감면

[시행령]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사업시행자의 범위
○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5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사업 중 제조·가공단지의 사업시행자
—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등 : 감면대상 토지
○ 『제주도에 본적 또는 원적이 있는 자(그가 속한 宗中 포함) + 5년 이상 제주도에 거주한 자』가 5년 이상 보유한 토지
○ 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에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 합산

〈改正理由〉

— 제주도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議員立法으로 제정된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취지를 조세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양도세 감면조치를 취한 것이다.

- 減免對象 事業施行者를 규정함에 있어 모든 제주도개발 사업시행자로 할 경우 마을작목반, 어촌계, 4H회 등 제주도내 대·소민간단체가 모두 감면대상이 되는 등 감면대상 사업시행자가 너무 확대되므로 공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형평을 맞추어 공공사업자와 유사한 사업시행자에 한하여 감면토록 함으로써 감면을 최소한의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였다.
- 그리고 減免對象土地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제주도개발이익에 대한 조세감면혜택이 제주도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돌아가도록 하되, 보유기간에 대한 요건을 둠으로써 일시적으로 본적을 옮긴 자 등에 대하여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마. **韓國報勳福祉公團에 대한 讓渡稅 減免**(租減法 §67의14)

從 前	改 正
-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이 固有目的事業用 土地 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공단법 제6조제1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固有目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시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改正理由〉

- 한국보훈복지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의 長期치료를 맡고 있는 등 사회복지법인과 사업성격이 유사하고, 국가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고 있는 공공법인적 성격이 있으므로 특별부가세 감면대상에 추가하되, 감면대상토지를 주요사업시설 중 보훈병원으로 한정하였다.

6. 其他 補完事項

가. **社會間接資本 投資準備金의 損費認定制度 補完**(令 第57條의10, 規則 第21條의6)

社會間接資本에 투자한 금액의 15%를 한도로 준비금 적립시 損費로 認定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와 適用對象 社會間接資本施設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제도 〈적용대상법인〉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한국공항공단 〈적용대상시설〉 ○ 도로, 전원설비, 수자원개발시설, 수도시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 항만시설, 신공항사업시설 및 공항시설	○ 한국가스공사 추가 ○ 천연가스의 공급설비와 그 부대시설 추가

나. 駐車施設에 대한 特別減價償却制度 補完(令 第57條의11)

현재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주차시설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駐車施設에 대하여는 주차용 건물의 경우 100%, 機械式 駐車施設의 경우 50%의 특별감가상각을 허용하는 주차시설에 대한 특별감가상각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바, 適用對象事業者의 범위를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자」에서 주업요건을 삭제하여 「주차장업을 영위하는 자」로 확대하였다. 이는 현재 주차장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 동 제도의 實效性이 없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다. 增資所得控除 要件 強化(法 §55)

增資로 조성한 企業資金을 출자자 및 사용인 외의 특수관계인을 이용한 가지급금의 형태로 사외유출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세법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增資所得控除에 있어서 假支給金 요건을 강화하였다.

從　　前	改　　正
— 내국법인이 증자하는 경우 2년(제조업은 3년)간 증자금액의 10%(중소기업은 12%)를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 증자후 출자자나 또는 사용인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의 합계액이 10% 초과시에는 증자소득공제 적용배제	— 출자자나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모든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확대 적용 [출자자나 사용인에 대한 가지급금] →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라. 公共法人의 範圍調整(法 §8 別表, 令 §5)

從 前	改 正
〈추 가〉	(111호) 서울시설관리공단, 부산직할시주차관리공단, 인천직할시주차시설관리공단, 울산시주차장관리공단 (115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정보문화센터 (130호)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131호)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한 한국국제교류재단
	(132호)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133호)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한 산업기술정보원 (134호) 영화법에 의한 영화진흥공사 (135호)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한 민족통일연구원 (136호)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

1993년

◉ 법　　률 : 1993. 3. 6.　법　　률　제 4541호(정부조직법 부칙)
(시행일 : 1993. 3. 6.)
1993. 8. 5.　법　　률　제 4573호(해외건설촉진법 부칙)
(시행일 : 1994. 1. 1.)
1993.12.31.　법　　률　제 4666호(시행일 : 1994. 1. 1.)
◉ 시 행 령 : 19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상공자원부와그소속
기관직제 부칙)
(시행일 : 1993. 3. 6.)
1993. 5.27.　대통령령　제13897호(시행일 : 1993. 5.27.)
1993.10. 5.　대통령령　제13987호(시행일 : 1993.10. 5.)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4호(시행일 : 1994. 1. 1.)
◉ 시행규칙 : 1993. 6. 9.　재무부령　제 1936호(시행일 : 1993. 6. 9.)
1994. 4.13.　재무부령　제 1970호(시행일 : 1994. 4.13.)

〈要　　約〉

○ 租稅減免의 전반적 縮小調整
— 創業中小企業 등 각종 稅額減免 축소
— 投資稅額控除 축소
— 準備金 益金還入期間 축소
— 增資所得控除 축소
— 特定產業 減免 축소
○ 產業競爭力 強化를 위한 支援 補強
— 中小製造業 特別稅額減免制度 導入
—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補完
— 技術開發準備金制度 擴大
— 臨時投資稅額控除 適用時限 延長
— 中小企業의 情報化設備 投資稅額 控除施設
— 再活用廢資源에 대한 附加價値稅 看做買入稅額 控除制度 보완
○ 讓渡稅 관련
— 讓渡所得稅의 非課稅 減免의 축소
— 經濟行政規制 緩和 및 納稅便宜 圖謀
— 開發事業施行者 등에 대한 讓渡稅 減免
— 其他制度 補完
○ 其他 改正事項
— 納稅節次의 簡素化·合理化
— 公共法人 課稅制度 보완
— 長期住宅마련貯蓄 非課稅制度 신설
— 適用時限 延長

〈改正內容〉

1. 租稅減免의 全般的 縮小調整

가. 일정기간 稅額減免 縮小(조세감면규제법 §6, §34, §50, §51, §53, 구법 §20 삭제)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창업중소기업·농공단지입주기업·사업전환중소기업·위탁영농회사·의료취약지역병원에 대한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減免 ○ 창업일(입주일·사업전환일·영농회사설립일·병원개설일)이 속하는 연도와 그 후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 창업(입주·사업전환·영농회사설립·병원개설)후 最初로 所得이 발생한 연도와 그 후 5년간 50% 減免
—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업에 대한 所得控除 ○ 사업개시연도와 그후 5년간 50% 所得控除	— 폐지하여 創業中小企業 減免制度에 흡수통합(대상업종에 부가통신업 추가)

2) 改正理由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所得稅 또는 法人稅 減免(Tax Holiday)하는 제도를 보완하여 減免率을 縮小하는 한편으로 감면의 起算年度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

○ 減免率은 『3년간 100%, 2년간 50%』를 『5년간 50%』로 縮小調整하여 100% 減免制度를 폐지하였는바, 『100% 減免』은 지원수준이 지나치게 높아 납세의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최저한세를 감안하는 경우의 실질적인 減免率(약 66%)과 차이가 있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감면의 起算年度는 창업·농업단지입주 등의 『減免對象行爲가 發生한 年度』에서 『最初로 所得이 發生한 年度』로 변경하였는바, 창업 등의 減免對象行爲가 있은 후 수년간은 缺損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는 감면기간이 상당폭 축소되는 從前 制度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제도의 實效性을 제고하였

다. 여기서 減免의 기산시점이 되는 最初 所得發生年度라 함은 이월결손금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정(+)의 소득이 발생한 연도를 말한다.

엔지니어링사업과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대하여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용하던 사업개시 후 5년간 50% 所得控除하는 제도를 폐지하여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와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하였다.

- 이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과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을 영위하는 기업은 앞으로는 중소기업에 한해 창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감면방법은 종전과 달리 事業開始後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年度와 그 후 5년간 50% 稅額減免方式이 적용된다.
- 아울러 부가통신업을 이번 개정에서 새로이 創業中小企業 支援對象業種에 추가하여 情報處理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등 餘他 情報產業과의 支援衡平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改正된 내용은 法 施行(1994. 1. 1) 후 최초로 減免對象行爲(창업·사업전환·영농회사설립·병원개설)가 이루어지는 분부터 적용하되 다만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경우에는 그 施行이 2년간 猶豫되어 1996. 1. 1 이후 최초로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 施行前(1993. 12. 31 이전, 농공단지입주기업의 경우는 1995. 12. 31 以前)에 이미 창업 등의 減免對象行爲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잔존 減免期間 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投資稅額控除 縮小**(조세감면규제법 §10, §37, §45, §51②, §88, §9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投資稅額 控除制度別 지원방법	
○ 연구시험용 시설	
• 10%(외산 8%) 세액공제 또는	• 10%(외산 5%) 세액공제
• 90%(외산동일) 일시상각	• 70%(외산 50%) 일시상각
○ 직업훈련시설, 신기술기업화시설	
• 10%(외산 3%) 세액공제 또는	• 좌 동
• 90%(외산 50%) 일시상각	• 50%(외산 30%) 일시상각

從 前	改 正
○ 産業合理化에 따른 主力業種施設	
• 10%(외산 6%) 세액공제 또는	• 10%(외산 3%) 세액공제
• 100% 가속상각	• 좌 동
○ 地方移轉工場의 事業用設備	
• 10%(외산 3%) 세액공제 또는	• 5%(외산 3%) 세액공제
• 50%(외산 30%) 일시상각	• 좌 동
○ 地方移轉 法人 本社의 建物	
• 10%(외산 0%) 세액공제 또는	• 5%(외산 0%) 세액공제
• 50% 가속상각	• 좌 동
○ 旣存病院의 醫療脆弱地域 分院施設	
• 10%(외산 8%) 세액공제	• 10%(외산 5%) 세액공제
○ 醫療機器	
• 10%(외산 8%) 세액공제 또는	• 10%(외산 5%) 세액공제
• 50%(외산 30%) 가속상각	• 좌 동
○ 勤勞者福祉增進 設備	
• 社員用賃貸住宅, 寄宿舍 : 국산건물 및 부수토지취득가액의 10% 세액공제	• 사원용임대주택 및 기숙사의 경우 부수토지 취득가액 제외
• 직장보육시설(탁아소) : 국산건물취득가액의 10% 세액공제	• 좌 동

2) 改正理由

각종 投資稅額 控除制度의 경우 종전에는 설비에 따라 稅額控除 또는 減價償却率을 다양하게 적용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稅額控除率은 국산 10%, 외산 3%를 적용하고 일시상각률은 국산 50%, 외산 30%를 적용하도록 통일하였다. 다만, 연구시험용시설과 기존 병원 또는 종합병원이 醫療脆弱地域에 설립하는 分院의 시설투자 및 醫療法人의 醫療器機投資에 대하여는 아직도 외산기자재의 의존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외산투자는 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또 연구시험용시설에 한해 技術開發支援 側面에서 일시상각률을 국산투자의 경우 70%, 외산투자의 경우 50%로 우대적용하도록 하였다.

○ 大都市工場이나 首都圈法人本社를 地方으로 移轉하는 경우 工場의 機械設備나 法人本社의 건물에 대하여 종전에는 국산투자시 10%의 稅額控除率을 적용하던 것을 5%로 축소하였다. 이는 공장이나 法人本社의 地方移轉을 촉진하기 위해 移轉準備段階에서는 준비금의 손비인정, 이전단계에서는 工場·本社 讓渡差益에 대한 讓渡稅의 감면, 이전후 단계에서는 지방공장·본사에서 새로이 취득하는 기계장치 및 본사건물에 대한 投資稅額控除 등 중복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적정범위내로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 無住宅從業員을 위한 사원용임대주택이나 기숙사의 경우 종전에는 건물 이외에 建物 延面積의 2배 이내의 부수토지에 대하여도 稅額控除를 허용하던 것을 직장보육시설의 경우와 같이 부수토지는 支援對象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사원용임대주택이나 기숙사용 부지에 대하여 讓渡稅額減免制度를 운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土地取得에 대한 과도한 지원을 지양하기 위한 것이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改正된 內容은 1994. 1. 1 이후 『投資를 開始』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1994.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즉, 1993. 12. 31 이전에 기 투자가 개시되어 1994. 1. 1 이후에 투자가 완료되는 것에 대하여는 전체 投資分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1993. 12. 31 이전 投資分과 1994. 1. 1 이후 投資分을 안분계산하여 각각 從前의 控除率과 改正된 控除率을 적용하는 것이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다. 準備金의 益金還入期間 단축(조세감면규제법 §4, §8, §16, §17, §19, §23, §28, §29, §41, §42, §48, §9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準備金別 益金還入方法〉 — 5년거치 3년분할(4종) ○ 해외사업손실준비금 ○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준비금 ○ 수출손실준비금(특례수출) ○ 해외시장 개척준비금(특례수출)	3년거치 3년분할

從 前	改 正
— 4년거치 3년분할(7종) ○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 기술개발준비금 ○ 공장 지방이전준비금 ○ 법인본사 지방이전준비금 ○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투자준비금 ○ 광업투자준비금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 — 3년거치 4년분할(1종) ○ 해외투자손실준비금	3년거치 3년분할

2) 改正理由

○ 準備金의 경우 종전에는 각 제도별로 益金還入期間을 다양하게 운용하여 오던 것을 제도의 簡素化 및 支援水準의 적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準備金 設定후 3년간 거치후 3년간 분할하여 還入하도록 益金還入期間을 통일하였다. 『3년거치 3년분할환입』 방법에 의하는 경우 準備金積立에 의해 減免된 세액상당액만큼의 자금을 평균 4년간 무이자로 활용하는 효과가 있다.

○ 참고로 투융자 손실준비금(4년거치 일시환입),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 개척준비금(각 2년거치 3년분할 환입) 등 益金還入期間이 『3년거치 3년분할』의 경우보다 짧은 準備金에 대하여는 從前과 變動이 없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4. 1. 1 이후 最初로 종료하는 課稅年度에 準備金을 적립하는 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며 1993. 12. 31 이전에 기 積立한 준비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益金에 還入한다.

라. **增資所得控除 縮小**(조세감면규제법 §9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對象業種 ○ 모든 업종	○ 제조업, 부가통신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엔지니어링사업으로 한정

從 前	改 正
— 控除期間	
○ 製 造 業 : 3년	○ 2년으로 단일화
○ 餘他業種 : 2년	
— 控除率	
○ 증자금액의 10%(중소기업 12%)	○ 증자금액 8%(중소기업 10%)
* 우리사주 증자분 5%P 가산	* 우리사주 증자분 5%P 가산
— 增資期限	
○ 1993. 12. 31	○ 1995. 12. 31

2) 改正理由

增資所得控除制度의 적용시한을 1993년말에서 1995년말까지 2년간 연장하면서 適用對象과 공제수준을 全般的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所得稅法上 배당소득에 대한 法人稅와 所得稅의 이중부담조정장치인 배당 Gross-up 제도가 확대되고 또 增資所得控除制度의 유인효과가 별반 크지 않다는 연구결과 등을 감안한 것이다.

○ 종전에는 適用對象業種에 제한을 두지 않던 것을, 앞으로는 製造業과 그 관련서비스업인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에 한정하여 支援하도록 하였다.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상 기술개발, 중소기업 등 각종 支援制度의 대상이 되는 情報產業으로서 하드웨어 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데이터베이스업 및 자료처리업 등 4개 업종을 말한다.

○ 控除期間은 製造業의 경우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여 업종구분 없이 單一化하고 控除率도 대기업 8%, 중소기업 10%로 2%P 인하하였다. 다만, 우리사주 증자분에 대하여 5%를 追加控除하는 것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4. 1. 1 이후 증자하는 분부터 개정규정을 적용하며, 따라서 1993. 12. 31 이전에 기증자한 분에 대하여는 1994. 1. 1 이후에도 從前의 규정에 따라 增資所得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다.

마. 個別產業에 대한 減免 縮小(조세감면규제법 §95, §96, §97, §9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個別產業別 支援內容〉	
— 鑛業	
○ 광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 좌 동
○ 사업용자산 100% 가속상각	○ 폐 지
— 畜產業	
○ 최초 소득발생연도와 그 후 『5년간』 20% 所得控除	○ 『3년간』 20% 소득공제
— 山林開發業	
○ 10년 이상 조림한 산림의 伐採·讓渡에 따른 소득에 대하여 『면제』	○ 『50% 減免』
— 醫療業	
○ 醫療器機 투자세액 공제	○ 좌 동
○ 醫療施設 投資準備金의 損金算入	○ 폐 지

2) 改正理由

업종 구분없이 고루 적용되는 機能別 支援體系의 確立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업종에 한해 적용되는 지원을 일부 축소하였다.(표 참조)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광업에 대한 100% 가속상각폐지 내용은 1994.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課稅年度分부터 적용한다.

○ 畜產業에 대한 減免期間縮小 內容은 1994. 1. 1 이후 최초로 축산업을 개시하는 자부터 적용하며 1993. 12. 31 이전에 기 사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山林開發業에 대한 減免縮小 內容은 그 시행을 3년간 猶豫하여 1996. 12. 31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 醫療業에 대한 醫療施設 投資準備金 廢止 內容은 1994. 1. 1 이후 最初로 개시하는 課稅年度分부터 적용한다.

2. 産業競爭力 強化를 위한 支援 補強

가. 中小製造業 特別稅額 減免制度 導入(조세감면규제법 §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中小製造業 臨時特別稅額減免	— 零細中小製造業 稅額減免制度로 轉換
○ 대상기업 : 모든 중소제조업체	○ 대상기업 : 조감법상 여타감면을 받지 않는 중소제조업체
○ 감면율 : 소득세·법인세의 20~40%	○ 감면율 : 20%(단, 1994년은 20~30%)
○ 감면기간 : 1992 사업실적분부터 2년간	○ 감면기간 : 제한없음

2) 改正理由

○ 中小製造業體의 자금난·인력난 등 경영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1992년 사업실적분부터 2년간 課稅標準 1억원(개인 5천만원) 이하분에 대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40%를, 課稅標準 1억원(개인 5천만원) 超過分에 대하여 所得稅 또는 法人稅의 20%를 경감해주는 中小製造業 臨時特別 稅額減免制度가 1993년말로 시행기간이 종료함에 따라 동 제도를 零細中小製造業體를 위한 항구적인 特別稅額 減免制度로 전환하였다.

○ 對象企業은 1994. 1. 1 이후 租稅減免規制法上 여타 각종 감면을 받지 않는 中小製造業體로 한정하였는바 이는 기장능력이 부족하거나 세무지식이 적어 현행 세법상 각종 中小企業支援制度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에 대하여 實質的인 減免惠澤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조감법상 여타 감면이라 함은 準備金, 特別償却, 稅額控除, 所得控除 등 4가지 유형에 의한 各種 減免을 말하며 다만, 일정기간 세액감면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조감법상 創業中小企業 減免, 농공단지입주기업 감면, 事業轉換中小企業 減免 등 일정기간동안 소득세·법인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이러한 감면을 적용받았다고 하여 中小製造業 稅額減免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와같이 예외를 인정한 것은 일정기간 세액감면이 특정요건에 해당하면 自動的으로 부여되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1994. 1. 1 이후에 中小製造業 特別稅額減免을 계속해서 적용받을 수 있다.

○ 1994. 1. 1 이후 조감법상 여타 감면을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즉, 1994. 1. 1 이후에 일단 조감법상 여타

減免(준비금·특별상각·세액공제·소득공제)을 적용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 이후 연도에는 中小製造業稅額減免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1994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1995課稅年度에 여타 감면을 적용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中小製造業 稅額減免을 받을 수 없다.

○ 減免率은 20%이며 다만, 1994년 1년간에 한해 課稅標準 1억원(개인 5천만원) 이하분은 所得稅·法人稅의 30%, 1억원(개인 5천만원) 超過分은 所得稅·法人稅의 20%를 경감하도록 經過措置를 두었다. 기타 減免對象所得의 범위, 減免對象稅額의 계산방법 등 여타 사항은 종전의 제도와 같다.

나.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補完(조세감면규제법 §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稅額控除方法	
○ 경상지출분 : 지출액의 5% (중소기업 10%) 공제	○ 총지출액의 5%(중소기업 15%) 공제 또는
○ 증가지출분 : 지출액의 30% (중소기업 35%) 공제	○ 증가지출분의 50% 공제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당해연도에 지출한 技術人力開發費 中 직전 2년간 평균지출액에 상당하는 지출분(經常支出分)에 대하여는 支出額의 5%(中小企業 10%)를 공제하고, 또 직전 2년간 平均支出額을 초과하여 지출한 분(增加支出分)에 대하여는 支出額의 30%(중소기업은 35%)를 공제한다.

즉, 당해연도에 지출한 技術人力開發費를 經常支出分과 增加支出分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控除率을 적용하고 이를 합산하여 공제하는 방법을 취하던 것을 앞으로는 增加支出分만 大企業·中小企業 구별없이 그 지출액의 50%를 공제하거나 아니면 經常支出分·增加支出分 구별없이 總支出額의 5%(중소기업은 15%)를 공제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방법을 변경하였다. 이와 같이 개정한 것은 보다 많은 技術人力開發投資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참고로 사례를 들어 改善效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稅額控除額 計算事例〉

○ 1992년지출액 : 100, 1993년지출액 : 120, 1994년지출액 : 140(경상지출분 110, 증가지출분 30)

○ 1994 稅額控除額 比較(대기업의 경우)

- 종전 : 110(경상지출분)×5%+30(증가지출분)×30%=5.5+9=14.5
- 개정 : 140(총 지 출 분)× 5%= 7 ┐
  30(증가지출분)×50%=15 ┘ 중 선택

다. 對象費用 및 對象業種의 범위 調整(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9, 별표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適用對象費用〉	
— 技術開發費	
○ 연구원인건비	○ 고유상표 고유디자인의 개발비 ┐ 추가
○ 연구용물품 구입비 등	○ 『기술제안서』 작성비용 ┘
— 人力開發費	
○ 위탁훈련비	○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비용 추가
○ 사내직업훈련비 등	
〈適用對象 業種〉	
○ 제조업·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업 등	○ 『연구 및 개발업』 추가

2) 改正理由

○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는 技術開發費의 범위에 고유상표와 디자인의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여 우리 제품이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엔지니어링 입찰에 참가하는데 필요한 技術提案書를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였다. 또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사업주가 職業訓練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인력개발비의 범위에 추가하여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실시하는 자체직업훈련비용과 형평을 맞추도록 하였다.

職業訓練基本法에 의하여 職業訓練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①勞動部長官이 인정하는 다른 職業訓練實施者에 대한 지원비용 ②고용근로자에 대한 敎育訓練支援費用 ③職業訓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

비의 구입비용 등 세가지 유형이 있으나 조감법상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를 적용받을 수 있는 비용은 이 중 ①번 항목과 ②번 항목에 한정된다. ③번 항목인 職業訓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비용을 支援對象에서 제외한 이유는 현재 職業訓練施設 投資稅額控除制度가 별도로 운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중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적용대상업종의 범위에 技術開發과 관련한 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연구 및 개발업』을 추가하였다.

라. 技術開發 準備金制度 補完(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8, 별표2·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適用對象 費用		
○ 연구원인건비, 연구용물품구입비 등	○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 ○ 설계업무용 물품·장비 등 구입비용	추가
— 適用對象 業種		
○ 제조업·광업·건설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업 등	○ 무역업 ○ 『연구 및 개발업』	추가
— 技術集約的産業의 範圍		
○ 신소재·유전자·항공공업 등	○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환경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추가

2) 改正理由

技術開發 準備金制度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비용의 범위에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추가하고, 엔지니어링 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設計業務에 직접 사용하는 물품·기자재·장비·시설의 設置 및 購入費用을 추가하였다.

○ 適用對象業種에 무역업과 연구 및 개발업을 추가하였는 바, 무역업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技術開發과 直接的인 관련이 있는 업종이 아니므로 技術開發 支援制度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아니나, 이번에 우리 제품의 國際競爭力 提高를 지원하기 위해 고유상표 및 고유디자인의 개발비용을 準備金積立對象에 추가함에 따라 무역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하여 동 비용을 技術開發 準備金으로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技術開發準備金을 적립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의 4%(일반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의 3%)까지 준비금을 많이 설정하도록 優待支援하고 있는 技術集約産業의 범위에 산업시스템관련 및 환경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추가하여 엔지니어링산업을 支援하였다.

마.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의 適用時限 延長(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2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 — 對象企業 ○ 제조업·중소광업 — 稅額控除率 ○ 국산기계장치 투자금액의 7% (중소기업 10%) — 適用時限 ○ 1993. 12. 31	좌 동 ○ 1994. 12. 31

2) 改正理由

製造業을 영위하는 기업과 광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대하여 國産機械裝置에 투자한 금액의 7%(中小企業은 10%)를 납부할 所得稅 또는 法人稅에서 공제해주는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는 1989. 7. 1부터 시행된 이래 그간 계속 연장되어 1993. 12. 31까지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1994. 12. 31까지 투자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施行期間을 1년간 추가로 연장하였으며 對象企業과 稅額控除率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

바. 其他 補完事項

1) 中小企業의 情報化設備投資에 대한 稅額控除制度 導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22, 동법시행규칙 별표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中小企業의 工程改善 및 自動化設備 投資稅額控除〉	
— 對象設備	
○ 설계자동화 및 생산자동화설비, 자동계측설비 등의 공정개선 및 자동화를 위한 설비	○ 정보화를 위한 설비 추가
— 稅額 控除率	
○ 투자금액의 15%(외산 5%)	○ 좌 동

〈改正理由〉

○ 中小企業의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를 위해 투자하는 설비로서 컴퓨터와 그 제어설비, 설계자동화를 위한 설비, 생산자동화를 위한 설비, 원료·부품 등의 연속 供給設備, 자동계측·계량설비 등에 투자하는 경우 그 投資金額의 15%(외산 5%)를 稅額控除해주는 工程改善 및 自動化設備 投資稅額控除制度를 확대하여 中小企業이 情報化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하는 설비를 대상설비의 범위에 추가하였다.

○ 支援對象에 새로이 추가된 情報化設備의 구체적인 내용은 租稅減免規制法 施行規則 別表에 규정하였는바, 『전기통신설비의 기술수준에 관한 규칙(체신부령)』에 규정된 전기통신설비로서 교환설비, 전송설비, 구내통신선로설비 및 단말장치를 말한다.

2)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附加價値稅 간주매입세액 공제제도 보완(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52, §53)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고철·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事業者에 대하여는 稅金計算書가 없더라도 廢資源購入價額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附加價値稅의 買入稅額으로 보아 賣出稅額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보완하여 適用對象事業者의 범위에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추가하고 대상 廢資源의 범위에 구리·양은 등의 廢非鐵金屬類를 추가하였다.

3. 讓渡稅 關聯

가. 讓渡所得稅의 非課稅·減免의 縮小

소득종류간 課稅의 형평을 기하고 讓渡所得稅가 소득과세로서의 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公共事業用 토지 등 각종 土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율을 縮小調整하고 연간 양도소득세의 減免限度額을 개인은 3억원에서 1억원으로, 法人은 算出稅額의 70%에서 50%로 각각 下向調整하는 등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감면을 전반적으로 축소하였다.

1) 公共事業用地에 대한 讓渡稅 減免縮小(조세감면규제법 §63, §65, 부칙 §16⑧)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당초 公共事業用地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讓渡稅를 감면해 준 것은 시가보상이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나 최근 補償價額이 시가수준으로 현실화되었으므로 公共事業用地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高額의 지가상승이익에 대하여는 課稅를 강화하기 위하여 양도세 감면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土地開發公社·住宅公社 등이 공공사업목적이 아닌 개별적 필요에 의하여 買入하는 토지에 대하여 讓渡者의 양도세를 50% 감면하는 것은 과다한 稅制支援으로 불합리하므로 양도세 감면을 廢止하였다.

從 前	改 正
— 國家 等 公共事業施行者에게 公共事業用地로 讓渡하는 경우 讓渡稅 50~100% 減免 ○ 5年以上 保有 : 70%(債權補償分 100%) 減免 ○ 5年未滿 保有 : 50%(債權補償分 80%) 減免	— 讓渡稅 減免率을 30~75% 축소하고 都市再開發區域안의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도 같은 減免率 適用 ○ 5年以上 : 50%(채권보상분 75%) 減免 ○ 5年未滿 : 30%(채권보상분 45%) 減免
— 土地開發公社·住宅公社 등 토지개발기관에 讓渡時 50% 감면	— 減免廢止 * 國家 지자체에 讓渡하는 山林地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事業施行者에게 讓渡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從前과 같이 50% 減免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4. 1. 1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분부터 適用한다.

- 15년 이상 保有한 土地 등을 1995. 12. 31 이내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減免率 및 減免綜合限度를 適用한다.
- 1992. 12. 31 이전에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事業地域안에 있는 토지 등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稅를 전액 免除한다.
- 1993. 12. 31 이전에 土地收用法 기타 法律에 의하여 事業認定告示된 事業地域안에 있는 토지 등을 讓渡하는 경우에는 從前의 減免率을 適用한다.

※ 公共事業用地 讓渡時 減免率變動 沿革

區 分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공특법이 적용되는 公共事業用 土地 등을 事業施行者에게 讓渡						
○國家·地自體에 讓渡	100%	100%	50%	100%	5年未滿 保有 · 현금 : 50% · 채권 : 80%	5年未滿 保有 · 현금 : 30% · 채권 : 45%
○其他 公共事業 시행자에 讓渡	100%	50%				
○大規模 開發事業用으로 讓渡	100%	100%	100%			
-土地收用法 등 法律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讓渡					5年以上 保有 · 현금 : 70% · 채권 : 100%	5年以上 保有 · 현금 : 50% · 채권 : 75%
○一般的 收用	100%	100%	100%			
-토개공·주공에 양도	50%	50%	50%	50%	50%	公共事業用地로 讓渡하는 경우 30%~75%
-都市再開發區域안의 土地 등 讓渡	50%	50%	50%	50%	50%	30%~75%

2) 公共法人이 讓渡하는 土地에 대한 讓渡稅 減免對象 縮小(조세감면규제법 §64, 동법시행령 §61)

土地開發公社, 住宅公社 等이 公共事業施行者로서 조성한 土地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讓渡稅를 50% 減免하되, 기타 個別的 필요에 의하여 取得하여 保有하는 土地에 대하여는 讓渡稅 減免을 廢止하였다.

從 前	改 正
— 道路公社, 農漁村振興公社, 住宅公社, 土地開發公社, 都市開發公社가 土地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50% 減免	— 土地開發公社 등이 ○ 公共事業施行者로서 宅地나 工團 등을 造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50% 減免하되 ○ 其他의 土地는 讓渡稅 減免對象에서 除外

3) 住宅用地로 讓渡하는 土地에 대한 讓渡稅 減免率 縮小(조세감면규제법 §66)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公共事業用地나 住宅建設用地의 원활한 確保를 위하여 減免하여온 결과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으나, 土地로부터의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預金利子(所得稅 20%)보다 세부담면에서 우대해 주는 결과가 되어 많은 讓渡差益이 있음에도 稅金을 감면해 주게 되어 勤勞所得, 사업소득, 金融資產利子所得과의 과세상 不公平이 발생하고 土地保有를 선호하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減免制度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시에 廢止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어 減免率을 축소조정하였다.

從 前	改 正
— 國民住宅建設用地로 住宅建設登錄業者나 企業에게 양도하는 경우 讓渡稅 50% 減免 — 기숙사建設用地로 企業이나 기숙사運營事業者에게 양도후 기숙사 建築時 양도세 全額還給	— 減免率 縮小 ○ 5年 以上 保有 : 50% 減免 ○ 5年 未滿 保有 : 30% 減免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4. 1. 1 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분부터 適用하며, 1994. 1. 1전에 종전의 租稅減免規制法 第72條의4의 規定에 의하여 內國人이 기숙사의 建設用地로 土地

를 양도한 경우 讓渡稅의 還給에 관하여는 從前의 규정에 의한다.

4) 공장이전, 본사이전, 업무용자산 대체취득과 관련한 감면제도를 과세이연제도로 전환(조세감면규제법 §33, §43, §70, §71, §75②, 동법시행령 §30, §41, §42, §67, §68, §72)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地方移轉 등의 경우 不動產 讓渡差益에 대하여 法人稅를 減免하는 것은 기업의 정상적인 經營活動에서 생긴 所得보다 세제면에서 더 우대하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廢止하고, 讓渡稅 減免制度를 課稅移延制度로 전환함으로써 공장이전 등에서 발생되는 稅金問題는 해결해 주되, 이전후 당해 資產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과거에 減免한 세액도 課稅할 수 있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① 大都市內工場을 地方으로 移轉하기 위하여 讓渡하는 경우 法人稅 및 讓渡稅 100% 減免 ② 首都圈內 法人本社를 首都圈外로 移轉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法人稅 및 讓渡稅 100% 減免 ③ 中小製造企業이 業種을 轉換하기 위하여 종전 업종의 事業用資產을 讓渡하는 경우 法人稅 및 讓渡稅 100% 減免 ④ 5年 以上 가동한 工場, 農漁民支援施設을 移轉하는 경우 讓渡稅 100% 減免 ⑤ 10年 以上 經營한 목장을 이전하는 경우 양도세 100% 減免	— 法人稅는 減免對象에서 除外하고 양도세만 減免하되, ○ 讓渡稅 減免은 50% 감면과 ○ 과세이연 중 企業이 選擇하여 適用 ※ 과세이연제도 : 土地나 生產設備 등을 代替取得하는 한 課稅를 하지 아니하되 向後 處分할 때에는 당초 取得價額을 基準으로 讓渡差益을 計算하여 과거에 減免한 세금을 소급하여 과세하는 제도

※ 中小企業轉換, 大都市內工場 地方移轉, 法人本社移轉, 5년 이상 稼動工場移轉時 從前에는 2년내 廢業 또는 당해 固定資產 처분시 減免稅額을 追徵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내 廢業 또는 당해 固定資產 처분시 減免稅額을 추징함.

〈工場地方移轉 등의 讓渡稅 과세이연과 50% 減免의 適用方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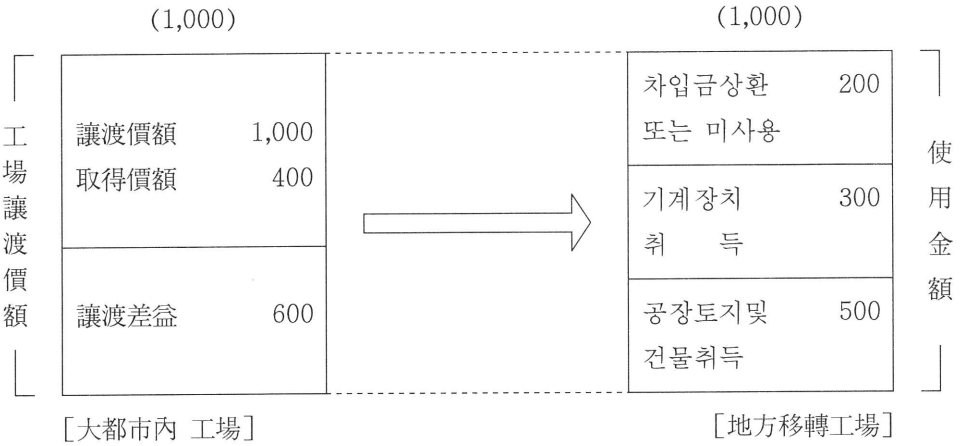

㈎ 大都市內 工場(土地·建物) 讓渡價額 중 地方工場의 「土地·建物」取得에 사용한 金額에 상당한 부분 : 과세이연과 50% 減免 중 選擇 適用

① 과세이연 적용시

○ 大都市工場 讓渡差益 중 과세이연 適用金額

- 讓渡差益(600)×$\frac{\text{地方工場 土地·建物 取得價額(500)}}{\text{大都市 工場 讓渡價額(1,000)}}$=300
- 즉, 讓渡差益 600 중 300은 課稅對象에서 除外

○ 地方工場 取得價額

- 大都市工場取得價額(400)×$\frac{\text{地方工場 土地·建物 取得價額(500)}}{\text{大都市工場 讓渡價額(1,000)}}$=200
- 즉, 地方工場 土地·建物 실제 取得額은 500이나, 과세이연을 선택하였으므로 세무상 200으로 계상

② 50% 減免 適用時

○ 大都市工場 讓渡差益 중 地方工場取得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한 部分

- 讓渡差益(600)×$\frac{\text{地方工場 土地·建物 取得價額(500)}}{\text{大都市 工場 讓渡價額(1,000)}}$=300
- 즉, 讓渡差益 600 중 300에 대하여는 50% 減免을 받을 수 있음

㈏ 大都市內 工場(土地·建物) 讓渡價額 中 地方工場의 「기계장치」취득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 : 50% 減免適用(과세이연은 적용안됨)

○ 大都市工場 讓渡差益 중 地方工場 「기계장치」取得에 사용한 金額에 상당하는 부분

- 讓渡差益(600)×$\frac{\text{地方工場 機械裝置 取得價額(300)}}{\text{大都市工場 讓渡價額(1,000)}}$=180

• 즉, 讓渡差益 600 중 「180」에 대하여는 50% 減免을 받을 수 있음

(다) 大都市內工場 讓渡差益 중 앞의 (가), (나)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部分 : 과세이연 또는 50% 減免 모두 適用을 받을 수 없음

○ 大都市工場 讓渡差益 중 減免對象이 아닌 金額

• 讓渡差益(600)－[(가) 해당액 300]－[(나) 해당액 180]

• 즉, 讓渡差益 600 중 「120」에 대하여는 과세이연이나 50% 減免을 적용받을 수 없음

〈事 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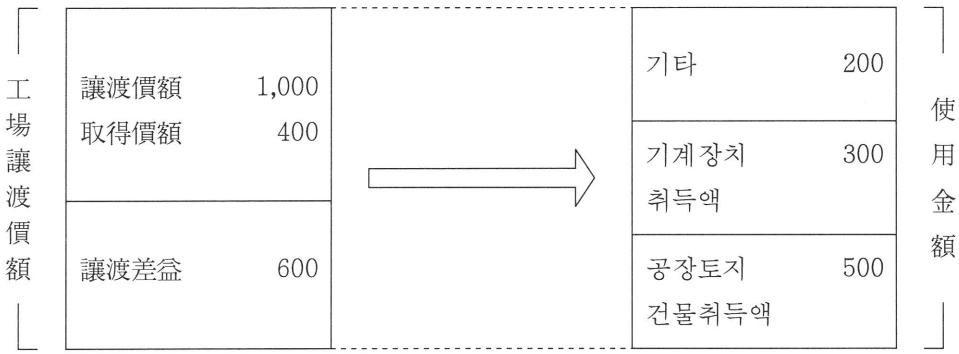

○ 地方工場 土地·建物 取得額 상당부분

• $600 \times \frac{500}{1,000} = 300$……과세이연, 50% 減免 中 선택

○ 地方工場 機械裝置 상당부분

• $600 \times \frac{300}{1,000} = 180$……50% 減免

○ 其他部分

• $600 \times \frac{200}{1,000} = 120$……減免對象이 아님(전액 과세)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4. 1. 1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改正된 租稅減免規制法 施行當時(1994. 1. 1) 土地 등을 讓渡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從前規定에 적합하게 공장 등을 移轉하여 事業을 開始한 자가 舊工場用土地 등을 讓渡하는 경우 양도세 追徵 및 減免에 관하여는 從前의 規定에 의한다.

— 工場의 地方移轉에 대한 讓渡稅 減免은 1996. 1. 1부터 施行한다.

5) 中小企業 統合, 法人轉換에 대한 讓渡稅 減免을 讓渡價額 特例制度로 轉換(조세감면규제법 §31, §32, 동법시행령 §28, §29)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中小企業 統合이나 法人轉換時의 讓渡稅 減免制度를 課稅移延制度의 일종인 讓渡價額 特例制度로 轉換함으로써 中小企業間의 統合이나 法人轉換過程에서 발생되는 稅金問題는 解決해 주되, 統合이나 法人轉換後 당해 事業用 固定資產을 處分하는 경우에는 統合시 課稅하지 아니한 讓渡差益을 합산하여 課稅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合併奬勵業種을 영위하는 中小企業間 統合時, 法人轉換時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讓渡하는 事業用資產에 대하여 양도세 100% 減免	— 讓渡稅 50% 減免과 讓渡價額特例 方法中 選擇
— 統合 또는 法人轉換後 2年 이내에 當該 事業을 廢業하거나 事業用 不動產 處分時 감면세액 追徵	— 3年 以內에 廢業 또는 事業用 固定資產 處分시 減免稅額 또는 讓渡價額特例 減免稅額 追徵

※ 讓渡價額의 特例方法 : 統合 또는 法人轉換시 당해 事業用 固定資產의 양도가액을 帳簿價額으로 하거나, 個人의 경우는 取得價額 등 必要經費 讓渡所得 特別控除額·長期保有 特別控除額·讓渡所得控除額을 합한 금액, 法人의 경우는 取得價額·讓渡費用·都賣物價上昇率 控除額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讓渡差益을 "0"으로 함으로써 讓渡稅가 課稅되지 않도록 하되 향후 당해 資產을 處分하는 경우에는 統合 또는 法人轉換시 課稅되지 아니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課稅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이연방법

※ 事業用 固定資產의 範圍(新設) : 當該 事業에 直接 使用하는 有形固定資產과 無形固定資產. 다만, 土地超過利得稅法上 遊休土地 및 非業務用資產은 除外

〈讓渡價額의 特例에 의한 稅額計算〉

○ 統合後 3年 經過한 후 處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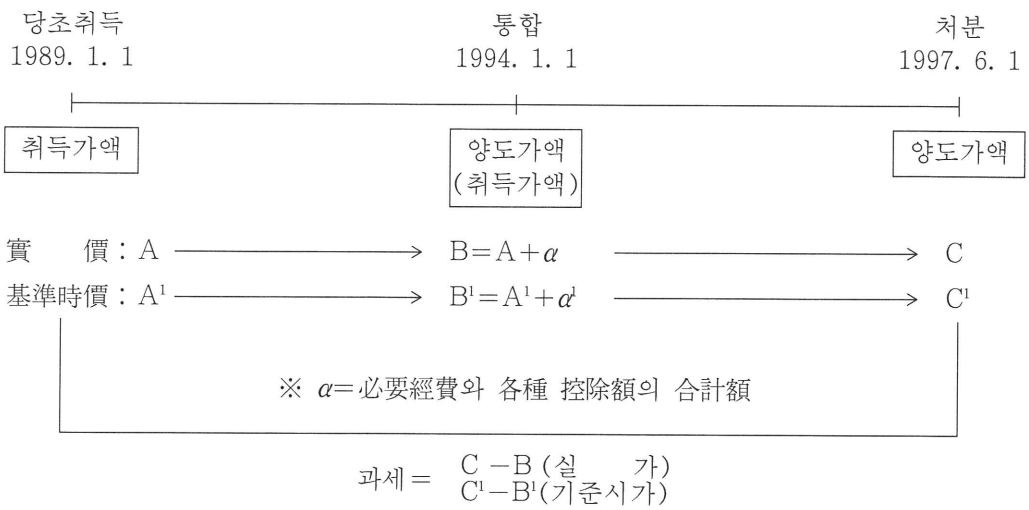

$$과세 = \begin{matrix} C - B\,(실\quad 가) \\ C^1 - B^1(기준시가) \end{matrix}$$

○ 統合後 3年 以內 處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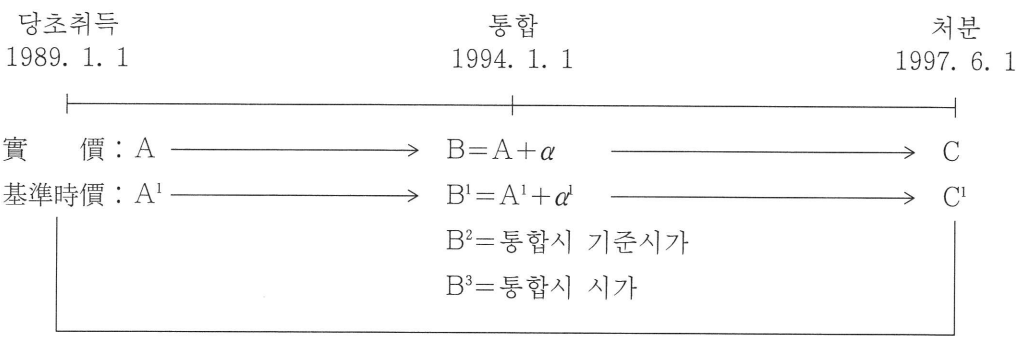

$$追徵 = \begin{matrix} B^3 - A\,(실\quad 가) \\ B^2 - A^1(기준시가) \end{matrix} \qquad 課稅 = \begin{matrix} C - B^3(실\quad 가) \\ C^1 - B^2(기준시가) \end{matrix}$$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4. 1. 1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從前 규정에 의하여 土地 등을 讓渡한 경우 減免 및 追徵 등에 관하여는 從前 規定에 의한다.

6) 8年 自耕農地에 대한 讓渡稅 非課稅를 減免制度로 轉換(조세감면규제법 §55, §119, §120, 동법시행령 §54)

農地의 양도로 많은 讓渡所得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非課稅하는 것은 고소득자에게 지나치게 혜택을 주는 것이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를 減免制度로 전환하여 양도세 감면종합한도를 적용받도록 하고,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一般法人에 대해서까지 농지라 하여 비과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營農組合法人에 대하여만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個人이 8年 以上 재촌자경한 農地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減免綜合限度를 適用받지 않고 全額 非課稅	— 讓渡稅 減免綜合限度의 適用을 받도록 함
— 法人이 8年 以上 경작한 사실이 있는 農地를 讓渡하는 경우 양도세 減免綜合限度를 적용받지 않고 全額 非課稅	— 法人의 自耕農地에 대한 讓渡稅 減免은 ○ 農業을 主業으로 하는 法人이나 營農組合法人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 양도세 減免綜合限度의 適用을 받도록 함

※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農地를 대토하거나 交換하는 경우는 現在와 같이 繼續非課稅

7) 讓渡稅 減免綜合限度制 強化(조세감면규제법 §119, 120, 부칙 §16⑨, 동법시행령 §107, §110)

讓渡稅 비과세·減免制度를 축소하여 소득간 과세의 불형평을 점진적으로 시정하고 讓渡稅制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에 대한 양도세 감면종합한도액을 종전의 연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양도세 算出稅額의 70%에서 50% 축소하였다.

從 前	改 正
— 個人에 대한 양도세 감면액은 ○ 稅額基準으로 年間 3억원을 限度로 하며 ○ 減免할 세액이 3억원을 超過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함	— 個人에 대한 讓渡稅 減免綜合限度額을 1억원으로 축소
— 法人에 대한 讓渡稅 減免額은 ○ 각 事業年度別로 양도세 算出稅額의 70%를 한도로 하며 ○ 減免할 세액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과세함	— 法人에 대한 讓渡稅 減免限度額을 양도세 算出稅額의 50%로 縮小함

〈15年 以上 保有土地 減免과 其他의 減免이 함께 있는 경우 減免綜合限度額 計算〉

15년 이상 保有한 土地 등을 公共事業用地로 1995년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從前의 減免率(70%, 債權補償時 100% 減免) 및 減免綜合限度額을 適用하므로 15년 이상 保有土地에 대한 減免과 其他의 減免이 함께 있는 경우 減免綜合限度額의 計算方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個人의 減免綜合限度額

①「其他의 減免額」: 1억원을 限度로 함

②「全體 減免額」: 公共事業用地로 讓渡한「15年 以上 保有土地에 대한 減免額」과 ①의 減免額은 3억원을 限度로 함

— 法人의 減免綜合限度額

①「其他의 減免額」: 全體 特別附加稅 算出稅額의 50%를 限度로 함

②「全體 減免額」: 公共事業用地로 양도한「15年 以上 保有土地에 대한 減免額」과 ①의 減免額을 합하여 全體 特別附加稅 算出稅額의 70%를 限度로 함

〈참 고〉 讓渡稅 減免綜合限度 適用對象

— 讓渡所得稅 減免의 綜合限度(租減法 §88의2⇨§119)

— 特別附加稅 減免의 綜合限度(租減法 §88의3⇨§120)

從 前	綜合限度 對象	改 正
(§42)	大都市 工場의 地方移轉	§43(추가)
(§42의2)	首都圈 法人本社의 地方移轉(法人)	§44
§57	公共事業用土地 등	§63
§58	都市再開發地區內 土地 등	
§59	開發事業施行者에 대한 減免	§64
§60	國家 등에 讓渡	§65
§62	國民住宅 建設用地	§66
§72의4	기숙사 建設用地	
§67의4	長期賃貸住宅	§67(삭제)
§67의11	牧場移轉	§70
§67의12	工場移轉(個人)	§71
§67의12	工場代替取得(法人)	
	農漁民支援施設(法人)	§75②
§67의15	社員用住宅 取得을 위하여 土地 등 讓渡(法人)	§68
(신 설)	8年 以上 自耕農地	§55(추가)

8) 産業合理化와 관련한 讓渡稅 減免 縮小(조세감면규제법 §35, §38)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産業合理化를 위하여 資産을 讓渡하는 경우에도 地價上昇利益에 대하여 全額免除하는 것은 資本利得에 대한 課稅強化方向에 어긋나므로 産業合理化 對象指定産業이 合理化基準에 따라 資産을 讓渡하거나 金融機關이 抵當權 實行 또는 債權辨濟로 取得한 資産을 讓渡하는 경우 讓渡稅 減免率을 50%로 縮小하였다.

從 前	改 正
– 産業合理化對象 指定産業이 合理化 基準에 따라 資産讓渡時 全額 減免 – 金融機關이 저당권 實行이나 債權辨濟로 取得한 資産을 讓渡時 全額 減免	讓渡稅 減免率을 50%로 縮小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4. 1. 1 이후 최초로 讓渡하는 分부터 適用한다.

– 改正된 租稅減免規制法 시행전에 産業合理化對象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企業 및 改正된 租稅減免規制法 施行當時 從前 규정에 의하여 産業合理化對象으로 지정된 산업 또는 企業으로부터 資産을 取得한 金融機關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全額減免한다.

9) 자경농민에게 讓渡하는 農地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免除(조세감면규제법 §56, 동법시행령 §55)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農地에 대하여 양도세를 감면하는 것은 농지를 양수한 농민이 계속영농에 종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宅地開發豫定地區 등 각종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된 농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讓渡稅 減免을 배제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讓渡稅가 免除되는 農地 등의 範圍 ○ 相續稅法 제11조의3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 등 ○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	– 讓渡稅가 免除되는 농지 등의 범위(축소) (종전과 같음)

從 前	改 正
	○ 宅地開發促進法의 규정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로 지정된 地域외에 소재하는 農地 등 ○ 産業立地및開發에관한法律에 의한 공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農地 등 ○ 流通産業近代化促進法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로 지정된 지역외에 소재하는 農地 등 ○ 觀光振興法에 의한 관광단지로 指定된 地域외에 소재하는 農地 등 ○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산림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의 허가·승인·동의를 받았거나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지역외에 소재하는 農地 등

10) 社員用住宅 取得을 위한 業務用不動産 양도시 讓渡稅 감면축소(조세감면규제법 §68, 동법시행령 §65)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앞으로는 業務用資産의 대체취득시 讓渡稅 減免對象을 工場으로 한정하고 공장외의 업무용 자산 代替取得의 경우에는 減免對象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社員用住宅 취득을 위한 業務用不動産을 양도하는 경우 讓渡稅를 全額 감면하던 것을 50%로 縮小하고 그 適用期限을 1994. 12. 31까지로 하였다.

從 前	改 正
— 法人이 국민주택규모의 종업원용 주택을 신축·취득하여 賃貸·分讓할 목적으로 5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토지를 양도시 特別附加稅 100% 면제	— 1994. 12. 31까지 讓渡시 特別附加稅 50% 減免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4. 1. 1 이후 最初로 讓渡하는 분부터 適用한다.
- 改正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당시 土地 등을 讓渡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종전의 제67조의15의 규정에 적합하게 社員用住宅을 新築 또는 賃貸한 者가 業務用 土地 등을 讓渡하는 경우 종전 規定을 적용한다.

11) 社會福祉法人 및 宗教法人의 業務用土地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 要件強化 (조세감면규제법 §74, 동법시행령 §71)

社會福祉法人 등의 特別附加稅 減免對象을 고유목적에 일정기간(5년) 이상 사용한 土地 등으로 함으로써 사회복지법인 및 宗教法人 등 공공법인에 대한 特別附加稅 감면요건을 強化하였다.

從 前	改 正
- 社會福祉法人, 宗教法人 등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土地 등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讓渡時 特別附加稅 免除	- 免除對象을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土地 등」으로 요건을 強化

나. 經濟行政 規制緩和 및 納稅便宜圖謀

1) 公共事業用地로 讓渡한 경우 減免節次 要件을 緩和(조감법 §63)

公共事業用地로 土地 等을 양도하는 경우 讓渡稅 감면요건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매입자(公共事業施行者)가 양도자의 양도세 신고기한내에 減免申請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감면을 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買入者가 양도자의 양도세 신고기한 경과후에 減免申請書를 제출하더라도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 「讓渡者」가 國家 등 公共事業 施行者에게 협의 양도한 土地 등에 대하여 讓渡稅 減免을 받기 위하여는 • 買入者(公共事業施行者)가 讓渡稅 申告期限內에 稅務署에 減免申請書를 提出하여야 함 → 期限內 提出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減免을 받을 수 없음	- 買入者가 讓渡者의 讓渡稅 申告期限 경과후에 減免申請書를 제출하더라도 讓渡稅 減免을 適用함

2) 양도자의 감면신청이 감면의 필수요건인 경우 양도세 감면신청서 제출기한연장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30, §41, §42, §65, §67, §68, §70, §71)

讓渡者의 양도세 減免申請이 감면의 필수요건인 경우 減免申請書 제출기한을 연장함으로써 감면대상에 해당되는데 감면신청서를 課稅標準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納稅者의 편의를 增進시켰다.

從 前	改 正
讓渡稅 減免申請時 當該資產 讓渡日이 속하는 課稅年度의 課稅標準 신고와 함께 減免申請書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減免適用 ⇒ 課稅標準 申告期限內 減免申請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減免要件에 해당되더라도 減免 排除	— 讓渡者의 減免申請이 감면의 필수 요건인 경우 減免申請書 提出期限을 연장하여 課稅標準 申告期限內 減免申請書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 政府가 課標와 稅額을 결정하기 전에 減免申請書를 제출하거나 • 當初 申告期限 경과후 1년내 申請書를 제출하는 경우는 減免適用

※ 減免申請書 提出期限 延長 對象
- ○ 中小企業 事業轉換時 免除(조감법 §33)
- ○ 大都市工場, 首都圈內 本人本社 地方移轉時 면제(조감법 §43, §44)
- ○ 社員用住宅取得을 위한 土地讓渡時 減免(§68)
- ○ 10년 이상 經營牧場, 5년 이상 稼動工場 이전시 免除(§70, §71)
- ○ 學校法人 所有財產 讓渡時 免除(§73)
- ○ 社會福祉·宗教法人 고유목적 土地讓渡時 免除(§74)

다. 開發事業 施行者 等에 대한 讓渡稅 減免

1) 한국공항공단이 수도권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해 조성한 토지 양도시 양도세면제 (조세감면규제법 §64)

수도권 新空港建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공항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하여 讓渡하는 土地 등에 대하여 양도세를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新 設〉	— 한국공항공단이 신공항건설 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50% 감면

2) 觀光團地 開發事業에 대한 讓渡稅 減免(조세감면규제법 §64, 동법시행령 §61)

觀光團地開發事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성산포관광단지 및 해남화원관광단지 開發

事業에 대하여 경주보문, 제주중문 관광단지와 같이 양도세를 50% 減免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내에서 조성한 토지 등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 경주보문관광단지 ○ 제주중문관광단지	(종전과 같음) ○ 제주성산포관광단지 ┐ 추가 ○ 해남화원관광단지 ┘

3) 農業協同組合 등에 대한 特別附加稅의 감면(조세감면규제법 §75)

農·畜·水·林業協同組合 등 유사기관간의 租稅衡平을 감안하고, 농지개량조합 통폐합 등에 의한 營農改善事業의 확대 및 재정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지개량조합과 조합, 동 조합과 農地改良組合 聯合會 상호간 土地를 양도하는 경우에 特別附加稅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農·畜·水·林業協同組合(어촌계 및 산림계 포함)과 組合, 이들 組合과 중앙회 상호간 土地讓渡時 特別附加稅 免除	減免對象에 農地改良組合 포함

4) 大田엑스포記念財團에 대한 特別附加稅 免除(조세감면규제법 §76)

博覽會組織委員會가 해산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토지 등이 대전엑스포기념재단에 승계됨으로써 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特別附加稅 면제규정(從前 租減法 §67의5)을 대치하여 대전엑스포기념재단이 박람회조직위원회로부터 승계받은 土地 等을 1995. 12. 31까지 讓渡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免除하도록 하였다.

從 前	改 正
〈新 設〉	大田엑스포紀念財團이 博覽會組織委員會로부터 承繼받은 土地 등을 1995. 12. 31까지 讓渡하는 경우 特別附加稅 免除

라. 其他 制度 補完事項

1) 國民住宅基準이 適用되는 多家口住宅에 대한 減免(조감법시행령 §63, 동법시행규칙 §29)

從 前	改 正
多家口住宅을 單獨住宅으로 보아 전체면적을 基準으로 國民住宅與否를 판정함으로써 조감법상 國民住宅에 적용되는 감면을 받지 못함	가구당 전용면적을 基準으로 한 面積이 國民住宅規模에 해당하는 多家口住宅을 國民住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多家口住宅의 경우도 國民住宅에 대한 조감법상의 각종 減免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多家口住宅에 대하여 적용가능한 조감법상 減免內容
- ○ 國民住宅用地로 讓渡時 讓渡稅 減免(§66)
- ○ 長期賃貸住宅에 대한 讓渡稅 減免(§67)
- ○ 社員用住宅 取得을 위한 土地 등 讓渡時 特別附加稅 감면(§68)
- ○ 社員用 賃貸住宅에 대한 投資稅額控除(§88)
- ○ 임대사업용 國民住宅에 대한 特別減價償却費 計上(§91)
- ○ 國民住宅과 그 建設用役에 대한 附加價値稅 면제(§100)

2) 租稅減免이 부여되는 外國人技術者 範圍의 명확화(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3①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法 第15條第1項에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外國人技術者"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外國人을 말한다. 1. 財務部令이 정하는 技術用役契約에 의하여 國內에서 技術을 提供하는 者	(左 同) 1. 財務部令이 정하는 엔지니어링 技術導入契約에 의하여 國內에서 技術을 提供하는 者

(2) 改正理由

종전 技術用役育成法이 1993. 5 엔지니어링 技術振興法으로 변경 施行되어 온 技術振興法의 規定에 따라 用語를 정비하는 한편, 租稅減免對象 外國人技術者를 엔지니어링 技術導入과 관련된 外國人技術者로 범위를 한정하여 尖端技術 및 技能所持者의 국내유치라는 본 租稅減免制度의 實效性을 提高하기 위해서 改正하였다.

4. 其他 改正事項

가. 納稅節次의 簡素化·合理化

1) 投資稅額控除制度의 適用時期 改善(조세감면규제법 §5, §10, §25, §26)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투자세액공제의 적용시기 ○ 투자완료연도에 세액공제 허용(다만, 임시투자세액공제에 한해 실제투자연도와 투자완료연도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허용)	○ 실제투자연도와 투자완료연도 중 선택하여 세액공제 허용

〈改正理由〉

投資가 2개 이상의 課稅年度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 종전에는 臨時投資稅額控除를 제외하고는 投資完了年度에 한해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中小企業投資 稅額控除(§5), 硏究試驗用施設·職業訓練用施設 및 新技術企業化用 施設投資 稅額控除(§10), 生產性向上 施設投資 稅額控除(§25), 特定設備投資 稅額控除(§26)에 대하여도 실제로 投資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세액공제를 받거나 투자가 완료된 연도에 일괄하여 세액공제를 받는 방법 중 企業이 選擇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投資完了年度에 한해 일괄하여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도록 하는 경우 실제 資金負擔이 이루어지는 시기와 세금을 減免받는 시기가 달라 투자에 따른 資金負擔을 輕減해 주기 위한 제도 본래의 趣旨에 배치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마다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作業進行率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과세연도의 투자금액과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아야 하며 작업진행율에 의한 투자금액과 現金支出額 中 선택하여 적용받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4. 1. 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며, 1994. 1. 1 현재 투자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해 투자완료연도에 일괄해서 稅額控除를 받아야 한다.

2) 投資稅額控除 申請節次의 簡素化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절차 ○ 투자개시연도에 투자계획서 제출 ○ 투자완료연도에 투자완료보고서(또는 투자확인서)와 세액공제 신청서 제출	○ 투자완료연도에 세액공제신청서만 제출

〈改正理由〉

종전에는 각종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投資開始年度와 投資完了年度에 두 차례에 걸쳐 投資計劃書, 投資完了報告書 또는 投資確認書, 稅額控除申請書 등 3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行政規制緩和 및 納稅便宜圖謀 次元에서 投資完了年度에 投資稅額控除 申請書만 제출하도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였다. 다만,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改正된 規定에 의해 각 과세 연도마다 실제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연도가 아니라도 투자세액공제 신청서는 제출하여야 한다.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4. 1. 1 이후 최초로 投資稅額控除 申請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參考로 投資稅額控除와 관련한 改正內容 中 앞서 설명한 稅額控除率에 관한 개정내용과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長期投資의 세액공제적용시기에 관한 개정내용은 1994. 1. 1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하나 본 세액공제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은 行政規制緩和 차원에서 1993. 12. 31 이전의 투자분에 대하여도 改正法律의 시행일인 1994. 1. 1 이후 課稅標準申告와 함께 투자세액공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소급해서 적용하도록 하였다.

3)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은 자산의 處分制限期間 短縮(조세감면규제법 §124)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종전에는 각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자산을 5년간은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減免稅額을 追徵하도록 하던 것을 處分制限期間을 3년으로 단축하였다. 다만, 처분제한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現物出資·合併·統合·事業轉換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해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減免稅額을

追徵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던 규정은 종전과 변동이 없다.

나. 公共法人에 대한 課稅制度 補完

1) 公共法人에 대한 稅率引上(조세감면규제법 §59①)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일반공공법인	
○ 과표3억 이하 : 17%	18%
○ 과표3억 초과 : 25%	(좌 동)
— 당기순이익 과세공공법인 : 10%	(좌 동)

〈改正理由〉

公共法人에 대한 法人稅率 中 課稅標準 3억원 이하분에 적용되는 낮은 세율을 17%에서 18%로 상향조정하여 一般法人에 대한 法人稅의 낮은 세율수준과 일치되도록 하였다.

이는 稅制를 단순화하는 한편으로 공공법인의 배당에 대하여 일반법인의 배당과 같이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완전 조정해주기 위해 配當稅額控除의 기준이 되는 세율을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2) 公共法人에 대한 所得計算의 特例制度 改善(조세감면규제법 §60)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종전에는 租減法上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非營利法人으로 간주하여 稅法規定을 적용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공법인이라 하더라도 株主 또는 出資者에게 利益을 配當할 수 있는 법인에 대하여는 非營利法人으로 보지 않고 一般營利法人과 같은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공공법인 중 이익배당이 가능한 법인은 조감법상 법인세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세법상 각종 소득계산의 특례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법인세법상 열거된 수익사업소득에 한해 과세하던 것을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게 되고, 이자소득에 대하여 20% 源泉徵收 分離課稅 선택이 可能하던 것을 모두 합산하여 課稅하게 되며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固有目的事業에 지출하는 경우 指定寄附金으로 보아 손비인정하던 것을 지정기부금혜택이 배제되는 등 소득계산방법이 달라지게 된다.

다. 全額 損金算入 寄附金 縮小(조세감면규제법 §61①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다음의 연구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전액손비인정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좌 동
○ 산업연구원,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국토개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삭 제
○ 생산기술연구원 및 민간생산기술연구소	○ 좌 동 ○ 광주과학기술원 추가

2) 改正理由

연구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과학기술연구단체에 한해 전액손비 인정토록 하고, 과학기술연구단체가 아닌 여타 연구단체에 대하여는 조감법상 기부금이 전액소비 인정되는 단체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경우 지정기부금 한도내에서 손비인정받도록 하였다.

라. 最低限稅制度 補完(조세감면규제법 §118①)

종전에는 법인의 경우 각종 감면을 받기 전의 課稅標準의 12% 상당액을 最低限稅로 납부하도록 하면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물론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超過留保法人稅를 합하여 과세표준의 12%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適正留保超過所得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만으로 감면전 과세표준의 12% 상당액을 最低限稅로 납부하도록 하였다. 이는 초과유보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最低限稅의 계산이 지극히 복잡해지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마. 稅額控除額의 移越控除關聯 規定 補完(조세감면규제법 §121①)

각종 투자세액공제액과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額 등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음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그 다음 4년(技術人力開發費 세액공제액

은 5년)에 걸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종전에는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로 표현되어 있어 결손이 발생한 과세연도에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경우 最低限稅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이월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다. 다만, 결손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경우에도 예규에 의하여 最低限稅의 적용이 있었던 것으로 넓게 해석하여 종전에도 移越控除가 가능하도록 운용하던 것을 이번 개정에서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규정을 「당해 課稅年度에 納付할 세액이 없거나 最低限稅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경우」로 명백히 하였다.

바. V.C.會社의 株式讓渡差益에 대한 減免方法 改善(조세감면규제법 §12)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나 新技術事業 金融會社가 創業中小企業이나 新技術事業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에는 당해 讓渡差益에 대하여 益金不算入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非課稅하도록 감면방법을 개선하였다. 이는 익금불산입과 비과세 모두 지원취지는 같으나 익금불산입방법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 最低限稅의 납부와 관련하여 이월결손금의 보유 및 규모여하에 따라 감면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사. 長期住宅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제도 신설(조세감면규제법 §80, 동법시행령 §75⑨)

1) 改正內容 및 改正理由

無住宅者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감법상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신설함과 아울러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저축의 이자에 대한 비과세제도를 폐지하였다. 신설된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다.

- 가입대상 : 만20세 이상의 무주택자
- 저축한도 및 불입방법 : 월100만원의 범위내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불입
- 계약기간 : 5년 이상
- 1인1통장일 것

동 저축의 이자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5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우선 비과세하고 추후 저축계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중도해약한 경우에는 減免稅額을 추징하게 된다. 다만, 저축자가 사망하거나, 해외로 이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중도해약하는 경우에는 減免稅額을 추징하지 않는다.

2) 適用時期 및 適用例

1994. 1. 1 현재 종전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住宅貯蓄에 대하여는 당해 주택저축의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利子所得이 비과세된다.

아. 舊 租減法에 의한 再評價實施 기업의 공개시한 연장(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109)

1987. 11. 28 신설되어 1990. 12. 31자로 삭제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도매물가 상승률이 25%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資產再評價를 허용하고 있었다. 동 규정은 1990. 12. 31에 폐지되면서 폐지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공개하는 경우에는 이미 행한 재평가를 資產再評價法에 의한 재평가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둔 바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최근 수년간 證券市場安定을 위해 企業公開要件이 강화되는 등 기업공개 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공개시한을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서 8년 이내로 3년간 추가 연장하였다.

자. 우리社株에 대한 稅金優待要件 緩和

1) 우리사주에 대한 5% 低率 分離課稅要件 완화(조세감면규제법 §8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低率(5%) 分離課稅要件 ○ 우리社株組合員이 그 法人의 株式을 당해 組合을 통하여 取得할 것 ○ 少額株主일 것 ○ 額面價基準 1,800萬원 以下일 것 ○ 配當金 支給日 現在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에 3년 이상 預託된 것일 것	(現行과 같음) ○ 配當金 支給日 現在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에 2년 이상 預託된 것일 것

〈改正理由〉

資本市場育成에관한法律 施行令 改正으로 우리社株의 韓國證券金融株式會社 義務預託期間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됨에 따라 稅金優待要件을 調整

2) 우리사주에 대한 減免稅額의 추징요건완화(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83⑧)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우리社株 취득시 세액공제(15%)의 追徵要件 ○ 貯蓄金額으로 當該 法人의 株式을 取得하지 않고 인출한 경우 ○ 取得한 株式을 韓國證券金融에 預託하지 아니하거나 預託한 후 1년 이내 引出한 경우 ○ 株式取得資金 貸與金 最終 償還日로부터 1年 이내 株式引出時(退職後 引出하는 경우는 除外) 〈新 設〉	(現行과 같음) (但書新設) • 다만, 資本市場育成에 관한 法律 施行令 제2조의 規定에 의한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부득이한 事由로 引出하는 경우에는 追徵 排除

* 財務部長官이 정하는 부득이한 事由(財務部長官 告示 91—18號)

• 住宅購入資金, 治療費, 葬禮費, 結婚費, 學資金 등 日常生活에 緊要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株式賣却이 不可避한 경우

〈改正理由〉

— 근로자가 우리社株 取得을 위하여 貯蓄한 金額 또는 借入金으로 주식을 취득한 경우 당해 償還額에 대하여 15%를 勤勞所得稅에서 控除하고 있으며, 稅額控除를 받은 후 당해 주식을 引出·處分하는 등 一定要件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控除稅額을 追徵하는 要件을 緩和하여 우리 社株에 대한 稅制支援을 강화함.

차. 利子所得이 非課稅되는 貯蓄의 範圍 擴大(조세감면규제법 §80, 동법시행령 §7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非課稅 貯蓄 • 奬學積金 • 單位 農·畜·水協 預託金·出資金 • 信用協同組合 預託金·出資金 • 새마을金庫 預託金·出資金 • 勤勞者長期貯蓄(月 50萬원) • 勤勞者長期證券貯蓄(月 50萬원) • 國民株 信託 〈新 設〉	(현행과 같음) • 林業協同組合의 預託金·出資金 追加 (現行과 같음) • 長期住宅마련貯蓄 (從前 住居安定法에 의한 勤勞者住宅貯蓄에 대한 非課稅條項은 削除)

〈長期住宅마련貯蓄의 非課稅 制度〉

— 非課稅 要件

○ 加入對象 : 만20歲 이상의 無住宅者

○ 貯蓄限度額 : 월 100만원

○ 貯蓄契約期間 : 10年 以上으로 하되 5年 以上 拂入時에는 利子所得에 대하여 非課稅

○ 貯蓄取扱 金融機關 : 韓國住宅銀行, 財務部令이 정하는 金融機關

○ 通帳數 : 1人1通帳

— 中途解約者에 대한 減免稅額 追徵

○ 追徵稅額 : 貯蓄契約日로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中途解約한 경우에는 一般 源泉徵收稅率로 追徵

○ 稅額追徵의 例外

• 貯蓄者가 死亡한 경우

• 貯蓄者가 海外로 移住한 경우

• 天災·地變·其他 財務部令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貯蓄契約을 해지한 경우

2) 改正理由

— 無住宅者의 住宅마련을 支援하고 가계의 金融貯蓄 增大를 유도하여 銀行圈의 장기안정적인 受信基盤을 확충

— 山林組合法이 廢止되고 林業協同組合法이 新設되면서 동 組合에 相互金融業務가 추가됨에 따라 類似 協同組合과의 支援衡平을 위하여 林業協同組合 預託金·出資金의 利子 등에 대하여도 非課稅

카. 適用時限 延長(조세감면규제법 §125)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96. 12. 31까지에서 1998. 12. 31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이는 정부의 新經濟5個年計劃 등의 경제정책과 연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을 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94년

◉ 법　　률 : 1994. 3.24. 법　　률 제 4743호(농어촌특별세법 부칙)
(시행일 : 1994. 7. 1.)
1994. 3.24. 법　　률 제 4744호(시행일 : 1994. 3.24.)
1994.12.22. 법　　률 제 4806호(시행일 : 1995. 1. 1.)
1994.12.22. 법　　률 제 4803호(소득세법 부칙)
(시행일 : 1996. 1. 1.)
◉ 시 행 령 : 1994. 3.29. 대통령령 제14198호(한국자원재생공사법 시행령 부칙)
(시행일 : 1994. 4. 1.)
1994. 6.15. 대통령령 제14278호(시행일 : 1994. 6.15.)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건설교통부와그소속 기관직제 부칙)
(시행일 : 1994.12.23.)
1994.12.31. 대통령령 제14475호(시행일 : 1994.12.31.)
◉ 시행규칙 : 1994. 6.15. 재무부령 제 1983호(시행일 : 1994. 6.15.)
1995. 4. 1. 총 리 령 제 499호(시행일 : 1995. 4. 1.)

〈要　　約〉

○ 産業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租稅支援 擴充
— 소득세 및 법인세 特別稅額減免 對象業種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추가
— 地方中小企業 特別支援地域 등에 入住하는 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
— 社會間接資本 投資準備金 적용대상에 民資誘致事業 施行者 추가
— 技術開發準備金 및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制度 改善
— 流通産業近代化 施設投資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
— 産業災害豫防施設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
— 新技術企業化施設 投資稅額控除制度 改善
— 法人轉換 讓渡稅 減免 對象業種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 관련업 추가
○ 일반 감가상각제도 개선에 따른 特別償却制度 廢止
○ 外國人 投資環境 改善지원
○ 租稅減免의 縮小를 통한 稅負擔의 衡平提高
— 臨時投資 稅額控除制度 폐지

- 首都圈 창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減免排除地域의 範圍 擴大
- 國公債利子 稅額減免 폐지
-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稅金優待 貯蓄制度 정비

○ 公共法人 稅率體系 調整

○ 開發事業施行者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減免

- 讓渡稅 減免(50%) 대상 開發事業施行者의 範圍 확대
- 長期賃貸住宅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농협 등의 流通子會社에 대한 特別附加稅 등의 減免
- 自耕農民의 범위에 直系卑屬의 配偶者 추가
- 自營漁民의 漁船·漁業權에 대한 贈與稅 면제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讓渡所得稅 감면 綜合限度 改善

○ 納稅便宜提高 및 기타 補完事項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畜産機資材 추가
- 再活用廢資源 看做買入稅額 控除制度 개선
- 個人企業의 법인전환시 감면세액에 대한 事後管理要件 완화
- 國際金融去來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法人稅 등 免除制度 개선

○ 양도세 관련

-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시 양도일 판정기준 보완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 조정
- 도·농 통합에 따른 보완
- SOC 민자유치 지원
- 양도세 감면신청요건 보완
- '97 무주·전주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
-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 부가가치세 감면

- 축산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기자재 추가

〈改正內容〉

1. 產業의 競爭力 提高를 위한 租稅支援 擴充

가. 所得稅 또는 法人稅 特別稅額減免 대상업종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추가 (조감법 §7, 영 §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中小製造業의 製造業所得에 대해 특별세액 감면 • 세액의 20% 감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추가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의 범위 • 컴퓨터설비자문업(721),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722), 자료처리업(723), 데이터베이스업(724)

(2) 改正理由

○ 情報產業의 육성을 支援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特別稅額減免 대상업종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을 추가하였다.

○ 情報處理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중 컴퓨터설비자문업(721),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722), 자료처리업(723), 데이터베이스업(724)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은 당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나. 地方中小企業 特別支援地域 등에 入住하는 中小企業에 대한 稅額減免(조감법 §50, 영 §4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農工團地 入住企業에 대하여는 —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50% 감면 〈對象地域〉 — 농어촌지역(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농공단지 지정일 현재인구 20만 이상인 시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농공단지 〈對象企業〉 — 모든기업(중소기업+대기업)	—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및 개발촉진지구를 감면대상지역에 추가 — 중소기업에 한하여 감면

(2) 改正理由

○ 地方中小企業의 育成을 支援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및 開發促進地區 입주 中小企業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후 5년간 소득세 또는 法人稅를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 首都圈外의 地域으로서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및 開發促進地區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開發促進地區 및 地方中小企業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는 中小企業을 그 지원대상으로 하며 1995년 3월 6일 현재 정읍제2공단, 정읍제3공단, 대불공단, 북평국가공단, 북평지방공단이 中小企業 特別支援地域으로 지정(통상산업부 고시 1995－21)되었다.

※ 參 考

○ 地方中小企業 特別支援地域

—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기본계획에 현저히 미달하는 시·도안의 공업단지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지정신청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50조)

○ 開發促進地區

—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지정(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다. 社會間接資本 投資準備金 適用對象에 民資誘致事業 施行者 追加(조감령 §25 제1항제6호)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社會間接資本 投資準備金 損金算入 制度 (對象事業) — 도로·항만·공항·전원설비·수자원개발시설·하수종말처리시설·천연가스 (對象企業) — 한국도로공사·한전·수자원공사·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한국공항공단·한국가스공사 (損金 및 還入) —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15% — 3년거치 3년분할 환입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1, 2종 시설) 추가 —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 추가 (현행과 같음)

(2) 改正理由

○ 각종 생산활동의 기반이 되는 시설 및 당해 시설의 효용을 증진시키거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시설과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社會間接 資本施設에 대한 民間資本誘致를 促進하기 위하여 사회간접자본 투자준비금 설정대상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시행법인을 추가하였다.

※ 參 考

○ 민자유치사업

(제1종시설)

- 도로, 하천
- 철도, 도시철도
- 항만, 어항
- 공항
- 댐, 수도
-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처리

(제2종시설)

- 전원설비, 가스공급시설, 집단에너지시설
- 전산망
- 유통단지, 화물터미널 및 창고, 여객자동차터미널, 종합여객시설
- 관광지 및 관광단지, 노외주차장, 도시공원
- 폐수종말처리시설, 축산폐수정화시설, 재활용시설
- 생활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및 미술관

라. 技術開發準備金 및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制度 改善(조감령 별표 3, 별표 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① 技術開發準備金 〈支援對象費用〉 –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용 견본품, 원재료 등의 구입비 – 연구기관과의 공동 및 위탁기술개발비 – 제조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개발 및 기술지도비 등	(현행과 같음)

從 前	改 正
(추 가)	—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ISO 9000)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추가 —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품질보증체제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도비 추가
〈損金 및 還入〉 — 수입금액의 3%(기술집약산업 4%) — 3년거치 3년분할 환입	(현행과 같음)
②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支援對象費用〉 — 연구원의 인건비 — 연구용의 견본품, 원재료 등 구입비 — 연구기관과의 공동 및 위탁기술개발비 —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력개발 지도비 등	(현행과 같음)
(추 가)	— 『품질경영촉진법』에 의한 품질보증체제(ISO 9000)신규인증 획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하는 비용 추가 — 대기업이 협력업체의 품질보증체제 인증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출하는 지도비 추가 —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사내직업훈련 실시 및 직업훈련관련사업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추가
〈控除率〉 — 증가지출액의 50%와 총지출액의 5%(중소기업 15%) 중 선택	(현행과 같음)

(2) 改正理由

○ 中小企業의 對外競爭力 強化를 支援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대상 비용의 범위에 품질보증체제(ISO 9000) 신규 인증획득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이 지출한 비용,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 獲得指導費를 추가하였다.

○ 또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적용 대상비용의 범위에 雇傭保險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와 사내직업훈련실시 및 직업훈련관련 사업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하였다.

마. 流通産業近代化 施設投資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조감법 §26, 영 §23, 규칙 §14, 규칙별표 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流通産業近代化 施設投資에 대한 세액공제	
〈對象事業者〉	
— 연쇄화사업자(도소매업진흥법)	— 화물터미널 및 창고업자(화물유통촉진법) 추가
〈對象施設〉	
— 농수산물용 저온보관고, 판매용진열대, 운반용 냉동·냉장 화물자동차 및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설(POS)	— 다음의 물류자동화 및 표준화 시설추가 •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이어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평팰릿
— 포장기(농수산품용)	— 공산품용 포장기 추가
〈支援方法〉	
— 투자금액의 10%(외산3%) 세액공제와 취득가액의 50%(외산30%) 일시상각 중 선택	(현행과 같음)

(2) 改正理由

○ 物流施設의 自動化 및 標準化를 促進하여 기업의 물류비용 경감을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베이어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자동화시설)과 평팰릿(표준화시설)을 유통산업근대화시설 投資稅額控除 적용대상시설의 범위에 追加하였다.

○ 포장기에 대해서는 종전에 농수산물용에 한정하던 것을 工産品用 包裝機까지 확대하였다.

바. 産業災害 豫防施設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조감법 §26, 영 §23, 규칙 §14, 규칙별표 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産業災害豫防施設 投資에 대한 세액공제	
〈對象施設〉	
— 프레스·절단기 등 위험기계·기구의 재해예방시설에 한정하여 지원	—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롤러기·양중기에 대하여는 재해예방시설

從 前	改 正
	가액이 당해 예방시설이 완비된 전체기계·기구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예방시설을 포함한 전체기계·기구에 대해 지원
〈支援方法〉 — 투자금액의 10%(외산 3%) 세액공제 또는 취득가액의 50%(외산 30%)일시상각 중 선택	(현행과 같음)

(2) 改正理由

○ 위험기계·기구와 당해 기계·기구에 부착되는 재해예방시설의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과 실효성있는 災害豫防施設 設置를 促進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발생 빈도가 높은 프레스·절단기·목재가공용 둥근톱·롤러기·양중기에 대하여는 재해예방시설가액이 당해 재해예방시설이 완비된 전체시설가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시설에 대해 세액공제하거나 일시상각함으로써 支援의 實效性을 높이도록 하였다.

사. 新技術企業化 施設 投資稅額 控除制度 改善(조감령 §10)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新技術企業化施設 投資稅額控除制度 〈對象施設〉 — 특허받은 국내기술, 국산 신기술 제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성과와 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신규의 고안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	(좌 동)
(추 가)	—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을 처음으로 기업화한 것을 추가
〈控除率〉 — 투자금액의 3%(국산기자재 10%)와 일시상각(30%, 국산기자재 50%) 중 선택	(좌 동)

(2) 改正理由

○ 컴퓨터산업의 新技術企業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기술기업화시설 투자세액 공제대상 시설의 범위에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을 처음으로 企業化한 것을 추가하였다.

아. 法人轉換 讓渡稅 減免 대상업종에 情報處理 및 컴퓨터 運用 關聯業 추가(조감법 §3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법인전환시 事業用固定資產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 또는 양도가액 특례 중 선택	○ 감면대상업종에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추가

(2) 改正理由

○ 情報產業의 育成을 支援하기 위해 情報處理 및 컴퓨터運用關聯業 중 컴퓨터 설비자문업(721), 소프트웨어자문·개발 및 공급업(722), 자료처리업(723), 데이터베이스업(724)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하였다.

2. 一般減價償却制度 改善에 따른 特別償却制度 廢止

(1) 改正內容(조감법 §18, §21, §30, §37, §45, §49, §89, §91)

從 前	改 正
○ 수출사업 특별상각(§18) ○ 외국항행사업 특별상각(§21) ○ 주차시설 특별상각(§30) ○ 산업합리화시설 특별상각(§37) ○ 수도권법인본사 지방이전 특별상각(§45) ○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 특별상각(§49) ○ 기숙사 특별상각(§89) ○ 임대사업용 국민주택 특별상각(§91)	(폐 지)

(2) 改正理由

○ 減價償却制度의 殘存價額을 廢止하고 기준내용연수를 25% 범위내에서 기업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현행 가속상각제도의 존치의의가 미미하게 되어 加速償却制度는 모두 廢止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 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3. 外國人 投資環境改善 支援(조감법 §4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首都圈內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 창업하거나 증자하는 경우 —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등 조세감면 배제	○ 1995. 4. 1이후 외국인투자기업이 수도권내에서 전략고도기술 수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창업하는 경우 — 외자도입법에 의한 각종 조세감면 허용 ※ 수도권 중 조감령 별표9(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의 지역은 종전과 같이 감면배제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首都圈內에서 外國人投資企業이 創業하거나 增資하는 경우 외자도입법에 의한 소득세·법인세 등 租稅減免을 排除하였다. 1995년 4월 1일이후 외자도입법에 의하여 최초로 신고수리 또는 인가된 외국인투자기업이 高度技術을 隨伴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는 首都圈안의 投資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 그러나 수도권 중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영 별표9에 열거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감면이 배제된다.

※ 參 考

① 外資導入法上 減免規定(§14, §16①)

— 최초소득 발생연도부터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감면

— 외국인투자가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 종합토지세, 취득세, 등록세 5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② 租稅減免對象 高度技術事業(재무부 고시 제1994-7호, 외국인투자에관한규정)

A. 제조업

1. 기계공업(광학기기, 자기부상열차 및 부품 등 29종)
2. 전기·전자공업(컴퓨터 및 주변기기, 반도체 등 22종)
3. 정밀화학공업(합성고분자원료, 촉매 등 13종)
4. 신소재공업(고기능 및 다기능섬유, 신소재 등 7종)
5. 생명공학(유전공학제품 등 3종)
6. 항공 및 방위산업(3종)
7. 환경오염방지 및 기타(3종)

B. 서비스업

1.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 산업시스템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4. 租稅減免의 縮小를 통한 稅負擔의 衡平提高

가.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 폐지(조감령 §27, 대통령령 제14084호, 조감령 부칙 제12조)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臨時投資稅額 投資制度 — 기업이 국산기계설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률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할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 〈適用對象業種〉 ○ 제조업, 중소광업 〈控除率〉 ○ 국산기계설비 투자금액의 7% (중소기업 10%) 〈適用時限〉 ○ 1994년말까지	(폐 지)

(2) 改正理由

○ 臨時投資稅額 控除制度는 경기침체기에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단기간내에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나 장기간 시행으로 제도 본래의 취지가 상당부분 퇴색하여 기업의 設備投資動向 등 제반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예정(1994년말에 종료)대로 廢止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1994.12.31 현재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994.12.31까지 투자한 분에 대하여 1994.12.31에 투자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首都圈 창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減免排除 地域의 範圍擴大(조감법 §6, 영 §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수도권창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 그후 2년간 30%감면 〈減免排除地域〉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 촉진권역」 — 서울특별시·의정부시·구리시·하남시 〈追 加〉 —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포천군(소흘면) — 미금시·남양주군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의 전 지역과 성장관리권역 중 일부지역 (좌 동) — 인천직할시(남동유치지역 제외)·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 (반월특수지역 제외) (좌 동) — 남양주시

(2) 改正理由

○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에 따라 감면배제지역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 도농복합형태의 시설치에 따른 표현수정

미 금 시 ┐
남양주군 ┘ → 남양주시

※ 참 고

〔별표 9〕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제6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관련)

區 分	地 域
1. 과밀억제권역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직할시(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다.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2. 성장관리권역	가.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에 한한다) 나. 포천군(소흘면에 한한다)

〈비 고〉

1. 제1호의 지역 중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은 제외한다.

다. 國公債利子 稅額減免 廢止(조감법 §8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기관투자자가 국공채의 발행자에게 직접 매입보유한 국공채의 이자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허용 – 상환기간 ┌1년 미만분 : 세액의 50% └1년 이상분 : 세액의 75%	(폐 지)

(2) 改正理由

○ 기관투자자가 수취하는 국·공채 이자에 대한 法人稅減免制度는 지난 1989년 당시 國·公債의 發行金利와 流通收益率間의 差異를 補塡하여 국·공채의 소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 그러나 현재는 대부분의 국·공채가 시장금리로 발행되고 있어 발행금리와 유통수익률간 이자가 크지 않게 되어 廢止하게 되었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1995. 1. 1 현재 보유하고 있던 국·공채의 이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라. 金融所得 綜合課稅에 따른 稅金優待貯蓄制度 整備(조감법 §80, §81, §84, §85, 부칙 §13, §16, §1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제80조(利子·配當所得에 대한 非課稅) ○ 가계 또는 학생의 특별예금 — 장학적금·입주자저축 ○ 단위 농·수·축협, 신협, 새마을금고 예탁금(2,000만원 이하) 및 출자금(1,000만원 이하) ○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저축 — 근로자장기저축 — 근로자장기증권저축 — 국민주신탁 ○ 장기주택마련저축	— 1996.1.1부터 10% 원천징수 (⇒개정조문 법 §81)
	— 현행대로 비과세(개정조문 법 §80)
제81조(少額家計貯蓄 등에 대한 低率分離課稅) ○ 소액가계저축(1,800만원 이하) ○ 소액채권저축(〃) ○ 우리사주저축(〃) ○ 소액보험차익(〃)	— 1996.1.1부터 10% 원천징수 (개정조문 법 §81)
제84조(勤勞者證券貯蓄에 대한 稅額控除 등) ○ 저축금액의 10% 세액공제 ○ 소득세, 상속·증여세 비과세	(폐 지) — 1996.1.1부터 10% 원천징수 ○ 상속·증여세 과세전환 (⇒개정조문 법 §81)
제85조(우리社株 取得에 대한 稅額控除 등) ○ 15% 세액공제	(폐 지)

(2) 改正理由

○ 金融所得綜合課稅의 實效性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저축과 5퍼센트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소액가계저축 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퍼센트로 조정하고 기준금액초과시에는 종합과세하도록 하였다.

○ 貯蓄稅額控除制度(재형저축 15%, 근로자증권저축 10%, 근로자주식저축 10%, 우리사주저축 15%)는 모두 폐지하고 稅金優待貯蓄 중 長期貯蓄(개인연금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은 현재와 같이 계속 비과세조치하였다.

○ 농·어민과 영세서민의 저축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 12월 31일 이전에 발생한 농·수·축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출자금 포함)의 이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그후 3년간(1999년 12월 31일까지)은 5%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고 2000. 1. 1부터 10%의 원천징수세율로 과세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부터 시행

〈稅金優待貯蓄(부칙 제13조)〉

— 1994. 9말 이전 가입자의 당초계약 만기일(가입일부터 3년한도)까지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 또는 5% 저율분리과세

— 1994. 10. 1 이후 가입자는 1995. 12말까지는 현재와 같이 비과세 또는 5% 저율분리과세되나 1996. 1. 1 이후부터는 10% 원천징수세율로 과세

— 농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예탁금이자(출자금 포함)에 대하여는

• 1996. 12. 31까지 : 비과세

• 1997. 1. 1～1999. 12. 31 : 5%

• 2000. 1. 1부터 10%

〈勤勞者財形貯蓄(부칙 제16조)〉

— 1994. 9. 30 이전가입자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비과세, 세액공제 및 전액장려금 지급

— 1994. 10. 1～1994. 12. 31 가입자에 대하여는

• 3개월분에 한하여 비과세, 세액공제 및 장려금 지급

— 1995. 1. 1 이후부터 동 저축제도는 사실상 폐지

〈農漁家 목돈마련貯蓄(부칙 제17조)〉

— 1996년부터 3년간 개정세법의 적용을 유예(1998년말까지 가입자는 비과세)

5. 公共法人 稅率體系 調整(조감법 §5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公共法人 ┌ 課標 3億 以下 18% └ 課標 3億 超過 25%	○ 공공법인 ┌ 과표 1억 이하 18% └ 과표 1억 초과 25%

(2) 改正理由

○ 공공법인 법인세율 課稅標準 基準金額을 종전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조정하였다.

○ 그동안 公共事業의 效率性과 經營의 自律性을 도모하기 위해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해 왔으나 법인세율은 단일세율이 국제적인 추세인 점과 세계무역기구 출범에 따른 우리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하여는 특례를 줄이고 증수되는 세수를 재원으로 法人稅率을 適正水準으로 引下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내리게 된 것이다.

○ 그러나 協同組合法人은 농어민이나 서민들이 조직한 상부상조기관인 점을 감안하여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제도는 계속 존치하도록 하였다.

6. 開發事業 施行者 등에 대한 讓渡所得稅 減免

가. 讓渡稅 減免(50%)대상 開發事業 施行者의 範圍擴大(조감법 §6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韓國空港公團	○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이 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한 토지 등 양도시 50% 감면
〈신 설〉	○ 民資誘致事業 施行者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 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 中小企業振興公團이 건설하는 아파트형 공장,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양도시 양도세 50% 감면

(2) 改正理由

○ 공공법인인 한국공항공단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 중 신공항건설사업을 분리하여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이 설립(1994. 9)됨에 따라 동 공단을 讓渡稅 減免(50%)대상 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에 追加하였다.

○ 社會間接資本施設에 대한 民間投資를 促進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시행자

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등을 양도할 경우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공장설립에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공장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제29조)에 의하여 설립된 아파트형공장을 입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거나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취득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공장을 地方 中小企業者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所得에 대해서도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나. 長期賃貸住宅에 대한 讓渡所得稅 減免(조감법 §6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建設賃貸住宅 : 100% (5년 이상 임대) ○ 買入賃貸住宅 – 5년 이상 임대 : 50% – 10년 이상 임대 : 100%	○ 건설임대주택 : 100% ○ 매입임대주택 – 신규주택매입임대 : 100% (5년 이상 임대시) – 기존주택매입임대 : (현행과 같음) ┌ 5년 이상 임대 : 50% ┐ └ 10년 이상 임대 : 100% ┘

(2) 改正理由

○ 임대주택공급에 대한 公共部門과 民間部門의 役割分擔을 통하여 임대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주택매입임대에 대하여도 건설임대주택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면제토록 하였다.

다. 農協 등의 流通子會社에 대한 特別附加稅 등의 減免(조감법 §7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신 설〉	○ 농협중앙회 등이 유통자회사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2) 改正理由

○ 농산물유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되는 流通子會社를 支援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등이 유통자회사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면제토록 하였다.

라. 自耕農民의 범위에 直系卑屬의 配偶者 追加(조감법 §5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1991. 12. 31현재 농지·초지·산림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 讓渡所得稅 免除 ○ 面積限度 – 농 지 : 9천평 – 초 지 : 4만5천평 – 산림지 : 9만평	○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2) 改正理由

○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양도받아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양도세 면제대상 자경농민의 범위에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였다.

마. 自營漁民의 漁船·漁業權에 대한 贈與稅 免除(조감법 §5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1991. 12. 31현재 농지·초지 및 산림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에게 199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 贈與稅 免除 〈面積限度〉 – 농 지 : 9천평 – 초 지 : 4만5천평 – 산림지 : 9만평	○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추가 ○ 자영어민의 어선·어업권을 증여세 면제대상에 추가 〈適用對象〉 – 20톤 미만의 어선 – 3만평(10ha) 이내의 어장에 대한 어업권

(2) 改正理由

○ 農民과의 課稅衡平을 감안 증여세면제대상에 자경농민인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자영어민의 어선·어업권을 追加하였다.

바. 8년 이상 自耕農地에 대한 讓渡所得稅 減免 綜合限度改善(조감법 §11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8年 以上 自耕農地 讓渡時 양도소득세 감면 綜合限度額은 1億원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종합한도액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농민이 8년 이상 自耕農地讓渡時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減免을 받을 수 없어 생계대책 마련 등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1994년 양도분부터 1995년 12월 양도분까지는 1993년 이전과 같이 종합한도의 적용없이 전액면제하도록 하고, 1996년 1월이후는 3억원 한도내에서 免除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1994. 1. 1~1995.12.31까지는 감면 綜合限度없이 全額免除한다.

7. 納稅便宜 提高 및 其他 補完事項

가. 附加價値稅 零稅率 적용대상에 畜產機資材 추가(조감법 §9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농·림·어업용 기자재를 농·어민에게 공급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農業用 : 비료·농약 및 경운기 등 48종 — 漁業用 : 어망·부자 등 15종 — 林業用 : 동력기계톱, 동력천공기 등 6종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축산기자재 추가

(2) 改正理由

○ 농·임·어업용 기자재와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에 畜產機資材를 추가하고

○ 제조업자가 축협중앙회 및 조합(면세사업자)에 공급시 과세할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로 영세율효과(완전면세)가 아닌 면세효과(부분면세)가 나타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畜協中央會 및 組合을 통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도 零稅率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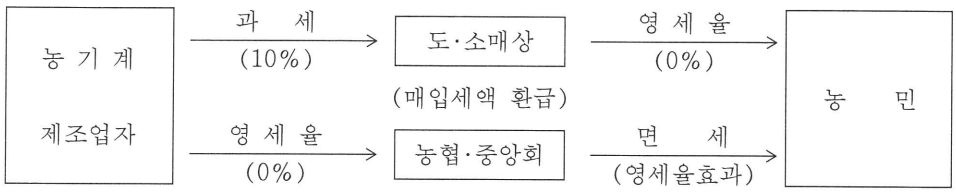

〈참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4)

1. 육추기	26. 착유기
2. 양계용케이지	27. 예냉기
3. 자동급이기	28. 우유통
4. 습식급이기	29. 우유냉각기
5. 부단급이기	30. 우유저장탱크
6. 자동급수기	31. 사료배합기
7. 니플	32. TMR배합기
8. 부리절단기	33. 사료절단기
9. 포유기	34. 싸이로
10. 양돈케이지	35. 교반기
11. 거세기	36. 사료저장탱크
12. 보정기(틀)	37. 축산분뇨제거기
13. 이표기	38. 축산용정화조
14. 꼬리절단기	39. 축산분뇨교반기
15. 유방세척기	40. 축산용분뇨펌프
16. 임신진단기	41. 축산분뇨고액분리기
17. 음수투약기	42. 축산분뇨건조기
18. 목책기	43. 축산분뇨발효건조기
19. 제각기	44. 축산분뇨살포기
20. 집란기	45. 축산분뇨저장탱크
21. 선란기	46. 축산분뇨포장기
22. 세란기	47. 산란상
23. 계란포장기	48. 난좌
24. 집란벨트	49.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25. 부화기	50. 사료통

나. 再活用 廢資源 看做買入稅額 控除制度 改善(조감법 §10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가계 등 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철·폐지 등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가공 또는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해 — 取得價額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간주하여 納付稅額에서 控除	○ 과세사업자가 부녀회·노인회 등 과세특례자로부터 고철·폐지 등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공제 허용

(2) 改正理由

○ 再活用廢資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폐자원 등의 買入價額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왔으나 재활용폐자원은 노인회·부녀회 등 대부분 과세특례자가 수집하여 일반과세자인 제조업자나 중간도매업자에게 공급하는 현실을 감안 앞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여 폐자원재활용촉진을 도모하였다.

〈從前 看做買入稅額 控除制度〉

— 유통과정의 중간단계 면세로 인한 이중과세(Tax on Tax)문제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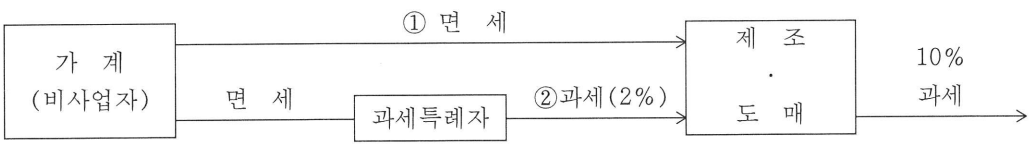

①: 제조업자가 일반가계로부터 구입시 구입가격의 11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공제

②: 과세특례자로부터 구입시 간주매입세액 공제불가

다. 個人企業의 法人轉換時 減免稅額에 대한 事後管理要件 완화(조감법 §12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조감법상 直接減免方法(세액공제·세액감면·소득공제)에 의해 조세감면을 받은 개인기업은 감면세액상당액을 『5년 이내에	○ 개인기업이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에 대한 사용의무기간 중에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하여 法人企業으로 전환하는

從 前	改 正
固定資產에 投資하거나 2년 이내에 長期借入金償還』에 사용의무화 ○ 의무불이행시 이자상당액(연 14.6%)을 가산하여 감면세액 추징	경우 미사용액에 대한 사용의무를 법인기업으로 승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조세감면을 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 상당액을 일정기간내에 固定資產에 投資하거나 長期借入金 償還에 使用하지 아니하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 왔으나, 개인기업이 법인기업으로 전환시 당해 폐업연도에 미사용분에 대한 사용의무를 일시에 이행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 앞으로는 감면세액 미사용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라. 國際金融去來에 따른 利子所得 등에 대한 法人稅 등 免除制度 改善(조감법 §94 ①2호)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外國換銀行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外貨債務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 대상에 외국환업무 지정기관 추가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外國換業務 指定機關이 외국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외화채무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 왔으나 外國換銀行과의 형평을 감안 免除토록 하였다.

8. 讓渡稅 關聯

가. 農漁村 支援

(1) 8年 以上 自耕農地 非課稅時 讓渡日 判定基準 補完(租減施行令 §54)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8年 以上 自耕農地는 讓渡日 현재의 農地인 경우에 한하며 — 이 경우 讓渡日은 대금청산일이 원칙	○ 讓渡日을 基準으로 판정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되, — 賣買契約 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용도변경시에는 讓渡契約日을 基準으로 판정

(나) 改正理由

○ 양도일 현재 농지를 판정함에 있어 農地 讓渡契約後 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토지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로 보아 양도계약일을 기준으로 농지여부를 판정하도록 하였다.

(2) 8年 以上 自耕農地에 대한 減免限度 調整(租減法 §119)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8年 以上 自耕農地 讓渡時 讓渡所得稅 등 면제 — 減免限度 • 個人 : 課稅期間別 減免稅額 1億 • 法人 : 特別附加稅 算出稅額 $\frac{50}{100}$, 그 金額이 1億 以下인 경우 1億	○ 個人 — 1994.1.1 이후 1995.12.31까지의 양도분 • 減免限度 : 없음 — 1996.1.1 이후 양도분 • 減免限度 : 3億 ○ 法人(從前과 같음)

(나) 改正理由

○ 8年 以上 自耕農地의 경우 오랜기간동안 讓渡所得稅 非課稅制度로 터잡아 왔기 때문에 1993.12 所得稅法上 非課稅規定을 租減法에 이관규정하면서 減免限度를 1억원으로 축소함에 따라 讓渡所得稅가 과세되는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一定期間(1994.1.1～1995.12.31) 讓渡所得稅를 한도없이 전액면제하되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3억원을 한도로 감면되도록 하였고,

— 또한, UR타결이후 농민의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고 農地讓渡後 농민의 자립기반마련이 용이하도록 稅制支援을 擴大하였다.

(3) 都·農 統合에 따른 補完(租減施行令, §54)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市地域 以上의 都市計劃區域內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지난 農地는 양도세 감면 배제 — 8년 自耕農地 — 農地 交換·分合	○ 都·農 복합형 시의 邑·面地域內 農地는 적용배제

(나) 改正理由

○ 都·農複合型 市의 읍·면지역을 일반 市地域과 같이 볼 경우 都·農統合으로 지역주민이 불리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 都·農複合型 市의 農地에 대하여는 從前 行政區域을 기준으로 讓渡稅가 減免되도록 하였다.

* 都·農複合型 市 現況(1994. 7)

— 33個 市와 32個 郡을 통합하여 53個 都·農複合型 市 설치

나. 기타 보완사항

(1) SOC民資誘致 支援(租減法 §64)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社會間接資本 施設에 대한 民間資本 유치촉진법」상의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 양도시 特別附加稅 50% 감면

(나) 改正理由

○ SOC 민자유치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공업단지의 事業施行者가 조성한 土地 양도시 양도세 감면(50%) 水準으로 支援이 되도록 하였다.

— 민자유치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의 事業施行者 지정을 받아 민자유치사

업을 시행하는 법인

— 민자유치사업 및 부대사업

○ 민자유치사업 : 도로·철도·항만·공항·댐·수도·폐기물처리 및 電氣通信施設

○ 부대사업 : 택지개발, 재개발, 공업단지개발, 터미널 등

(2) 讓渡稅 減免申請要件 補完(租減施行令 §62, §63)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으로 양도시 매입자가 감면신청기간내 감면신청하지 않는 경우 양도세 감면배제 〈申請期限〉 — 토지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適用對象〉 — 국민주택건설용지, 사원용임대주택 건설용지 및 기숙사건설용지를 양도시 — 제주도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시 * 공장지방이전 등의 경우에는 양도자가 다음의 기한내 감면신청 — 신고기한경과후 1년 또는 정부가 세액을 결정하기 전	○ 감면신청기한을 양도자가 감면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연장 — 신고기한 경과후 1년내 또는 — 정부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하기 전

(나) 改正理由

○ 國民住宅 建設用地 등으로 양도시 감면사유에 해당되면서도 사업시행자가 減免申請을 기한내에 하지 못하여 土地讓渡者가 감면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도자의 경우와 같이 감면신청기한을 연장하였다.

(3) '97 茂朱·全州 冬季 유니버시아드大會 支援(租減法 §76)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97유니버시아드大會 組織委」가 大會開催를 위해 사용한 土地를 讓渡時 特別附加稅 면제

(나) 改正理由

○ '97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Olympic大會組織委·EXPO 組織委와 동일한 수준으로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 支援事例

— 서울올림픽 組織委·아시아 競技大會 組織委 遂行을 위해 사용될 共同住宅 讓渡時 特別附加稅 면제(1987. 1～1989. 12)

— EXPO 組織委가 大會 開催를 위해 사용된 土地 讓渡時 特別附加稅 免除(1992. 1～)

(4) 賃貸住宅에 대한 讓渡稅 감면(租減法 §67)

(가)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賃貸住宅에 대한 讓渡稅 減免	
— 適用對象規模 : 國民住宅規模(25.7坪) 이하	— 適用對象規模 : (從前과 동일)
— 讓渡稅 減免	— 讓渡稅 減免
· 建設賃貸住宅 : 5年 以上 賃貸時 100% 免除	· 建設賃貸住宅(從前과 동일)
· 買入賃貸住宅	· 買入賃貸住宅
┌ 5年 以上 賃貸時 : 50% 減免	┌ 新規住宅買入賃貸 : 5年 以上 賃貸時 讓渡稅 100% 免除
└ 10年 以上 賃貸時 : 100% 免除	└ 旣存住宅 買入賃貸 : (從前과 동일)

(나) 改正理由

○ 1994. 8. 19 行政刷新委員會에서 審議·議決된 사항으로 「新規建設住宅의 買入賃貸」는 「建設賃貸」와 事業實質內容이 동일하고 小規模 事業者가 建設事業에 참여하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신규건설주택의 매입임대의 경우에도 건설임대수준으로 세제지원이 되도록 하였다.

9. 附加價値稅 關聯

가. **農產機資材에 대한 附加價値稅 零稅率 適用**(農·畜產·林業用 機資材 零稅率特例規程 第3條, 施行規則 第2條의2, 別表 4)(7.의 가.참고)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농·임·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 附加價値稅 零稅率을 適用	○ 축산기자재를 추가 — 零稅率 對象品目 : 착유기·우유냉각기 등 50종

(2) 改正理由

○ 現在 零稅率을 적용받고 있는 농·임·어업용기자재와의 산업별 형평성을 도모하고 축산농민에 대한 稅制支援을 통해 UR개방에 따른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나. 零稅率이 適用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추가(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零稅率特例規程 施行規則 第2條, 別表 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零稅率 適用對象品目 — 農業用 ┌ 대분류 : 경운기, 부속작업기 등 50종 └ 소분류 : 113종(부속작업기를 세분류한 것임) — 어업용 : 로프, 20톤 미만 어선 등 15종	○ 零稅率 適用對象品目 追加 — 農業用 • 경운기용 부속작업기 6종 • 트랙터용 부속작업기 9종 • 관리기 등 부속작업기 2종 — 漁業用 • 연안어업용로프

(2) 改正理由

○ UR타결에 따른 農·漁業競爭力 확보차원에서 경운기·트랙터 등 현재 零稅率이 適用되고 있는 農業用機資材의 부속작업기로서 신규로 개발된 품목을 추가하고,

○ 종전에는 내수면어업용 로프에 대하여 零稅率을 적용하고 있던 것을 연근해 어선어업용 로프에 대하여도 零稅率適用을 추가하여 농·어민의 稅負擔을 경감하였다.

1995년

◉ 법　　률 : 법　　률 제 4952호(1995. 8. 4. 공포)
　　법　　률 제 5038호(1995.12.29. 공포)
◉ 시 행 령 : 대통령령 제14802호(1995.11.18. 공포)
　　대통령령 제14869호(1995.12.30. 공포)
◉ 시행규칙 : 총 리 령 제 535호(1995.12.30. 공포)
　　총 리 령 제 551호(1996. 3. 9. 공포)

〈要　約〉

○ 産業의 競爭力強化 지원
　— 자본재산업 육성 지원
　— 知識서비스産業 및 물류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
　— 中小企業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
　— 技術人力開發投資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광업투자준비금 적용시한 연장
　— 기타 미비점 보완
○ 農漁民에 대한 支援 擴大
　— 부업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 零稅率適用
　— 農業會社法人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營業組合法人 등에 대한 감면 확대
　— 농어민의 융자서류에 대한 印紙稅免除 상향조정
○ 國民生活安定을 위한 지원 확대
　— 分離課稅되는 가계생활자금저축 신설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주택 취득시 세액공제대상 확대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자 확대 등
　— 회사택시에 대한 附加價値稅 경감
○ 기타 稅制支援 확대 내용
　— 부산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한 지원
　—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 금융기관간 합병관련 지원제도 보완
　— 공급법인의 범위확대 등
　— 軍PX 면세물품 조정
　— 分離課稅對象 복권당첨소득의 범위

〈改正內容〉

지난해 전체 세제개편의 기본방향은 최근 2년간 금융실명제의 실시, WTO체제 출범 등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세제를 큰 폭으로 개편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그간의 정책변화에 따라 꼭 필요한 부분적인 사항만을 개정하려는 것이었다. 조세감면규제법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농어민 지원 및 국민생활의 안정 등을 위해 불가피한 일부 지원제도를 신설, 보완하는 수준에서 2차례에 걸쳐 개정하였는 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産業의 競爭力強化 支援

가. 資本財産業의 育成支援

1) 資本財産業의 技術開發支援(法 §8·§121, 令 §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技術開發準備金 積立限度 — 일반산업 : 수입금액의 3% — 기술집약산업 : 수입금액의 4% 〈新 設〉 ○ 당해 課稅年度에 납부할 稅額이 없거나 最低限稅의 적용으로 控除받지 못한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는 5년간 移越하여 控除	○ 資本財産業의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上向調整 — 資本財産業 : 수입금액의 5% ○ 資本財産業에 대하여는 移越控除期間을 7年으로 延長

(2) 改正理由

1995. 5. 10 발표된 자본재산업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자본재산업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였는 바, 이는 대일무역적자의 주요원인이 자본재의 수입급증으로 인한 것인 만큼 국내 자본재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에서이다.

(가) 자본재산업의 범위

생산에 투입되는 기계류·소재와 기계류에 필요한 부품을 생산하는 산업 중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분야로 하되, 이미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품목(메모리, 반도체 등), 기술수준이 낮고 노동집약적인 품목(고무제품, 자전거 등), 생산재로서의 성격이 적은 품목(시멘트, 가정용기구 등), 별도정책에

의한 육성이 요구되는 품목(무기류 등) 등은 제외하였다. 따라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되는 세세분류기준 585개업종 중 174개업종을 지원대상이 되는 자본재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나) 자본재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내용

① 기술개발준비금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기업이 기술개발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일반산업은 수입금액의 3%, 기술집약적산업(기계, 전자, 전기, 항공, 방위, 정밀화학, 신소재, 생물산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석유화학·정제, 엔지니어링사업)은 수입금액의 4%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토록 하던 것을 자본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수입금액의 5%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상향조정하였다.

②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종전에는 당해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은 5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었으나 자본재산업 영위기업에 대해서는 이월공제기간을 7년으로 연장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가) 기술개발준비금 적립한도 상향조정은 1995. 8. 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나)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기간 연장은 1995. 8. 4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참 고〉 **資本財産業의 範圍**(令 별표1의 2)

區分(韓國標準産業分類)	適用範圍(機械類·部品·素材)
1. 섬유제품 제조업(17)	펠트 및 부직포,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적층 및 도포직물, 공업용 섬유제품, 콘베이어벨트(섬유제), 제지용 직물 및 펠트, 벨팅(섬유제), 전동용 벨트, 섬유제 심지 및 여과포
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21)	전기절연 가공지
3.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24)	가. 기초화합물(산업용 가스, 석탄화학물, 검 및 나무화학물, 비료 및 질소화합물과 합성고무를 제외한다) 나. 의료 화합물, 생물학적제제, 사진용 화학물 및 감광재료,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4299) 해당 화학제품

區分(韓國標準産業分類)	適用範圍(機械類·部品·素材)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5)	가.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나. 산업용 강화 플라스틱 성형제품, 산업용 플라스틱 일반성형제품
5.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26)	가. 유리섬유·유리사,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광학유리 생지 나. 이화학 및 기타 산업용 도자기, 전기 및 전자용 도자기, 연마재, 탄소섬유
6. 제1차 금속산업(27)	가. 합금철강, 스텐레스강·합금강·고탄소강, 열간압연·압출 및 인발제품 나. 비철금속 제1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루미늄·연의 제2차 제련 및 정련제품, 동·알루미늄 압연 및 압출제품 다. 철강 주물, 비철금속 주물
7. 조립금속제품 제조업(28)	가. 금속조립 구조재, 설치용 금속탱크 및 가공저장용기, 핵 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나. 기계장비 부품(금속단조,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 금속처리제품(도금·용접·열처리제품에 한한다), 호환성 공구,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금속 스프링, 선박의 추진기와 이들의 블레이드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 및 장비 제조업(29)	가. 일반 목적용 기계 나. 특수 목적용 기계(무기 및 총포탄을 제외한다)
9. 사무, 계산 및 회계용 기계 제조업(30)	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나. 복사기
1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31)	가. 전동기·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나. 전기공급 및 제어장치 다. 절연선 및 케이블 라. 축전지 및 일차전지 마. 전구 및 조명장치(광고용 램프 및 유사 조명장치를 제외한다) 바.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기장비 제조업(319) 해당 전기장비
11.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32)	가. 전자부품(광전관·방전관 외의 전자관과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한다) 나. 통신기기 및 방송장비(통신 단말기류를 제외한다)
12.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33)	가. 의료, 측정, 시험 및 기타 정밀기기(의료용가구, 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외한다) 나. 광섬유 및 광학요소, 광학 현미경, 촬영기 및 영사기, 사진현상용 기기, 액정디바이스 다. 시계부품
1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34)	가. 자동차용 엔진 나. 차체 다. 자동차 부품
14.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35)	가. 선박 구성 부분품 나. 기관차 및 철도차량, 철도차량 부품 다. 항공기용 엔진, 항공기 부품 및 보조장치 라. 이륜자동차 부분품

2) 中小資本財産業 從事 現場技術人力에 대한 所得稅 減免(法 §15의2, 令 §13의2, 規則 §8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자본재산업영위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해 근무연한에 따라 근로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 — 3년 이상 7년 미만 : 급여액의 10% 공제 — 7년 이상 12년 미만 : 급여액의 20% 공제 — 12년 이상 : 급여액의 30% 공제

(2) 改正理由

○ 자본재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으나 중소 자본재기업의 경우 현장기술인력의 이직현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 중소 자본재기업의 현장기술인력의 이직을 막고 이들의 장기근무를 유도함으로써 자본재기업의 기술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세제지원방안을 마련하였다.

○ 개정내용은 중소 자본재기업에 근무하는 현장기술인력에 대해 당해 기업에 3년 이상 7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액의 10%를, 7년 이상 12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액의 20%를, 1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급여액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 한편,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근무기간 계산방법, 신청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개) 현장기술인력의 범위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현장기술인력은 자본재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전담부서에 근무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기술계 : 기술사, 기사1급, 기사2급, 기능계 : 기능장, 기능사1급, 기능사2급, 기능사보) 소지자와 기술자격이 없는 자 중에서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노동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한편, 노동부장관이 1996. 1. 5 고시한 현장기술인력의 범위는 ①기업의 연구개발부서 전담요원 및 연구보조원(연구보조원은 당해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함)과 산업기술연구조합의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전담요원 ②공업계 또는 공학계분야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로서 당해 기업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③공고졸업자 또는 직업훈련과정 1년 이상 이수자로서 당해 기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④당해 기업에서 7년 이상 근무한 생산직 근로자(단순 노무자는 제외)로서 직업훈련기관장이 기술 또는 능력이 있다고 확인한 자로서 그 확인방법은 ①의 경우 과학기술처장관이 교부하는 인정서에 의하며, ②·③의 경우 당해 근로자가 제출한 교육기관 및 훈련기관의 졸업증명서 또는 이수증명서에 의해 사업주가 확인하며, ④의 경우 사업주가 당해 사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산하 직업훈련기관장에게 제출한 현장기술인력확인신청서에 의해 직업훈련기관장이 심사후 확인날인한 확인서에 의한다.

㈏ 자본재와 기타재 겸영시 적용방법

한 기업이 자본재를 생산하는 공장과 기타재를 생산하는 공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단위로 구분하여 자본재를 생산하는 공장에 근무하는 기술인력에 대하여만 소득공제를 적용하며, 한 공장에서 자본재와 기타재를 같이 생산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근무기간 계산방법

근무기간은 법인간의 합병,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사업의 포괄양수도시 소멸기업의 근무기간을 통산하되, 휴직기간과 공장·연구전담부서 외의 장소에서 근무한 기간은 제외하여 계산한다.

㈑ 신청절차

소득공제 대상요건이 충족된 근로자가 당해 소득공제가 처음 적용되는 월의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공제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근로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나. 知識서비스産業 및 物流産業에 대한 支援擴大(法 §6·§7, 令 §6·§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 제조업, 광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영위 중소기업	○ 대상추가 — 연구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
○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대상 —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영위 중소기업	○ 대상추가 —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조세지원제도를 주로 제조업위주로 하여 왔으나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에 필수적인 첨단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의 육성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들 산업에 대하여도 제조업과 동등한 수준으로 세제지원을 확대하였다.

(1)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5년간 납부할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제도를 종전에는 제조업, 광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것을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2) 매년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20%를 특별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대상을 종전에는 제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물류산업에 대하여도 적용되도록 하였다.

다만, 특별세액감면제도는 1992년, 1993년 한시적으로 도입, 시행되다가 1994년 영세 중소제조업체를 위한 항구적인 특별세액감면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장능력이 부족하거나 세무지식이 적어 조감법상 세액공제, 소득공제, 준비금, 특별상각 등 각종 지원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영세기업에 실질적인 감면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에서 타감면을 받지 않는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 추가되는 업종의 경우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과세연도와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있어서 조감법상 여타의 소득공제, 세액공제, 특별감가상각비, 준비금 손금산입을 적용받지 아니한 중소기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3) 그 외에도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감면, 사업전환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의 대상이 되는 업종의 범위에 있어서도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을 추가하였는 바, 양도소득세 관련사항은 양도소득세 관련 개정내용 해설에서 별도로 설명하고, 기술개발준비금 및 세액공제 등의 관련사항은 해당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부가통신업

전기통신회선에 컴퓨터 등을 결합시켜 통신망을 구성하여 단말기 등을 통해 각종 정보를 송·수신하는 산업으로 정보전송, 데이타전송서비스, 정보통신망, 컴퓨터네트워크, 전자사서함, 우편서비스 등의 사업

② 연구 및 개발업

기초연구, 응용연구, 실험개발 등을 행하는 산업으로 물리 및 화학연구, 생명과학·농학 및 수의학, 의학 및 약학, 공학 및 기술, 인문 및 사회과학연구 등의 사업

③ 방송업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방송프로그램제작업(방송활동과 결합되지 않고 유·무선 방송용 프로그램만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산업활동)

④ 엔지니어링사업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시설물에 관한 기획, 타당성분석, 설계·시험, 평가, 감리, 검사, 자문 등을 하는 산업으로 토목공학, 설계관련 서비스, 산업시스템, 기계·전기·전자·환경관련엔지니어링, 비파괴검사업, 환경측정·평가 등의 사업

⑤ 물류산업

물자의 흐름과 관련한 산업인 화물운송업(물자의 운송과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화물을 운송장비에 적재 또는 하역하는 활동으로 항공·육상 및 수상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각종 물품의 저장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보통창고업, 냉장창고업, 위험물품보관업, 농산물창고업, 기타 보관 및 창고업), 화물 터미널시설운영업(화물의 적하를 위하여 자동차 정류장시설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으로 철도화물터미날, 화물자동차터미날, 해상터미날, 항공터미날),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 화물포장, 검수 및 유사대리업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1996. 1. 1 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규정은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되 1995.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타 감면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다. 中小企業에 대한 稅制支援 強化

1) 中小企業 判定基準 補完(令 §2, 規則 §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중소기업 판정기준	
— 업종기준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폐기물처리업	— 물류산업에 해당되는 운수관련서비스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자동차정비업(1급, 2급) 추가
— 종업원수기준	
•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는 제외	—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도 제외
— 자산총액기준	
〈新 設〉	— 소유·경영 독립요건 신설
○ 겸업법인의 주된 사업판정	
— 사업별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 자산가액이 큰 사업	— 제조업과 비제조업(무역업 제외) 겸영시는 사업별수입금액 기준만 적용
○ 중소기업 의제사유	
— 규모의 확대, 중소기업간 합병, 사업전환, 법인전환, 협동화사업, 계열화 등	— 대기업 또는 의제중소기업과의 합병, 창업후 1년내 기준초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인정

(2) 改正理由

○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 등에 대한 지원 확대취지에서 조감법상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 7. 1 시행)에 따른 조감법과 중소기업기본법간 중소기업판정기준의 차이점을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하였다.

(개) 중소기업 판정기준 중 업종기준 확대

①종전 운수업에는 여객·화물운송업(항만하역업 포함)만 해당되고 여타

운수관련 서비스업이 제외되었으나 물류산업에 해당되는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②수산업을 어업으로 하여 한국표준 산업분류와 일치시켰으며 ③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자동차정비업(1급, 2급)을 추가하였다.

㈏ 종업원수기준 산정방법 보완

종전에는 당해기업에 계속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매월말일 현재의 인원을 기준으로 하되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만 제외하였으나 중소기업의 연구기술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도 제외하도록 하였다.

㈐ 소유·경영 독립요건 신설

종전의 업종기준, 종업원수기준, 자산총액기준 외에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내용과 일치시켜 소유·경영독립요건을 신설하여 30대 기업집단소속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한편,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상 소유·경영 독립요건에 맞지 않는 기업을 통상산업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현재 193개 기업이 고시되어 있다.(통상산업부 고시 1995-85호 1995. 9. 1 및 추가고시 1995-90호, 1995. 9. 14)

㈑ 겸업법인 판정기준

종전에는 겸업법인의 경우 주된사업의 판정을 사업별 수입금액 또는 유형고정자산금액이 큰 사업으로 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 개정내용과 일치시켜 제조업과 비제조업(무역업 제외) 겸영시는 사업별 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별 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도록 보완하였다.

㈒ 중소기업으로 의제되는 사유

종전에는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2년간 중소기업으로 의제하는 사유를 규모의 확대, 중소기업간의 합병, 사업전환, 법인전환, 협동화사업, 계열화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사유에 한정하여 적용하였으나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내용과 일치시켜 대기업과의 합병, 의제중소기업과의 합병, 창업후 1년내 기준초과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2년간 중소기업으로 보도록 종전의 Positive방식에서 Negative방식으로 전환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事業轉換 中小企業 稅額減免 適用對象 擴大(法 §34, 令 § 3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사업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 대상 : 제조업, 광업에서 다른 제조업,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 — 業種轉換 : 사업전환승인일부터 2년 내 종전업종을 폐지,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 — 업종추가 : 사업전환승인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70% 이상 점유	— 5년 이상 동일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로서 제조업,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한 중소기업 — 업종전환시 • 전환사업 개시시 : 2년 내 종전업종 폐지, 양도 • 종전업종 폐지, 양도시 : 1년(공장신설시 3년)내 새로운 업종 사업 개시 — 업종추가시 : 신규업종추가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내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70% 이상 점유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다른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로서 사업전환승인일부터 2년 내에 종전업종을 폐지,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업종전환)하거나, 사업전환승인일 다음 과세연도부터 3년 내에 기존업종을 축소하고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70% 이상 점유(업종추가)하는 경우에는 업종전환시에는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업종추가시 최초 3년간 50%감면, 그후 2년간 30% 감면하여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신설된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서는 사업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업전환승인제도가 폐지되는 등 동 법률에 의하는 경우 조감법상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한편,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적용대상을 대폭 확대하였다.

(가) 감면대상 업종전환의 범위확대

종전에는 제조업 또는 광업에서 다른 제조업, 광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만 감면대상이 되었으나, 업종제한없이 5년 이상 동일사업을 계속한 중소사업자(조감법이 아닌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가 제조업 또는 광업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나) 감면대상 요건

사업전환승인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준일을 종전의 사업전환승인일에서 ①업종전환시에는 전환사업을 먼저 개시한 경우 2년 내에 종전업종을 폐지, 양도하여야 하고, 종전업종을 먼저 폐지, 양도한 경우 1년 내에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공장신설시는 3년 내)하여야 하며 ②업종추가시에는 신규업종추가일을 기준으로 하여 신규업종 추가일부터 3년 내에 종전업종의 규모를 축소하고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70% 이상을 점유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가) 1996. 1. 1 이후 최초로 종전의 업종을 양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추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다만, 1995. 12. 31 이전에 사업전환승인을 받아 사업을 전환하였거나 전환중인 중소기업은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3) 創業中小企業減免 對象이 되는 農漁村地域 範圍 擴大 等(法 §6, 令 §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 – 농어촌지역 • 농어촌특별조치법상 농어촌 지역에서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별표2	○ 중소기업창업지원법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 • 현행과 같음 • 조세감면규제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0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제1항에 규정되었던 농어촌지역의 범위와 동법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되었던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하여 적용하여 왔으나, 동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5. 7. 1 시행)으로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가 삭제됨에 따라 조세감면규제법에서 별도로 농어촌지역 및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일부 내용을 보완하였다.

(가)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종전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서는 농어촌지역을 농어촌특별조치법상 농어촌지역(군지역 전부, 시지역 중 녹지구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조감법에서 농어촌지역의 범위를 별도로 규정하면서 농어촌특별조치법상 농어촌지역에서 조감법상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종전에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동두천시, 송탄시, 평택시, 연천군, 파주군, 강화군, 옹진군, 안성군, 가평군, 양평군, 여주군, 이천군, 광주군 등이 새로이 감면대상지역에 추가되었다.

참고로 조감법상 수도권지역(영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인천 주물공단, 남동공단 제외),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부천시, 안양시, 광명시, 안산시, 과천시, 구리시, 오산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하남시, 남양주시, 고양시, 양주군(주내면, 백석면, 장흥면), 포천군 소흘면, 용인군(기흥읍, 구성면, 수지면, 남사면), 화성군(태안읍, 반월면, 매송면, 봉담면, 정남면, 동탄면), 평택군(진위면, 서탄면), 김포군(김포읍, 고촌면, 검단면) 지역이다.

(나) 창업중소기업감면 대상이 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범위를 조감법시행령에서 별도로 신설(영 별표 10)하되, 내용은 종전과 동일하게 하였다.

참고로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의 범위는 ①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②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계열화품목의 사업 ③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신기술의 사업 및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이 고시한 국내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의 사업 ④실용신안법에 의하여 등록된 신규의 고안을 기업화하는 사업 ⑤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 ⑥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비영리법인의 연구기관 및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개발한 기술의 성과 또는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⑦조감

법 시행령 별표 2의 사업 ⑧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⑨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출자받은 창업자(당해 출자의 지분이 창업개시일부터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가 정하는 일정기간동안 당해 창업자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가 영위하는 사업 ⑩통상산업부장관이 기술개발촉진과 부품 및 소재의 수입대체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품목의 사업이 해당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4)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등에 대한 支援擴大(法 §1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中小企業創業投資會社 및 新技術事業金融會社에 대한 支援 — 창업중소기업 및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양도차익 법인세 비과세	
〈新 設〉	— 창업중소기업 등에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에 대해서도 법인세 비과세

(2) 改正理由

○ 종전에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창업중소기업 또는 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비과세함으로써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지원확충을 도모할 수 있도록 모험자본(Venture Capital)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배당소득 귀속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中小企業에 대한 여타 稅制支援制度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시 양도

소득세 감면, 사업전환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재래시장내 사업장이전시 양도소득세 감면, 금융부채상환시의 양도소득세 감면 등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를 대폭 확충하였는바, 이러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개정세법 해설에서 별도로 설명하기로 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인력개발지원 등 여타 내용은 관련부분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라. 技術人力開發投資에 대한 稅制支援 強化

1) 技術開發準備金 適用對象 擴大 등(令 §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技術開發準備金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산업 등 — 손금산입 : 수입금액의 3~5% ※ 기술집약산업(수입금액의 4%) • 정밀기계, 항공공업 등 • 유전자산업 : 의약품, 농약품, 식품 • 엔지니어링사업 : 산업시스템, 환경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 사용기준 :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3년 내 기술개발비로 사용	— 방송업, 물류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 추가 • 생물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화학물질 추가 • 토목, 기계, 전기·전자 및 통신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 비파괴검사업 추가 • 위탁기업체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 추가

(2) 改正理由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의 기술개발과 가스안전관리 등을 위한 가스관련업체의 기술개발투자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제도를 보완하였다.

(개) 수입금액의 3~5% 범위내에서 손비인정되는 기술개발준비금 설정대상업종의 범위를 종전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 부가통신업, 금융보험업, 연구 및 개발업, 무역업에 한정하여 적용하던 것을 방송업(종합유선방송업, 프로그램공급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물류산업, 가스제조 및 공급업에로 확대하였다.

참고로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가스제조 및 배관공급

업(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장에서 석탄가스, 수성가스, 발생로 가스, 혼합가스 및 기타 연료용 가스를 제조하는 산업활동과 제조한 가스 또는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 구입가스를 사용자에게 배관조직을 통하여 공급하는 산업활동)과 기타 가스제조 및 공급업(배관공급자 및 가스저장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와 가스관리사업 본사 및 지사, 영업소 등 가스관리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나) 수입금액의 4% 범위내에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는 기술집약산업의 범위와 관련하여 ①종전의 유전자산업은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한 산업에 한정된 개념인 바 그 대상을 확대하여 세포융합, 세포배양, 단백질공학, 생물공정 등 생물공학기술을 이용한 산업을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인 생물산업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바이오폴리머 등 화학물질을 추가하는 등 그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②엔지니어링사업과 관련하여 종전에는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업에 대하여만 적용하던 것을 기술개발의 육성이 시급한 분야인 토목, 기계, 전기, 전자, 통신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업과 비파괴검사업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다.

(다)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3년내에 기술개발비, 기술정보비, 연구시설 설치·구입비 등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3(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의 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토록 되어 있는 사용기준의 범위에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에 의해 위탁기업체가 수탁기업체협의회에 출연하는 기금을 추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참고로 수탁기업체협의회는 특정의 위탁기업체와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수탁기업체간의 협의회로서 위탁기업체와 대등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기술정보의 교환 및 공동기술개발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되, 수탁기업체협의회 출연금에 대해서는 1996.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對象 擴大 등(法 §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산업 등	— 방송업, 물류산업 추가
— 세액공제율	
• 지출액의 5%(중소기업 15%)와	—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지출액의 10%로 상향조정
• 증가지출분의 50% 중 선택	— 현행과 같음

(2) 改正理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지원하고 지식서비스산업 및 물류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를 보완하였다.

(가) 종전에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방위산업, 부가통신업, 금융보험업, 연구 및 개발업에 대해서만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던 것을 방송업과 물류산업을 추가하였다.

(나) 세액공제율은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5%(중소기업의 경우 15%) 또는 직전 2년간 지출한 기술인력개발비의 평균지출액 대비 증가 지출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선택하도록 하고 있는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지도비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지출액의 5%에서 10%로 상향조정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技術士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令 §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특별세액감면대상 등 각종 조세지원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	
—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사업	— 기술사법에 의한 개인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을 추가

(2) 改正理由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엔지니어링사업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 엔지니어링활동 주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것을 기술사법에 의한 개인기술사가 제공하는 엔지니어링활동도 그 역할이 동일한 바 엔지니어링사업의 범위에 추가하여 동등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마. 鑛業投資準備金 適用時限 延長(法 §9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광업투자준비금 — 적립한도 : 수입금액의 2%(해외자원개발사업 4%) — 적용시한 : 1995. 12. 31 — 익금환입 : 3년거치 3년분할환입 (탐광비지출시 강제상계)	— 적용시한 : 1997. 12. 31

2) 改正理由

○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광물탐광비 및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에 충당하기 위해 광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수입금액의 2%(해외자원개발사업에 있어서는 수입금액의 4%)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광업투자준비금제도가 1995.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광업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 적용시한을 2년간 한시적으로 연장하여 1997.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바. 其他 未備點 補完

1) 大都市圈의 範圍調整(영 별표 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대도시공장 지방이전시 稅制支援對象이 되는 대도시권의 범위 – 수도권 : 서울특별시, 경기 일부 –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직할시	–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광역시로 하되, 광역시에 편입된 군지역은 제외

(2) 改正理由

○ 1995. 3. 1부터 행정구역 개편으로 종전 군지역이던 강화군, 옹진군이 인천광역시로, 기장군이 부산광역시로, 달성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됨에 따라 대도시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광역시에 편입된 종전 군지역은 대도시권의 범위(시행령 별표 1)에서 제외하여 종전과 같이 대도시로 보지 않도록 보완하였다. 따라서, 이들 군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종전과 같이 지방이전준비금, 양도세 감면, 설비투자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2) 企業合理化積立金制度 補完(법 §12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조감법상 각종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 법인은 감면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 개인은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5년 내) 또는 장기차입금상환(2년 내)에 사용하여야 함.	–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 –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고정자산투자 등 사용의무 부여

(2) 改正理由

○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 직접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법인은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토록 하고 개인사업자는 동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투자나 장기차입금상환에 사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조세감면으로 인해 증가된 처분가능이익의 사외유출을 억제하고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1994. 7 농어촌특별세의 신설로 인해 조감법상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해야 되게 됨에 따라 그만큼 기업의 처분가능이익이 줄어들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차감한 감면세액 상당금액에 대해서만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 및 고정자산투자 등 사용의무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2. 29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3) 造船産業에 대한 補助金制度 改編(法 §16·§1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WTO보조금·상계관세협정상 금지 보조금 – 수출손실준비금 : 외화수입금액의 1%(선박 등 특례수출 2%) 한도 – 해외시장개척준비금 : 외화수입금액의 1%(선박 등 특례수출 2%, 고유상표수출 3%) 한도 – 익금환입 • 일반수출 : 2년거치 3년분할 • 특례수출 : 3년거치 3년분할	– 수출손실 준비금과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설정대상에서 선박건조 및 수리업 삭제

(2) 改正理由

○ 외화수입금액의 1~3%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조선산업에 대하여는 외화수입금액의 2~3% 범위내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등 특례수출로 인정하여 많은 지원을 하여 왔다. 한편, 수출보조금은 WTO보조금·상계관세협정(1995. 1. 1 발효)상 금지보조금으로 분류되고 동 보조금은 유예기간 내(선진국 3년, 개도국 8년)에 폐지토록 되어 있으나, OECD 다자간 조선협정에서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에 대한 금지보조금은 동 협정발효시(1996. 1. 1)까지 폐지토록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동 협정에 부합되도록 조선산업(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수출손실 준비금 및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설정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되, 기적립한 준비금의 익금환입 등에 대하여는 종전규정에 의한다.

4) 超高速情報通信網 建設事業 支援(영 §2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제도 — 대상법인 :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 — 손금산입 : 투자금액의 15% — 익금환입 : 3년거치 3년분할	— 대상법인에 한국전기통신공사 추가(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 한정)

(2) 改正理由

○ 도로, 항만시설, 신공항사업시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등에 대해서는 1996.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연도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금액의 15% 범위내에서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미래정보망시대를 대비한 범국가적 역점사업인 초고속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초고속정보통신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경우에도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5) 鐵道建設用品 등에 대한 關稅 및 輸入分 附加價値稅 減免(영 §100·§103·§11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관세경감 및 수입분 부가가치세 면제 — 도시철도건설용 물품 등	— 공공철도 및 고속철도건설용물품 추가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국내제작이 곤란한 도시철도건설용 물품의 수입에 대해 관세경감(85%) 및 수입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고속철도 및 공공철도건설용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경감 및 수입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고속철도 및 공공철도의 건설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農漁民에 대한 支援擴大

가. 副業畜産農家에 供給하는 配合飼料 零稅率適用(法 §9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10%)	○ 다음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 —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에 규정하는 축산 사육규모의 120% 범위내 축산농가

(2) 改正理由

○ WTO체제 출범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축산농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 별표 1의 농가부업규모축산 규모(젖소·소 30마리, 돼지 200마리, 산양·면양 300마리, 토끼 5,000마리, 닭·오리 10,000마리)의 120% 범위내의 축산농가에 판매하는 배합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가) 배합사료 영세율적용은 1995. 10.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되

(나) 농가부업규모 축산의 120% 범위내 탄력운영은 1996. 1. 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農業會社法人에 대한 稅制支援 強化(法 §5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위탁영농회사에 대한 감면 — 사업소득(농작업 대행소득)에 대해 최초 소득발생연도 및 그후 5년간 50% 감면	○ 농업회사법인으로 명칭변경 — 농지소득 : 100% 감면 — 기타소득 : 최초 소득발생연도 및 그후 5년간 50% 감면 — 재촌자경하는 농민의 농지 현물출자시 양도세 면제

(2) 改正理由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의 개정(1995. 6. 23 시행)으로 종전의 위탁영농회사가 농업회사법인으로 개편되고 농작업 대행뿐만 아니라 농지소유를 통한 직접영농이 가능해짐에 따라 직접영농에 의한 농지소득에 대하여는 영농조합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전액 면제하고, 농작업대행 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종전의 위탁영농회사 수준으로 최초 소득발생연도 및 그후 5년간 50% 감면토록 하였으며, 재촌자경하는 농민이 농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 營農組合法人에 대한 減免擴大(令 §5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감면 — 농지소득 : 100% — 기타소득 : 조합원수×500만원	 — 조합원수×1,200만원
○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감면 — 농지소득 발생분 : 100% — 기타소득 발생분 : 연간 500만원	 — 연간 1,200만원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①법인의 농지소득은 100%, 기타소득은 조합원 1인당 500만원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던 것을, 조합원 개인(농민)으로 농업경영시의 소득세법상 농가부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수준(1,200만원)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기타소득의 면제범위를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②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의 감면범위도 농지소득 발생분은 100%, 기타소득 발생분은 연간 500만원까지 비과세하던 것을 기타소득에 대하여도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영농조합의 육성을 지원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라. 農漁民의 融資書類에 대한 印紙稅 免除 上向調整(法 §11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농·수·축협 등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한도 — 융자금액 3,000만원	— 융자금액 5,000만원

(2) 改正理由

○ 농·수·축협 등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소비대차증서에 대해서는 융자금액기준 3,000만원 미만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5,000만원까지 면제토록 그 금액기준을 상향조정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3. 國民生活 安定을 위한 稅制支援

가. 分離課稅되는 家計生活資金貯蓄 新設(法 §81의 2, 令 §79의 2, 規則 §42의 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가계생활자금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10% 원천세율로 분리과세 — 입출금이 자유로운 저축일 것 — 1세대 1통장 — 불입한도(원금기준) : 1,200만원 — 신용카드 또는 가계수표의 결제가 가능한 계좌 ○ 1세대 1통장의 판정 — 동일세대 구성원이 통장을 2 이상 소유시는 저축계약 체결일이 가장 빠른 통장(계약체결일이 같은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통장) — 2세대 이상을 합침으로써 2 이상 통장 소유시는 사유발생일의 다음분기 말일까지 선택가능하며, 미선택시는 저축계약 체결일이 가장 빠른 통장

2) 改正理由

○ 1996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일상적인 소액생활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10%로 분리과세함으로써 가계생활자금 이용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였다.

(1) 家計生活資金貯蓄의 範圍

가계생활자금저축은 ① 1세대 1통장으로 불입한도(원금기준) 1,200만원 이내이며, 입출금이 자유롭고 신용카드 및 가계수표의 결제가 가능한 계좌라야 하며 ②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가계생활자금저축통장을 2 이상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통장)에 한하여 적용하되 ③혼인이나 세대의 합가 등 2세대 이상을 하나의 세대로 합침으로써 2 이상의 통장을 가지게 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동 기한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가장 먼저 저축계약을 체결한 통장에 대해 적용한다.

(2) 適用方法

상기 요건을 갖춘 기존 통장의 가입자는 1996. 3. 31 전에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를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1996. 1. 1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저축취급기관은 분기별로 저축계약 체결·해지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 1996. 1. 1 이후 최초로 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2) 1995. 12. 31 이전에 가입한 저축으로서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통장으로 거래하는 저축가입자가 1996. 3. 31 이전에 가계생활자금저축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1996. 1. 1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나. 無住宅從業員用 賃貸住宅 取得時 稅額控除對象 擴大(法 §88, 令 §8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무주택종업원용 임대목적 국민주택취득시 취득가액(토지 제외)의 10% 세액공제 대상 –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은 1호 이상) 취득	– 1회에 1호 이상 취득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무주택종업원용 임대목적 국민주택 취득시 1회에 5호 이상(중소기업의 경우는 1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가액(토지 제외)의 10%를 납부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던 것을 무주택종업원의 주거안정과 미분양아파트 해소로 인한 주택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없이 1회에 1호 이상 취득하는 경우 세액공제토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1. 1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長期住宅마련貯蓄의 加入對象者 擴大 등(法 §80, 令 §7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장기주택마련저축 – 이자소득세 : 비과세 – 소득공제(주택자금공제) : 저축불입액의 40%(연 72만원한도) – 가입대상 : 20세 이상 무주택자	○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 확대 – 만 18세 이상자로 인하, 전용면적 18평 이하 주택소유자 추가 ○ 5년 내 중도해지시 감면세액추징 규정 신설

2) 改正理由

○ 이자소득이 비과세되고 주택자금공제(1996. 1. 1부터 불입액의 40%, 연 72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마련주택의 가입대상을 만 20세 이상 무주택자에서 만 18세 이상으로서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규모주택 소유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개인연금저축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가입일로부터 5년 내 중도해지시는 저축불입액의 4%(소득공제율(40%)×소득세 최저세율(10%)=4%, 연 72,000원 한도)를 추징하되, 천재지변, 퇴직, 휴·폐업 등의 사유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추징 배제토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 가입대상확대는 1995. 11. 18 이후 최초로 가입분부터 적용하되

(2) 추징규정은 1996. 1. 1 이후 공제분부터 적용한다.

라. 會社택시에 대한 附加價値稅 免除(法 §15의 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회사택시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납부세액을 전액납부	○ 1997년까지 납부세액의 1/2을 경감

2) 改正理由

○ 지하철공사 등으로 인한 교통난 가중으로 택시운영이 어렵고, 택시기사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에 있음을 감안하여, 회사택시에 대하여는 서울지하철공사의 주요 공정이 마무리되는 1997. 12. 31까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2을 경감토록 하여 납부세액 경감분을 전액 운전기사 처우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8. 4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1997. 12. 31까지 종료하는 과세기간분까지 적용한다.

마. 未分讓住宅 購入者에 대한 住宅資金利子償還 稅額控除(法 §92의 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 상환이자에 대한 30% 세액공제 — 미분양주택 : 1995. 10. 31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확인주택 — 차입금 : 1995. 11. 1 이후 차입금

2) 改正理由

○ 미분양주택을 해소하여 주택건설업계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차입금 상환이자의 30%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1) 未分讓住宅의 範圍

미분양주택은 1995. 10. 31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미분양주택임을 확인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공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미분양주택도 포함하되, 서울지역 소재 주택은 제외된다.

(2) 適用對象 및 借入金의 範圍 등

무주택자(1주택자의 대체취득 포함)가 1995. 11. 1부터 1996. 12. 31까지의 기간중에 미분양주택을 취득(1996. 12. 31까지 계약금지급분 포함)하기 위해 1995. 11. 1 이후 국민주택기금 및 한국주택은행의 미분양주택 특별수요자금융으로 차입하는 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상환이자의 30%를 세액공제하며, 1주택 소유자는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한편, 사업자의 경우 동 세액공제액은 최저한세 대상에 해당된다.

(3) 稅額控除 排除

당해 미분양주택을 양도(매매계약 해지 포함)하거나 당해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2. 29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4. 其他 稅制支援 擴大內容

가. 釜山아시아競技大會에 대한 支援(法 §100·§103·§111·§11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조직위에 대해 — 공공법인에 추가 — 조직위에 지출하는 기부금 전액손비 인정 — 수입사업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비인정 — 경기대회 수행을 위해 사용한 토지양도시 특별부가세 면제 — 경기시설 제작, 건설 등에 사용하기 위한 물품수입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면제 및 관세경감 — 작성하는 서류에 대해 인지세 면제

2) 改正理由

○ 2002년 부산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97년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 공공법인은 1995. 12. 29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2) 기타 규정은 1996.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 수입, 과세문서작성, 지출분부터 적용

나. 文化藝術團體에 대한 支援擴大(法 §61, 令 §5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한도 — 일반 영리법인 : 이자전액과 기타 수익사업소득의 50% —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수익사업소득 전액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 추가

2) 改正理由

○ 예술·문화공간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소득에 한함), 지방문화원, 예술의전당을 추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 金融機關間 合併關聯 支援制度 補完(法 §40, 令 §37·§104, 規則 §20의 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법인합병에 따른 조세특례 – 대상 : 산업합리화관련 기업간의 합병 (주무부장관이 재정경제원장관과 협의) – 지원내용 •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면제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면제 • 합병으로 양수하는 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	–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의한 합병 명시

2) 改正理由

○ 금융기관의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상의 금융기관이 동법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에도 산업합리화관련 기업간의 합병과 동일하게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면제,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합병 양수재산에 대한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도록 보완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합병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라. 公共法人의 範圍擴大 등(法 별표 1, §6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공공법인	
— 136개법인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시설안전기술공단, 광주비엔날레,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대한민국헌정회 추가
— 법인세율	
• 과표 1억원 이하 18%	— 과표 1억원 이하 16%
• 과표 1억원 초과 25%	

2) 改正理由

(1) 공공법인의 범위에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주택신용보증기금,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시설안전기술공단,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 대한민국헌정회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대한민국헌정회를 추가하였다.

(2) 일반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1억원을 기준으로 16%, 28%로 각각 2%p씩 인하됨에 따라 공공법인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에 대하여 2%p 인하하여 공공법인의 활성화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3) 근로복지공사가 근로복지공단과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으로 조직이 이원화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재의료관리원에 출연하는 자산에 대해 전액 손비처리될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 공공법인 추가 및 근로복지공단의 출연재산 손비인정은 1995. 12. 29 이후 종료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하고

(2) 세율은 1996.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마. 軍PX 免稅物品 調整(法 §10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특별소비세 및 주세의 면세대상 물품 — 공기조절기, 텔레비전 등 내구소비재 8개 품목 — 사탕, 청량음료, 기호음료, 주류 등 4품목	 — 캠코더, 가스오븐렌지 추가 — 사탕은 제외

2) 改正理由

○ 특별소비세 및 주세 면세대상품목의 축소 및 세율인하로 군PX 면세 혜택이 줄어들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캠코더와 가스오븐렌지를 면세 대상으로 추가하고, 수요가 없는 사탕은 면세대상에서 제외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 1 이후 최초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바. 分離課稅對象 福券當籤所得의 範圍 調整(法 §8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25%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복권당첨소득 — 주택복권, 체육복권, EXPO복표, 기술개발복권, 근로복지복권 등	○ 20% 분리과세 — 지방자치복권, 제주도관광복권을 추가하고, EXPO복표 삭제

2) 改正理由

○ 복권당첨소득에 대해 분리과세하는 대상에 지방재정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방자치복권과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해 제주도가 발행하는 제주도관광복권(1995. 7. 1 발매)을 추가하고, 원천세율을 소득세법 개정에 맞추어 20%로 하향조정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1) 1995. 11. 18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하되

(2) 원천징수세율은 1996. 1. 1 이후 발생소득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사. 附加價値稅 買入稅額控除特例 廢資源의 範圍擴大(規則 §5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대상 폐자원의 범위 —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중고자동차, 폐비철금속류	—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추가

2) 改正理由

○ 고물상 등 자원재활용사업자가 폐자원을 수집, 판매하는 경우에 매입가액의 110분의 10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매입세액공제 특례대상 폐자원의 범위에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상 주요 재활용자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를 추가하여 재활용촉진을 유도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활용을 통한 사회적 편익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3.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아. 特別消費稅 등이 免除되는 農機械用 油類 範圍擴大(規則 별표 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다음 농업기계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면제 — 동력경운기, 트랙터, 바인더 등 37종	— 농선 추가

2) 改正理由

○ 동력경운기, 트렉터, 바인더 등 농업기계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하는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파로호 등 호수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농민이 농로 등의 미비로 농산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농선에 대하여도 농업기계의 범위에 추가하여 육로 운송수단인 경운기·농산물운반차와 동일 생활권에서 내수면어업을 영위하는 어민이 사용하는 내수면어업용 선박에 대한 면세유 공급과 형평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3. 1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자. 生產性向上施設 投資稅額控除對象 補完(令 §2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 대상 • 공정개선 및 자동화시설 • 첨단기술설비 • 내용연수가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기 위한 시설 — 세액공제 : 10%(외국산 3%)	— 신고내용연수(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 기준내용연수) 기준

2) 改正理由

○ 1994. 12 법인세법시행령 개정시 감가상각제도가 대폭 개편되었는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10%, 외산 3%) 적용대상 중 내용연수가 80% 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의 범위를 당해 법인이 신고한 신고내용연수를 기준으로 적용토록 하되, 신고내용연수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에 의하도록 보완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5. 1. 1 이후 취득한 자산을 개체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차. 增資所得控除 廢止(令 §8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증자소득공제 — 공제율 : 증자액의 8~10% — 적용시한 : 1995. 12. 31까지 증자금액	— 좌동(폐지)

2) 改正理由

○ 제조업, 정보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시 매년 증가된 자본금액의 8%(중소기업은 10%)를 24개월간 소득공제하는 증자소득공제제도가 당초취지와는 달리 효과는 없으면서 막대한 세수결함만 초래하게 되어 적용시한인 1995. 12. 31이 경과함에 따라 추가연장하지 아니하고 폐지하였다.

1996년

◉ 법　　률 : 법　　률 제 5163호(1996.10. 2), 제 5195호(1996.12.30)
◉ 시 행 령 : 대통령령 제15158호(1996.10.21), 제15197호(1996.12.31)
◉ 시행규칙 : 총 리 령 제 628호(1997. 4.14)

〈要　　約〉

○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법인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하
　—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제도 보완
　— 중소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경감제도 도입
　— 중소기업창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중소기업 구조조정 지원
　—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증진 지원
　— 중소기업 판정기준 보완
○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강화
　—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 보완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 이월공제기간 연장
　—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조정
　— 특정연구기관 등 기부금 전액 손비인정시한 연장
○ 설비투자확충 지원
　— 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시한 연장 및 세액공제율 단일화
　— 설비투자에 대한 일시상각제도 폐지
　— SOC투자준비금 등 적용시한 연장
　—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대상에 가스안전관리시설 추가
　— 투자세액공제대상 에너지절약시설 범위확대 및 물류시설의 범위조정
○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세제지원제도 신설
○ 사업자의 과표양성화 유도
　— 신용카드 및 POS거래 세액공제제도 신설
　— 수입증가세액공제제도 신설
○ 저축증대 지원
　— 가계장기저축 신설
　— 근로자 주식저축 신설

○ 농어민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농·수·축협 예탁금이자에 대한 비과세시한 연장
  — 배합사료 영세율 전면적용 및 면세유류 공급확대
  — 농·축산어업용기자재 직접 수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 기타 보완사항
  — 공장지방이전시 세제지원대상『공장이전』의 범위 확대
  — 외투기업에 대한 최저한세 적용방법 보완
  — 의료사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 국제대회 등 지원
  — 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도입
  — 같은날 중복가입한 저축의 판정기준 마련
  — 세금우대저축의 만기지급자료 제출 추가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귀속되는 배당소득의 과세방법 개선

〈改正內容〉

1. 中小企業에 대한 稅制支援 強化

가. 中小法人에 대한 最低限稅率 인하(法 §11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세부담은 지도록 하는 最低限稅제도를 운영	
— 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2%	— 中小法人에 대하여는 최저한세율을 10%로 인하
— 개인 : 감면전 산출세액의 30%	— 종전과 같음

(2) 改正理由

○ 조세감면규제법에서는 중소기업, 기술인력개발, 설비투자, 지역간 균형발전 등 사회경제적 정책목적을 위하여 여러가지 조세지원제도를 폭넓게 운영하고 있는 결과 경우에 따라서는 소득이 많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

지 않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세부담의 형평성·국민개납·세수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세부담은 지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0.12 이래 最低限稅制度를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1993년 이후 법인세율은 매년 2%P씩 인하되어 왔으나, 最低限稅率은 종전 수준을 계속 유지함에 따라 대부분의 中小企業들이 적용받는 낮은 법인세율(16%)을 감안할 때 中小企業들이 실제 감면받을 수 있는 범위는 과세표준의 4%(감면율 25%)에 불과하여 中小企業에 대한 租稅支援의 실효성이 약화되었다.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제고를 위해 中小法人에 대하여는 最低限稅率을 소득세 등 다른 세목의 최저세율과 균형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인 10%로 2%P 引下하였다. 다만, 個人事業者는 현재도 최고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점을 감안하여 현행유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나. 中小製造業 등 特別稅額減免制度 補完(法 §7, §11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중소제조업 등 特別稅額減免 – 대상 :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물류산업 – 감면 : 매년 소득세·법인세의 20% – 중복지원 排除 •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투자세액공제 등 다른 지원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음 • 다른 지원제도 적용시 특별세액감면은 영구배제	–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등을 重複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창업중소기업감면 등 기간감면은 제외) – 영구배제제도는 廢止
– 감면세액 計算方法 • 개인 : (제조업소득－소득공제)×소득세율×감면율(20%) • 법인 : (제조업소득－비과세·공제)×법인세율×감면율(20%)	–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여타 세액감면과 동일하게 일치 • 산출세액 × 제조업등소득 / 과세표준 (종합소득금액) ×감면율(20%)

(2) 改正理由

○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中小企業에 대해서는 매년 납부할 소득세·법인세의 20%를 특별감면하는 特別稅額減免制度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동 제도는 종래의 한시적인 臨時特別稅額減免制度를 1994년부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영구적인 지원제도로 전환하면서 그 대상을 세무지식이나 기장능력의 부족으로 각종 중소기업지원세제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零細中小企業을 지원한다는 취지에서 餘他減免과는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해라도 餘他減免(기간세액감면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는 特別稅額減免을 영구히 적용받지 못하도록 하여 왔다.

그 결과 일반기업은 최저한세에 달할 때까지는 투자세액공제 등 각종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중소제조업 등은 같은 투자를 하고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외에 여타감면의 적용이 배제됨에 따라 일반기업보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특별세액감면과 여타감면과의 중복적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특별세액감면영구배제제도는 폐지하였다. 다만, 5년간 세액의 50%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감면, 사업전환중소기업감면 등과는 중복을 계속 배제하기로 하였다. 또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세액계산방법을 여타감면의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보완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중복허용규정 : 199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감면세액계산방법 보완규정 : 1997.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12월말법인 1997.3월신고시 적용)

다. 中小製造業 등에 대한 附加價値稅 納付稅額 경감제도 도입
(法 §100의2②, 令 §96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중소사업자에 대한 附加價値稅 納付稅額 輕減制度 도입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도매업 – 대상사업자 : 직전 1역년의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일반과세자

從 前	改 正
	○ 納付稅額 計算方法 ①방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되 ②방식에 의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① 방식 : 매출세액－매입세액 ② 방식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 ○ 업종별 附加價値率(당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기준) ① 3,6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28% ② 3,600만원 초과 5,400만원 이하 : 32% ③ 5,400만원 초과 : 50%(도매업은 32%)

(2) 改正理由

○ 1995년세법개정시 연간매출액 1억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로서 주로 소비자와 직접거래하는 소매, 음식, 숙박, 건설, 서비스업 등에 대해서는 1996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하여 간편한 방법으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면서 종래에 적용하던 한계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였다. 한편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제조업이나 도매업의 경우에는 단계별 거래흐름이 나타날 수 있도록 종래부터 매출액규모에 관계없이 일반과세를 하여 왔으며 간이과세대상에서도 제외하였다.

이와같이 연간매출액이 1억5,000만원 이상인 제조업이나 도매업의 경우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일반과세를 받기 때문에 과세유형이 달라진 것은 없으나 부가가치율이 높아 종전에 한계세액공제를 적용받던 사업자의 경우는 한계세액공제가 폐지됨에 따라 세부담이 증가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일정한도(매출액×업종별 부가가치율)를 초과하는 영세제조업자에 대하여는 경감장치를 한시적으로 도입하여 한계세액공제제도의 폐지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納付稅額輕減制度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納付稅額輕減制度 적용대상

□ 일반적인 기준

○ 업종기준 : 제조업, 광업, 도매업

○ 매출액기준 : 직전년도 공급대가가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 일반과세자』
— 겸업자의 경우에는 공급대가를 합계하여 적용대상 판정

□ 신규개업자 등에 대한 적용기준

○ 사업기간동안의 공급대가를 연간 공급대가로 환산

사 례	1996. 7. 10 개업한 사업자로서 매출액이 6,000만원인 경우

• 사업영위기간 : 6개월(실제 사업영위기간은 5개월 21일이나 1월 미만의 단수는 1월로 봄)

• 연간 환산공급대가 : 6,600만원×12개월/6개월(사업영위기간)=13,200만원

※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매출액×110/100)임

• 연간 공급대가가 13,200만원이므로 경감대상에 해당

2) 納付稅額 計算方法

□ 일반적인 기준

①방식에 의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되 ②방식에 의한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함

① 일반과세방식 : 매출세액－매입세액

② 납부세액한도 : 공급대가×업종별 부가가치율×세율(10%)

사례 1	製造業을 영위하는 事業者로서 1과세기간 매출액이 4,000만원이고 買入額이 2,000만원인 경우

① 일반과세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200만원

• 400만원(매출세액)－200만원(매입세액)=200만원

② 납부세액한도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140.8만원

• 4,400만원(공급대가)×32%(부가율)×10%(세율)=140.8만원

③ 납부할 세액 : 140.8만원

④ 경감세액 : 59.2만원

사례 2	都賣業을 영위하는 事業者로서 1과세기간 賣出額이 5,000만원이고 買入額이 4,000만원인 경우

① 일반과세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100만원

• 500만원(매출세액)－400만원(매입세액)=100만원

② 납부세액한도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176만원

- 5,500만원(공급대가)×32%×10%=176만원

③ 납부할 세액 : 100만원

④ 경감세액 : 없음

사례 3	1996.10.10 新規로 사업을 개시한 製造業者로서 당해 과세기간 賣出額이 2,000만원이고 買入額이 1,000만원인 경우

① 일반과세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100만원

- 200만원(매출세액)-100만원(매입세액)=100만원

② 납부세액한도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70.4만원

- 2,200만원(공급대가)×32%×10%=70.4만원

※ 6개월로 환산한 공급대가가 4,400만원이므로 부가율은 32%를 적용

③ 납부할 세액 : 70.4만원

④ 경감세액 : 29.6만원

□ 겸업자에 대한 납부세액 계산방법

사례 1	製造業과 都賣業을 겸영하는 事業者로서 당해 課稅期間 賣出額이 3,500만원(製造業 2,000만원, 都賣業 1,500만원)이고 買入額이 2,200만원(製造業 1,000만원, 都賣業 1,200만원)인 경우

〈제조업에 대한 납부세액〉

① 일반과세대상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100만원

- 200만원(매출세액)-100만원(매입세액)=100만원

② 납부세액한도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70.4만원

- 2,200만원(공급대가)×32%×10%=70.4만원

※ 전체 공급대가가 3,850만원이므로 부가율은 32%를 적용

③ 납부할 세액 : 70.4만원

④ 경감세액 : 29.6만원

〈도매업에 대한 납부세액〉

① 일반과세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30만원

- 150만원(매출세액)-120만원(매입세액)=30만원

② 납부세액한도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52.8만원

- 1,650만원(공급대가)×32%×10%=52.8만원

※ 전체 공급대가가 3,850만원이므로 부가율은 32%를 적용

③ 납부할 세액 : 30만원

④ 경감세액 : 없음

〈제조업과 도매업에 대한 납부할 세액 : 70.4만원+30만원=100.4만원〉

〈경감세액 : 29.6만원〉

사례 2	都賣業과 小賣業을 겸영하면서 당해 課稅期間 賣出額이 3,500만원(都賣業 2,000만원, 소매업 1,500만원)이고 買入額이 2,200만원(都賣業 1,200만원, 小賣業 1,000만원)인 경우

〈도매업에 대한 납부세액〉

① 일반과세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80만원

• 200만원(매출세액)-120만원(매입세액)=80만원

② 납부세액한도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70.4만원

• 2,200만원(공급대가)×32%×10%=70.4만원

※ 전체 공급대가가 3,850만원이므로 부가율은 32%를 적용

③ 납부할 세액 : 70.4만원

④ 경감세액 : 9.6만원

〈소매업에 대한 납부세액〉

① 일반과세방식에 의한 납부세액 : 50만원

• 매출세액(150만원)-매입세액(100만원)=50만원

※ 소매업은 납부세액 경감대상 아님

〈도매업과 소매업에 대한 납부세액 : 70.4만원+50만원=120.4만원〉

〈경감세액 : 9.6만원〉

□ 겸업자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방법

○ 매입세액은 실지거래내역에 의하되 공통매입세액의 경우에는 각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입세액을 안분계산

사 례	製造業과 都賣業을 겸영하는 事業者로서 당해 課稅期間 賣出額이 3,500만원(製造業 2,000만원, 都賣業 1,500만원)이고 製造業과 都賣業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資產의 구입비가 500만원(共通買入稅額이 50만원)인 경우

• 제조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50만원 $\times \frac{2,000만원}{3,500만원} = 28.6만원$

• 도매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 50만원 × $\frac{1,500만원}{3,500만원}$ = 21.4만원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제2기분(1997.1.1 이후 신고분)부터 1998. 제1기분까지 2년간 적용

라. 創業中小企業에 대한 稅制支援 強化(法 §6, §113, §11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創業中小企業 감면 — 대상 :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 및 기술집약형 창업 중소기업 — 減免 ① 所得稅·法人稅 • 5년간 50% • 다만, 수도권(서울, 인천 등 제외) 내 창업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② 地方稅 • 취득세 : 2년간 50% • 등록세 : 2년간 50% • 재산세, 종토세 : 5년간 50%	○ 5년간 50% 감면으로 통일 ○ 감면율을 『75%』로 상향조정 ○ 다만, 2년내 사업에 미사용시 감면세액 추징

(2) 改正理由

○ 中小企業의 創業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군지역+시의 녹지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기타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특허권·실용신안권 기업화사업, 정밀기계, 전자, 정보산업 등)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인세·지방세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創業中小企業의 創業費用 절감을 위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하였다.

(가) 지방세 감면율 상향조정 및 사후관리 신설

창업후 2년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등에 대한 取得稅·登錄稅 減免率을 50%에서 75%로 대폭 상향조정하였다. 한편, 종전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후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다른 사후관리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

는 취득후 2년내에 사업에 미사용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나) 技術集約型中小企業 創業에 대한 세제지원

技術集約型中小企業 創業에 대한 所得稅·法人稅減免에 있어 수도권·비수도권간 차등을 두어 왔으나, 최근 수도권·비수도권간 차등을 없애는 추세에 있고 수도권내 감면허용지역이 안산시·오산시 등 일부 지역에 불과하여 차등을 유지할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세제 단순화차원에서 減免率을 『5년간 50%』로 통일하였다. 이에 따라 수도권내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감면율 개정 : 1997.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기창업분은 종전규정 적용)

○ 추징규정 : 1997.1.1 이후 취득, 등기분부터 적용

마. 中小企業 創業支援機關에 대한 支援強化(法 §6, §13, §83, §111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中小企業 創業投資會社(신기술 사업금융회사 포함)에 대한 지원	
—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처분익 및 배당소득에 대해 法人稅 비과세	— 창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처분시 證券去來稅(0.5%)도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포함
○ 中小企業 創業投資組合(신기술사업투자조합 포함)에의 출자자에 대한 지원 등	
— 個人 출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처분시 양도세 비과세	— 機關投資者에 대하여도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자의 주식처분시 법인세 비과세
— 개인 출자자가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창업자(비상장법인)로부터 지급받는 배당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과 관계없이 綜合課稅	—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종합과세기준금액 초과시에만 綜合課稅

從 前	改 正
〈新 設〉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民間創業保育센터사업자에 대한 감면신설 — 소득발생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감면

(2) 改正理由

○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인 Venture Capital의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등에게 투자하여 받는 배당소득과 당해 투자주식의 처분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투·융자에 따른 손실보전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실준비금을 손비로 인정하는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바, 이번 稅法改正에서는 중소기업 창업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였다.

(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 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신기술사업자에게 출자하여 취득한 株式을 讓渡하는 경우 證券去來稅(양도가액의 0.5%)도 비과세하도록 하였다.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의 출자자에 대한 지원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機關投資者가 이들 組合에 출자하여 취득한 창업자·신기술사업자의 주식처분익에 대해서도 法人稅를 비과세하도록 하고, 이들 조합에 출자한 個人出資者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 기준금액(4,000만원)과 관계없이 종합과세하던 것을 다른 금융소득과 합하여 기준금액 초과시에만 綜合課稅하도록 하였다.

(다) 민간창업보육센타에 대한 지원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각종 시설·장소를 제공하는 사업자인 民間創業保育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창업보육센터 운영사업자(공공법인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외)에 대해서도 5년간 所得稅·法人稅의 50%를 감면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주식처분 관련사항은 1997.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종합과세관련사항은 1997.1.1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 창업보육센터감면은 1997.1.1 이후 설립분부터 적용

바. 中小企業 構造調整 支援(法 §3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동일사업을 5년이상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제조업, 광업으로 업종을 전환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세액감면허용 – 業種轉換 :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 – 業種追加 :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3년간 50%, 그후 2년간 30%	– 소득발생연도와 그후 5년간 50% 감면으로 통일

(2) 改正理由

○ 중소기업의 構造調整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득세·법인세감면제도를 두고 있는바 동일사업을 5년이상 계속한 중소사업자가 기존의 업종을 廢止하고 제조업·광업으로 轉換하는 경우에는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기존의 업종을 縮小하고 새로운 업종을 追加한 경우(3년내에 추가업종의 매출액이 70% 이상 점유시)에는 3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하고, 그후 2년간 30%를 감면함으로써 업종전환과 업종추가의 경우를 차등지원하고 있었다.

이번 改正에서는 구조조정에 대한 지원강화차원에서 동 差等을 廢止하여 업종추가의 경우에도 업종전환과 같이 5년간 50% 감면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업종추가분부터 적용(기전환분은 종전규정 적용)

사. 大企業과 中小企業間 協力增進支援(法 §7의2, §9, 令§108, 별표 3, 별표 4, 규칙 §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① 중소기업 技術指導費에 대한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지출액의 10%)	

從 前	改 正
○ 세액공제대상 — 제조 대기업이 제조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기술지도비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지도비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업종제한을 완화 — 제조업 외에 건설업, 광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기술지도비도 세액 공제(지출액의 15%) 허용
○ 세액공제대상 技術指導費 — 지도요원 인건비 등 지도관련경비, 직업훈련용 교재비·실습재료비·시설 임차비 — 국내 전문연구기관 위탁교육비 등	○ 세액공제대상 기술지도비의 범위확대 — 국외 전문연구기관, 국내외 대학(이공계)·기업체에의 위탁교육·훈련비를 추가
○ 기타 세액공제대상 支援費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품질보증 체제인증 획득지도비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비용을 추가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디자인개발 지도비 추가
②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投資稅額控除(투자금액의 10%, 3%) — 제조대기업이 제조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제조업 외에 건설업, 광업, 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을 추가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적용
③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에 대한 技術開發準備金(매출액의 3~5%) 손금산입 — 다음비용을 사용기준으로 인정 •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한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도비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확대 • 기술지도비의 범위를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목과 일치시켜 명확화 * 직업훈련 관련비용, 위탁 교육훈련비 추가

從　　前	改　　正
	•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한 비용을 추가 •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직업 훈련용시설 설치·구입비, 디자인개발 지도비 추가
④ 設備投資稅額控除 追徵 등 ○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설비를 3년 내에 처분시 기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다음 경우에는 예외인정 — 현물출자, 합병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등	○ 1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다음 설비를 특수관계없는 중소기업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도 추징 예외인정 — 기술·인력개발설비(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신기술기업화용설비) — 생산성 향상시설(공정개선·자동화설비, 첨단기술설비 등) — 특정설비(에너지 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재해예방시설 등)
〈新　　設〉	○ 위 설비(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 등 사무자동화기기 포함)를 중소기업에 무상기증시 — 기증한 기업 : 전액 손비인정 — 기증받은 중소기업 : 익금 불산입

(2) 改正理由

○ 大企業과 中小企業의 협력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번 改正에서는 그 지원대상·지원범위 등을 더욱 확대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다각적인 협력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대한 지원 확대

技術·人力開發費稅額控除(10%)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기술지도비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경우에 한정되고 업종도 대기업·중소기업 모두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었으나 제한을 대폭 완화하였다.

中小企業이 다른 중소기업에 지출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15%)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상업종의 범위를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광업·물류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業種으로 확대하였으며, 세액공제대상 기술지도비의 범위에 국외전문연구기관·국내외 대학(이공계)·기업체에의 위탁훈련비를 追加하였다. 또한,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費目의 범위에 대기업 외에 中小企業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출한 품질보증체제인증 획득지원비를 추가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지출한 工業·商品디자인 開發指導費를 새로이 추가하였다.

㈏ 중소기업 기술지도비 등 중소기업 지원관련비목의 범위를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 技術·人力開發費稅額控除對象 비목의 범위와 일치시켜 이를 확대·명확히 하고, 대기업·중소기업이 다른 중소기업에게 설치하는 職業訓練用施設의 설치·구입비를 추가하였다.

㈐ 중소기업설치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한 지원확대

종전에는 제조대기업이 제조중소기업에게 설치하는 직업훈련용시설에 대해서만 投資稅額控除(10%, 외산3%)를 허용하여 왔으나, 對象業種의 범위를 제조업 외에도 건설업·광업·물류산업·지식서비스산업 등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中小企業이 다른 중소기업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중소기업 무상기증 사무자동화기기 등에 대한 지원

投資稅額控除를 적용받은 설비를 3년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기공제받은 세액을 追徵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이 1년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技術·人力開發設備(연구시험용, 직업훈련용, 신기술기업화용설비), 生產性向上施設(공정개선·자동화설비, 첨단기술설비 등), 特定設備(에너지 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재해예방시설 등)를 특수관계없는 中小企業에게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도 기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例外를 인정하는 한편, 위 설비와 사무자동화기기(컴퓨터, 복사기, 팩시밀리)의 무상기증에 대해서는 기증한 기업에 대해 전액 損費認定하고, 기증받은 중소기업에 대해 益金不算入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기술지도비 등에 대하여는 1997.1.1 이후 개시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 직업훈련용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규칙 1997.4.14 이후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 설비 무상기증관련사항은 1997.1.1 이후 무상기증분부터 적용

아. 中小企業 判定基準 補完(令 §2, 規則 §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중소기업 판정기준 — 종업원수 기준 • 업종별 20인~1000인 이하 • 한달이라도 기준초과시 중소기업에서 제외 — 업종기준, 자산총액기준, 소유경영독립요건(30대계열 제외)	○ 연간 월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정 —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평균인원이 기준 이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연도(2년간 유예)는 중소기업으로 인정	○ 유예기간 연장 —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 2개 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인정(3년간 유예)

(2) 改正理由

○ 각종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中小企業의 범위가 稅法과 中小企業基本法간 종업원수 판정기준과 중소기업판정 유예기간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중소기업기본법 수준으로 판정기준을 완화하였다.

(가) 종업원수 판정기준 보완

從業員數 判定基準을 적용함에 있어서 한달이라도 종업원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에서 제외하였으나, 연간 월평균 인원을 기준으로 판정하도록 함으로써 기준을 초과하는 달이 있더라도 연간 월평균인원이 기준 이내이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도록 하였다.

(나) 중소기업 판정유예기간 연장

종업원수·자산총액기준을 초과하거나 기준의 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유발생연도와 그 다음연도 즉 2년간만 계속 中小企業으로 認定하도록 하여 왔으나, 사유발생연도와 그다음 2개연도 즉,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도록 猶豫期間을 연장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종업원수 판정기준보완사항은 199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유예기간 연장은 199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사유발생분부터 적용

2. 技術·人力開發에 대한 稅制支援 強化

가. 技術開發準備金制度 改善(法 §8, 令 §8, 令 별표 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技術開發準備金을 적립하는 경우 손비로 인정	
— 對象業種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 부가통신업	— 전기통신업으로 확대(기간통신업 추가) — 공업디자인 서비스업 추가
— 積立限度	
• 일반산업 : 매출액의 3%	
• 기술집약산업 : 매출액의 4% * 정밀기계·전자·화학·신소재 등	— 기술집약산업의 경우도 자본재산업과 같이 매출액의 5%로 상향조정
• 자본재산업 : 매출액의 5%	
— 使用基準(3년내 다음 용도 사용)	— 사용기준 보완
• 전담부서 직원 인건비	• 전담부서 연구요원 및 연구업무 지원 직원의 인건비(지배주주인 임원 등 제외)로 명확화
• 전담부서의 연구시험용시설 임차비 등	• 외부 연구시설의 이용료 추가
• 전담부서 건물·연구시험용 시설 설치구입비	• 종업원 직업훈련용시설 설치·구입비 추가
•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	• 공동상표 개발비 추가
• 특정 연구기관, 비영리 연구기관 등에의 출연금	•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정보화촉진기금 등) 추가
	•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추가
• 기술훈련비(자체훈련, 국내외 위탁훈련비), 기술자문료(국내외과학기술자의 자문료)	• 세액공제대상 비목과 일치

(2) 改正理由

○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인력개발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대폭 보강하면서, 특히, 技術開發準備金制度의 경우 대상비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 많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비목과 가급적 일치시켜 명확히 하였다.

(가) 적용대상 업종추가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인 통신산업과 공업디자인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설정 對象業種인 부가통신업을 전기통신업으로 확대하여 전화·이동통신·무선호출 등 기간통신업을 추가하고, 공업디자인서비스업을 추가하였다.

(나) 적립한도 상향조정

기술개발에의 투자비중이 높은 技術集約的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한도를 매출액의 4%에서 자본재산업과 같이 매출액의 5%로 상향조정하였다.

(다)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범위 조정

기술개발준비금 使用基準을 기술·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비목과 가급적 일치시켜 명확히 하고, 사용기준에 기술개발관련비용을 일부 추가·확대하였다. 새로이 追加되거나 擴大된 비목은 전담부서의 외부연구시설이용료, 종업원에게 지출한 직무발명보상금, 종업원 직업훈련용시설 설치·구입비, 중소기업 등의 공동상표개발비, 기간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등이다. 한편, 그 범위가 포괄적인 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 종업원의 기술 훈련비, 기술자문료의 범위 등을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 비목과 일치시켜 명확히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적립분부터 적용

○ 사용기준보완 사항은 1997.1.1 이후 개시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나. 技術·人力開發費稅額控除制度 補完(令 §9, 令 별표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 — 세액공제 : 지출액의 5%(중소기업 15%) 또는 증가지출분의 50% — 대상업종 • 제조업, 광업, 건설업 등 • 부가통신업 • 금융보험업	— 공업디자인 서비스업을 추가 — 전기통신업으로 확대(기간통신업 추가) — 금융보험업 제외(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출자금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만 적립토록 함)

從 前	改 正
○ 세액공제대상 費目	
— 전담부서 연구·시험용시설 임차비	— 외부연구시설의 이용료 추가
— 고유상표·디자인 개발비	— 공동상표 개발비 추가
— 직업훈련분담금,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 1998.12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엔지니어링 기술수출을 위한 기술제안서 작성비	—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삭제하고,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추가
— 기술자문료 : 정부출연연구기관연구원, 교수, 외국인기술자의 자문료	— 국·공립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연구기관, 국내외기업이 연구기관·전담부서 연구원의 자문료 추가
— 인건비	
• 원칙 : 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인건비	— 연구업무 지원 직원(지배주주임원 등 제외)의 인건비 추가
• 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의 경우에는 전담부서가 없는 경우에도 허용	
* 세액공제 : 연구개발업무 1년이상 종사자 인건비	• 세액공제대상에서 삭제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 : 관련업무 담당직원의 인건비	•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을 현행 세액공제대상 비목(연구개발업무 1년 이상 종사자의 인건비)으로 축소

(2) 改正理由

○ 기업의 기술·인력개발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技術·人力開發費 稅額控除의 적용대상 업종과 대상비목을 확대·추가하는 한편, 기술·인력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일부 업종·비목은 축소·삭제하였다.

(가) 세액공제대상 업종 추가

稅額控除 適用對象 業種에 기간통신업 및 공업디자인서비스업을 추가하는 한편, 금융보험업의 경우 산업기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으며 당초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금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으로 손비인정해 주기 위해 허용된 것인 만큼 당초 취지대로 창투사 등에의 출자금에 대해 기술개발준비금 적립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나) 세액공제대상 비목 추가

稅額控除對象 費目에 ①전담부서의 외부연구시설 이용료 ②중소기업 등의 공동상표개발비를 추가하고, ③전담부서 연구요원의 인건비 외에 이들의 연구업

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관리·행정직원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하도록 확대하였으며, ④기술자문료의 범위에 국공립 연구기관, 국내외 비영리 연구기관, 국내외 기업의 연구기관·전담부서 연구원의 기술자문료를 추가하였다.

㈐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부가통신업의 인건비 등

세액공제대상 비목 중 特定業種에 대한 예외인정규정을 가급적 축소하여 직접감면인 세액공제는 배제하고, 간접감면인 기술개발준비금 사용기준으로만 허용하도록 하여 업종간 형평성 및 세제의 간소화를 도모하도록 하였는바, ①정보처리및컴퓨터운용관련업·부가통신업에 대해 전담부서설치여부와 관계없이 허용하던 인건비를 1년이상 연구개발업무에 종사한 직원의 인건비로 축소하여 技術開發準備金 사용기준으로만 허용하고, ②엔지니어링산업에 대해 허용되던 기술수출제안서 작성비에 대해서도 技術開發準備金 사용기준으로만 허용하도록 하였다.

㈑ 직업훈련분담금과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패널티성격인 직업훈련분담금과 이중세액공제의 문제가 있는 직업능력개발사업보험료는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되, 1998.12.31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하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개시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

다. 技術·人力開發費稅額控除 移越控除期間 延長(法 §12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일정기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음 – 설비투자세액공제(투자금액의 3~10%) : 4년 –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지출액의 5~15% 또는 증가지출분의 50%) • 일반산업 : 5년 • 자분재산업 : 7년	○ 이월공제기간을 7년간으로 통일

(2) 改正理由

○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은 일정기간 移越하여 控除를 받을 수 있는바, 기술·인력개발비세액공제는 여타 설비투자세액공제와는 달리 5년간(자본재산업은 7년간) 이월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改正에서는 R&D투자에 따른 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나타나며, 세액공제 이월공제의 본질상 산업별로 구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고, 겸업법인의 경우 집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세제간소화 차원에서 技術·人力開發費稅額控除의 移越控除期間을 산업구분없이 7년으로 통일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지출분부터 적용한다.

라. 技術集約的인 産業의 범위조정(令 별표 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기술개발준비금 설정특례 등이 인정되는 技術集約的인 산업의 범위 – 기계공업 : 광학기기 등 20개 – 전자공업 : 반도체소자 등 32개 – 전기공업 : 전력전자기기 등 3개 – 신소재산업 : 신금속재료·정밀요업·고분자재료 등 23개 – 기타 정밀화학, 생물산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부가통신업, 엔지니어링산업 등	○ 技術集約的인 산업의 범위 조정 – 工業發展法상의 "첨단기술 및 제품", 外國人投資및外資導入에관한法律상의 "고도기술사업"에 맞추어 전면 재조정 * 현행 115개 업종을 90개업종으로 통폐합

(2) 改正理由

○ 技術集約的인 産業에 대해서는 기술개발준비금설정특례(매출액의 4% ⇒ 5%)가 인정되고,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감면(5년간 50%)을 받을 수 있으며,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면제(5년간)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특례가 주어지는 技術集約的인 산업의 범위는 지난 1981.12 신설된 이래 그간 부분적으로만 보완하여 왔는바, 이번 改正에서는 그간의 산업변동추세과 공업발전법 및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 등 타법상의 첨

단 산업범위를 감안하여 전면 재조정하여 현행 115개업종을 90개업종으로 통폐합하였다.

(가) 包括的인 업종은 尖端부분에 한정하고, 범용기술은 削除

① 시험계측기 ⇒ 삭제(전자식 계측장비는 유지)
② 광학기기 ⇒ 카메라, 칼라·지능복사기, 현상기, 고분해능 현미경
③ 금속가공기계 ⇒ 고기능 프레스(400spm 이상), 절삭공구(초경합금 등)
④ 금속공작기계 ⇒ 수치제어 공작기계
⑤ 플라스틱 가공기계 ⇒ 자동제어장치 부착 사출성형기, 제어·관리시스템부착 압출기
⑥ 내연기관 ⇒ 동력발생장치(전자제어식, 대체연료, 신소재이용 엔진 등)
⑦ 기관차 ⇒ 고속전철, 자기부상열차
⑧ 산업용 로보트 ⇒ 자유도 3축 이상
⑨ 의료기기 ⇒ 삭제(전자식 의료기기는 유지)
⑩ 고속 자동재봉기 ⇒ 컴퓨터 자수기(4색 이상), 방사니플
⑪ 지게차(엔진식) ⇒ 삭제
⑫ 냉매압축기 ⇒ 냉동공조기기(흡수, 축열, 가변, 대체냉매형)
⑬ 자동 자료처리기기, 단위기기 ⇒ 64비트 이상 컴퓨터 및 정밀주변기기
⑭ 사진 및 모사전송장치 ⇒ 삭제
⑮ 폴리에스터 필름 및 자기테이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 광 및 자기기록매체(디지털방식, 디스크형)
⑯ 소형 전동기 ⇒ 정밀모터
⑰ 칩부품 ⇒ 표면실장용에 한정
⑱ 향료 ⇒ 조합향료
⑲ 비스페놀 에이, 에폭시 ⇒ 삭제

(나) 狹小한 業種은 적정수준으로 擴大

① 정밀금형(반도체, 항공기, 전자기기용) ⇒ 자동차용 추가
② 자동차부품(제동, 현가, 전장장치 등) ⇒ 동력전달장치, 주행안전·정보장치 추가, 전장장치 삭제
③ 영상, 음향, 결상기기(디지털방식) ⇒ 아날로그방식 중 프로젝션 텔레비전, 평판 텔레비전, 하이-8비디오 카메라 추가
④ 전자관 및 유리, 새도우마스크 ⇒ 편향요크, 전자총, 평판 디스플레이 추가
⑤ 인쇄회로용 동박 적층판, 고순도 규소봉 ⇒ 인쇄회로기판
⑥ 리이드프레임, 세금선 ⇒ 반도체 재료

⑦ 진공차단기용 벌브 ⇒ 송변전설비(345kv이상 변압기, 리액터, 차단기)
⑧ 고주파제어 용접기 ⇒ 직류아크식, 레이저 플라즈마 용접기 등 추가
⑨ 염·안료 중간제 ⇒ 정밀화학 원제(염료·안료·계면활성제·첨가제 등)
⑩ 초내열식 합금, 초고인성 합금, 철분말 ⇒ 구조재료(초내열합금, 내식성·내마모성·고강도·고절삭성·경량합금재료, 금속분말)
⑪ 초전도재료 ⇒ 도전재료(초전도재료, 무산소동판, 전해동박, 저항재 등)
⑫ 폴리아미드, 폴리아세탈 ⇒ 특수 기능성 고분자
⑬ 전도성 수지 ⇒ 전기특성 고분자
⑭ 섬유강화 플라스틱, 금속 ⇒ 다성분계 고분자소재
⑮ 농약품 ⇒ 환경보전제품
⑯ 고순도 페놀아세톤 ⇒ 고순도 용제

㈐ 尖端産業分野를 일부 追加
① 베어링(직선·로울링 베어링, 자동차용 특수베어링)
② 원자력발전소용 핵증기발생·제어장치, 가스터빈, 스팀터빈, 발전기용 로터
③ 플라즈마 코팅장치
④ 초전도 응용기기(발전기, 변압기, 케이블)
⑤ 고성능 전지(전기자동차·전자기기용 니켈합금, 리튬, 나트륨합금전지)
⑥ 고분자 원료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준비금관련사항은 1997.1.1 이후 개시 과세연도 적립분부터 적용
○ 창업감면관련사항은 1997.1.1 이후 창업분부터 적용
○ 외국인기술자 근소세면제관련사항은 1997.1.1 이후 고용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마. 特定硏究機關 등 寄附金 全額 損費認定時限 延長(法 §6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전액 손금산입대상 寄附金 — 대상 연구기관 • KAIST 등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15개 연구기관 • 생산기술연구원, 민간생산기술연구소(8개) — 적용시한 : 1996.12.31	— 적용시한을 1998.12.31까지로 2년간 연장

(2) 改正理由

○ 公共法人 중 특정연구기관육성법상 특정연구기관과 생산기술연구원 등에 대하여 지출하는 寄附金에 대하여는 전액손비인정 혜택을 주어 왔으나, 동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이 1996.12 종료함에 따라, 연구기관 육성지원차원에서 동 특례규정의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지출분부터 적용

3. 設備投資擴充 支援

가. 設備投資稅額控除制度 補完(法 §25, §26, §27)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生産性向上施設 投資稅額控除 — 대상 : 공정개선·자동화설비,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개체설비 등 — 공제 : 투자금액의 10%(외산 3%). 다만, 중소제조업의 공정개선·자동화설비는 15%(외산 5%) — 적용시한 : 1996.12.31 ○ 特定設備 投資稅額控除 — 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근대화시설 등 — 공제 : 투자금액의 10%(외산 3%) — 적용시한 : 1996.12.31	○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 — 1996.12.31 ⇒ 1998.12.31 ○ 투자세액공제율을 내·외산 구분없이 5%로 단일화
○ 臨時 投資稅額控除 — 공제 : 10%(외산 3%) ※ 법상 최대 공제한도 — 구체적인 공제율, 적용대상, 적용시기는 시행령에 위임 ⇒ 1995.1.1 이후 중단	○ 내·외산구분없이 최대공제한도를 10%로 단일화함

(2) 改正理由

○ 기업의 設備投資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정개선·자동화설비, 첨단기술설비, 노후시설개체설비,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시 投資稅額控除혜택을 주고 있는 바, 동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이 1996.12로 종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 시행하면서 WTO協定에 부합되도록 제도를 정비하였다.

(가) 적용시한 연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특정설비투자세액공제의 適用時限을 조감법의 일반적인 적용시한인 1998.12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나) 세액공제율 조정

종전에는 투자세액공제시 국산설비의 경우 10~15%를, 외산설비의 경우에는 3~5%를 공제하였으나, 內·外産 차등은 WTO協定상 금지보조금(수입대체보조금)에 해당되고 적용시한 만료시 차등상태하에서의 연장시행은 불가한 점을 감안하여 투자세액공제율을 내·외산 구분없이 單一化하되, 그동안의 소득·법인세율 인하추이 및 외산에 대한 공제율 인상시 수입수요 촉발에 따른 국제수지에의 영향 등을 감안하여 5%로 조정하였다.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율 조정

臨時投資稅額控除는 지난 1994.12.31까지 적용한 바 있으며, 1995.1.1 이후 중단된 상태에 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향후 재시행의 필요가 있을 경우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축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法상 세액공제율 상한을 WTO협정에 부합되게 내·외산 구분없이 10%로 단일화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 투자진행분은 종전 공제율을 적용

나. 設備投資에 대한 一時償却制度 廢止(法 §10, §25, §26, §45, §98)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설비투자에 대해서는 投資稅額控除와 투자연도에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一時에 減價償却할 수 있는 방법 중 선택적용 허용	

從 前	改 正
— 대상 설비투자 •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 에너지절약시설 등 투자 • 지방이전기업 설비투자 • 의료법인 의료기기투자 • 연구시험용설비 등 투자 — 세제지원방법 : 다음 중 선택 • 세액공제(5～10%, 외산 3～5%) • 일시상각(50～70%, 외산 30～50%)	○ 일시상각제도는 폐지함

(2) 改正理由

○ 기업의 設備投資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특정설비, 지방이전기업 설비, 의료기기 투자, 기술·인력개발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投資稅額控除와 투자금액의 일정비율(30～70%)을 一時에 減價償却하는 방법을 선택적용하도록 하여 왔다.

그러나, 지난 1994.12 감가상각제도의 전면개편에 따라 기업이 자체 실정에 맞게 내용연수를 책정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일시상각제도의 실효성이 대폭 약화되었으며, 실제 운용에 있어서도 기업들은 대부분 간편한 세액공제방식을 선택하고 一時償却의 활용 실적은 극히 미미한 수준임을 감안하여 세제 간소화차원에서 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며, 투자진행분도 일시상각 배제

다. SOC投資準備金 등의 適用時限 연장(法 §28, §2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SOC 投資準備金 — 대상법인 : 도로공사, 한전, 한국통신, 수자원공사, 민자유치사업자 등 — 손금산입한도 : SOC투자 금액의 15% — 적용시한 : 1996.12 이전 종료사업연도	○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 — 1996.12 → 1998.12

從 前	改 正
○ 에너지節約施設 投資準備金 — 손금산입 : 당해연도 투자 금액의 15%(3년간) — 적용시한 : 1996.12 이전 종료사업연도	○ 적용시한을 2년간 연장 — 1996.12 → 1998.12

(2) 改正理由

○ 사회간접자본확충과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1996.12.31로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投資準備金제도의 적용시한을 조감법의 일반적 적용시한인 1998.12.31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1.1 이후 종료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라. 特定設備 投資稅額控除 대상에 가스安全管理施設 추가(令 §2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特定設備 投資稅額控除 — 대상 : 에너지절약시설, 공해방지시설, 재해예방시설, 유통산업근대화시설 등 — 공제 : 투자금액의 5%	— 도시가스사업자의 가스안전관리시설을 추가

(2) 改正理由

○ 도시가스폭발사고 등 가스관련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特定設備投資稅額控除(투자금액의 5%)대상에 가스安全管理施設을 추가하였다.

가스安全管理施設의 범위는 도시가스사업법상의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로서 ①安全裝備에는 분동식 표준압력계, 가스누출검지기, 안전밸브성능시험기, 접지저항 측정기, 전위 측정기, 초음파두께 측정기, 지하매설배관 탐지장치·부식탐지장치 및 가스누출 탐지장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잔가스 처리설비 및 회전측정기가 해당되며, ②安全施設에는 (a)제조소 및 공급소의 안전밸브, 원격 가스차단장치, 가스누출 검지통보설비 및 인터록기구 (b)가스발생설비의

압력상승 방지장치, 긴급 정지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액화가스 유출방지장치 (c)저장탱크의 폭발방지장치, 물분무장치, 긴급 가스차단장치 및 안전밸브 (d) 정압기의 원격 가스차단장치, 가스압력 자동기록장치 및 안전밸브, 원방감시장치 (e)배관의 지하매설 배관의 부식방지를 위한 전기설비 및 파손방지를 위한 보호관·보호판(검지공 포함), 수취기 및 원격 가스차단장치가 해당된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4.14 이후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마. 投資稅額控除對象 에너지節約施設의 範圍擴大(규칙 §1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特定設備 투자세액공제(5%) 및 투자준비금(투자금액의 15%) 적립대상에너지節約施設의 범위 – 에너지절약형 설비 : 열병합발전설비류, 열공급시설, 절약형 기기류(폐열이용설비, 자동온도제어장치 등 15개) – 연료대체설비, 노후보일러·요로대체설비 등	○ 에너지節約施設에 다음 9개설비를 추가 –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 – 고효율 전동기 – 조명제어시스템 – 제습공조기 – 가스엔진구동 터보냉동기 – 폐열이용 압축공기 제습장치 – 자외선 속성경화장치 – 로터리 디스크 건조기 – 폐열회수형 버너

(2) 改正理由

○ 기업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投資稅額控除制度(투자금액의 5%)를 운영하고 있는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촉진을 유도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대상이 되는 에너지절약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 최대수요전력 감시제어장치 : 사용전력이 설정 목표치보다 초과시 회로의 부하를 순차적으로 차단하는 자동전력조절장치

– 고효율전동기 : KSC(한국산업규격) 4202 일반용 저압 3상유도전동기 중 고효율전동기

– 조명제어시스템 : 센서, 타이머, 조광레벨을 이용하여 조명을 제어하는 장치

- 제습공조기 : 냉방시 공기를 흡착제가 부착된 제습휠을 통과시켜 습기가 제거된 현열만 냉각코일에서 냉각시키는 장치
- 가스엔진구동 터보냉동기 : 기존 전기모터구동 터보냉동기에서 모터를 없애고 가스엔진을 장착시켜 원심식 압축기를 구동시키는 장치
- 폐열이용 압축공기 제습장치 : 압축공기를 제습제가 코팅된 회전체에 통과시켜 제습 후 공급하고, 흡착한 수분은 압축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열로 증발·건조시키는 제습장치
- 자외선 속성경화장치 : 가구 등 도장시 열에너지가 아닌 자외선에 의한 광중합반응으로 도료를 순간경화시키는 장치
- 로터리 디스크 건조기 : 식품공장 등에서 기존 열풍방식 대신 원통용기 내에 다수의 원통디스크를 회전축에 부착하여 증기를 공급·가열시켜 용기 내에 원료를 연속 투입·건조시키는 장치
- 폐열회수형 버너 : 보일러·요로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이용하여 공업로 등의 연소용 공기를 가열시키는 버너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4.14 이후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바. 投資稅額控除對象 物流施設의 範圍調整(규칙 §1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特定設備 投資稅額控除(5%)가 적용되는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 대상업종 : 화물터미널, 창고업, 연쇄화사업자	– 대상업종 확대 • 제조업 추가(파렛트만 허용) •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등 모든 물류산업으로 확대
– 대상설비 • 저온 보관고, 포장기, 일관수송용평파렛트 등 • 무인반송차, 컨베이어시스템, 자동창고시스템	– 대상설비 조정 •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설비에 한정하되 • 대상설비에 파렛타이저, 랙, 파렛트트럭(전동식)을 추가

(2) 改正理由

○ 기업의 物流費節減을 위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화물터미널, 창고업, 연쇄화사업자의 물류시설투자에 대해 投資稅額控除制度(투자금액의 5%)를 운영하고 있는바, 이번 개정에서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확대하고 대상 물류시설의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물류표준화를 유도하도록 하였다.

(가) 投資稅額控除對象 業種을 확대

물류표준화의 기본인 표준파렛트(가로, 세로 1,100㎜)의 보급촉진을 위해 제조업을 추가하였으며, 물류산업 중 화물터미널·창고업에 대하여만 허용하던 것을 화물운송업·화물취급업·화물포장 등 모든 물류산업으로 확대하여 물류산업의 육성을 지원하였다.

(나) 투자세액공제 대상설비 조정

물류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投資稅額控除對象 設備를 조정하였는바 무인반송차·컨베이어시스템·자동창고시스템의 경우 표준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설비로 한정하였으며, 물류표준화가 시급한 파렛타이저·랙·전동식 파렛트트럭을 추가하였다.

- 파렛타이저 : 물품을 파렛트에 적재하는 기계(기계식, 로봇식)
- 랙 : 파렛트화물을 보관·저장하는 선반시설
- 파렛트트럭 : 파렛트화물을 창고내·외에서 운반하는 트럭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4.14 이후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4. 株式買入選擇權(Stock Option)에 대한 稅制支援(法 §13의2·令 §11의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법인이 일정 요건을 갖춘 株式買入選擇權(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경우 – 임직원이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비과세 – 법인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을 배제

從 前	改 正
○ 주식매입선택권 부여시 — 과세하지 않음	○ (종전과 같음)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 법인세 과세(자기주식에 한함) • (주식의 시가−옵션행사가격) — 근로소득세 과세 • (주식의 시가−옵션행사가격)	○ 주식매입선택권 행사시 — 과세하지 않음. — 과세하지 않음.
○ 주식양도시 : 양도세 과세 • 상장주식 : 비과세 • 비상장주식 : 과세 (양도가액−옵션행사가격)	○ (종전과 같음)
	○ 주식평가보상(SAR : Stock Appreciation Rights)방식에 의한 스톡옵션에 대하여도 동일한 세제지원 — 약정된 주식매입시기에 주식을 실제로 매입하지 아니하고 약정된 주식매입가액(옵션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당해 회사의 주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 다만, 이 경우에도 스톡옵션의 세제지원요건은 모두 충족하여야 함.

2) 改正理由

○ 주식매입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 내에 자기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약정된 일정수량만큼 매수할 수 있는 권리(Stock Option)를 주는 제도로서 회사와 임직원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임직원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따라서, 기업의 창업을 촉진하여 기업의 활력을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 기업이 일정요건의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에 따른 과세상의 특례를 인정함으로써

— 벤처기업의 유능한 인력확보 및 상장·장외등록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세제지원이 되는 株式買入選擇權(스톡옵션)의 요지

(1) 대상기업

○ 상장법인 및 장외등록법인

○ 벤처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가능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지원업무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다음 업종을 제외한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따름)

— 농업, 수렵업, 임업 및 어업(A,B) 다만, 종묘생산업(01123) 및 농업용기계장비서비스업(01422)은 제외

— 금융 및 보험업(J)

— 법무, 회계관련 서비스업(7411, 7412)

— 전문 및 일반강습소(80904, 80905)

— 의료업, 수의업(851, 852)

—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 제3조의 여신금지업종

- 불건전오락기구 제조업(3694중)
- 콘도미니엄업(551중, 제주도 소재 업소의 시설자금은 제외)
- 건평 또는 대지 330m² 초과 식당업(5521중, 기관 구내식당,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소재 식당업은 제외)
- 주점업(5522) · 다방업(55232) · 전당업(65929중)
- 부동산업(70, 공장건물, 서민주택 임대업과 시장임대업 제외)
- 댄스홀, 댄스교습소(92191중)
- 전자오락실운영업(92193) · 헬스클럽(92431중)
- 골프장운영업(92434) · 당구장운영업(92437)
- 도박장운영업(92496) · 욕탕업(93092, 대중탕 제외)

(2) 스톡옵션 실시요건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세제지원

(가) 스톡옵션 실시사실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정관에 기재하고 증권관리위원회와 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할 것(증권거래법상의 요건과 같음)

* 신고받은 기관은 스톡옵션 실시사실을 공시

(나) 스톡옵션을 부여받기 전에 주주총회를 거쳐 스톡옵션의 수량·매입가액·대상자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당해 종업원과 약정한 것일 것

(다) 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닐 것

(라)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임직원

: 다음의 자를 제외한 모든 임직원

○ 부여받은 옵션을 모두 행사할 경우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임직원

* 임직원 1인당 스톡옵션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주식수를 기존소유분을 합하여 총발행주식수의 10% 이하로 제한한 것이며, 10%를 초과하여 옵션부여시 전체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배제

다만, 옵션을 분할하여 부여하는 경우(예 : 1차 7%, 2차 5%)에는 10%를 초과하게 되는 지분율(2차분 : 5%) 전부에 대하여 세제지원 배제

○ 대주주(총발행주식의 10% 초과소유자 및 10%에 미달하더라도 제1대주주인 자)인 임직원

○ 대주주와 세법상 특수관계 있는 임직원

(마) 옵션약정(주식매입) 가격요건

○ 신주발행방식의 경우

— 옵션부여일 현재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 중 높은 가액 이상

○ 자기주식 부여방식(상장법인만 가능)의 경우

— 옵션부여일의 시가 이상

* 시가 : 옵션부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평가액

(바) 연간 옵션행사가액(주식취득가액) 한도 : 5,000만원 이하

○ 비과세되는 근로소득금액이 5,000만원이 아니라 옵션행사가액이 5,000만원 이하이어야 함.

○ 연간 5,000만원을 초과하여 행사한 경우 행사가격 5,000만원까지만 세제지원

(사) 스톡옵션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

(아)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재직기간중에 스톡옵션을 행사(주식매입)할 것. 다만, 3년이 경과한 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3월 이내에 행사하는 것일 것

(3) 감면신청

○ 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은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스톡옵션을 행사한 날의 다음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까지 원천징수의무자(당해 법인)에게 제출

○ 퇴직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

〈참고〉 세제지원내용 예시

〔사례〕 회사주식 천만주를 시장가격과 관계없이 2만원에 매입할 수 있는 권리(옵션)를 임직원에게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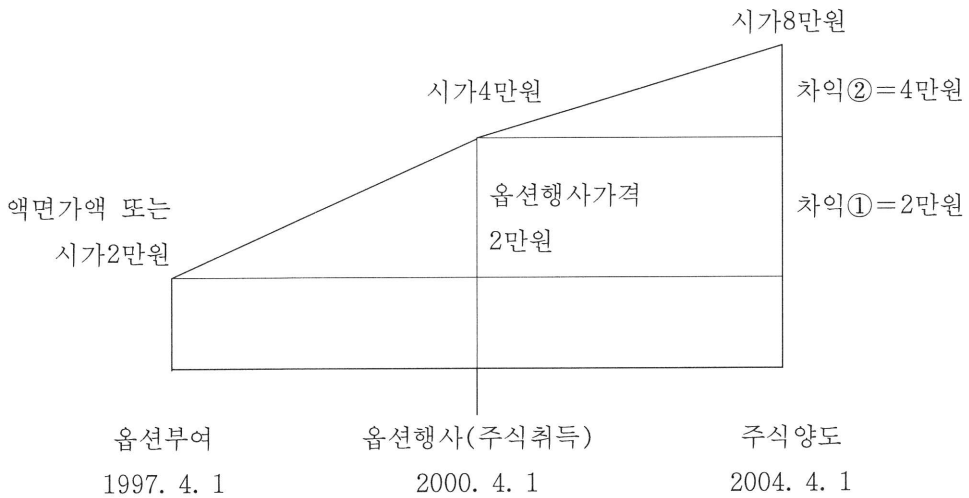

○ 옵션 부여시 : 과세문제 발생하지 않음.

○ 옵션 행사시 : 옵션프리미엄(①차익 2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현재는 상여금으로 근로소득세 과세)

○ 주식 처분시 : 상장·장외등록기업－양도차익(①+②)에 대해 비과세
기타기업－양도차익(①+②)에 대해 과세
* 세율 20%(중소기업은 10%)

5. 事業者의 課標陽性化 유도

가. 信用카드 및 POS去來 稅額控除制度 신설(法 §92의5, 令 §88의5, 規則 §45의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신용카드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POS)에 의한 매출액 증가분의 50%가 당해 연도의 총수입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계산방식(사업장별로 적용)

從 前	改 正
	• 세액공제액＝산출세액× $\frac{\text{신용카드등에 의한 매출증가분}\times 50\%}{\text{총수입금액}}$ * 매출액 증가분은 총수입금액 증가분을 한도로 하며,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증가분을 한도로 함. * POS세액공제를 한 경우 신용카드 세액공제는 배제 ○ 대상자 : 직전과세연도 종료일까지 1년 이상 계속하여 — 신용카드가맹점으로 당해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 POS시스템을 본부 또는 VAN사업자와 연결하여 당해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 POS거래 세액공제 적용요건 — 본부 등과 공동으로 최초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개시일부터 3월(1997연도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997. 5. 31) 내에 세액공제신청서 및 직전연도 매출기록을 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 본부 등은 가맹사업자별 매출기록을 연 2회 제출 • 1월～6월 매출분 : 7.31 • 7월～12월분 매출분 : 익년 1. 31 ○ POS거래 세액공제 배제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관한 국세청장의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 제출한 매출기록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매출되지 아니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본부 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의한 매출액이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실제 매출액의 100분의 95에 미달하는 경우

(2) 改正理由

○ 신용카드 등을 통한 거래시 세부담 증가액의 일정액을 경감함으로써 신용카드 등에 의한 거래촉진과 성실신고를 도모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세액공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는 매출기록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 세액공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매출기록의 중대한 오류에 대해 총리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收入增加稅額控除制度 新設(法 §92의5, 令 §88의5)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당해 연도 신고수입금액이 기준수입금액(직전연도 또는 직전전연도 수입금액 중 큰 금액)보다 20% 이상 증가한 경우 — 20%초과증가분의 30%가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계산방식(사업장별로 적용)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 × $\frac{〔신고수입금액 - 기준수입금액 \times 1.2〕 \times 0.3}{총수입금액}$ * 신고수입금액계산시 신용카드·POS거래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는 신용카드·POS거래 증가분을 차감하여 계산 * 세액공제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 증가분을 한도로 함. ○ 대상자 : 종합소득확정신고자 중 기장신고자로서 직전과세기간말까지 1년 이상 당해사업을 계속한 개인 사업자 * 부동산임대소득자 포함

(2) 改正理由

○ 수입금액이 크게 증가한 사업자에 대하여 세부담 증가액의 일정액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의 성실신고를 도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참고〉 공제대상 수입금액(거래금액) 증가분의 계산사례

구 분		직전년도 수입금액	당해연도의 사례				
			A	B	C	D	E
수입금액	수입금액	100	130	130	130	110	90
	신용카드	50	80	50	65	65	55
중복고려전 공제대상	수입금액	—	10	10	10	—	—
	신용카드	—	30	—	15	10	—
	계	—	40	10	25	10	—
중복고려후 공제대상	수입금액	—	0	10	—	—	—
	신용카드	—	30	—	15	10	—
	계	—	30	10	15	10	—

6. 貯蓄增大 支援

가. 家計長期貯蓄 신설(法 §80의3, 令 §75의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다음의 저축(가계장기저축)에서 발생하는 利子·配當所得은 비과세하고, 農特稅도 비과세 — 취급금융기관 및 저축의 종류 : 은행,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상호신용금고, 농·수·축협단위조합 등의 적금·신탁 또는 보험(공제) * 증권회사 제외 — 1세대 1통장 — 저축불입기간 : 3년 이상 5년 이하 — 저축불입한도 : 매월 1만원~100만원 (3개월마다 3만원~300만원)

從　　前	改　　正
	○ 동일 저축기관에는 저축불입한도 내에서 적금·신탁 또는 보험(공제)을 중복가입 가능 ○ 매월 1만원(3월마다 3만원) 이상의 저축불입금액이 6월 이상 계속 납입되지 않는 경우 해재된 것으로 봄. ○ 가계장기저축을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는 먼저 가입한 것에 대하여만 비과세함. — 다만, 결혼 또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부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2통장 이상이 된 경우는 예외 ○ 저축계약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되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 * 부득이한 사유 : 사망·해외이주, 휴·폐업, 3월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등

(2) 改正理由

○ 1996년 하반기에 경기의 하강국면이 계속되는 가운데 물가, 선장, 국제수지 적자 등 우리 경제의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소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저축이 감소되는 등의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저축증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조세지원저축인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을 도입하였음.

○ 가계장기저축은 소비의 주체를 가계로 보아 가계의 소비를 저축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1세대당 1통장의 적립식 저축으로 한정하고, 비과세 및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개인연금저축 및 장기주택마련저축 등과 균형을 고려하여 불입한도를 매월 100만원 수준으로 하고 저축기간을 3년 내지 5년으로 함.

○ 기존의 조세지원 저축은 저축 종류에 따라 저축기관을 차별하고 있으나 가계장기저축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고 모든 저축취급기관이 가계장기저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되, 증권회사의 경우에는 근로자 주식저축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제외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0. 21～1998. 12. 31 사이 저축계약 체결분에 대하여 적용함.

나. 勤勞者 株式貯蓄 新設(法 §80의4, 令 §75의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다음의 저축(근로자주식저축)에 대하여 불입액의 5%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控除하고, 利子·配當所得 비과세 및 農特稅 비과세 – 가입대상 : 근로자 – 저축한도 : 연간 총급여액의 30% (1천만원 한도) – 저축기간 : 1년 이상 5년 이하 – 투자대상 : 주식 – 취급기관 : 증권회사 ○ 연간 총급여액 : 저축계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까지 1년간의 총급여액 – 직전월까지 1년 미만 근속한 경우는 근속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 직전월까지 1월 미만 근속하거나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취업한 경우는 계약일이 속하는 월에 받거나 받기로 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한 금액 ○ 1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 비과세를 배제하고 기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되 – 부득이한 사유로 해지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 부득이한 사유 : 거주자의 사망, 해외이주, 퇴직, 질병, 사업장의 휴·폐업 등

(2) 改正理由

○ 소비생활의 합리화와 저축증대를 유도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0. 21～1997. 12. 31기간 계약체결 및 저축불입분에 한하여 적용

7. 農漁民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

가. 農·水·畜協 등 預託金·出資金에 대한 利子·配當所得 非課稅 時限延長 (1994. 12 개정법률 부칙 §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단위 농·수·축협 등 조합원이 지급받는 예탁금의 이자 또는 출자금의 배당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10%로 하되, 다음과 같이 유예기간 인정 – 1996년까지 : 비과세 – 1997~1999년까지 : 5%	○ 非課稅 時限을 2년간 연장 – 1998년까지 : 비과세 – 1999년 : 5%

(2) 改正內容

○ 농·어민 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8. 其他 補完事項

가. 工場地方移轉時 稅制支援對象『工場移轉』의 範圍擴大(令 §3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대도시공장을 地方으로 移轉하는 경우에 양도세 면제 등 세제지원 – 지방이전 후 생산품목이 달라지는 경우는 세제지원 배제	– 대도시공장과 이전 후의 지방공장간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 표준산업분류상 동일 「세세분류내」이면 세제지원 허용

(2) 改正理由

○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을 촉진시켜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地方으로 이전하는 工場에 대해서는 양도세면제, 지방이전준비금 손비인정(공장가액의 15%), 투자세액공제(3~5%) 등 각종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의 개념에 초점을 두어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에서 생산하는 品目과 이전 후의 지방공장에서 생산하는 品目이 동일한 경우에만 세제지원

을 허용하여 왔다.

이번 改正에서는 이전 전의 대도시공장과 이전 후의 지방공장간 생산품목이 다른 경우에도 業種의 同一性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세제지원을 받도록 하였는 바, 업종의 동일성 기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細細分類를 기준으로 하여 동일 세세분류 내이면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이전완료분부터 적용

나. 外投企業에 대한 最低限稅 適用方法 補完(1990. 12 개정법부칙 §1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最低限稅 제도 — 최저한세율 • 법인 : 감면전 과세표준의 12% • 개인 : 감면전 산출세액의 30% — 대상감면 • 조감법, 외자도입법상 소득세·법인세 감면 • 다만, 외자도입법상 외투기업 감면에 대해서는 1996. 12까지 적용 유예 (1990. 12 개정법 부칙)	— 1997년부터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되 — 1996. 12. 31까지 외국인투자 인가신청·신고기업은 잔존감면기간까지 최저한세 적용유예

(2) 改正理由

○ 외자도입법상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外國人投資企業에 대하여는 고도기술사업의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외국인투자비율)의 100%, 그후 3년간 50%를 감면하며,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의 경우 3년간 소득세·법인세(외국인투자비율)의 100%, 그후 2년간 50%를 감면하고 있다. 이와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적용받는 감면에 대하여는 1996. 12까지 最低限稅 적용을 猶豫하여 왔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내국기업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외투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되, 1996. 12. 31까지 외국인투자의 인가신청·신고를 한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잔존감면기간까지 계속 最低限稅 적용을 유예하도록 하였다.

다. 醫療事業에 대한 稅制支援 擴大(令 §2, 별표 6)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中小企業 대상업종 : 제조, 광업, 건설, 도·소매, 운수업 등	○ 의료업(종업원수 : 병원 100인, 의원 50인 이하)을 추가
○ 醫療脆弱地域에서 병원(치과·한방 병원 포함), 종합병원 개설시	
— 세액감면 : 5년간 50% 감면	
— 분원 투자세액공제 : 건물·의료기기투자액의 10%(외산 5%)	
※ 의료취약지역의 범위 : 27개군 지역	— 의료취약지역을 60개 군지역으로 확대(39개 군지역 추가, 기존 6개 군지역 제외)
• 경기 : 가평군	• 가평군 제외, 연천군 추가
• 강원 : 홍천군, 횡성군, 양구군	• 홍천군 제외, 양양·화천·인제·고성·영월·평창군 추가
• 충북 : 단양군, 진천군	• 청원·옥천·보은·괴산군 추가
• 충남 : 서천군, 금산군	• 서천군 제외, 청양·부여·태안군 추가
• 전북 : 고창군, 진안군, 부안군	• 고창군 제외, 순창·장수·완주·무주·임실군 추가
• 전남 : 동광양시(읍·면), 화순군, 진도군, 함평군, 영암군, 담양군, 장흥군	• 동광양시 제외, 장성·신안·여천·곡성·구례·고흥·완도·강진군 추가
• 경북 : 성주군, 고령군, 봉화군, 청도군, 예천군, 영양군	• 칠곡·군위·울릉·청송·울진·영덕군 추가
• 경남 : 사천군, 남해군, 고성군	• 사천군 제외, 산청·함양·의령·하동·함안·합천군 추가

(2) 改正理由

(가) 중소기업의 범위에 의료업 추가

中小病院의 의료기기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투자준비금 또는 투자세액 공제를 자동적용받고, 기타 접대비한도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는 中小企業의 범위에 의료업을 추가하였다. 중소병원의 범위는 병원의 경우 종업원수 100인, 의원의 경우 종업원수 50인 이하이다.

(나) 의료취약지역의 범위 확대

전국민이 골고루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醫療脆弱地域에서 병원·분원개설시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 감면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의료취약지역의 범위를 1996. 6 현재 전국 군지역 평균의료기관수

(14개) 또는 병상수(184개)보다 적은 군지역으로 전면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이 종전 27개 군지역에서 60개 군지역으로 대폭 확대되었다.

㈐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병원개설분부터 적용(기존 개설분은 종전규정 적용)

— 투자세액공제는 1997. 4. 14 이후 투자개시분부터 적용

라. 國際大會 등 開催 支援(法 §60, §61, §100, §103, §111, §11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1999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조직위를 공공법인 및 기부금 전액 손비인정단체에 추가 —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전입시 전액 손비인정 — 조직위원회 등이 수입하는 국내제작곤란 대회용품에 대해 관세경감,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조직위원회 작성서류 인지세면제
〈新 設〉	○ 한국무역협회가 수입하는 2000 ASEM 회의용 컨벤션센터 제작·건설 및 회의용품 중 국내제작 곤란물품에 대해 관세경감,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면제
○ 1997 무주·전주 동계U대회 — 조직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국내제작곤란 대회 용품에 대해 관세경감, 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면제	— 경기대회관련 시설주가 수입하는 대회용품에 대해서도 감면

(2) 改正理由

○ 『1999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및 『2000 ASEM회의』 등 국제대회·국제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기 위하여 올림픽, 아시아경기대회 등과 같은 수준의 각종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공공법인, 준비금관련사항은 1997.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기부금, 인지세관련사항은 1997. 1. 1 이후 지출분, 작성분부터 적용

○ 관세, 부가세, 특소세관련사항은 1997. 1. 1 이후 수입신고분(1997무주·전주동계 U대회관련사항은 1996. 12. 30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마. 取得稅 減免對象 擴大(法 §114)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시 지방세감면 대상재산의 범위를 달리 운영 – 취득세 : 부동산 – 등록세 : 재산	○ 감면대상을 「財産」으로 일치 – 취득세감면대상에 차량, 건설기계, 광업권 등을 추가

(2) 改正理由

○ 창업중소기업, 중소기업간 통합, 법인전환시 地方稅減免 대상재산의 범위를 달리 운영하고 있는 것을 「財産」으로 일치시켜 취득세감면대상에 차량, 건설기계, 광업권 등을 추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취득분(창업중소기업은 창업분)부터 적용

바. 特例再評價實施 法人의 公開時限 延長(令 §109)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구조감법상의 기업공개 촉진을 위한 자산재평가 特例規定에 따라 – 기업공개를 전제로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 재평가일로부터 8년 이내에 기업을 공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로 재평가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 과세	– 특례재평가 법인의 기업공개 시한을 2년간 추가 연장(8년→10년)

(2) 改正理由

○ 구조감법상 기업공개 촉진을 위한 資産再評價 特例規定을 운영하였는바 동 특례규정에 따라 기업공개를 전제로 재평가를 실시한 기업이 재평가일로부터 8년 이내에 기업을 公開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임의로 재평가한 것으로 보아 평가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번 改正에서는 기업공개가 어려운 최근의 증권시장여건을 감안하여 특례재평가 법인의 企業公開時限을 8년에서 10년으로 2년간 추가연장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6. 12. 31 이후 기업공개시한 도래분부터 적용

사. 軍 PX용 物品에 대한 免稅 對象擴大(令 §10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軍 PX용 물품에 대한 특소세, 주세의 면제대상 – 공기조절기 : 창문형 및 벽걸이형만 면세 (스탠드형 및 멀티형은 제외) – 주류 : 영내에서 음용되는 것에 한함 (영외반출을 허용하지 않음)	○ 면제대상을 현실에 맞게 확대 – 스탠드형 및 멀티형 공기조절기도 면세 – 장교, 하사관 등 영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영외반출시도 면제

(2) 改正理由

○ 특소세, 주세가 면제되는 軍 PX용 물품 중 공기조절기, 주류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확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제조장반출분부터 적용

아. 公共法人 範圍擴大(法 별표)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법인세 특례세율(18%, 25%)이 적용되는 公共法人의 범위 – 주택공사, 도로공사 등 142개 법인	– 공공법인에 예금보험공사를 추가

(2) 改正理由

○ 법인세 특례세율(18%, 25%)이 적용되는 公共法人의 범위에 예금보험공사를 추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자. 外國事業者에 대한 附加價値稅 還給制度 導入(法 §101, §96의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新 設〉	○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가세를 還給 — 환급대상 사업자 :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환급대상 재화 또는 용역 :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기·통신용역, 부동산 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취득·수리비 등(접대비 제외)

(2) 改正理由

○ 대부분의 OECD國家의 경우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外國事業者에 대하여 附價稅를 還給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주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가) 還給對象 재화·용역의 범위

음식·숙박용역, 광고용역, 전기·통신용역, 부동산 임대용역, 국내사무소용 건물·구축물 취득·수리비와 사무용 기구·비품 및 당해 기구·비품의 임대용역이며, 접대비 등은 제외된다.

(나) 還給節次

매년 거래분을 익년도 6월 30일까지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거래내역서, 법인사업자증명원, 세금계산서사본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진위여부를 확인한 후 12월말까지 환급해 주도록 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7. 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차. 國際金融機構 發行債券에 대한 印紙稅 免除(法 §111)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印紙稅 면제대상 서류 — 농·수·축협 융자서류 등	—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채권 발행 관련서류에 대하여도 인지세 면제

(2) 改正理由

○ 印紙稅가 면제되는 서류의 범위에 국제금융기구가 발행하는 채권 및 채권발행 관련서류를 추가하였다.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작성분부터 적용

카. 稅金優待貯蓄의 滿期支給資料 提出 追加(租減令 §75, §76의5, 規則 §40의3)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세금우대저축은 저축의 계약체결 및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만기지급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불분명함.	○ 다음의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 만기지급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분명히 규정함. — 장기주택마련저축 — 소액가계저축 — 세금우대 예탁금·출자금

(2) 改正理由

○ 종전에는 일부 세금우대저축에 대하여는 만기지급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나

— 이를 분명히 규정함으로써 당해 저축의 만기지급 자료의 제출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제거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부터 적용함.

타. 같은날 重複加入한 貯蓄의 判定基準 마련(租減令 §75의3, 規則 §40의5, §42의2)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가계장기저축 통장이 중복되는 경우 저축계약을 가장 먼저 체결한 것을 가계장기저축으로 보도록 하였으나 — 저축계약을 체결한 날이 같은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도록 함.	○ 가계장기저축을 같은날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에 대한 판정기준을 국세청장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에서 정함.
〈新 設〉	○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을 같은날 중복하여 가입한 경우 세금우대통장의 판정기준

從 前	改 正
	— 저축가입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분기 종료일까지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자가 선택한 통장 • 다른 통장의 저축계약을 해지하거나 • 다른통장에 대한 비과세적용 배제를 신청 ○ 지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통장을 세금우대통장으로 간주 — 저축계약 체결시 저축불입금액이 가장 많은 통장 — 저축계약 체결시 저축불입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통장

(2) 改正理由

○ 1세대1통장을 요건으로 하는 가계장기저축 및 가계생활자금저축의 중복가입 판정기준을 시행규칙에서 명확히 규정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자료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함.

파. 中小企業創業投資組合 등에 귀속되는 配當所得의 課稅方法 改善(租減法 §83③)

(1) 改正內容

從 前	改 正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받는 배당소득 — 당해 창업자가 상장(장외등록)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금액과 관계없이 당연종합과세	— 상장법인의 배당소득과 마찬가지로 부부합산금융소득이 기준금액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

(2) 改正理由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창업자에게 출자하는 경우 이를 상장주식을 보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함으로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의 출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

(3) 適用時期 및 適用例

○ 1997. 1. 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第2部

統計資料

[표 1] 조세 체계의 변천

가. 국 세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일반소득세					49.7.15 소득세로 새로이 공포								
소득세					49.7.15								
법인세					49.11.7								
특별법인세		46.12											
임시토지수득세							51.9.25						
토지세													
지세							51. 9. 25 임시토지수득세로 시행정지						
광세													
임시외환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50.4.8							
자동차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투기억제세													
임시특별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취인소특별세		46.1											
자본이자세				48.4									
사업세					49.8.13 영업세로 통합								
임시이득세		46.12											
외화채특별세				48.4									
이익배당세					49.10								
공사채이자세				48.4									
법인자본세					49.10								
등록세													
조선은행권발행세						50.4							
인지세													
취인세		46.1											
특별입장세				48.5									
마권세													
광고세		46.8											
건축세		46.8											
면허세						50.3.10				54.3.31 지방세로 이양			
증권거래세													
주세			47.11 음료세로 통합		49.10.21에 분리								
청량음료세			47.11 음료세로 통합		49.10.21에 분리		50.12.1						
음료세			47.11에 주세, 청량음료세를 통합			49.10.21							
골패세						50.12.1 물품세로 통합							
물품세													
직물세										54.3.31 물품세로 통합			
직물류세													
사탕소비세		46.8											
입장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특별행위세					49.10								
영업세					49.8.13								
석유류세													
전화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방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일반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법인세													
임시토지수득세			60.12.30 토지세로 통합										
토지세				60.12.30	62.1.1 지방세로 이양								
지세													
광세					62.1.1 지방세로 이양								
임시외환특별세	58.8.28			61.1.1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59.1.1			62.1.1 지방세로 이양								
자산재평가세	58.1.2												
부동산투기억제세											68.1.1		
임시특별이득세						63.12.16	64.6.12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취인소특별세													
자본이자세													
사업세													
임시이득세													
외화채특별세													
이익배당세													
공사채이자세													
법인자본세													
등록세													
조선은행권발행세													
인지세													
취인세													
특별입장세													
마권세					62.1.1 지방세로 이양								
광고세													
건축세													
면허세													
증권거래세						63.1.1							
주세													
청량음료세													
음료세													
골패세													
물품세													
직물세													
직물류세													70.1.1
사탕소비세													
입장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62.1.1 지방세로 이양								
전기가스세													
특별행위세													
영업세													
석유류세					62.1.1								
전화세											68.1.1 시행과 동시에 폐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58.8.28				62.1.1								
방위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일반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법인세													
임시토지수득세													
토지세													
지세													
광세													
임시외환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투기억제세					75.1.1 소득세로 통합								
임시특별이득세													
부당이득세			73.1.14										
토지초과이득세													
취인소특별세													
자본이자세													
사업세													
임시이득세													
외화채특별세													
이익배당세													
공사채이자세													
법인자본세													
등록세							77.11 지방세로 이양						
조선은행권발행세													
인지세													
취인세													
특별입장세													
마권세													
광고세													
건축세													
면허세													
증권거래세		72.1.1						78.12.5					
주세													
청량음료세													
음료세													
골패세													
물품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직물세													
직물류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사탕소비세													
입장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통행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유흥음식세							77.1.1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전기가스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특별행위세													
영업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석유류세							77.6.30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시행으로 폐지						
전화세				74.1.1									
부가가치세								77.7.1					
특별소비세								77.7.1					
교육세													
방위세					75.7.16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일반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특별법인세													
임시토지수득세													
토지세													
지세													
광세													
임시외환특별세													
상속세													
증여세													
자동차세													
자산재평가세													
부동산투기억제세													
임시특별이득세													
부당이득세													
토지초과이득세							90.1.1						
취인소특별세													
자본이자세													
사업세													
임시이득세													
외화채특별세													
이익배당세													
공사채이자세													
법인자본세													
등록세													
조선은행권발행세													
인지세													
취인세													
특별입장세													
마권세													
광고세													
건축세													
면허세													
증권거래세													
주세													
청량음료세													
음료세													
골패세													
물품세													
직물세													
직물류세													
사탕소비세													
입장세													
통행세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특별행위세													
영업세													
석유류세													
전화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육세							90.12.31						
방위세							90.12.31						
교통세											94.1.1		
농어촌특별세											94.7.1		

자료 :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나. 지방세(도세)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51.6.2						
	사업세부가세					49.12.12								
	취인소득세부가세		46.10											
	영업세부가세					49.12.12		51.6.2			54.4.14 부활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자동차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임야세													
(보통세)[1]	제1종소득세				48.7									
	특별소득세				48.7									
	호별세													
	가옥세													
	어업세													
	도축세													
	도장세				48.7 도축세와 통합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52.9.28 취득세로 개명					
	취득세								52.9.28					
	면허세										54.4.14 국세에서 이양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주민세													
	등록세													
	담배판매세													
	면세지특별지세													57.2.12
	입정세							51.6.2						
	특별사업세					49.12.12								
	특별행위세							51.6.2						
	수렵세							51.6.2						57.2.12
	동력세							51.6.2						
	선박세							51.6.2	52.9.28 선세로 개명					
	선세								52.9.28					
	금고세								52.9.28 시,읍,면세에서 이양					57.2.12
	접객인세								52.9.28 시,읍,면세에서 이양					57.2.12
	광고세								52.9.28					57.2.12
	전화세								52.9.28					57.2.12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66.8.3				
	소득세부가세				61.12.2					66.8.3				
	법인세부가세				61.12.2					66.8.3				
	자동차부가세	58.12.29			61.12.8 자동차세로 통합									
	광세부가세				61.12.8									
독립세	임야세				61.12.8									
(보통세)	제1종소득세													
	특별소득세													
	호별세				61.12.8									
	가옥세				61.12.8 재산세로 통합									
	어업세				61.12.8 영업세(국세)로 통합									
	도축세													
	도장세													
	차량세				61.12.8 자동차세로 통합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61.12.2 국세에서 이양									
	유흥음식세				61.12.2 국세에서 이양									
	마권세				61.12.2 국세에서 이양									
	주민세													
	등록세													
	담배판매세													
	면세지특별지세													
	입정세													
	특별사업세													
	특별행위세				61.12.8 영업세(국세)로 통합									
	수렵세													
	동력세				61.12.8									
	선박세													
	선세				61.12.8 재산세로 통합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자동차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임야세													
(보통세)	제1종소득세													
	특별소득세													
	호별세													
	가옥세													
	어업세													
	도축세						76.12.31 시군세로 이양							
	도장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76.12.31 시군세로 이양							
	유흥음식세						76.12.31 국세로 이양							
	마권세						76.12.31 시군세로 이양							
	주민세			73.3.12			76.12.31 시군세로 이양							
	등록세						76.12.31 국세에서 이양							
	담배판매세													
	면세지특별지세													
	입정세													
	특별사업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													
	선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자동차부가세													
	광세부가세													
독립세	임야세													
(보통세)	제1종소득세													
	특별소득세													
	호별세													
	가옥세													
	어업세													
	도축세													
	도장세													
	차량세													
	부동산취득세													
	취득세													
	면허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마권세					88.12.26 시군세에서 이양								
	주민세													
	등록세													
	담배판매세													
	면세지특별지세													
	입정세													
	특별사업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													
	선세													
	금고세													
	접객인세													
	광고세													
	전화세													
목적세	공동시설세								91.12.14 시군세에서 이양					
	지역개발세								91.12.14					

주 : 1) 1991.12.14부터 독립세를 보통세라 함.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재무부, 『한국세제사』.

다. 지방세(시·군세)[1]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4]	1953	1954	1955	1956	1957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51.6.2						
	사업세부가세					49.12.12								
	영업세부가세					49.12.12		51.6.2			54.4.14 부활			
	광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2]		46.10.15											
	자동차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52.9.28 취득세부가세로 개명					
	특별사업세부가세					49.12.12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2]													57.2.12
	제1종소득세부가세				48.7									
	특별소득세부가세				48.7									
	차량세부가세				48.7 차량세의 신설로 폐지			51.6.2 부활						
	임야세부가세							51.6.2						
	도축세부가세							51.6.2						
	어업세부가세							51.6.2						
	동력세부가세							51.6.2						
	취득세부가세								52.9.28					
	면허세부가세										54.4.14			
	특별행위세부가세								52.9.28					
	수렵세부가세								52.9.28					57.2.12
	선세부가세								52.9.28					
	금고세부가세								52.9.28					57.2.12
	접객인세부가세								52.9.28					57.2.12
	광고세부가세								52.9.28					57.2.12
	전화세부가세								52.9.28					57.2.12
	자동차세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주민세부가세													
독립세	유흥세[2]		46.10.15											
	잡종세[3]		46.10.15 축견세와 선세만을 남기고 폐지											
	교통세(서울,부산)[2]													
	시가지계획특별세(서울)[2]					49.12.12								
	부·읍·면세(특별호세)					49.12.12								
	축견세		46.10.15 잡종세					51.6.2						
	선세		46.10.15 잡종세						52.9.28 도세로 이양					
	차량세				48.7				52.9.28 도세로 이양					
	특별영업세					49.12.12		51.6.2						
	금고세							51.6.2	52.9.28 도세로 이양					
	접객인세							51.6.2	52.9.28 도세로 이양					
	벌목세										54.4.14			57.2.12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주민세													
	자동차세													
	마권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66.8.3				
	광세부가세				61.12.8									
	취인소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58.12.29			61.12.8 자동차세(도세부가세)로 통합									
	소득세부가세				61.12.2					66.8.3				
	법인세부가세				61.12.2					66.8.3				
도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61.12.8									
	가옥세부가세				61.12.8 재산세로 통합									
	부동산취득세부가세													
	특별사업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제1종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61.12.8 자동차세(부가세)로 통합									
	임야세부가세				61.12.8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61.12.8 영업세(국세)로 통합									
	동력세부가세				61.12.8									
	취득세부가세													
	면허세부가세													
	특별행위세부가세				61.12.8 영업세(국세)로 통합									
	수렵세부가세													
	선세부가세				61.12.8 재산세로 통합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61.12.2 국세에서 이양									
	유흥음식세부가세				61.12.2 국세에서 이양									
	주민세부가세													
독립세	유흥세													
	잡종세													
	교통세(서울, 부산)				61.12.8 국세로 이양									
	시가지계획특별세(서울)													
	부·읍·면세(특별호세)													
	축견세													
	선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금고세													
	접객인세													
	벌목세													
	재산세				61.12.8									
	농지세				61.12.2 국세에서 이양									
	도축세													
	주민세													
	자동차세													
	마권세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61.12.8									
	도시계획세				61.12.8									
	사업소세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5]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특별사업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제1종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76.12.31 도세인 도축세의 시·군세 이양으로 폐지							
	어업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76.12.31							
	면허세부가세						76.12.31							
	특별행위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선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76.12.31 도세인 자동차세의 시·군세 이양으로 폐지							
	유흥음식세부가세						76.12.31 국세로 이양							
	주민세부가세			73.3.12			76.12.31 도세인 주민세의 시·군세 이양으로 폐지							
독립세	유흥세													
	잡종세													
	교통세(서울, 부산)													
	시가지계획특별세(서울)													
	부·읍·면세(특별호세)													
	축견세													
	선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금고세													
	접객인세													
	벌목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76.12.31 도세에서 이양							
	주민세						76.12.31 도세에서 이양							
	자동차세						76.12.31 도세에서 이양							
	마권세						76.12.31 도세에서 이양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세													
	담배판매세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76.12.31							

주 : 1) 해방당시의 지방세는 도세, 부세, 읍·면세의 체계로 구성(부·읍·면세가 지금의 시·군세에 해당). 부세 17개, 읍·면세 12개 세목임.
2) 부세에만 존재.
3) 해방당시의 잡종세에는 배우세, 당구대세, 피아노세 등의 11개 세목이 있었으나, 1946.10.15의 개정으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국세부가세	지세부가세													
	사업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													
	광세부가세													
	취인소득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도세부가세	호별세부가세													
	가옥세부가세													
	부동산취득세부가세													
	특별사업세부가세													
	면세지특별지세부가세													
	제1종소득세부가세													
	특별소득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취득세부가세													
	면허세부가세													
	특별행위세부가세													
	수렵세부가세													
	선세부가세													
	금고세부가세													
	접객인세부가세													
	광고세부가세													
	전화세부가세													
	자동차세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주민세부가세													
독립세	유흥세													
	잡종세													
	교통세(서울,부산)													
	시가지계획특별세(서울)													
	부·읍·면세(특별호세)													
	축견세													
	선세													
	차량세													
	특별영업세													
	금고세													
	접객인세													
	벌목세													
	재산세													
	농지세													
	도축세													
	주민세													
	자동차세													
	마권세					88.12.26 도세로 이양								
	토지과다보유세			86.12.31			89.6.16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폐지							
	종합토지세						89.6.16							
	담배소비세					88.12.26								
	담배판매세	84.12.24				88.12.26 담배소비세의 신설로 폐지								
목적세	(소방)공동시설세								91.12.14 도세로 이양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로 9개 세목이 폐지되고 축견세와 선세만이 남음.

4) 도세의 모든 세목에 부가세를 신설.

5) 시·군의 부가세제도를 폐지.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재무부, 『한국세제사』.

라. 지방세(특별시·광역시세, 구세)

(1) 특별시·광역시세[1]

		1945~87	1988[2]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보통세	취득세		88.4.6								
	등록세		88.4.6								
	주민세		88.4.6								
	자동차세		88.4.6								
	농지세		88.4.6								
	도축세		88.4.6								
	마권세		88.4.6	88.12.26 도세로 이양							
	담배소비세		88.12.26								
목적세	공동시설세		88.4.6								
	도시계획세		88.4.6								
	지역개발세					91.12.14					

(2) 구세

		1945~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보통세	면허세		88.4.6								
	재산세		88.4.6								
	토지과다보유세		88.4.6	89.6.16 종합토지세의 신설로 폐지							
	종합토지세			89.6.16							
목적세	사업소세		88.4.6								

주 : 1) 1995. 1. 1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명칭 변경.

2) 1988. 4. 6 이전의 경우 특별시·직할시세는 도세와 시군세를 모두 합한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1988. 4. 6에 구가 자치구로 됨에 따라 이전의 특별시·직할시세 중 면허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사업소세가 구로 이전됨.

자료 :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한국지방행정사』; 재무부, 『한국세제사』.

[표 2] 연도별 조세 수입

(단위 : 백만환, %)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7	1958	1959	1960
조세계	금액	327	589	5,050	13,316	27,583	63,796	134,431	145,339	184,420	265,860	295,625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계	금액	293	589	4,831	12,703	25,992	57,844	120,543	133,561	167,802	243,557	272,714
	구성비	89.6	100.0	95.7	95.4	94.2	90.7	89.7	91.9	91.0	91.6	92.2
내국세	금액	130	400	3,501	8,308	18,481	42,002	88,080	93,552	116,902	185,262	198,212
	구성비	39.9	67.9	69.3	62.4	67.0	65.8	65.5	64.4	63.4	69.7	67.0
교통세	금액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관세	금액	14	34	452	1,470	3,511	9,988	22,462	23,809	29,692	35,595	51,502
	구성비	4.4	5.8	8.9	11.0	12.7	15.7	16.7	16.4	16.1	13.4	17.4
방위세	금액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교육세	금액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	—	—
	구성비	—	—	—	—	—	—	—	—	—	—	—
전매익금	금액	148	155	878	2,925	4,000	5,854	10,000	16,200	21,208	22,700	23,000
	구성비	45.3	26.3	17.4	22.0	14.5	9.2	7.4	11.1	11.5	8.5	7.8
지방세	금액	34	—	219	613	1,591	5,952	13,888	11,778	16,618	22,303	22,911
	구성비	10.4	—	4.3	4.6	5.8	9.3	10.3	8.1	9.0	8.4	7.8

[표 2] 연도별 조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조세계	금액	28,432	37,656	43,258	50,680	69,465	112,587	153,033	229,993	313,65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계	금액	25,852	32,477	35,909	41,951	58,231	96,639	139,241	210,688	287,073
	구성비	90.9	86.2	83.0	82.8	83.8	85.8	91.0	91.6	91.5
내국세	금액	17,901	21,395	24,370	28,911	41,787	70,469	103,828	156,407	218,099
	구성비	63.0	56.8	56.3	57.0	60.2	62.6	67.8	68.0	69.5
교통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관세	금액	5,306	6,847	6,708	8,509	12,847	18,003	25,413	37,881	44,724
	구성비	18.7	18.2	15.5	16.8	18.5	16.0	16.6	16.5	14.3
방위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교육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전매익금	금액	2,646	4,235	4,831	4,530	3,598	8,167	10,000	16,400	24,250
	구성비	9.3	11.2	11.2	8.9	5.2	7.3	6.5	7.1	7.7
지방세	금액	2,580	5,179	7,349	8,729	11,234	15,948	13,792	19,305	26,584
	구성비	9.1	13.8	17.0	17.2	16.2	14.2	9.0	8.4	8.4

[표 2] 연도별 조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조세계	금액	398,056	492,866	522,946	652,626	1,021,659	1,549,769	2,313,313	2,959,257	4,095,513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계	금액	364,823	453,055	476,346	578,492	913,673	1,390,979	2,092,747	2,622,682	3,652,262
	구성비	91.7	91.9	91.1	88.6	89.4	89.8	90.5	88.6	89.2
내국세	금액	283,799	355,496	374,340	439,121	717,976	1,012,291	1,370,532	1,675,180	2,252,546
	구성비	71.3	72.1	71.6	67.3	70.3	65.3	59.2	56.6	55.0
교통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관세	금액	50,924	52,187	59,106	82,371	126,697	181,004	275,512	385,870	646,425
	구성비	12.8	10.6	11.3	12.6	12.4	11.7	11.9	13.0	15.8
방위세	금액	—	—	—	—	—	62,184	268,703	341,632	473,291
	구성비	—	—	—	—	—	4.0	11.6	11.5	11.6
교육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전매익금	금액	30,100	45,372	42,900	57,000	69,000	135,500	178,000	220,000	280,000
	구성비	7.6	9.2	8.2	8.7	6.8	8.7	7.7	7.4	6.8
지방세	금액	33,233	39,811	46,600	74,134	107,986	158,790	220,566	336,575	443,251
	구성비	8.3	8.1	8.9	11.4	10.6	10.2	9.5	11.4	10.8

[표 2] 연도별 조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조세계	금액	5,360,748	6,575,391	8,172,352	9,515,641	11,447,944	12,408,216	13,531,368	15,416,024	18,536,067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계	금액	4,761,708	5,807,700	7,257,938	8,396,435	10,050,718	10,899,724	11,876,426	13,606,319	16,343,709
	구성비	88.8	88.3	88.8	88.2	87.8	87.8	87.8	88.3	88.2
내국세	금액	3,037,510	3,675,795	4,595,782	5,250,666	6,188,424	6,697,373	7,496,925	8,463,984	10,011,971
	구성비	56.7	55.9	56.2	55.2	54.1	54.0	55.4	54.9	54.0
교통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관세	금액	732,294	766,063	890,616	1,012,564	1,463,202	1,593,959	1,566,125	1,942,560	2,696,464
	구성비	13.7	11.7	10.9	10.6	12.8	12.8	11.6	12.6	14.5
방위세	금액	631,904	855,842	1,091,540	1,175,335	1,306,032	1,477,565	1,663,233	1,843,368	2,319,603
	구성비	11.8	13.0	13.4	12.4	11.4	11.9	12.3	12.0	12.5
교육세	금액	—	—	—	197,870	263,060	284,827	321,143	372,407	411,337
	구성비	—	—	—	2.1	2.3	2.3	2.4	2.4	2.2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	—	—
	구성비	—	—	—	—	—	—	—	—	—
전매익금	금액	360,000	510,000	680,000	760,000	830,000	846,000	829,000	984,000	904,334
	구성비	6.7	7.8	8.3	8.0	7.3	6.8	6.1	6.4	4.9
지방세	금액	599,040	767,691	914,414	1,119,206	1,397,226	1,508,492	1,654,942	1,809,705	2,192,358
	구성비	11.2	11.7	11.2	11.8	12.2	12.2	12.2	11.7	11.8

[표 2] 연도별 조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조세계	금액	22,584,161	26,194,944	33,214,796	38,354,984	44,680,535	50,286,672	60,492,839	72,090,508
	구성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국세계	금액	19,484,192	21,234,100	26,847,430	30,319,825	35,218,429	39,260,605	47,261,748	56,774,545
	구성비	86.3	81.1	80.8	79.1	78.8	78.1	78.1	78.8
내국세	금액	12,540,239	15,208,394	19,130,227	24,089,183	30,080,065	34,174,562	38,449,032	44,381,993
	구성비	55.5	58.1	57.6	62.8	67.3	68.0	63.6	61.6
교통세	금액	—	—	—	—	—	—	2,457,167	3,371,752
	구성비	—	—	—	—	—	—	4.1	4.7
관세	금액	2,573,562	2,117,581	2,765,371	3,435,489	3,153,190	2,885,860	3,448,887	4,633,211
	구성비	11.4	8.1	8.3	9.0	7.1	5.7	5.7	6.4
방위세	금액	2,911,063	3,483,157	4,430,570	1,263,046	162,877	121,280	76,696	63,137
	구성비	12.9	13.3	13.3	3.3	0.4	0.2	0.1	0.1
교육세	금액	512,283	423,432	521,262	1,532,107	1,822,297	2,078,903	2,539,578	2,993,104
	구성비	2.3	1.6	1.6	4.0	4.1	4.1	4.2	4.2
농어촌특별세	금액	—	—	—	—	—	—	290,388	1,331,348
	구성비	—	—	—	—	—	—	0.5	1.8
전매익금	금액	947,045	1,536	—	—	—	—	—	—
	구성비	4.2	0.0	—	—	—	—	—	—
지방세	금액	3,099,969	4,960,844	6,367,366	8,035,159	9,462,106	11,026,067	13,231,091	15,315,963
	구성비	13.7	18.9	19.2	20.9	21.2	21.9	21.9	21.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재무부 사세국, 『세무통계연보』, 각 연도.
_____, 『대한민국세무통계서』, 1958.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

(단위 : 千圓, %)

	1945 (1945.10~46.3)		1946 (1946.4~47.3)		1947 (1947.4~48.3)		1948 (1948.4~9)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375,232	100.0	1,248,060	100.0	2,988,659	100.0	2,750,555	100.0
소득세	76,614	20.4	485,222	38.9	1,272,086	42.6	918,995	33.4
지세	17,367	4.6	154,207	12.4	204,995	6.9	—	0.0
사업세	11,105	3.0	28,483	2.3	132,195	4.4	96,385	3.5
자본이자세	6,589	1.8	3,023	0.2	5,190	0.2	1,835	0.1
건축세	409	0.1	513	0.0	278	0.0	75	0.0
광세	247	0.1	101	0.0	176	0.0	38	0.0
조선은행권발행세	40,279	10.7	28,249	2.3	—	0.0	—	0.0
법인자본세	4,927	1.3	885	0.1	1,238	0.0	1,253	0.0
상속세	2,230	0.6	6,253	0.5	32,550	1.1	11,276	0.4
이익배당세	37	0.0	234	0.0	460	0.0	295	0.0
공채·사채이자세	11	0.0	—	0.0	—	0.0	—	0.0
주세	106,325	28.3	54,616	4.4	548,870	18.4	815,397	29.6
청량음료세	226	0.1	783	0.1	1,297	0.0	—	0.0
직물세	2,464	0.7	31,861	2.6	70,196	2.3	46,634	1.7
물품세	18,422	4.9	46,269	3.7	38,289	1.3	308,442	11.2
전기가스세	1,012	0.3	13,161	1.1	32,997	1.1	59,647	2.2
사탕소비세	19	0.0	7	0.0	—	0.0	—	0.0
통행세	9,131	2.4	862	0.1	1,273	0.0	683	0.0
입장세	9,211	2.5	56,772	4.5	131,890	4.4	123,477	4.5
특별행위세	2,013	0.5	9,798	0.8	22,976	0.8	7,009	0.3
유흥음식세	27,912	7.4	205,627	16.5	331,773	11.1	146,518	5.3
마권세	2,443	0.7	7,383	0.6	18,922	0.6	21,975	0.8
광고세	215	0.1	11	0.0	—	0.0	—	0.0
임시이득세	35,018	9.3	103,211	8.3	92,515	3.1	24,342	0.9
특별법인세	706	0.2	329	0.0	144	0.0	3	0.0
취인소세	194	0.1	—	0.0	1	0.0	—	0.0
관세	105	0.0	10,200	0.8	48,344	1.6	165,956	6.0
톤세	1	0.0	—	0.0	4	0.0	320	0.0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百萬圓(1948~49), %)

	1948(예산액) (1948.10~49.3)		1949(예산액) (1949.4~50.3)	
	금 액	구 성 비	금 액	구 성 비
계	5,112	100.0	10,970	100.0
소득세	1,929	37.7	3,855	35.1
지세	834	16.3	1,026	9.4
사업세	211	4.1	392	3.6
자본이자세	(47)	0.0	(41)	0.0
건축세	(222)	0.0	(1)	0.0
광세	(160)	0.0	(641)	0.0
조선은행권발행세	—	0.0	(1)	0.0
법인자본세	2	0.0	5	0.0
상속세	44	0.9	84	0.8
이익배당세	(381)	0.0	(814)	0.0
공채·사채이자세	—	0.0	—	0.0
주세	—	0.0	—	0.0
음료세	875	17.1	2,358	21.5
직물세	39	0.8	81	0.7
물품세	364	7.1	780	7.1
전기가스세	43	0.8	125	1.1
사탕소비세	—	0.0	—	0.0
통행세	(955)	0.0	2	0.0
입장세	254	5.0	542	4.9
특별행위세	17	0.3	21	0.2
유흥음식세	281	5.5	536	4.9
마권세	20	0.4	52	0.5
광고세	—	0.0	—	0.0
임시이득세	29	0.6	24	0.2
특별법인세	(5)	0.0	(1)	0.0
취인소세	—	0.0	—	0.0
관세	168	3.3	1,086	9.9
톤세	(320)	0.0	1	0.0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환, %)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35.6	100.0	427.7	100.0	3,924.3	100.0	9,659.9	100.0	21,566.3	100.0	51,430.6	100.0
직접세계	58.8	43.4	296.1	69.2	2,283.2	58.2	5,847.2	60.5	11,897.3	55.2	23,955.7	46.6
소득세	36.4	26.8	48.8	11.4	562.0	14.3	1,131.1	11.7	2,922.5	13.6	7,550.9	14.7
법인세	3.6	2.7	36.9	8.6	195.8	5.0	342.7	3.5	837.7	3.9	2,143.7	4.2
영업세	6.7	4.9	42.2	9.9	491.4	12.5	1,277.2	13.2	3,072.3	14.2	5,141.6	10.0
사업세	1.3	1.0	0.3	0.1	0.2	0.0	—	0.0	—	0.0	—	0.0
임시이득세	1.5	1.1	1.3	0.3	0.5	0.0	—	0.0	—	0.0	—	0.0
지세	8.5	6.3	162.9	38.1	139.6	3.6	3.8	0.0	—	0.0	—	0.0
상속세	0.8	0.6	0.3	0.1	3.8	0.1	13.4	0.1	26.9	0.1	84.1	0.2
광세	—	—	—	—	—	—	0.2	0.0	0.6	0.0	1.2	0.0
증여세	—	—	—	—	1.4	0.0	2.3	0.0	1.6	0.0	—	0.0
자본이자세	—	—	—	—	—	—	—	0.0	—	0.0	—	0.0
통행세	—	—	2.3	0.5	35.8	0.9	122.4	1.3	288.7	1.3	872.2	1.7
등록세	—	—	—	—	—	0.0	—	0.0	—	0.0	585.6	1.1
면허세	—	—	0.8	0.2	8.1	0.2	14.3	0.1	57.2	0.3	0.5	0.0
자산재평가세	—	—	—	—	—	0.0	—	0.0	—	0.0	—	0.0
교육세	—	—	—	—	—	0.0	—	0.0	—	0.0	—	0.0
임시외환특별세	—	—	—	—	—	0.0	—	0.0	—	0.0	—	0.0
자동차세	—	—	—	—	—	0.0	—	0.0	—	0.0	—	0.0
임시토지수득세	—	—	—	—	844.4	21.5	2,939.8	30.4	4,689.8	21.7	7,575.9	14.7
토지세	—	—	—	—	—	0.0	—	0.0	—	0.0	—	0.0
기타	—	—	0.3	0.1	0.2	0.0	—	0.0	—	0.0	—	0.0
간접세계	76.8	56.6	131.6	30.8	1,641.1	41.8	3,738.6	38.7	9,528.3	44.2	27,129.5	52.7
주세	29.6	21.8	31.8	7.4	428.5	10.9	951.7	9.9	2,739.2	12.7	4,728.3	9.2
청량음료세	—	—	0.3	0.1	—	0.0	—	0.0	—	0.0	—	0.0
직물세	2.9	2.1	23.1	5.4	124.9	3.2	252.8	2.6	596.3	2.8	2.8	0.0
물품세	15.7	11.6	29.6	6.9	404.0	10.3	765.9	7.9	1,897.6	8.8	9,880.5	19.2
유흥음식세	7.9	5.8	7.1	1.7	159.6	4.1	140.4	1.5	397.7	1.8	1,085.9	2.1
전기가스세	1.1	0.8	2.9	0.7	33.2	0.8	93.1	1.0	207.6	1.0	646.0	1.3
특별행위세	0.2	0.1	—	—	—	—	—	0.0	—	0.0	—	0.0
입장세	3.8	2.8	2.1	0.5	39.2	1.0	65.0	0.7	178.7	0.8	771.0	1.5
마권세	1.3	1.0	0.6	0.1	—	—	—	—	—	—	26.9	0.1
관세	14.3	10.5	34.1	8.0	451.3	11.5	1,468.4	15.2	3,508.9	16.3	9,982.9	19.4
톤세	—	—	—	—	0.4	0.0	1.3	0.0	2.3	0.0	5.2	0.0
과년도수입	—	—	—	—	—	—	74.1	0.8	140.7	0.7	345.4	0.7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환, %)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09,380.6	100.0	—	—	115,897.9	100.0	143,486.7	100.0	215,975.7	100.0	246,115.0	100.0
직접세계	49,360.2	45.1	—	—	57,434.7	49.6	73,972.7	51.6	129,341.6	59.9	131,450.8	53.4
소득세	16,093.0	14.7	—	—	13,994.2	12.1	18,100.0	12.6	21,986.2	10.2	21,391.6	8.7
법인세	5,658.2	5.2	—	—	5,243.9	4.5	5,139.8	3.6	7,196.7	3.3	9,190.3	3.7
영업세	11,198.9	10.2	—	—	7,334.5	6.3	8,629.3	6.0	10,641.0	4.9	10,109.7	4.1
사업세	—	0.0	—	—	—	0.0	—	0.0	—	0.0	—	0.0
임시이득세	—	0.0	—	—	—	0.0	—	0.0	—	0.0	—	0.0
지세	—	0.0	—	—	—	0.0	—	0.0	—	0.0	—	0.0
상속세	172.1	0.2	—	—	172.9	0.1	218.6	0.2	241.0	0.1	246.1	0.1
광세	2.0	0.0	—	—	2.5	0.0	59.6	0.0	63.1	0.0	71.6	0.0
증여세	—	0.0	—	—	—	0.0	—	0.0	—	0.0	—	0.0
자본이자세	—	0.0	—	—	—	0.0	—	0.0	—	0.0	—	0.0
통행세	1,854.1	1.7	—	—	1,665.0	1.4	2,338.0	1.6	2,940.9	1.4	3,485.8	1.4
등록세	1,280.8	1.2	—	—	1,349.9	1.2	1,653.7	1.2	2,580.4	1.2	2,766.8	1.1
면허세	—	0.0	—	—	—	0.0	—	0.0	—	0.0	—	0.0
자산재평가세	—	0.0	—	—	—	0.0	109.2	0.1	411.0	0.2	315.9	0.1
교육세	—	0.0	—	—	—	0.0	3,271.6	2.3	13,705.7	6.3	14,585.9	5.9
임시외환특별세	—	0.0	—	—	—	0.0	14,247.0	9.9	47,224.1	21.9	50,467.2	20.5
자동차세	—	0.0	—	—	—	0.0	—	0.0	3,079.9	1.4	3,474.0	1.4
임시토지수득세	13,101.1	12.0	—	—	27,671.8	23.9	20,205.9	14.1	19,271.6	8.9	15,345.9	6.2
토지세	—	0.0	—	—	—	0.0	—	0.0	—	0.0	—	0.0
기타	—	0.0	—	—	—	0.0	—	0.0	—	0.0	—	0.0
간접세계	59,595.8	54.5	—	—	57,659.7	49.8	68,581.5	47.8	85,478.2	39.6	113,375.5	46.1
주세	9,912.5	9.1	—	—	8,087.1	7.0	8,429.6	5.9	10,259.1	4.8	11,563.7	4.7
청량음료세	—	0.0	—	—	—	0.0	—	0.0	—	0.0	—	0.0
직물세	—	0.0	—	—	—	0.0	—	0.0	—	0.0	—	0.0
물품세	22,390.3	20.5	—	—	20,723.9	17.9	24,516.6	17.1	32,955.5	15.3	43,284.1	17.6
유흥음식세	1,443.4	1.3	—	—	1,169.7	1.0	1,376.1	1.0	1,700.9	0.8	1,284.4	0.5
전기가스세	1,735.8	1.6	—	—	2,182.7	1.9	2,961.4	2.1	3,332.5	1.5	3,706.8	1.5
특별행위세	—	0.0	—	—	—	0.0	—	0.0	—	0.0	—	0.0
입장세	1,597.2	1.5	—	—	1,655.9	1.4	1,595.2	1.1	1,607.1	0.7	2,017.0	0.8
마권세	54.4	0.0	—	—	31.8	0.0	11.1	0.0	28.3	0.0	17.6	0.0
관세	22,452.6	20.5	—	—	23,762.7	20.5	29,638.8	20.7	35,545.6	16.5	51,449.8	20.9
톤세	9.6	0.0	—	—	45.9	0.0	52.7	0.0	49.2	0.0	52.1	0.0
과년도수입	424.6	0.4	—	—	803.5	0.7	932.5	0.6	1,155.9	0.5	1,288.7	0.5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61		1962		1963		1964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7,900.9	100.0	21,497	100.0	24,693	100.0	29,190	100.0
직접세계	8,722.5	48.7	7,582	35.3	9,774	39.6	13,769	47.2
소득세	2,455.6	13.7	4,572	21.3	5,938	24.0	8,614	29.5
법인세	1,707.2	9.5	2,023	9.4	2,996	12.1	4,110	14.1
교육세	1,524.3	8.5	334	1.6	33	0.1	4	0.0
외환세	251.3	1.4	79	0.4	—	0.0	—	0.0
토지세	2,077.9	11.6	3	0.0	—	0.0	1	0.0
토지수득세	3.1	0.0	—	0.0	—	0.0	—	0.0
광세	6.9	0.0	9	0.0	—	0.0	—	0.0
상속세	27.7	0.2	32	0.1	42	0.2	22	0.1
증여세	—	0.0	—	0.0	27	0.1	42	0.1
자산재평가세	28.3	0.2	22	0.1	76	0.3	64	0.2
자동차세	345.3	1.9	15	0.1	1	0.0	—	0.0
등록세	294.9	1.6	493	2.3	660	2.7	911	3.1
간접세계	8,437.8	47.1	12,885	59.9	13,570	55.0	14,069	48.2
주세	1,251.2	7.0	2,519	11.7	2,761	11.2	2,939	10.1
영업세	1,060.8	5.9	1,948	9.1	2,547	10.3	3,231	11.1
물품세	4,930.0	27.5	4,717	21.9	3,775	15.3	3,303	11.3
석유류세	—	0.0	1,925	9.0	2,276	9.2	1,962	6.7
유흥음식세	131.5	0.7	10	0.0	—	0.0	—	0.0
통행세	382.3	2.1	692	3.2	922	3.7	1,042	3.6
전기가스세	505.9	2.8	736	3.4	815	3.3	963	3.3
입장세	173.8	1.0	338	1.6	453	1.8	581	2.0
마권세	2.3	0.0	—	0.0	—	0.0	—	0.0
증권거래세	—	0.0	—	0.0	21	0.1	48	0.2
인지수입	400.1	2.2	659	3.1	776	3.1	857	2.9
과년도수입	340.5	1.9	371	1.7	573	2.3	495	1.7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65		1966		1967		1968		1969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42,058	100.0	70,011	100.0	103,828	100.0	156,406	100.0	218,099	100.0
직접세계	18,920	45.0	33,801	48.3	51,099	49.2	77,701	49.7	110,423	50.6
소득세	11,668	27.7	20,305	29.0	30,950	29.8	47,600	30.4	69,609	31.9
신고분	—	—	—	—	—	—	—	—	—	—
원천분	—	—	—	—	—	—	—	—	—	—
법인세	5,695	13.5	10,882	15.5	15,948	15.4	24,582	15.7	33,122	15.2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상속세	121	0.3	407	0.6	503	0.5	680	0.4	833	0.4
상속	48	0.1	77	0.1	175	0.2	263	0.2	370	0.2
증여	73	0.2	330	0.5	328	0.3	417	0.3	463	0.2
자산재평가세	86	0.2	334	0.5	724	0.7	800	0.5	870	0.4
부당이득세	—	—	—	—	—	—	—	—	—	—
등록세	1,350	3.2	1,873	2.7	2,974	2.9	3,995	2.6	5,705	2.6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44	0.0	284	0.1
간접세계	21,891	52.0	33,671	48.1	49,190	47.4	75,239	48.1	102,932	47.2
부가가치세	—	—	—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	—	—
주세	3,767	9.0	6,345	9.1	8,105	7.8	11,147	7.1	16,069	7.4
전화세	—	—	—	—	—	—	—	—	—	—
증권거래세	10	0.0	21	0.0	46	0.0	33	0.0	76	0.0
영업세	4,360	10.4	7,282	10.4	11,550	11.1	17,500	11.2	23,031	10.6
통행세	1,241	3.0	2,758	3.9	4,907	4.7	6,666	4.3	9,805	4.5
물품세	7,021	16.7	10,346	14.8	15,372	14.8	22,223	14.2	30,658	14.1
직물류세	—	—	—	—	—	—	—	—	—	—
석유류세	3,160	7.5	3,656	5.2	4,631	4.5	11,366	7.3	14,787	6.8
전기가스세	1,638	3.9	2,206	3.2	2,936	2.8	4,068	2.6	5,315	2.4
입장세	694	1.7	1,057	1.5	1,643	1.6	2,236	1.4	3,191	1.5
유흥음식세	—	—	—	—	—	—	—	—	—	—
인지세	738	1.8	1,512	2.2	2,267	2.2	2,606	1.7	3,114	1.4
과년도수입	509	1.2	1,027	1.5	1,272	1.2	860	0.5	1,630	0.7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70		1971		1972		1973		1974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283,799	100.0	355,496	100.0	374,340	100.0	439,121	100.0	717,976	100.0
직접세계	138,605	48.8	178,456	50.2	175,363	46.8	198,544	45.2	313,072	43.6
소득세	84,452	29.8	107,615	30.3	104,697	28.0	123,710	28.2	164,660	22.9
신고분	—	—	—	—	—	—	—	—	—	—
원천분	—	—	—	—	—	—	—	—	—	—
법인세	42,351	14.9	56,699	15.9	54,824	14.6	49,779	11.3	110,291	15.4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상속세	1,501	0.5	1,967	0.6	1,529	0.4	1,828	0.4	2,825	0.4
상속	870	0.3	1,036	0.3	955	0.3	877	0.2	1,601	0.2
증여	631	0.2	931	0.3	574	0.2	951	0.2	1,224	0.2
자산재평가세	716	0.3	1,315	0.4	1,429	0.4	1,041	0.2	2,421	0.3
부당이득세	—	—	—	—	—	—	—	—	833	0.1
등록세	7,153	2.5	8,358	2.4	12,078	3.2	21,641	4.9	30,618	4.3
부동산투기억제세	2,432	0.9	2,502	0.7	806	0.2	545	0.1	1,424	0.2
간접세계	141,557	49.9	172,604	48.6	186,589	49.8	229,539	52.3	383,745	53.4
부가가치세	—	—	—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	—	—
주세	21,741	7.7	27,650	7.8	28,115	7.5	34,039	7.8	53,245	7.4
전화세	—	—	—	—	—	—	—	—	5,261	0.7
증권거래세	80	0.0	63	0.0	—	—	—	—	—	—
영업세	31,022	10.9	37,935	10.7	48,736	13.0	59,773	13.6	97,040	13.5
통행세	13,402	4.7	17,113	4.8	14,551	3.9	21,831	5.0	14,164	2.0
물품세	31,692	11.2	34,891	9.8	36,882	9.9	50,117	11.4	79,432	11.1
직물류세	10,689	3.8	10,099	2.8	8,081	2.2	8,078	1.8	13,479	1.9
석유류세	21,262	7.5	31,757	8.9	34,818	9.3	37,438	8.5	103,091	14.4
전기가스세	7,049	2.5	8,176	2.3	9,953	2.7	12,218	2.8	8,877	1.2
입장세	4,620	1.6	4,920	1.4	5,453	1.5	6,045	1.4	9,156	1.3
유흥음식세	—	—	—	—	—	—	—	—	—	—
인지세	1,654	0.6	2,400	0.7	7,855	2.1	8,293	1.9	13,709	1.9
과년도수입	1,983	0.7	2,036	0.6	4,533	1.2	2,745	0.6	7,450	1.0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75		1976		1977		1978		1979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012,291	100.0	1,370,532	100.0	1,675,180	100.0	2,252,546	100.0	3,037,510	100.0
직접세계	380,906	37.6	548,081	40.0	606,710	36.2	842,036	37.4	1,124,965	37.0
소득세	198,619	19.6	319,021	23.3	352,715	21.1	467,759	20.8	614,679	20.2
신고분	—	—	135,159	9.9	154,900	9.2	258,817	11.5	286,280	9.4
원천분	—	—	183,862	13.4	197,815	11.8	208,942	9.3	328,399	10.8
법인세	130,480	12.9	171,172	12.5	234,955	14.0	358,715	15.9	493,207	16.2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상속세	10,795	1.1	9,904	0.7	10,741	0.6	8,744	0.4	6,583	0.2
상속	4,234	0.4	5,687	0.4	4,917	0.3	3,799	0.2	2,240	0.1
증여	6,561	0.6	4,217	0.3	5,824	0.3	4,945	0.2	4,343	0.1
자산재평가세	5,077	0.5	7,881	0.6	7,746	0.5	6,763	0.3	10,389	0.3
부당이득세	226	0.0	85	0.0	553	0.0	55	0.0	107	0.0
등록세	33,491	3.3	40,018	2.9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2,218	0.2	—	—	—	—	—	—	—	—
간접세계	568,652	56.2	769,648	56.2	1,028,015	61.4	1,382,837	61.4	1,873,439	61.7
부가가치세	—	—	—	—	241,573	14.4	838,907	37.2	1,088,675	35.8
특별소비세	—	—	—	—	99,865	6.0	327,021	14.5	484,627	16.0
주세	81,422	8.0	93,020	6.8	123,249	7.4	193,989	8.6	265,848	8.8
전화세	9,764	1.0	13,829	1.0	20,328	1.2	22,920	1.0	30,972	1.0
증권거래세	—	—	—	—	—	—	—	—	3,317	0.1
영업세	198,163	19.6	261,404	19.1	207,852	12.4	—	—	—	—
통행세	16,868	1.7	21,262	1.6	15,050	0.9	—	—	—	—
물품세	117,639	11.6	166,422	12.1	132,020	7.9	—	—	—	—
직물류세	22,623	2.2	54,056	3.9	43,906	2.6	—	—	—	—
석유류세	106,724	10.5	142,276	10.4	101,950	6.1	—	—	—	—
전기가스세	5,104	0.5	6,038	0.4	16,048	1.0	—	—	—	—
입장세	10,345	1.0	11,341	0.8	7,296	0.4	—	—	—	—
유흥음식세	—	—	—	—	18,878	1.1	—	—	—	—
인지세	12,772	1.3	14,603	1.1	19,328	1.2	24,897	1.1	37,317	1.2
과년도수입	49,961	4.9	38,200	2.8	21,127	1.3	2,776	0.1	1,789	0.1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80		1981		1982		1983		1984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3,675,795	100.0	4,595,782	100.0	5,250,666	100.0	6,188,424	100.0	6,697,372	100.0
직접세계	1,178,835	32.1	1,546,662	33.7	1,879,903	35.8	2,092,763	33.8	2,234,725	33.4
소득세	661,374	18.0	886,150	19.3	1,005,516	19.2	1,136,116	18.4	1,229,093	18.4
신고분	298,758	8.1	314,718	6.8	373,703	7.1	436,041	7.0	453,748	6.8
원천분	362,616	9.9	571,432	12.4	631,813	12.0	700,075	11.3	775,345	11.6
법인세	485,206	13.2	594,062	12.9	781,303	14.9	863,691	14.0	923,535	13.8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상속세	9,623	0.3	26,216	0.6	35,454	0.7	42,662	0.7	47,065	0.7
상속	2,913	0.1	11,975	0.3	17,889	0.3	18,107	0.3	19,946	0.3
증여	6,710	0.2	14,241	0.3	17,565	0.3	24,555	0.4	27,119	0.4
자산재평가세	22,418	0.6	40,178	0.9	57,629	1.1	50,293	0.8	35,032	0.5
부당이득세	214	0.0	56	0.0	1	0.0	1	0.0	—	—
등록세	—	—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	—
간접세계	2,403,957	65.4	2,916,841	63.5	3,260,133	62.1	3,922,154	63.4	4,256,193	63.6
부가가치세	1,471,194	40.0	1,804,760	39.3	2,094,383	39.9	2,559,277	41.4	2,704,272	40.4
특별소비세	582,471	15.8	665,204	14.5	664,874	12.7	793,315	12.8	898,110	13.4
주세	297,717	8.1	374,761	8.2	394,708	7.5	441,027	7.1	493,393	7.4
전화세	49,996	1.4	66,739	1.5	101,574	1.9	123,775	2.0	153,936	2.3
증권거래세	2,579	0.1	5,377	0.1	4,594	0.1	4,760	0.1	6,482	0.1
영업세	—	—	—	—	—	—	—	—	—	—
통행세	—	—	—	—	—	—	—	—	—	—
물품세	—	—	—	—	—	—	—	—	—	—
직물류세	—	—	—	—	—	—	—	—	—	—
석유류세	—	—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	—
입장세	—	—	—	—	—	—	—	—	—	—
유흥음식세	—	—	—	—	—	—	—	—	—	—
인지세	33,890	0.9	49,678	1.1	54,227	1.0	64,212	1.0	68,840	1.0
과년도수입	59,113	1.6	82,601	1.8	56,403	1.1	109,295	1.8	137,614	2.1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85		1986		1987		1988		1989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7,496,924	100.0	8,463,984	100.0	10,011,971	100.0	12,540,239	100.0	15,208,394	100.0
직접세계	2,671,368	35.6	3,046,378	36.0	3,924,458	39.2	5,353,473	42.7	6,897,428	45.4
소득세	1,481,558	19.8	1,784,559	21.1	2,158,867	21.6	2,964,061	23.6	3,556,892	23.4
신고분	526,922	7.0	625,905	7.4	717,651	7.2	984,183	7.8	1,299,917	8.5
원천분	954,636	12.7	1,158,654	13.7	1,441,216	14.4	1,979,878	15.8	2,256,975	14.8
법인세	1,126,731	15.0	1,191,401	14.1	1,682,444	16.8	2,247,429	17.9	3,107,894	20.4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	—
상속세	46,387	0.6	64,369	0.8	69,695	0.7	109,260	0.9	142,971	0.9
상속	17,821	0.2	33,382	0.4	32,724	0.3	36,007	0.3	39,472	0.3
증여	28,566	0.4	30,987	0.4	36,971	0.4	73,253	0.6	103,499	0.7
자산재평가세	16,686	0.2	6,049	0.1	13,452	0.1	32,723	0.3	89,671	0.6
부당이득세	6	0.0	—	—	—	—	—	—	—	—
등록세	—	—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	—
간접세계	4,556,995	60.8	5,127,914	60.6	5,735,751	57.3	6,852,269	54.6	8,063,177	53.0
부가가치세	2,901,197	38.7	3,272,210	38.7	3,650,479	36.5	4,205,215	33.5	5,260,229	34.6
특별소비세	980,807	13.1	1,085,500	12.8	1,189,665	11.9	1,333,176	10.6	1,256,966	8.3
주세	501,187	6.7	555,805	6.6	581,501	5.8	780,470	6.2	893,033	5.9
전화세	166,551	2.2	195,463	2.3	235,737	2.4	283,462	2.3	237,437	1.6
증권거래세	7,253	0.1	18,936	0.2	78,369	0.8	249,946	2.0	415,512	2.7
영업세	—	—	—	—	—	—	—	—	—	—
통행세	—	—	—	—	—	—	—	—	—	—
물품세	—	—	—	—	—	—	—	—	—	—
직물류세	—	—	—	—	—	—	—	—	—	—
석유류세	—	—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	—
입장세	—	—	—	—	—	—	—	—	—	—
유흥음식세	—	—	—	—	—	—	—	—	—	—
인지세	75,670	1.0	83,529	1.0	99,772	1.0	120,692	1.0	162,305	1.1
과년도수입	192,891	2.6	206,163	2.4	251,990	2.5	213,805	1.7	85,484	0.6

[표 3] 연도별 내국세 수입(계속)

(단위 : 백만원,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계	19,130,227	100.0	24,089,183	100.0	30,080,065	100.0	34,174,562	100.0	38,449,032	100.0	44,381,993	100.0
직접세계	8,340,457	43.6	11,627,276	48.3	14,573,333	48.4	16,413,477	48.0	19,645,246	51.1	23,427,270	52.8
소득세	4,723,114	24.7	6,459,371	26.8	8,008,357	26.6	9,462,850	27.7	11,207,767	29.1	13,618,190	30.7
신고분	2,017,230	10.5	2,618,269	10.9	2,758,288	9.2	3,605,127	10.5	4,118,855	10.7	4,676,602	10.5
원천분	2,705,884	14.1	3,841,102	15.9	5,250,069	17.5	5,857,723	17.1	7,088,912	18.4	8,941,588	20.1
법인세	3,226,128	16.9	4,585,547	19.0	5,941,051	19.8	5,862,329	17.2	7,387,568	19.2	8,662,631	19.5
토지초과이득세	—	—	190,171	0.8	121,776	0.4	322,626	0.9	56,085	0.1	27,969	0.1
상속세	295,933	1.5	326,201	1.4	433,273	1.4	667,167	2.0	907,420	2.4	1,029,374	2.3
상속	71,033	0.4	104,372	0.4	175,030	0.6	346,337	1.0	523,570	1.4	605,644	1.4
증여	224,900	1.2	221,829	0.9	258,243	0.9	320,830	0.9	383,850	1.0	423,730	1.0
자산재평가세	95,282	0.5	65,899	0.3	68,876	0.2	98,505	0.3	86,406	0.2	89,105	0.2
부당이득세	—	—	87	0.0	—	—	—	—	—	—	1	0.0
등록세	—	—	—	—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	—	—	—
간접세계	10,384,159	54.3	12,085,207	50.2	15,000,208	49.9	17,368,638	50.8	18,192,059	47.3	20,124,203	45.3
부가가치세	6,964,419	36.4	8,252,627	34.3	10,076,296	33.5	11,687,506	34.2	13,057,973	34.0	14,636,893	33.0
특별소비세	1,911,791	10.0	2,246,526	9.3	3,068,615	10.2	3,606,917	10.6	2,445,573	6.4	2,617,110	5.9
주세	1,022,417	5.3	1,145,342	4.8	1,329,041	4.4	1,367,588	4.0	1,545,787	4.0	1,824,513	4.1
전화세	261,522	1.4	311,387	1.3	360,431	1.2	399,722	1.2	458,696	1.2	543,051	1.2
증권거래세	224,010	1.2	129,325	0.5	165,825	0.6	306,905	0.9	684,030	1.8	502,636	1.1
영업세	—	—	—	—	—	—	—	—	—	—	—	—
통행세	—	—	—	—	—	—	—	—	—	—	—	—
물품세	—	—	—	—	—	—	—	—	—	—	—	—
직물류세	—	—	—	—	—	—	—	—	—	—	—	—
석유류세	—	—	—	—	—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	—	—	—	—
입장세	—	—	—	—	—	—	—	—	—	—	—	—
유흥음식세	—	—	—	—	—	—	—	—	—	—	—	—
인지세	193,077	1.0	224,223	0.9	214,983	0.7	242,619	0.7	275,300	0.7	319,829	0.7
과년도수입	212,534	1.1	152,477	0.6	291,541	1.0	149,828	0.4	336,427	0.9	510,691	1.2

주 : 1. 1945~49년까지의 예산액 및 1949~65년간의 자료는 재정경제원 刊『韓國稅制史』부록 중 '세수실적' pp. 651~655를 인용하였음.
2. 세무통계연보의 분류체계에 의하면 관세 및 톤세가 내국세에서 제외되는 대신 인지수입이 포함되어 내국세 합계 수치가 위와 달라짐.
3. 1967년부터는 수입제세를 포함한 수치임.
4. 1956년은 회계연도 변경 때문에 포함되지 않음.
5. ( ) 안은 千圓

자료 : 재정경제원,『韓國稅制史』; 국세청,『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4]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

	국민총생산 (10억원)	조세계	국세계	내국세	교통세	관 세	방위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전매익금	지방세	1인당 조세부담금 (천원)
1965	805.7	8.7	6.8	5.2	—	1.6	—	—	—	0.6	1.4	2.4
1966	1,037.0	10.9	8.5	6.8	—	1.7	—	—	—	0.8	1.5	3.8
1967	1,281.2	11.9	10.1	8.1	—	2.0	—	—	—	0.8	1.1	5.1
1968	1,652.9	13.9	11.8	9.5	—	2.3	—	—	—	1.0	1.2	7.5
1969	2,155.3	14.6	12.2	10.1	—	2.1	—	—	—	1.1	1.2	9.9
1970	2,788.4	14.3	12.0	10.2	—	1.8	—	—	—	1.1	1.2	12.3
1971	3,419.1	14.4	11.9	10.4	—	1.5	—	—	—	1.3	1.2	14.1
1972	4,193.5	12.5	10.3	8.9	—	1.4	—	—	—	1.0	1.1	15.6
1973	5,377.5	12.1	9.7	8.2	—	1.5	—	—	—	1.1	1.4	19.1
1974	7,591.7	13.5	11.1	9.5	—	1.7	—	—	—	0.9	1.4	29.4
1975	10,129.2	15.3	12.4	10.0	—	1.8	0.6	—	—	1.3	1.6	43.9
1976	13,899.7	16.6	13.8	9.9	—	2.0	1.9	—	—	1.3	1.6	64.5
1977	17,795.8	16.6	13.5	9.4	—	2.2	1.9	—	—	1.2	1.9	81.3
1978	24,062.7	17.0	14.0	9.4	—	2.7	2.0	—	—	1.2	1.8	110.8
1979	30,872.1	17.4	14.3	9.8	—	2.4	2.0	—	—	1.2	1.9	142.8
1980	36,857.0	17.8	14.4	10.0	—	2.1	2.3	—	—	1.4	2.1	172.5
1981	45,702.9	17.9	14.4	10.1	—	1.9	2.4	—	—	1.5	2.0	211.0
1982	52,460.5	18.1	14.6	10.0	—	1.9	2.2	0.4	—	1.4	2.1	242.0
1983	62,086.0	18.4	14.9	10.0	—	2.4	2.1	0.4	—	1.3	2.3	286.8
1984	71,044.6	17.5	14.2	9.4	—	2.2	2.1	0.4	—	1.2	2.1	307.1
1985	79,301.1	17.1	13.9	9.5	—	2.0	2.1	0.4	—	1.0	2.1	331.6
1986	92,909.3	16.6	13.6	9.1	—	2.1	2.0	0.4	—	1.1	1.9	374.3
1987	109,726.5	16.9	14.1	9.1	—	2.5	2.1	0.4	—	0.8	2.0	445.8
1988	131,371.3	17.2	14.1	9.5	—	2.0	2.2	0.4	—	0.7	2.4	538.0
1989	147,941.6	17.7	14.4	10.3	—	1.4	2.4	0.3	—	0.0	3.4	618.1
1990	178,262.1	18.6	15.1	10.7	—	1.6	2.5	0.3	—	—	3.6	774.8
1991	214,239.9	17.9	14.2	11.2	—	1.6	0.6	0.7	—	—	3.8	886.5
1992	238,704.6	18.7	14.8	12.6	—	1.3	0.1	0.8	—	—	4.0	1,023.0
1993	265,517.9	18.9	14.8	12.9	—	1.1	0.0	0.8	—	—	4.2	1,141.0
1994	303,772.6	19.9	15.6	12.7	0.8	1.1	0.0	0.8	0.1	—	4.4	1,361.0
1995	348,979.3	20.5	16.3	12.7	1.0	1.3	0.0	0.9	0.4	—	4.4	1,595.0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5] 연도별 내국세, 국세, 조세의 직·간접세 비율

(단위 : %)

	조 세		국 세		내 국 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	간접세
1965	—	—	32.3	67.7	46.3	53.7
1966	—	—	35.5	64.5	50.1	49.9
1967	—	—	36.6	63.4	51.0	49.0
1968	—	—	36.5	63.5	50.8	49.2
1969	—	—	37.2	62.8	51.8	48.2
1970	43.5	56.5	38.5	61.5	49.5	50.5
1971	—	—	39.6	60.4	50.8	49.2
1972	—	—	36.6	63.4	48.4	51.6
1973	—	—	34.5	65.5	46.4	53.6
1974	—	—	34.5	65.5	44.9	55.1
1975	39.5	60.5	33.9	66.1	40.1	59.9
1976	—	—	32.5	67.5	41.6	58.4
1977	—	—	29.4	70.6	37.1	62.9
1978	—	—	29.3	70.7	37.8	62.2
1979	—	—	29.7	70.3	37.5	62.5
1980	36.9	63.1	28.7	71.3	32.9	67.1
1981	37.9	62.1	28.6	71.4	34.7	65.3
1982	37.5	62.5	30.8	69.2	36.2	63.8
1983	35.7	64.3	28.7	71.3	34.4	65.6
1984	38.1	61.9	28.9	71.1	34.1	65.9
1985	39.3	60.7	31.8	68.2	36.6	63.4
1986	38.9	61.1	31.6	68.4	36.9	63.1
1987	41.1	58.9	34.0	66.0	40.2	59.8
1988	44.9	55.1	37.9	62.1	43.4	56.6
1989	49.8	50.2	45.0	55.0	45.6	54.4
1990	49.5	50.5	43.7	56.3	44.1	55.9
1991	52.7	47.3	45.9	54.1	48.6	51.4
1992	52.8	47.2	45.3	54.7	48.9	51.1
1993	53.8	46.2	45.5	54.5	48.2	51.8
1994	53.8	46.2	45.7	54.3	51.6	48.4
1995	54.7	45.3	46.9	53.1	53.4	46.6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6] 연도별 국세·지방세의 배분 추이

(단위 : 백만원, %)

	조 세 계		국 세 계		지 방 세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1965	70,313	100.0	59,103	84.1	11,210	15.9
1966	112,584	100.0	96,636	85.8	15,948	14.2
1967	153,033	100.0	139,241	91.0	13,792	9.0
1968	229,993	100.0	210,688	91.6	19,305	8.4
1969	313,657	100.0	287,073	91.5	26,584	8.5
1970	398,056	100.0	364,823	91.7	33,233	8.3
1971	492,866	100.0	453,055	91.9	39,811	8.1
1972	522,946	100.0	476,346	91.1	46,600	8.9
1973	652,626	100.0	578,492	88.6	74,134	11.4
1974	1,021,659	100.0	913,673	89.4	107,986	10.6
1975	1,549,769	100.0	1,390,979	89.8	158,790	10.2
1976	2,313,313	100.0	2,092,747	90.5	220,566	9.5
1977	2,959,257	100.0	2,622,682	88.6	336,575	11.4
1978	4,095,513	100.0	3,652,262	89.2	443,251	10.8
1979	5,360,748	100.0	4,761,708	88.8	599,040	11.2
1980	6,575,391	100.0	5,807,700	88.3	767,691	11.7
1981	8,172,352	100.0	7,257,938	88.8	914,414	11.2
1982	9,515,641	100.0	8,396,435	88.2	1,119,206	11.8
1983	11,447,944	100.0	10,050,718	87.8	1,397,226	12.2
1984	12,408,216	100.0	10,899,724	87.8	1,508,492	12.2
1985	13,531,368	100.0	11,876,426	87.8	1,654,942	12.2
1986	15,416,024	100.0	13,606,319	88.3	1,809,705	11.7
1987	18,536,067	100.0	16,343,709	88.2	2,192,358	11.8
1988	22,584,161	100.0	19,484,192	86.3	3,099,969	13.7
1989	26,194,944	100.0	21,234,100	81.1	4,960,844	18.9
1990	33,214,796	100.0	26,847,430	80.8	6,367,366	19.2
1991	38,354,984	100.0	30,319,825	79.1	8,035,159	20.9
1992	44,680,535	100.0	35,218,429	78.8	9,462,106	21.2
1993	50,286,672	100.0	39,260,605	78.1	11,026,067	21.9
1994	60,492,839	100.0	47,261,748	78.1	13,231,091	21.9
1995	72,090,508	100.0	56,774,545	78.8	15,315,963	21.2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 연도.

[표 7] 연도별 주요 내국세 납세 인원

(단위 : 명)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합 계	13,864,259	16,375,763	21,115,122	23,896,561	35,147,233	38,092,864	51,801,606	47,180,974
직 접 세 계	13,231,729	15,616,928	20,359,457	23,056,969	34,233,781	37,126,596	50,731,061	46,018,342
소 득 세[1]	12,259,878	14,543,189	19,178,532	21,858,852	32,873,143	35,622,633	49,049,032	44,460,808
법 인 세[2]	5,324	6,595	6,474	7,588	7,349	8,243	8,531	8,454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상 속 세	8,945	13,101	7,200	6,957	4,157	4,236	4,859	3,987
상 속	590	711	664	490	455	585	666	664
증 여	8,355	12,390	6,536	6,467	3,702	3,651	4,193	3,323
자산재평가세	4	189	153	129	115	135	125	126
등 록 세	957,578	1,053,854	1,167,098	1,182,686	1,346,417	1,476,958	1,654,637	1,540,594
부동산투기억제세	—	—	—	757	2,600	14,391	13,877	4,373
간 접 세 계	632,530	758,835	755,665	839,592	913,452	966,268	1,070,545	1,162,632
부가가치세	—	—	—	—	—	—	—	—
특별소비세	—	—	—	—	—	—	—	—
주 세	—	—	—	—	—	—	—	2,351
전 화 세[3]	—	—	—	—	—	—	—	—
증권거래세	—	—	—	—	—	—	—	—
영 업 세	632,530	758,835	755,665	839,592	913,452	966,268	1,070,545	1,150,097
통 행 세	—	—	—	—	—	—	—	1,879
물 품 세	—	—	—	—	—	—	—	4,560
직 물 류 세	—	—	—	—	—	—	—	183
석 유 류 세	—	—	—	—	—	—	—	16
전기가스세	—	—	—	—	—	—	—	49
입 장 세	—	—	—	—	—	—	—	3,497
유흥음식세	—	—	—	—	—	—	—	—

[표 7] 연도별 주요 내국세 납세 인원(계속)

(단위 : 명)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합 계	49,908,467	45,562,568	4,617,047	4,719,630	2,014,582	2,232,823	2,323,938	2,430,557
직 접 세 계	48,644,086	44,140,036	3,129,679	3,092,984	1,184,380	1,318,668	1,381,645	1,437,035
소 득 세	46,539,947	41,589,507	916,072	916,072	1,157,916	1,286,552	1,342,294	1,394,208
법 인 세	9,159	11,277	12,532	13,647	15,049	16,882	19,220	21,974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상 속 세	2,514	2,896	8,414	6,613	11,229	15,027	19,853	20,402
상 속	407	296	241	270	300	285	317	350
증 여	2,107	2,600	8,173	6,343	10,929	14,742	19,536	20,052
자산재평가세	146	240	126	247	186	207	278	451
등 록 세	2,090,641	2,534,436	2,188,320	2,156,405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1,679	1,680	4,215	—	—	—	—	—
간 접 세 계	1,264,381	1,422,532	1,487,368	1,626,646	830,202	914,155	942,293	993,522
부가가치세	—	—	—	—	824,192	908,127	933,475	980,376
특별소비세	—	—	—	—	4,437	4,450	4,912	5,378
주 세	2,095	1,661	1,627	1,611	1,572	1,577	1,564	1,552
전 화 세	—	1	1	1	1	1	1	1
증권거래세	—	—	—	—	—	—	2,341	6,215
영 업 세	1,251,195	1,409,694	1,473,409	1,612,318	—	—	—	—
통 행 세	1,796	1,505	1,542	1,771	—	—	—	—
물 품 세	5,648	6,317	7,430	7,622	—	—	—	—
직물류세	166	193	219	285	—	—	—	—
석유류세	22	22	22	31	—	—	—	—
전기가스세	38	38	27	27	—	—	—	—
입 장 세	3,421	3,101	3,091	2,980	—	—	—	—
유흥음식세	—	—	—	—	—	—	—	—

[표 7] 연도별 주요 내국세 납세 인원(계속)

(단위 : 명)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합 계	2,618,310	2,642,512	2,873,727	3,266,408	3,309,728	3,469,264	3,687,101	3,797,904
직 접 세 계	1,495,453	1,490,204	1,680,218	2,019,678	2,014,463	2,094,663	2,242,210	2,296,857
소 득 세	1,442,590	1,434,842	1,606,710	1,946,982	1,945,922	2,025,774	2,164,359	2,224,349
법 인 세	23,025	24,574	33,775	37,185	39,406	41,284	44,677	48,437
토지초과이득세	—	—	—	—	—	—	—	—
상 속 세	29,277	30,309	39,431	35,081	28,959	27,480	33,047	23,884
상 속	866	820	1,105	1,144	1,110	1,324	1,140	1,414
증 여	28,411	29,489	38,326	33,937	27,849	26,156	31,907	22,470
자산재평가세	561	479	302	430	176	125	127	187
등 록 세	—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
간 접 세 계	1,122,857	1,152,308	1,193,509	1,246,730	1,295,265	1,374,601	1,444,891	1,501,047
부 가 가 치 세	1,104,922	1,128,330	1,168,672	1,221,161	1,269,342	1,341,398	1,420,082	1,472,424
특 별 소 비 세	5,966	8,598	9,083	9,392	9,650	10,341	7,284	7,436
주 세	1,536	1,532	1,531	1,518	1,504	1,497	1,482	1,459
전 화 세	1	1	1	1	1	1	1	1
증 권 거 래 세	10,432	13,847	14,222	14,658	14,768	21,364	16,042	19,727
영 업 세	—	—	—	—	—	—	—	—
통 행 세	—	—	—	—	—	—	—	—
물 품 세	—	—	—	—	—	—	—	—
직 물 류 세	—	—	—	—	—	—	—	—
석 유 류 세	—	—	—	—	—	—	—	—
전 기 가 스 세	—	—	—	—	—	—	—	—
입 장 세	—	—	—	—	—	—	—	—
유 흥 음 식 세	—	—	—	—	—	—	—	—

[표 7] 연도별 주요 내국세 납세 인원(계속)

(단위 : 명)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합 계	4,022,749	4,247,162	5,036,798	5,305,926	5,867,745	6,185,587	6,542,939
직 접 세 계	2,419,987	2,692,403	3,021,830	3,176,231	3,581,184	3,760,863	3,974,517
소 득 세	2,341,040	2,597,759	2,893,320	3,054,785	3,364,343	3,603,528	3,793,262
법 인 세	54,453	63,080	73,522	85,454	96,629	125,413	142,084
토지초과이득세	—	—	23,381	4,103	94,147	—	—
상 속 세	24,290	31,414	31,476	31,795	25,921	31,834	39,019
상 속	1,703	2,294	2,869	3,438	2,291	2,549	3,464
증 여	22,587	29,120	28,607	28,357	23,630	29,285	35,555
자산재평가세	204	150	131	94	144	88	152
등 록 세	—	—	—	—	—	—	—
부동산투기억제세	—	—	—	—	—	—	—
간 접 세 계	1,602,762	1,554,759	2,014,968	2,129,695	2,286,561	2,424,724	2,568,422
부가가치세	1,577,183	1,530,308	1,988,821	2,102,203	2,253,105	2,388,044	2,526,198
특별소비세	3,935	4,689	4,443	4,376	3,937	3,988	3,671
주 세	1,458	1,433	1,414	1,379	1,363	1,358	1,352
전 화 세	1	1	3	4	4	4	4
증권거래세	20,185	18,328	20,287	21,733	28,152	31,330	37,197
영 업 세	—	—	—	—	—	—	—
통 행 세	—	—	—	—	—	—	—
물 품 세	—	—	—	—	—	—	—
직 물 류 세	—	—	—	—	—	—	—
석 유 류 세	—	—	—	—	—	—	—
전기가스세	—	—	—	—	—	—	—
입 장 세	—	—	—	—	—	—	—
유흥음식세	—	—	—	—	—	—	—

주 : 1) 소득세 납세자는 원천징수 납세자 불포함.
2) 법인세 납세자는 매년도 신고법인 기준임.
3) 전화세는 징수의무자임.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8] 연도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

(단위 : 백만원, 건)

	처리대상건수			처 리 건 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75	5,024	—	5,024	4,896	690	2,598	1,608	464	128
1980	3,959	55	3,904	3,820	1,074	1,669	1,077	4,105	139
1981	5,606	139	5,467	5,011	1,488	2,197	1,326	4,838	595
1982	8,361	595	7,766	7,899	2,352	3,652	1,895	14,906	462
1983	5,457	462	4,995	5,166	1,735	2,450	981	5,335	291
1984	4,215	291	3,924	3,923	1,473	1,945	505	5,665	292
1985	4,197	292	3,905	3,985	1,673	1,964	348	3,276	212
1986	3,667	212	3,455	3,474	1,423	1,842	209	1,992	193
1987	2,001	193	1,808	1,961	804	1,049	108	2,607	40
1988	1,621	40	1,581	1,551	545	891	115	2,042	70
1989	1,912	70	1,842	1,854	596	1,076	182	3,711	58
1990	2,217	58	2,159	2,132	692	1,246	194	3,408	85
1991	2,686	85	2,601	2,347	735	1,411	201	4,172	339
1992	2,752	339	2,413	2,652	741	1,712	199	4,369	100
1993	4,377	100	4,277	3,721	1,352	2,073	296	9,638	656
1994	3,469	656	2,813	3,369	340	2,633	396	14,150	100
1995	4,408	100	4,308	4,207	887	2,479	841	41,242	20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9] 연도별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

(단위 : 백만원, 건)

	처리대상건수			처 리 건 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 하	기 각	경 정		
1975	1,589	—	1,589	1,168	56	874	238	1,906	421
1980	2,761	298	2,463	2,390	273	1,428	689	4,327	371
1981	3,625	371	3,254	2,892	321	1,711	860	6,018	733
1982	5,839	733	5,106	5,085	517	3,188	1,380	18,343	754
1983	4,817	754	4,063	4,478	438	3,306	734	8,423	339
1984	3,403	339	3,064	3,074	362	2,370	342	6,920	329
1985	3,555	329	3,226	3,266	398	2,607	261	12,266	289
1986	3,714	289	3,425	3,307	361	2,749	197	1,813	407
1987	2,963	407	2,556	2,743	269	2,288	186	2,268	220
1988	2,806	220	2,586	2,386	178	1,978	230	8,797	420
1989	3,783	420	3,363	3,462	291	2,832	339	12,090	321
1990	4,206	321	3,885	3,780	285	3,203	292	11,841	426
1991	5,319	426	4,893	3,980	352	3,355	273	12,379	1,339
1992	6,468	1,339	5,129	5,908	410	5,056	442	14,482	560
1993	7,664	560	7,104	5,316	562	4,312	442	15,513	2,348
1994	9,225	2,348	6,877	8,527	485	7,012	1,030	35,912	698
1995	7,202	698	6,504	6,329	426	5,205	698	19,184	873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0] 연도별 조세 행정소송 건수

(단위 : 건)

	처리대상건수			당년도 종결건수			계 류 건 수		
	계	전년도이월	당년도제기	계	국가승소	국가패소	계류건수	고등법원	대법원
1973	524	325	199	228	194	34	296	—	—
1974	467	296	171	231	186	45	236	—	—
1975	330	236	94	149	109	40	181	—	—
1976	346	181	165	133	91	42	213	—	—
1977	482	213	269	173	114	59	309	—	—
1978	608	309	299	254	165	89	354	—	—
1979	759	354	405	256	152	104	503	—	—
1980	768	505	263	374	211	163	394	—	—
1981	859	394	465	265	161	104	594	—	—
1982	1,119	594	525	346	199	147	773	—	—
1983	1,671	773	898	625	360	265	1,046	—	—
1984	1,906	1,046	860	804	443	361	1,102	—	—
1985	2,157	1,101	1,056	876	404	472	1,281	874	407
1986	2,335	1,281	1,054	703	334	369	1,632	1,060	572
1987	2,845	1,632	1,213	1,283	556	727	1,562	1,032	530
1988	2,388	1,562	826	973	442	531	1,415	707	708
1989	2,360	1,415	945	998	514	484	1,362	990	372
1990	2,519	1,362	1,157	802	490	312	1,717	1,369	348
1991	2,930	1,717	1,213	901	563	338	2,029	1,552	477
1992	3,836	2,029	1,807	1,422	872	550	2,414	1,826	588
1993	3,871	2,414	1,457	1,727	1,085	642	2,144	1,448	696
1994	3,997	2,144	1,853	1,534	896	638	2,463	1,965	498
1995	4,039	2,463	1,576	1,558	1,032	526	2,481	1,976	505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1] 연도별 조세범칙 조사 실적

(단위 : 건, 백만원)

	조사건수	징 수 실 적			범칙처리내용		
		계	추징세액	벌 과 금	통 고	고 발	무혐의
1966~1970	5,662	5,941	3,919	2,022	3,969	50	1,643
1971~1975	2,186	20,582	17,467	3,115	1,670	152	364
1976~1980	1,611	75,149	66,535	8,614	1,256	250	105
1976	354	17,494	15,597	1,897	296	32	26
1977	421	16,466	15,201	1,265	353	42	26
1978	267	10,535	8,234	2,301	226	29	12
1979	267	10,173	8,725	1,448	172	80	15
1980	302	20,481	18,778	1,703	209	67	26
1981~1985	784	85,342	79,905	5,437	565	118	101
1981	374	14,179	12,204	1,975	286	44	44
1982	178	8,646	7,314	1,332	135	20	23
1983	166	54,516	53,080	1,436	105	36	25
1984	58	5,424	4,799	625	35	14	9
1985	8	2,579	2,510	69	4	4	—
1986~1990	98	76,467	75,919	548	33	64	1
1986	8	5,197	5,121	76	2	6	—
1987	7	11,278	11,278	—	—	7	—
1988	55	43,828	43,363	465	30	25	—
1989	18	7,243	7,243	—	—	17	1
1990	10	8,921	8,914	7	1	9	—
1991~1994	47	107,411	107,246	165	4	43	—
1991	7	2,418	2,398	20	1	6	—
1992	3	30,309	30,309	—	—	3	—
1993	27	66,504	66,431	73	2	25	—
1994	10	8,180	8,108	72	1	9	—
1995	15	35,024	34,970	54	1	14	—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2] 연도별 내국세 징세비 추이

	징수세액 (백만원)	징세비 (백만원)	1인당 징세비 (천원)	징수세액100원당 징세비(원)
1966	70,011	1,531	255	2.18
1967	103,828	2,179	311	2.09
1968	156,407	3,246	377	2.07
1969	218,099	3,901	451	1.78
1970	283,799	4,299	477	1.51
1971	355,496	4,894	532	1.37
1972	374,340	5,558	625	1.48
1973	439,121	5,659	601	1.29
1974	717,976	8,287	874	1.15
1975	1,044,191	17,091	1,809	1.16
1976	1,549,884	18,591	1,968	1.20
1977	1,899,219	29,114	2,544	1.53
1978	2,561,323	36,018	3,077	1.40
1979	3,440,034	43,812	3,648	1.27
1980	4,217,730	51,209	4,255	1.21
1981	5,307,866	66,748	5,402	1.25
1982	6,214,696	79,239	6,448	1.27
1983	7,290,483	85,997	6,921	1.18
1984	7,964,914	91,492	7,342	1.15
1985	8,941,572	102,796	8,163	1.15
1986	10,099,029	113,833	9,031	1.13
1987	12,015,922	126,025	9,992	1.05
1988	15,083,828	146,629	11,625	0.97
1989	18,078,004	174,116	13,292	0.96
1990	22,677,797	210,614	14,944	0.93
1991	26,985,416	267,149	18,954	0.99
1992	32,085,281	312,994	21,583	0.98
1993	36,374,723	351,328	23,729	0.97
1994	43,690,513	400,456	26,722	0.92
1995	51,748,716	471,945	31,492	0.91

자료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표 13] 연도별 국세청 정원 추이

(단위 : 명)

	계	본 청	세무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	지방국세청	세 무 서
1966	5,500	208	—	10	376	4,906
1967	7,500	384	—	10	494	6,612
1968	9,192	384	33	26	716	8,033
1969	9,247	395	88	26	786	7,952
1970	9,611	309	88	26	789	8,399
1971	9,795	318	88	26	789	8,574
1972	9,455	327	69	26	716	8,317
1973	10,067	361	69	34	781	8,822
1974	10,406	383	61	38	863	9,061
1975	10,372	383	61	38	823	9,067
1976	11,573	413	61	38	920	10,141
1977	12,369	494	62	38	937	10,838
1978	12,663	509	62	39	1,014	11,039
1979	13,358	515	61	39	1,315	11,428
1980	13,506	594	63	40	1,333	11,476
1981	14,299	848	72	42	1,436	11,901
1982	14,299	847	72	42	1,438	11,900
1983	14,398	842	84	42	1,436	11,994
1984	14,702	1,126	84	42	1,535	11,915
1985	14,852	1,131	84	42	1,610	11,985
1986	14,869	1,188	84	42	1,610	11,945
1987	14,870	1,189	84	42	1,610	11,945
1988	14,878	1,154	84	42	1,654	11,944
1989	15,391	1,154	84	42	2,045	12,066
1990	16,481	696	84	42	2,643	13,016
1991	16,945	725	84	42	2,906	13,188
1992	16,945	725	84	42	2,895	13,199
1993	17,287	699	83	40	2,927	13,538
1994	17,491	707	83	40	2,959	13,702
1995	17,491	699	83	40	2,940	13,729

주 : 각 연도말 기준임.
자료 : 국세청, 『국세청 30년사』, 1996.

『韓國 租稅政策 50年』 關聯 所藏 資料 目錄

經濟科學審議會議, 『附加價值稅制의 改善』, 1979. 8.

곽상수, 『한국조세연구』, 한국연구도서관, 1961.

國稅廳, 『국세통계연보』, 1966～1995.

_____, 『附加價值稅施行後 價格指導指針』, 1977. 7.

_____, 『國稅廳 二十年史』, 1986.

_____, 『國稅廳 三十年史』, 1996.

_____, 『稅政 100年 略史』, 199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 『연도별 예산심의 개요』, 1974.

吉益宣(譯), 『南北經濟實情』, 駐韓經濟協助處 編纂, 1949.

김만기, 『조세개론』, 대한재무협회, 단기 4284.

김옥근, 『日帝下 朝鮮財政史論攷』, 일조각, 1994.

內務部, 『地方行政十年史』, 단기 4291.

_____, 『지방세통계연보』, 1971.

_____, 『지방세통계』, 1972～1975.

_____, 『지방세정연감』, 1978～1995.

_____, 『地方稅沿革集(上, 下)』, 1996.

內務部 地方局, 『지방세무통계연보』, 1964～1967.

_____, 『지방세통계연보』, 1968～1970.

內務部 地方財政局, 『지방재정연감』, 1970～1993, 1995.

_____, 『지방세통계』, 1976～1977.

內務部 治安局, 『美軍政法令集(군정법령총목록)』, 단기 4289.

대한교원공제회, 『敎員共濟會 二十年史』, 1992. 10.

大韓民國史編纂委員會, 『大韓民國史』, 1988. 6.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센터, 『내국세제도의 변천과 전망』, 1979.

大韓서울商工會議所, 『韓國經濟 20年의 回顧와 反省』, 1982.

백과사전출판사, 『조선강점시기 일제의 조세수탈』, 1988.

法制處, 『法制處 四十年史』, 1988.

三陟稅務署, 『三陟稅務署 五十七年史』, 1991.

稅務大學 租稅問題硏究所, 『特別消費稅 課稅物品의 分類體系에 CCCN 및 H·S 分類體系의 導入을 위한 檢討』, 1983. 11.

_____,『國民租稅意識의 調査硏究』, 1983. 12.
_____,『多國籍企業의 移轉價格操作과 租稅條約에 관한 硏究(移轉價格決定原理, 各國의 規制 및 우리나라 稅法上의 改善方案)』, 1986. 12.
稅制局,『附加價値稅 課稅標準 및 稅率推計 報告書』, 1976. 7.
신상준,『韓國財務行政의 近代化過程(甲午改革～韓日合併期: 1894～1910年)』, 신조문화사, 1970.
張炳淳,『韓國稅政史』, 普成社, 1973.
財務部,『財政金融의 回顧 －建國十周年業績－』, 단기 4291.
_____,『附加價値稅 －어떤 세금인가－』, 1977.
_____,『附加價値稅法解說』, 1977.
_____,『稅法制定 및 改正(案)』, 1977. 7.
_____,『附加價値稅 行政 調査 報告書(佛蘭西, 西獨)』, 1978. 3.
_____,『韓國稅制史(上, 下)』, 1979. 12.
_____,『1980年代의 韓國稅制에 關한 IMF 報告書 － Alan A. Tait, Angelo G. Faria, Peter S. Heller －』, 1980. 1.
_____,『1980年代의 韓國稅制에 關한 IMF 報告書(要約)』, 1980. 3.
_____,『附加價値稅 實態調査結果 및 改善方向』, 1980. 4.
_____,『韓國稅制改編에 관한 IMF 硏究 報告書』, 1985. 6.
_____,『韓國의 租稅負擔에 관한 IMF 硏究 報告書 － Peter S. Heller －』, 1986. 6.
_____,『韓國附加價値稅制史』, 1990. 12.
_____,『'92 간추린 改正稅法』, 1993.
_____,『'93 간추린 改正稅法』, 1994.
_____,『韓國의 財政統計 1994』, 1994.
財務部 司稅局,『대한민국 세무통계서』, 1958.
_____,『세무통계연보』, 1959～1962, 1964, 1965.
_____,『韓國의 經濟開發을 爲한 歲入政策 － R. A. Musgrave』, 1965. 9.
財務部 司稅局(譯),『韓國의 經濟開發을 爲한 歲入政策』, 1965. 9.
財務部 稅制局,『附加價値稅制度 調査 報告書』, 1974. 9.
_____,『西獨의 附加價値稅制度(附錄: VAT의 一般的 特性)』, 1974. 7.
_____,『韓國의 稅收 推計』, 1970. 5.
_____,『韓國財政構造에 對한 考察(第3次 5個年 經濟開發計劃과 關聯하여)』, 1971.
_____,『韓國의 租稅制度에 對한 建議』, 1973. 7.

財務部 稅制局(譯),『稅制改革을 爲한 建議』, 1967. 3.
財政經濟院,『'94 간추린 改正稅法』, 1995.
_____,『'95 간추린 改正稅法』, 1996.
_____,『'96 간추린 改正稅法』, 1997.
全國經濟人聯合會,『稅制改編方向에 관한 意見』, 1985. 9.
_____,『韓國經濟政策 四十年史』, 1986. 3.
崔 洸,『財政統計 資料集』, 韓國開發硏究院, 1983. 4.
崔震培,『韓國의 附加價値稅』, 圖書出版 三文, 1984.
韓國開發硏究院,『韓國經濟 半世紀 政策資料集』, 1995.
韓國開發硏究院 財政政策室,『財政統計 資料集 1991』, 1991.
_____,『財政統計 資料集 1994』, 1994.
韓國經營者總協會,『勞動經濟 40年史』, 1989. 2.
한국경제개발협회,『한국의 국내소비세에 관한 연구보고서(물품세, 주세, 석유류세 및 전매익금제도의 문제점과 건의)』, 1966. 6.
韓國經濟硏究所,『稅法體系의 整備와 改善에 관한 硏究』, 1982. 9.
_____,『財政機能의 再調整과 行政機能 官僚制度의 改編方向 硏究』, 1982. 10.
_____,『所得稅體系 合理化를 위한 基礎課題 硏究』, 1982. 10.
_____,『企業稅制 合理化의 基礎硏究 －課稅所得의 算定體系와 企業內部留保의 充實化－』, 1983. 10.
韓國關稅硏究所,『關稅法 沿革』, 1994. 6.
韓國產業銀行 企劃調査部,『네이산報告 －韓國經濟再建計劃－(上, 下)』, 1954. 3.
韓國財政40年史編纂委員會,『韓國財政 40年史』, 韓國開發硏究院, 1990. 6.
第 1 卷 豫算資料(1948～1967)
第 2 卷 豫算資料(1968～1987)
第 3 卷 財政關聯法令 및 主要政策資料
第 4 卷 財政統計(1)
第 5 卷 財政統計(2)
第 6 卷 財政運用의 時代別 分析
第 7 卷 財政運用의 主要課題別 分析
韓國租稅硏究院,『改正稅法 總覽(Ⅰ)(간추린 改正稅法 74～82)』, 1994. 10.
_____,『改正稅法 總覽(Ⅱ)(간추린 改正稅法 83～89)』, 1994. 10.
_____,『改正稅法 總覽(Ⅲ)(간추린 改正稅法 90～93)』, 1994. 10.

韓國地方行政研究院,『韓國地方行政史(1948～1986)(上, 下)』, 1987. 12.

溝口敏行·敏村又次,『旧日本植民地經濟統計 － 推計と分析』, 東洋經濟新報社, 1988.

小田忠夫,「併合初期に於ける朝鮮總督府財政の發達」,『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第十册』, 昭和十三年.

水田直昌 監修,『總督府時代の財政 － 朝鮮近代財政の確立』, 財團法人 友邦協會, 昭和四十九年.

鈴木武雄,「李朝末期に於ける朝鮮の財政」,『京城帝國大學法學會論集 第二册』, 明治四十三年.

財政經濟學會,『明治大正財政史 第十八卷 1』, 東京, 昭和十四年.

朝鮮總督府,『施政三十年史 前篇』, 昭和十五年.

_____,『施政三十年史 後篇』, 昭和十五年.

朝鮮總督府 內務局,『朝鮮ニ於ヶル稅制定理經過概要』, 昭和十年.

_____,『朝鮮ニ於ヶル地方稅制定理經過概要』, 昭和十年.

朝鮮總督府 財務局,『朝鮮ニ於ヶル國稅及地方的租稅負擔額調』, 大正十三年.

_____,『朝鮮ニ於ヶル租稅負擔額調』, 昭和四年.

朝鮮總督府 財務局編纂,『朝鮮稅務法規提要』, 朝鮮財務協會, 昭和十一年.

_____,『朝鮮稅務法規提要 1』, 朝鮮財務協會, 昭和十九年.

_____,『朝鮮稅務法規提要 2』, 朝鮮財務協會, 昭和十九年.

統監府,『韓國財政施設綱要』, 明治四十三年.

賀田直治,『朝鮮產業政策研究要綱』, 1927.

Balassa, B., *The Korean Tariff Reform of 1971 ; An Evaluation,* September 1971.

_____, *Proposal for Reform of the Tariff, Export Subsidy, and Foreign Exchange System in Korea,* December 1996.

Johnson, R. H., *Review of Korean Tax Reform of 1967,* 1968. 3.

_____, *Quarterly Report: for Period Ended December 31, 1968,* 1969. 1.

_____, *Quarterly Report: for Quarter Ended March 31, 1969,* 1969. 4.

_____, *Quarterly Report: for Quarter Ended June 30, 1969,* 1969. 7.

_____, *The Role of Fiscal Policies in the Third Five－Year Development Plan: Final Report,* 1969. 8.

_____, *A Survey of Korea's Fiscal System in Relation to the Third Five－Year Economic Development Plan,* 1970.

Ministry of Finance, *Introduction of Value Added Tax into the Republic of Korea,*

1977. 11.

Musgrave, P. B., *Trade Targets and Policies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1965. 8.

Musgrave, R. A., *Suggestion for the 1967 Tax Reform,* 1967. 3.

_____, *Tax Reform,* 1967. 7.

Sedjo, R. A., *The Turning Point for Korean Economy,* 1971.

Sheahan, J. B., *Issues Involve in the Proposed Tariff Reform,* August 1971.

Tait, A. A., *A Report on the Possible Korean Value-Added Tax(Vat),* 1975.

_____, *A Report on the Proposed Korean Value-Added Tax,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Effects on the Retail Price Index and on Household Expenditures,* IMF, 1976. 7.

Tait, A. A., Faria, A. G. and Heller, P. S. *Korea : Taxes in the 1980s,* IMF, 1979. 7.

韓國 租稅政策 50年

第II卷 總括 資料集

1997年 12月 10日 印刷
1997年 12月 20日 發行

發 行 人 金 仲 秀
發 行 處 韓國租稅研究院
137－130
서울特別市 瑞草區 良才洞 60番地
電話：3460-2114(代)
登 錄 1993年 7月 15日 第21－466號
組版 및 印 刷 一 志 社

ⓒ 韓國租稅研究院 1997 ISBN 89-8191-091-X
ISBN 89-8191-096-0(전6권)

※ 破本은 바꿔드립니다. 값 40,000원(전6권 1질 250,000원)